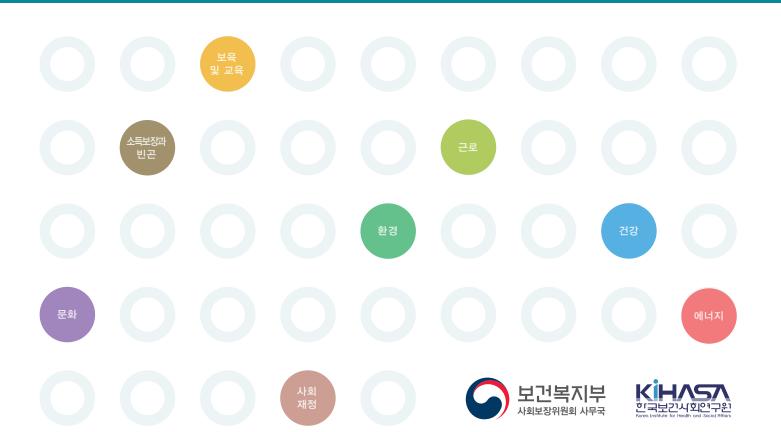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2017년 현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며,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각종 사회지표들은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정도로 향상되지 못했습니다.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나라가 처한 다양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선성장·후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건전한 시장체제와 사각지대 없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 – 성장 – 고용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보장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우리가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를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사회과학 분야는 관련한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될 때에 좀더 정밀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근거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을 위해 2013년부터 사회보장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은 우리사회의 사회보장 수준과 국민의 욕구를 가늠하고,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실증 근거를 제공하는 통계자료집입니다. 국민의 생활영역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국가 승인통계 뿐만 아니라 행정통계와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도 포함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공급과 수요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발간하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은 국민의 입장에서 알고 싶은 사회보장 통계를 보다 쉽게 설명하고 시각화 하여 사회보장제도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을 제공하는 등 온라인 서비스도 강화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발간에 협조해주신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담당자, 사회보장 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전문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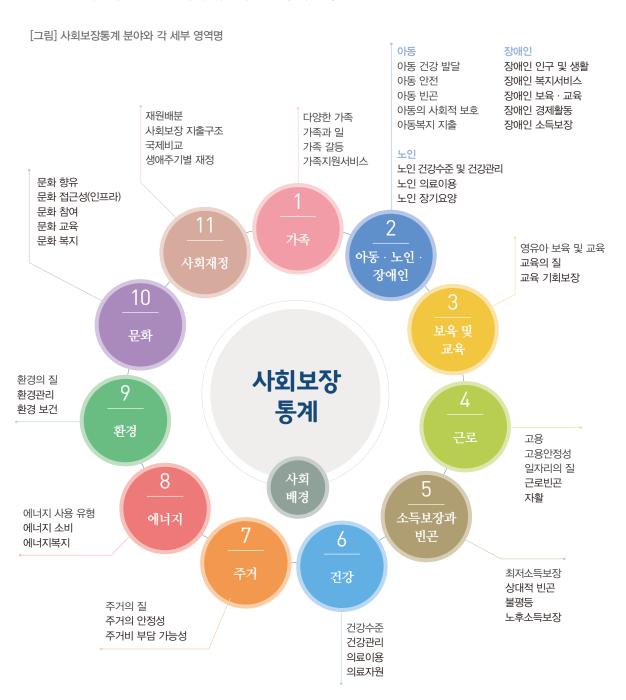
본 발간물이 과학적이고 시의성 높은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국민들의 삶과 수요에 기반한 사회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 박 능 후

이용자를 위하여

-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등의 제출기관 이 작성한 승인 및 미승인 통계들을 분석하여 발간한 통계연보임.
 - 본 발간물은 사회보장의 실태와 정책의 배경여건이 되는 사회배경 분야와 주요 사회보장정책을 11개 분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음.
 - 사회보장통계 지표는 사회보장 관련 현황과 정책적 대응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 및 연관지표 로 제시되었으며, 주요 사회보장 정책분야별 세부 영역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 전문위원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됨.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의 각 지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0 H #

• **지표 번호** 분야별로 대표지표의 일련번호가 있으며, 연관지표의 경우에는 관련 대표지표와 연동되어 있음.

지표명

영문지표명

지표 정의

이용자들이 지표의 뜻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표의 개념을 서술하였으며, 관련 정책의 내용도 함께 소개함.

측정 산식

• 지표를 산출하는 방식을 수식으로 표기함.

유의사항 동일한 지표 또는 통계의 중복이거나 동일한 지표명이지만 통계출처가 상이한 경우, 그리고 동일 지표에서 국제비교자료 제출과 국내 공포된 자료가 상이한 경우 등의 특이사항을 명시함.



본문 서술 현황 및 추이를 설명하는 등 통계표에 대한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하고 정책분야 간에도 중립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작성함.

통계정보

작성기관 | 통계명 | 최초 작성연도 | 최근 작성연도 | 주기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생산주기 등의 메타데이터를 정리함.

Checkpoint 전년도 대비 또는 정책적 함의 등 특이점 등을 요약함.

참고문헌 • 본문에 인용하였거나 참고가 되는 주요 자료의 발행기관, 문헌명, 발행연도를 정리하여 소개함.

-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은 다음 기준으로 작성함.
 - 통계표 중 전년도 연보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번 연보에서 정정한 것임.
 - 자료수치는 반올림 처리 등으로 인해 세부항목의 합계와 총계(전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수록된 통계의 대상은 사회보장통계 운영지침에 따라 제출기관이 2016년 12월말 현재 작성 · 관리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집계하였으며, 중앙부처의 내부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의 미승인 통계(행정자료 등)는 2017년 기준 작성도 포함되어 있음.
 - ※ 통계청의 장래인구(가구)추계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의 추계자료로 관련 통계들이 작성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통계분석 지표는 각 부처가 발간하는 통계연보들의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제비교의 사회보장통계는 부록에 해당 지표를 찾을 수 있도록 색인을 작성함.

- ▶ 본 발간물의 각 지표에 대한 대표 수치(표) 및 발간기준일 이후 최신 자료는 사회보장위원회 홈 페이지(www.ssc.go.kr, 사회보장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연보 책자 표지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직접 연결되어 통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인포그래픽	4	014
사회배경		026
1	가족	
2	아동 · 노인 · 장애인	
3	보육 및 교육	210
4	근로	250
5	소득보장과 빈곤	298
6	건강	338
7	주거	416
8	에너지	452
9	환경	474
10	문화	500
11	사회재정	538

지표별 목차

사회 배경

01. 인구성장률	
02. 총인구	029
03. 인구피라미드	030
04. 부양비	031
05. 합계출산율	032
06. 국내총생산	034
07. 1인당 국민총소득	035
08. 경제성장률	036
09. 소비자물가지수	037
10.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038

042

044

070

072

075

077

079

085

103

106

108

109

111

가조

01. 1인가구

02. 노인가구

03. 한부모가구	046
04. 다문화가구	048
04-1. 북한이탈주민	051
05.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053
06.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055
07. 가정관리 및 가족 돌봄	057
08.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059
09. 조이혼율	061
09-1. 조혼인율	063
09-2.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064
10. 의사상자 수	065
1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67

11-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12. 가사간병방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3.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1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15.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

아동

01. 아동 수면시간

07. 아동 빈곤율

08. 나홀로 아동 수 ……

07-2. 아동급식 지원자 수

07-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수

08-1. 지역이동센터 이용 아동 수

아동 · 노인 · 장애인

	19 1 = 1=	
02.	아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087
03.	아동 자살률	089
04.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091
	04-1. 아동 손상 경험률	094
05.	학대피해이동 발견율	095
	05-1.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수	098
06.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100

09. 요보호 아동 수		114
09-1. 아동복지시설 아동 <i>수</i>	<u> </u>	116
09-2.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		118
09-3. 아동공동생활가정보호	호 아동 수	120
10. 국내외 입양이동 수		121
10-1. 입양아동 관련급여 <i>수</i>	- 급자	123
10-2. 입양아동의 보육 관련	^면 서비스 수 급 자 수	125
11. 아동 · 가족의 공공사회복	·지 지출 ······	128
노인		
12. 65세 기대여명		131
14. 노인의 운동 실천율		135
14-1. 노인의 현재 흡연율고	사 고위험 음주율	136
16. 노인 진료비		139
16-1. 노인의 1인당 외래방	문 횟수	141
17.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142
17-1. 노인의 주요 검진항목	목의 수검률	144
18.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	^턴 율	145
18-1.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	경 률	147
19. 장기요양기관 수		149
19-1. 장기요양 기관의 전문	은인력······	151
장애인		
	율	
	음 필요 정도	
	Ų 거주인 수 ······	
22-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시설 수	165
	! 수 ·····	
	- 및 이용액	
	자 수 및 이용액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아동 수	
	냉 비율 ······	
28.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액	185
29. 장애인 교육수준		188
30-1. 장애인 고 용률 ···········		192
3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95
	근 3개월 평균 임금	
33.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199
33-1. 장애수당 수급자 수		201
33-2.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 수·····	203
34.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205
35.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	출	208

보육 및 교육

0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212
01-1. 0~5세 아동보육공급률	214
0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216
03.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218
03-1. 양육수당 아동 지원 수	220
04.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223
05. 학교급별 취학률	225
06. 학급당 학생 수	227
07.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229
08. 교원 1인당 학생 수	231
09. 학생 1인당 사교육비	234
09-1.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비율	236
10.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237
10-1.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1인당 대출 금액	
11.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241
12.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13. 고등교육 이수율	245
14.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및 지원 금액	247

01. 경	경제활동 참가율·······	252
02. ፲	1용률	254
03. 슬	일업률	256
04. 실	일업급여 수급자 수	258
05. 정	성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260
06. 종	· - 근로시간	262
07. 종	S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265
08. -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267
09. 人	·회보험 가입률	270
10. 신	·····································	272
11. ス	i 1임금근로자 비율	274
12. 人	l간급 최저임금	276
1	2-1. 최저임금 영향률	279
13. 人	l간당 임금액	280
14. 🗔	므로 · 자녀장려금 지급액	282
15. ス	·활사업 대상자 수 ·····	284
1	5-1. 자활사업 참여자 수	287
16. ス	·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290
1	6-1.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293
17. ㅊ	· 	296

5 소득보장과 빈곤

0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및 수급률	300
01-1.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302
01-2.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304
01-3. 주거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306
01-4. 의료급여 수급자 수	309
01-5. 교육급여 수급자 수	311
02. 차상위 확인서발급 (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313
03. 상대적 빈곤율	316
04. 상대적 노인 빈곤율	318
05. 소득5분위배율	
06. 지니계수	322
07.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324
08.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327
09.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330
09-1.65세 이상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333
10.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335

O 건강

01. 기대수명 340 01-1. 건강수명 01-2. 주관적 건강인지율 343 02. 조사망률 345 02-1. 연령표준화사망률 347 02-2. 영아사망률 …… 349 02-3.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 350 03. 저체중아 발생률 03-1. 조산율 353 04. 자살률 355 04-1. 정신장애 유병률 358 04-2. 우울장애 유병률 …… 359 05. 10대 다빈도 상병 360 05-1. 암 발생률 05-2. 뇌졸중 의사진단경험률 363 05-3. 고혈압 유병률 364 05-4. 당뇨병 유병률 365 06. 현재 흡연율 367 06-1.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 369 06-2.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370 06-3. 청소년 현재 흡연율 ... 371 07. 고위험 음주율 ······ 372 07-1. 연간음주율 374 07-2. 청소년 현재 음주율 375 07-3. 1인당 알코올소비량 …… 376 08. 비만율 ----377 08-1. 청소년 비만율 08-2. 걷기실천율 380 09.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381 09-1.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 383 10. 평균 재원일수 385

	11. 1일 외래환자 수	387
	11-1. 1인당 의사진찰 건수	388
	11-2. 1인당 외래방문 횟수	389
	11-3. 산전수진율	390
	12.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392
	12-1. DPT(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률: 1세 대상 ···································	394
	12-2. 소아 · 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만1~18세 ······	395
	13.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396
	13-1.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398
	14. 의료보장 적용 인구	399
	14-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401
	15. 의사 수	404
	15-1. 면허의료인 현황	406
	16. 병상 수	407
	16-1. 의료기관 현황	409
	17. GDP 대비 경상의료비	410
	17-1.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412
	17-2.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비의 비중	413
	17-3. 건강보험 급여비	414
	17-4. 건강보험보장률	415
7	0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02.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기구 수	
 주거	03.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771	04.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05.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05-1.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06.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07. 도둑인 수 08.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09.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10.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10-1. 구럭도시기금 선별세대물 기구 구	
	11. 구기급여 시전기구 미뉼 12.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1	12. 구텍인급대출(역보기시) 보증 신구	449
	01. 가전기기 보급률	454
Ω	02. 난방시설별 기구 분포	456
	03. 도시가스 보급률	459
에너지	04.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461
	05.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463
	06.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465
	07. 에너지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	468
	08.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470
	09. 연료비 지원	472

9	
 한경	

01. 상수도 보급률	476
02. 하수도 보급률	478
02-1.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480
02-2. 하수도 설치율	481
03.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482
03-1. 도시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	484
03-2. 도시지역 인구당 녹지조성 면적	485
04.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486
04-1. 주요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488
04-2. 주요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489
05. 주요 대도시 소음도	490
06.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492
06-1.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494
07.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	496
07-1. 환경예산 비율	497
08. 환경성질환자 수	498

| U |----무화

01.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502
	01-1.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504
02.	연간 독서량	506
	02-1. 연간 독서율	508
03.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511
04.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513
05.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515
06.	연간 문화예술(창작·발표)활동 참여율	517
07.	생활체육 참여율	519
	07-1.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521
08.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522
09.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524
10.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526
11.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528
1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530
13.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532
14.	GDP 대비 문화예산	534
15.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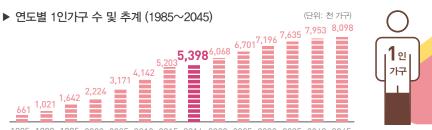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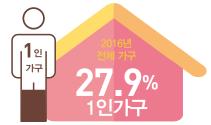
사회 재정

01.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540
0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542
0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544
04.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546
05. 공적연금수지	547
06. 고용·산재보험수지	549
07.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550
08.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552
08-1. 재원구조별 공공사회지출	555

1인가구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6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주: 1) 1985~2016년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며 2020~2045년은 장래가구추계에서 발표된 1인 가구 추계임. 2) 2010년까지는 전통적 현장조사 방식의 집계결과이며, 2015년도와 2016년도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 센서스 방식의 집계결과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1, 27, 인출),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15~2045년, 2017 (http://kosis.kr 에서 2017, 11, 27, 인출)

혼인율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최근 들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2016년 조혼인율은 5.5건으로 2015년 5.9건보다도 0.4건 감소하여 공식 통계가 작성(1970년)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

▶ 총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2005~2016)

(단위: 천 건, 인구 1천 명당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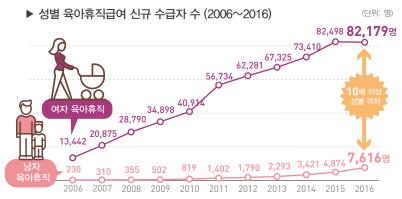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01,22, 인출)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

육아휴직 이용에 있어 성별 격차는 매우 큼.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남성 육아휴직자 수의 10배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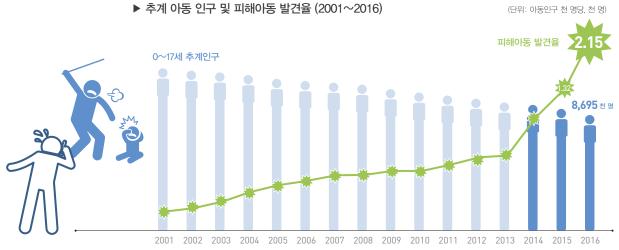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DB), 각 연도

NEOGRÁPHICS 2017

아동·노인·장애인

- 아동학대 신고 및 발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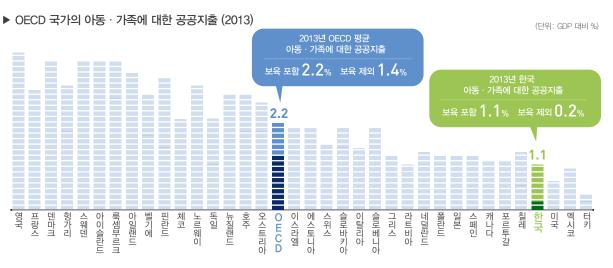
법 개정 및 국민들의 인식 개선으로 2014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 및 발견율은 크게 증가



주: 통계청에서 집계한 2016년 「연령별(시도) 추계아동인구」자료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1,000명 당 피해 아동 발견율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아동복지지출 비중 ---

보육을 제외한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14.3% 수준에 불과하나, 향후 아동수당 도입으로 증가 예상



자료: OECD SOCX Database, (2016, 11,15).

INFOGRAPHIC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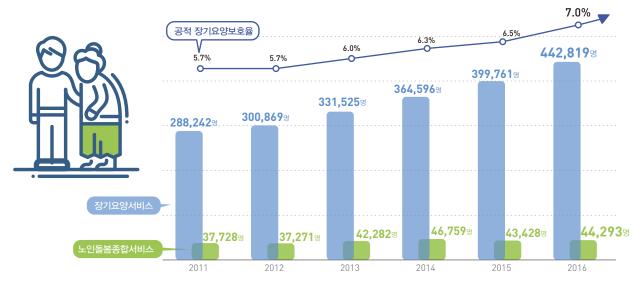
아동·노인·장애인

—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

노인의 공적 장기요양 보호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최근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과 치매 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장기요양 보호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2011~2016)

(단위: 명,%)



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 기준으로, 인정자 중 각 연도 1월~12월까지 누적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재중복자, 사망자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내부자료), 2016

장애인 경제활동 ---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6년에 다시 증가하고 실업률은 다소 감소

▶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2014~2016)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6

▶ 장애인 고용률 (2014~2016)



▶ 장애인 실업률 (2014~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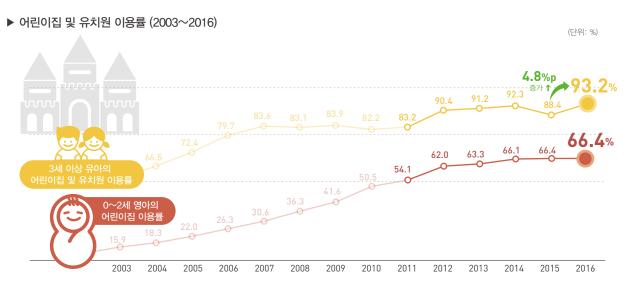


NEOGRÁPHICS 2017

보육 및 교육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

2015년 3세 이상 유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다시 4.8%p 증가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에 증가 추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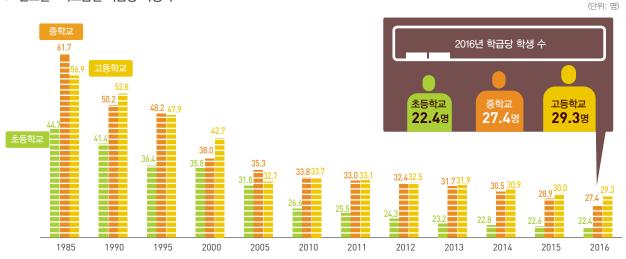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유초등통계, 각 연도

─ 학급당 학생 수 ──◆

초 · 중 ·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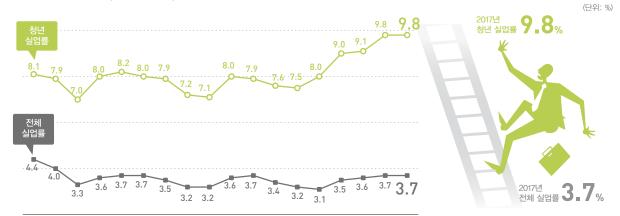
▶ 연도별 ·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 청년 실업률 ──◆

전체연령 실업률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2012년 이후 증가 추세

▶ 우리나라의 실업률 (2000~201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3.15. 인출)

◆── 최저임금 수준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고,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이스라엘, 미국,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

▶ OECD 주요국가의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액(2016)과 저임금근로자 비율(2016)



자료: OECD, stat(자료 다운로드 2017, 11, 9, 08:29 UTC (GMT))

NEOGRAPHIC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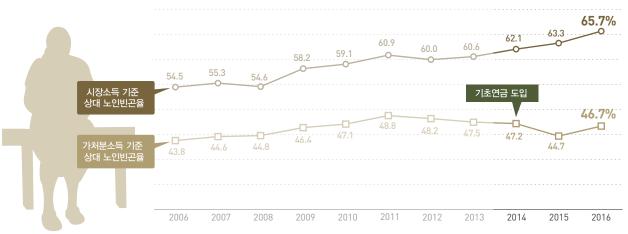
소득보장과 빈곤

--- 노인빈곤율 ---

시장소득 기준 65세 이상 상대 노인빈곤율(중위 50%)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14~2015년 감소하였으나 2016년 다시 증가

▶ 중위 50% 기준 소득별 상대적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2006~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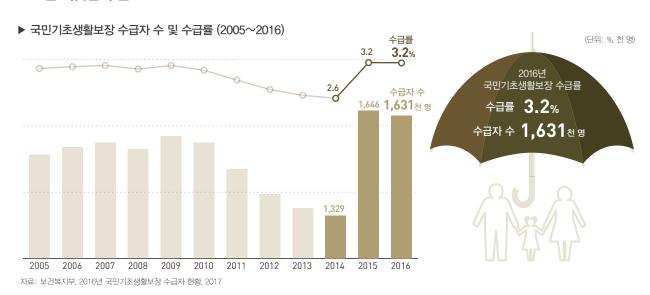


주: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각 연도,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규모 및 수급률이 크게 증가한 후, 2016년 비슷한 수준



---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걷기 실천율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은 2015년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 다시 증가, 걷기실천율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

▶ 현재 흡연율 (2013~2016) ▶ 19세 이상 고위험 음주율 (2013~2016) 24.1% 2013년 24.2% 2014년 2014년 2015년 22.6% 2013년 2016년 2015년 41.7% 23.9% ▶ 걷기실천율 2016년 (2013~2016) 41.2% 39.6% 38.0%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 ---

건강보험 적용비율은 100%(건강보험 97%, 의료급여 3%)인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 수준에 불과



주: 현금지급 포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각 연도

--- 공공임대주택비율

주택건설인허가 실적은 2016년에 다소 감소하였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은 10.6%로 가장 낮아

▶ 신규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추이 (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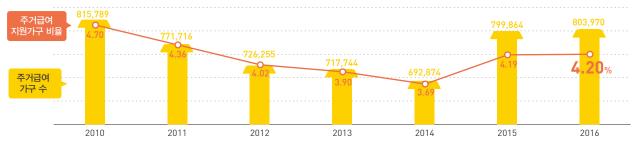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http://kosis.kr 에서 2017.11.28, 인출)

주거급여 지원가구 ---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인해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큰 폭으로 증가한 후 2016년에도 비슷한 수준. 향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주거급여 지원 가구 비율 (2010~201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1. 28. 인출);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내부자료)

에너지

・ 저소득층의 연료비 비율 ---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은 최근 감소하다가 다소 높아졌으며, 다른 계층에 비해 여전히 월등히 높고 특히 동절기인 1분기에 가장 높아 정책지원 확대 필요

▶ 소득분위별 연료비/소득 비율 (2007~2016)

지소득층 =1분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에너지바우처 도입 ---

2015년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였으며, 2016년에는 지원규모가 다소 증가하여 저소득층 약 52만 4천 가구를 대상으로 487억 원의 연료비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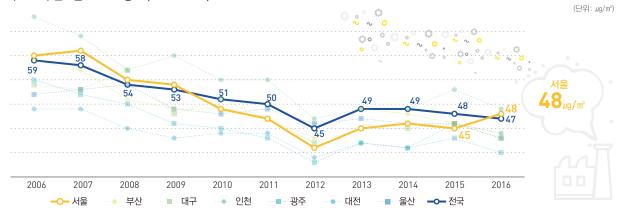
저소득층 2015년 약 **49**만 **5**천 가구 2016년 약 **52**만 **4**천 가구 지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내부자료)

▶── 주요 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ㅡ

주요도시 연도별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최근 더욱 증가

▶ 주요도시 연도별 PM-10 농도 (200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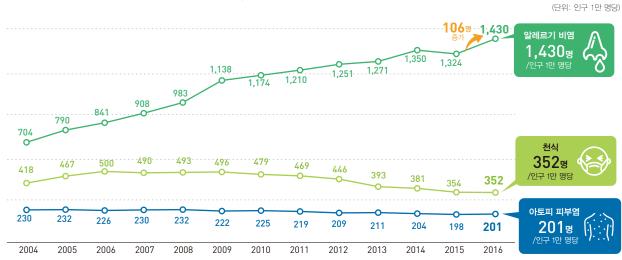


주: 전국 수치는 전체 측정망의 연평균 수치를 활용함.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환경성 질환자 수 ---

인구 1만 명당 알레르기 비염 질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

▶ 인구 1만 명당 주요 환경성질환자 수 (2004~2016)



주: 1) 1만 명당 환자 = 환자 수/건강보험 연말 적용인구 X 10,000

2) 순계 = 중복질환자를 제외한 환경성질환자 수 총합

자료: 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수(내부자료), 각 연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인구 100만명 당 문화시설의 수 -

인구 100만명당 문화시설의 수는 2008년 35.1개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49.4개까지 증가 문화시설의 약 75%는 공공 문화시설, 25%는 사립(대학포함) 박물관 및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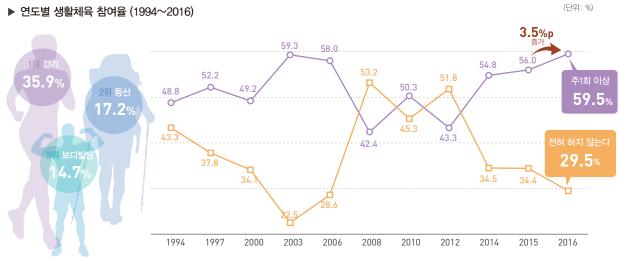


주: 박물관과 미술관은 공공, 사립, 대학으로 구분되어 있음, 사립과 대학을 제외하면 공공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수치임, 시계열 비교를 위해 2014년부터 데이터가 있는 문화의 집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또한 소수점의 문제로 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각 연도

- 생활체육 참여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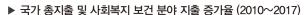
2016년 생활체육 참여율은 59.5%로 2015년 56.0%에 비해 3.5%p 증가한 반면, 운동을 전혀하지 않는 사람은 약 30% 수준으로 감소 규칙적으로 운동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걷기(35.9%), 등산(17.2%), 보디빌딩(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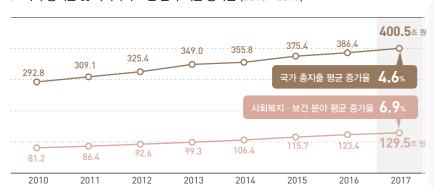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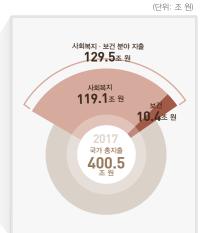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각 연도

──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u></u>

2017년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은 129.5조 원(사회복지 119.1조 원 & 보건 10.4조 원)으로 국가 총지출의 32.3%를 차지하며, 2010년 이후 평균 증가율은 6.9%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4.6%)보다 빠르게 증가







주: 2013년 추경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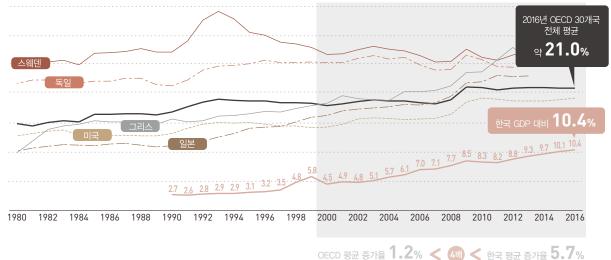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각 연도

OECD SOCX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 ---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3년 확정치를 기준으로 GDP 대비 9.3%(2016년 예측치 기준 10.4%)로 OECD 전체 평균(GDP 대비 21.1%)의 44% 수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 이후 평균 증가율 5.7%로 OECD 평균 증가율(약 1.2%)에 비해 4배 이상 빠르게 증가

▶ 주요국 공공사회지출 (1980~2016)





주: OECD SOCX의 각국 자료는 1980~2016년까지의 자료임(단, 일본은 2013년까지, 한국은 1990년 이후 자료임). 자료: OECD stat,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 (자료 다운로드 2016.10,24, 11:26 UTC(GMT))

사회배경

- 01 인구성장률
- 02 총인구
- 03 인구피라미드
- 04 부양비
- 05 합계출산율
- 06 국내총생신
- 07 1인당 국민총소득
- 08 경제성장률
- 09 소비자물가지수
- 10 국민부담륙 및 조세부담륙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 0 1 7

세부영역	지표	
인구	인구성장률	
	총인구	
	인구피라미드	성별 연령별 인구수
		연령별 인구변화
	부양비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평균초산연령
거시경제적 여건	국내총생산	
	1인당 국민총소득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국가재정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인구성장률

Population Growth Rate

그림 1 인구성장률 (1970~204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http://kosis.kr에서 2018.02.26.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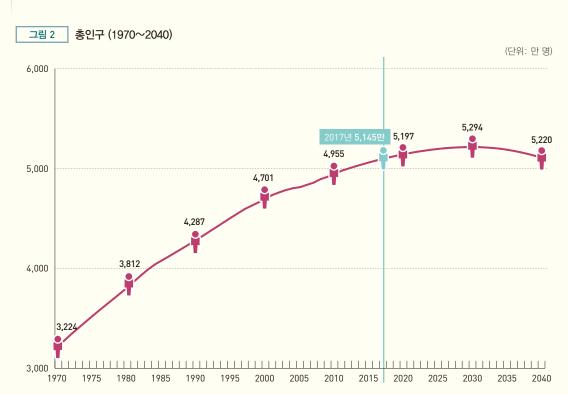
표 1 인구성장률 (1970~2040)

(단위: %)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2020	2025	2030	2035	2040
인구성장률	2.18	1.68	1.56	0.99	0.99	1.01	0.84	0.21	0.5	0.53	0.39	0.31	0.20	0.07	-0.12	-0.32

02

총인구 The Total Population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http://kosis.kr에서 2018.02.26.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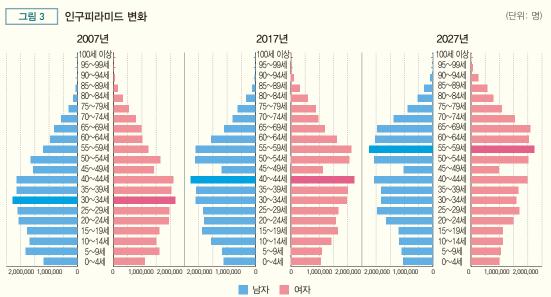
표 2 총인구 (1970~2040) (단위: 만명)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2020	2025	2030	2035	2040
총인구	3,224	3,528	3,812	4,081	4,287	4,509	4,701	4,818	4,955	5,101	5,145	5,197	5,261	5,294	5,283	5,220

인구피라미드

03

Population Pyram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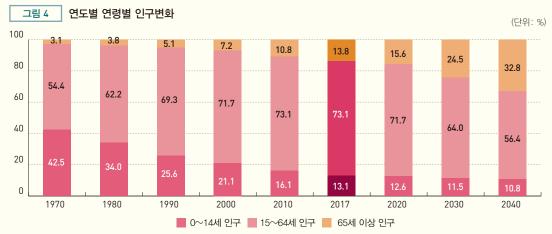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http://kosis.kr에서 2018.02.26. 인출)

표 3 연도별 성별 · 연령별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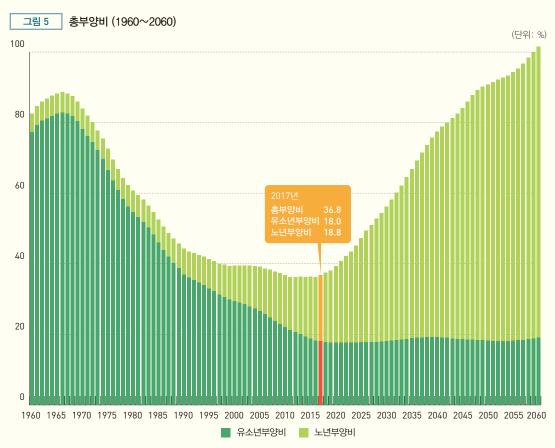
(단위: 명)

78		2007			2017		2027					
구분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계	48,683,638	24,491,190	24,192,448	51,446,201	25,790,240	25,655,961	52,785,954	26,434,319	26,351,635			
0~9세	5,274,864	2,748,461	2,526,403	4,484,594	2,304,033	2,180,561	4,069,035	2,085,884	1,983,151			
10~19세	6,623,519	3,509,463	3,114,056	5,244,468	2,727,492	2,516,976	4,457,116	2,288,145	2,168,971			
20~29세	7,398,929	3,846,043	3,552,886	6,902,162	3,677,330	3,224,832	5,463,821	2,862,345	2,601,476			
30~39세	8,527,951	4,382,924	4,145,027	7,561,778	3,927,272	3,634,506	7,070,019	3,782,170	3,287,849			
40~49세	8,405,541	4,273,142	4,132,399	8,602,472	4,374,708	4,227,764	7,528,113	3,885,946	3,642,167			
50~59세	5,728,609	2,861,558	2,867,051	8,406,022	4,219,368	4,186,654	8,545,996	4,303,079	4,242,917			
60~69세	3,768,416	1,774,063	1,994,353	5,458,443	2,654,141	2,804,302	8,124,253	4,002,925	4,121,328			
70~79세	2,206,919	873,027	1,333,892	3,253,817	1,422,222	1,831,595	4,908,772	2,276,332	2,632,440			
80세 이상	748,890	222,509	526,381	1,532,445	483,674	1,048,771	2,618,829	947,493	1,671,33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http://kosis.kr에서 2018.02.26. 인출)



Dependency Ratio



주: 1) 중위가정

- 2) 유소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 = (0~14세 인구) / (15~64세 인구) * 100 3)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http://kosis.kr에서 2018.02.26. 인출)

丑 4 연도별 부양비 (유소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단위: %)

구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총 부양비	82.6	88.3	83.8	72.5	60.7	52.5	44.3	41.4	39.5	39.1	36.9	36.2	36.8	39.5	47.1	56.3	66.8	77.4	84.2	90.8
유소년 부양비	77.3	82.5	78.2	66.6	54.6	46.0	36.9	33.0	29.4	26.6	22.0	18.8	18.0	17.6	17.8	18.0	18.9	19.2	18.6	18.2
노년 부양비	5.3	5.8	5.7	6.0	6.1	6.5	7.4	8.3	10.1	12.5	14.8	17.5	18.8	21.8	29.4	38.2	47.9	58.2	65.6	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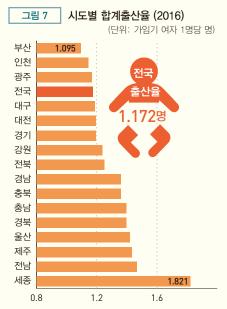
합계출산율

5

Total Fertility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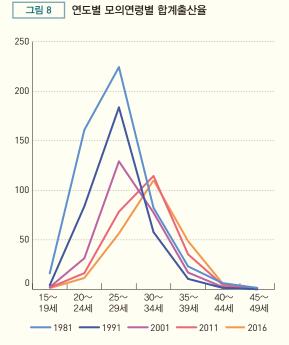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6년 출생 통계(확정) 보도자료(2017.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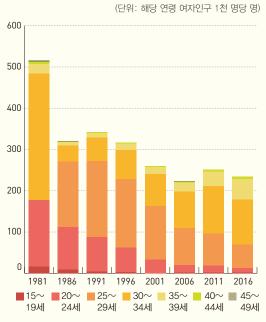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6년 출생 통계(확정) 보도자료(2017.8.29.)

5-1. 연령별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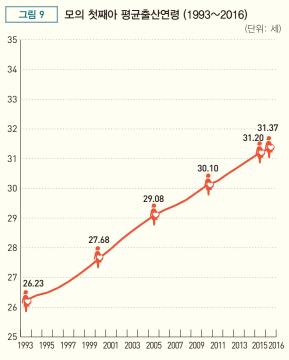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6년 출생 통계(확정) 보도자료(2017.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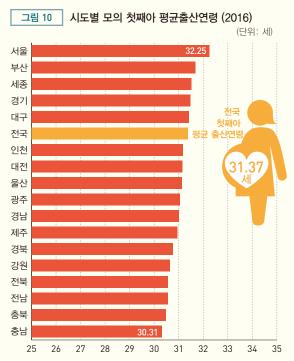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6년 출생 통계(확정) 보도자료(2017.8.29.)

5-2. 평균초산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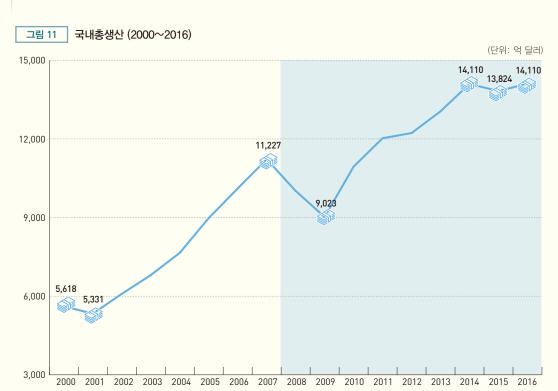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6년 출생 통계(확정) 보도자료(2017.8.29.)

06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2.25.인출)

표 5 국내총생산 (2000~2016)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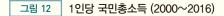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내 총	5 618	5 331	6 089	6 804	7 653	8 980	10 110	11 227	10 017	9 023	10 943	12 027	12 224	13 054	14 110	13 824	14,110
생산	0,0.0	0,00.	0,007		,,000	0,700		,,	. 0,0	7,020		. 2,027	. = , = = .	.0,00	,	.0,02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2.25.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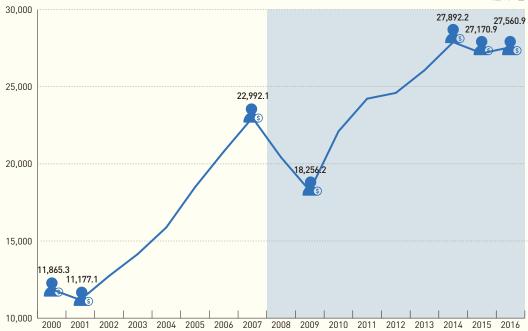
07

1인당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단위: 달러)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2.25.인출)

표 6 1인당 국민총소득 (2000~2016)

(단위: 달러)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인당 국민 총		11 177 1	12 720 /	1/1511	15 00/ 1	10 /00 /	20 70 / 7	22 002 1	20 / 10 1	10.057.0	22 105 2	27, 225, 7	2/ 500 0	24 070 2	27 002 2	27 170 0	27,560.9
총 소득	11,000.3	11,177.1	12,727.4	14,131.1	10,004.1	10,470.4	20,774.7	ZZ,77Z.1	20,417.1	10,230.2	22,100.3	24,223.0	24,377.7	20,070.3	21,072.2	27,170.7	27,000.7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2.25.인출)



경제성장률

Rate of Economic Growth

그림 13 경제성장률 (2000~2016)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2.25.인출)

표 7 경제성장률 (2000~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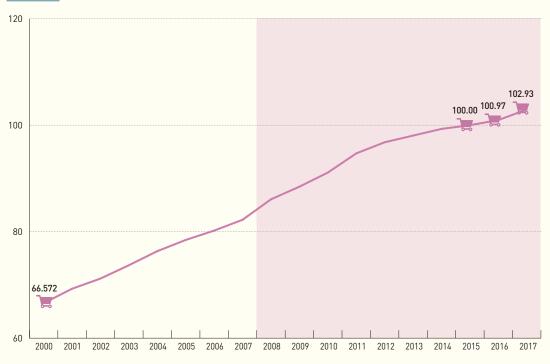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제 성장률	8.9	4.5	7.4	2.9	4.9	3.9	5.2	5.5	2.8	0.7	6.5	3.7	2.3	2.9	3.3	2.8	2.8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2.25.인출)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물가지수 (2000~2017) 그림 14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2.25.인출)

丑8 소비자물가지수 (2000~2017)

연도 2000 2001	2002 2003 2	2004 2005 20	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비자 물가 66.572 69.27 지수	71.193 73.695 7	78.444 80.2	02 82.235 86.079	88.452 91.1	94.7 96.79	98.05 99.30	100.00 100.97 102.93

주: 1) 품목별 소비지물가지수(지출목적별:2015=100) 의 총지수 2) 2009년 이전 지수는 3자리, 2010년 이후 지수는 1자리, 2012년 이후 지수는 2자리로 작성됨.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2.25.인출)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Total tax revenue as % of GDP & Total tax revenue(excluding social security) as % of GDP

표 9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2000~2016)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민부담률	21.5	21.8	22.0	22.7	22.0	22.5	23.6	24.8	24.6	23.8	23.4	24.2	24.8	24.3	24.6	25.2	26.3
조세부담률	17.9	17.8	17.8	18.2	17.4	17.8	18.6	19.6	19.3	18.2	17.9	18.4	18.7	17.9	18.0	18.5	19.4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http://stats.oecd.org 2018.2.26, 11:31 UTC (GMT)), 국세청 · 관세청, 징수보고서, 각 연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 연감, 각 연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http://stats.oecd.org 2018,2,26, 11:31 UTC (GMT)). 국세청·관세청, 징수보고서, 각 연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가족

- 01 1인가구
- 02 노인가구
- 03 한부모가구
- 04 다문화가구
- 05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 06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 07 가정관리 및 가족 <u>돌</u>봄
- 08 가정폭력 발생륙 및 신고육
- 09 조이혼율
- 10 의사상자 수
- 1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12 가사가병반무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안
- 13 언어박담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1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15 사모시생아건강과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 0 1 7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다양한 가족	1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일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가정관리 및 가족 돌봄	
가족 갈등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조이혼율	조혼인율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가족지원서비스	의사상자 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가사간병방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인가구

Single-person household

지표 정의

1인가구란 일반가구 중 1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집계된 1인으로 구성된 가구 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구의 규모는 축소되어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27.9%를 차지하여 처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자치하였다. 1995년 164만 가구였던 1인가구는 2015년에 520만 가구로 약 3.2배 증가하였으며,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전환되어 1년 주기로 처음 조사된 2016년에도 약 540만 가구(27.9%)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장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에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발표한 장래가구추계(2017)에 따르면 1인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에는 약 764만 가구, 2045년에는 약 81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 1인가구의 수가 남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 2016년 남성 1인가구 수는 약 268만 가구인 반면 여성 1인가구 수는 약 272만 가구로 나타났다. 여성 1인가구 중에는 70세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고, 남성 1인가구의 경우 30~39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1인가구는 만혼 및 비혼으로 인한 미혼 독신가구 증가,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단독가구 증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구 규모의 축소 경향은 전통적으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을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구 형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	2015	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2015	2016	1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2	2017	5년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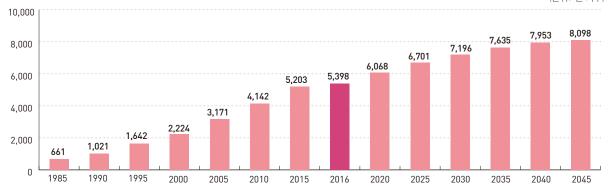
1985년 처음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약 66만 가구였던 1인가구는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처음 시행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약 520만 가구로 약 8배 증가하였으며, 등록 센서스 방식에 의해 1년 주기로 처음 발표된 2016년에는 약 540만 가구로 그 비중이 27.9%까지 증가하였다. 1인가구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라 1인가구 규모와 비중의 변화 추이를 매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가구 현황 및 특성(보도자료), 2012.12.11

그림 1-1 연도별 1인가구 수 (1985~2045)

(단위: 천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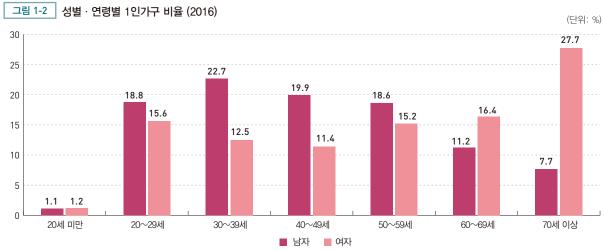
- 주: 1) 1985~2016년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며 2020~2045년은 장래가구추계에서 발표된 1인 가구 추계임.
- 2) 2010년까지는 전통적 현장조사 방식의 집계결과이며, 2015년도와 2016년도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 센서스 방식의 집계결과임.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1, 27. 인출).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7 (http://kosis.kr 에서 2017. 11, 27. 인출)

표 1-1 연도별 · 성별 가구유형 및 1인가구 현황

(단위: 천 가구)

	0=0 22 =	_		(단위: 전 기구)
	구분	일반가구	1인가구	1인가구 비율 (%)
	전체	14,312	2,224	15.5
2000	남자	11,659	945	8.1
	여자	2,653	1,279	48.2
	전체	15,887	3,171	20.0
2005	남자	12,402	1,418	11.4
	여자	3,485	1,753	50.3
	전체	17,339	4,142	23.9
2010	남자	12,842	1,924	15.0
	여자	4,497	2,218	49.3
	전체	19,111	5,203	27.2
2015	남자	13,461	2,593	19.3
	여자	5,650	2,610	46.2
	전체	19,368	5,398	27.9
2016	남자	13,565	2,676	19.7
	여자	5,803	2,722	46.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1. 27. 인출)



자료: 통계청, 2016 인구주택총조사, 2017 (http://kosis.kr 에서 2017. 11. 29. 인출)

노인가구

Elderly household

지표 정의

노인인구 비율(인구 고령화 비율)은 전체 인구 수 대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수의 비율로, 인구 고령화의 정도 와 변화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노인가구란 가구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가구형태별 노인가구 비율 = - 65세 이상 전체 노인 수

• 조손가구 수 =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 및 조부 또는 조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 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규모는 2015년 등록 센서스 전환 이후 1년 주기로 처음 발표된 2016년에 6,775천 명(13.6%)으로, 2015년 6,569천 명(13.2%)보다 약 206천 명 증가하였으며노인인구 비율 역시 0.4%p 증가하여 UN이 정한 고령사회(aged society)의 기준인 14%에 근접하였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평균수명 차이로 인해 여성노인이 3,912천 명(57.7%)으로 남성노인 2,863천 명(42.3%)보다 많지만, 성별에 따른 노인인구의 차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노인실태조사가 수행된 2014년 기준으로 가구형태별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44.5%)이며, 그 다음으로 자녀동거가구 (28.4%), 노인독거가구(23.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 노인인구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노인독거(노인 단독) 또는 노인부부와 같이 가구원이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속한 노인의 비중에 있어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4년에 전체 노인인구 중 67.5%로 1994년 약 40%, 2004년 약 5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는 2010년 51,159가구에서 2015년 43,314가 구, 2016년 42,819가구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별도로 분류되어 조사된 조부 또는 조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 수는 2016년 66,422 가구로 작년에 비해 3,375가구 감소하였으나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수에 비해서는 항상 그 수가 높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	2015	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	2015	2016	1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1994	2014	3년

Checkn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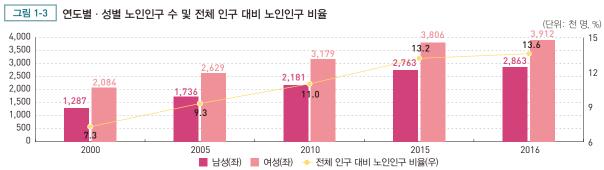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와 노인가구의 규모 및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 비율(인구고령화 비율) 역시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매년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노인가구 형태 중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와 같이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와 조손가구는 사회적 위험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표 1-2 연도별 · 성별 노인인구 수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율

(단위: 천명,%)

연도	노인 계	전체인구		성별						
신포	(천 명)	대비 비율 (%)	남성 노인 (천 명)	전체인구 대비 비율 (%)	여성 노인(천 명)	전체인구 대비 비율 (%)				
2000	3,372	7.3	1,287	38.2	2,084	61.8				
2005	4,365	9.3	1,736	39.8	2,629	60.2				
2010	5,360	11.0	2,181	40.5	3,179	59.5				
2015	6,569	13.2	2,763	41.8	3,806	58.2				
2016	6,775	13.6	2,863	42.3	3,912	57.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1. 27. 인출)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1. 27. 인출)

표 1-3 일반특성별 · 가구형태별 노인가구 비중 (2014)

(단위: %)

						(- 11 - 70)
7	구분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가구	계
합	계	23.0	44.5	28.4	4.0	100.0
성	남자	10.0	61.4	24.6	4.0	100.0
8	여자	32.3	32.5	31.2	4.0	100.0
	65~69세	14.5	51.7	28.5	5.2	100.0
	70~74세	20.9	48.0	27.2	4.0	100.0
연령	75~79세	27.7	44.3	24.8	3.1	100.0
	80~84세	35.5	33.9	27.9	2.7	100.0
	85세 이상	32.2	21.8	42.8	3.2	100.0
TICH	동부	21.9	43.5	30.4	4.2	100.0
지역	읍 · 면부	26.8	48.0	21.8	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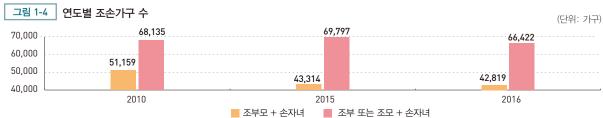
주: 노인가구는 노인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노인독거가구(노인단독가구), 부부 중 1인 이상이 노인인 노인부부가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 동거가구, 그 외의 기타 다양한 가구형태로 구분하여 파악되며, 노인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대비 가구형태별 응답 노인 수의 비율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2015

표 1-4 연도별 · 가구형태별 노인가구 비중

(단위: %)

연 도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가구	계
1994	13.4	26.8	54.7	4.9	100.0
2004	20.6	34.4	38.6	4.4	100.0
2014	23.0	44.5	28.4	4.0	100.0

주: 노인가구는 노인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노인독거가구(노인단독가구), 부부 중 1인 이상이 노인인 노인부부가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 동거가구, 그 외의 기 타 다양한 가구형태로 구분하여 파악되며, 노인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대비 가구형태별 응답 노인 수의 비율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주: 조부모와 손자녀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으며, 손자녀는 미혼자녀만 해당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18.01.22 인출)

Single-parent household

지표 정의

한부모가구는 통계청이 집계하는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주말부부 등 포함)를 의미 한다.

측정 산식

• 「장래가구추계」를 통해 집계된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수

유의사항

장래가구추계에 따른 한부모가구는 부 또는 모와 함께 사는 한부모 자녀 가구(분거가족 포함)을 의미하며, 통계청 인 구주택총조사에 따른 한부모가구 개념(한부모의 법적인 혼인상태가 미혼, 이혼 및 사별이며 미혼자녀와 함께 거주하 고 있는 일반가구)과 상이함에 유의한다.

한부모가구의 규모는 2005년 1,386천 가구(8,6%)로 집계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에 전년대비 37천 가구 증가한 2.127천 가구(10.9%)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 가족지원법 보호대상(2012년 이후)을 의미하는 저소득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 는 만 22세 미만을 의미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 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소득한부모가족은 2012년 179천 가구에서 2017년 181 천 가구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인 한부모 가족의 수는 2012년 131천 가구에서 2017년 58천 가구로 감소하였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2	2017	5년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 (내부자료)	-	2017	1년

Checkpoint 전체 한부모가구 수는 2012년에 비하여 2017년에 331천 가구 증가하였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 족은 2012년에 비해 73천 가구 감소한 반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다소 증가하였다. 현행 저소득한부모가 족 기준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으로 빈곤에 노출되기 쉽고 이는 곧 이들의 자녀양육 및 교육 과 직결되므로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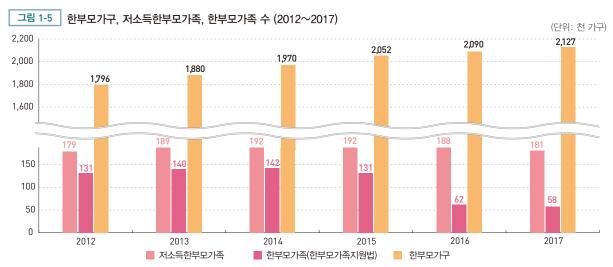
• 여성가족부, 2017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17

표 1-5 전체가구, 한부모가구, 저소득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수 (2012~2017)

(단위: 천 가구, %)

МE	저-비기 그	한부 <u>-</u>	2가구	저소득	SLH미기조
연도	전체가구	계	전체가구 대비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2012	18,119	1,796	9.9	179	131
2013	18,388	1,880	10.2	189	140
2014	18,705	1,970	10.5	192	142
2015	19,013	2,052	10.8	192	131
2016	19,285	2,090	10.8	188	62
2017	19,524	2,127	10.9	181	58

- 주: 1) 한부모가구는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른 부 또는 모와 함께 사는 한부모 자녀 가구(분거가족 포함)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대상인 한부모가족과는 상이한 개념임
 - 2) 저소득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보장결정가구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의미함.
 - 3)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동시 보장받는 가구를 제외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의미함.
 - 4)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과 한부모가족 현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도말 기준 자료임.
-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7(http://kosis.kr에서 2018,01.22 인출),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 (내부자료), 2017



- 주: 1) 한부모가구는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른 부 또는 모와 함께 사는 한부모 자녀 가구(분거가족 포함)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대상인 한부모가족과는 상이한 개념임.
 - 2) 저소득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보장결정가구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의미함.
 - 3)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동시 보장받는 가구를 제외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의미함.
 - 4)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과 한부모가족 현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도말 기준 자료임.
-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7 (http://kosis.kr에서 2018.01.22 인출).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 (내부자료), 2017

다문화가구

Multicultural household

지표 정의

다문화가구는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결혼이민자가 존재하는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1.4.4. 개정, '11.10.5 시행)으로 인하여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인지, 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된다.

측정 산식

• 귀화 등 출생 이외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혼인으로 이루어지거 나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의 수

유의사항

-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구성별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이며, 외국인주민 자녀 수와 지역별 통계는 외국인 주민 현황 기준(행정안전부, 각 연도)임에 유의한다.
- 기존 혼인 귀화자와 기타 귀화자로 구분되던 한국 국적 취득자의 경우, 2016년도 통계기준이 변경되어 세부 구분이 삭제되었음에 유의한다.

결혼이민자 등의 증가로 다문화가구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교육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1.10.5 시행)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인지, 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되게 되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다문화가구는 2016년 316천 가구로 2015년(299천 가구)에 비해약 5.6% 증가하였으며, 내국인(출생)+외국인(결혼이민자)가구는 116천 가구이며 가구원은 395천 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내국인(출생)+외국인(결혼이민자)가구는 9천 가구(8.1%), 내국인(귀화)가구는 6천 가구(14.8%) 증가하였고, 반면에 내국인(출생)+다문화자녀가구는 5천 가구(-13.3%) 감소하였다.

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국적 취득자)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7년 142,015명, 2010년 221,548명, 2015년 305,446명(2015.1월 기준), 2016년 318,948명(2016.11월 기준)으로 대체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주민 자녀 수 또한 2007년 44,258명에서 2016년 201,333명으로 지난 9년간 약 4.5배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06	2016	1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	2015	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2015	2016	1년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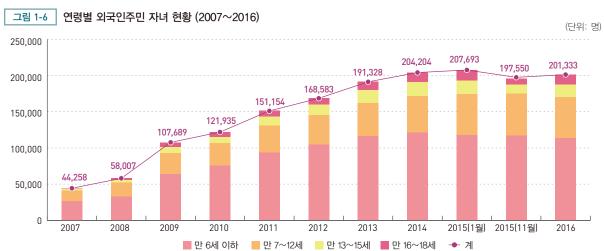
연도별로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는 대체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2007년 87,964명에서 2016년 159,501명으로 증가했고, 국적취득자도 2007년 54,051명에서 2016년 159,447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표 1-6 가구구성별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 (201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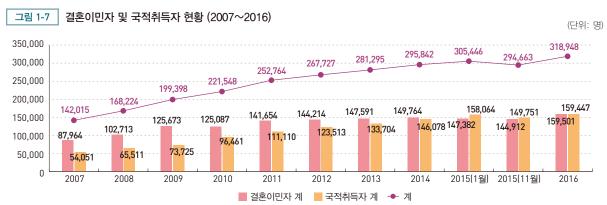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천 명, %)

구분	2015 가구(A) (천 가구)	가구원 (천 명)	2016 가구(B) (천 가구)	가구원 (천 명)	증감(B-A) (천 가구)	증감율 (%)
내국인(귀화 등)	41	63	47	85	6	14.8
내국인(출생) + 내국인(귀화)	78	281	78	288	0	0.1
내국인(출생) + 외국인(결혼이민자)	107	349	116	395	9	8.1
내국인(출생) + 다문화 자녀	38	121	33	91	-5	-13.3
내국인(귀화) + 외국인(결혼이민자)	10	30	14	45	4	37.3
기타	25	44	28	60	3	13.0
합 계	299	888	316	963	17	5.6

- 주: 1) 내국인(귀화 등) : 국적법상 출생 이외의 방법(귀화, 인지 등)에 의한 국적 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
 - 2) 내국인(출생) : 국적법상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
 - 3) 내국인(출생) + 다문화 자녀: 내국인(출생) 가구주와 다문화 자녀
 - 4) 기타: 결혼이민자 + 기타 외국인, 결혼이민자 + 다문화 자녀 등 그 외 다문화가구
- 자료: 통계청, 2016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 (2017,08,31,)



- 주: 1) 외국인주민 자녀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를 지칭함.
 - 2) 2016년 외국인주민 자녀는 201,333명으로 귀화하였거나 아직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가 9,874명(4.9%),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국내출생 자녀가 191,459명(95,1%)임.
 - 3)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는 2016년부터 추가됨.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01.22.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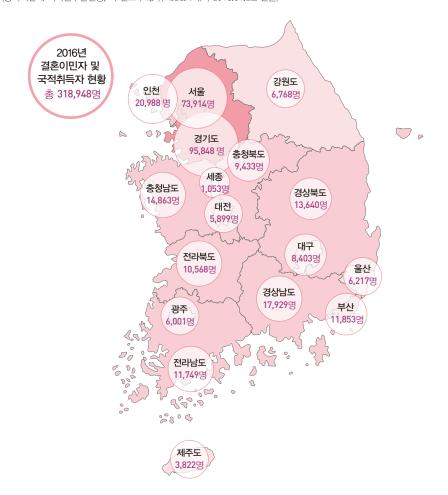


- 주: 1) '16년 통계 기준 변경: 종전 혼인귀화자와 기타귀화자로 나뉘어있던 한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세부구분 삭제됨.(기타귀화자 중에도 한국인과 결혼한 귀화자가 많이 포함되므로 구별할 실익이 적음)
- 2)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11.4.4,개정, '11.10.05 시행)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인지, 귀화)도 다문화 가족에 포함됨. 3) 2015.11.1. 기준부터 조사방식이 전통적 현장조사방식에서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변경. 조사시점 기준 전후 3개월 중 91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01.22. 인출)

									,		(セカ・3)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월)	2015(11월)	2016
합계	142,015	168,224	199,398	221,548	252,764	267,727	281,295	295,842	305,446	294,663	318,948
서울	45,601	49,480	57,281	63,364	69,694	70,381	71,364	73,801	74,629	68,093	73,914
부산	6,556	7,654	7,973	8,314	9,705	10,305	10,915	11,529	11,720	11,380	11,853
대구	3,980	4,666	5,170	5,599	6,261	6,664	7,131	7,580	7,827	7,743	8,403
인천	8,059	9,659	11,872	13,235	14,939	16,029	17,026	18,222	19,397	18,552	20,988
광주	2,548	2,909	3,384	3,705	4,283	4,590	4,960	5,336	5,540	5,603	6,001
대전	2,630	3,175	3,849	4,117	4,758	5,123	5,337	5,575	5,750	5,610	5,899
울산	2,183	2,604	3,301	3,755	4,225	4,561	5,049	5,497	5,750	5,759	6,217
세종	-	-	-	-	-	-	653	650	741	894	1,053
경기	35,461	46,837	53,998	61,447	71,174	77,128	81,731	86,337	89,877	86,327	95,848
강원	3,357	3,764	4,449	4,809	5,793	6,103	6,381	6,590	6,697	6,571	6,768
충북	3,881	4,307	5,165	6,023	6,982	7,417	7,941	8,370	8,736	9,126	9,433
충남	5,351	5,970	8,614	9,544	11,294	12,348	12,649	13,460	14,019	14,035	14,863
전북	4,479	5,042	6,940	7,197	8,523	9,068	9,626	9,951	10,291	10,237	10,568
전남	5,106	5,982	7,452	8,142	9,489	10,115	10,657	11,129	11,316	11,502	11,749
경북	5,558	6,719	8,333	9,232	10,461	11,067	11,856	12,620	13,045	12,986	13,640
경남	6,301	8,216	10,107	11,345	13,062	14,443	15,352	16,217	16,836	16,799	17,929
제주	964	1,240	1,510	1,720	2,121	2,385	2,667	2,978	3,275	3,446	3,822

주: 1) 매년 1.1일자 기준이었던 통계시점이 '15년부터 매년 11.1일로 변경됨.

2) 2015.11.1. 기준부터 조사방식이 전통적 현장조사방식에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변경, 조사시점 기준 전후 3개월 중 91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01.22. 인출)



북한이탈주민

North Korean defectors

04-1

지표 정의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이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 수

유의사항

현재 북한이탈주민가구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구 수를 파악하는 대신 가구원인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를 제시함. 해당 연도의 통계는 국내에 입국한 시점을 기준으로 익년도 6월 말에 작성됨(입국조사 과정을 거쳐 북한이탈주민임이 확인되는데 약 4~5개월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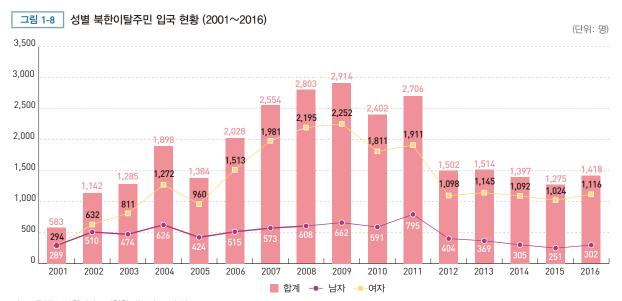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를 계기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에는 한 해 동안 2,000명을 초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성별로 보면 2001년을 제외하고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많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04년부터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벌어졌으며, 2016년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3배 이상까지 벌어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 30대, 50대, 10대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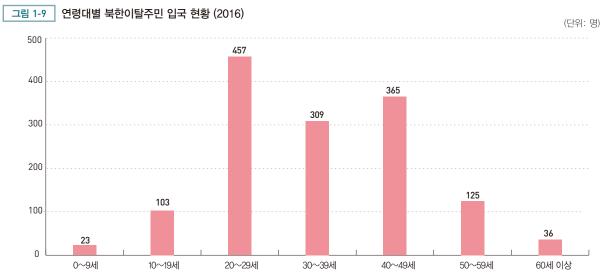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현황(내부자료)	1998	2016	1년

Checknoint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 2천 9백여 명으로 최근 1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2011년까지 2천 명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2012년 1천 5백여 명으로 급감한 이후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5명, 2016년 1,418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현황 내부자료, 각 연도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현황 내부자료, 2017

05 "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receipients of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benefits

지표 정의

출산전후휴직을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처음으로 지급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출산전후휴직을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는 2006년(48,972명)부터 2012년(93,397명)까지 꾸준하게 증가한 이후 2013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다가 2015년 95,257명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2016년 현재 90,467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를 살펴 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수급자 비중은 감소하고 100인 미만 사업장의 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2016년까지 100인 미만 사업장의 수급자가 감소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비중이 증가하여 2016년 100인 이상 사업자에서의 수급자 비중은 53,6%, 100인 미만 사업장의 수급자 비중은 46,3%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997	2016	1개월

Checkpoint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는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여 2006년 48,972명에서 2016년 90,467명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6년에는 2015년과 비교하여 4,790명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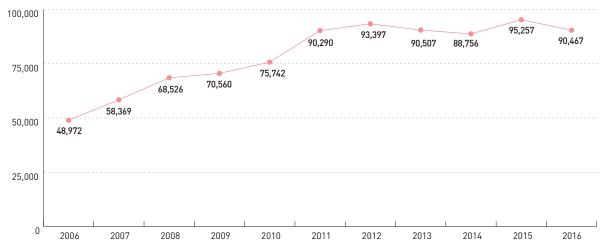
참고문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현황(DB),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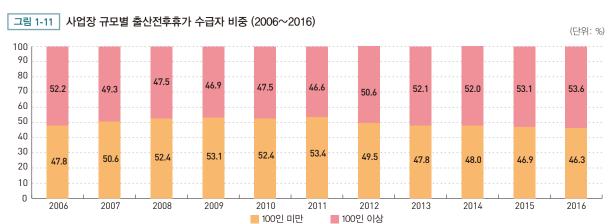
^{* &#}x27;산전후휴가'라는 명칭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도입된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임신·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보장된 제도이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후 90일(다태아 임신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제 도는 임신 중인 여성이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대상이 된다.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분(450만 원 한도, 다태아 120일분 600만 원 한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그림 1-10 출산전후휴가급여 신규 수급자 수 (2006~2016)

(단위: 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receipients of childcare leave benefits

지표 정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급여를 처음으로 지급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

유의사항

육아휴직자 수의 중복을 배제하기 위하여 전년도부터 당해 연도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 는 전년도 휴직자로 정의하고 당해 연도 휴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육아휴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현재 89,795명으로 2006년 13,672명과 비교하여 6배 이상 증가하였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는 여성 육아휴직자의 수에 비해 매우 낮으나 점차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전년도 대비 1,000명 이상 증가하여 2014년 3,421명, 2015년 4,874명에 이른다. 특히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2,700명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여 7,616명에 이른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11년 이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과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의 격차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997	2016	1개월

Checkpoint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0배 이상으로 육아휴직 이용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는 크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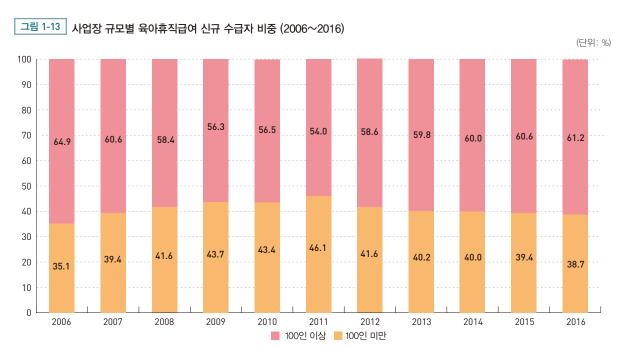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현황(DB), 각 연도

^{*}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 19조에 1항에 의해 규정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한다. 육아휴직급여는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시작 일부터 3개월까지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4개월째부터 휴직 종료일까지 상한액 월 10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의 범위 안에서 통상임금의 40%에 해당되는 급여이다. 육아휴직급여 중 75%는 매월 지급되지만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근무지로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게 된다. 근로자는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 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급여 특례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상한액 월 150만 원의 범위에서 100% 지급받는다.

그림 1-12 성별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 수 (2006~2016)

(단위: 명) 90,000 82,498 82,179 80,000 73,410 67,325 70,000 62,281 56,734 60,000 50,000 40,914 40,000 34,898 28,790 30,000 20,875 20,000 7,616 10,000 4,874 3,421 1,790 2,293 1,402 819 200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 2007 2008 2009 2015 ■ 남자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07

가정관리 및 가족 돌봄

Housework and Family Care

지표 정의

가정관리 및 가족·가구원 돌봄은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구분	1999~2009	2014
 가정 관리		음식준비, 가정용 섬유 및 신발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 용품 관리, 차량관리, 애완동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봄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함께 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함께 사는 만 10세 이상 초중고생 돌보기, 함께 사는 배우자 돌보기, 함께 사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함께 사는 그 외 가구원 돌보기, 함께 살지 않은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함께 살지 않은 그 외 가족 돌보기

측정 산식

• 전체 평균시간 : 전체 집계대상자(특정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 포함)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특정행동을 하루 24시간 중 10분 이상 한 사람(행위자)의 비율

• 행위자 평균시간 : 특정행동을 한 사람(행위자)들의 평균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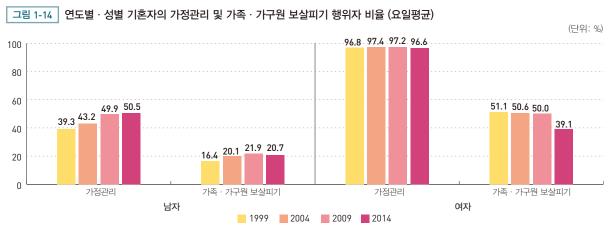
2014년 생활시간 조사는 가구형태별로 가구를 구분(맞벌이, 외벌이(남편), 외벌이(아내))하여 가정관리 및 가족·가구원 돌봄에 대한 행위자 비율 및 사용시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정관리에 대한 요일 평균 사용시간의 경우, 외벌이(남편) 가구의 아내가 가장 많았고, 맞벌이가구와 외벌이(아내)의 가정관리 시간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우 자신의 취업여부만이 가정관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볼 때, 부부의 취업 상태와 별개로 가정관리와 가족·가구원 돌봄에 있어서 아내의 행위자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고 이는 가정 내에서의 양성평등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1999	2014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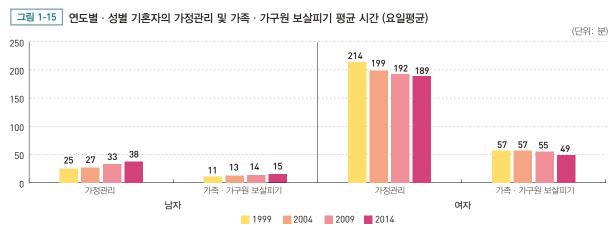
Checknoin

가정관리와 가족 · 가구원 돌봄에 있어서 기혼여성은 기혼남성과 비교하여 행위자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행위 시간도 절대적으로 많다. 다만, 남성의 경우 가정관리 행위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 가족 · 가구원 보살피기 행위자 비율이 감소하는 변화를 보인다.



주: 20세 이상 인구의 응답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01.22. 인출)



주: 20세 이상 인구의 응답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01.22. 인출)

표 1-8 가구유형별·성별 가정관리 및 가족·가구원 보살피기 요일 평균 시간 및 행위자 비율 (2	2014)
----------------------------------------------------------	-------

(단위: 시간:분,%)

기기이원병	ᆌ드너쿠버	요일	명균 시간(시간	:분)	요일 평균 행위자 비율(%)		
가구유형별	행 동분 류별	평균	남편	아내	평균	남편	아내
맞벌이가구	가정관리	1:31	0:28	2:38	70.7	46.0	97.1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24	0:13	0:35	30.0	19.9	40.8
OIHOI/나대/기기	가정관리	2:15	0:27	4:13	69.0	41.4	99.3
외벌이(남편)가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1:01	0:19	1:47	44.1	26.5	63.4
외벌이(아내)가구	가정관리	1:59	1:26	2:25	87.3	78.6	94.0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14	0:13	0:14	19.4	15.9	22.2

주: 평균시간과 비율은 초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상위분류의 값이 하위 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2014년도 생활시간 조사보고서, 2015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Rate of Domestic violence and Reporting rate

지표 정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지난 1년간 전체 가구 중 가정폭력(부부폭력)이 발생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가정폭력 신고율은 가정폭력 발생 건수 중에서 경찰에 신고한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가정폭력은 가족 해체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본 지표를 통해 여성,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조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우리나라 가정폭력 발생률은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진 않는다. 2004년 44.6%였던 가정폭력 발생률은 2007년 40.3%로 감소했다가 2010년 53.8%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여 2013년 45.5%, 2016년 현재 41.5%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신고율을 살펴보면, 폭력 피해자인 아내가 신고한 비율이 폭력 피해자인 남편이 신고한 비율보다 약 2배~7배 더 높다. 가정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3년까지 정서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방임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조사에서는 방임 대신 '상대방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의심하는 등의 폭력 유형'인 통제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37.7%로 가정폭력의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 연도에 관계없이 조사대상의 40% 이상의 부부가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 교육이필요하며, 가정폭력 발생률을 감안했을 때 신고율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통한 보호에 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2004	2016	3년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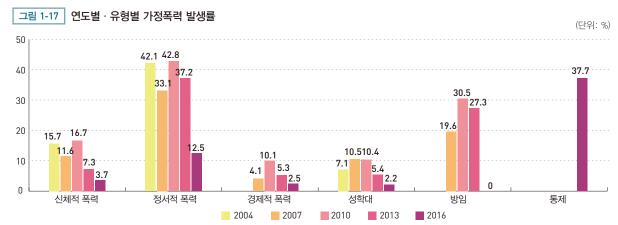
가정폭력 발생률을 보면 2010년 53.8%로 비교기간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6년에는 41.5%로 나타 났다. 경찰신고율의 경우 비록 2016년 아내의 경찰신고율은 2.8%로 2013년 대비 0.7%p 증가하였으나, 2010년 아내의 경찰신고율은 8.3%, 남편의 경우는 2.9%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가 정폭력의 예방뿐만 아니라 신고를 통한 보호에 대한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그림 1-16 연도별 가정폭력 발생률 및 경찰신고율

(단위: %)



- 주: 1) 2004년 폭력 발생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만을 포함한 개념이며, 2007년, 2010년, 2013년에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을 포함한 개념임.
- 2) 2010년 조사에서 '상대방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의심하는 등의 폭력 유형'인 통제 발생률은 제외함. 3) 2016년 조사에서는 부부폭력률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 통제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이며, '방임' 대신이 '통제' 발생률을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각 연도



- 주: 1) 중복응답이 반영된 값임.
 - 2) 신체적 폭력은 경한 폭력과 중한 폭력을 모두 포함함.
 - 3) 2004년 폭력 발생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만을 포함한 개념이며, 2007년, 2010년, 2013년에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을 포함한 개념임.
 - 4) 2010년 조사에서 '상대방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의심하는 등의 폭력 유형'인 통제 발생률은 제외함.
- 5) 2016년 조사에서는 '방임' 대신이 '통제' 발생률을 포함함.
- 자료: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각 연도

09 H H

조이혼율

Crude divorce rate

지표 정의

1년동안 신고한 총 이혼 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7월 1일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 당 이혼 건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특정 1년간의 총 이혼 건수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 1,000

유의사항

조이혼율은 특정 연도의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의 비율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이혼율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은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이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인구(2010년 이후는 거주 불명 등록자 제외)를 사용한다. 이혼 통계자료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동안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한 이혼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2005년 2.6전에서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0.5건 감소한 2.1건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그 동안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났지만 최근 들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녀 모두 상승하여 남자의 경우 2005년에 42.1세에서, 2015년에 46.9세로 10년간 4.8세 정도 상승하였으며, 2016년에도 47.2세로 다소 증가하였다. 여자의 경우 역시 2005년 38.6세에서 2015년 43.3세로 10년간 4.7세 상승하였으며, 2016년 43.6세로 증가하였다. 한편,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은 2016년 47.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16	1년

Checknoint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6년 2.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 자녀 유무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이혼숙려제도의 도입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예정)부부를 대상으로 숙려기간 동안 '자녀양육안내' 등과 같은 부모교육이 실시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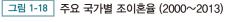
• 통계청, 2016년 혼인 · 이혼 통계 보도자료, 2017

표 1-9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 (2005~2016)

(단위: 인구 천 명당 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이혼 건수(천 건)	128	124.5	124.1	116.5	124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107.3
조이혼율	2.6	2.5	2.5	2.4	2.5	2.3	2.3	2.3	2.3	2.3	2.1	2.1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01.22. 인출)



(단위: 인구 천 명당 건)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보고서, 각 연도

표 1-10 성별 평균 이혼연령 (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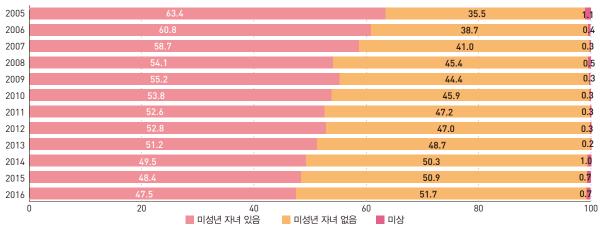
(단위: 세)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남자	42.1	42.6	43.2	44.3	44.5	45.0	45.4	45.9	46.2	46.5	46.9	47.2
여자	38.6	39.0	39.5	40.5	40.7	41.1	41.5	42.0	42.4	42.8	43.3	43.6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01.22. 인출)

그림 1-19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구성비 (2005~2016)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01.22. 인출)

09-1

조혼인율

Crude marriage rate

지표 정의

지난 1년 동안 발생된 혼인 건수를 해당연도 연앙인구(7월 1일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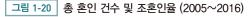
측정 산식

특정 1년간의 총 혼인 건수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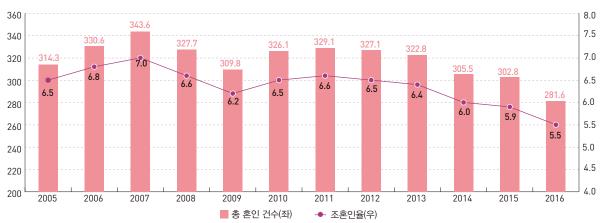
유의사항

혼인 통계자료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년 동안(1.1 \sim 12.31) 전국 시 \cdot 구청 및 읍 \cdot 면 \cdot 동 사무소에 신고한 혼인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이므로,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혼인 건수는 2005년 약 314천 건에서 2015년 약 303천 건으로 10년간 1만 건 이상 감소했으며, 2016년에 약 282천 건으로 최소치를 기록하였다.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 역시 최근들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2016년 조혼인율은 5.5건으로 2015년 5.9건보다도 0.4건 감소하여 공식 통계가 작성(1970년)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최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만혼과 비혼 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01.22.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16	1년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0**9-2**

Number of divorces with a foreign spouse

지표 정의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유의사항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 즉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의 이혼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전체 이혼 중에 외국인과의 이혼건수 및 비율은 2005년 4.2건(3.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7.7건(7.1%)로 나타났다. 외국인 이혼 중에는 한국 남성과 외국여성의 이혼 비중이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이혼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11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2005~2016)

(단위: 천 건,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이혼 건수(천 건)	128.0	124.5	124.1	116.5	124.0	116.9	114.3	114.3	109.2	107.3	109.2	107.3
	총 이혼 중 비중 (%)	3.3	4.9	6.7	9.4	9.3	9.5	10.1	9.5	9.1	8.4	7.5	7.1
오	미국인과의 이혼(천 건)	4.2	6.1	8.3	11.0	11.5	11.1	11.5	10.9	10.5	9.8	8.2	7.7
	한국남성 + 외국여성	2.4	3.9	5.6	7.9	8.2	7.9	8.3	7.9	7.6	7.0	5.7	5.6
	한국여성 + 외국남성	1.8	2.2	2.7	3.1	3.2	3.2	3.1	3.0	2.9	2.8	2.5	2.1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1.22.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16	1년

Checkpoint

2010년을 제외하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던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2011년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2016년 7.7건(전체 이혼 중 7.1%)로 감소하였다. 특히 전체 이혼 중의 비중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다문화가구 전체의 이혼 건수를 모두 포함하지 않고, 다문화가구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0

의사상자 수

Number of persons killed or wounded for a righteous cause

지표 정의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로써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인정절차를 거쳐 최종 의사상자로 선정된 자를 의미한다. 타인의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구하다가 사망한 자는 의사자, 부상한 자는 의상자로 선정되며, 의사자는 유족이 지원 대상이 되며 의상자는 자신과 가족이 지원대상이 되고 상해 정도에 따라 1~9급으로 세분화된다.

측정 산식

- 의사상자 보상금과 기타 지원을 받은 사람의 수
 - ※ 보상금: 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일시금 형태로 제공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책정·고시한 금액
 - ※ 기타 지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준하는 지원이 제공되는데,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유족들에게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제공되고 이 외에도 낮은 급수의 의상자(7급 이하)의 경우 취업 지원 등의 서비 스 제공

구분	지원금액	기타 지원					
의사자	'16년 기준 202,913천 원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 기초생활대상자와 동등한 자격 부여					
의상자	급수(1~9급)에 따라 차등지급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 기초생활대상자와 동등한 자격 부여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의사상자 인정자 수를 살펴본 결과 2006년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가 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6년에는 의사자가 9명(56.25%), 의상자가 7명 (43.75%)으로 총 16명이 인정되었다. 2006년 이후 의사상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6년 의사상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DW 상에 집계된 의사상자를 사고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익사사고로 인한 의사상자가 5명(31.25%), 범죄사고 1명(6.25%), 교통사고 6명(37.5%), 화재사고 2명(12.5%), 기타 2명(12.5%)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의사상자 지원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의사상자는 16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자와 의상자로 구분해보면 의사자의 경우 2015년 11명에서 2016년 9명으로 2명 감소했으며, 의상자는 2015년 9명에서 2016년 7명으로 2명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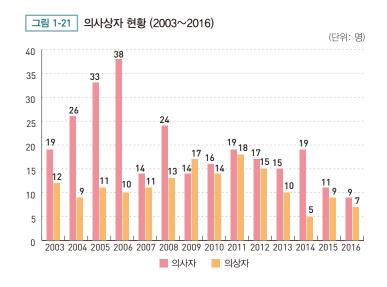




표 1-12 의사상자 현황 (2003~2016)

(단위: 명,%)

연도	의시	사자	의성	상자	7
전도	명	비율	명	비율	계
2003	19	61.3	12	38.7	31
2004	26	74.3	9	25.7	35
2005	33	75.0	11	25.0	44
2006	38	79.2	10	20.8	48
2007	14	56.0	11	44.0	25
2008	25	65.8	13	34.2	38
2009	14	45.2	17	54.8	31
2010	17	54.8	14	45.2	31
2011	19	51.4	18	48.6	37
2012	17	53.1	15	46.9	32
2013	15	60.0	10	40.0	25
2014	19	79.2	5	20.8	24
2015	11	55.0	9	45.0	20
2016	9	56.3	7	43.8	16

그림 1-23 사고유형별 의사상자 비율 (2016)

(단위: %)



표 1-13 사고유형별 의사상자 수 (2016)

(단위: 명,%)

741	익사사고		범죄	사고	교통사고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	5	31.25	1	6.25	6	37.50	
계	화재사고		수재, 조난		기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	2	12.50	0	0	2	12.50	

11 H H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Comprehensive Elderly Care Services: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독거노인 또는 고령 부부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등을 고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1) 방문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등급에 해당하고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 (2)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노인가구 중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 의사진단서가 있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의 가구, (3)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가구

• 지원금액: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36시간)	월 193,200 ~ 352,800원	무료 ~ 월 64,000원	
주간보호서비스(월 9일 또는 12일)	글 193,200 19 302,000전	구뇨 '~ 걸 04,000년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월 193,200 ~ 352,800원	무료 ~ 월 84,00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연 6일 범위 내)	일 29,880 ~ 36,380원	무료 ~ 일 6,500원	

2016년 1월에서 12월까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의 집행실태를 살펴 본 결과 경기도가 월평 균 이용자 수는 약 3,79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내었으며 연인원도 약 45,533명으로 나타 났다. 이용액도 경기도가 총 12,956,252천 원으로 가장 높은 이용액을 보였으며,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순으로 이용액이 높게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노인돌 <u>봄종</u> 합서비스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6	1년

Checkpoint

2016년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는 12월 말 기준 32,534명, 이용액은 9,818백만 원으로 전년도 (2015년 32,873명, 9,891백만 원)에 이어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액 비중은 자기부담금 6.3%, 정부지원금 93.7%로 2015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1-14 연도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이용자 수	34,897	32,873	32,534
이용액	10,428,219	9,891,669	9,818,997

표 1-15 시도별 · 월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2016)

(단위: 명)

												(L'TI. 6)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2,241	2,270	2,284	2,279	2,306	2,293	2,285	2,298	2,296	2,334	2,369	2,394
부산	2,201	2,194	2,181	2,144	2,149	2,101	2,088	2,068	2,067	2,083	2,093	2,096
대구	1,206	1,257	1,262	1,262	1,250	1,260	1,267	1,271	1,263	1,296	1,310	1,332
인천	1,135	1,151	1,141	1,124	1,146	1,167	1,159	1,147	1,150	1,174	1,173	1,202
광주	2,046	2,046	2,069	2,062	2,062	2,064	2,037	2,020	2,044	2,039	2,079	2,126
대전	846	836	843	815	801	798	782	766	748	788	809	842
울산	306	314	323	331	336	336	337	333	331	331	323	324
세종	64	64	63	63	63	63	61	62	56	53	52	52
경기	3,825	3,829	3,868	3,811	3,773	3,772	3,787	3,737	3,694	3,764	3,834	3,839
강원	1,847	1,857	1,878	1,890	1,912	1,904	1,885	1,867	1,882	1,867	1,846	1,864
충북	1,008	1,026	1,051	1,052	1,062	1,080	1,076	1,063	1,059	1,090	1,082	1,065
충남	1,787	1,815	1,859	1,866	1,885	1,882	1,838	1,794	1,798	1,767	1,736	1,705
전북	3,585	3,575	3,606	3,573	3,620	3,607	3,584	3,566	3,622	3,652	3,661	3,636
전남	3,771	3,717	3,790	3,763	3,792	3,760	3,715	3,649	3,610	3,644	3,623	3,635
경북	3,118	3,145	3,218	3,200	3,258	3,278	3,304	3,335	3,369	3,396	3,415	3,367
경남	2,938	2,897	2,916	2,912	2,909	2,869	2,842	2,773	2,703	2,689	2,752	2,718
제주	359	347	357	358	358	349	350	351	357	354	348	337
계	32,283	32,340	32,709	32,505	32,682	32,583	32,397	32,100	32,049	32,321	32,505	32,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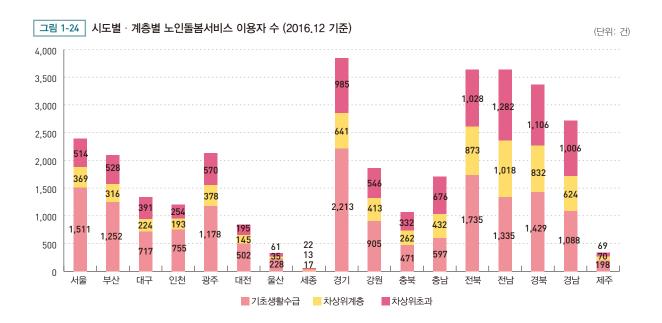
주: 기존의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였으나 2015년부터 2월~12월로 조정됨.

표 1-16 시도별 · 월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액 (2016)

(단위: 천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633,129	646,393	676,112	663,558	675,245	671,761	673,843	673,255	658,722	683,364	701,920	731,222
부산	645,952	633,345	657,472	637,176	637,475	623,280	623,153	621,261	599,976	619,487	623,138	647,623
대구	361,233	373,086	396,361	389,908	386,600	384,415	391,868	393,838	383,695	400,399	411,184	432,415
인천	316,937	313,776	327,795	314,355	322,655	325,762	329,104	324,032	314,766	330,049	338,664	358,954
광주	555,763	559,742	586,927	576,240	566,553	573,864	572,384	564,411	558,713	567,881	586,888	636,500
대전	256,589	255,270	263,826	251,919	249,900	247,293	243,638	239,566	227,389	245,671	258,710	269,681
울산	86,965	88,229	96,442	96,221	98,544	94,389	95,883	94,139	95,668	97,206	94,967	95,815
세종	19,825	19,331	19,972	20,129	20,350	19,605	19,723	18,943	16,248	16,489	16,106	17,263
경기	1,069,371	1,061,007	1,122,335	1,075,653	1,064,143	1,070,111	1,067,117	1,062,516	1,025,418	1,066,554	1,123,536	1,148,491
강원	494,077	487,957	529,014	514,289	522,007	521,767	521,438	523,320	495,934	518,155	521,037	546,267
충북	288,635	287,003	316,016	308,318	313,693	319,715	320,382	303,629	301,090	317,192	320,499	325,585
충남	535,203	540,514	582,875	577,254	585,212	584,119	569,576	557,894	543,665	530,597	522,188	526,152
전북	948,336	945,435	995,445	973,909	982,656	981,676	975,448	974,630	968,073	1,005,803	1,023,419	1,057,116
전남	1,019,102	1,015,300	1,095,856	1,059,988	1,052,853	1,060,933	1,044,264	1,027,040	985,650	1,020,175	1,018,078	1,057,944
경북	880,648	896,460	957,935	931,809	953,834	969,842	981,372	984,817	974,345	1,010,723	1,026,369	1,036,595
경남	841,619	826,537	876,958	857,064	855,241	846,500	840,193	819,608	771,917	796,887	809,176	831,765
제주	93,350	92,909	101,587	101,058	102,954	99,588	98,274	102,542	96,731	100,945	100,514	99,607
계	9,046,733	9,042,293	9,602,927	9,348,847	9,389,914	9,394,618	9,367,658	9,285,441	9,017,999	9,327,576	9,496,391	9,818,997

주: 단위 미만인 수는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 수치가 시도별 수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1-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An Overview of Comprehensive Elderly Care Services: Providing organization and provider

지표 정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그리고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당 서비스의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법령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조직과 인력구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제공인력도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 지표의 목적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단, 노인단기가사서비스,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았다).

측정 산식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연간 1회 이상 서비스 결제이력이 있는 제공기관 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연간 1회 이상 서비스 제공이력이 있는 제공인력 수

2016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전국 1,760개소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215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북 212개소, 경남 209개소, 전남 205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공인력은 전국 26,141명으로 집계되었다. 경기의 제공인력이 3,3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873명, 전남 2,669명, 서울 2,521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전국 평균 약 103.5개소로 서울, 경북, 경남, 전남, 경기, 전북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인력은 전국 평균 약 1,538명으로 경기, 경북, 전남, 서울, 경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공기관 대비 제공인력은 전국 평균 약 15명으로 세종, 강원,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부산, 대구, 충북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6	1년

Checkpoint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변화를 살펴 보면, 2015년 1,453개소, 15,839명에서 2016년 1,760개소, 26,141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7 연도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수

(단위: 개소, 명)

78		제공기관 수		제공인력 수				
구분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계	1,358	1,453	1,760	15,554	15,839	26,141		

표 1-18 월별 · 시도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수 (2016)

(단위: 개소)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215	169	174	173	172	173	175	182	184	184	191	196	197
부산	92	81	83	82	80	82	82	84	86	84	85	84	87
대구	74	58	61	60	59	62	63	63	61	63	63	67	67
인천	50	44	43	43	43	44	45	45	44	45	45	45	48
광주	98	79	80	81	79	79	83	86	87	90	89	86	85
대전	63	53	52	53	53	53	53	53	53	53	52	54	54
울산	18	15	16	16	17	17	16	17	17	17	17	17	16
세종	3	3	3	3	3	3	3	3	3	3	3	3	3
경기	177	152	153	153	154	154	157	156	160	159	159	164	168
강원	67	60	60	61	63	64	65	65	65	65	65	64	64
충북	65	51	52	53	53	54	56	56	56	57	59	59	60
충남	80	66	68	68	73	72	73	76	76	76	75	76	75
전북	106	99	99	98	98	99	99	99	99	102	103	103	101
전남	205	168	170	170	175	177	181	181	181	184	182	185	186
경북	212	162	162	172	175	178	179	185	187	191	195	195	194
경남	209	167	167	166	169	172	174	180	177	176	180	177	180
제주	26	24	24	25	24	23	21	21	21	21	20	19	20
합계	1,760	1,451	1,467	1,477	1,490	1,506	1,525	1,552	1,557	1,570	1,583	1,594	1,605

주: 월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수는 1건 이상 결제이력이 있는 기관수이며, 합계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중복을 제외한 전체 제공기관수의 합임.

표 1-19 월별 · 시도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 수 (2016)

(단위: 명)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2,521	1,282	1,310	1,338	1,359	1,376	1,375	1,383	1,405	1,386	1,440	1,478	1,479
부산	1,514	971	967	969	945	969	939	933	924	927	938	950	963
대구	1,211	629	666	688	691	679	690	694	714	704	721	738	749
인천	954	544	552	554	567	576	585	572	574	570	590	588	608
광주	1,444	898	903	913	901	913	930	927	949	940	935	955	986
대전	854	526	517	520	515	503	500	503	488	478	497	507	539
울산	252	147	152	163	164	167	168	169	173	167	167	170	168
세종	60	44	45	43	44	44	44	42	45	41	37	37	37
경기	3,370	1,992	1,992	2,013	2,011	2,006	2,012	2,008	1,990	1,969	2,004	2,041	2,050
강원	1,367	826	819	835	844	860	859	858	841	835	849	842	859
충북	967	514	524	547	541	548	559	574	573	568	594	595	587
충남	1,533	938	960	999	1,006	1,006	1,020	1,002	996	991	986	969	952
전북	1,941	1,346	1,335	1,336	1,350	1,380	1,379	1,371	1,363	1,379	1,405	1,411	1,401
전남	2,669	1,730	1,705	1,748	1,748	1,763	1,767	1,752	1,725	1,718	1,737	1,760	1,766
경북	2,873	1,596	1,617	1,678	1,685	1,728	1,745	1,783	1,808	1,844	1,867	1,892	1,882
경남	2,378	1,483	1,471	1,501	1,508	1,509	1,516	1,508	1,490	1,457	1,447	1,501	1,508
제주	259	173	165	174	170	172	167	165	165	167	162	156	160
합계	26,141	15,633	15,694	16,011	16,041	16,191	16,247	16,235	16,214	16,130	16,365	16,579	16,684

주: 월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 수는 1건 이상 결제이력이 있는 제공인력수이며, 합계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중복을 제외한 전체 제공인력수의 합임.

가사간병방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Nursing and Home Care Visiting Service: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신체적·정신적으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하여 방문형 간병·가사 서 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지원한다.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1~3급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기타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인정한 자 • 지원금액: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2016년 기준)

구분	월 24	시간	월 27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부지원금	월 235,200원	월 235,200원 월 217,680원		월 244,890원		
본인부담금	면제	월 17,520원	월 9,450원	월 19,710원		

2016년 월평균 이용자 수는 약 8.346명으로 나타났고. 월별로 살펴보면 1월 이용자 수가 8,543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월 이용자 수가 8,137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2016년 12월 기 준으로 시도별로는 전북이 1.14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821명. 전남 79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유형별로는 월 24시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83.0%. 월 27시간 이용하는 기초 생활수급자가 약 12.9% 순으로 나타나 차상위계층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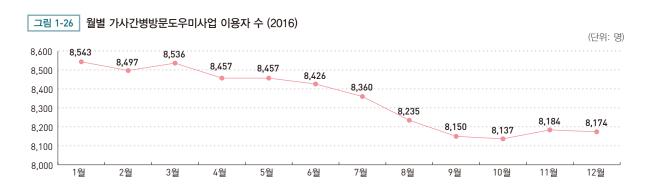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가사간병방문사업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의 월평균 이용자 수는 약 8,346명으로 전년도 약 8,819명에 비해 감소하 였고, 월평균 이용액 역시 약 2,002백만 원으로 전년도 약 2,069백만 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유형별로는 2016년 월 24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비중은 약 83.0%로 전년도 약 82.1%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0 연도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이용자 수	8,961	8,692	8,174		
이용액	2,059,491	2,069,551	2,002,282		





丑 1-2	21 시도	별 · 월별 기	사간병방문	군도우미사	업 이용자 -	수 (2016)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646	652	667	669	671	670	671	658	653	650	651	642
부산	783	784	792	785	781	765	763	751	742	732	739	752
대구	458	457	460	440	444	440	436	418	420	419	415	415
인천	450	446	459	454	455	452	448	448	430	425	430	428
광주	401	399	396	391	396	397	396	405	400	409	415	407
대전	211	208	208	207	203	206	208	204	202	204	213	214
울산	204	198	196	196	195	195	187	185	183	190	200	198
세종	17	18	17	17	17	16	16	16	17	17	16	16
경기	888	879	880	878	871	869	852	838	833	824	817	821
강원	487	480	478	466	468	471	464	462	457	463	464	456
충북	264	263	263	255	259	262	256	259	263	252	256	259
충남	366	366	362	358	358	356	358	348	335	334	343	340
전북	1,189	1,192	1,196	1,187	1,187	1,188	1,186	1,167	1,154	1,157	1,153	1,147
전남	812	808	816	819	821	817	803	800	787	786	789	794
경북	600	594	597	591	589	589	586	564	562	557	556	558
경남	656	646	643	642	642	630	627	611	613	616	628	627
제주	111	107	106	102	100	103	103	101	99	102	99	100
합계	8,543	8,497	8,536	8,457	8,457	8,426	8,360	8,235	8,150	8,137	8,184	8,174

그림 1-28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이용자 비중 (2016.12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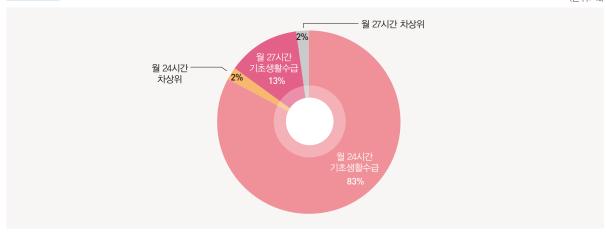


그림 1-29 월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이용액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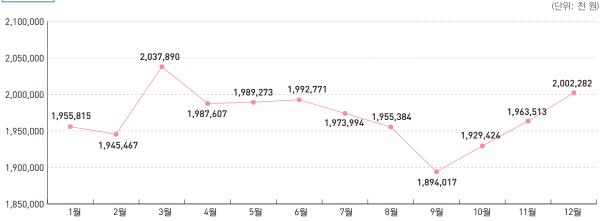


표 1-22 월별 · 이용구분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6)

(단위: 명, 천 원)

				이용자 수				(E111 8, E E)
구분		월 24시간			월 27시간		합계	이용액
	소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소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답게	
1월	7,252	7,027	225	1,291	1,139	152	8,543	1,955,815
2월	7,229	7,007	222	1,268	1,124	144	8,497	1,945,467
3월	7,244	7,019	225	1,292	1,144	148	8,536	2,037,890
4월	7,190	6,972	218	1,267	1,122	145	8,457	1,987,607
5월	7,194	6,984	210	1,263	1,121	142	8,457	1,989,273
6월	7,156	6,952	204	1,270	1,124	146	8,426	1,992,771
7월	7,100	6,898	202	1,260	1,118	142	8,360	1,973,994
8월	7,009	6,818	191	1,226	1,094	132	8,235	1,955,384
9월	6,942	6,749	193	1,208	1,075	133	8,150	1,894,017
10월	6,933	6,741	192	1,204	1,071	133	8,137	1,929,424
11월	6,979	6,782	197	1,205	1,070	135	8,184	1,963,513
12월	6,975	6,780	195	1,199	1,058	141	8,174	2,002,282

13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Language Development Supporting Service :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감각적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등 간접적 인 서비스와 더불어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 놀이, 수화 등 각종 지도를 제공하여 아동 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대상 중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이며, 부모 또는 한부모인 경우 생계 ·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인 경우
- 지원 금액: 소득별로 상이

(2016년 기준)

구분	92.2.		차상위계층 초과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정부지원금	월 22만 원	월 20만 원	월 18만 원	월 16만 원
본인부담금	면제	월 2만 원	월 4만 원	월 6만 원

2016년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월평균 이용자 수는 약 420명으로 나타났으며, 월별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월평균 이용액은 약 79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6월에 이용액이 약 81 백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시도별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102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72명, 전북 4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용액은 서울 약 20백만 원, 경기 약 12백만 원, 전북 약 10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丑 1-23

연도별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이용자 수	313	398	421
이용액	60,183	75,916	78,56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언어발달 지원사업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12월 기준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자 수는 421명으로 전년도 398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자 수는 2013년 12월 947명에서 2014년 313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2015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에 지원 대상자 연령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에 만 12세로 연령 기준을 상향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30 월별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6) (단위: 명, 천 원) 440 90,000 430 80,000 420 70,000 410 60,000 400 50,000 390 40,000 380 30,0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이용자 수 → 이용액



丑 1-24	시도발	별 · 월별 언	l어발달 지	원사업 이용	용자 수 (20	16)
74	4.01	001	001	401	=01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79	85	88	97	98	96	91	97	100	103	101	102
부산	8	8	7	6	6	6	7	7	7	8	9	8
대구	16	17	18	18	18	20	18	19	19	18	18	18
인천	8	8	9	10	11	11	10	10	10	8	9	9
광주	31	34	37	38	41	43	42	41	41	43	42	41
대전	12	12	13	16	16	16	16	16	16	16	16	16
울산	7	7	7	6	6	6	6	6	6	6	8	8
세종	4	3	1	1	1	1	1	2	2	2	2	2
경기	68	69	70	71	72	70	75	75	72	74	73	72
강원	8	10	8	8	7	8	8	7	7	7	6	7
충북	7	8	9	8	7	8	8	8	8	8	8	8
충남	36	38	39	38	39	39	31	31	30	27	25	25
전북	42	44	48	48	49	49	50	50	49	49	49	49
전남	17	16	16	15	13	13	12	14	15	15	15	14
경북	19	18	19	20	21	20	15	16	16	16	16	16
경남	23	22	19	17	17	17	17	17	17	19	19	20
제주	7	7	3	2	5	12	12	11	11	12	6	6
합계	392	406	411	419	427	435	419	427	426	431	422	421

丑 1-25	시도별 · 원	월별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액 (2016)
--------	---------	---------	------	-------	-------

(단위: 천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4,686	15,906	16,595	18,064	18,718	17,886	17,226	18,879	18,914	19,539	19,172	19,482
부산	1,502	1,548	1,328	1,168	1,163	1,085	1,343	1,348	1,308	1,500	1,705	1,560
대구	3,196	3,078	3,481	3,368	3,304	3,553	3,388	3,406	3,571	3,348	3,191	3,216
인천	1,137	1,026	1,369	1,554	1,681	1,788	1,566	1,525	1,653	1,341	1,538	1,499
광주	6,354	7,107	7,618	7,867	8,287	8,635	8,563	8,347	8,320	8,547	8,473	8,363
대전	2,460	2,433	2,680	3,300	3,300	3,300	3,300	3,278	3,300	3,270	3,300	3,300
울산	1,420	1,420	1,420	1,160	1,160	1,160	1,160	1,160	1,120	1,140	1,580	1,440
세종	851	600	220	220	220	220	220	330	413	440	440	440
경기	11,994	11,986	12,204	12,271	12,826	11,964	13,132	13,230	12,130	13,251	12,727	12,231
강원	1,397	1,802	1,475	1,393	1,266	1,247	1,215	1,192	1,217	1,295	1,110	1,252
충북	1,146	1,475	1,692	1,407	1,300	1,472	1,378	1,444	1,492	1,492	1,492	1,520
충남	7,020	7,370	7,395	7,126	7,239	7,035	5,613	5,327	5,020	4,810	4,506	4,470
전북	8,675	9,368	9,970	10,067	10,045	10,100	10,310	10,332	10,055	9,631	10,205	10,040
전남	3,260	3,033	2,968	2,900	2,433	2,433	2,280	2,600	2,833	2,807	2,577	2,720
경북	3,678	3,234	3,740	3,940	4,120	3,900	2,760	2,960	2,960	2,960	2,960	2,980
경남	4,080	3,936	3,350	3,020	3,073	3,100	3,100	3,100	3,100	2,770	3,030	3,210
제주	1,181	1,181	511	382	728	1,946	1,744	1,644	1,563	1,324	963	839
합계	74,035	76,502	78,015	79,208	80,864	80,825	78,299	80,103	78,969	79,466	78,969	78,563

주: 단위 미만인 수는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 수치가 시도별 수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1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gram: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으로 시도별·가구별로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재활, 아동역량개발, 노인·장애인 사회참여지원, 신체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 가족역량강화로 사업이 분류가 되며, 사업분류 기준에 따라 사업유형과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 신규 사업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선정된다.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 중앙정부는 이용 대상자의 소득기준 상한만 결정하고, 지역의 예산 현황 및 수요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 지원 금액 : 각 사업별로 본인부담금이 책정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본인부담금을 설정하 도록 권장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월평균 이용자 수와 이용액은 각각 145,349명, 20,24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수의 증감의 변동은 크지 않았으며, 이용액은 계속 증가하다가 5월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다시 증가하였고 12월에 감소하였다. 2016년 12월 기준 시도별 이용자 수는 경기가 23,9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15,456명, 인천 14,046명, 전북 10,408명, 전남 10,124명 순으로 나타났고, 시도별 이용액을 살펴보면 경기 3,549백만 원, 인천 1,958백만 원, 부산 1,810백만 원, 전북 1,593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丑 1-26

연도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이용자 수	157,588	139,852	144,376
이용액	13,813,390	19,959,739	20,890,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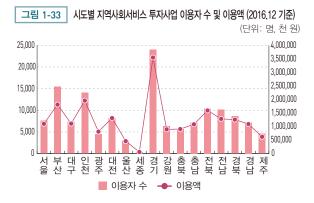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6	1년

Checkpoint

2015년 12월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는 2014년 12월말 기준 대비 감소하였지만, 2016년 12월말 기준 이용자 수는 144,376명으로 2015년 139,852명에 비해 약 3,2% 증가하였다. 2015년 12월말 기준 이용액은 19,960백만 원으로 2014년 대비 약 44,5% 증가하였고, 2016년 12월말 기준 이용액은 20,890백만 원으로 2015년 대비 약 4,7% 증가하였다.

그림 1-32 월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6) (단위: 명, 천원) 200,000 150,000 100,000 132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용자 수 • 이용액



丑 1-2	7 시도별	렬 · 월별 지	역사회서비	스 투자사	업 이용자	수 (2016)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6,447	7,236	8,485	8,745	8,951	8,825	8,703	8,410	8,063	7,923	8,295	7,608
부산	11,419	12,925	14,408	15,133	15,577	15,776	15,708	15,218	14,666	14,378	15,766	15,456
대구	9,227	10,001	8,024	8,040	8,012	7,548	7,422	6,969	6,010	8,003	7,848	7,323
인천	8,363	7,561	8,135	8,488	8,671	9,318	9,284	8,913	9,088	10,895	13,257	14,046
광주	6,467	8,401	7,381	7,086	6,216	6,246	5,980	5,423	5,018	4,826	4,514	4,446
대전	11,042	11,443	11,390	11,171	12,244	10,009	9,747	9,463	6,551	6,332	8,200	8,121
울산	3,247	4,205	4,505	4,338	4,115	3,966	3,725	3,263	2,966	3,494	4,023	2,931
세종	278	223	288	290	284	277	274	283	282	279	322	328
경기	19,374	19,768	24,612	25,167	25,158	24,936	24,800	23,972	22,678	22,449	24,677	23,984
강원	4,799	5,567	6,453	6,699	6,803	6,783	6,587	6,517	6,535	6,709	6,825	6,365
충북	4,617	4,889	6,161	5,947	6,460	6,141	6,195	5,958	5,858	5,993	6,014	5,687
충남	5,870	6,919	7,685	7,662	7,697	7,740	7,242	7,073	7,589	7,730	7,867	7,178
전북	8,919	8,439	8,807	9,200	9,219	9,193	8,866	9,441	10,045	10,154	10,314	10,408
전남	9,191	8,767	9,688	10,128	10,267	10,359	10,342	10,344	10,509	10,330	10,103	10,124
경북	6,639	7,553	9,157	9,769	9,507	9,377	9,187	8,924	8,301	8,150	8,910	8,635
경남	7,986	8,905	8,812	8,461	8,959	8,554	8,230	8,213	8,349	7,959	8,535	7,195
제주	4,935	5,146	5,345	5,640	6,064	6,370	6,780	6,809	6,795	6,058	5,422	4,541
합계	128,820	137,948	149,336	151,964	154,204	151,418	149,072	145,193	139,303	141,662	150,892	144,376

丑 1-2	표 1-28 시도별 · 월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금액 (2016) (단위:									(단위: 천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820,503	926,622	1,161,160	1,220,949	1,248,392	1,229,527	1,196,360	1,148,604	1,077,003	1,113,287	1,174,396	1,100,651
부산	1,155,257	1,338,315	1,713,515	1,696,806	1,717,212	1,787,782	1,775,402	1,727,993	1,637,017	1,663,841	1,825,626	1,810,625
대구	1,260,706	1,391,369	1,170,632	1,161,645	1,132,478	1,076,631	1,061,442	999,754	859,283	1,160,042	1,170,823	1,106,518
인천	1,116,618	1,000,048	1,129,269	1,156,568	1,163,787	1,275,299	1,258,402	1,226,837	1,202,941	1,464,243	1,799,193	1,958,390
광주	1,091,118	1,463,447	1,364,644	1,293,309	1,064,757	1,114,517	1,059,710	962,450	881,962	863,302	801,654	811,235
대전	1,789,764	1,886,899	1,918,946	1,866,574	2,011,977	1,622,741	1,538,289	1,502,834	988,245	973,826	1,282,317	1,311,705
울산	449,698	545,327	699,063	622,009	557,931	559,827	508,658	426,270	399,048	473,713	598,267	459,661
세종	55,496	35,740	65,460	49,774	49,897	48,999	50,133	50,652	49,133	50,646	54,718	59,029
경기	2,533,559	2,608,157	3,396,523	3,542,991	3,472,323	3,473,580	3,435,928	3,291,144	3,072,844	3,181,944	3,485,243	3,549,582
강원	622,846	709,210	890,749	894,091	897,978	912,548	881,210	868,096	824,711	902,944	938,563	894,730
충북	687,891	662,752	1,054,578	903,088	955,673	947,918	955,156	916,198	868,153	942,506	941,721	906,406
충남	840,653	910,886	1,175,671	1,110,811	1,090,759	1,113,920	1,045,455	1,025,905	1,066,141	1,134,558	1,159,112	1,081,869
전북	1,278,897	1,202,151	1,314,801	1,380,947	1,347,274	1,383,114	1,293,961	1,369,148	1,451,833	1,513,920	1,556,963	1,593,287
전남	1,054,148	1,029,425	1,191,870	1,215,427	1,229,756	1,259,827	1,236,799	1,236,349	1,243,935	1,243,283	1,250,019	1,280,378
경북	901,210	1,011,823	1,324,775	1,382,194	1,316,068	1,301,584	1,284,626	1,237,525	1,115,392	1,148,978	1,246,745	1,255,987
경남	1,113,992	1,232,059	1,307,222	1,225,155	1,283,778	1,224,896	1,188,652	1,177,353	1,187,089	1,160,905	1,240,530	1,090,720
제주	609,027	646,838	709,256	724,287	777,258	827,899	903,006	911,197	880,517	807,925	724,232	620,046
합계	17,381,382	18,601,070	21,588,133	21,446,624	21,317,298	21,160,609	20,673,191	20,078,308	18,805,247	19,799,863	21,250,121	20,890,817

주: 단위 미만인 수는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 수치가 시도별 수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15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Postpartum Women and Infants Health Care Service: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출산 전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 리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에 대한 필요성,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지원체계 구축의 필요 성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기준가격을 토대로 최대금액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 이 자율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중증 장애 산모
	단축형	369천 원 ~ 1,108천 원	863천 원 ~ 1,295천 원	1,419천 원
기준가격	표준형	739천 원 ~ 1,477천 원	1,295천 원 ~ 1,726천 원	1,892천 원
	연장형	1,108천 원 ~ 1,847천 원	1,726천 원 ~ 2,158천 원	2,366천 원
	단축형	445천 원 ~ 1,335천 원	1,040천 원 ~ 1,560천 원	1,710천 원
최대가격	표준형	890천 원 ~ 1,780천 원	1,560천 원 ~ 2,080천 원	2,280천 원
	연장형	1,335천 원 ~ 2,225천 원	2,080천 원 ~ 2,600천 원	2,850천 원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80% 이하^{*}의 출산가정 • 지원 금액: 출생이동 수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2016년 기준)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정부지원금	278천 원 ~ 1,182천 원	679천 원 ~ 1,442천 원	1,126천 원 ~ 1,891천 원		
본인부담금	책정가와 정부지원금의 차액				

2016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의 월평균 이용자 수는 약 9,256명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이용액은 3,53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2월 기준, 경기도의 이용자가 1,9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236명, 경남 567명, 인천 554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울산과 제주는 각각 168명과 110명으로 세종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이용자 수가 적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6	1년

Checkpoint

2015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15.7%의 큰 증가가 나타났지만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수는 소폭 증가하였지만 2016년 12월말 이용액은 3,419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약 0.6% 감소하였다.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또는 산모)는 예외

^{**}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50%~60% 이하, 60~80% 이하, 80% 초과

표 1-29 연도별 전국 출생아 수 (2016)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이용자 수	7,135	8,253	8,348
이용액	3,103,393	3,439,509	3,418,829





표 1-30 월별 · 시도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이용자 수 (2016)

(단위: 명)

		_					_		_		_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195	1,289	1,471	1,439	1,494	1,466	1,441	1,449	1,396	1,433	1,395	1,236
부산	524	601	685	633	616	549	558	611	548	592	561	495
대구	544	535	597	584	570	546	513	540	514	505	492	464
인천	514	553	646	654	653	600	561	599	570	567	600	554
광주	274	290	348	339	316	304	272	280	273	305	297	283
대전	285	293	380	380	370	332	297	303	298	317	291	279
울산	199	181	217	232	248	199	184	194	211	240	223	168
세종	54	120	193	177	193	178	192	207	188	199	205	190
경기	2,014	2,102	2,454	2,432	2,373	2,246	2,142	2,200	2,180	2,260	2,129	1,937
강원	214	206	259	246	240	233	247	252	266	245	214	230
충북	261	274	349	315	290	295	298	305	280	320	345	371
충남	352	366	472	456	439	445	448	421	351	415	429	392
전북	359	389	444	437	432	406	391	387	395	384	360	299
전남	310	356	431	410	370	366	370	382	367	345	345	326
경북	473	531	602	540	579	522	524	535	489	493	472	447
경남	597	579	692	660	657	601	578	560	570	646	590	567
제주	102	104	132	129	118	119	106	114	96	100	112	110
계	8,271	8,769	10,372	10,063	9,958	9,407	9,122	9,339	8,992	9,366	9,060	8,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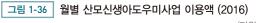




표 1-31 월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이용액 (2016)

(단위: 천 원)

구분	이용금액
1월	3,405,534
2월	3,450,471
3월	4,355,004
4월	4,022,699
5월	4,048,192
6월	3,816,684
7월	3,687,322
8월	3,826,801
9월	3,588,410
10월	3,726,383
11월	3,672,576
12월	3,418,829

아동 · 노인 · 장애인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 0 1 7

- 01 아동 수면시간
- 02 아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 03 아동 자살률
- 04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 05 학대피해이동 발견율
- 06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 07 아동 빈곤율
- 08 나홀로 아동 수
- 09 요보호 아동 수
- 10 국내외 입양아동 수
- 11 아동·가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 12 65세 기대여명
- 13 노인의 ADL 제한율
- 14 노인의 운동 실천율
- 15 노인의 학대경험률
- 16 노인 진료비
- 17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 18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 19 장기요양기관 수
- 20 등록장애인 수
- 21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 22 장애인복지시설 수
- 2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 24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2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26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 27 특수교육 대상자 수
- 28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액
- 29 장애인 교육수준
- 30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 3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32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 33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 34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 35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아동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아동 건강 발달	아동 수면시간					
	아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아동 자살률					
아동 안전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아동 손상 경험률				
	학대피해이동 발견율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아동 빈곤	아동 빈곤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동 수				
		아동급식 지원자 수				
아동의 사회적 보호	나홀로 아동 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요보호 아동 수	아동복지시설 아동 수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				
		아동공동생활가정보호 아동 수				
	국내외 입양이동 수	입양이동 관련 급여 수급자				
		입양이동의 보육 관련 서비스 수급자 수				
아 동복 지 지출	아동 · 가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01 H H

아동 수면시간

Child Sleeping Hours

지표 정의

아동·청소년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학교 등교 시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기초로 초·중·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을 산출한다. 아동의 적정 수면시간은 8시간으로 간주한다.

측정 산식

아동 1일(평일) 수면시간의 합 전체 아동의 수

충분한 수면을 취할 권리는 아동·청소년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에 속한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의 평균 수면시간은 초등학생이 8시간 37분, 중학생이 7시간 23분, 고등학생이 6시간 7분이었다. 최초 조사가 이루어졌던 2009년 이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의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2009년 대비 2011년 평균 수면시간은 중학생의 경우 7.4시간에서 0.4시간, 초등학생의 경우 8.5시간에서 0.6시간 증가했으며 2013년 각각 0.6시간, 0.8시간 감소한 이후 2016년까지 비슷하거나 미약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고등학생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2009년 6.6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2014년 5.5시간으로 줄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5년 처음으로 6.1시간으로 36분 증가한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청소년 권장 수면 시간은 8시간으로 간주되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조사가 시작된 2009년 이후 계속적으로 청소년 권장 수면시간에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면 이외에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규칙적인 운동실천율과 아침식사 섭취율을 살펴보면 아침식사를 섭취하는 아동의 비중은 2006년 64.8%에서 2012년 73.2%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2006년 25.0%에서 2016년 35.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 · 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09	2016	1년
통계청	사회조사	1977	2016	1년

* 통계청 사회조사는 기본항목(성별, 연령, 교육정도 등)과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5개 부문씩 선정하여 조사. (짝수년)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홀수년)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여가, 소득과소비, 노동으로 조사됨.

Checkpoint

아동 · 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아동 · 청소년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2015년 대비거의 같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아동 · 청소년의 평균수면시간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은 2015년 뚜렷한 증가를 보인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수면시간의 증가추이는 아동 · 청소년의 발달과 건강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보고서 W., 2016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각 연도

丑 2-1 연도별 · 학령별 수면시간당 비율

(단위: %)

							(단위:
연도		구분	5시간 미만	5~6시간	6~7시간	7~8시간	8시간 이상
2009		중학교	1.7	5.3	20.8	43.7	28.6
2007	Ī	2등학교	13.0	29.9	33.1	17.4	6.5
		전체	7.2	18.2	23.3	25.7	25.3
2010	3	등학교	3.8	4.8	16.3	32.8	41.7
2010		중학교	4.1	15.4	34.5	30.8	15.0
	고등학교		16.1	44.9	26.6	8.4	3.9
		전체	3.0	8.1	15.1	21.3	52.4
	Ž	등학교	0.0	0.3	1.2	8.7	89.8
2011		중학교	0.9	4.0	12.2	32.5	50.4
	고등학교	일반계	9.9	24.3	36.1	22.7	6.9
	五으点面	전문계	5.2	14.7	30.3	29.8	20.0
		전체	6.6	14.5	19.5	24.7	34.7
	3	등학교	0.6	0.6	3.1	17.1	78.5
2013		중학교	1.8	6.0	19.8	42.8	29.7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7.5	36.8	33.1	11.1	1.6
	五으点面	특성화	11.4	22.3	32.3	26.4	7.6
		전체	5.6	15.7	20.8	24.6	33.4
	Ž.	등학교	0.3	0.7	3.8	17.2	78.0
2014	-	중학교	1.3	6.0	20.9	42.0	29.6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5.0	40.4	33.0	10.1	1.5
	<u> </u>	특성화	7.9	19.0	37.0	30.1	5.9
		전체	4.1	12.9	20.6	26.0	36.3
	3	등학교	0.2	0.6	3.3	13.8	82.0
2015	-	중학교	1.1	6.6	18.1	41.6	32.6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0.9	31.5	36.1	17.5	4.1
	<u> </u>	특성화	5.7	12.5	35.4	34.7	11.7
		전체	7.9	17.3	14.1	23.9	36.7
	<u>ā</u>	등학교	0.3	1.4	2.9	13.8	81.6
2016	-	중학교	2.5	9.5	16.0	37.5	34.5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20.7	40.1	21.2	15.3	2.7
	<u> </u>	특성화	9.0	20.4	19.8	36.5	14.3

주: 2012년도는 조사결과 없음.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 · 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11.27. 인출)



주: 2010년까지는 15~19세, 2012년부터 13~19세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3.15. 인출)

02 H

아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Rate of Internet (Smartphone) Overdependences in Children

지표 정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하며, 현저성 증가 * , 조절실패 ** , 문제적 결과 *** 세가지 주요 특성을 모두 보이는 사람은 고위험군, 이 중 2개 이내 특성을 보이는 사람은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측정 산식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수 스마트폰 사용자 수

유의사항

-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은 국내 만 3~69세 스마트폰(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 2016년부터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는 기존의 인터넷(K-척도) 및 스마트폰(S-척도) 개별척도를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로 통합하여 통합척도를 사용, 유아동(만 3~9세), 청소년(만 10세~19세), 성인(만 20세~59세), 고령층(만 60세~69세) 4종의 척도를 도입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015년까지 인터넷 과의존위험군과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을 분리하여 조사되었던 척도를 통합하여 개편되었다. 만 3~69세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2016년 7,426천 명, 전체 조사대상의 17.8%로 전년대비 1.6%p 증가했으며, 2011년 8.4%에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반면, 2016년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 의존위험군 비율은 2011년 11.4%부터 2016년 30.6%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5년 대비로는 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성인, 유아동, 60대 고령층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았으며, 2016년 기준 성인보다 약 1.9배 이상, 고령층보다 2.6배, 유아동에 비해 1.7배 많았다. 또한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17.9%로 청소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위험율 측정이 시작된 2015년 대비 5.5%p 증가한 것으로 유아동 및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율을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2004	2016	1년

^{* 2017}년부터 통계명이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로 변경됨.

Checkpoint

2016년 청소년 및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각각 30.6%, 17.9%로 나타나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인 17.8%보다 높았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전년대비 1.0% 감소하였으나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5.5% 증가하였다.

st 현저성(salience) :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

^{**} 조절실패(self-control failure):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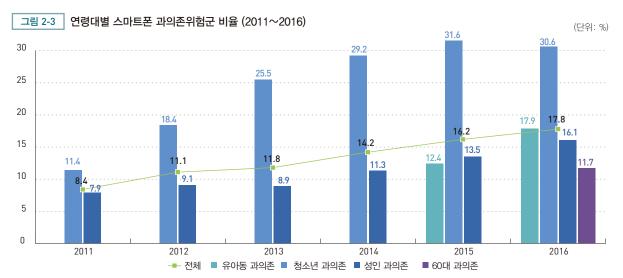
^{***} 문제적 결과(serious consequences) :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

표 2-2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및 수 (2011~2016)

(단위: %, 천 명)

	구분	2011 2012		20	2013		2014		15	2016	
	十 世	비율(%)	비율(%)	비율(%)	수(천 명)						
과	의존위험	8.4	11.1	11.8	2,998	14.2	4,561	16.2	5,810	17.8	7,426
ī	고위험	1.2	1.9	1.3	323	2.0	650	2.4	863	2.5	1,042
짇	악재적 위험	7.2	9.2	10.5	2,675	12.2	3,911	13.8	4,947	15.3	6,384

주: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자 수 (모집단)는 2013년도부터 산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과의존실태조사, 각 연도



- 주: 1) 조사연령 확대 2016년: 만 3~69세 (유아동 만 3~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9세, 60대 만 60~69세)
 - 2015년: 만 3~59세 (유아동 만 3~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9세)
 - 2014년: 만 10~5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9세)
 - 2013년: 만 10~54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4세)
 - 2011년~2012년: 만 10~4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49세)
 - 2) 2016년 스마트폰 과익존위험군 비율은 조사대상 연령이 위와 같이 확대되고, 기존 인터넷(K—척도) 및 스마트폰(S—척도) 개별척도를 '스마트폰 과익존 척도'로 통합하여 조사함에 따라 전년도와 단순비교 불가
 - 3) 2016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자 수 (모집단, 만 3세~69세)는 41,759천 명 (2015년(만 3세~59세) 35,721천 명)
 - 4)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수 = 만 3 \sim 69세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자 수 x 과의존위험군 비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과의존실태조사, 각 연도

표 2-3 연령대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및 수 (2011~2016)

(단위: % 천명)

							,				('i	년위: %, 선명)
구	_	연령대	2011	2012	20	13	20)14	20	115	20	116
17	_	다당네	비율(%)	비율(%)	비율(%)	수(천 명)						
		유아동	-	-	-	-	-	-	12.4	127	17.9	591
스마! 과으		청소년	11.4	18.4	25.5	1,117	29.2	1,562	31.6	1,704	30.6	1,649
위험		성인	7.9	9.1	8.9	1,881	11.3	2,999	13.5	3,979	16.1	4,826
		60대									11.7	360
		유아동	-	-	-	-	-	-	1.7	18	1.2	39
	고	청소년	2.2	2.7	2.4	104	3.3	174	4.0	215	3.5	188
	위 험	성인	1.0	1.7	1.0	219	1.8	476	2.1	630	2.5	753
		60대	-	-	-	-	-	-	-	-	2.0	62
	잠	유아동	-	-	-	-	-	-	10.7	109	16.7	552
	재	청소년	9.2	15.7	23.1	1,013	25.9	1,388	27.6	1,489	27.1	1,461
	적 위	성인	6.9	7.4	7.9	1,662	9.5	2,523	11.4	3,349	13.6	4,073
	험	60대	-	-	-	-	-	-	-	-	9.7	298

주: 대상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자 수(모집단)는 유아동 3,303천 명, 청소년 5,394천 명, 성인 29,977천 명, 60대 3,086천 명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과의존실태조사, 각 연도

03

아동 자살률

Child Suicide Rate

지표 정의

아동 · 청소년 자살률(자살사망률)은 연간 고의적 자해(자살)에 해당하는 아동 · 청소년 사망자의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 * 로 나눈 값이다.

측정 산식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아동ㆍ청소년 사망자의 수 당해 년도 아동ㆍ청소년 연앙인구

아동·청소년의 자살자 수는 2000년 인구 10만 명당 3.8명에서 2009년까지 6.5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 5.2명, 2015년 4.2명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4.9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모든 해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으며 변화의 추세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년 대비 2016년 남자청소년의 자살률은 1.0명이 증가, 대폭 증가했으며, 여자청소년의 자살률은 2015년 3.8명에서 2016년 4.1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자살자 수를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높게 나타났다. 즉, $15\sim19$ 세 청소년의 자살률이 $5\sim14$ 세까지의 저연령 아동들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15\sim19$ 세의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2016년 인구 10만 명당 7.9명으로, $10\sim14$ 세 아동의 자살률 0.9 명보다 8.7배 이상 높았다.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10\sim14$ 세 아동의 경우 0.3 명이 감소했지만 $15\sim19$ 세 청소년의 경우 1.4명이 증가했으며 이들이 전체 10대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자살충동 여부를 살펴보면, 2016년 13~19세의 청소년 중 5.7%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자살충동은 2006년 10.1%에서 2012년 12.1%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2016년 청소년들이 자살충동을 느끼는 이유는 성적 및 진학 문제가 48.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가정불화,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친구 따돌림 등이 자살충동의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16	1년
통계청	사회조사	1977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10대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인구 10만 명당 4.9명으로 전년대비 0.7명이 증가했다. 2009년 6.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 4.2명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던 10대 자살사망률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추세를 성별로 구분하면 모든 해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으며,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2016년 15~19세의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7.9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년 대비 1.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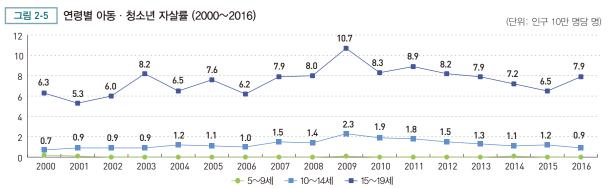
참고문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 연앙인구는 당해 연도의 중간인 7월 1일 기준의 주민등록인구를 의미하며, 출생률과 사망률을 산출할 때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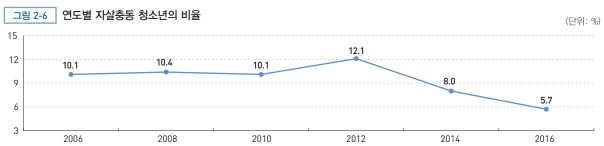


주: 사망원인통계의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에 해당하는 10대 사망자 수 및 사망률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7.9.22. 인출)



주: 1) 사망원인통계의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에 해당하는 사망자 수 및 사망률 2) 0~4세 자살자 수는 집계되지 않거나 0명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7.9.22. 인출)



주: 2010년까지는 15~19세, 2012년부터 13~19세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3.15. 인출)

표 2-4 연도별 청소년 자살충동 여부 및 이유

(단위: %)

										(
	자살충	동 여부		지살충동 이유										
구분	자살충동 있다	자살충동 없다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정신적 질환, 장애	직장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불화	성적 및 진학문제	이성문제, 친구 및 동료 와의 불화	기타				
2006	10.1	89.9	6.2	1.4	1.0	10.1	15.5	56.1	8.2	1.6				
2008	10.4	89.6	8.8	3.5	1.7	13.6	10.1	51.0	8.6	2.9				
2010	10.1	89.9	10.5	2.2	1.6	11.2	12.6	53.4	5.7	2.8				
2012	12.1	87.9	16.7	2.0	0.4	12.5	16.9	39.2	8.5	3.7				
2014	8.0	92.0	19.5	2.1	0.8	9.8	10.5	39.3	12.9	5.2				
2016	5.7	94.3	10.6	3.0	1.0	11.1	11.9	48.1	10.0	4.3				

주: 2010년까지는 15~19세, 2012년부터 13~19세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3.15. 인출)

04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Number of safety accident death in children

지표 정의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1년 동안 외부요인에 의한 안전사고(운수사고, 익사, 추락, 화재, 중독 등)로 사망한 14세 이하의 아동의 수 및 10만 명당 비율을 말하며 자살, 타살, 질병에 의한 사망은 제외한다.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사고 중 경찰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사고를 근거로 산출한다.

측정 산식

유의사항

본 지표에서 교통사고는 사망원인통계(통계청)와 교통사고통계(경찰청)에서 각각 공표하는 통계를 사용하고 있다. 사망원인통계의 교통사고는 육상·해상·항공 등 모든 교통기관 사고 및 트랙터 사고 등 비도로상의 사고를 포함한다. 교통사고통계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 상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의 통계를 의미하며 경찰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교통사고를 근거로 작성된다.

아동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상은 아동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1~6세 학령전기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은 8,507억 원에 해당하는 커다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며(질병 관리본부, 2013),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은 아동보호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2003년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의 수립 이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6년 인구 10만 명당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8명으로 2015년 대비 0.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안전사망사고의 사망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원인은 교통사고로 전체 사망자 196명 중 87명(44%)의 아동들이 사망했으며, 기타 56명(29%), 익사 및 추락이 각각 28명(14%), 19명(10%)을 차지했다. 한편, 경찰청에서 집계한 아동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1년 460명에서 2014년 52명까지 지속적인 감소하였으나 2015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6년 71명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기준 OECD 회원국 간 아동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9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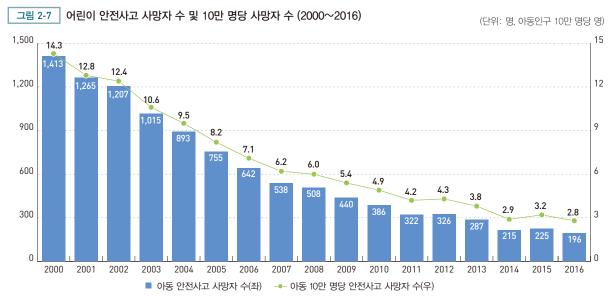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16	1년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976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아동 10만 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8명으로 전년도 대비 0.4명 감소했으며, 2003년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의 수립 이후 2004년 9.5명, 2007년 6.2명, 2014년 2.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집계 2016년 13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71명으로, 2001년 460명에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 WHO, Mortality Database, 2008
- 질병관리본부 · 이화여대, 어린이 및 청소년 손상예방지표 및 조사문항 개발 연구, 2013
- 국제교통포럼 홈페이지 (http://internationaltransportforum.org/IRTAD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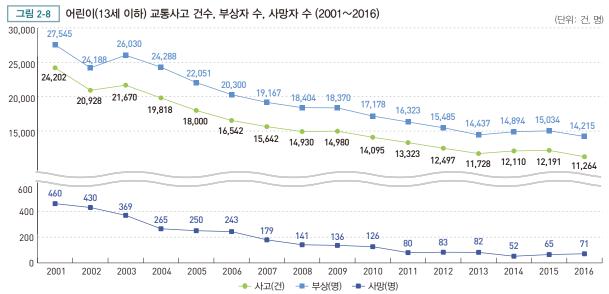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7.9.22. 인출)

표 2-5 유형별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200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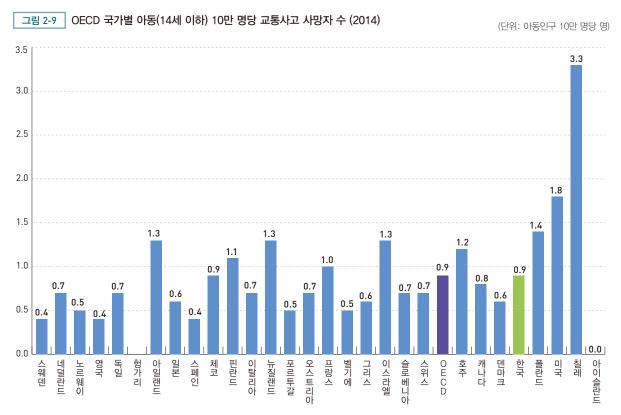
(단위: 명)

						!			1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413	1,265	1,207	1,015	893	755	642	538	508	443	387	322	326	287	215	225	196
교통 사고	726	614	594	496	377	339	316	259	214	201	194	137	131	121	80	103	87
익사	304	236	197	156	184	156	78	78	78	62	44	50	53	41	36	28	28
추락	155	138	133	108	88	67	58	58	50	40	42	37	36	37	31	28	19
화재	40	73	54	63	42	19	42	7	19	10	15	15	14	15	5	10	5
중독	13	7	6	4	7	4	5	4	2	5	3	1	1	2	2	0	1
기타	175	197	223	188	195	170	143	132	145	125	89	82	91	71	61	56	56

주: 통계표 사망통계자료(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에서 자살·타살·질병 제외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http://kosis.kr에서 2017.9.22. 인출)



자료: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각 연도



주: 아이슬란드 0건, 헝가리는 합계로 626건이지만, 연령대별 수치는 미상 자료: 도로교통공단, 2016년판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2016 (원자료: http://stats.oecd.org) **Child Injury Rat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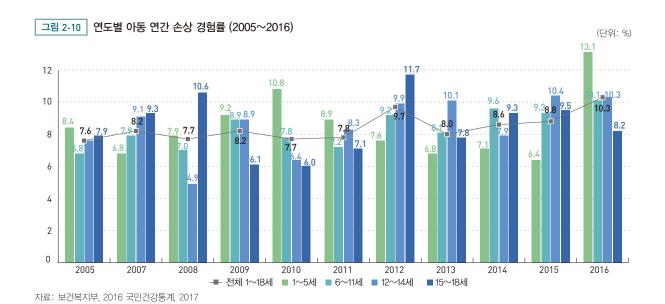
아동의 손상 경험률은 만 18세 이하의 아동 중 최근 1년간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의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 나 중독을 경험한 아동 분율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만 18세 이하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의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을 경험한 사람 만 18세 이하 인구 ×100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상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률은 감소하였지만 아동·청소년의 비의도적 손상입원율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동 손상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서는 아동 손상의 추세, 손상의 유형별 발생현황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만 18세 이하 아동의 연간 손상 경험률은 2005~2015년에 걸쳐 연도별로 큰 차이 없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 만 18세 이하 아동의 연간 손상 경험률은 10.3%로 2015년의 8.8%에 비하여 1.5%p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5세 아동의 손상 경험률이 2016년도 13.1%로 전년에 비해 무려 6.7%p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16년도 6~11세와 12~14세 아동의 손상경험률은 각각 전년 대비 0.8%p 증가, 0.1%p감소하였고, 15~18세 아동의 손상경험률은 2015년에 비하여 1.3%p 감소하였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6	1년

05 "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Substantiation rate of Child Abuse

지표 정의

아동학대란 신체, 정신, 성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 유기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아동학대 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건수 중 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만 0~17세 아동학대판정 피해 아동 수 만 0~17세 아동 수

유의사항

- 아동학대 사례 피해아동 발견율은 추계아동인구(만 0~17세)를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로 판정된 피해 아동 수를 의미한다.
- 학대피해아동 서비스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에게 취한 최종조치와 제공된 서비스의 횟수를 포함하는데, 최종조치 결과는 전년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에 취한 마지막 차 수의 조치 결과를 의미한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추계아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증가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아동학대처벌법의 강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증가에 따른 결과로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사례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건수가 25,878건이었으며, 이 중 18,700명의 아동이 학대피해아동으로 판단되어 보호받았다. 전년도 대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사례는 약 54% 증가하였으며,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1.6배 증가하였다.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2016년 학대행위자의 80.5%가 부모였으며 이중 친부모가 76.1%를 차지하였다.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11.6%로 전년도의 12.2%보다 0.6%p 감소했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 분포는 중복학대가 48.0% (8,980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서학대와 방임·유기가 각각 19.2%(3,588건), 15.6%(2,924건)를 차지했고 신체학대가 14.5%(2,715건)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치 결과는 아동이 주양육자에 의해 지속적 보호를 받는 원 가정보호 사례와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어 재학대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취해지는 분리보호 사례, 가정복귀, 사망으로 나누어진다. 2016년 학대피해아동의 초기조치 결과는 원가정보호가 14,563건(77.9%)으로 가장 많았고, 분리보호의 경우는 4,095건(21.9%), 사망 42건(0.2%)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학대피해아동의 수가 2015년 17명 대비 2.5배증가한 42명으로 현저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이동보호현황	2006	2016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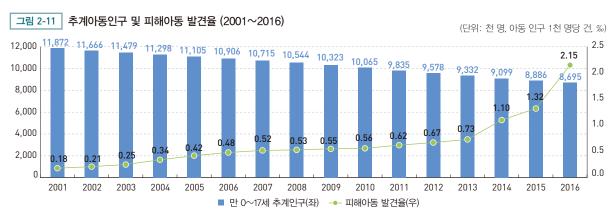
Checkpoint

2001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율 및 피해 아동 발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2001년 0.18%에서 2016년 2.15%로 증가하였다. 2015년 대비 0.83%p 증가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18,700명의 아동이 학대피해아동으로 발견·보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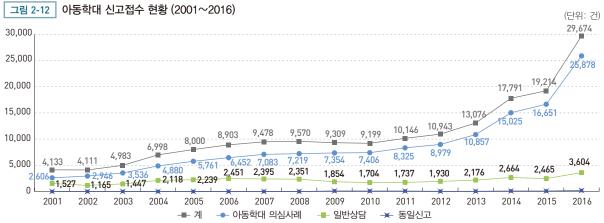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최종조치 결과는 2016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2016년에 취한 마지막 차수의 조치 결과를 의미하며 2016년 18,700건의 아동학대 사례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는 3,041건(16.3%)이고, 진행 중인 사례를 합한 최종조치 결과는 원가정보호가 13,573건(72.6%), 분리보호가 3,730건(20.0%), 초기분리 이후 가정복귀 사례가 1,347건(7.2%), 사망이 50건 (0.3%)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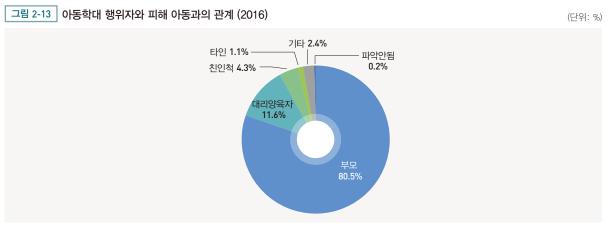


주: 통계청에서 집계한 2016년 「연령별(시도) 추계아동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1,000명 당 피해 아동 발견율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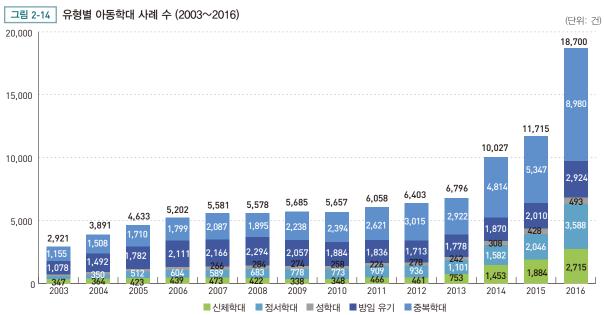
주: 1) 동일신고는 2009년부터 집계됨. 동일신고란 최초 신고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동일한 학대 피해의심내용으로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되는 경우를 의미함. 2) 아동학대 의심사례 25,878건은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2,796건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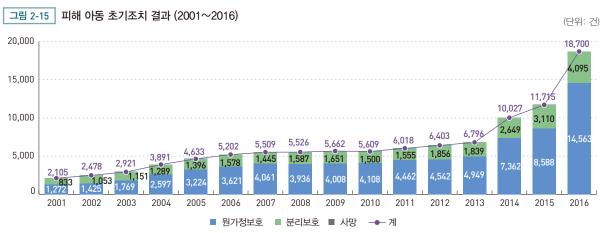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7

^{3) 2016}년도 해외발생사례 3건은 그래프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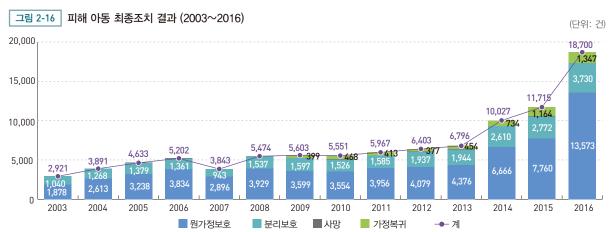
주: 중복학대는 별도 분류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주: 사망은 2015년도까지는 20건 미만이었으나 2016년 42건으로 증가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주: 최종조치란 2016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2016년에 취해진 마지막 차수의 조치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수

05-1 연 관

Number of Child Sexual Abuse Victims

지표 정의

당해연도에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발생 수를 의미하며, 이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된 범죄자에 대한 피해자 수를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폭력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을 파악하기 용이하며,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정책을 개선, 보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아동 · 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발생 건수 + 강제추행범죄 건수의 총합

유의사항

- 한 범죄자에게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지표는 피해자 기준의 수치임에 유의한다.
- 범죄는 발생 시 경찰 및 검찰을 거쳐 법원의 판결 선고를 통해 처벌에 이르게 되며, 본 지표의 수치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중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하여 형사입건한 사건 수(대검찰청. 범죄분석)와 다름에 유의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제 11조(아동·청소년 이용 음 란물의 제작 배포 등),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제외한 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를 의미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 년 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1,427건에서 2008년 902건으로 감 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5년 기준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3,614건으로 2014년 3,283건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구성 비율을 살 펴보면 강제추행이 강간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즉, 2007년 61.8%를 차지했던 강제추 행이 2015년 78.2%까지 증가했으며 2007년 성폭력범죄의 38.2%를 차지했던 강간은 2010년까 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점차 줄어들어 2015년 21.8%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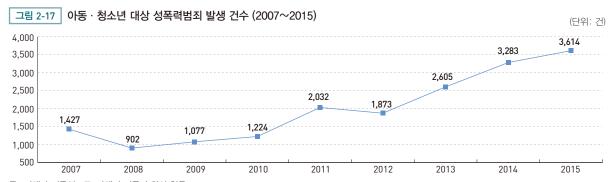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 구분에 관계없이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 났다. 특히. 13세 이상의 여자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은 2012년 이후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 2,557명으로 2012년 1,215명, 전년도 2,374명에 비해 각각 약 110%, 8%의 증 가율을 기록했다. 연령분포에 따라 성폭력 피해경험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는 2015년 6세 이하의 아동은 117명이 성범죄 피해경험이 있는 반면. 16세 이상 아 동은 1,657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여성가족부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007	2015	1년

참고문허

•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010~2015, 20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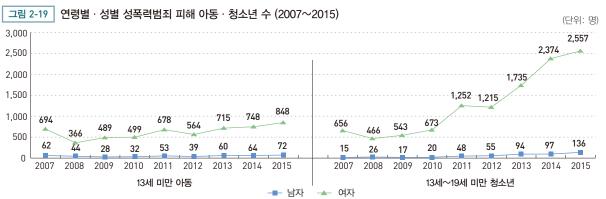


주: 피해자 기준이므로, 가해자 기준과 차이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분석,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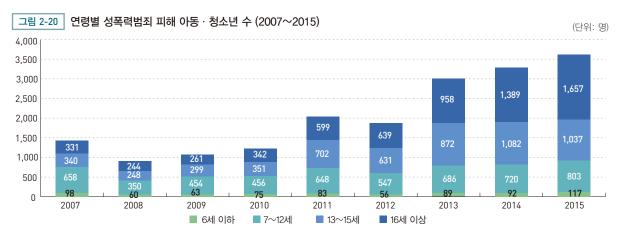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분석, 각 연도



주: 2015년 미상 1명 제외

자료: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분석, 각 연도



자료: 여성가족부,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분석, 각 연도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Rate of School Violence

지표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전국의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의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

2014년 기준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8.5%로 2012년 조사결과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며 여성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폭력 피해의 이유에 대하여 53.3%의 청소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남자청소년(47.4%)보다 여자청소년(58.9%)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두 번째로 많은 이유를 보면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여자청소년의 경우 성격 때문(13.9%)에, 남자청소년의 경우 몸이 작거나 힘이 약했기 때문(14.4%)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변했다.

주된 폭력의 유형은 욕설 및 폭언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따돌림(35.9%), 금품 갈취(29.9%), 구타(25.5%)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유형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남자청소년의 경우 욕설 및 폭언(47.6%), 구타(41.4%)가 집단 따돌림(24.7%)에 비해 많았던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집단 따돌림(46.5%)과 욕설 및 폭언(46.3%)이 구타(10.8%)에 비해 많았다. 주로 폭력을 당한 장소는 교실 안이 46.4%, 학교 교실 밖이 13.3%로 나타나, 학교 공간(59.7%)이 학생 청소년들이 주로 폭력을 경험하는 장소임을 보여준다.

통계정보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1999	2014	부정기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Checkpoint

2014년 중·고등학생의 최근 1년간 폭력 피해 생애경험률은 8.5%로 2012년 대비 2.9% 감소하였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2012년 9.7%에서 7.8%로 감소, 여자청소년은 13.4%에서 9.2%로 감소했다.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표 2-6 연도별 · 성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및 이유

(단위: %)

			폭력 피해를 당한 이유							
연도	도 폭력 피해 경험률		계	특별한 이유 없다	몸이 작거나 힘이 약해서	내가 잘못해서	외모나 장애 때문	성격 때문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타
2010	7.	1	100.0	43.5	13.6	11.4	4.4	10.8	7.0	9.3
2011	6.	7	100.0	42.5	14.2	9.6	3.7	10.5	6.2	13.2
	전체	11.4	100.0	51.8	9.5	9.6	3.7	12.4	2.4	10.5
2012	남	9.7	100.0	54.1	16.1	7.0	2.3	7.7	2.7	10.2
	여	13.4	100.0	50.2	4.7	11.6	4.8	15.8	2.2	10.7
	전체	8.5	100.0	53.3	9.9	6.7	6.3	12.4	3.5	7.9
2014	남	7.8	100.0	47.4	14.4	8.7	71.0	10.8	5.2	6.4
	여	9.2	100.0	58.9	5.7	4.9	5.6	13.9	2.0	9.0

주: 기타는 모름 혹은 무응답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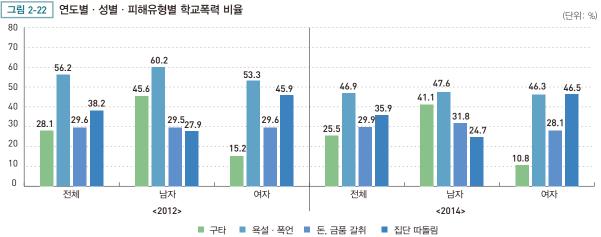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표 2-7 연도별 · 피해유형별 학교폭력 비율

(단위: %)

구분		상처는 었다	신체적 상처가 있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집단적인 따돌림을 당했다	인터넷0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 억지로 당	른 욕, 영을	기타
2010	34	4.9	19.6	33.7	6.3	0.6		4.1
2011	3′	1.1	17.6	26.8	6.1	0.7		17.7
연도	구분		구타	욕설, 폭언	돈, 금품	픟 갈취		집단 따돌림
	전체		28.1	56.2	29	.6		38.2
2012	남		45.6	60.2	29	.5		27.9
	여		15.2	53.3	29	.6		45.9
	전체		25.5	46.9	29	.9		35.9
2014	남		41.1	47.6	31	.8		24.7
	여		10.8	46.3	28	.1		46.5

주: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유형 구분이 달라졌으며,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주: 피해유형은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표 2-8 연도별 · 피해 장소별 학교폭력 비율

(단위: %)

구분	학교교실 안	학교교실 외 교내공간	학교주변	동네 주변	상가, 지하도 안	시내유흥가	공원/야산 등	기타
2010	42.3	21.5	8.6	8.8	3.7	1.5	4.3	8.0
2011	38.3	12.3	8.3	10.5	2.1	1.9	4.1	22.3
2012	51.5	12.7	9.9	10.6	2.8	3.0	2.3	7.2
2014	46.4	13.3	10.6	9.0	3.8	2.5	2.5	11.7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07 "

아동 빈곤율

Child Poverty Rates

지표 정의

절대적 아동 빈곤율은 전체 아동 중 절대적 빈곤선(최저생계비) 미만인 아동(만 18세 미만)의 비율로 정의한다. 상대적 아동 빈곤율은 전체 아동 중 상대적 빈곤선(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인 아동의 비율로 정의한다.

측정 산식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아동 수 전체 아동 수

유의사항

절대적 아동 빈곤율 추정에 있어서는 최저생계비 추정의 기준이 되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하며, 상대적 아동 빈곤율은 OECD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절대적 빈곤율에 따라 아동 빈곤의 수준을 살펴보면, 농어촌가구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절대적 아동 빈곤율은 2006년 5.9%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4년 3.3%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0.3%p증가한 3.6%를 기록하였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공부조 제도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절대 빈곤율은 완화되었으나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상대적 빈곤선을 사용하여 아동의 빈곤 수준을 진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상대적 아동 빈곤율을 살펴보면, 2003년 10.0%에서 2007년 11.0%로 증가한 이후 2008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5년 7.4%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기준 OECD 34개 국가의 평균 아동 빈곤율 13.3%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7.1%로 더 낮게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15	분기, 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 곤통 계연보	2005	2015	1년

Checkpoint

아동의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모두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2015년 아동의 절대적 빈곤율은 경상 소득 적용 시 3.6%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한 반면,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은 가처분 소득 적용 시 7.4%로 전년대비 0.1%p 하락하였다.

참고문헌

•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2014

그림 2-23 절대적 아동 빈곤율과 상대적 아동 빈곤율 (2003~2015)

(단위: %)



주: 1) 농어가가구 제외, 1인가구 제외

2) 절대적 아동 빈곤율은 경상소득 기준이며, 상대적 아동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각 연도,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표 2-9 아동 절대적 빈곤율 (전 가구 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2003~2015)

(단위: %)

7.4		소득		지	출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 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3	6.7	5.6	6.4	7.8	3.9
2004	7.0	5.5	6.4	7.7	3.8
2005	8.3	5.9	7.2	9.0	4.7
2006	8.1	5.9	6.5	8.8	4.7
2007	8.2	5.9	6.7	8.5	5.4
2008	8.2	5.6	6.3	8.4	4.8
2009	8.3	4.9	5.9	9.8	5.3
2010	7.5	4.8	5.5	7.0	3.4
2011	7.1	4.3	5.2	6.5	3.2
2012	6.1	4.4	5.1	6.3	2.9
2013	5.3	3.6	4.2	7.8	3.3
2014	4.7	3.3	4.0	8.7	3.7
2015	5.0	3.6	4.5	9.6	3.9

주: 농어가가구 제외, 1인가구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각 연도,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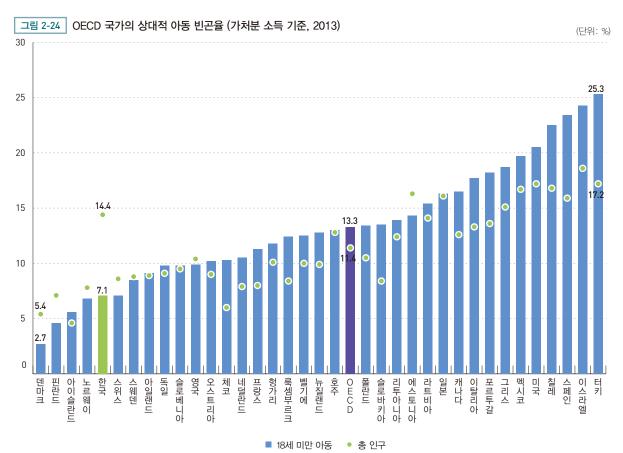
표 2-10 소득 · 지출별 아동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 지출 50%, 전 가구 기준, 2003~2015)

(다위·%)

					(인귀. 76)
구분		소득		Τ.	출
TE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 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3	11.1	10.4	10.0	3.6	4.9
2004	12.4	11.0	10.9	3.8	5.4
2005	13.0	11.7	11.3	4.1	5.7
2006	12.4	11.1	10.4	4.4	6.0
2007	12.9	11.5	11.0	4.7	6.8
2008	12.1	10.8	10.4	3.8	5.9
2009	12.4	10.2	9.5	4.0	5.3
2010	11.3	9.3	9.1	3.3	5.0
2011	11.1	9.7	9.1	3.2	5.0
2012	10.5	9.4	9.3	2.7	4.5
2013	9.1	8.5	8.1	2.6	4.2
2014	8.4	7.9	7.5	3.8	4.4
2015	8.7	7.9	7.4	3.3	4.8

주: 농어가가구 제외, 1인가구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각 연도.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주: 일본, 뉴질랜드는 2012년, 호주, 헝가리, 한국, 멕시코는 2014년 자료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8.01.22.추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수

07-1

Number of Children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

지표 정의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아동·청소년을 지칭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계층으로서 생계, 의료, 주 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수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수는 2001년 395,110명에서 2003년 366,519명으로 감소한 이후 2006년 422,260명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을 기점으로 수급 아동의 감소추세가 두드러졌다. 2014년 251,835명까지 감소한 수급 아동은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라 교육급여의 자격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교육급여 수급 아동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2015년 450,94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6년 수급 아동 수는 438,690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연령별 수급 아동의 분포를 살펴보면 0~4세가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으며, 5~9세 아동의 경우 증감이 거의 없었으며, 10~14세, 15~19세가 2~3% 수준의 감소폭을 보여주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 수급 아동 수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전년도와 유사하게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78,529명)과 서울(68,247명)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부산, 인천, 경남, 전북, 대구 순으로 수급 아동의 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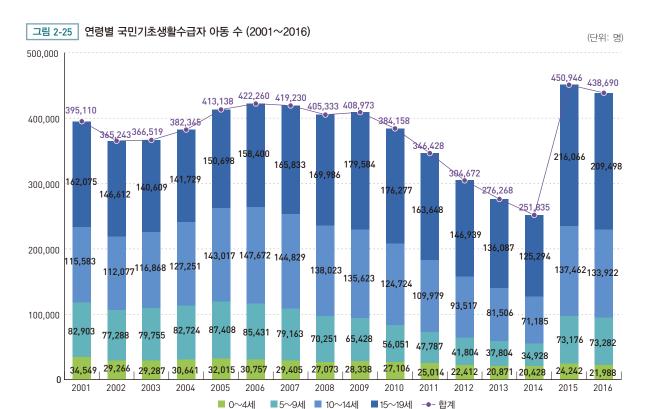
통계정보

		1977	2016	1LF
작성기관	통계명	. 최초 잔성역도	. 치근 잔성여도	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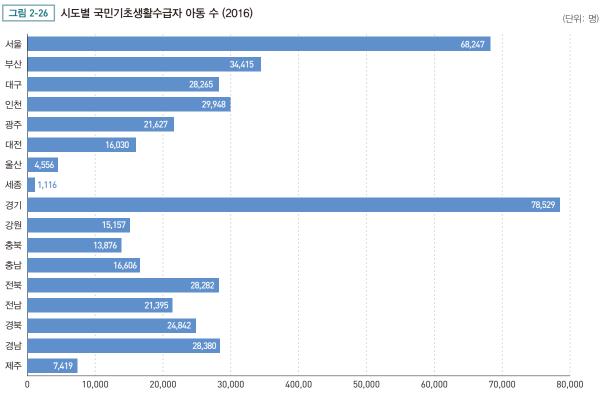
참고문헌

• e-나라지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 (2017.12.21.)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각 연도



주: 0~19세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17

아동급식 지원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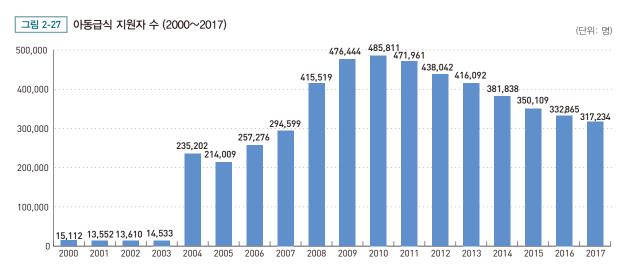
0**7-2**

Number of recipients of School Meals

지표 정의

아동급식은 빈곤, 가족해체 등 여러 가지 가정 사유로 발생하는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 식사를 제공받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제공 \cdot 지원한다 $^{*)**}$.

우리나라는 2000년 10월부터 아동의 건강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11월부터 미취학아동을 위한 조·중·석식, 취학아동을 위한 조식과 석식을 사회복지관과 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와 연계,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제공해 왔다. 2000년 기초생활보장대상 아동 1만 5천 명에게 우선적으로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급식지원대상 아동을 확대하여 차상위아동이 포함되었다. 2005년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어 지방이양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13년 416,092명, 2015년 350,109명, 2017년 317,234명의 아동이 급식을 지원받았다.



주: 매년 12월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지원 (내부자료),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지원(내부자료)	2000	2017	1년

^{*} 지자체(시도/시군구) 제출자료를 취합한 자료임.

^{*}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한다.

^{**}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총괄하는 사업이다.

08

나홀로 아동 수

Number of children staying home alone

지표 정의

나홀로 아동이란 하루에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끼리만 집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방과후 기관 이용 이후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방치된 아동(초등학생 자녀)의 수

2015년 3월 기준 방과 후 기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자녀가 기관 이용 이후에도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거의 없음이 63.0%, 1시간 이상은 37%로 나타나 조사대상 초등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가족의 돌봄 없이 홀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 보면 1 시간 정도 16.8%, 2시간 정도 10.3%, 3시간 정도 5.6%, 4시간 이상 4.3% 순이었다.

가구 대표 성별로 보면 3시간 이하의 비중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4시간 이상은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자녀 돌봄에 공백이 더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가구 대표 연령별로 보면 30세 이상에서는 '거의 없다'가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세~30세 미만에서는 3시간 정도(38.1%)가 가장 높게나타나 젊은층의 부모가 상대적으로 자녀 돌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을 보면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혼자 있는 시간의 비율(63.7%)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한부모가족 자녀의 돌봄 공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05	2015	5년

Checkpoint

2차 가족실태조사에서 '보호자 없이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거의 없다'는 의견이 56.6%, 나머지 43.4%는 1시간~4시간 이상까지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 3차 조사(2015년)보다 방과 후 성인의 보호 없이 방치되는 아동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3차 조사의 경우 방과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만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2010

^{*} 방과 후 기관 이용 초등학생 중 나홀로 아동은 방과 후 기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자녀 중 기관 이용 이후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

표 2-11 가구 대표 성별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일평균, 2015)

					(단의	위: 천명,%)
구분	거의 없다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4시간 이상	전체
남성	528	133	93	47	19	820
	(64.4)	(16.2)	(11.3)	(5.8)	(2.3)	(100.0)
여성	530	149	81	47	53	860
୯୯ ୯	(61.7)	(17.4)	(9.4)	(5.4)	(6.1)	(100.0)
전체	1,059	282	174	94	71	1,680
	(63.0)	(16.8)	(10.3)	(5.6)	(4.3)	(100.0)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2016

그림 2-28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2015)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2016

丑 2-12 가구 대표 연령별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일평균, 2015)

(단위: 천명,%)

구분	거의 없다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4시간 이상	전체
20세~30세 미만	3	3	0	4	0	11
20세~30세 미인	(32.1)	(29.8)	(0.0)	(38.1)	(0.0)	(100.0)
30세~40세 미만	465	122	33	32	18	670
30세~40세 미인	(69.5)	(18.1)	(4.9)	(4.8)	(2.7)	(100.0)
40세~50세 미만	510	141	134	53	49	887
40세~50세 미인	(57.5)	(15.9)	(15.1)	(6.0)	(5.5)	(100.0)
50세~60세 미만	21	13	8	5	4	51
20세, 200세 미단	(41.8)	(24.7)	(14.8)	(10.3)	(8.5)	(100.0)
60세~70세 미만	41	0	0	0	0	41
MANIE - ANNI 미단	(100.0)	(0.0)	(0.0)	(0.0)	(0.0)	(100.0)
70세 이상	17	4	0	0	0	21
104 VIG	(82.4)	(17.6)	(0.0)	(0.0)	(0.0)	(100.0)
전체	1,059	282	174	94	71	1,680
근제	(63.0)	(16.8)	(10.3)	(5.6)	(4.3)	(100.0)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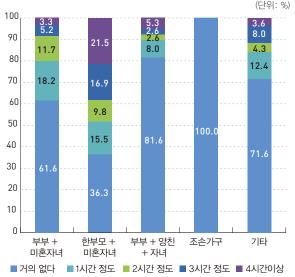
丑 2-13 가구 구성별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일평균, 2015)

(다의·처명%)

				(단위: 선명, %)			
구분	거의 없다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4시간 이상	전체	
부부 +	837	248	159	70	45	1,358	
미혼자녀	(61.6)	(18.2)	(11.7)	(5.2)	(3.3)	(100.0)	
한부모 +	27	11	7	12	16	73	
미혼자녀	(36.3)	(15.5)	(9.8)	(16.9)	(21.5)	(100.0)	
부부 +	113	11	4	4	7	139	
양친 + 자녀	(81.6)	(8.0)	(2.6)	(2.6)	(5.3)	(100.0)	
조손가구	11	0	0	0	0	11	
소 는 기구	(100.0)	(0.0)	(0.0)	(0.0)	(0.0)	(100.0)	
기타	71	12	4	8	4	99	
기타	(71.6)	(12.4)	(4.3)	(8.0)	(3.6)	(100.0)	
전체	1,059	282	174	94	71	1,680	
전세	(63.0)	(16.8)	(10.3)	(5.6)	(4.3)	(100.0)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2016

그림 2-29 가구 구성별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201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Number of uses of Community Child Centers

08-1 ^{연 관}

지표 정의

18세 미만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급식 등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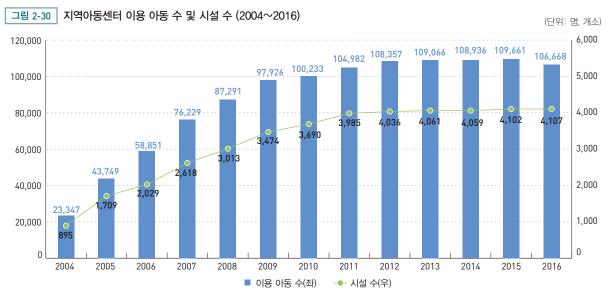
2004년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과거의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라는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되고 전면 지원되기 시작되었으며, 현재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방과 후 돌봄기관으로 자리잡고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소에서 2016년 4,107개소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용 아동 수도 2004년 23,347명에서 2015년 109,661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6년 106,668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2016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령별 분포를 보면 77%가초등학생, 17%가 중학생이었으며, 고등학생(4.1%)과 미취학아동(1.8%)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아동의 경제상황별로는 중위소득 50%이하인 교육급여대상 아동이 25.3%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형태별로는 전체의 67.6%가 양부모 가정이었으며,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각각 16.6%, 11.7%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2008	2016	1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16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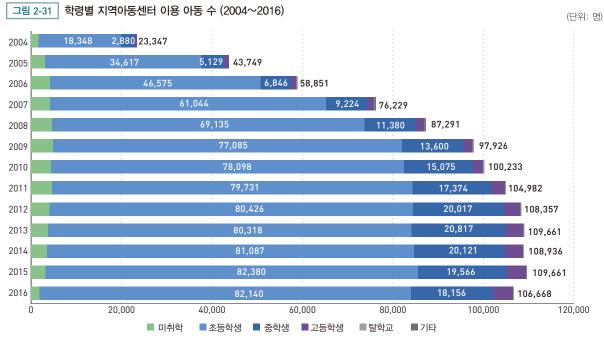
자료: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각 연도

丑 2-14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2004~20 [.]	16)
--------	------------------------------------	-----

(단위: 개소)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895	1,709	2,029	2,618	3,013	3,474	3,690	3,985	4,036	4,061	4,059	4,102	4,107
서울	104	157	210	262	302	354	367	395	404	405	409	414	414
부산	43	95	110	134	155	171	185	194	196	200	200	205	204
대구	21	28	35	60	75	115	147	171	177	188	191	200	199
인천	58	105	117	143	157	175	174	182	187	186	181	179	183
광주	39	80	92	143	164	201	218	272	278	285	292	300	301
대전	24	62	83	122	133	139	144	149	146	147	147	146	145
울산	17	33	41	49	51	54	52	56	57	58	56	56	55
세종	-	-	-	-	-	-	-	-	11	9	10	11	12
경기	192	336	402	534	601	656	679	722	735	728	751	757	763
강원	41	94	102	114	139	159	159	164	164	162	163	166	168
충북	56	102	118	137	156	176	185	201	202	199	190	188	184
충남	39	79	87	125	151	181	200	216	214	221	224	232	226
전북	59	130	147	173	212	255	267	286	288	287	281	281	286
전남	87	182	216	279	307	343	368	399	392	392	383	387	384
경북	34	91	108	143	164	206	232	252	256	261	257	259	258
경남	66	106	128	158	189	219	244	254	257	260	255	253	259
제주	15	29	33	42	57	70	69	72	72	73	69	68	66

주: 세종시는 2012년 7월 출범함.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각 연도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각 연도

표 2-15 학령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2004~2016)

(단위: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23,347	43,749	58,851	76,229	87,291	97,926	100,233	104,982	108,357	109,066	108,936	109,661	106,668
미취학	1,564	3,023	4,133	4,127	4,585	4,838	4,376	4,578	4,028	3,714	3,533	3,133	1,872
초등학생	18,348	34,617	46,575	61,044	69,135	77,085	78,098	79,731	80,426	80,318	81,087	82,380	82,140
중학생	2,880	5,129	6,846	9,224	11,380	13,600	15,075	17,374	20,017	20,817	20,121	19,566	18,156
고등학생	555	958	1,095	1,413	1,862	2,072	2,346	3,014	3,663	4,006	4,035	4,418	4,377
탈학교	-	-	103	104	133	331	338	285	223	211	160	164	123
기타	-	22	99	317	196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각 연도

표 2-16 경제상황별 · 가정형태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2016)

(단위: 명,%)

				(セカ・3, 70)
	구분	이용 아동 수 (명)	비율 (%)	시설당 평균 아동 수 (명)
	전체	106,668	100.0	26.0
	교육급여대상(중위소득 50%이하)	27,030	25.3	6.6
경제상황별	중위소득50%초과~85%이하	40,741	38.2	9.9
	중위소득 85%초과~100%이하	30,812	28.9	7.5
	중위소득100%초과	8,085	7.6	2.0
	전체	106,668	100.0	26.0
	양부모가정	72,120	67.6	17.6
가정형태별	한부모가정	30,145	28.3	7.3
	조손가정	3,323	3.1	0.8
	기타(소년소녀가정 및 친척, 시설)	580	1.0	0.3

자료: 보건복지부, 2016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2017

09 "

요보호 아동 수

Number of Children Needing Protection

지표 정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을 말한다.

측정 산식

• 시 · 군 · 구청에서 보고받아 사회적 보호를 하게 된 아동의 총합

요보호 아동 수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의 IMF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경제상황에 의해서 1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경제가 안정화됨에 따라 2003년(10,222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요보호아동은 2005년 9,420명, 2010년 8,590명으로 감소했으며 2015년 4,503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2016년 4,592명으로 약간 증가세로 돌아섰다.

요보호 아동의 발생 원인은 주로 미혼모·부, 부모 이혼, 학대, 아동 비행·가출 및 부랑, 부모 사망, 실직 등으로 구분된다. 2016년 요보호 아동의 주요한 발생 원인은 학대(33.5%) 및 빈곤, 실직, 부모이혼 등 (26.0%)였으며, 미혼모·부(18.6%), 비행·가출·부랑(6.8%)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요보호 아동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던 미혼모·부는 2000년 4,190명에서 2016년 856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학대의 경우 2008년 891명에서 2016년 1.540명까지 증가하였다.

요보호아동의 조치현황은 시설입소와 가정보호로 구분되며 2016년 양육 시설 등(37.8%), 가정 위탁(22.3%), 공동생활가정(13.2%), 일시보호시설(11.8%) 순으로 조치되었다. 전체 요보호아동 조치에서 시설보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까지 감소하다가 2008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가정보호 중 입양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5.3%에 머물렀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요보호 아동 현황보고 (내부자료)	1994	2016	1년

Checkpoint

요보호 아동의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6년 요보호 아동의 수는 4,592명으로 전년대비 89 명이 증가하였다. 2016년 요보호아동의 발생 원인은 학대, 부모 이혼 등, 미혼모·부가 71.9%를 차지하였고, 2000년 이후 주요한 발생 원인이 되었던 미혼모·부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16년 18.6%였다.

발생 원인별 요보호 아동 건수 및 비중 (1997~2016) 丑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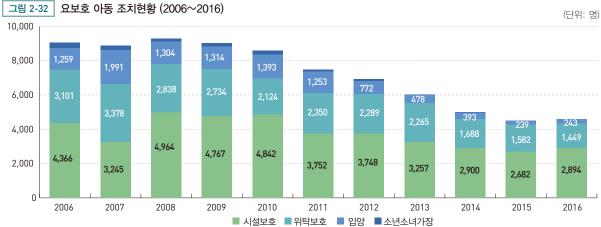
	(단위:건, %)
부모 빈곤	, 실직 등
건	(%)
18 9)	

연도	총 계	기아,	미아	미혼 <u>5</u> (혼외자	고 · 부 ŀ 포함)	비행,	가출	학	대	부모 빈곤	, 실직 등
	건	건	(%)	건	(%)	건	(%)	건	(%)	건	(%)
1997	8,268	1,718	(20.8)	3,137	(37.9)	3,413(41.3)					
1998	10,800	1,940	(18.0)	5,451	(50.5)	3,409(31.6)					
1999	9,000	1,648	(18.3)	4,284	(47.6)			3,068	(34.1)		
2000	9,085	1,422	(15.7)	4,190	(46.1)	1,757	(19.3)		1,716	5(18.9)	
2001	10,586	815	(7.7)	4,897	(46.3)	728	(6.9)		4,146	(39.2)	
2002	10,057	708	(7.0)	4,337	(43.1)	749	(7.4)		4,263	3(42.4)	
2003	10,222	707	(6.9)	4,457	(43.6)	595	(5.8)	4,463(43.7)			
2004	9,393	543	(5.8)	4,004	(42.6)	581	(6.2)		4,265(45.4)		
2005	9,420	492	(5.2)	2,638	(28.0)	1,413	(15.0)		4,877	7(51.8)	
2006	9,034	285	(3.2)	3,022	(33.5)	802	(8.9)		4,925	5(54.5)	
2007	8,861	342	(3.9)	2,417	(27.3)	748	(8.4)		5,354	(60.4)	
2008	9,284	353	(3.8)	2,349	(25.3)	706	(7.6)	891	(9.6)	4,985	(53.7)
2009	9,028	257	(2.8)	3,070	(34.0)	707	(7.8)	1,051	(11.6)	3,943	(43.7)
2010	8,590	401	(4.7)	2,804	(32.6)	772	(9.0)	1,037	[12.1]	3,576	(41.6)
2011	7,483	299	(4.0)	2,515	(33.6)	741	(9.9)	1,125	(15.0)	2,803	(37.5)
2012	6,926	285	(4.1)	1,989	(28.7)	708	(10.2)	1,122	[16.2]	2,822	(40.7)
2013	6,020	306	(5.1)	1,534	(25.5)	512	(8.5)	1,117	(18.6)	2,551	(42.4)
2014	4,994	295	(5.9)	1,226	(24.5)	508	(10.2)	1,105	(22.1)	1,860	(37.2)
2015	4,503	347	(7.7)	930	(20.7)	360	(8.0)	1,094	(24.3)	1,772	(39.4)
2016	4,592	274	(6.0)	856	(18.6)	314	(6.8)	1,540	(33.5)	1,608	(35.0)

주: 1) 부모 빈곤, 실직 등에는 부모 빈곤 ·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이 포함된 수치임.

3) 2016년도 부모 빈곤 · 실직, 이혼 등 사유는 1,196건(26.0%)이며, 부모 질병, 부모 사망의 사유는 412건(8.9%)임.

자료: 보건복지부, 요보호 아동 현황보고 (내부자료), 2017



주: 위탁보호는 가정위탁과 입양 전 위탁을 더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요보호 아동 현황보고 (내부자료), 각 연도

요보호 아동 조치현황 (2016) 丑 2-18

(단위:건,%)

					조치내용					
	시설입소					가정보호				
계	소계	양육시설 등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소계	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위탁	입양 전위탁
4,592 (건)	2,894	1,736	541	12	605	1,698	6	243	1,024	425
100 (%)	63.0	37.8	11.8	0.2	13.2	36.9	0.1	5.3	22.3	9.2

자료: 보건복지부, 요보호 아동 현황보고 (내부자료), 2017

^{2) 2008}년부터 학대, 부모 빈곤ㆍ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 원인이 세부 분류됨.

09-1

아동복지시설 아동 수

Number of uses of Children Welfare Institutions

지표 정의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아동 수는 생활,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과 아동종합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총합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 아동종합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2016년 기준 281개소가 있다.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2015년 전국 243개소를 설치하여 전체 아동복지시설의 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 80.2%를 차지했던 아동양육시설의 비중이 증가하여 2016년에도 같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신설되어 2015년 각각 11개소, 12개소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신설되었던 아동종합시설 5개소는 2009년부터 3개소로 감소하여 그 수를 유지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의 추이를 보면 1990년 23,450명에서 2016년 13,689명으로 감소했다. 시설 유형별 보호 아동 수를 살펴보면, 1990년 전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의 85.9%를 차지했던 아동양육시설은 2015년 91.6%로 5.7%p 증가하였고, 2016년에도 90.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00년 설립되었던 보호치료시설 보호 아동 수는 2000년 전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의 2.6%를 차지했으며 2016년 3.5%로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 (내부자료)	1996	2016	반기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CFOI - 711 Y.)

표 2-19 연도별 · 유형별 아동복지시설 수

						(단위: 개소)
구분	총괄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 동종 합시설
1990	278	223	10			
1995	269	215	13			
2000	269	235	12	6	8	
2005	282	242	13	8	15	
2006	282	243	13	8	15	
2007	282	243	13	8	13	
2008	285	242	12	10	14	5
2009	280	239	12	11	13	3
2010	280	238	12	11	14	3
2011	280	242	12	10	12	3
2012	281	243	12	11	12	3
2013	281	243	13	11	11	3
2014	278	242	12	10	11	3
2015	281	243	12	11	12	3
2016	281	243	12	11	12	3

주: 1)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종합시설을 포함하며, 위 표에서 아동직업훈련 시설은 집계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 (내부자료), 각 연도

표 2-20 연도별 · 유형별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수

(단위: 명)

구분	총괄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 동종 합시설
1990	23,450	20,147	471			
1995	18,074	15,105	620			
2000	17,720	16,293	222	460	387	
2005	19,151	17,729	229	457	626	
2006	18,817	17,517	235	436	554	
2007	18,426	17,161	269	404	365	
2008	17,992	16,706	257	477	341	142
2009	17,586	16,239	262	514	368	138
2010	17,119	15,787	235	495	402	131
2011	16,523	15,313	249	455	361	113
2012	15,916	14,700	256	497	335	128
2013	15,239	14,038	250	486	359	106
2014	14,630	13,437	252	481	336	124
2015	14,001	12,821	243	447	350	140
2016	13,689	12,448	230	485	356	170

주: 1)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종합시설을 포함하며, 위 표에서 아동직업훈련 시설은 집계되지 않음.

2) 종합시설은 일시보호시설과 아동상담소를 겸함.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 (내부자료), 각 연도

²⁾ 종합시설은 일시보호시설과 아동상담소를 겸함.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

09-2

Number of Children under Foster Care

지표 정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는 보호대상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총합

우리나라에서는 시설 위주의 아동보호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시설 내에서 아동의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가정을 통한 아동의 보호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는 시설보호보다 환경적 심리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아동보호방식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선 가정보호, 후 시설보호' 원칙에 기초하여 정부는 2005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가정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위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03년부터 전국에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 중앙가정위탁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각종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왔다.

가정위탁의 유형은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의 관계에 따라 대리양육 가정위탁(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아동양육), 친인척 가정위탁(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일반 가정위탁으로 구분된다. 2016년 기준, 10,197세대 12,896명의 아동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되고 있다. 이 중 대리양육 가정의 아동이 8,578명으로 전체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66.5%를 차지했으며 친인척 위탁가정이 3,348명, 26.0%, 일반 위탁가정의 아동은 970명,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아동의 연령별 분포는 17~19세 아동이 4,825명(37.4%)으로 가장 많았고 14~16세는 2,860명(22.2%), 11~13세는 1,451명(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에 비해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2009년 이후 1세~16세 연령구간의 아동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17~19세, 20세 이상 구간의 아동 및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위탁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현황	2009	2016	1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7 가정위탁지원센터 통합업무메뉴얼,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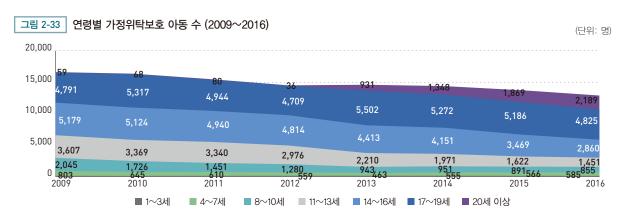
^{*}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제도이다(아동복지법 제3조).

표 2-21 위탁가정 유형별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2009~2016)

(단위: 세대, 명, %)

		7	41	위탁가정유형						
연도	구분	/	11	대리양	육 가정	친인척 :	위탁가정	일반 우	탁가정	
		수	%	수	%	수	%	수	%	
2009	세대 수 (세대)	12,170	(100.0)	7,809	(64.2)	3,438	(28.2)	923	(7.6)	
2007	아동 수 (명)	16,608	(100.0)	10,947	(65.9)	4,503	(27.1)	1,158	(7.0)	
2010	세대 수 (세대)	12,120	(100.0)	7,849	(64.8)	3,365	(27.8)	906	(7.5)	
2010	아동 수 (명)	16,359	(100.0)	10,865	(66.4)	4,371	(26.7)	1,123	(6.9)	
2011	세대 수 (세대)	11,630	(100.0)	7,463	(64.2)	3,351	(28.8)	816	(7.0)	
2011	아동 수 (명)	15,486	(100.0)	10,205	(65.9)	4,260	(27.5)	1,021	(6.6)	
2012	세대 수 (세대)	11,030	(100.0)	7,230	(65.5)	3,037	(27.5)	763	(6.9)	
2012	아동 수 (명)	14,502	(100.0)	9,732	(67.1)	3,831	(26.4)	939	(6.5)	
2013	세대 수 (세대)	11,169	(100.0)	7,294	(65.3)	3,086	(27.6)	789	(7.1)	
2013	아동 수 (명)	14,596	(100.0)	9,776	(67.0)	3,843	(26.3)	977	(6.7)	
2014	세대 수 (세대)	11,077	(100.0)	7,162	(64.7)	3,089	(27.9)	826	(7.5)	
2014	아동 수 (명)	14,385	(100.0)	9,550	(66.4)	3,816	(26.5)	1,019	(7.1)	
2015	세대 수 (세대)	10,706	(100.0)	6,944	(64.9)	2,927	(27.3)	835	(7.8)	
2015	아동 수 (명)	13,728	(100.0)	9,127	(66.5)	3,556	(25.9)	1,045	(7.6)	
2017	세대 수 (세대)	10,197	(100.0)	6,642	(65.1)	2,773	(27.2)	782	(7.7)	
2016	아동 수 (명)	12,896	(100.0)	8,578	(66.5)	3,348	(26.0)	970	(7.5)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표 2-22 연령별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 (2009~2016)

(단위: 명)

연도	계		보호 아동 연령									
건도	/1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2009	16,608	124	803	2,045	3,607	5,179	4,791	59				
2010	16,359	110	645	1,726	3,369	5,124	5,317	68				
2011	15,486	121	610	1,451	3,340	4,940	4,944	80				
2012	14,502	128	559	1,280	2,976	4,814	4,709	36				
2013	14,596	134	463	943	2,210	4,413	5,502	931				
2014	14,385	137	555	951	1,971	4,151	5,272	1,348				
2015	13,728	125	566	891	1,622	3,469	5,186	1,869				
2016	12,896	121	585	855	1,451	2,860	4,825	2,189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아동공동생활가정보호 아동 수

09-3

Number of Children in Grouphomes

지표 정의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의미한다(아동복지법 제52조).

측정 산식

•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총 수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5~7인의 소규모 단위의 가정과 같은 생활시설(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숙사)에서 보호를 제공한다. 1995년 기존의 대규모 시설에 의한 아동보호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보호형태로써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대한 제도적 도입이 처음으로 논의되었으며,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10개 공동생활가정을 선정,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공동생활가정이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공동생활가정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8년 348개소의 그룹홈이 2016년 510개소로 증가하였으며, 보호 아동의 수도 2008년 1,664명에서 2016년 2,758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2-23 아동공동생활가정 수 및 연령별 보호 아동 현황 (2008~2016)

(단위: 개소, 명)

	시설 수			보	호 아동 재학 유	형		
연도	시설 구 (개소)	계	0~7세 (미취학)	8~13세 (초등)	14~16세 (중등)	17~19세 (고등)	20세 이상 (대재)	기타
2008	348	1,664	183	708	435	287	21	30
2009	397	1,993	230	842	518	300	23	80
2010	416	2,127	195	894	543	388	42	65
2011	460	2,241	254	843	619	402	51	72
2012	489	2,438	291	848	682	481	50	86
2013	480	2,481	280	884	670	546	59	42
2014	476	2,588	300	878	661	640	79	30
2015	480	2,636	352	850	652	653	87	42
2016	510	2,758	428	878	701	613	101	37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	1996	2016	반기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10

국내외 입양아동 수

Number of Adopted Children

지표 정의

국내 및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를 의미하며, 국내입양을 활성화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

측정 산식

•국내 및 국외로 입양된 아동의 총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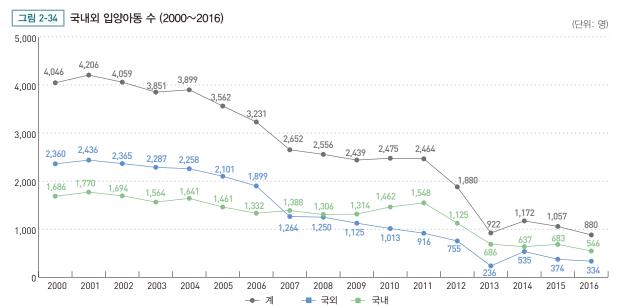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00년에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국내입양 활성화정책 추진,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등으로 전체 입양아동에서 국내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07년을 기점으로 국내입양의 비율은 국외입양의 비율을 앞지르고 있다. 전체 입양아동 수는 2000년 4,046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 880명이었으며 이중 국내입양은 546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전체입양의 감소 폭과 추세는 국외입양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국내입양의 경우 완만한 상대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준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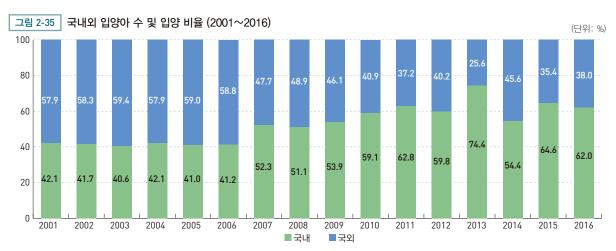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1994	2016	1년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Checkpoint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된 입양아 수 감소 현상은 2013년 922명에서 2014년 1,172명으로 반등세를 보였으나 2015년 1,057명, 2016년 880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전체입양은 국외입양과 유사한 감소폭과 추세를 보여주었으며 2007년을 기점으로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의 비율보다 높아졌다.



자료: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1. 10. 인출)



자료: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1. 10. 인출)

행 복 e 음

10-1 연관

입양아동 관련 급여 수급자

Number of Recipients of Benefits related to Adopted Children

지표 정의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만 16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입양아동 관련 급여수급자는 입양관련 급여 수급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측정 산식

• 입양관련 급여 수급자의 총합

2016년 12월 기준 입양 관련 급여 수급자의 수는 13,376명으로 2015년의 12,872명보다 증가하였다. 장애유무별로는 2016년 12월 기준 입양된 비장애아동 급여 수급자 수(12,916명)가 장애아동 급여 수급자 수(460명)보다 약 28.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입양아동 관련 급여 수급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입양 관련 월평균 급여 수급자의 수는 약 13,142명으로 2015년 12,562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4 연도별 입양아동 급여 수급자 수

(단위: 명)

구분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계	12,255	12,872	13,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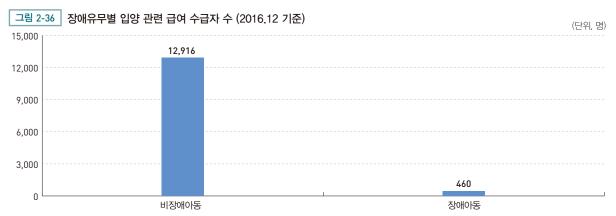
주: 시설 수급자 포함. 단, 2016년부터 시설 거주하게 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됨.

표 2-25 월별 · 시도별 입양아동 급여 수급자 수 (2016)

(단위: 명)

												(LTI. 0)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719	1,723	1,733	1,736	1,737	1,737	1,730	1,737	1,739	1,741	1,750	1,756
부산	674	678	690	692	696	697	700	699	699	702	703	706
대구	430	429	429	430	429	432	433	434	438	442	445	446
인천	854	861	861	867	867	871	871	874	877	879	879	881
광주	412	407	408	409	412	416	416	412	412	414	416	417
대전	354	356	358	358	360	360	364	364	369	371	368	372
울산	219	220	221	221	221	223	223	224	224	227	227	231
세종	90	92	94	96	101	102	102	105	105	105	105	106
경기	3,604	3,620	3,624	3,635	3,645	3,662	3,683	3,698	3,704	3,721	3,735	3,751
강원	479	477	480	480	483	480	481	484	484	485	488	488
충북	418	420	424	423	424	425	426	429	430	432	437	436
충남	651	653	652	657	660	661	663	672	675	675	681	682
전북	700	701	705	703	702	702	699	700	707	704	708	710
전남	556	554	556	555	555	560	560	562	564	565	567	565
경북	635	636	640	641	640	643	645	648	651	652	653	653
경남	913	916	913	914	915	918	926	930	934	937	945	948
제주	219	224	224	225	225	225	226	226	227	227	227	228
계	12,927	12,967	13,012	13,042	13,072	13,114	13,148	13,198	13,239	13,279	13,334	13,376

주: 시설 수급자 포함. 단, 2016년부터 시설 거주하게 되는 겨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됨.



주: 시설수급자 포함. 단, 2016년부터 시설 거주하게 되는 겨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됨.

행 복 e 음

10-2

입양아동의 보육 관련 서비스 수급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Childcare Service related to Adopted Children

지표 정의

본 지표는 입양아동 관련 급여수급자 중 만 5세 이하 아동 중 양육수당, 보육료 그리고 유아학비 이용 현황을 보여준다.

측정산식

•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양아동 관련 급여수급자 중 만 5세 이하 아동의 양육수당, 보육료 그리고 유아학비 수급자 수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게 양육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수급자 중 만 5세 이하 아동의 양육수당, 보육료 그리고 유아학비를 살펴보면 보육료의 평균 수급률이 약 59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양육수당이 약 410명으로 집계되었다.

시도별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평균 약 3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서울이 132명, 경북이 88명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입양아동의 보육 관련 서비스 수급자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3	2016	1년

Checkpoint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입양아동의 보육관련 복지급여의 수급변화를 살펴보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를 이용하는 입양아동 수는 2014년 687명에서 2015년 908명, 2016년 1,205명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보육료 수급자가 급증하였다. 입양아동 중 보육료 수급자는 2014년 272명, 2015년 450명, 2016년 683명으로 급증하였다.

표 2-26 연도별 만5세 이하 입양아동관련 수급자 중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수급자 수

(단위: 명)

												(セカ・8)
구분		2014년	년 12월			2015년	년 12월			2016년	12월	
1 4	전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전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전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서울	99	43	42	14	120	59	53	8	152	75	70	7
부산	33	16	12	5	49	23	24	2	65	31	33	1
대구	22	10	11	1	36	20	16		53	27	24	2
인천	45	28	13	4	53	27	23	3	66	23	41	2
광주	24	13	10	1	27	12	15		27	7	19	1
대전	17	7	8	2	25	11	13	1	48	24	23	1
울산	15	7	5	3	20	11	6	3	23	10	12	1
세종	1	0	1	0	13	7	6		18	7	10	1
경기	209	98	85	26	271	112	148	11	353	143	200	10
강원	25	10	13	2	31	14	16	1	35	12	23	
충북	22	13	7	2	34	19	14	1	50	24	26	
충남	27	16	8	3	32	13	17	2	52	15	36	1
전북	38	17	12	9	58	28	24	6	48	11	35	2
전남	49	25	19	5	69	33	33	3	31	14	17	
경북	33	15	13	5	36	12	21	3	65	25	39	1
경남	21	8	11	2	25	9	14	2	106	39	66	1
제주	7	5	2	0	9	2	7		13	4	9	
합계	687	331	272	84	908	412	450	46	1,205	491	683	31

표 2-27 시도별 · 월별 만5세 이하 입양아동관련 수급자 수 (2016)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서울	120	131	118	120	123	125	130	134	138	143	146	152	132
부산	51	54	54	56	59	60	61	62	63	64	65	65	60
대구	36	36	37	38	38	38	43	44	46	50	53	53	43
인천	59	60	56	59	60	59	63	62	64	65	65	66	62
광주	25	25	23	23	23	23	25	25	25	27	27	27	25
대전	29	30	32	32	34	35	40	41	45	47	46	48	38
울산	22	22	18	18	18	19	19	20	20	22	22	23	20
세종	13	12	14	13	16	16	16	17	17	17	17	18	16
경기	282	289	265	274	282	287	305	316	324	335	345	353	305
강원	31	32	30	30	31	29	28	30	29	30	34	35	31
충북	35	37	39	40	41	41	40	42	43	47	49	50	42
충남	34	37	35	38	39	39	40	45	48	48	51	52	42
전북	36	36	34	34	35	35	35	36	40	42	45	48	38
전남	27	26	20	20	21	22	23	26	28	29	30	31	25
경북	58	62	56	57	57	58	58	62	65	64	64	65	61
경남	77	80	78	79	81	85	88	91	94	98	103	106	88
제주	10	11	10	10	11	11	11	12	12	12	12	13	11
합계	945	980	919	941	969	982	1,025	1,065	1,101	1,140	1,174	1,205	1,037

丑 2-28	시도별 · 월별 만5세 이하 입양아동관련 수급자 중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수급자 수 (2016)	(단위: 명)
		(- 11. 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구분	양육 수당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 수당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 수당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 수당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 수당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 수당	보육료	유아 학비
서울	120	59	53	8	131	59	64	8	118	52	59	7	120	54	59	7	123	56
부산	51	25	24	2	54	25	27	2	54	26	27	1	56	27	28	1	59	30
대구	36	21	15		36	19	16	1	37	17	17	3	38	17	18	3	38	17
인천	59	33	23	3	60	23	32	5	56	17	36	3	59	20	36	3	60	22
광주	25	11	13	1	25	11	13	1	23	9	13	1	23	9	13	1	23	9
대전	29	14	15		30	14	15	1	32	12	19	1	32	12	19	1	34	14
울산	22	12	7	3	22	9	10	3	18	8	9	1	18	8	9	1	18	7
세종	13	7	6		12	6	6		14	6	7	1	13	5	7	1	16	8
경기	282	122	149	11	289	114	158	17	265	94	159	12	274	90	172	12	282	96
강원	31	14	16	1	32	13	18	1	30	9	20	1	30	9	20	1	31	9
충북	35	19	15	1	37	17	19	1	39	22	17		40	21	19		41	21
충남	34	15	17	2	37	14	20	3	35	13	20	2	38	13	23	2	39	14
전북	36	12	21	3	36	11	21	4	34	8	24	2	34	7	25	2	35	5
전남	27	11	14	2	26	9	15	2	20	8	12		20	7	13		21	7
경북	58	29	23	6	62	27	29	6	56	22	33	1	57	23	33	1	57	22
경남	77	38	36	3	80	30	46	4	78	25	51	2	79	27	51	1	81	29
제주	10	2	8		11	3	8		10	2	8		10	2	8		11	3
합계	945	444	455	46	980	404	517	59	919	350	531	38	941	351	553	37	969	369
		7월			8월			9월	,		10월			11월			12월	
구분	양육 수당	7월 보 육 료	유아 학비	양육 수당	8월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 수당	9월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 수당	10월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 수당	11월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 수당	12월 보육료	유아 학비
구분 서울	양육 수당 130		유아 학비 69	양육 수당 7		유아 학비 56	양육 수당 71		유아 학비 138	양육 수당 60		유아 학비 7	양육 수당 143		유아 학비 71	양육 수당 7		유아 학비 67
	수당	보육료	학비		보육료	학비	수당	보육료	학비	수당	보육료	학비	수당	보육료	학비	수당	보육료	학비
서울	수당 130	보육료 54	학비 69	7	보육료 134	학비 56	수당 71	보육료 7	학비 138	수당 60	보육료 71	학비 7	수당 143	보육료 65	학비 71	수당 7	보육료 146	학비 67
서울 부산	수당 130 61	보육료 54 30	학비 69 30	7 1	보육료 134 62	학비 56 30	수당 71 31	보육료 7 1	학비 138 63	수당 60 29	보육료 71 33	학비 7 1	수당 143 64	보육료 65 31	학비 71 32	수당 7 1	보육료 146 65	학비 67 31
서울 부산 대구	수당 130 61 43	보육료 54 30 20	학비 69 30 20	7 1 3	보육료 134 62 44	학비 56 30 20	수당 71 31 22	보육료 7 1 2	학비 138 63 46	수당 60 29 22	보육료 71 33 22	학비 7 1 2	수당 143 64 50	보육료 65 31 26	학비 71 32 22	수당 7 1 2	보육료 146 65 53	専비 67 31 2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당 130 61 43 63	보육료 54 30 20 23	专出 69 30 20 38	7 1 3 2	보육료 134 62 44 62	학비 56 30 20 22	수당 71 31 22 38	보육료 7 1 2 2	학비 138 63 46 64	수당 60 29 22 23	보육료 71 33 22 39	학비 7 1 2 2	수당 143 64 50 65	보육료 65 31 26 23	학비 71 32 22 40	수당 7 1 2 2	보육료 146 65 53 65	학비 67 31 27 2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수당 130 61 43 63 25	보육료 54 30 20 23 7	章비 69 30 20 38 17	7 1 3 2 1	보육료 134 62 44 62 25	56 30 20 22 5	수당 71 31 22 38 19	보육료 7 1 2 2	학비 138 63 46 64 25	수당 60 29 22 23 4	보육료 71 33 22 39 20	寸비 7 1 2 2 1	수당 143 64 50 65 27	보육료 65 31 26 23 6	학비 71 32 22 40 20	수당 7 1 2 2 1	보육료 146 65 53 65 27	학비 67 31 27 23 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당 130 61 43 63 25 40	보육료 54 30 20 23 7 18	等비 69 30 20 38 17 21	7 1 3 2 1	보육료 134 62 44 62 25 41	転出 56 30 20 22 5 16	수당 71 31 22 38 19 24	보육료 7 1 2 2 1	학비 138 63 46 64 25 45	수당 60 29 22 23 4 20	보육료 71 33 22 39 20 24	専制 7 1 2 2 1 1 1	수당 143 64 50 65 27 47	보육료 65 31 26 23 6 22	학비 71 32 22 40 20 24	수당 7 1 2 2 1	보육료 146 65 53 65 27 46	章申 67 31 27 23 6 2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당 130 61 43 63 25 40 19	보육료 54 30 20 23 7 18 8	章申 69 30 20 38 17 21	7 1 3 2 1 1	보육료 134 62 44 62 25 41 20	専用 56 30 20 22 5 16 8	수당 71 31 22 38 19 24 11	보육료 7 1 2 2 1 1	専用 138 63 46 64 25 45 20	수당 60 29 22 23 4 20 8	71 33 22 39 20 24 11	학비 7 1 2 2 1 1	수당 143 64 50 65 27 47 22	보육료 65 31 26 23 6 22 10	학비 71 32 22 40 20 24 11	수당 7 1 2 2 1 1 1	보육료 146 65 53 65 27 46 22	章世 67 31 27 23 6 21 1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수당 130 61 43 63 25 40 19	보육료 54 30 20 23 7 18 8	専用 69 30 20 38 17 21 10 7	7 1 3 2 1 1 1	보육료 134 62 44 62 25 41 20	事出 56 30 20 22 5 16 8 7	수당 71 31 22 38 19 24 11	보육료 7 1 2 2 1 1 1	학비 138 63 46 64 25 45 20	수당 60 29 22 23 4 20 8 7	보육료 71 33 22 39 20 24 11	학비 7 1 2 2 1 1 1	수당 143 64 50 65 27 47 22 17	보육료 65 31 26 23 6 22 10 7	학비 71 32 22 40 20 24 11	수당 7 1 2 2 1 1 1	보육료 146 65 53 65 27 46 22 17	章 性 67 31 27 23 6 21 10 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수당 130 61 43 63 25 40 19 16 305	보육료 54 30 20 23 7 18 8 8	章申 69 30 20 38 17 21 10 7	7 1 3 2 1 1 1	보육료 134 62 44 62 25 41 20 17 316	転出 56 30 20 22 5 16 8 7 118	수당 71 31 22 38 19 24 11 9	보육료 7 1 2 2 1 1 1	학비 138 63 46 64 25 45 20 17 324	수당 60 29 22 23 4 20 8 7	보육료 71 33 22 39 20 24 11 9	학비 7 1 2 2 1 1 1	수당 143 64 50 65 27 47 22 17 335	보육료 65 31 26 23 6 22 10 7	학비 71 32 22 40 20 24 11 9	수당 7 1 2 2 1 1 1	보육료 146 65 53 65 27 46 22 17 345	章 中 67 31 27 23 6 21 10 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수당 130 61 43 63 25 40 19 16 305 28	보육료 54 30 20 23 7 18 8 8 110	ङ्म। 69 30 20 38 17 21 10 7 184 21	7 1 3 2 1 1 1	보육료 134 62 44 62 25 41 20 17 316 30	転出 56 30 20 22 5 16 8 7 118 8	수당 71 31 22 38 19 24 11 9 187 22	보육료 7 1 2 2 1 1 1	専門 138 63 46 64 25 45 20 17 324 29	수당 60 29 22 23 4 20 8 7 124	보육료 71 33 22 39 20 24 11 9 189 22	학비 7 1 2 2 1 1 1	수당 143 64 50 65 27 47 22 17 335 30	보육료 65 31 26 23 6 22 10 7 130 8	학비 71 32 22 40 20 24 11 9 194 22	수당 7 1 2 2 1 1 1	보육료 146 65 53 65 27 46 22 17 345 34	章 性 67 31 27 23 6 21 10 7 13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수당 130 61 43 63 25 40 19 16 305 28 40	보육료 54 30 20 23 7 18 8 110 7	확비 69 30 20 38 17 21 10 7 184 21 19	7 1 3 2 1 1 1 1	보육료 134 62 44 62 25 41 20 17 316 30 42	転出 56 30 20 22 5 16 8 7 118 8 21	수당 71 31 22 38 19 24 11 9 187 22 21	보육료 7 1 2 2 1 1 1 1	専門 138 63 46 64 25 45 20 17 324 29 43	수당 60 29 22 23 4 20 8 7 124 7	보육료 71 33 22 39 20 24 11 9 189 22 21	학비 7 1 2 2 1 1 1 1	수당 143 64 50 65 27 47 22 17 335 30 47	보육료 65 31 26 23 6 22 10 7 130 8 24	학비 71 32 22 40 20 24 11 9 194 22 23	수당 7 1 2 2 1 1 1 1 1	보육료 146 65 53 65 27 46 22 17 345 34	章 計 67 31 27 23 6 21 10 7 137 11 2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수당 130 61 43 63 25 40 19 16 305 28 40 40	보육료 54 30 20 23 7 18 8 110 7 21 13	ङ्म। 69 30 20 38 17 21 10 7 184 21 19 26	7 1 3 2 1 1 1 1 11	보육료 134 62 44 62 25 41 20 17 316 30 42 45	転出 56 30 20 22 5 16 8 7 118 8 21 18	수당 71 31 22 38 19 24 11 9 187 22 21 26	보육료 7 1 2 2 1 1 1 1 11	専門 138 63 46 64 25 45 20 17 324 29 43 48	수당 60 29 22 23 4 20 8 7 124 7 22	보육료 71 33 22 39 20 24 11 9 189 22 21 30	학비 7 1 2 2 1 1 1 1 11	수당 143 64 50 65 27 47 22 17 335 30 47 48	보육료 65 31 26 23 6 22 10 7 130 8 24 17	학비 71 32 22 40 20 24 11 9 194 22 23 30	수당 7 1 2 2 1 1 1 1 11	보육료 146 65 53 65 27 46 22 17 345 34 49 51	章 計 67 31 27 23 6 21 10 7 137 11 2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수당 130 61 43 63 25 40 19 16 305 28 40 40 35	보육료 54 30 20 23 7 18 8 110 7 21 13	확비 69 30 20 38 17 21 10 7 184 21 19 26 29	7 1 3 2 1 1 1 1 11	보육료 134 62 44 62 25 41 20 17 316 30 42 45 36	事中 56 30 20 22 5 16 8 7 118 8 21 18 5	구당 71 31 22 38 19 24 11 9 187 22 21 26 29	보육료 7 1 2 2 1 1 1 1 11	専門 138 63 46 64 25 20 17 324 29 43 48 40	수당 60 29 22 23 4 20 8 7 124 7 22 17	보육료 71 33 22 39 20 24 11 9 189 22 21 30 29	학비 7 1 2 2 1 1 1 1 11	수당 143 64 50 65 27 47 22 17 335 30 47 48 42	보육료 65 31 26 23 6 22 10 7 130 8 24 17	학비 71 32 22 40 20 24 11 9 194 22 23 30 33	수당 7 1 2 2 1 1 1 1 11	보육료 146 65 53 65 27 46 22 17 345 34 49 51	章 中 67 31 27 23 6 21 10 7 137 11 24 15 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북	十分 130 61 43 63 25 40 16 305 28 40 40 35 23	보육료 54 30 20 23 7 18 8 110 7 21 13 4	ङ्म। 69 30 20 38 17 21 10 7 184 21 19 26 29 15	7 1 3 2 1 1 1 1 11	보육료 134 62 44 62 25 41 20 17 316 30 42 45 36 26	事中 56 30 20 22 5 16 8 7 118 8 21 18 5 11	구당 71 31 22 38 19 24 11 9 187 22 21 26 29 15	보육료 7 1 2 1 1 1 11	専門 138 63 46 64 25 20 17 324 29 43 48 40 28	수당 60 29 22 23 4 20 8 7 124 7 22 17 9	보육료 71 33 22 39 20 24 11 9 189 22 21 30 29 15	학비 7 1 2 2 1 1 1 1 11	수당 143 64 50 65 27 47 22 17 335 30 47 48 42 29	보육료 65 31 26 23 6 22 10 7 130 8 24 17 7	학비 71 32 22 40 20 24 11 9 194 22 23 30 33 16	수당 7 1 2 2 1 1 1 1 1 1 1 2	보육료 146 65 53 65 27 46 22 17 345 34 49 51 45 30	章 中 67 31 27 23 6 21 10 7 137 11 24 15 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부	十字 130 61 43 63 25 40 16 305 28 40 35 23 58	보육료 54 30 20 23 7 18 8 110 7 21 13 4 8 23	等비 69 30 20 38 17 21 10 7 184 21 19 26 29 15 34	7 1 3 2 1 1 1 1 11	보육료 134 62 44 62 25 41 20 17 316 30 42 45 36 26 62	事中 56 30 20 22 5 16 8 7 118 8 21 18 5 11 24	구당 71 31 22 38 19 24 11 9 187 22 21 26 29 15 37	보육료 7 1 2 1 1 1 11 1 2	専門 138 63 46 64 25 20 17 324 29 43 48 40 28 65	今号 60 29 22 23 4 20 8 7 124 7 22 17 9	보육료 71 33 22 39 20 24 11 9 189 22 21 30 29 15 37	학비 7 1 2 2 1 1 1 1 11	수당 143 64 50 65 27 47 22 17 335 30 47 48 42 29 64	보육료 65 31 26 23 6 22 10 7 130 8 24 17 7	専門 71 32 22 40 20 24 11 9 194 22 23 30 33 16 38	수당 7 1 2 2 1 1 1 1 1 1 2	보육료 146 65 53 65 27 46 22 17 345 34 49 51 45 30 64	章 中 67 31 27 23 6 21 10 7 137 11 24 15 9

아동 · 가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on Family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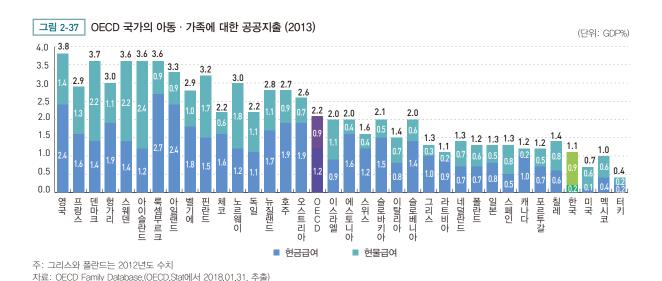
OECD 기준 아동·가족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출산전후 휴가(maternity and parental leave), 기타 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 영육아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가사지원/시설지원(home help/accommodation), 기타 현물지원(other benefits in kind)으로 구성된다.

OECD 기준 사회복지 지출에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상별(노인, 장애인 및 아동가족 등) 및 영역별(보건, 적극적 노동 시장, 실업, 주거 등)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로 인한 지출 등이 포함된다.

측정 산식

•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출산전후 휴가(maternity and parental leave), 기타 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 영육아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가사지원/시설지원(home help/accomodation). 기타 현물지원(other benefits in kind)에 대한 지출의 총합

2013년 기준 한국의 아동가족분야 공공지출은 GDP 대비 1.1%에 불과했으며 OECD 평균 2.2%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지출은 극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0~5세 돌봄 및 보육에 정부예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GDP 대비 0.8%), 보육예산을 제외할 경우 아동복지예산은 더욱 낮아진다. 실제로 2013년 보육을 제외한 아동가족복지 지출예산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 1.4%에 비교해 14.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노인(2.2%)이나 장애인(0.6%)에 대한 복지 지출에 비교해서도 아동가족복지 지출의 수준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미래의 사회적, 공동체적 이익을 담보하기 때문에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특히, 아동발달의 적정단계와 시기에 표적화된 개입은 사회의 경제발전과 지속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가 되므로, 아동복지 예산과 지출을 적정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Family Statistics	-	2013	1년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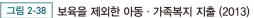
•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2013

표 2-29 연도별 OECD 국가의 아동·가족에 대한 현금급여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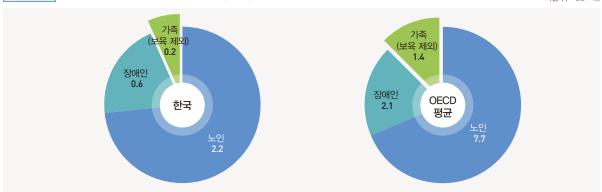
(단위: GDP%)

	0000 414 418	71-101-11-11-11-11				(단위: GDP%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호주	2.3	2.1	1.8	1.8	1.9	1.9
오스트리아	2.3	2.3	2.2	2.0	1.9	1.9
벨기에	1.7	1.7	1.8	1.8	1.8	1.8
캐나다	0.7	0.9	1.0	1.0	1.0	1.0
칠레	0.5	0.4	0.7	0.6	0.6	0.6
체코	1.3	1.5	1.9	1.7	1.6	1.6
덴마크	1.5	1.5	1.6	1.5	1.4	1.4
에스토니아	1.5	1.4	2.1	1.8	1.6	1.6
핀란드	1.7	1.5	1.6	1.5	1.5	1.5
프랑스	1.4	1.3	1.6	1.5	1.6	1.6
독일	1.3	1.3	1.2	1.2	1.1	1.1
그리스	0.6	0.7	0.9	1.0	1.0	-
헝가리	1.9	1.8	2.2	2.1	2.0	1.9
아이슬란드	1.0	1.2	1.4	1.2	1.1	1.2
아일랜드	1.6	2.1	2.9	2.6	2.6	2.4
이스라엘	1.6	1.0	1.0	1.1	1.1	0.9
이탈리아	0.6	0.6	0.7	0.7	0.7	0.8
일본	0.2	0.3	0.8	0.9	0.8	0.8
한국	0.0	0.0	0.0	0.0	0.0	0.2
라트비아	1.2	1.0	1.3	0.9	0.8	0.9
룩셈부르크	2.5	3.1	3.4	3.0	2.9	2.7
멕시코	0.2	0.3	0.4	0.4	0.4	0.4
네덜란드	0.7	0.6	0.7	0.7	0.7	0.7
뉴질랜드	2.1	1.9	2.3	2.2	2.1	1.7
노르웨이	1.8	1.5	1.3	1.3	1.2	1.2
폴란드	1.0	0.9	0.8	0.7	0.7	-
포르투갈	0.6	0.7	0.9	0.8	0.8	0.7
슬로바키아	1.5	1.5	1.6	1.6	1.6	1.5
슬로베니아	1.5	1.3	1.6	1.6	1.5	1.4
스페인	0.3	0.5	0.6	0.5	0.5	0.5
스웨덴	1.4	1.4	1.4	1.4	1.4	1.4
스위스	1.1	1.2	1.2	1.1	1.2	1.2
터키	0.1	0.2	0.2	0.2	0.2	0.2
영국	1.7	2.0	2.5	2.6	2.6	2.4
미국	0.1	0.1	0.1	0.1	0.1	0.1
OECD	1.2	1.2	1.4	1.3	1.3	1.2

주: 그리스, 폴란드는 2013년 수치가 집계되지 않음. 자료: OECD SOCX Database.(OECD.Stat에서 2017.12.17 추출)



(단위: GDP%)



자료: OECD SOCX Database.(2016, 11,15)

노인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노인 건강수준	65세 기대여명	
	노인의 ADL 제한율	
	노인의 운동 실천율	노인의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노인의 학대경험률	
노인 의료이용	노인 진료비	노인의 1인당 외래방문 횟수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노인의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노인 장기요양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장기요양기관 수	장기요양 기관의 전문인력

12 "

65세 기대여명

Life Expectancy at 65 year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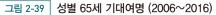
65세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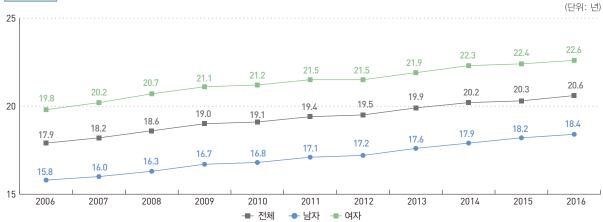
측정 산식

65세 이후의 총 생존연수 (정지인구) 65세의 생존인구 수

2016년 65세 기대여명은 20.6년으로, 남자가 18.4년, 여자가 22.6년이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21.1년(2014년* 기준)으로 가장 높고, 울산이 18.8년으로 가장 낮다. 남자는 서울이 19.0년으로 가장 높고, 울산이 17.0년으로 가장 낮다. 한편, 여자는 제주가 23.4년으로 가장 높고, 울산이 20.5년으로 가장 낮다.

OECD 국가의 65세 기대여명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남녀 모두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높다.





주: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이 개선되어 과거 공표된 '70-'15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2, 05,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생명표 [*]	1970	2016	1년

*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이 개선되어 과거 공표된 1970-2015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Checkpoint

노인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65세 기대여명은 2006년 17.9년에서 2011년 19.4년, 2016년 20.6년으로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다른 인구 집단보다 건강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7, 2017

^{*} 시도별 65세 기대여명 지표는 2014년이 최근 연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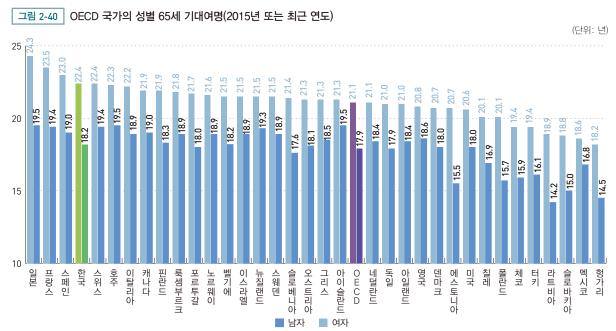
표 2-30 연도별·시도별 65세 기대여명 (단위: 년, %)

		전	체			님	자			여	자	(211, 2, 10)
구분	2008	2011	2014	2008년 대비 2014년(%)	2008	2011	2014	2008년 대비 2014년(%)	2008	2011	2014	2008년 대비 2014년(%)
전국	18.6	19.4	20.2	[8.6]	16.3	17.1	17.9	[10.0]	20.7	21.5	22.3	[7.9]
서울	19.6	20.3	21.0	[7.1]	17.6	18.1	19.0	[8.3]	21.5	22.2	22.8	[6.3]
부산	17.6	18.7	19.7	[11.8]	15.4	16.5	17.7	[15.0]	19.5	20.6	21.5	[9.8]
대구	18.2	18.9	19.9	[9.3]	16.0	16.8	17.8	[11.7]	20.1	20.8	21.7	[7.9]
인천	18.6	19.0	19.9	[7.0]	16.4	16.9	17.8	[8.8]	20.6	20.8	21.8	[5.7]
광주	18.3	18.8	19.6	[7.2]	16.3	16.5	17.6	[8.3]	20.2	20.9	21.5	[6.4]
대전	18.6	19.4	20.3	[9.1]	16.7	17.3	18.3	[9.8]	20.3	21.4	22.1	[9.0]
울산	17.3	18.0	18.8	[8.9]	15.3	15.6	17.0	[11.2]	19.1	20.2	20.5	[7.4]
세종	-	-	20.5	[-]	-	-	18.0	[-]	-	-	22.7	[-]
경기	18.9	19.6	20.4	[8.0]	16.8	17.5	18.3	[8.8]	20.8	21.6	22.4	[7.5]
강원	18.4	19.7	20.1	[9.1]	16.0	17.3	17.6	[9.4]	20.5	21.8	22.4	[9.3]
충북	18.3	18.9	19.9	[8.8]	15.9	16.5	17.5	[10.0]	20.4	21.1	22.1	[8.4]
충남	18.9	19.8	20.3	[7.5]	16.4	17.3	17.8	[8.5]	21.1	22.0	22.6	[7.1]
전북	18.4	19.5	20.2	[9.7]	16.0	17.0	17.7	[10.5]	20.6	21.7	22.5	[9.4]
전남	18.6	19.1	20.2	[8.7]	15.8	16.3	17.1	[8.7]	21.0	21.6	22.9	[9.2]
경북	18.4	19.0	20.0	[8.3]	15.8	16.4	17.3	[9.5]	20.7	21.2	22.3	[7.9]
경남	17.8	18.8	19.7	[10.7]	15.1	16.3	17.1	[13.6]	20.2	21.0	22.0	[9.1]
제주	20.4	20.7	21.1	[3.4]	17.6	17.5	18.5	[5.6]	22.9	23.5	23.4	[2.1]

주: 1)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이 개선되어 과거 공표된 '7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2) 세종은 2008년과 2011년의 자료가 없음.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1. 23. 인출)



주: 캐나다는 2013년, 칠레, 뉴질랜드, 미국은 추정값(Estimated value)임. 자료: OECD Health Data, 2017(stats,oecd,org에서 2017, 12, 05, 인출)

13

노인의 ADL 제한율

Rate of ADL Limitations among adults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은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노년기에 있어서 신체적 독립성의 유지능력과 자립적 노후생활의 영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지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된다.
-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옷 입기, 세수·양치·머리감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의 7개 항목으로 조사된다. 한편,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은 몸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 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 구매하기, 금전 관리하기, 전화 사용하기, 약 챙겨먹기의 10개 항목으로 조사된다.

측정 산식

ADL 제한 응답 노인 수 65세 이상 조사자 수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7개 항목 중 한 개라도 제한을 경험한 비율은 6.9%로,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까지 고려하면 18.2%가 기능상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다. ADL과 IADL의 조사항목은 변화해왔기 때문에, 개별항목 간 비교 분석보다는 기능제한 여부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제한 여부를 살펴보면, 조사가 시작된 1994년부터 지난 20년 동안 ADL 및 IADL 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동지역 거주자에 비해 읍면지역 거주자가, 남자보다 여자가 활동 제한율이 높았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ADL 제한율이 높고, IADL 제한 항목수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1994	2014	3년

Checkpoint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ADL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의 ADL 제한 경험률은 1994년 32.8%에서 2004년 6.9%, 2014년 6.9%로 많이 감소하였다. IADL 제한 경험률 역시 1994년 17.4%에서 2004년 12.4%, 2014년 11.3%로 점차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지난 20년간의 변화는 노인의 기능상태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게 한다.

표 2-31 연도별 노인의 기능상태 제한 현황

(단위: %)

구분	기능제한 없음	IADL만 제한	ADL도 제한 경험	계
1994	49.7	17.4	32.8	100.0
1998	52.7	15.6	31.7	100.0
2004	80.7	12.4	6.9	100.0
2008	81.6	10.4	8.0	100.0
2011	85.1	7.7	7.2	100.0
2014	81.8	11.3	6.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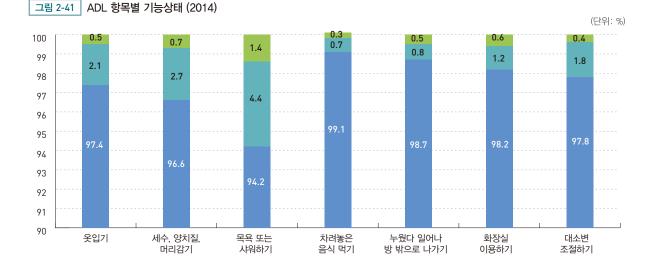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표 2-32 특성별 노인의 기능상태 제한 현황 (2014)

(단위: %)

	78	전체			연령별			지	격별	성	별
	구분	신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동	읍면	남자	여자
기	등제한 없음	81.8	94.6	86.4	80.3	65.7	44.0	82.9	78.1	89.4	76.3
IA	DL만 제한	11.3	3.2	9.4	12.8	21.3	30.5	10.2	15.0	5.6	15.4
ADL	도 제한 경험	6.9	2.2	4.1	6.9	13.0	25.5	6.9	6.9	5.0	8.3
	완전자립	82.2	94.7	87.0	80.9	66.3	44.2	83.3	78.4	89.4	77.0
	1~2개 도움	7.9	2.6	6.6	9.6	15.7	17.0	6.9	11.4	3.0	11.5
IADL	3~4개 도움	3.5	1.1	2.7	3.4	6.9	10.4	3.3	3.8	2.4	4.2
ADL	5~6개 도움	2.3	0.5	1.8	2.3	4.0	8.5	2.2	2.7	1.8	2.7
	7~8개 도움	1.9	0.8	1.0	1.7	3.6	7.9	2.0	1.9	1.4	2.3
	9~10개 도움	2.2	0.4	0.9	2.1	3.5	12.0	2.3	1.8	1.9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14



■ 완전도움 ■ 부분도움 ■ 완전자립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14

14

노인의 운동 실천율

Rate of physical activity in adults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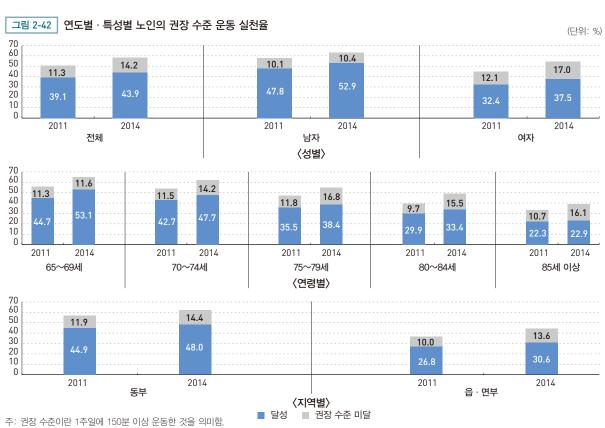
조사 대상 노인인구 중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운동실천 응답 노인 수 65세 이상 조사자 수

2014년 노인의 운동 실천율은 58.1%로, 남자가 63.3%, 여자가 54.5%이다. 연령별로는 65~69 세가 64.7%로 가장 높고, 85세 이상이 39.0%로 가장 낮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동지역 거주자 가 62.4%로 읍면지역 거주자의 44.2%에 비교해서 높다.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는 권장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2014년의 경우, 권장수준을 달성한 사람은 43.9%, 권장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은 14.2%이다.



주: 권장 수준이란 1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한 것을 의미혼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1994	2014	3년

Checkpoint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 활동은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근력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과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인에게 있어서 운동은 더욱 중요하다. 비록 우리나라 노인의 고위험 음주율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운동 실천율과 흡연율의 건강행태가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Current Smoking Rate and High Risk Alcohol Consumption,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현재 흡연율은 조사 대상 노인 인구 중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이다. 고위험 음주율은 조사 대상 노인 인구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자이면서,
• 현재 흡연율(%) = 변재 '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으로 응답한 사람 수 만 65세 이상 대상자 수

최근 1년간 음주빈도 문항 주2회 이상 응답자이면서,
1회 음주량 문항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 응답자
고위험 음주율(%) = 만 65세 이상 대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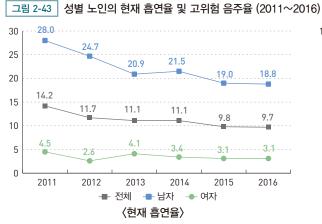
노인의 건강행태는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지표 모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현재 흡연율은 감소하였고, 고위험 음주율은 증감을 반복하였지만 최근에는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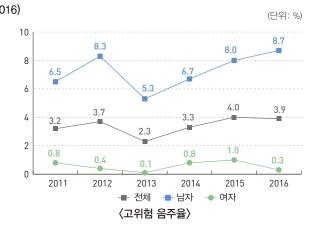
표 2-33 성별 노인의 현재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 (2011~2016)

(단위: %)

78	전체			남자				여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현재 흡연율	14.2	11.7	11.1	11.1	9.8	9.7	28.0	24.7	20.9	21.5	19.0	18.8	4.5	2.6	4.1	3.4	3.1	3.1
고위험 음주율	3.2	3.7	2.3	3.3	4.0	3.9	6.5	8.3	5.3	6.7	8.0	8.7	0.8	0.4	0.1	0.8	1.0	0.3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통계정보

H71H	그미거가여야도나	1000	2017	1년
잔선기과	. 통계명	치초 자서여드	치그 자서여도	조기

노인의 학대경험률

Rate of self-reported Elderly abuse

대표

지표 정의

노인의 학대경험률은 조사에 참여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수의 비율로 정의된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및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1 조2 제4호에 의하여 규정된다. 노인학대를 유형에 따라 신체학대, 정서학대(언어학대), 경제학대, 방임학대로 나누어 경험률을 파악하였다. 이는 노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의의가 있다.

측정 산식

학대경험 응답 노인 수 65세 이상 조사자 수

노인학대는 유형에 따라 신체학대, 정서학대(언어학대), 경제학대, 방임학대로 구분될 수 있다. 신체학대는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되며, 정서학대(언어학대)는 위협 등의 언어 혹은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또한 경제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인 착취와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방임학대의 경우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2014년 전체 노인 중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비율은 9.9%으로 2011년과 비교하여 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에서 방임학대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가장 발생율이 높은학대의 종류는 정서적 학대로 7.3%에 이른다. 여성노인의 학대경험률은 10.6%로 남성노인의 학대경험률(8.9%)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시지역(동부)의 노인의 학대경험률(10.8%)은 농어촌지역(읍·면부)의 학대경험률(6.9%)보다 3.9%p 높게 나타나 지역 간의 차이를 보인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1994	2014	3년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2005	2016	1년

Checkpoint

2014년 노인의 학대경험률은 9.9%으로 2011년의 12.7%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모든 학대 유형은 감소했으나 방임학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록 2016년 일반사례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358건 감소하였으나, 학대 사례 신고건수는 462건이 증가하여 그 심각성을 짐작하게 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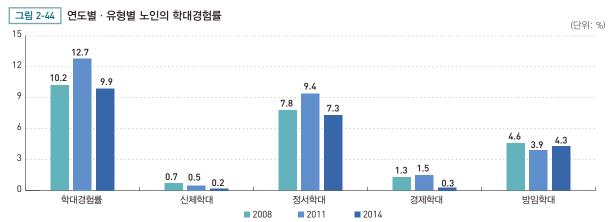
• 보건복지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17

표 2-34 연도별 · 일반특성별 · 유형별 노인의 학대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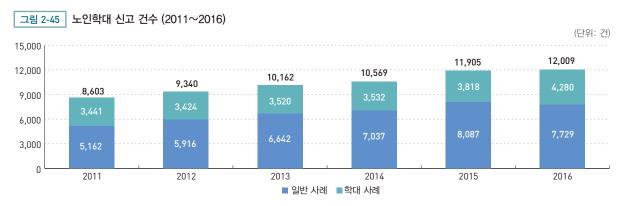
(단위: %)

					학대 유형별 경험률		(근거: %)
	구분 학대경험		타인으로 부터의 신체적 고통	타인의 말과 행동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
전체	2011	12.7	0.5	9.4	1.5	1.4	2.5
신세	2014	9.9	0.2	7.3	0.3	1.5	2.8
성	남자	8.9	0.1	6.7	0.3	1.1	2.3
	여자	10.6	0.2	7.7	0.4	1.8	3.1
연령	65~69세	8.9	0.1	7.4	0.3	0.7	1.5
	70~74세	10.8	0.2	8.3	0.4	1.4	2.8
	75~79세	10.6	0.2	7.3	0.4	2.1	3.3
	80~84세	10.1	0	6.5	0.2	2.1	3.9
	85세 이상	8.8	0.4	4.4	0	2.8	4.5
지역	동부	10.8	0.1	7.9	0.4	1.7	3.1
-13.113	읍 · 면부	6.9	0.2	5.4	0.1	0.9	1.7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01.22 인출)



주: 방임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을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01.22 인출)



주: 1) 일반 사례: 신고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 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 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

2) 학대 사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로 판정된 사례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각 연도(http://kosis.kr에서 18.01.22 인출)

16

노인 진료비

Medical Expenditures on adults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진료비이다.

'노인 진료비의 비율'과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를 통해 노인이 지출한 진료비 수준을 확인하고, 노인 1인의 부담 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

유의사항

- '노인 진료비 비율'은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65세 이상 인구의 연간 진료비를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한 달 분으로 환산해준 값이다.
- 진료비는 급여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의 합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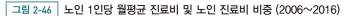
노인 진료비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노인 진료비는 2006년 7.4조 원에서 2016년 25.3조 원으로 약 3.4배 증가하였다. 전체 인구의 총진료비가 같은 기간 동안 약 2.3배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높은 증가율이다. 이와 같은 증가세로 노인 진료비가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5.9%에서 2016년 39.1%로 크게 늘었다.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16년 326,729원으로 2006년의 150,389원에 비해 2.2배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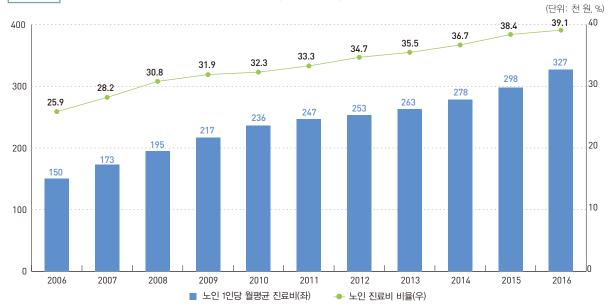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994	2016	1년

Checkpoint

노인 인구의 급증과 기대여명의 향상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은 전년 대비 0.4%p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노인 진료비의 비중도 0.7%p 증가하였다. 빠른 의료비 증가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바, 노인 진료비 역시 정책적 개입을 통한 관리가 요구된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표 2-35 노인 진료비 비율 및 노인(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 (2006~2016)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인구(천 명)	47,410	47,820	48,160	48,614	48,907	49,299	49,662	49,999	50,316	50,490	50,763
65세 이상 인구(천 명)	4,073	4,387	4,600	4,826	4,979	5,184	5,468	5,740	6,005	6,223	6,445
노인인구 비율(%)	(8.6)	(9.2)	(9.6)	(9.9)	(10.2)	(10.5)	(11.0)	(11.5)	(11.9)	(12.3)	(12.7)
총 진료비(억 원)	284,103	323,892	348,690	393,390	436,283	462,379	478,392	509,552	544,272	579,546	645,768
65세 이상 진료비(억 원)	73,504	91,190	107,371	125,442	140,987	153,961	166,237	181,128	199,974	222,361	252,692
노인 진료비(%)	(25.9)	(28.2)	(30.8)	(31.9)	(32.3)	(33.3)	(34.7)	(35.5)	(36.7)	(38.4)	(39.1)
전체 인구1인당 월평균 진료비(원)	49,937	56,443	60,335	67,434	74,339	78,159	80,275	84,927	90,142	95,653	106,010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원)	150,389	173,220	194,513	216,608	235,969	247,494	253,348	262,976	277,526	297,768	326,729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주: 1) 적용인구는 연도말 기준 2) 전체 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진료비/연평균 건강보험 적용인구)/12

³⁾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65세 이상 진료비/연도말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인구)/12

⁴⁾ 반올림 계산하여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노인의 1인당 외래방문 횟수

Averag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ged 65 and over

16-1 ^{연 관}

지표 정의

외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횟수를 외래방문 횟수(또는 내원 일수)라고 하며, 1인 당 외래방문 횟수는 1년 동안의 총 외래방문 횟수를 조사대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단, 65세 이상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측정 산식

• 1인당 외래방문 횟수 = 의래 의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횟수 (조사대상)인구 수

• 입원 건당 입원 일수 = 입원 의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병원에 머무는 날 입원건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방문 횟수(16,0회)가 OECD 국가 평균(6,9회)보다 2.3배 높은 가운데(OECD, 2017)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노인의 외래방문 빈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 1인당 의료이용 서비스 빈도를 서비스 유형(외래, 입원), 서비스 성격(양방, 한방), 의료보장 가입유형(건강보험, 의료급여)에 따라서 살펴보면, 양방과 한방 모두 70~74세의 외래방문횟수가 많다. 양방 외래서비스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서 이용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환자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방 외래서비스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입원서비스는 양방에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입원건당 입원 일수가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의료급여환자의 입원 일수가 매우 길게 나타났다.

표 2-36 노인의 1인당 의료이용 현황 (2011)

(단위: 회, 일)

78		외래방문 횟수			입원 건당 입원 일수	
구분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양방〉					,	
65~69세	32.4	30.4	37.6	10.5	11.3	30.8
70~74세	35.6	34.9	39.1	11.3	12.6	34.7
75세 이상	30.2	28.8	34.2	13.4	14.3	60.4
〈한방〉						
65~69세	12.8	12.5	13.6	5.3	6.0	1.6
70~74세	14.1	14.2	14.0	4.5	5.0	2.7
75세 이상	13.8	13.9	13.6	2.3	2.5	1.7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11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01	2011	5년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Inspection Rate of General Health Check-ups,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 습관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반 건강검진으로 이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거나, 인지기능장에 위험이 높다고 판정된 사람은 2차 검진을 받게 된다.

측정 산식

65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수검 인원 65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유의사항

여기에서는 건강보험대상자의 검진 실적만 검토한다.

노인 인구의 2016년 일반건강검진(1차 검진) 수검률은 68.1%로, 남자는 72.3%, 여자는 64.7%이다. 한편, 1차 검진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2차 검진의 수검률은 33.7%(남자 37.7%, 여자 29.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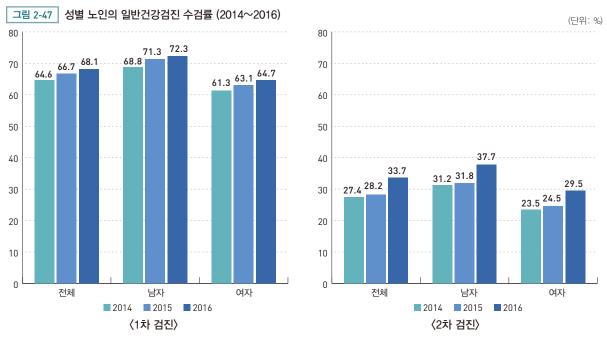
만 70세와 만 74세의 노인은 일반검진과 함께 정신건강검사를 받는다. 2016년에는 1차 검진을 받은 490,638명 중에서 39,157명이 2차 검진을 권고 받았으며, 이 중에서 12,343명만이 2차 검진을 하였다. 2차 검진 결과에 의하면,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서 5,038명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의 40.8%에 달하는 수치이다. 정신건강검사에 있어서 2차 추가검진을 권고 받은 사람 중에서 실제로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31.5% 수준이다. 울산(43.0%), 부산(41.1%), 대전(39.9%)에서 2차 검진 실천율이 높고, 경북(22.0%)과 충남 (16.7%)에서는 2차 검진 실천율이 낮다.

통계정보

	건강검진통계	2008	2016	1년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Checkpoint

2016년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1차 68.1%, 2차 33.7%)은 전년에 비교해서 크게 상승했으나 전체 인구의 일반검진 수검률(77.7%, 40.6%)보다 각각 9.6%p, 6.9%p 낮다. 예방관리 차원에서 모든 연령 대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주: 2차 대상인원은 1차 검진의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검사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수검자에 해당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2, 25, 인출)

표 2-37 시도별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 (70세 및 74세 대상, 2016)

(단위: 명 %)

			3-1 2-1 (10-11 2		,		(단위: 명, %)
구분	1차 검진			2차 검진			
	대상 인원	특이 소견 없음	2차 추가 진단 필요(A)	수검자 (B)	특이 소견 없음	인지 기능 저하 판정인	2차 검진 실천율 (B/A)
전국	490,638	451,481	39,157	12,343	7,305	5,038	(31.5)
서울	93,341	84,487	8,854	2,837	1,680	1,157	(32.0)
부산	36,669	33,930	2,739	1,125	765	360	(41.1)
대구	22,057	20,987	1,070	372	218	154	(34.8)
인천	22,721	20,604	2,117	771	452	319	(36.4)
광주	13,626	12,669	957	322	219	103	(33.6)
대전	12,596	11,222	1,374	548	345	203	(39.9)
울산	7,120	6,523	597	257	171	86	(43.0)
세종	1,625	1,424	201	45	28	17	(22.4)
경기	95,883	86,320	9,563	3,195	1,823	1,372	(33.4)
강원	19,743	18,103	1,640	493	280	213	(30.1)
충북	17,649	16,378	1,271	324	166	158	(25.5)
충남	23,515	21,522	1,993	332	180	152	(16.7)
전북	26,363	24,773	1,590	489	290	199	(30.8)
전남	29,721	28,527	1,194	313	196	117	(26.2)
경북	32,398	30,700	1,698	373	188	185	(22.0)
경남	30,245	28,378	1,867	420	231	189	(22.5)
제주	5,366	4,934	432	127	73	54	(29.4)

주: 1) 2차 대상인원은 1차 검진의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검사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수검자에 해당함. 2) 2차 검진 실천율 = (2차검진 수검자/2차 추가 진단 필요 판정인)×1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건강검진통계연보, 2017 (http://kosis.kr 에서 2017, 12, 25, 인출)

노인의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17-1

Inspection Rate of General Health Check-ups by Core items, aged 65 and 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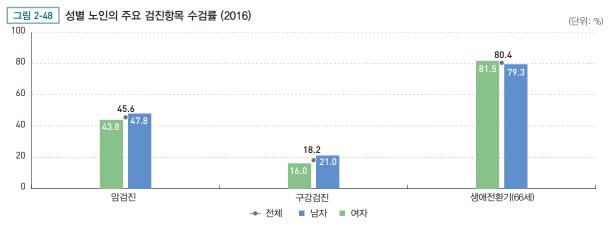
지표 정의

건강검진 대상 인원 중 특정 항목의 검진을 받은 인원의 비율이다. 특정 검진항목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 이외의 암검진, 구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 해당한다.

측정 산식

특정항목 건강검진 수검자 특정항목 건강검진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검진 이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검진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5개 상병(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하는 암검진은 45.6%, 구강검진은 18.2%, 만66세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80.4%의 수검률을 보인다.



- 주: 1) 암검진 대상 부위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지궁경부암임.
 - 2) 구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진단 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나, 여기에서는 일반검진과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만을 고려함.
 -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 경우 40세와 66세를 대상으로 각각 1차와 2차에 걸쳐 두 차례씩 실시되며, 1차 수검자 전체가 2차 검진의 대상이 되고 있음. 따라서 여 기에서는 1차 대상인원과 1차 수검 인원을 기준으로 값을 제시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건강검진통계연보, 2017 (http://kosis.kr 에서 2017. 12. 25.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건강검진통계	2008	2016	1년

18 "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Coverage of Public Long-term Care,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공적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공적장기요양보호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해당된다.

인구구조와 가족구성이 변화함에 따라서 기능상 제약이 있는 노인이 일상생활 중에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는 노인의 삶을 돌보고, 이들에 대한 주변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측정 산식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65세 이상 인구 수

2016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이용자는 약 48만 7천여 명으로, 65세이상 노인 인구의 약 7.0%에 해당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44만 3천여 명(90.9%)이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는 4만 4천여 명(9.1%)이다.

통계정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 (내부자료)	_	2016	부정기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Checkpoint

공적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2011년 이후 연평균 8.4%의 증가를 하여 2016년 약 48만 7천여 명에 이르 렀다. 사업별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연평균 9.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가 연평균 3.3%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2011년 5.7% 수준이던 공적장기요양보호율은 2016년 7.0%로 높아졌다.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의 확대가 노인 인구의 급속한 팽창 속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발전적인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38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2011~2016)

(단위: 명,%)

구분	-	공적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자	65세 이상 노인 수	공적장기요양	
TE	소계	장기요양서비스	노인 돌봄종 합서비스	83세 이상 포한 구	보 <u>호율</u> (%)	
2011	325,970	288,242	37,728	5,700,972	(5.7)	
2012	338,140	300,869	37,271	5,980,060	(5.7)	
2013	373,807	331,525	42,282	6,250,986	(6.0)	
2014	411,355	364,596	46,759	6,520,607	(6.3)	
2015	443,189	399,761	43,428	6,775,101	(6.5)	
2016	487,112	442,819	44,293	6,995,652	(7.0)	

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 기준으로, 인정자 중 각 연도 1월~12월까지 누적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재(중복자, 사망자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내부자료), 2016



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 기준으로, 인정자 중 각 연도 1월~12월까지 누적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재중복자, 사망자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내부자료), 2016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Rate of People in receipt of Long-term Care, aged 65 and over

18-1 ^{연 관}

지표 정의

65세 인구 중 유급 장기요양서비스(시설 또는 재가)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시설 장기요양수급자(병원 외)는 재원(공공재원과 민간재원)에 상관없이 공식적인 시설에서 유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이며,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는 움직임의 제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집에서 유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이다.

측정 산식

유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인구 65세 이상 인구 수

2015년에 65세 이상 장기요양수급자^{*}는 481,383명으로, 시설이 168,717명, 재가가 312,666명이다. 시설 이용자는 여자가 131,584명(78.0%), 남자가 37,133명(22.0%)이고, 재가 이용자는 여자가 222,642명(71.2%), 남자가 90,024명(28.8%)이다.

2015년 장기요양 수급률은 7.4%로, 시설이 2.6%, 재가가 4.8%이다. 급여종류별로 남녀의 수급률을 살펴보면, 시설은 여자가 3.5%, 남자가 1.4%이고, 재가는 여자가 5.9%, 남자가 3.3%이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수급률은 2011년 6.6%, 2013년 6.7%, 2015년 7.4%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OECD 국가의 평균인 12.2%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Health Statistics	-	2017	1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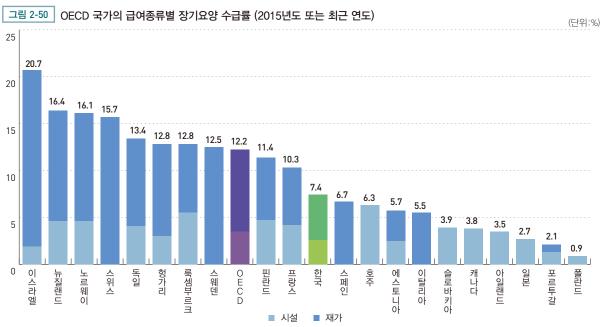
[•] OECD는 수급자를 재가와 시설을 구분하여 수집하는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모두 수급한 경우에 중복 계산됨(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표 2-39 성별 ·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수급자 및 장기요양 수급률 (2011~2015)

(단위: 명,%)

ᄀᆸ		전체			남자			여자	
구분	계	시설	재가	계	시설	재가	계	시설	재가
2011	361,604	126,078	235,526	99,634	29,058	70,576	261,970	97,020	164,950
2011	(6.6)	(2.3)	(4.3)	(4.4)	(1.3)	(3.1)	(8.1)	(3.0)	(5.1)
2012	370,810	139,384	231,426	100,499	31,655	68,844	270,311	107,729	162,582
2012	(6.4)	(2.4)	(4.0)	(4.2)	(1.3)	(2.9)	(8.0)	(3.2)	(4.8)
2013	403,611	149,454	254,157	108,118	33,188	74,930	295,493	116,266	179,227
2013	(6.7)	(2.5)	(4.2)	(4.3)	(1.3)	(3.0)	(8.4)	(3.3)	(5.1)
2014	437,734	157,363	280,371	115,820	34,405	81,415	321,914	122,958	198,956
2014	(7.0)	(2.5)	(4.5)	(4.4)	(1.3)	(3.1)	(8.8)	(3.4)	(5.4)
2015	481,383	168,717	312,666	127,157	37,133	90,024	354,226	131,584	222,642
2013	(7.4)	(2.6)	(4.8)	(4.7)	(1.4)	(3.3)	(9.4)	(3.5)	(5.9)

자료: OECD, OECD Health Data(stat,oecd,org에서 2017, 12, 06, 인출)



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국가가 많은 가운데, OECD DB에 올라온 정보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자료: OECD Health Data, 2017(stats,oecd,org에서 2017, 12, 06, 인출)

19 H

장기요양기관 수

Number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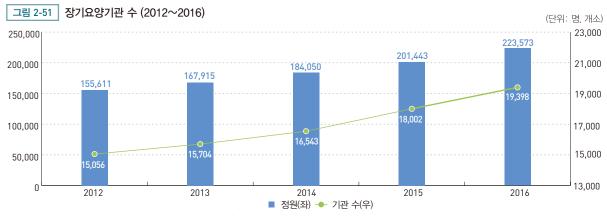
지표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이다. 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재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와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모두 해당한다.

측정 산식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

2016년 장기요양기관은 전년에 비교해서 7.8% 증가한 19,398개이다. 급여종류에 따르면 재가가 14,211개(73.3%), 시설이 5,187개(26.7%)이다. 재가와 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경기가 4,562개로 가장 많은 가운데, 장기요양기관의 44.8%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2016년 장기요양기관의 정원은 223,573명이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1. 2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2008	2016	1년

Checkpoint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래,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2008년 8,318개이던 장기요양기관은 연평균 11.2%씩 증가하여 2016년 19,398개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의 향상에 대해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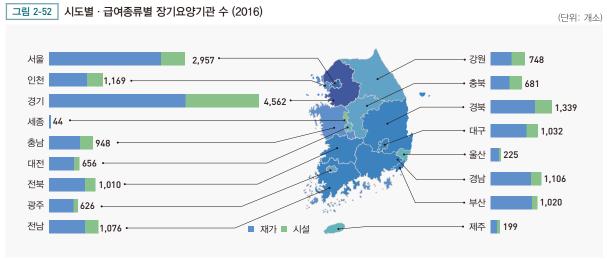
표 2-40 시도별 ·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수 (2016)

(단위: 개소)

					재가					시설	
구분	전체	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계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전국	19,398	14,211	11,072	8,957	598	2,410	267	1,823	5,187	3,137	2,050
서울	2,957	2,426	1,788	1,553	126	314	85	333	531	195	336
부산	1,020	899	744	571	23	116	1	132	121	93	28
대구	1,032	775	609	470	28	189	28	78	257	92	165
인천	1,169	823	684	603	30	83	15	109	346	236	110
광주	626	524	427	267	13	87	0	63	102	79	23
대전	656	536	426	377	20	90	1	68	120	81	39
울산	225	181	143	106	16	40	0	23	44	30	14
세종	44	35	28	19	1	5	1	4	9	8	1
경기	4,562	2,963	2,223	1,910	135	532	75	378	1,599	962	637
강원	748	448	341	267	39	93	9	55	300	177	123
충북	681	409	306	214	16	98	5	51	272	165	107
충남	948	663	529	439	25	131	10	82	285	173	112
전북	1,010	782	588	444	26	129	3	107	228	162	66
전남	1,076	777	650	429	26	137	5	75	299	201	98
경북	1,339	963	775	608	39	201	21	117	376	244	132
경남	1,106	874	719	595	26	119	8	117	232	182	50
제주	199	133	92	85	9	46	0	31	66	57	9

주: 1) 연도말 기준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7 (http://kosis.kr 에서 2017. 11. 27. 인출)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7 (http://kosis.kr 에서 2017, 11, 27, 인출)

²⁾ 재가의 소계는 급여종류에 따른 중복을 제외한 것임.

³⁾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구법),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은 2013년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됨.

장기요양 기관의 전문인력

Number of Long-term Care Workers

19-1

지표 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의사(촉탁의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수이다.

측정 산식

•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 인력의 수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간호사 등의 다양한 전문 인력이 근무 중이다. 2016년 장기요양기관의 전문 인력은 총 344,242명으로, 요양보호사가 313,013명, 사회복지사가 14,682명, 간호조무사가 9,080명이다. 이는 2015년에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5.9%가 증가한 것이다.

주요 전문 인력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이 편중된 서울과 경기지역에 전문 인력도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2008	2016	1년

표 2-41 급여종류별 전문인력 현황 (2014~2016)

(단위: 명)

									(L III: 0)
구분		전체			재가		시설		
TE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계	292,889	324,946	344,242	226,636	253,861	273,748	73,116	79,103	78,664
요양보호사	266,538	294,788	313,013	216,358	241,323	259,595	56,072	60,386	60,549
사회복지사	11,298	13,923	14,682	6,623	8,440	9,747	4,817	5,634	5,001
간호사	2,683	2,719	2,675	1,213	1,218	1,249	1,575	1,595	1,506
간호조무사	8,241	9,099	9,080	2,073	2,476	2,730	6,752	7,303	7,036
물리(작업)치료사	1,813	1,952	1,974	225	246	243	1,668	1,806	1,835
의사(촉탁포함)	1,324	1,415	1,683	94	103	129	1,288	1,378	1,649
치과위생사	5	4	5	5	4	5	0	0	0
영양사	987	1,046	1,130	45	51	50	944	1,001	1,088

주: 1) 연도말 기준임.

표 2-42 시도별 · 급여종류별 주요 전문인력 현황 (2016)

(다위·명)

	. – – .	O	0	(/					(단위: 명)
구분		전체			재가			시설	
下亚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전국	14,682	9,080	313,013	9,747	2,730	259,595	5,001	7,036	60,549
서울	2,317	1,256	59,231	1,885	612	53,972	440	679	6,045
부산	766	306	20,316	619	107	18,555	149	220	1,906
대구	639	444	14,618	437	206	12,204	205	330	2,590
인천	842	578	20,109	489	94	16,420	354	508	4,130
광주	507	176	11,317	392	91	10,254	121	122	1,190
대전	490	261	12,134	347	89	10,610	144	194	1,673
울산	176	98	4,235	124	40	3,691	54	63	586
세종	29	17	833	21	5	726	8	12	113
경기	3,395	2,583	75,788	1,945	559	60,060	1,458	2,146	18,086
강원	670	433	11,072	400	85	7,946	274	374	3,379
충북	512	423	9,650	276	95	6,963	238	356	2,879
충남	760	488	14,880	463	128	12,045	298	406	3,246
전북	765	434	13,698	521	142	11,247	250	334	2,650
전남	786	474	15,210	501	140	12,403	296	378	3,080
경북	1,004	577	20,986	653	194	17,004	353	473	4,317
경남	830	403	20,022	570	102	16,905	265	337	3,409
제주	203	144	3,228	111	50	1,978	94	107	1,298

주: 1) 연도말 기준임.

²⁾ 전체 계는 급여종류에 따른 중복을 제거한 것임.

³⁾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 포함임. 4) 각 전문 인력은 재가와 시설에서 중복 집계되므로 재가와 시설의 합은 전체 수치보다 큼.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1, 27, 인출)

²⁾ 전체 계는 급여종류에 따른 중복을 제거한 것임. 3)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 포함임. 4) 각 전문 인력은 재가와 시설에서 중복 집계되므로 재가와 시설의 합은 전체 수치보다 큼.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1, 27, 인출)

장애인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장애인 인구 및 생활	등록장애인 수	장애출현율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시설 수	장애인거주시설 수 및 거주인 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장애인 보육 · 교육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비율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액	
	장애인 교육수준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실업률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장애수당 수급자 수
		장애이동 수당 수급자 수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20 H

등록장애인 수

Number of the Registered Disabled

지표 정의

등록장애인 수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유형 및 기준에 부합하여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를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 등 15가지 유형의 법정 장애를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은 장애인복지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등록장애인 수는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장애인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측정 산식

• 우리나라 법정 장애 및 범주에 해당되어 등록한 장애인의 수

2000년 당시 95만 8천 명에 불과하였던 등록장애인의 수는 2005년에는 177만 7천 명, 2010년에는 251만 2천 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다. 하지만 2010년이후 최근까지는 비교적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폭의 감소와 증가추세를 반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1년등 목장애인이 251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까지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다시 251만 1천 명으로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수는 지체장애인이 126만 7천 명으로 가장 많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29만 1천 명, 시각장애인 25만 2천 명, 뇌병변장애인 25만 명, 지적장애인이 19만 5천 명 순이었다. 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2016년 기준 4.83%이며(남성 5.62%, 여성 4.05%),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도가 가장 높고(전남 7.43%, 전북 6.94%), 서울이 3.9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등록장애인 중 60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은 137만 4백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할 수 있는 장애등급 1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19만 8천여 명에 이른다. 한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장애등급 1급, 2급 및 일부 장애범주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이라 정의하기도 하는데, 장애인구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2005년 37.7%에서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30.4%로 나타난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06	2016	6개월

Checkpoint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 장애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상승추세를 보였으며 2011년 이후 최근까지는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1년 등록장애인이 2,519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까지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2,511천 명으로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장애인구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2005년 37.7%, 2010년 33.7%, 2015년 32.7%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장애범주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0년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가, 2003년에는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 증장애가 포함되었다. 한편, 2007년에는 기존 발달장애를 자폐성장애로,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2014년에는 기존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표 2-43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수 (2000~2016)

(다의·처 며)

				• \		,										(단위	1: 선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958	1,134	1,294	1,454	1,611	1,777	1,967	2,105	2,247	2,430	2,512	2,519	2,511	2,501	2,494	2,490	2,511
지체장애	606	682	755	814	883	959	1,049	1,114	1,191	1,293	1,334	1,333	1,322	1,309	1,296	1,281	1,267
시각장애	91	116	136	153	170	168	206	217	228	241	249	251	252	253	253	253	252
청각, 언어장애	87	106	124	139	155	188	199	218	239	262	277	279	276	273	271	269	291
지적장애	87	95	104	112	119	174	135	143	147	155	161	167	173	179	184	190	195
뇌병변장애	33	65	92	116	143	127	194	215	232	252	262	261	258	253	252	251	250
자폐성장애	2	3	4	6	8	9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3
정신장애	24	33	39	47	54	63	75	82	87	95	96	95	95	96	97	99	100
신장장애	23	28	32	35	38	42	45	48	50	54	57	60	63	67	70	74	78
심장장애	5	7	9	10	12	13	14	14	15	15	13	10	8	7	6	6	6
호흡기장애	-	-	-	7	10	12	13	14	15	16	16	15	14	13	12	12	12
간장애	-	-	-	3	4	5	6	6	7	8	8	8	9	9	10	10	11
안면장애	-	_	-	1	1	1	2	2	2	3	3	3	3	3	3	3	3
장루, 요루장애	-	-	-	7	8	10	10	11	12	12	13	13	13	14	14	14	14
뇌전증장애	-	-	-	3	5	7	8	9	9	10	10	9	8	7	7	7	7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각 연도

丑 2-44

구분		등록장애인 수		인구대비 비율			
TE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국	2,511,051	1,457,588	1,053,463	4.83	5.62	4.05	
서울	391,027	227,271	163,756	3.92	4.64	3.23	
부산	168,950	100,326	68,624	4.78	5.76	3.83	
대구	117,111	69,090	48,021	4.65	5.53	3.78	
인천	135,623	81,961	53,662	4.59	5.53	3.63	
광주	68,569	38,538	30,031	4.62	5.24	4.02	
대전	71,425	41,767	29,658	4.67	5.46	3.87	
울산	49,533	30,082	19,451	4.20	4.96	3.40	
세종	9,845	5,787	4,058	4.31	5.04	3.57	
경기	522,437	311,539	210,898	4.10	4.86	3.32	
강원	98,928	57,623	41,305	6.35	7.35	5.32	
충북	94,688	54,283	40,405	5.91	6.73	5.07	
충남	126,406	72,848	53,558	6.01	6.83	5.16	
전북	130,345	71,020	59,325	6.94	7.59	6.30	

75,500

96,293

104,838

18,822

66,078

73,350

75,827

15,456

7.43

6.22

5.32

5.37

7.93

7.03

6.14

5.86

6.93

5.40

4.49

4.87

시도별 · 성별 등록장애인 수 (2016)

34,278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17

141,578

169,643

180,665

전남

경북

경남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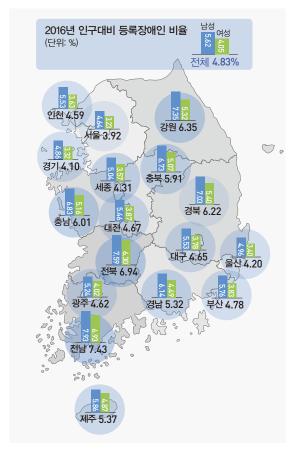


표 2-45 연령별 · 장애등급별 등록장애인 수 (2016)

(단위: 5	병)
--------	----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2,511,051	197,832	336,849	434,876	373,054	530,714	637,726
0~9세	25,810	6,561	8,673	6,646	1,871	1,142	917
10~19세	63,676	19,235	17,769	18,802	2,052	2,662	3,156
20~29세	91,564	22,562	24,788	23,668	3,787	5,906	10,853
30~39ॴ	149,219	19,917	26,796	31,089	10,675	18,493	42,249
40~49세	296,597	25,104	43,964	61,411	29,896	48,942	87,280
50~59세	513,815	32,212	66,976	94,604	64,423	104,006	151,594
60~69세	550,847	29,595	62,929	86,015	80,981	130,256	161,071
70~79세	536,904	26,993	56,481	73,634	107,727	141,312	130,757
80~89세	255,235	13,728	25,715	35,002	64,868	70,206	45,716
90~99세	26,767	1,878	2,705	3,917	6,599	7,622	4,046
100세 이상	617	47	53	88	175	167	87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17



주: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며,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장애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3급 장애인도 인정함(단, 호흡기·뇌전증장애 3급은 2010년부터 중증으로 인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17

20-1

장애출현율

Prevalence of Disability

지표 정의

우리나라의 법정 장애 및 범주에 해당되는 장애인의 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출현율은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근거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해 추정된다.

측정 산식

우리나라 법정 장애범주에 해당되는 추정장애인 수 전체 인구

2014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출현율은 5.59%(272만 7천여 명)로 인구 1만 명당 55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5년도 장애출현율 4.6%에 비해 1%p 증가한 것으로 후천적 장애 및 인구고령화에 의한 장애발생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정장애인 중 법정 장애인으로 등록한 장애인 수는 250만 명으로 91.7%의 등록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05년도 장애인 등록률 77.7%에 비해 16.1%p 증가한 것이지만, 2011년에 비해서는 2.1%p 감소한 것이다.

표 2-46 연도별 장애출현율

(단위: 명, %)

구분	2000	2005	2011	2014
등록장애인 수	907,571	1,669,329	2,517,312	2,501,112
추정장애인 수	1,449,496	2,148,686	2,683,477	2,726,910
장애인 등 록 률	62.6	77.7	93.8	91.7
장애출현율	3.09	4.59	5.61	5.59

주: 1) 등록장애인 수는 각 조사 당시 보고된 자료를 활용함.

2)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는 기구표본조사방식이 아닌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미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출현율을 파악하지 않았음.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1990	2014	3년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Prevalence of ADL(IADL) Limitations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신체활동으로, 자신의 육체를 돌보는데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며 주로 일상생활에서 계속 반복되는 옷 입기나 세수하기, 식사 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이 이에 속한다.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며 몸단장하기, 식사 준비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등 단순한 신체적 기능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능력도 포함하고 있다.

측정 산식

ADL(IADL) 제한 응답 장애인 수
조사대상 장애인 수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항목은 '목욕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옷 벗고 입기', '방 밖으로 나가기'로 나타났다. 즉, '목욕하기'에서 완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6.5%였으며, '화장실 사용하기'의 완전 도움 요구 장애인 비율은 3.8%, 그리고 '옷벗고 입기', '방 밖으로 나가기' 등은 3.7%로 다른 항목에 비해 자립정도가 낮았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뇌병변장애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폐성장애는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장루·요루장애는 화장실 사용하기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형별로 그 장애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DAL)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항목은 '본인 물건 관리하기', '금전관리', '교통수단 이용하기'로 나타났다. 즉, 본인 물건 관리하기의 경우 완전 도움을 요하는 장애인 비율이 36.0%였으며, 금전관리 13.0%, 교통수단 이용하기 12.6%로서 다른 항목에 비해 자립정도가 낮았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뇌병변장애와 지적 및 자폐성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1990	2014	3년

Checkpoint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제한율을 장애 정도로 구분해보면 경증(4 \sim 6급)의 경우 목욕하기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90% 이상의 완전 자립을 보였고 중증(1 \sim 3급)은 옷 벗고 입기, 목욕하기에서 완전 도움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제한율은 본인 물건 관리하기에서 중증 장애(16.9%)와 경증 장애(50.7%) 모두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2-47 장애 정도별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제한율 (2014)

(단위: %)

구분		전체			중증(1~3급)		경증(4~6급)			
TE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옷 벗고 입기	81.1	15.2	3.7	61.4	30.1	8.4	94.2	5.2	0.6	
세수하기	89.5	7.2	3.3	76.7	16.0	7.4	97.9	1.7	0.5	
양치질하기	89.4	7.4	3.1	76.0	16.8	7.1	98.0	1.5	0.5	
목욕하기	75.2	18.3	6.5	54.5	31.2	14.2	89.8	8.9	1.3	
식사하기	88.6	9.4	2.0	75.2	20.1	4.7	97.4	2.2	0.3	
체위변경하기	92.9	5.3	1.8	86.2	9.7	4.1	97.4	2.3	0.3	
일어나 앉기	90.9	7.0	2.1	83.7	11.6	4.7	95.9	3.8	0.4	
옮겨 앉기	88.4	8.9	2.6	79.1	14.9	5.9	94.7	4.9	0.4	
방 밖으로 나가기	83.2	13.1	3.7	71.5	20.5	8.0	91.5	7.6	0.8	
화장실 사용하기	87.4	8.8	3.8	74.7	18.1	7.2	96.1	2.4	1.5	
대변 조절하기	93.2	3.4	3.4	86.7	7.0	6.3	97.7	0.8	1.5	
소변 조절하기	93.0	3.8	3.2	86.2	7.4	6.4	97.7	1.3	1.0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2014

표 2-48 장애 정도별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제한율 (2014)

(단위: %)

78		전체			중증(1~3급)		경증(4~6급)		
구분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전화 사용하기	74.4	18.1	7.5	55.9	28.1	16.1	87.5	10.9	1.7
물건 사기	72.9	16.7	10.4	48.2	29.1	22.7	90.1	7.6	2.3
식사준비 (만 15세 미만 제외)	67.0	22.4	10.6	41.3	36.4	22.4	84.2	12.8	3.0
집안 일 (만 15세 미만 제외)	64.6	25.1	10.3	39.9	38.8	21.4	81.3	15.7	3.0
빨래하기 (만 15세 미만 제외)	67.3	22.0	10.7	42.8	34.9	22.4	83.6	13.4	3.1
약 챙겨먹기	83.6	10.7	5.7	65.0	22.3	12.7	96.4	2.6	1.0
금전관리	74.4	12.7	13.0	51.4	20.3	28.3	90.4	7.0	2.6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66.2	21.2	12.6	42.1	32.1	25.7	83.7	13.0	3.3
본인 물건 관리하기 (만 6~15세 미만)	19.5	44.6	36.0	16.9	45.4	37.7	50.7	40.0	9.3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2014

Need fo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Need for Help with Daily Activities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는 장애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느 정도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혹은 남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값의 분율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를 '1. 혼자서 스스로, 2. 대부분 혼자서, 3. 일부 도움 필요, 4. 대부분 필요, 5. 거의 남의 도움 필요'와 같이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 도움 필요 정도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장애인 수 조사대상 장애인 수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에 대한 결과는 장애인의 51,3%가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수 있다'라고 응답했고, 일부 도움이나 대부분 도움, 거의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각각 17.7%, 8.6%, 5.9% 인 것으로 나타나 남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경우는 32.2%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더욱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간장애, 안면장애, 지체장애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별로 큰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49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2014)

(단위: %)

구분	계	혼자서 스스로	대부분 혼자서	일부 도움 필요	대부분 필요	거의 남의 도움 필요
전체	100.0	51.3	16.5	17.7	8.6	5.9
지체장애	100.0	67.5	15.1	11.1	3.9	2.4
뇌병변장애	100.0	18.3	14.0	25.4	19.1	23.1
시각장애	100.0	54.9	14.5	15.5	10.1	5.1
청각장애	100.0	42.9	28.6	22.9	3.5	2.1
언어장애	100.0	33.8	24.4	22.4	15.6	3.7
지적장애	100.0	4.5	14.4	41.5	26.0	13.5
자폐성장애	100.0	1.5	11.4	21.1	41.6	24.5
정신장애	100.0	36.8	16.7	28.3	14.2	4.0
신장장애	100.0	65.2	13.1	14.3	5.4	2.0
심장장애	100.0	48.1	8.0	39.9	0.0	4.0
호흡기장애	100.0	34.3	13.8	38.0	10.5	3.4
간장애	100.0	92.4	2.7	1.8	3.1	0.0
안면장애	100.0	96.5	3.5	0.0	0.0	0.0
장루 · 요루장애	100.0	10.3	62.7	18.8	2.9	5.4
뇌전 증 장애	100.0	44.2	14.5	17.5	18.0	5.9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201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1990	2014	3년

22

장애인복지시설 수

Number of 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지표는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도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장애인복지시설 수 =

거주시설 + 지역사회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의료재활시설

2015년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은 전국에 1,505개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1,303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582개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17개소,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19개소로, 이를 합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3,426개소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로 한정)의 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626개)와 서울(615개)에 가장 많은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시설의 약 36.3%에 해당한다. 또한 경기, 서울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경남(249개)과 경북(242개)에 상대적으로 많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1999	2016	1년

Checkpoint

2012년에 거주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개소 수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이었던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기존 생활시설과 함께 장애인거주시설로 개편된 것에서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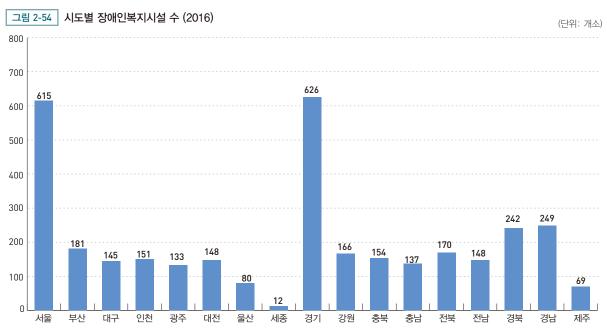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 수는 모든 유형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그 증가 추세가 소폭 꺾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년 200개소 이상의 복지시설이 새롭게 신설되던 양상이 2013년에는 127개소 증가, 2014년에는 118개소 증가, 2016년에는 99개소 증가로 점차 증가 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50 장애인복지시설 수 (2004~2016)

(단위: 개소)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거주시설	237	265	288	314	347	397	452	490	1,348	1,397	1,457	1,484	1,505
지역사회재활시설	536	1,049	1,125	1,286	1,419	1,563	1,701	1,820	1,140	1,184	1,213	1,248	1,303
직업재활시설	238	244	319	339	364	386	417	456	478	511	539	560	58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	-	-	-	-	16	16	16	17	17	17
장애인의료재활시설	_	-	_	-	-	-	-	17	17	18	18	18	19
소계	1,011	1,558	1,732	1,939	2,130	2,346	2,570	2,799	2,999	3,126	3,244	3,327	3,426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각 연도



주: $\Lambda \cdot \Sigma$ 비교에서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대체로 광역 단위로 1개씩 설치되어 있어 제외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7

장애인거주시설 수 및 거주인 수

Number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sidents

22-1

지표 정의

장애인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 요양 ·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지표를 통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비율 및 현황 등 시설 장애인 복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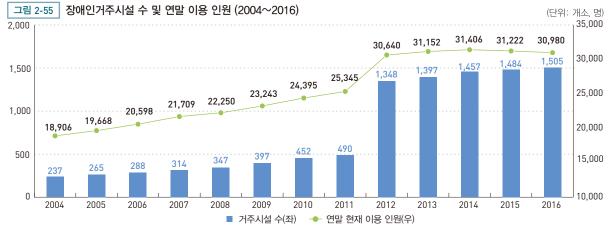
•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한다.

본 지표는 각각의 시설 수와 연도 말 기준 거주하는 실인원 수를 측정한다.

2016년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은 모두 1,505개소가 있으며, 전체 거주시설의 58.6%인 882개소가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다.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 내 거주서비스 요구에 조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시설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체, 시각, 청각언어 장애인시설은 2006년~2008년을 정점으로 거주인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시설 수도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지적장애인 대상의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 수는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2009년 172개소에서 2016년 317개소), 거주인원 수도 같은 기간 9,539명에서 12,112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2016년 현재 경기도가 311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이 284개소로 뒤를 잇고 있다. 그 외 지역별로 시설 분포의 차이가 나타난다.



주: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이었던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거주시설로 재편됨.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거주시설 수와 이용 인원이 크게 증가함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1999	2016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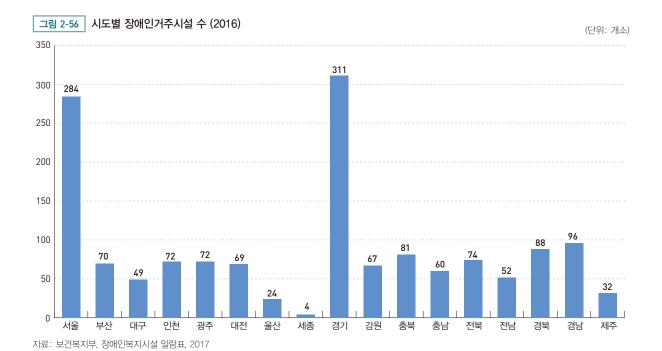
표 2-51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현황 (2001~2016)

(단위: 개소, 명)

						장(H유형 별	생활/	시설 _											계조, 공)
구분	소	계 [*]		:시설 :계	지체경		시각정		· – 청각 장0		지적경	당애인		당애인 :양	장애영	병유아	단기 시			생활 정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2001	203	17,720	130	11,607	34	2,710	10	623	11	784	75	7,490	73	6,113	-	-	-	-	-	-
2002	213	17,959	142	11,351	32	2,355	11	708	13	776	86	7,512	71	6,608	-	-	15	-	63	-
2003	225	18,432	147	11,545	32	2,374	12	708	13	778	90	7,685	74	6,558	4	264	25	-	100	-
2004	237	18,906	150	11,498	31	2,357	12	717	11	674	96	7,750	82	7,117	5	291	30	-	152	-
2005	265	19,668	166	11,714	31	2,332	13	632	12	735	110	8,015	93	7,657	6	297	61	-	331	-
2006	288	20,598	179	12,241	30	2,281	15	824	12	728	122	8,408	102	8,038	7	319	69	-	358	-
2007	314	21,709	189	12,921	33	2,283	14	792	11	521	131	9,325	116	8,345	9	443	76	-	400	-
2008	347	22,250	202	12,814	33	2,292	14	784	11	546	144	9,192	136	8,981	9	455	84	-	450	-
2009	397	23,243	235	13,048	38	2,230	14	760	11	519	172	9,539	153	9,728	9	467	91	-	531	-
2010	452	24,395	260	19,270	40	3,673	14	873	10	386	196	14,338	182	4,813	10	312	103	-	589	-
2011	490	25,345	289	14,038	39	2,102	15	787	9	361	226	10,788	191	10,798	10	509	119	-	637	-
2012	1,348	30,640	342	14,926	40	2,057	16	786	8	335	278	11,748	201	11,006	10	510	128	1,438	667	2,760
2013	1,397	31,152	356	15,069	39	1,978	16	770	8	320	293	12,001	216	11,412	9	473	131	1,432	685	2,766
2014	1,457	31,406	375	15,246	44	2,208	15	632	7	270	309	12,136	223	11,344	9	466	137	1,495	713	2,855
2015	1,484	31,222	383	14,920	39	1,668	16	628	7	255	321	12,369	233	11,314	10	541	141	1,548	717	2,899
2016	1,505	30,980	381	14,817	40	1,766	17	711	7	228	317	12,112	233	11,192	9	452	146	1,616	736	2,903

주: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이었던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거주시설로 재편됨.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거주시설 수와 이용 인원이 크게 증가함.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각 연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Number of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2-2

지표 정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지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전국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수를 말한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1) 복지관, (2) 주간보호시설, (3) 체육관, (4) 심부름센터, (5) 수화통역센터로 구분된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가 2004년에 536개소에서 2011년에 1,820 개소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가 2012년에 1,140개소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거주시설로 통합되고, 의료재활시설은 별도로 분류되어 장애인지역사회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른 결과이다. 다만, 2014년부터는 점자도서관 및점자도서출판시설이 기타 시설로서 통계에 산입되었다.

이 중 장애인복지관은 꾸준한 증가를 보이는데, 2005년 130개소였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231개소로 증가하였다. 또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2005년에 259개소에서 2016년에는 663개소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 216개소, 서울에 200개소로 가장 많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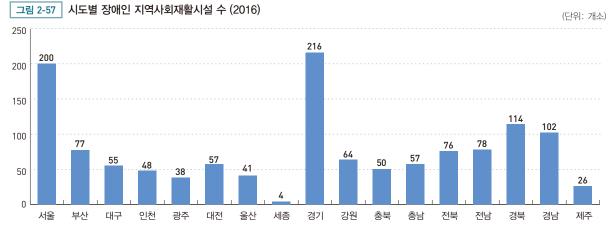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1999	2016	1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2005~2016) 丑 2-52

(단위: 개소)

78			장애인	! 지역사회재	활시설			장애인 단기	공동 생활	의료재활
구분	계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체육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	기타	보호	가정	시설
2005	1,049	130	259	22	124	108	-	61	331	14
2006	1,125	137	274	25	129	107	-	69	358	26
2007	1,286	157	321	24	149	143	-	76	400	16
2008	1,419	171	365	26	152	154	-	84	450	17
2009	1,563	185	395	27	154	162	-	91	531	18
2010	1,701	191	443	27	154	176	-	103	589	18
2011	1,820	199	485	27	156	180	-	119	637	17
2012	1,140	205	526	28	156	191	-	-	-	-
2013	1,184	219	558	29	155	199	-	-	-	18
2014	1,213	223	592	29	156	193	20	-	-	18
2015	1,248	224	625	30	156	193	20	-	-	18
2016	1,303	231	663	34	159	194	22	-	-	20

주: 1) 단기보호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의료재활시설은 2012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위 자료에서는 함께 표기함. 2) 2014년부터 점자도서관 및 점자도서출판시설이 기타 시설로 통계 산입.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각 연도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Number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2-3

지표 정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작업 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 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본 지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 지원정책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으로 구분되며, 본 지표는 각각의 시설 수를 측정한다.

직업재활시설은 지속적인 신·중축을 통한 시설확충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 238개소의 직업재활시설은 2016년 약 2.5배에 이르는 579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시설을 통한 근로참여 장애인의 수도 2004년 7,486명에서 2015년 17,09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현재 516개소의 보호작업장에서 14,335명의 장애인이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장의 경우에는 63개소에서 2,762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124개소, 경기도에 98개소로 가장 많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1999	2016	1년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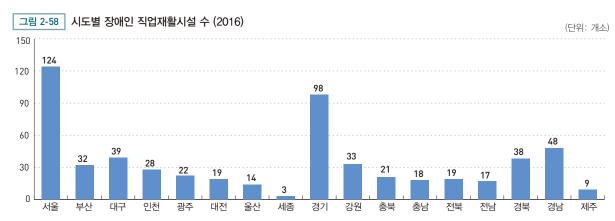
2015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해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치 현황은 공개되지 않아 본 지표와 관련 통계에서는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만을 다루었다.

표 2-5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및 연말 이용 인원 (2004~2016)

(단위: 개소, 명)

3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호	시설 수	217	220	177	189	212	250	373	403	422	447	477	496	516
작업장	이용 인원	6,308	6,432	4,835	5,238	5,559	6,574	10,009	10,680	11,374	12,086	12,930	13,616	14,335
근로	시설 수	21	24	24	29	31	33	44	53	56	64	64	64	63
사업장	이용 인원	1,178	1,252	1,246	1,344	1,422	1,516	1,761	2,190	2,384	2,653	2,721	2,798	2,762
초게	시설 수	238	244	319	339	364	386	417	456	478	511	541	560	579
총계	이용 인원	7,486	7,684	9,481	10,059	10,422	11,048	11,770	12,870	13,758	14,739	15,651	16,414	17,097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각 연도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7

2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Installation Rate of Convenienc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 중 정해진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의 비율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은 편의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5년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대상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14만 개이며, 설치대상 편의시설은 약 630만 개다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전반적인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편의시설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측정 산식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2013년 전수조사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67.9%, 적정설치율은 60.2%로 나타났다. 적정설치율은 설치된 시설의 수준을 적정, 미흡, 미설치의 3단계로 구분하여, 이 중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을 의미한다.

편의시설 종류별로 여러 설치 기준 중 편의시설 이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부설치 기준만을 선정하여 적용한 것이 핵심항목기준 편의시설 설치율이다. 2013년 전수조사에서 핵심항목기준 편의시설 설치율은 72,9%(적정설치율 62,9%와 미흡설치율 10,0%)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편의시설의 설치대상 건물과 대상 편의시설은 경기도가 가장 많고, 서울특별시가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설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72.2%를 나타낸 대구광역시였으며, 충청북도가 60.3%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대체로 특·광역시권역은 설치율이 높고, 도지역은 설치율이 낮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1995	2013	5년

Checkpoint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그러므로 편의시설 설치율에 관한 통계는 2013년과 동일하다. 지역별로 분석대상 시설이 인구나 면적에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조사대상시설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3

표 2-54 연도별 · 종류별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개소, %)

			2008					2013		(211.712,70)
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설치 수	적정설치율 (%)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설치 수	적정설치율 (%)
매개시설	1,342,840	1,047,843	78.0	754,353	56.2	2,729,583	1,897,877	69.5	1,706,129	62.5
내부시설	1,682,872	1,446,698	86.0	1,083,686	64.4	1,929,421	1,555,422	80.6	1,392,127	72.2
위생시설	608,810	342,769	56.3	209,918	34.5	1,250,126	583,869	46.7	478,392	38.3
안내시설	46,876	23,248	49.6	12,120	25.9	195,730	82,643	42.2	70,711	36.1
기타시설	79,394	54,811	69.0	38,173	48.1	200,514	163,868	81.7	147,789	73.7
계	3,760,792	2,915,369	77.5	2,098,250	55.8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3

표 2-55 종류별 핵심항목 기준 편의시설 설치율 (2013)

(단위: 개소,%)

편의시설 종류	핵심 세부항목 수	적정 설치 수	적정설치율(%)	미흡설치 수	미흡설치율(%)	설치율(%)
매개시설	317,504	208,725	65.7	45,853	14.4	80.1
내부시설	207,046	169,972	82.1	10,106	4.9	87.0
위생시설	188,214	82,452	43.8	14,351	7.6	51.4
안내시설	76,128	33,794	44.4	8,298	10.9	55.3
기타시설	24,841	16,895	68.0	2,823	11.4	79.4
계	813,733	511,838	62.9	81,431	10.0	72.9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3

표 2-56 시도별 편의시설 설치율 (2013)

(단위: 개소, %)

구분	대상건물 수	대상편의시설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설치 수	적정설치율(%)
서울	18,529	698,539	469,537	67.2	423,987	60.7
부산	9,672	445,606	318,466	71.5	293,709	65.9
대구	7,002	236,084	170,423	72.2	152,237	64.5
인천	10,450	415,069	277,264	66.8	247,923	59.7
광주	5,052	229,268	161,775	70.6	140,738	61.4
대전	3,535	109,913	78,329	71.3	70,351	64.0
울산	3,606	173,880	122,601	70.5	116,142	66.8
경기	29,541	1,326,389	923,628	69.6	827,777	62.4
강원	4,467	157,822	112,669	71.4	101,542	64.3
충북	4,927	252,523	152,183	60.3	133,251	52.8
충남(세종)	7,538	367,452	237,977	64.8	201,350	54.8
전북	7,159	333,595	227,433	68.2	202,147	60.6
전남	7,553	404,951	260,484	64.3	209,999	51.9
경북	10,270	515,110	334,029	64.8	286,019	55.5
경남	9,351	493,597	333,975	67.7	293,858	59.5
제주	2,921	145,576	102,906	70.7	94,118	64.7
계	141,573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3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 는 사업으로 관련 급여를 지급한다.

측정 산식

• 급여액: 총 이용가능금액(월 220천 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제한 금액

• 본인부담금 : 소득별로 차등 지원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게층 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전국가구평균소 득 100% 초과 ~ 150% 이하
정부지원금	월 22만 원	월 20만 원	월 18만 원	월 16만 원	월 14만 원
본인부담금	면제	월 2만 원	월 4만 원	월 6만 원	월 8만 원

2016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이용자 추이를 살펴보면 1월부터 7월까지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8월 이후 완만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12월을 기준으로 시도별 이용자 수를 살펴보 면 경기도가 12.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8.603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울 산과 제주가 각각 1,019명, 965명으로 세종시를 제외하고 이용자 수가 적었다. 소득수준별로는 12월 기준으로 전체 52,200명 중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이용자 수가 18,907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전체의 약 36,2%)을 차지하였다.

표 2-57 연도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단위: 명,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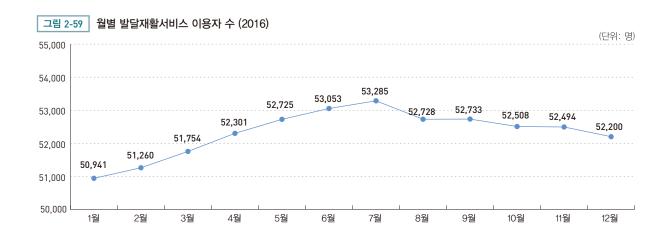
구분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이용자 수	50,769	51,609	52,200
이용액	8,563,030	8,622,253	8,652,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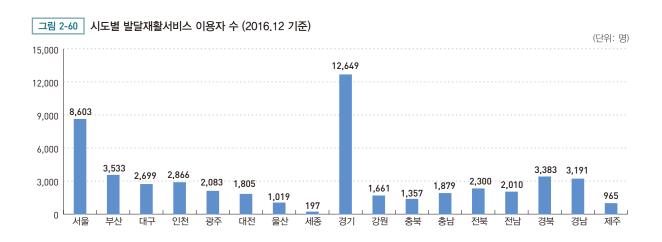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6	1년

Checkpoint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6년 12월 말 기준 52,200명으로 2014년 12월 기준 50,769명, 2015 년 12월 기준 51.609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이용액도 2014년 12월 기준 8.563백만 원에서 2015년 12월 기준 8,622백 만 원, 2016년 12월 기준 8,652백만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소득수 준별로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초과~100% 미만인 가구가 3년 연속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丑 2-58	월별 ·	시도별 발	달재활서비	스 이용자	수 (2016)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8,203	8,255	8,341	8,392	8,481	8,610	8,667	8,602	8,672	8,691	8,689	8,603
부산	3,267	3,257	3,256	3,344	3,465	3,507	3,578	3,594	3,652	3,648	3,599	3,533
대구	2,813	2,811	2,743	2,732	2,715	2,677	2,657	2,653	2,652	2,642	2,671	2,699
인천	2,933	2,931	2,938	2,937	2,928	2,941	2,919	2,885	2,874	2,832	2,864	2,866
광주	1,972	2,134	2,150	2,150	2,158	2,164	2,158	2,106	2,101	2,107	2,110	2,083
대전	1,739	1,698	1,669	1,650	1,623	1,624	1,646	1,676	1,693	1,686	1,687	1,805
울산	1,033	1,037	1,068	1,104	1,102	1,115	1,104	1,070	1,060	1,043	1,032	1,019
세종	170	157	157	157	167	169	185	187	194	189	190	197
경기	12,151	12,149	12,590	12,891	12,994	13,079	13,058	12,857	12,817	12,769	12,795	12,649
강원	1,617	1,621	1,673	1,718	1,725	1,725	1,748	1,713	1,708	1,694	1,668	1,661
충북	1,345	1,296	1,313	1,300	1,365	1,358	1,344	1,332	1,356	1,361	1,363	1,357
충남	1,750	1,890	1,919	1,938	1,951	1,934	1,983	1,950	1,916	1,896	1,888	1,879
전북	2,319	2,306	2,292	2,288	2,277	2,284	2,279	2,269	2,256	2,321	2,324	2,300
전남	1,948	1,997	1,969	1,988	2,011	2,022	2,031	2,018	2,022	2,001	2,007	2,010
경북	3,416	3,426	3,448	3,442	3,432	3,430	3,500	3,437	3,402	3,339	3,374	3,383
경남	3,323	3,363	3,295	3,315	3,342	3,391	3,399	3,388	3,364	3,294	3,252	3,191
제주	942	932	933	955	989	1,023	1,029	991	994	995	981	965
합계	50,941	51,260	51,754	52,301	52,725	53,053	53,285	52,728	52,733	52,508	52,494	52,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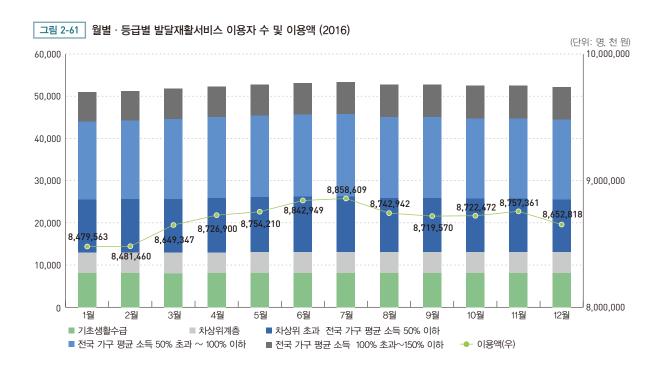


표 2-59 월별 · 등급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6)

(단위: 명, 천 원)

							(인취, 영, 신 년)
			이용	자 수			
구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초과 ~100% 이하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초과 ~150% 이하	합계	이용액
1월	8,061	4,877	12,579	18,446	6,978	50,941	8,479,563
2월	8,055	4,864	12,674	18,681	6,986	51,260	8,481,460
3월	8,007	4,860	12,722	18,995	7,170	51,754	8,649,347
4월	8,099	4,875	12,891	19,169	7,267	52,301	8,726,900
5월	8,090	4,910	13,049	19,318	7,358	52,725	8,754,210
6월	8,096	4,942	13,165	19,416	7,434	53,053	8,842,949
7월	8,104	4,935	13,209	19,521	7,516	53,285	8,858,609
8월	8,145	4,906	12,801	19,175	7,701	52,728	8,742,942
9월	8,144	4,964	12,732	19,146	7,747	52,733	8,719,570
10월	8,099	4,956	12,645	19,067	7,741	52,508	8,722,472
11월	8,128	4,955	12,609	19,030	7,772	52,494	8,757,361
12월	8,084	4,931	12,497	18,907	7,781	52,200	8,652,818

25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3급 장애인 등 '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에 의거 인정 점수가 220점 이상일 때 선정되며, 각 활동지원등급,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바우처를 지원한다.

측정 산식

- 기본급여 : 장애인정점수별 등급을 설정하여(4등급) 각 등급별 최저 430천 원(4등급)에서 최대 1,063천 원 (1등급)까지 기본급여를 산정
- 추가급여 :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91천 원(학교생활)에서 2,464천 원(1인가구 및 취약가구 중 인 정점수 400점 이상)까지 추가급여를 산정
- 본인부담금: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에 따라 차등 부과(기본급여: 6~15%, 차등급여: 2~5%)
- *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월평균 이용자 수는 약 63,780명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이용액은 69,412백만 원으로 나타났고, 월별 이용자 수 및 이용액은 매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도별 이용자 수와 이용액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 기준 이용자는 경기가 13,8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3,494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고, 이용액은 서울시가 16,022백만 원, 경기도가 15,145백만 원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6	1년

Checkpoint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이용자 수와 이용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2015년은 60,614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12.3% 증가하였고, 2016년은 66,534명으로 전년 도 대비 약 9.8%가 증가하였다. 이용액을 살펴보면 2015년은 66,203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7.1% 증가하였고, 2016년은 73,956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1.7%가 증가하였다.

^{*} 만 65세가 도래한 대상자 중 장기요양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과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150% 이하,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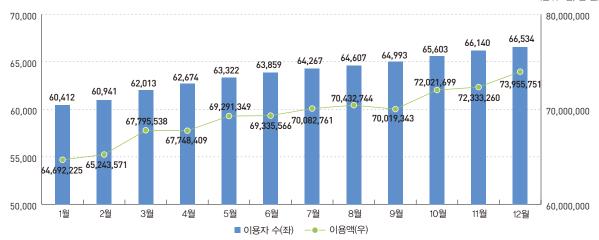
표 2-60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이용자 수	53,952	60,614	66,534
이용액	56,552,453	66,203,438	73,955,751

그림 2-62 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6)

(단위: 명,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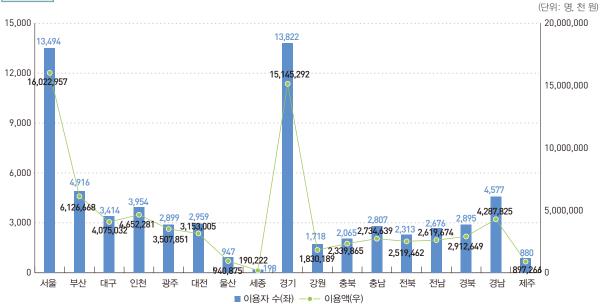


표 2-61 시도별 · 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2016)

(단위: 명)

										(E11. 0)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2,585	12,631	12,808	12,896	12,977	13,060	13,089	13,144	13,221	13,340	13,423	13,494
부산	4,583	4,622	4,670	4,700	4,741	4,773	4,791	4,806	4,835	4,858	4,901	4,916
대구	3,169	3,206	3,211	3,232	3,276	3,293	3,308	3,322	3,326	3,358	3,397	3,414
인천	3,659	3,678	3,737	3,786	3,802	3,837	3,854	3,864	3,875	3,902	3,926	3,954
광주	2,638	2,653	2,700	2,718	2,739	2,763	2,783	2,807	2,823	2,850	2,869	2,899
대전	2,757	2,786	2,821	2,839	2,855	2,875	2,884	2,900	2,901	2,930	2,940	2,959
울산	811	816	839	856	868	886	892	898	919	929	940	947
세종	182	181	181	180	180	187	184	184	192	196	198	198
경기	12,255	12,408	12,674	12,851	12,998	13,111	13,290	13,350	13,446	13,591	13,742	13,822
강원	1,578	1,602	1,646	1,653	1,671	1,690	1,692	1,686	1,684	1,710	1,722	1,718
충북	1,840	1,865	1,894	1,920	1,939	1,948	1,958	1,981	1,990	2,023	2,036	2,065
충남	2,416	2,458	2,547	2,607	2,642	2,655	2,683	2,714	2,730	2,774	2,800	2,807
전북	2,020	2,036	2,105	2,134	2,156	2,192	2,204	2,230	2,258	2,279	2,293	2,313
전남	2,489	2,496	2,527	2,543	2,554	2,583	2,604	2,627	2,624	2,630	2,652	2,676
경북	2,610	2,636	2,704	2,744	2,771	2,782	2,784	2,811	2,831	2,863	2,871	2,895
경남	4,032	4,065	4,123	4,184	4,318	4,378	4,414	4,419	4,477	4,504	4,557	4,577
제주	788	802	826	831	835	846	853	864	861	866	873	880
합계	60,412	60,941	62,013	62,674	63,322	63,859	64,267	64,607	64,993	65,603	66,140	66,534

표 2-62 시도별 · 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액 (2016)

(단위: 천 원)

	_		!	!		1		1	1			(611.62)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4,277,223	14,381,164	14,864,286	14,781,339	15,061,081	15,054,982	15,187,547	15,257,378	15,191,937	15,610,706	15,656,813	16,022,957
부산	5,487,441	5,518,683	5,658,127	5,648,392	5,757,092	5,781,547	5,833,517	5,860,754	5,822,678	5,965,783	5,984,543	6,126,668
대구	3,630,985	3,657,570	3,768,302	3,748,269	3,828,137	3,826,411	3,859,610	3,888,015	3,834,368	3,948,068	3,973,979	4,075,032
인천	4,141,824	4,173,423	4,349,434	4,346,272	4,411,845	4,402,290	4,449,851	4,443,246	4,411,387	4,547,099	4,569,035	4,652,281
광주	3,094,828	3,154,391	3,230,277	3,247,222	3,293,668	3,301,136	3,352,189	3,373,263	3,371,967	3,458,191	3,444,697	3,507,851
대전	2,852,195	2,906,693	2,979,489	2,990,823	3,039,314	3,017,215	3,033,140	3,057,332	3,035,600	3,095,981	3,110,897	3,153,005
울산	793,150	797,437	824,823	833,459	858,116	872,789	879,182	873,487	886,406	922,191	928,906	940,875
세종	159,880	158,012	161,899	165,240	166,728	171,019	166,289	170,616	175,904	186,207	189,390	190,222
경기	13,000,506	13,139,550	13,695,358	13,719,604	14,052,443	14,087,419	14,310,346	14,350,323	14,311,023	14,734,570	14,830,661	15,145,292
강원	1,558,821	1,541,524	1,664,543	1,659,161	1,706,045	1,710,012	1,727,480	1,730,449	1,683,552	1,784,507	1,784,163	1,830,189
충북	1,958,789	1,970,540	2,060,740	2,062,485	2,140,965	2,130,433	2,162,159	2,172,601	2,155,015	2,238,613	2,253,865	2,339,865
충남	2,322,305	2,374,293	2,505,113	2,516,906	2,562,271	2,565,096	2,577,076	2,620,508	2,618,047	2,673,552	2,686,578	2,734,639
전북	2,128,983	2,135,056	2,259,204	2,264,402	2,320,357	2,329,632	2,376,715	2,391,163	2,375,365	2,437,545	2,449,575	2,519,462
전남	2,355,130	2,384,298	2,450,195	2,442,638	2,493,118	2,483,900	2,500,371	2,525,548	2,498,302	2,548,617	2,564,386	2,619,674
경북	2,461,495	2,466,780	2,650,901	2,638,829	2,694,400	2,702,379	2,723,957	2,756,009	2,702,467	2,829,844	2,820,734	2,912,649
경남	3,686,481	3,690,172	3,841,667	3,850,627	4,049,451	4,044,096	4,070,296	4,086,324	4,066,893	4,162,359	4,197,080	4,287,825
제주	782,191	793,987	831,180	832,739	856,318	855,210	873,037	875,730	878,433	877,865	887,959	897,266
합계	64,692,225	65,243,571	67,795,538	67,748,409	69,291,349	69,335,566	70,082,761	70,432,744	70,019,343	72,021,699	72,333,260	73,955,751

주: 단위 미만인 수는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 수치가 시도별 수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행 복 e 음

25-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An Overview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viding organization and provider

지표 정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 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제공기관은 시군구의 공모에 의거 심사를 통해 지정되며, 활동보조기관,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기관으로 구분된다. 활동지원인력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분되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자, 간호사 등 자격기준은 활동내역에 따라 상이하다. 본 지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별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군구청에 지정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연간 1회 이상 서비스 결제이력이 있는 제공기관 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연간 1회 이상 서비스 제공이력이 있는 활동지원인력 수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1회 이상 결제이력이 있는 제공기관은 전국 916개소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154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4개소, 경남 85개소, 부산 69개소, 전남 66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공인력은 전국 72,855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제공인력이 16,7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427명, 부산 5,416명, 인천 4,682명, 경남 4,633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은 전국 평균 약 53.9개소로 서울, 경기, 경남, 부산, 전남, 경북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공인력은 전국 평균 약 4,286명으로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경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공기관 대비 제공인력은 전국 평균 약 79.5명으로 세종, 강원,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충남, 충북은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6	1년

Checkpoint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공기관의 수치는 2014년 824개에서 2015년 862개, 2016년 883개로 증가하였고, 제공인력은 2014년 46,812명에서 2015년 52,761명, 2016년 58,10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 ①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표 2-63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단위: 개소, 명)

78		제공기관 수		제공인력 수				
구분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계	824	862	883	46,812	52,761	58,102		

표 2-64 월별 · 시도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수 (2016)

(단위: 개소)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54	141	142	144	144	146	145	146	147	146	148	149	150
부산	69	66	65	65	66	67	67	66	64	66	66	66	66
대구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인천	46	44	44	44	45	44	45	44	45	44	44	44	43
광주	31	28	29	30	30	30	30	30	30	30	30	30	29
대전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울산	9	9	9	9	9	9	9	9	9	9	9	9	9
세종	6	5	5	5	5	5	5	5	5	5	6	6	6
경기	144	135	137	136	135	137	138	139	138	139	140	140	141
강원	43	42	43	42	42	42	42	42	42	42	42	42	40
충북	38	34	35	36	37	36	36	36	36	36	35	35	34
충남	50	46	46	46	45	46	48	48	47	47	47	48	48
전북	49	47	47	47	47	47	48	47	48	48	48	48	48
전남	66	65	65	64	64	65	65	65	65	65	65	65	65
경북	61	59	58	59	60	58	58	57	59	59	58	57	55
경남	85	83	83	83	83	85	85	85	85	84	84	84	84
제주	9	8	8	8	8	8	9	9	9	9	9	9	9
합계	916	868	872	874	876	881	886	884	885	885	887	888	883

주: 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수는 1건 이상 결제이력이 있는 기관수이며, 합계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중복을 제외한 전체 제공기관수의 합임.

표 2-65 월별 · 시도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수 (2016)

(단위: 명)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6,781	12,195	12,283	12,527	12,611	12,718	12,843	12,895	12,948	12,974	13,130	13,193	13,205
부산	5,416	4,061	4,098	4,163	4,179	4,210	4,251	4,296	4,289	4,307	4,331	4,364	4,382
대구	3,836	2,875	2,903	2,917	2,947	2,982	3,012	3,006	3,022	3,024	3,044	3,066	3,100
인천	4,682	3,380	3,407	3,481	3,513	3,520	3,553	3,585	3,588	3,590	3,611	3,627	3,642
광주	3,863	2,658	2,683	2,744	2,778	2,789	2,816	2,844	2,864	2,857	2,892	2,919	2,939
대전	3,579	2,516	2,550	2,605	2,654	2,682	2,727	2,745	2,766	2,758	2,790	2,798	2,817
울산	1,009	705	712	728	734	739	755	750	754	764	784	793	797
세종	184	108	111	112	117	118	120	115	117	121	124	123	121
경기	14,427	10,056	10,167	10,425	10,578	10,690	10,819	10,973	11,036	11,128	11,275	11,396	11,479
강원	1,624	1,176	1,177	1,203	1,226	1,242	1,259	1,258	1,260	1,258	1,278	1,277	1,280
충북	2,248	1,582	1,602	1,644	1,664	1,685	1,715	1,717	1,739	1,738	1,780	1,784	1,808
충남	2,739	1,932	1,964	2,018	2,046	2,083	2,095	2,110	2,139	2,164	2,204	2,217	2,218
전북	2,225	1,599	1,615	1,651	1,674	1,701	1,721	1,718	1,745	1,765	1,773	1,786	1,790
전남	2,722	1,938	1,959	1,998	1,996	2,013	2,038	2,066	2,067	2,073	2,086	2,102	2,112
경북	2,804	2,031	2,032	2,083	2,118	2,130	2,157	2,160	2,180	2,207	2,225	2,237	2,248
경남	4,633	3,330	3,357	3,444	3,485	3,556	3,578	3,608	3,618	3,655	3,677	3,700	3,720
제주	868	619	626	652	654	662	669	674	682	671	672	679	685
합계	72,855	52,618	53,096	54,206	54,769	55,309	55,920	56,302	56,569	56,819	57,438	57,814	58,102

주: 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수는 1건 이상 결제이력이 있는 지원인력 수이며, 합계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중복을 제외한 전체 제공인력의 합임.

26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Number of the Child Care Faciliti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Users

지표 정의

장애아 어린이집은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구분한다. 이용 아동은 각각 시설의 연도말 이용 현원을 의미한다.

본 지표를 통해 장애아 보육정책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 장애아를 전문으로 보육하는 어린이집 및 이를 이용하는 장애아동 현 인원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을 함께 보육하는 어린이집 및 이를 이용하는 장애아동 현 인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 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이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종일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이다.

장애아 어린이집은 2004년 332개소에서 2016년 1,088개소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모두 2005년 크게 늘어났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지만 2008년을 경과하면서 시설 수 증가폭은 줄었다. 이용 아동 수는 2008년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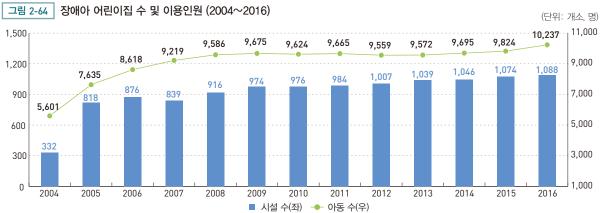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2004년 103개소에서 2016년 177개소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이용 아동 역시 3,935명에서 6,158명으로 증가하였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2004년 229개소에서 2016년 911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이용 아동 수는 같은 기간 1,666명에서 4,079명으로 증가하였다.

통계정보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2004	2016	1년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	,	

Checkpoint

2000년대 중반 장애아 어린이집과 이용 아동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전년대비 시설 수는 14 개소, 이용 아동은 413명 증가하였다. 통합보육이 강조되면서 시설 증가의 대부분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이용 아동은 2009년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다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각 연도

표 2-66 유형별 장애아 어린이집 수 및 이용 인원 (2004~2016)

(단위: 개소, 명)

	유형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설 수	장애아 전문	103	132	144	154	160	168	166	169	171	172	174	175	177
시끌 ㅜ	장애아 통합	229	686	732	685	756	806	810	815	836	867	872	899	911
이용	장애아 전문	3,935	5,053	5,406	5,887	6,068	6,206	6,137	6,152	5,994	5,883	5,860	5,895	6,158
아동 수	장애아 통합	1,666	2,582	3,212	3,332	3,518	3,469	3,487	3,513	3,565	3,689	3,835	3,929	4,079
시	설 소계	332	818	876	839	916	974	976	984	1,007	1,039	1,046	1,074	1,088
이용 아동 소계		5,601	7,635	8,618	9,219	9,586	9,675	9,624	9,665	9,559	9,572	9,695	9,824	10,237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각 연도

표 2-67 시도별 · 유형별 장애아 어린이집 수 및 이용 인원 (2016)

(단위: 개소, 명)

78	장애아 전등	문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합 어린이집	합	계
구분	시설 수	이용 아동	시설 수	이용 아동	시설 수	이용 아동
서울	10	241	326	1,641	336	1,882
부산	16	542	33	126	49	668
대구	17	752	14	98	31	850
인천	6	132	59	324	65	456
광주	11	507	1	14	12	521
대전	5	112	14	48	19	160
울산	9	357	14	72	23	429
세종	0	0	6	13	6	13
경기	20	564	279	1,261	299	1,825
강원	4	115	17	51	21	166
충북	7	177	12	23	19	200
충남	10	295	32	45	42	340
전북	10	377	11	62	21	439
전남	13	533	13	35	26	568
경북	14	678	19	89	33	767
경남	21	645	27	90	48	735
제주	4	131	34	87	38	218
합계	177	6,158	911	4,079	1,088	10,237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6

27

특수교육 대상자 수

Number of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지표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한 장애영아 및 학생 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영아 및 학생 수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2005년 58,362명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79,711 명, 2013년 86,633명, 2016년 현재 87,950명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5,186명, 초등학교 33,770명, 중학교 19,793명, 고등학교는 23,9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연도 별 추이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가 2005년 11,748명에서 2016년 23,943명으로 2 배 이상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장애유형별로 특수교육 대상자를 살펴보면 2016년 현재 지적장애 학생이 47,25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지체장애 학생 11,019명, 자폐성장애 학생 10,98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와 지체장애는 모든 연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나 자폐성장애는 2009년 4,647명에서 2016명 10,985명으로 가장 큰 증가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가장 많이 배치된 교육기관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46,645명)으로 전체 중 53.0%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학생은 15,344명(17.4%)으로 이 두 가지 형태를 합하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은 전체 장애학생 중 70.5%(61,989명)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특수학교의 학생은 25,467명으로 전체의 2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이 주로 통합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2008	2016	1년

Checkpoint

특수교육 대상자는 2005년 이후 2015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했으나 2016년 처음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증감 현황을 학교급별로 보면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전공과에서는 모두 소폭 증가하였으나 중학교는 2015년 21,108명에서 2016년 19,793명으로 유일하게 감소하였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자폐성장애와 의사소통장애, 발달지체에서만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 교육기관별로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만 대상자 수가 증가하여 특수학급에 대한 장애인의 교육 욕구가 큰 것으로 보인다.

표 2-68 학교급별 특수교육 대상자 수 (2005~2016)

(단위: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58,362	62,538	65,940	71,484	75,187	79,711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87,950
장애영아	-	-	-	-	288	290	356	403	578	680	742	656
유치원	3,057	3,243	3,125	3,236	3,303	3,225	3,367	3,675	4,190	4,219	4,744	5,186
초등학교	31,064	32,263	32,752	33,974	34,035	35,294	35,124	34,458	33,518	33,184	33,591	33,770
중학교	12,493	13,972	15,267	16,833	17,946	19,375	20,508	21,535	22,241	22,159	21,108	19,793
고등학교	11,748	13,060	13,349	15,686	17,553	19,111	20,439	21,649	22,466	22,973	23,422	23,943
전공과	-	-	1,447	1,755	2,062	2,416	2,871	3,292	3,640	4,063	4,460	4,602

주: 장애영아는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용 등임.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표 2-69 장애유형별 특수교육 대상자 수 (2005~2016)

(단위: 명)

												(111.0)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58,362	62,538	65,940	71,484	75,187	79,711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87,950
시각장애	1,745	1,902	2,292	2,103	2,113	2,398	2,315	2,303	2,220	2,130	2,088	2,035
청각장애	2,549	2,806	2,864	3,073	3,385	3,726	3,676	3,744	3,666	3,581	3,491	3,401
지적장애	33,618	33,958	36,041	40,222	40,601	42,690	45,132	46,265	47,120	47,667	47,716	47,258
지체장애	5,924	6,957	7,739	8,788	9,659	10,367	10,727	11,279	11,233	11,209	11,134	11,019
정서행 동 장애	5,870	8,852	7,695	7,681	3,537	3,588	2,817	2,713	2,754	2,605	2,530	2,221
자폐성장애	-	-	-	-	4,647	5,463	6,809	7,922	8,722	9,334	10,045	10,985
의사소통장애	-	301	1,185	1,226	1,324	1,591	1,631	1,819	1,953	1,966	2,045	2,089
학습장애	8,447	6,738	6,982	6,754	6,526	6,320	5,606	4,724	4,060	3,362	2,770	2,327
건강장애	209	1,024	1,142	1,637	1,945	2,174	2,229	2,195	2,157	2,029	1,935	1,675
발달지체	-	-	-	-	1,450	1,394	1,723	2,048	2,748	3,395	4,313	4,940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표 2-70 교육환경별 특수교육 대상자 수 (2005~2016)

(단위: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58,362	62,538	65,940	71,484	75,187	79,711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87,950
일반학교 일반학급	5,110	6,741	7,637	10,227	12,006	13,746	14,741	15,647	15,930	15,648	15,622	15,344
일반학교 특수학급	29,803	32,506	35,340	37,857	39,380	42,021	43,183	44,433	45,181	45,803	46,351	46,645
특수 학교	23,449	23,291	22,963	23,400	23,606	23,776	24,580	24,720	25,138	25,288	25,531	25,467
특수교육지원센터	-	-	-	-	195	168	161	212	384	539	563	494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비율

Inclusion Rates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27-1

지표 정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 전일제 통합학급에서 완전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해당 지표는 장애학생 개개인이 성공적으로 질 높은 통합교육을 제공받는지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일반학교 일반 학급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전체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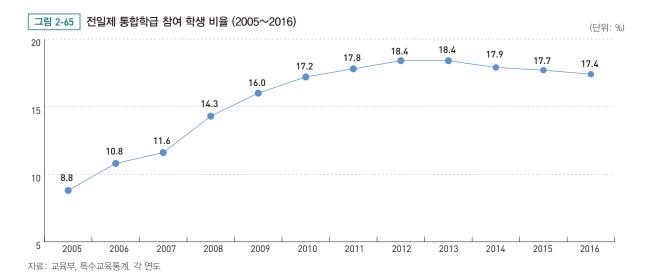
특수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2000년 54,732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6년에는 87,950명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일반적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각 25,467명, 494명) 또는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경우(46,645명)와 비장애학생과 함께 일반학급에서 전일제 통합교육을 받는 경우(15,344명)로 분류된다.

전일제 통합학급 참여 학생 비율은 2005년 8.8%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최고 18.4%에 이르렀으나 이후 다시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 2016년 현재 17.4%에 머무르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전일제 통학학급 참여 장애학생 수는 총 15,344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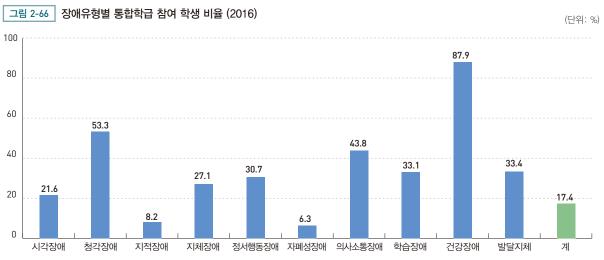
2016년을 기준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참여율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학생의 경우 통합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합교육 참여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25.3%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 24,7%, 제주 24.6%, 울산 23.5%의 순이었다. 반면 세종, 전남, 충남 및 경기는 상대적으로 통합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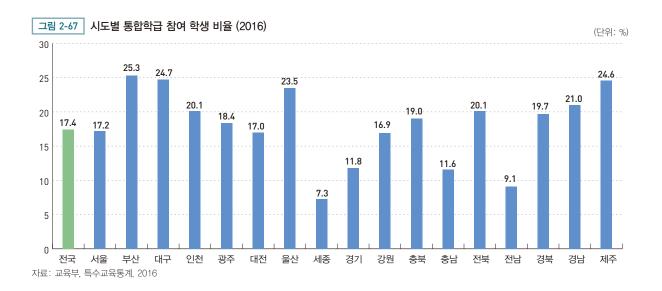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2008	2016	1년











28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액

An Overview of Educational Benefit for Parent and Children With Disabilites: Provision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1 \sim 3등급 장애인 가구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측정 산식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1~3급의 중증장애를 가진 초·중·고등학생 및 1~3 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지급액: 입학금·수업료(고등학생) 금액 전액, 교과서대(고등학생) 125.9천 원(연 1회), 부교재비(초·중학생, 특수교육대상자) 38.7천 원(연 1회), 학용품비(중·고등학생) 52.6천 원(연2회 분할지원) 등

							(2015년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최저생계비 130%	802,465원	1,366,362원	1,767,594원	2,168,828원	2,570,061원	2,971,293원	3,372,526원

2015년 장애인 자녀교육비 총 지급건수는 3,111건이다. 이 중 학용품비 지급건수가 1,2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교재비 733건, 수업료 663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 금액은 수업료의 비중이 높았는데 2015년 장애인 자녀교육비 전체 지급금액은 약 322백만원이고, 이 중 수업료가 약 211백만원으로 약 6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1 장애인 교육비 지급 건수 (2013~2015)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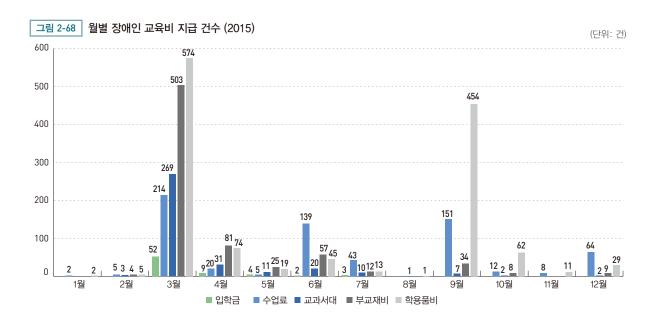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445	4,298	3,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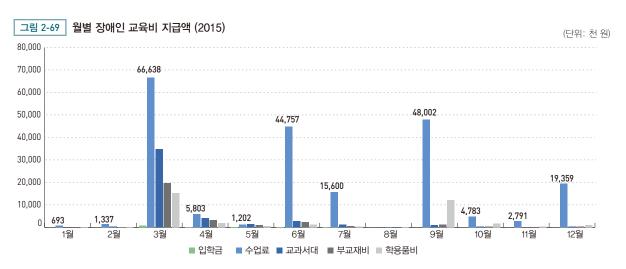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_I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5	1년

Checkpoint

2014년 대비 2015년 자녀 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액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지급 건수는 전년대비 약 28% 감소(2014년 4,298건 \rightarrow 2015년 3,111건)했으며 지급 금액은 약 40% 감소(2014년 540백만 원 \rightarrow 2015년 322백만 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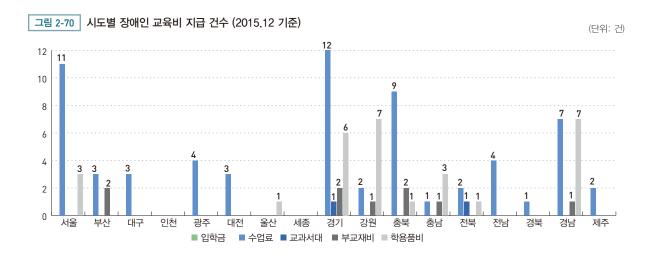




丑 2-72	월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2015)								

(단위: 건, 천 원)

											(1)	n. e, e e/
구분	입력	참	수입	걸료	교과	서대	부교	재비	학용	품비	힙	계
TE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1월	-	-	2	693	-	-	-	_	2	53	4	746
2월	-	-	5	1,337	3	389	4	155	5	132	17	2,011
3월	52	781	214	66,638	269	34,818	503	19,698	574	15,158	1,612	137,094
4월	9	140	20	5,803	31	4,144	81	3,206	74	1,946	215	15,239
5월	4	59	5	1,202	11	1,425	25	958	19	526	64	4,170
6월	2	30	139	44,757	20	2,720	57	2,283	45	1,315	263	51,105
7월	3	43	43	15,600	10	1,285	12	464	13	393	81	17,785
8월	-	-	-	-	1	130	-	-	1	53	2	182
9월	-	-	151	48,002	7	907	34	1,316	454	12,205	646	62,429
10월	-	-	12	4,783	2	259	8	310	62	1,708	84	7,060
11월	-	-	8	2,791	-	-	-	_	11	289	19	3,081
12월	-	-	64	19,359	2	259	9	348	29	894	104	20,860
합계	70	1,053	663	210,965	356	46,333	733	28,738	1,289	34,671	3,111	321,7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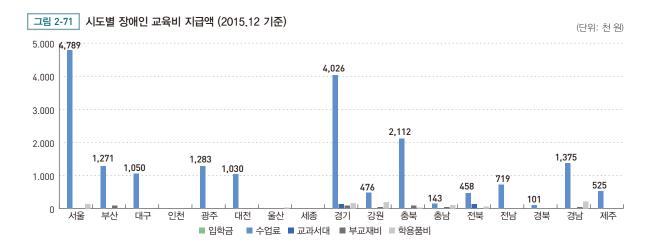


표 2-73 시도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2015.12 기준)

(단위: 건, 천 원)

78	입호	참금	수업	걸료	교과	서대	부교	재비	학용	품비	힙	계
구분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서울	-	-	11	4,789	-	-	-	-	3	132	14	4,920
부산	-	-	3	1,271	-	-	2	77	-	_	5	1,348
대구	-	-	3	1,050	-	-	-	-	-	_	3	1,050
인천	-	-	-	-	-	-	-	-	-	_	-	-
광주	-	-	4	1,283	-	-	-	-	-	_	4	1,283
대전	-	-	3	1,030	-	-	-	-	-	-	3	1,030
울산	-	-	-	-	-	-	-	-	1	26	1	26
세종	-	-	-	-	-	-	-	-	-	_	-	-
경기	-	-	12	4,026	1	130	2	77	6	158	21	4,391
강원	-	-	2	476	-	-	1	39	7	184	10	699
충북	-	-	9	2,112	-	-	2	77	1	26	12	2,216
충남	-	-	1	143	-	-	1	39	3	105	5	287
전북	-	-	2	458	1	130	-	-	1	53	4	640
전남	-	-	4	719	-	-	-	-	-	-	4	719
경북	-	-	1	101	-	-	-	-	-	_	1	101
경남	-	-	7	1,375	-	-	1	39	7	210	15	1,624
제주	-	-	2	525	-	-	-	-	-	_	2	525
계			64	19,359	2	260	9	348	29	894	104	20,860



장애인 교육수준

Education status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조사대상 장애인의 최종학력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따라 측정한 값의 분율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의 교육수준을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3년제이하), 대학(4년제이상), 대학원이상'과 같이 8점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최종학력)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장애인 수 조사대상 장애인 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최종학력이 '초등학교'인 경우가 2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28.1%, '중학교' 16.2%, '대학 이상' 15.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학'인 경우도 전체 장애인의 11.6%나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인 '초등학교' 32.9%, '고등학교' 25.0%, '중학교' 18.3%, '대학 이상' 12.0%, '무학' 11.8%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유형별로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무학'비율에 있어서는 청각장애(19.4%), 뇌병변장애 (12.3%), 뇌전증장애(12.0%), 지체장애(11.7%) 등이 비교적 높은 반면, '대학 이상'비율은 안면장 애(34.7%), 정신장애(28.6%), 신장장애(24.3%), 간장애(20.0%)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1990	2014	3년

Checkpoint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교육기회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어져 왔다. 일례로 교육정도가 '고등학교' 이상인 비중은 장애인의 경우 49.0%(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로 이는 전체 국민 71.7%(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비하여 약 22.7% 맞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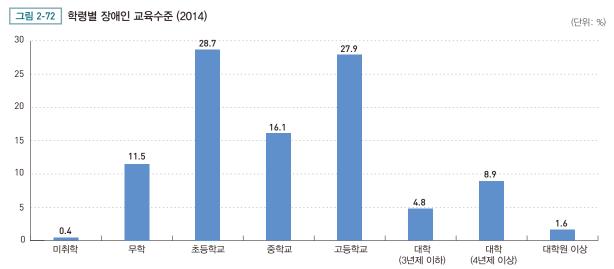
•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2014

표 2-74 장애유형별 장애인 교육수준 (2014)

(단위	:	%)
(=+1		/0)

구분	계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3년제 이하)	대학 (4년제 이상)	대학원 이상
전체	100.0	0.4	11.5	28.7	16.1	27.9	4.8	8.9	1.6
지체장애	100.0	0.0	11.7	30.2	16.7	26.1	4.7	9.1	1.6
뇌병변장애	100.0	1.5	12.1	29.7	16.0	25.4	3.4	10.1	1.8
시각장애	100.0	0.0	10.6	28.5	16.1	27.9	3.7	10.3	2.9
청각장애	100.0	0.4	19.4	33.5	15.2	20.1	2.8	6.9	1.7
언어장애	100.0	2.2	8.6	33.7	15.0	24.7	9.8	6.0	0.0
지적장애	100.0	1.4	9.5	23.6	12.7	45.0	6.8	0.9	0.0
자폐성장애	100.0	4.4	4.8	20.3	20.8	37.1	12.5	0.0	0.0
정신장애	100.0	0.0	2.2	7.8	19.1	42.3	11.0	16.1	1.5
신장장애	100.0	0.0	6.8	20.4	13.7	34.7	8.1	14.6	1.6
심장장애	100.0	4.0	9.7	18.0	8.8	40.7	2.9	7.8	8.2
호흡기장애	100.0	0.0	4.5	49.6	24.7	11.8	0.0	9.4	0.0
간장애	100.0	0.0	0.0	37.9	7.6	34.5	1.0	17.7	1.3
안면장애	100.0	0.0	11.4	10.5	0.0	43.4	18.3	16.4	0.0
장루 · 요루장애	100.0	0.0	2.9	33.4	17.4	36.4	0.0	8.9	0.9
뇌전 증 장애	100.0	2.7	11.7	13.1	24.1	44.0	4.5	0.0	0.0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2014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2014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는 만 15세 이상 장애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장애인 취업자와 취업률,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장애인 실업자와 실업률,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전반을 진단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 장애인 연구 수 장애인 연구 수
- 비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 장애인 인구 수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수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16년 현재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총 2,441천 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은 941천 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39,0%이다.

남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3%임에 비하여 여성장애인의 참가율은 22.4%로 남성의절반 이하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40~49세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2.0%로 가장 높고, 30~39세 연령대의 경우 60.9%로 뒤를 이었다.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24.5%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일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와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 정도가 경증일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았으며, 장애유 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의 47.7%, 시각장애인의 45.6%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체 외 신체외부 장애인의 경우에는 12.4%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하구자에이 고요고다	자애이 겨제화도 신태조사	2013	2016	1년
작성기관	통계명	,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Checkpoint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6년 39.0%로 전년도 37.7%에 비해 1.3%p 증가하였다. 고용률 또한 2015년 34.8%에서 2016년 36.0%로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같은 기간 7.1%에서 7.0%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5 일반특성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2016)

(단위: 명,%)

									(단위: 명,
	구분	15세 이상 인구 (명)	경제활동 인구 (명)	취업자 (명)	실업자 (명)	비경제활동 인구 (명)	경제활동 참가율 (%)	실업 률 (%)	고 용 률 (%)
	2014	2,449,437	970,600	906,267	64,333	1,478,837	39.6	6.6	37.0
전체	2015	2,444,194	921,980	849,517	72,463	1,522,214	37.7	7.1	34.8
	2016	2,441,165	941,050	880,090	60,960	1,500,115	39.0	7.0	36,0
성별	남성	1,414,972	711,664	666,248	45,416	703,318	50.3	6.4	47.1
6 <u>5</u>	여성	1,026,194	229,387	213,842	15,545	796,807	22.4	6.8	20.8
	15~29세	125,932	46,116	38,387	7,729	79,816	36.6	16.8	30.5
연령대별	30~39세	154,406	94,019	86,315	7,704	60,387	60.9	8.2	55.9
	40~49세	298,101	184,725	175,145	9,580	113,376	62.0	5.2	58.8
	50~59세	520,217	286,925	275,382	11,543	233,292	55.2	4.0	52.9
	60세 이상	1,342,509	329,265	304,860	24,405	1,013,244	24.5	7.4	22.7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438,700	393,344	373,502	19,842	1,045,356	27.3	5.0	26.0
	고졸	699,331	353,025	325,766	27,259	346,306	50.5	7.7	46.6
	대졸 이상	303,136	194,683	180,823	13,860	108,453	64.2	7.1	59.7
ᄄᄱ	ਨ ੁੱ	773,883	168,186	152,640	15,546	605,697	21.7	9.2	19.7
장애 정도별	경증	1,667,283	772,865	727,450	45,415	894,418	46.4	5.9	43.6
	지체장애	1,279,197	610,272	575,715	34,557	668,925	47.7	5.7	45.0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	244,184	30,158	26,611	3,547	214,026	12.4	11.8	10.9
TWI-OHH	시각장애	251,059	114,375	107,753	6,622	136,684	45.6	5.8	42.9
장애유형별	시각 외 감각장애	264,557	93,312	87,235	6,077	171,245	35.3	6.5	33.0
	정신적 장애	279,232	60,197	53,200	6,997	219,035	21.6	11.6	19.1
	신체내부장애	122,937	32,737	29,575	3,162	90,200	26.6	9.7	24.1
	수도권	1,016,951	404,115	374,096	30,019	612,836	39.7	7.4	36.8
지역별	광역시권	462,230	165,852	155,598	10,254	296,378	35.9	6.2	33.7
	기타 시도	961,985	371,084	350,396	20,688	590,901	38.6	5.6	36.4

자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6

30-1

장애인 고용률

Employment Rate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구 중 취업인구 비율을 의미하며, 생산가능 장애인구 중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로 정의한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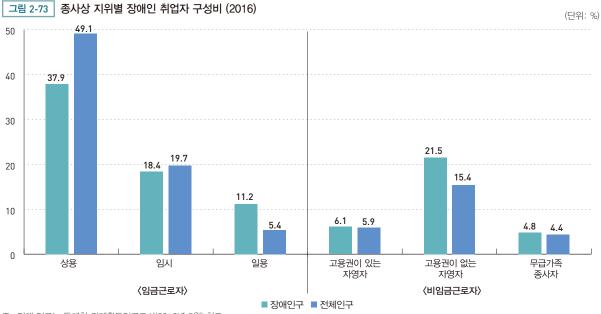
장애인 취업자 수 생산가능 장애인 인구 수

장애인 고용률은 국가경제에 있어서 장애 인력의 활용 정도를 살펴보는데 유용한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워 2016년 기준 고용률은 36.0%에 그치고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마찬가지로 고용률도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남성장애인의 고용률이 47.1%임에 비하여 여성장애인 고용률은 20.8%에 불과하다. 연령대별로는 40~49세 연령대의 고용률이 58.8%로 가장 높고, 30~39세 연령대의 경우 55.9%로 뒤를 이었다.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22.7%만이 고용되어 있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일수록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의 정도와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 정도가 경증일 경우 고용률이 높았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의 45.0%, 시각장애인의 42.9%가 취업상태인 반면에 지체 외 신체외부 장애인의 경우에는 10.9%만이 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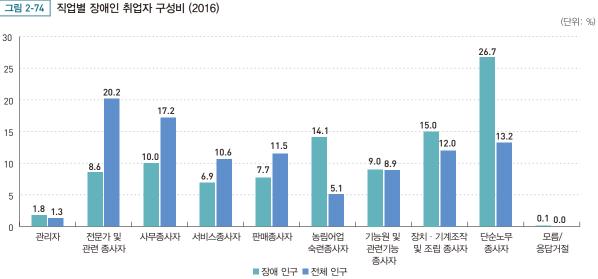
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먼저 상용·임시·일용 등 임금근로자는 취업자의 67.5%로 전체 인구의 80.0%에 비해 12.5%p 낮다.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2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14.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15.0% 등의 순이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2016	1년	



주: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6년 5월) 참조.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6



주: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6년 5월) 참조, 자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6

장애인 실업률

Unemployment Rate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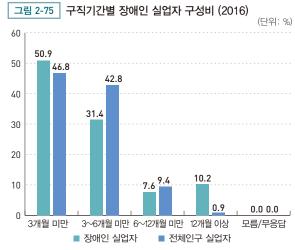
측정 산식

장애인 실업자 수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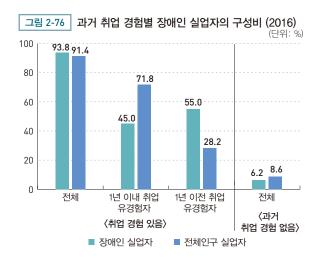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는 60,960명으로 장애인 실업률은 7.0%로 나타났다. 남성장애인의 실업률이 6.4%임에 비하여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은 다소 높은 6.8%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15~29세 연령대의 실업률이 16.8%로 가장 높은데, 이는 젊은 장애인이 취업에 어려움을 더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인(11.8%)과 정신적 장애인(11.6%)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실업자의 구직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실업자의 50.9%는 '3개월 미만', 31.4%는 '3~6개월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12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의 경우도 10.2%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실업자에 비하여 장애인 실업자의 실업지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실업자 중에서 과거 취업경험을 가진 사람은 93.8%로 전체 인구 실업자의 91.4%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실업자 중에서 1년 이내 취업을 한 비율은 불과 45.0%로, 전체인구 실업자 중 1년 이내 취업을 한 비율 71.8%인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6년 5월) 참조. 자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6



주: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6년 5월) 참조 자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6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2016	1년

3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Current Status of Mandatory Employ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 제도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본 지표를 통해서 의무고용제도 이행 현황을 파악한다.

본 지표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및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장애인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의무고용제로 대표된다. 국가·자치단체와 상시 50명 이상 근로 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은 부문별로 차이가 있는데, 현재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은 3.2%, 근로자는 2.9%, 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은 3.2%, 민간기업은 2.9%가 적용되고 있다.

2016년 장애인 고용의무를 적용받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체는 총 28,708개소이며,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 및 상시근로자는 약 7,853천 명,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169천 명으로 고용률은 2.66%이다. 장애인 고용률은 2009년 1.87%, 2011년 2.28%, 2013년 2.48%, 2015년 2.62%, 2016년 2.6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부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장애인 비율은 2.81%로 의무고용률보다 낮으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4.19%로 의무고용률 기준보다 높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96%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2.56%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인다. 민간기업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차이가 있는데,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1.90%, 100~299인 기업은 3.00%, 100인 미만의 경우는 2.51%였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2006	2016	1년

Checkpoint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16년 장애인 고용률은 2.66%로 전년도 2.62%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하지만 정부부문의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아직까지 법정 의무 고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표 2-76 유형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08~2016)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73	1.87	2.24	2.28	2.35	2.48	2.54	2.62	2.66
정 부부 문	1.76	1.97	2.39	2.48	2.61	2.85	2.91	3.11	3.50
공무원	-	-	2.40	2.52	2.57	2.63	2.65	2.80	2.81
공무원 아닌 근로자	-	-	2.36	2.35	2.75	3.51	3.75	4.05	4.19
공공기관	2.05	2.11	2.56	2.72	2.80	2.81	2.91	2.93	2.96
민간기업	1.70	1.84	2.19	2.22	2.27	2.39	2.45	2.51	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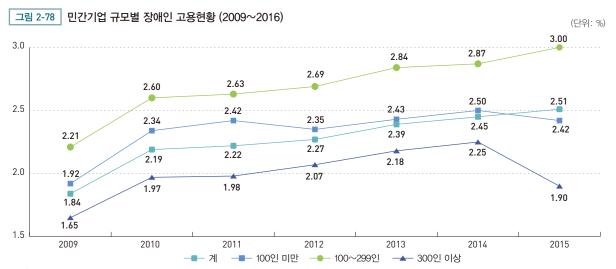
주: 2010년부터는 고용률에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각 연도



주: 2010년부터는 고용률에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각 연도



주: 1) 2008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1.70이며 50~299인 기업은 1.93임. 2009년부터 사업장 규모가 세분화됨.

2) 2010년부터는 고용률에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각 연도

32 "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Average Wage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in Recent 3 months

지표 정의

취업장애인은 조사대상 기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의미하며, 취업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은 이들의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말한다.

취업한 근로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취업장애인의 월 소득 및 취업분야를 파악하여 장·단기 장애인 소득보장정책과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취업장애인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2016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169.1만 원으로 전년도의 174.7만 원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의 임금은 전체 인구의 월평균 임금 241.2만원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상태와 평균 임금을 고려하면, 장애인이 어렵게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들 중 대부분이 비장애인에 비해 일자리의 질이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220.5만 원, 임시근로자는 92.4만 원, 일용근로자는 120.5만 원으로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여부는 고용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임금수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규직근로자 242.1만 원, 비정규직근로자 122.5만 원으로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종사자가 '1~4인'인 경우가 122.3 만 원, '5~49인' 161.6만 원, '50~299인' 203만 원, '300인 이상' 292.8만 원으로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임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169.1만 원으로 조사되어, 2015년 기준 174.7만 원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임금은 전체 인구의 월평균 임금 241.2만 원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정규직,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임금이 가장 높았다.

표 2-77 연도별 · 특성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단위: 명, 만 원)

		201	10	201	13	201	4	201	15	20′	16
구분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상 용근 로자	211,534	183.5	289,919	205.0	327,712	213.8	313,384	227.4	333,105	220.5
종사상 지위	임시근로자	136,732	91.3	131,074	95.2	132,818	80.3	127,363	90.7	160,827	92.4
•••	일 용근 로자	85,067	80.5	100,970	97.3	98,198	100.0	89,303	109.1	98,463	120.5
정규직	비정규직	278,063	100.4	308,498	107.9	328,438	111.4	307,479	117.1	361,473	122.5
여부	정규직	155,270	194.7	213,464	227.0	230,289	234.2	222,571	254.2	230,921	242.1
	1~4인	73,455	106.0	140,185	113.5	124,891	121.2	94,274	112.6	131,069	122.3
종사자	5~49인	188,225	134.7	221,900	138.9	267,186	153.2	272,707	151.5	302,267	161.6
규모	50~299인	70,248	156.8	99,425	195.9	117,695	190.1	106,846	225.5	109,066	203.0
	300인 이상	36,628	261.0	53,495	270.9	45,456	258.3	51,700	306.3	41,969	292.8
	전체	433,333	134.2	521,962	156.6	558,727	162.0	530,050	174.7	592,395	169.1
전체			194.6		217.1		223.4		231.4		241.2
인구	정규직		228.9		253.3		260.1		271.3		283.6
	비정규직		125.3		141.2		145.9		146.7		151.1

자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각 연도

33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Number of Disability Pension Recipients

지표 정의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된다. 본 지표는 장애 인연금의 수급자 수를 이용한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한다. 2010년 7월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장애수당 중 중증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되고 있다.

2016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350,161명으로 2015년의 342,444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상당수는 차상위 초과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이 82,465명으로 가장 많고, 뇌병변장애인이 65,894명, 지체장애인 59,269명, 신장장애인 38,074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장애인연금 수급률을 살펴보면 전남이 78.9%로 가장 높은 반면 울산이 60.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	2010	2016	1년

Checkpoint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2011년 제도의 본격 시행 이후 계속 증가하였다. 2013년 305,394명이던 수급자는 2014년 328,414명, 2016년 350,16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장애 수당 수급자 수는 2013년 320,029명에서 2016년 336,224명으로 소폭 늘어났으며,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는 2013년 21,777명에서 2016년 19,934명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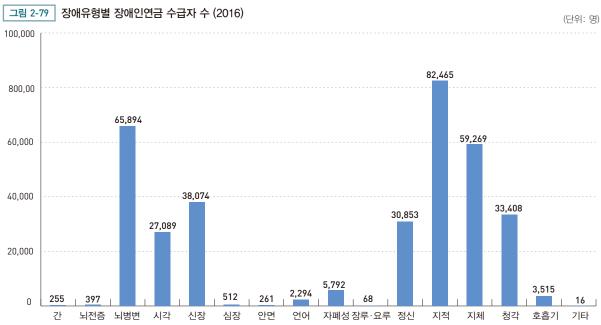
표 2-78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2010~2016)

(단위: %, 명)

구분	수급률	총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
2010	45.3	244,319	145,495	56,079	40,034	2,711
2011	55.6	293,122	139,299	61,690	81,983	10,150
2012	59.0	305,913	134,322	55,824	88,070	27,697
2013	59.7	305,394	131,668	52,663	92,592	28,471
2014	64.5	328,414	130,428	51,512	118,157	28,317
2015	67.3	342,444	134,489	46,306	133,431	28,218
2016	68.4	350,161	134,432	45,085	142,769	27,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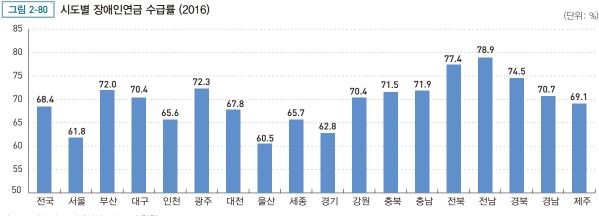
주: 연도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 각 연도



주: 연도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http://ssis.or.kr 에서 2018.2.23. 인출)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 2017

장애수당 수급자 수

Number of Disability Allowance Recipients

33-1

지표 정의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보장제도수급자(일반 재가 및 보장시설)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다. 경증장애인은 3급(중복제외)과 4급~6급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측정 산식

• 장애수당 수급자 수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근거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7월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종전 장애수당 중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경증장애수당은 장애수당으로 지급되며 소득계층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장애수당수급자의 경우,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수당 수급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2005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확대하였으며 2006년에는 시설수급자, 2007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였고 지급 금액도 인상하였다.

2016년 장애수당 수급자는 총 336,224명으로 전년도(327,881명)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수급유형별로 보면 일반 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23,74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시설수 급자는 12,528명, 차상위계층은 99,952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156,154명으로 가장 많고, 정신 장애인이 44,213명, 청각장애인 33,305명, 뇌병변장애인 32,800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별로 장애수당 수급자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51,984명, 서울이 50,193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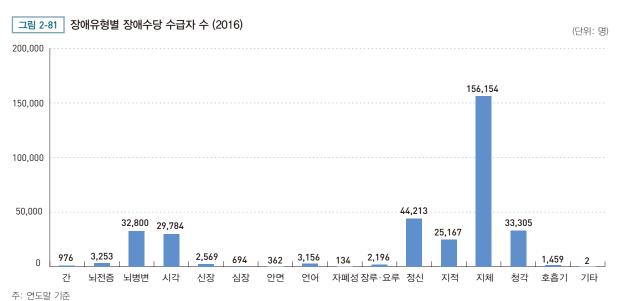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지급현황	2010	2016	1년

표 2-79 유형별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201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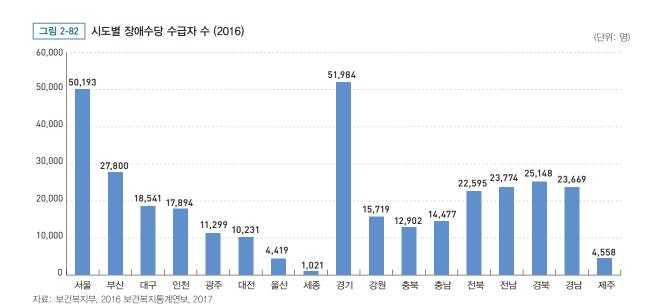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총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	차상위
2010	308,243	212,914	11,202	84,127
2011	316,861	210,471	10,381	96,009
2012	318,483	204,717	15,428	98,338
2013	320,029	204,710	11,989	103,330
2014	320,318	207,819	11,766	100,733
2015	327,881	219,845	12,130	95,906
2016	336,224	223,744	12,528	99,952

자료: 보건복지부,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2017



구. 인도할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http://ssis.or.kr 에서 2018.2.23. 인출)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수

Number of Disabled Children Allowance Recipients

33-2 ^{연 관}

지표 정의

장애아동 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지급된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아동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

측정 산식

• 장애이동 수당 수급자 수

장애아동 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근거하여 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중보호·간병비용 등의 양육에 대한 보전적 성격의 수당이다. 장애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비용 보전 급여의 사회보장제도로서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및 보장시설)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2007년부터 종전지급하던 장애수당을 18세 이상은 장애수당으로, 18세 미만은 장애아동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수는 2016년 19,934명으로 전년도(20,464명)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수급유형별로 보면 일반 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0,652명으로 가장 많고, 차상위계층의수급자는 5,771명, 시설수급자는 3,511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아동이 12,83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뇌병변장애아동이 2,741명, 자폐성장애아동 1,798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655명, 서울시가 2,93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지급현황	2010	2016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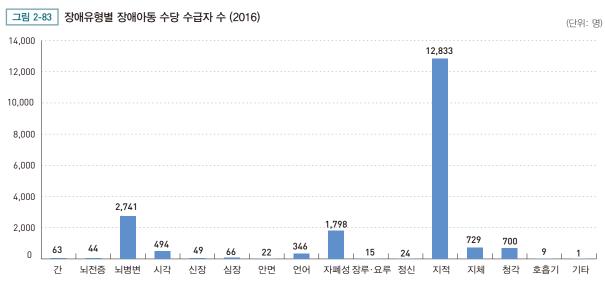
표 2-80 유형별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2010~2016)

(단위: 명)

구분	총계	기초생	활보장수급지	l(일반)		차상위		기초상	활보장수급자	l(시설)
TE	5/11	소계	중증	경증	소계	중증	경증	소계	소계 중증 경	
2010	23,057	12,637	7,982	4,655	6,308	4,229	2,079	4,112	3,231	881
2011	23,586	12,493	7,833	4,660	6,973	4,670	2,303	4,120	3,216	904
2012	22,813	11,541	7,104	4,437	7,090	4,664	2,426	4,182	3,186	996
2013	21,777	11,172	6,782	4,390	7,127	6,235	4,677	3,478	2,598	880
2014	21,121	10,818	6,511	4,307	6,388	4,518	2,230	3,915	2,916	999
2015	20,464	10,993	6,466	4,527	5,681	3,675	2,006	3,790	2,742	1,048
2016	19,934	10,652	6,197	4,455	5,771	3,668	2,103	3,511	2,500	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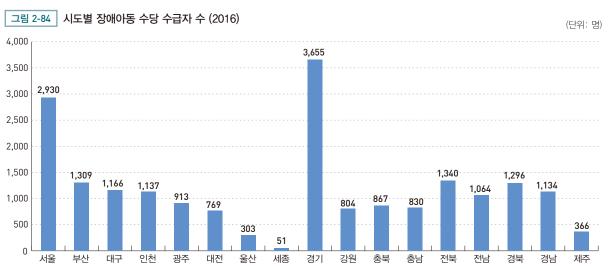
주: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2009년까지 장애수당 지급. 2010년부터 장애아동 수당 지급. 연도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2017



주: 연도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http://ssis.or.kr 에서 2018.2.23. 인출)



자료: 보건복지부,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2017

34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Number of Disabled persons in Near Poverty group

지표 정의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측정 산식

- · 지원 대상: 장애수당(만 18세 이상의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등록장애인)과 장애아동 수당(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에게 지급)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계층
- · 지원 금액: 차상위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아동 수당은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차상위 중 증장애아동의 경우 월 15만 원, 차상위 경증장애아동은 월 10만 원 지급

							(2015년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최저생계비 120%	740,737원	1,261,258 원	1,631,626원	2,001,995원	2,372,364원	2,742,732원	3,113,101원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의 월별 추이는 3월까지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이후에는 감소추이를 나타내는 가운데, 2015년 12월 151,916명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성별 분포는 2015년 12월 기준 남성이 66,588명(44%), 여성이 85,328명(46%)으로 여성 수급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2월 기준 경기도가 25,8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20,814명, 전라남도 13,16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6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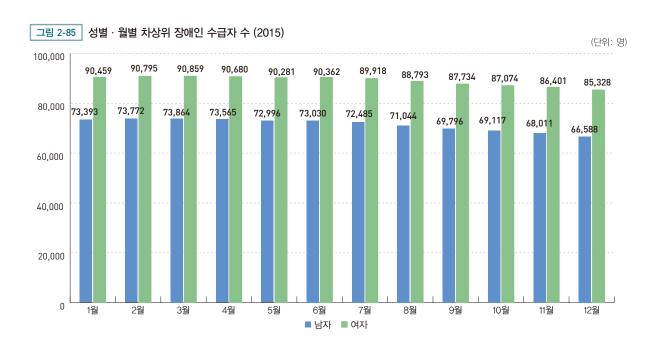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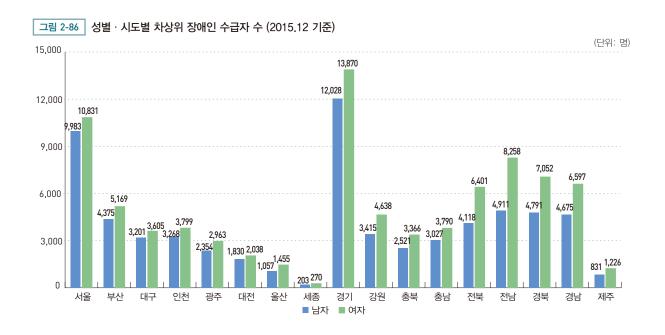
2015년 12월 기준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는 총 151,916명으로 전년동월의 161,299명보다 약 9,300명 감소하였다. 이는 2013년 동월(166,058명)과 비교하여 볼 때 3년 연속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표 2-81 연도별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단위: 명)

구분	2013년 12월	2014년 12월	2015년 12월
계	166,058	161,299	151,916





丑 2-82	월별 · 시도별 · 성별 차상위장애인 수급자 수 (2015)

(단위: 명)

H 2	-82	궐별 · 시.	노별·싱별	! 자상위상	애인 수급/	다수 (201	5)						(단위: 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남성	10,865	10,907	10,947	10,967	10,918	10,918	10,892	10,733	10,553	10,431	10,207	9,983
서울	여성	11,443	11,470	11,493	11,510	11,480	11,468	11,497	11,408	11,271	11,154	11,024	10,831
	소계	22,308	22,377	22,440	22,477	22,398	22,386	22,389	22,141	21,824	21,585	21,231	20,814
	남성	4,828	4,861	4,866	4,827	4,831	4,861	4,814	4,669	4,600	4,565	4,446	4,375
부산	여성	5,476	5,514	5,530	5,501	5,482	5,508	5,473	5,401	5,329	5,287	5,234	5,169
	소계	10,304	10,375	10,396	10,328	10,313	10,369	10,287	10,070	9,929	9,852	9,680	9,544
	남성	3,513	3,511	3,511	3,479	3,476	3,500	3,453	3,370	3,329	3,306	3,252	3,201
대구	여성	3,797	3,810	3,805	3,785	3,770	3,786	3,766	3,708	3,658	3,639	3,626	3,605
	소계	7,310	7,321	7,316	7,264	7,246	7,286	7,219	7,078	6,987	6,945	6,878	6,806
	남성	3,556	3,595	3,654	3,623	3,594	3,590	3,553	3,509	3,438	3,382	3,315	3,268
인천	여성	3,868	3,906	3,946	3,976	3,966	3,986	3,944	3,911	3,876	3,838	3,821	3,799
	소계	7,424	7,501	7,600	7,599	7,560	7,576	7,497	7,420	7,314	7,220	7,136	7,067
	남성	2,611	2,629	2,624	2,597	2,585	2,578	2,560	2,512	2,455	2,442	2,408	2,354
광주	여성	3,099	3,123	3,133	3,134	3,131	3,146	3,123	3,080	3,024	3,032	3,002	2,963
	소계	5,710	5,752	5,757	5,731	5,716	5,724	5,683	5,592	5,479	5,474	5,410	5,317
	남성	2,070	2,079	2,075	2,093	2,083	2,090	2,073	1,999	1,920	1,910	1,916	1,830
대전	여성	2,230	2,235	2,228	2,230	2,216	2,218	2,210	2,160	2,092	2,083	2,092	2,038
	소계	4,300	4,314	4,303	4,323	4,299	4,308	4,283	4,159	4,012	3,993	4,008	3,868
	남성	1,168	1,175	1,180	1,167	1,160	1,166	1,160	1,131	1,095	1,077	1,070	1,057
울산	여성	1,528	1,534	1,532	1,536	1,528	1,528	1,519	1,501	1,473	1,470	1,457	1,455
	소계	2,696	2,709	2,712	2,703	2,688	2,694	2,679	2,632	2,568	2,547	2,527	2,512
	남성	228	226	225	224	218	219	217	201	204	209	203	203
세종	여성	283	283	283	292	290	286	280	275	271	273	276	270
	소계	511	509	508	516	508	505	497	476	475	482	479	473
	남성	12,840	12,948	13,037	13,038	12,888	12,905	12,916	12,813	12,624	12,530	12,363	12,028
경기	여성	14,419	14,481	14,561	14,535	14,490	14,527	14,527	14,391	14,277	14,196	14,106	13,870
	소계	27,259	27,429	27,598	27,573	27,378	27,432	27,443	27,204	26,901	26,726	26,469	25,898
7101	남성	3,982	3,996	3,987	3,944	3,887	3,871	3,822	3,714	3,630	3,571	3,502	3,415
강원	여성	5,077	5,096	5,086	5,043	5,026	5,057	4,988	4,922	4,841	4,762	4,696	4,638
	소계	9,059	9,092	9,073	8,987	8,913	8,928	8,810	8,636	8,471	8,333	8,198	8,053
충북	남성 업설	2,759	2,775	2,775	2,765	2,750	2,769	2,720	2,652	2,609	2,589	2,542	2,521
ਠੱਤ	여성 소계	3,613 6,372	3,628 6,403	3,630 6,405	3,610 6,375	3,577 6,327	3,581 6,350	3,515 6,235	3,440 6,092	3,414 6,023	3,396 5,985	3,383 5,925	3,366 5,887
	남성	3,373	3,394	3,380	3,373	3,310	3,290	3,282	3,202	3,132	3,111	3,089	3,027
충남	으 여성	4,080	4,087	4,094	4,091	4,056	4,025	3,999	3,938	3,882	3,838	3,834	3,790
00	소계	7,453	7,481	7,474	7,464	7,366	7,315	7,281	7,140	7,014	6,949	6,923	6,817
	노기 남성	4,503	4,505	4,503	4,523	4,481	4,507	4,452	4,343	4,294	4,229	4,187	4,118
전북	여성	6,821	6,797	6,777	6,781	6,751	6,770	6,714	6,614	6,535	6,487	6,461	6,401
	소계	11,324	11,302	11,280	11,304	11,232	11,277	11,166	10,957	10,829	10,716	10,648	10,519
	는 " 남성	5,582	5,603	5,586	5,520	5,472	5,505	5,404	5,230	5,146	5,112	5,029	4,911
전남	여성	8,973	8,995	8,963	8,874	8,843	8,831	8,738	8,591	8,481	8,435	8,360	8,258
	소계	, 14,555	14,598	14,549	14,394	14,315	14,336	14,142	13,821	13,627	13,547	13,389	13,169
	남성	5,361	5,392	5,370	5,319	5,296	5,195	5,177	5,100	5,017	4,970	4,873	4,791
경북	여성	7,459	7,502	7,483	7,479	7,418	7,391	7,390	7,323	7,255	7,182	7,104	7,052
	소계	12,820	12,894	12,853	12,798	12,714	12,586	12,567	12,423	12,272	12,152	11,977	11,843
	남성	5,154	5,182	5,166	5,130	5,081	5,093	5,032	4,955	4,859	4,802	4,746	4,675
경남	여성	6,951	6,989	6,979	6,965	6,920	6,910	6,923	6,854	6,781	6,741	6,679	6,597
	소계	12,105	12,171	12,145	12,095	12,001	12,003	11,955	11,809	11,640	11,543	11,425	11,272
	남성	1,000	994	978	976	966	973	958	911	891	881	863	831
제주	여성	1,342	1,345	1,336	1,338	1,337	1,344	1,312	1,276	1,274	1,261	1,246	1,226
	소계	2,342	2,339	2,314	2,314	2,303	2,317	2,270	2,187	2,165	2,142	2,109	2,057
	남성	73,393	73,772	73,864	73,565	72,996	73,030	72,485	71,044	69,796	69,117	68,011	66,588
합계	여성	90,459	90,795	90,859	90,680	90,281	90,362	89,918	88,793	87,734	87,074	86,401	85,328
	소계	163,852	164,567	164,723	164,245	163,277	163,392	162,403	159,837	157,530	156,191	154,412	151,916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on Disability as % of GDP

지표 정의

OECD SOCX 기준 장애인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로 발표되고 있으며, 크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되어 있다.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 (GDP)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지출되는 장애관련 복지예산의 규모를 의미한다.

현금급여(Cash benefits)는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s), 산재보험(Pensions on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상병급여(Paid sick leave), 기타 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로 구성되고, 현물급여(Benefits in kind)는 돌봄 및 가사보조서비스 (Residential care/Home-help service), 재활서비스(Rehabilitation services), 기타 현물급여(Other benefits in kind)로 구성된다.

측정 산식

장애인복지 지출(현금 + 현물급여)

국가별 GDP

유의사항

현금급여(Cash benefits) 중 상병급여(Paid sick leave)는 2010년부터 산재급여(Pensions on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로부터 분리되어 산출되고 있지만 본 글에서는 포함된 수치를 이용하였다.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분야 복지 지출 규모는 2000년(0.36%)부터 2009년(0.66%)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0년(0.57%)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2011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여 2013년에는 0.61%로 나타났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비교해보면 모든 연도에서 현금급여가 80%에 가까운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현물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기준으로 보면 2013년 한국의 장애인복지 지출 비중(0.6%)은 OECD 평균 2.1%의 28.6%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 수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 칠레(0.7%), 터키(0.3%)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속해있다. 특히 한국은 현금급여 수준이 2004년부터 최근 2013년까지 0.4%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한국의사회복지지출	1990	2016 (예측치 '14~'16)	1년

Checkpoint

2012년과 비교했을 때 2013년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은 0.61%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모두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는 각각 약 0.4%대와 0.1%대에서 정체되고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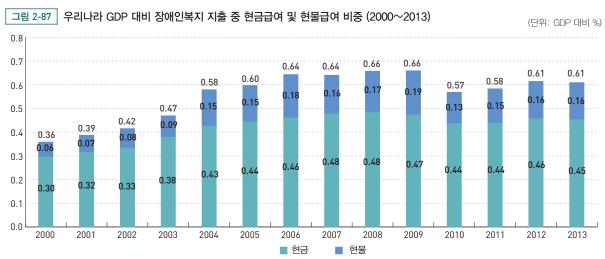
• OECD SOCX Database. (2016.11.22.)

표 2-83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규모 (200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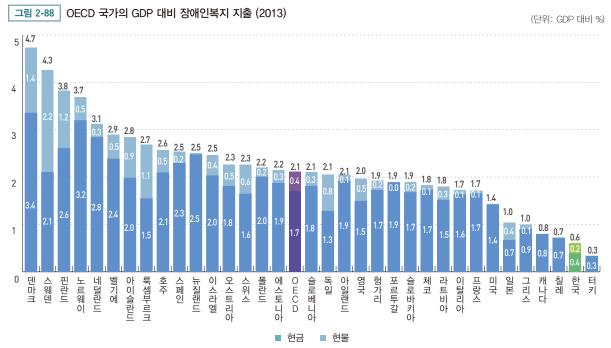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0.36	0.39	0.42	0.47	0.58	0.60	0.64	0.64	0.66	0.66	0.57	0.58	0.61	0.61
현금급여	0.30	0.32	0.33	0.38	0.43	0.44	0.46	0.48	0.48	0.47	0.44	0.44	0.46	0.45
현물급여	0.06	0.07	0.08	0.09	0.15	0.15	0.18	0.16	0.17	0.19	0.13	0.15	0.16	0.16

자료: OECD SOCX Database, (2016,11,22,)



자료: OECD SOCX Database, (2016.11.22.)



자료: OECD SOCX Database. (2016.11.22.)

3

보육 및 교육

- 0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 0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 03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 04 초등학생 방과후 돌복교실 참여 학생 수
- 05 학교급별 취학률
- 06 학급당 학생 수
- 07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 08 교원 1인당 한생 수
- 09 학생 1인당 사교육비
- 10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 11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 12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 13 고등교육 이수율
- 14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및 지원 금액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 0 1 7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0~5세 아동보육공급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양육수당 아동 지원 수
교육의 질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학교급별 취학률	
	학급당 학생 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비율
교육 기회보장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1인당 대출 금액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고등교육 이수율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및 지원 금액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Number of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

지표 정의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정의되며,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유아교육법에 의해 정의된다. 본 지표는 각각의 기관의 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어린이집 수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7개 유형 어린이집 수
- 유치원 =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 수

유의사항

어린이집은 설립주체 유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의 일곱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였다.

1995년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95년에 9,085 개소에 불과하던 어린이집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 다소 감소하여 2016년 현재 41,084개소로 나타났다. 유치원 수는 1995년 8,960개소에서 2005년까지 다소 감소하다가 2006 년부터 꾸준하게 소폭으로 증가하여 2016년 8,987개소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증감의 추세는 주로 어린이집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인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증감에 기인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6년에도 전년도 대비 230개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중에 있어서 1995년에 전체 어린이집의 9.3%를 차지하던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그 비중이 약7.0%로 감소하였다. 전체 유치원 중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절반 정도로 일정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국공립유치원의 비중이 사립유치원의 비중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 현재 국공립유치원 비율은 52.3%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수를 시도별로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은 시설 수가 있는 지역은 경기도이며 지역에서의 국공립과민간 시설의 비중은 전국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2004	2016	1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16	1년

Checkpoint

어린이집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433개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수는 큰 변동 없이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 소폭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57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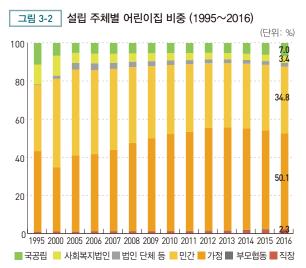
- 보건복지부, 2016년도 보육사업 안내, 2016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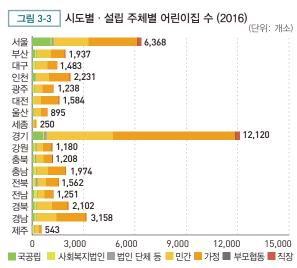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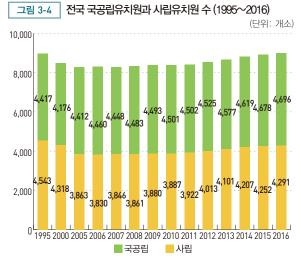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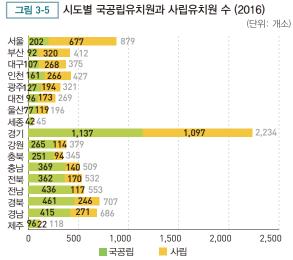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각 연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유초등통계, 각 연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유초등통계, 2016

0~5세 아동보육공

Supply rate of Childcare services for o-5 year olds

지표 정의

0~5세 아동보육공급률은 전체 0~5세 아동 수 대비 전체 어린이집 정원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정원이 전체 0~5세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capacity)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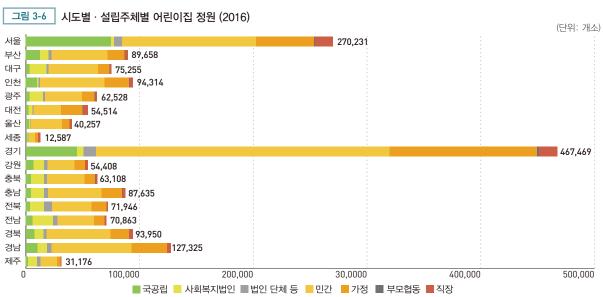
전체 어린이집 정원 ×100 전체 0~5세 아동 수

2016년 현재 전체 어린이집이 제공하고 있는 보육 정원은 1,767,224명이다. 이는 전체 0~5세 아동의 65.9%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어린이집 정원의 추이는 전체 어린이집 수, 특히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수의 추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어린이집 대부분의 정원을 민간 또 는 가정어린이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하다. 어린이집 정원이 해당 지역의 아동을 수용 할 수 있는 능력(capacity)이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지역은 해당 연령의 아동 수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을 포함하는 시지역이다.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 인 정원충족률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82.1%로 나타났다. 모든 시·도 지역에서 약 75% 이상의 정원충족률을 보이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정원충족률이 가장 낮고(74.8%), 서울특별시의 정원충 족률이 가장 높게(87.5%) 나타났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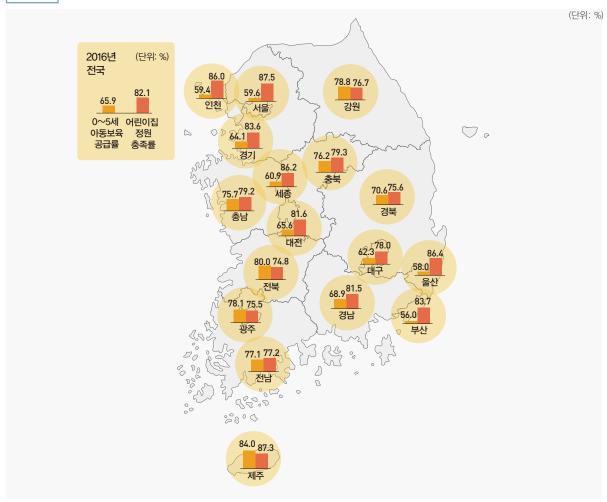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2004	2016	1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08	2016	1개월

Checknoint 2016년 어린이집이 제공하고 있는 보육 정원은 약 1,767천 명으로 2015년의 약 1,791천 명보다 24천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수의 감소로 아동보육공급률은 2016년 65.9% 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2016





주: 정원충족률은 (어린이집 현원/어린이집 정원) X 100 으로 계산함.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2016

02 H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Rate of Children enrolled in Daycare and Kindergarten programs

지표 정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해당 연령의 아동 수 대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유아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0~2세 이용률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 수 전체 0~2세 아동 수

• 3세 이상 이용률 =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3세 이상 아동 수 전체 3~5세 아동 수

2005년 이후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어린 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2012년 3월부터는 만 0~2세와 만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시작되었고 2013년 3월부터는 무상보육이 만 0~5세로 확대되면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01년 9.4%에서 2016년 66.4%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3세 이상 아동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이용률은 2010년 이후 2015년(88.4%)을 제외하고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 93.2%까지 증가하였다. 0~5세 아동의 2016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86.0%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가 71.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6년 현재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이용 비중을 지역별로 비교해 볼 때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중은 서울특별시(28.4%)이 가장 높고 대전(3.9%)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 이용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9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전남(50.4%), 제주(47.4%), 충북(47.2%)의 순서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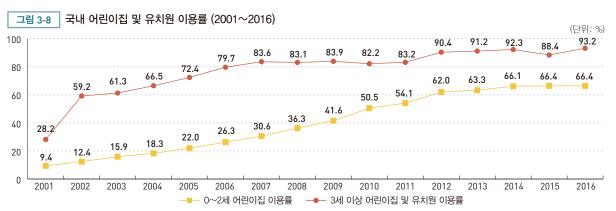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2004	2016	1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16	1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08	2016	1개월

Checkn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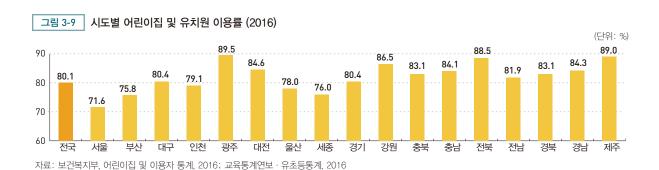
국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2001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7년까지 증가하던 3세 이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이용률은 2008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93.2%까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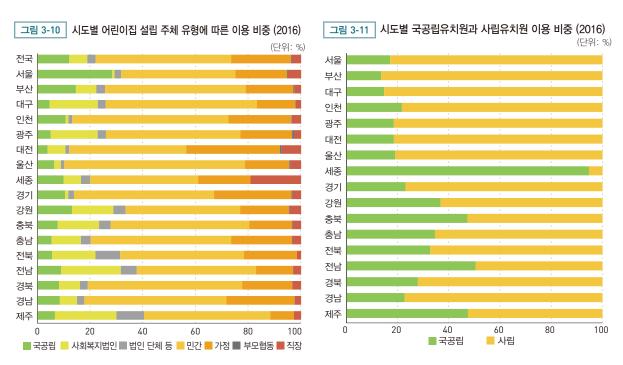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16년도 보육사업 안내, 2016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201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유초등통계, 2016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Child home care allowance

지표 정의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84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이며, 본 지표는 전체 양육수당 수급 아동 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0~84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은 수급자 수

우리나라는 2009년 7월부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 차상위 저소득층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지원 대상을 0~2세로 확대하고, 2013년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전체 0~5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조금씩 감세하여 2016년엔 933,153명에 이르렀다. 보육 및 교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즉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의 대다수는 만 0~2세 영아로서 전체 양육수당 수급 아동중 71.7%에 이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6년 현재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51,700명)이며 그 다음으로 지원받는 아동 수가 많은 지역은 서울(189,218명)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2004	2016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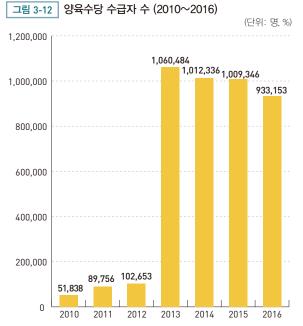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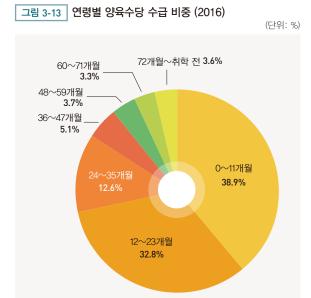
2013년부터 양육수당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전체 미취학 아동에게 확대됨에 따라 2013년도 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수는 급증하였으나 제도가 정착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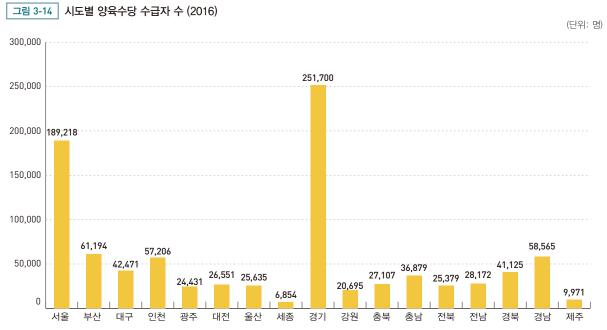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6

^{* 2016}년 현재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24개월~84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로 등록된 아동의 가정 양육수당의 경우는 36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이후 지급기간 만료 시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각 연도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2016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2016

03-1

양육수당 아동 지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Child Home Care Benefit

지표 정의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의 아동(신청일 기준)에 대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제공되는 현금성 급여이다. 단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등록장 애인인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측정 산식

- 월령별로 다음과 같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은 아동 수(2016년 기준)
- ※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월 200천 원. 12~24개월 미만 월 150천 원. 24~84개월 미만 100천 원
- ※ 농어촌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200천 원, 12~24개월 미만 177천 원, 24~36개월 미만 156천 원, 36~48개월미만 월 129천 원 48~84개월 미만 100천 원
- ※ 장애이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0천 원, 36개월~84개월 미만 100천 원

2016년 12월 기준 약 100만 명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 받았다. 가정양육수당은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그리고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분류되며 이 중, 양육수당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12월 양육수당의 수급자 수는 962,118명, 농어촌 양육수당은 3,218명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2,229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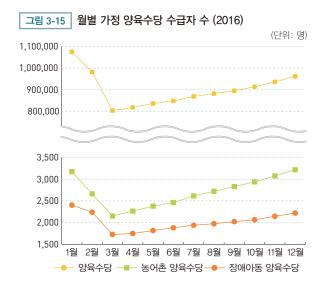
영유아 양육수당 수급자 수는 3월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점차 소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 들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은 인구가 많은 경기와 서울이 각각, 259,764명과 199,316명으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산이 63,479명, 경남이 59,466명, 인천이 58,959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 양육수당은 경북이 701명, 전남이 573명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아동수당은 경기가 61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지급건수를 살펴보면 0~1세 미만 유아가 39%, 1~2세 미만 유아가 33%로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양육수당지원아동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수는 12월 기준 967,556명으로 전년 당월에 비해 7.8%감소하였다. 2015년을 제외하고 2013년이래 전반적으로 가정양육수급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 중 농어촌 양육수당 수급자 수는 2013년 12월 5,335명, 2014년 12월 3,524명, 2015년 12월 3,071명으로 3년간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6년 3,218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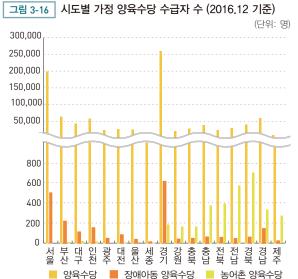


표 3-1 월별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수 (2016)

(단위: 명)

				(단위. 명)
구분	양육수당	장애이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계
1월	1,075,255	2,404	3,175	1,080,834
2월	982,183	2,241	2,662	987,086
3월	804,092	1,727	2,152	807,971
4월	818,751	1,749	2,265	822,765
5월	836,916	1,817	2,378	841,111
6월	849,024	1,881	2,463	853,368
7월	869,707	1,940	2,617	874,264
8월	882,674	1,974	2,720	887,368
9월	895,638	2,023	2,830	900,491
10월	913,821	2,066	2,938	918,825
11월	936,510	2,145	3,076	941,731
12월	962,118	2,220	3,218	967,556

주: 수급자수는 신청 조사를 통해 양육수당 수급 자격을 가진 것으로 결정된 아동 수임.

표 3-2 시도별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수 (2016.12. 기준)

(단위: 명)

				(LTI. 0)
구분	양육수당	장애이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계
서울	199,316	501		199,817
부산	63,479	217	11	63,707
대구	43,833	108	20	43,961
인천	58,959	151	17	59,127
광주	25,008	47		25,055
대전	27,340	81	2	27,423
울산	26,053	35	9	26,097
세종	7,070	10	7	7,087
경기	259,764	611	183	260,558
강원	21,002	36	163	21,201
충북	27,686	45	164	27,895
충남	37,475	60	373	37,908
전북	25,936	53	389	26,378
전남	28,340	44	573	28,957
경북	41,364	58	701	42,123
경남	59,466	143	334	59,943
제주	10,027	20	272	10,319
합계	962,118	2,220	3,218	967,556

주: 수급자수는 신청 조사를 통해 양육수당 수급 자격을 가진 것으로 결정된 아동 수임.

그림 3-17 연령별 가정 양육수당 지급 건수 비중 ('16.12 기준)

다의 · %



그림 3-18 연령별 가정 양육수당 지급액 비중 ('16.12 기준)

(단위: %)



표 3-3 월별 ·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지급건수 및 지급액 (2016)

(단위: 건수, 천 원)

ᄀᆸ	0~	세 미만	1세 이상	낭∼2세 미만	2세 이성	낭∼3세 미만	34	네 이상		계
구분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1월	384,123	83,644,877	319,179	47,982,403	139,515	14,060,188	142,687	14,306,404	985,504	159,993,872
2월	385,506	83,569,950	328,278	49,353,695	151,059	15,222,490	158,528	15,948,640	1,023,371	164,094,775
3월	366,740	80,244,650	239,129	35,947,616	73,931	7,469,378	108,939	10,931,258	788,739	134,592,902
4월	366,387	79,729,000	245,810	36,954,094	75,568	7,639,006	112,154	11,322,971	799,919	135,645,071
5월	368,169	80,284,750	254,313	38,249,963	79,608	8,049,043	115,140	11,586,512	817,230	138,170,268
6월	369,208	80,400,440	260,282	39,139,257	82,881	8,377,156	118,054	11,875,095	830,425	139,791,948
7월	367,715	79,451,154	268,746	40,408,856	88,671	8,968,878	124,552	12,561,146	849,684	141,390,034
8월	367,801	79,847,700	276,461	41,579,192	94,545	9,560,993	131,197	13,273,241	870,004	144,261,125
9월	364,447	78,931,100	280,280	42,140,144	98,463	9,942,018	133,615	13,425,718	876,805	144,438,980
10월	364,381	79,698,250	288,150	43,321,932	103,856	10,497,366	138,278	13,906,886	894,665	147,424,434
11월	365,540	79,380,200	296,928	44,635,961	109,444	11,046,880	141,969	14,265,396	913,881	149,328,437
12월	363,178	78,019,750	305,911	45,990,159	117,302	11,835,038	146,762	14,745,557	933,153	150,590,504

주: 계좌 번호 불일치 및 변경,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인해 급여 정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급자 수와 지급 건수는 다를 수 있음. 2016년부터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되고 있음.

표 3-4 시도별 ·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수급건수 및 수급액 (2016.12 기준)

(단위: 건수, 천 원)

구분	0~	1세 미만	1세 이상	낭∼2세 미만	2세 이성	낭∼3세 미만	37	네 이상	계	
구군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서울	65,787	14,132,150	55,591	8,351,000	23,927	2,413,400	43,913	4,418,800	189,218	29,315,350
부산	22,501	4,864,200	20,700	3,109,354	8,441	850,456	9,552	958,400	61,194	9,782,410
대구	16,582	3,559,400	15,040	2,259,412	5,625	565,406	5,224	524,458	42,471	6,908,676
인천	21,539	4,615,800	19,064	2,862,277	7,933	799,130	8,670	869,629	57,206	9,146,836
광주	9,989	2,151,000	8,124	1,219,700	3,130	315,750	3,188	319,200	24,431	4,005,650
대전	11,132	2,372,000	8,793	1,320,477	3,004	302,000	3,622	362,800	26,551	4,357,277
울산	9,906	2,114,600	8,937	1,341,131	3,153	316,612	3,639	366,800	25,635	4,139,143
세종	2,949	641,400	2,424	364,677	757	75,812	724	72,429	6,854	1,154,318
경기	95,510	20,535,600	80,519	12,096,950	32,519	3,271,924	43,152	4,330,827	251,700	40,235,301
강원	8,924	1,916,600	7,240	1,105,127	2,394	245,602	2,137	216,564	20,695	3,483,893
충북	11,541	2,478,400	9,570	1,438,227	3,284	331,668	2,712	273,177	27,107	4,521,472
충남	15,636	3,353,800	12,810	1,928,332	4,440	448,420	3,993	400,367	36,879	6,130,919
전북	11,200	2,390,800	8,659	1,303,213	2,948	301,370	2,572	259,351	25,379	4,254,734
전남	12,361	2,657,800	9,894	1,489,999	3,284	334,174	2,633	264,525	28,172	4,746,498
경북	18,306	3,945,400	15,024	2,261,580	4,649	472,720	3,146	316,718	41,125	6,996,418
경남	24,434	5,249,800	20,512	3,083,839	6,952	702,280	6,667	669,409	58,565	9,705,328
제주	4,881	1,041,000	3,010	454,864	862	88,314	1,218	122,103	9,971	1,706,281
계	363,178	78,019,750	305,911	45,990,159	117,302	11,835,038	146,762	14,745,557	933,153	150,590,504

주: 계좌 번호 불일치 및 변경,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인해 급여 정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급자 수와 지급 건수는 다를 수 있음. 2016년부터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되고 있음.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Number of Prim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After-school Care programs

지표 정의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수를 의미한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측정 산식

•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수, 교실 수,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수

지난 10년간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기능 확대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는 2007년 50,247명에서 2017년 245,303명으로 약 5배 증가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수와 교실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현재, 6,054개교에서 초등돌봄교실 11,980실을 운영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으로 전체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 학생 중 1학년이 50.6%, 2학년이 37.2%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3,941명이 방과후 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에서 34,706명이 참여하고 있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획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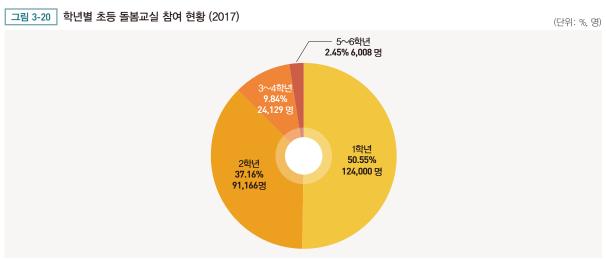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내부자료)	2007	2017	1년

Checkpo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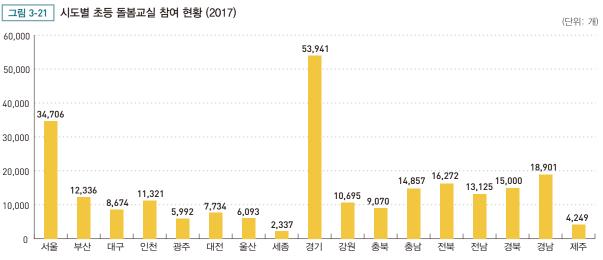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운영 교실 수, 운영 학교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다. 특히 2014년에 참여 학생 수와 운영 교실 수가 전년도 대비 급증하였다. 운영 학교 수는 증가폭이 크지 않으나 2017년 기준, 전체 초등학교의 98%이상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자료: 교육부,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내부자료), 2017



자료: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내부자료), 2017



자료: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내부자료), 2017



학교급별 취학률

Enrollment rates by school level

지표 정의

학교급별 취학률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취학적령인구 대비 해당 교육기관에 재적하는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취학적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만 6~11세. 중학교는 만 12~14세. 고등학교는 만 15~17세이다.

측정 산식

취학적령의 재적 학생 수 취학적령인구 수

유의사항

- 취학 적령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2016)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수치이므로 2016년 이후는 확정인구가 아닌 잠정추계이다
- OECD 교육지표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해 연령별 취학률[(해당 연령집단의 재적 학생 수/해당 연령집단의 인구 수) $\times 100$]을 산출하고 있다

취학률은 교육에 대한 기회와 접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의무교육의 발달상황과 교육의 보급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취학률이 높다는 것은 해당 학교급의 취학적 령의 인구가 실제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현재 초등학교 취학률은 98.6%로, 의무교육이 처음 실시된 1954년 82.5%에서 1959년 96.4%로 증가한 이후 현재까지 완전취학에 가까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2002년부터 전국으로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되었지만, 이미 1990년에 90%이상의 취학률을 나타냈으며 2016년 현재는 94.3%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취학률은 1980년 48.8%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는 79.4%, 2000년에는 89.4%에 이르렀으며, 2016년 현재 93.1%를 보이고 있다.

OECD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연령별 취학률을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초등 교육과 전기중등교육(중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5~14세 취학률의 OECD 평균은 97%이며, 후기중 등교육(고등학교)에 속하는 15~19세의 취학률은 84%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14세 취학률은 98%, 15~19세 취학률은 87%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16	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64	2015	5년

Checkpoint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취학률은 모두 90% 이상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완전취학 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높은 편이다. 특히, 고등학교 취학률은 의무교육이 아님에 도 불구하고 독일을 제외한 국가들보다 높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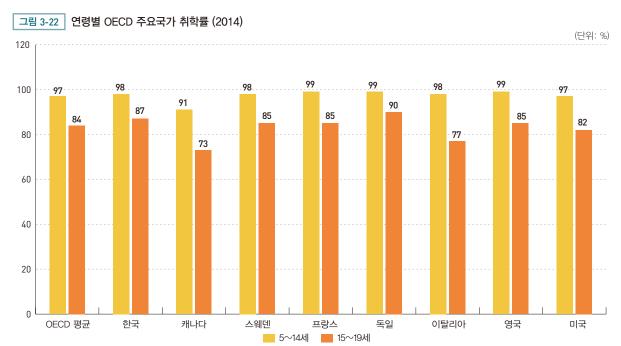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6, 2016

연도별 · 학교급별 취학률 丑 3-5

(단위: %)

연도 학교급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초등학교	97.2	98.8	99.1	98.7	98.5	97.3	96.7	99.1	98.6
중학교	95.0	94.3	96.5	96.7	95.6	95.7	96.4	95.3	94.3
고등학교	89.4	92.1	91.7	92.0	92.2	92.5	93.2	92.5	93.1

주: (취학 적령 재적 학생수 / 취학 적령 인구수) × 100 으로 산출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http://kosis.kr에서 2018.01.22 인출)



주: 캐나다의 경우는 2013년 자료로 중등 후 비고등교육기관이 제외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6, 2016

학급당 학생 수

Average Class Size

지표 정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교급 별로 전체 학급 수 중에서 재적하고 있는 학생 수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급 별로 1개의 학급당 평균적으로 배정된 학생 수를 의미한다.

학급규모에 대한 교육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서 의의가 있다.

측정 산식

총 재적 학생 수

총 학급 수

초·중등학교의 교육 여건의 개선과 함께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초등학교의 경우 1985년 44.7명이었던 학급당 학생 수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현재는 22.4명을 나타내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1985년 61.7명에서 2016년 현재 27.4명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1985년 56.9명에서 2016년 현재 29.3명을 나타내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규모 및 시도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우선,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중소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6년 현재초등학교는 25.0명, 중학교는 29.8명, 고등학교는 30.2명으로 대도시가 각각 22.9명, 27.2명, 29.6명을 나타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읍면지역은 초등학교가 17.8명, 중학교가 23.0명, 고등학교가 26.6명으로 나타났으며, 도서벽지는 각각 8.8명, 15.6명, 22.4명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각각 25.0명과 29.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광주가 33.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경기도를 제외하면 도지역 보다는 시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제비교 측면에서는, 초등교육(초등학교 과정)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이 21명, 우리나라가 24명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전기중등교육(중학교 과정)은 OECD 평균 23명, 우리나라는 32명으로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일본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치이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16	1년

Checknoint

전반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시도별로도 모든 시도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하였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전년도 대비 초등학교 1.7명, 중학교 1.6명, 고등학교 0.1명 증가하였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여전히 세종특별자치시의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6 간추린 교육통계, 2016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 · 초 · 중등교육통계편, 2016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6, 2016

그림 3-23 연도별 ·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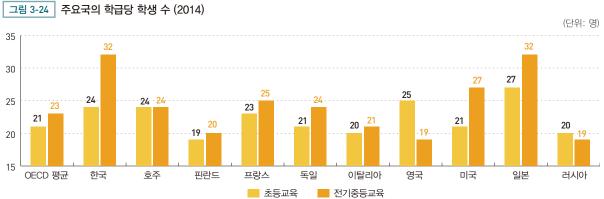
(단위: 명) 70 60 50 44.7 41.4 40 36.4 35.8 31.8 30 26.6 25.5 24.3 23.2 22.8 22.6 20 10 1985 1990 1995 2000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05 2011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표 3-6 시도별 ·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2016)

(단위: 명

#.	3-0 시포필	. 서파다달	409 49	5 T (2010)	(단위: 명)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2.4	27.4	29.3	^
지	대도시	22.9	27.2	29.6	전체 (단위: 명)
역	중소도시	25.0	29.8	30.2	서울 23.4 26.6 29.7 22.4 27.4 29.3
귶	읍 · 면지역	17.8	23.0	26.6	강원도
모	도서벽지	8.8	15.6	22.4	인천 23.0 28.7 28.4 17.9 24.8 28.1
	서울	23.4	26.6	29.7	\$3.0 Z8.7 Z8.4 37/E 37/E \$\frac{37/E}{\tau}\$
	부산	22.0	26.9	27.4	세종 25.0 29.7 30.1
	대구	22.6	26.4	30.2	21.6 22.5 23.3 충청북도
	인천	23.0	28.7	28.4	충청남도 경상북도 325.0 29.7
	광주	22.4	27.8	33.0	20.4 26.9 29.4 대구 20.5 24.0 27.0
	대전	21.7	28.6	30.8	대전 22.6 26.4 30.2
	울산	22.8	27.1	30.6	21.7 28.6 30.8 울산
시	세종	21.6	22.5	23.3	광주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도	경기	25.0	29.7	30.1	22 4 27.8 33.0
	강원	17.9	24.8	28.1	で、
	충북	19.7	25.9	29.7	전라남도 22.0 26.9 27.4 26.6 24.8 26.6
	충남	20.4	26.9	29.4	200 24.0 20.0
	전북	19.3	27.4	28.2	్ట్స్ క్లైండ్ ం
	전남	18.6	24.8	26.6	° 280°C
	경북	20.5	24.0	27.0	제주도
	경남	21.2	27.9	29.2	22.0 28.4 32.2
	제주	22.0	28.4	32.2	V—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6, 2016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High School Dropout Rates

지표 정의

학업중단율은 총 재적 학생 중 학교에서 중도탈락한 학업중단자 수 비율을 의미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의무교 육 범주에 들지 않는 고등학교 교육에서의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이다. 학업중단의 사 유로는 자퇴(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제적과 특수교육 대상자 중 유예 및 면제 가 있다. 2010학년도부터는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을 학업 중단자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

측정 산식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수 전년도 고등학교 재적 학생 수

유의사항

학업중단자 수는 당해 연도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학년도를 기준으로 조사되므로 다른 통계와 자료 기준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학교 부적응과 같은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과 학업중단자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지표이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학년도 이후 학업중단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5학년도 현재 1.3%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2015학년도 현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0.2%p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는 큰 변화없이 지속되어 왔다.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2015학년도 현재 특성화고등학교가 2.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특수목적고와 일반고는 1.1%, 자율고는 0.8%로 나타난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1.6%로 도서벽지 1.4%, 대도시와 중소도시 1.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세종이 1.8%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이 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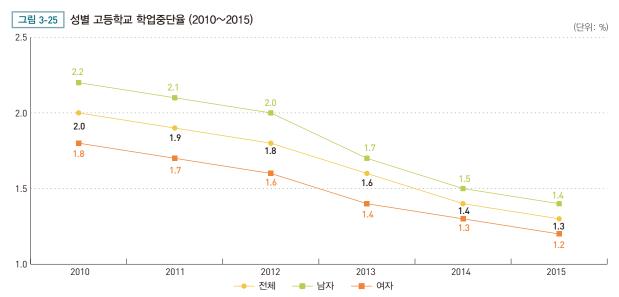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16	1년

Checkpoint

2015학년도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2014학년도에 비하여 0.1%p 감소하였다. 시도별로는 2014학년도 와 마찬가지로 세종이 가장 높았으며, 울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6 간추린 교육통계, 2016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 · 초 · 중등교육통계편, 2016



주: 연도는 해당 학년도를 의미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초중등교육통계편, 2016

표 3-7 시도별 ·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율 (2015)

(단위: %)

:	학교급	고등학교(전체)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전체	1.3	1.1	1.1	2.2	0.8		
	대도시	1.2	1.1	1.1	2.3	0.9		
지역규모	중소도시	1.2	1.1	0.9	1.9	0.9		
시크ㅠ포	읍 · 면지역	1.6	1.3	1.6	2.8	0.8		
	도서벽지	1.4	0.9	-	3.2	0.5		
	서울	1.4	1.4	1.2	1.5	1.1		
	부산	1.4	0.9	1.2	3.2	0.6		
	대구	1.2	0.6	1.9	3.3	0.6		
	인천	1.1	0.8	0.9	2.1	0.8		
	광주	1.3	1.2	1.1	2.0	1.0		
	대전	1.3	0.9	1.0	3.5	0.8		
	울산	0.8	0.6	0.9	1.8	0.3		
	세종	1.8	1.9	1.5	1.1	1.8		
시도	경기	1.3	1.3	0.9	1.9	0.8		
	강원	1.4	0.9	0.4	3.6	1.3		
	충북	1.4	1.1	1.3	2.2	0.6		
	충남	1.3	1.2	1.4	2.0	1.1		
	전북	1.2	1.1	1.2	1.8	0.5		
	전남	1.3	0.9	1.5	2.5	0.8		
	경북	1.1	0.8	1.1	2.3	0.6		
	경남	1.1	1.0	1.2	2.1	1.2		
	제주	0.9	0.8	1.6	1.4	-		

주: 연도는 해당 학년도를 의미함.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 · 초중등교육통계편, 2016

교원 1인당 학생 수

Ratio of students to teacher

지표 정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한 사람의 교사가 얼마나 많은 수의 학생을 대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학급당학생 수와 함께 교육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원 수에 대한 재적학생의 비율로 나타낸다. 교원에는 휴직교원과 기간제교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 지표가 "이용 가능한 교수자원의 수준에 대한 정보"(OECD, 2017)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측정 산식

유의사항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산출하는 교원의 포함 기준이 국내통계와 OECD 교육지표가 상이한데, OECD 교육지표에서는 수업이 주된 업무인 교원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OECD 산식
 =
 재적 학생 수
 × 100

 (Education at a Glance 기준)
 교원 수(교장, 교감, 전문상담, 사서, 보건, 영양, 강사를 제외한
 전체 교원 – 휴직교원 및 기간제교원 포함)

자료: OECD, OECD Handbook for Internationally Comparative Education Statistics, 2017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모든 학교급에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80년 47.5명에서 2009년 처음으로 20명 미만인 19.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 현재 14.6명을 나타내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1980년 45.1명에서 2005년에 20명 미만 (19.4명)으로 감소했으며, 2016년 현재 13.3명으로 나타난다. 고등학교의 경우, 1980년 33.3명에서 2000년에 19.9명에 도달했으며, 2016년에는 12.9명으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감소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교육여건의 개선과 최근의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설립별로는 모든 학교급에서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많았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특별/광역시, 읍면지역, 도서벽지 지역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초등학교(16.8명)와 중학교(14.9명)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는 제주가 14.8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반면, 강원과 전남은 초등학교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1.7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세종은 중학교(10.5명)와 고등학교(9.4명)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16	1년

Checkpoint

OECD 교육지표에서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OECD 평균과의 차이는 학교급에 따라 $2\sim$ 4명으로 크지 않지만, 학급당 학생 수에 있어서는, 특히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OECD 평균 간 차이가 크다. 이는 중등학교의 경우 교육여건이 보다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 · 초 · 중등교육통계편, 2016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6, 2016
- OECD, OECD Handbook for Internationally Comparative Education Statistics, 2017

표 3-8 연도별 · 학교급별 · 설립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단위: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CH. 6)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1980	47.5	47.5	51.0	45.1	44.4	46.2	33.3	30.9	35.2
1985	38.3	38.2	49.0	40.0	39.2	41.8	31.0	27.6	33.6
1990	35.6	35.5	42.3	25.4	24.1	29.3	24.6	20.7	27.9
1995	28.2	28.1	35.9	24.8	24.4	26.5	21.8	18.9	24.2
2000	28.7	28.7	31.0	20.1	19.9	20.6	19.9	18.2	21.5
2005	25.1	25.1	27.3	19.4	19.4	19.2	15.1	14.5	15.9
2006	24.0	24.0	26.5	19.4	19.4	19.3	15.1	14.5	15.7
2007	22.9	22.9	25.5	19.1	19.1	19.1	15.3	14.8	16.0
2008	21.3	21.3	24.9	18.8	18.7	18.8	15.5	14.9	16.2
2009	19.8	19.8	24.2	18.4	18.4	18.5	15.7	15.1	16.5
2010	18.7	18.6	23.5	18.2	18.1	18.3	15.5	14.9	16.3
2011	17.3	17.3	23.0	17.3	17.1	17.9	14.8	14.1	15.8
2012	16.3	16.2	22.8	16.7	16.5	17.4	14.4	13.8	15.4
2013	15.3	15.3	23.2	16.0	15.9	16.5	14.2	13.5	15.1
2014	14.9	14.9	22.4	15.2	15.0	15.8	13.7	13.0	14.6
2015	14.9	14.8	22.4	14.3	14.1	14.9	13.2	12.6	14.2
2016	14.6	14.5	22.1	13.3	13.2	13.9	12.9	12.2	14.0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초중등교육통계편, 2016

표 3-9 시도별 · 학교급별 · 설립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2016)

(단위	:	명)
(- 1	•	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 · 공립	사립	전체	국 · 공립	사립
	전체	14.6	14.5	22.1	13.3	13.2	13.9	12.9	12.2	14.0
	특별/광역시	14.9	14.7	23.0	13.6	13.5	14.0	13.1	12.2	14.1
TIGIフロ	중소도시	16.7	16.6	19.5	14.9	14.8	16.0	13.4	12.9	14.6
지역규모	읍 · 면지역	11.2	11.2	16.3	10.0	9.8	10.8	11.4	10.9	12.6
	도서벽지	5.7	5.7	-	5.9	5.9	6.7	8.7	8.2	12.3
	서울	14.8	14.5	22.6	13.4	13.3	13.7	13.3	11.9	14.1
	부산	14.8	14.7	22.3	13.4	13.5	13.0	12.3	11.9	12.7
	대구	14.1	14.0	30.4	13.3	12.6	15.4	13.3	12.2	14.3
	인천	15.6	15.6	19.3	14.7	14.7	13.5	12.4	12.0	13.8
	광주	14.8	14.7	26.3	13.8	13.2	15.3	14.7	13.0	15.8
	대전	14.3	14.2	23.2	13.5	13.6	12.4	13.4	13.1	13.7
	울산	15.5	15.5	-	12.9	12.9	13.0	13.0	13.0	13.2
	세종	14.0	14.0	-	10.5	10.5	-	9.4	9.3	11.5
시도	경기	16.8	16.8	17.7	14.9	14.9	14.5	13.2	12.8	14.2
	강원	11.7	11.6	21.1	11.4	11.2	13.3	11.7	11.0	14.3
	충북	12.8	12.7	26.6	12.3	12.2	13.9	13.5	12.8	16.0
	충남	13.1	13.1	18.0	12.4	12.1	13.5	13.1	12.5	14.5
	전북	12.2	12.2	-	12.2	11.5	14.3	12.7	11.2	14.1
	전남	11.7	11.6	16.9	10.7	10.4	12.5	11.6	10.8	13.1
	경북	12.8	12.7	19.1	10.9	10.2	12.9	12.2	11.0	13.5
	경남	13.8	13.8	19.8	13.2	12.8	14.3	12.8	12.4	13.5
	제주	14.3	14.3	-	14.1	13.6	17.0	14.8	12.8	19.2

그림 3-26 교육과정별 주요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2014)



주: 1) 일본은 중등교육에 중등 후 비고등교육이 포함됨. 2) 일본의 고등학교 과정은 다른 범주의 자료를 포함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6, 2016

09 H

학생 1인당 사교육비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per Student

지표 정의

학생1인당 사교육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된다.

사교육비에는 학원비, 과외비, 학습지, 통신강의(EBS 제외) 등이 포함된다. 사교육비는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의 형평성 정도와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학교급별 재적 학생 수

유의사항

고등학생일 경우는 일반계고와 특성화고를 모두 포함하는 값이다.

우리나라의 2016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약 18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도 17조 8천억 원 대비 약 2천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조 7천억 원, 중학교 4조 8 천억 원, 고등학교 5조 5천억 원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천억 원과 4천억 원 증가하였으며, 중학교는 4천 억 원 감소하였다. 2016년 사교육 참여율은 67.8%로 전년 대비 1.0%p 감소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0.0%, 중학교 63.8%, 고등학교 52.4%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0.7%p, 5.6%p 감소하였으며, 고등학교는 2.2%p 증가하였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만 2천 원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는 24만 1천 원, 중학교는 27만 5천 원, 고등학교는 26만 2천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만 원, 2만 6천 원 증가하였으나 중학교는 변동이 없었다.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 8천 원으로 작년대비 2만 3천 원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0만 2천원, 중학교 43만 1천원, 고등학교 49만 9천원으로 각각 1만 6천원, 3만 4천원, 2만 8천원증가하였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초 · 중 · 고 사교육비 조사	2007	2016	1년

Checkpoint

그 동안 감소 및 보합세를 보이던 사교육비 변화 추이는, 사교육 참여율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년에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사교육비 증가와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사교육비 격차가 지역과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격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과 사교육에 비해 예체능 사교육비 및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증대, 교육수준 향상, 가 치관의 변화 등에 따라 소질·적성계발을 위한 예체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7, 3, 14)

참고문헌

- 통계청, 초 · 중 · 고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 각 연도
- 교육부, 보도자료, 2017. 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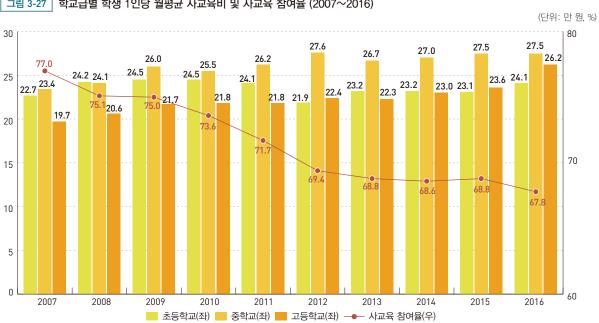
표 3-10 학교급별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2010~2016)

(단위 : 억 원, 만 원, %)

						1	(= 11	. – 2, 2 2, 70
연도	학교급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208,718	201,266	190,395	185,960	182,297	178,346	180,606
총 사교육비	초등학교	97,080	90,461	77,554	77,375	75,949	75,287	77,438
(억 원)	중학교	60,396	60,006	61,162	57,831	55,678	52,384	48,102
	고등학교	51,242	50,799	51,679	50,754	50,671	50,675	55,065
	전체	24.0	24.0	23.6	23.9	24.2	24.4	25.6
학생 1인당	초등학교	24.5	24.1	21.9	23.2	23.2	23.1	24.1
월평균 사교육비 (만 원)	중학교	25.5	26.2	27.6	26.7	27.0	27.5	27.5
	고등학교	21.8	21.8	22.4	22.3	23.0	23.6	26.2
	전체	32.7	33.5	34.0	34.7	35.2	35.5	37.8
참여 학생 1인당	초등학교	28.3	28.4	27.1	28.3	28.6	28.6	30.2
월평균 사교육비 (만 원)	중학교	35.3	36.8	39.1	38.4	39.1	39.7	43.1
	고등학교	41.2	42.2	44.2	45.4	46.4	47.1	49.9
	전체	73.6	71.7	69.4	68.8	68.6	68.8	67.8
11교은 화어운(w)	초등학교	86.8	84.6	80.9	81.8	81.1	80.7	80.0
사교육 참여율(%)	중학교	72.2	71.0	70.6	69.5	69.1	69.4	63.8
	고등학교	52.8	51.6	50.7	49.2	49.5	50.2	52.4

자료: 통계청, 초 · 중 · 고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 각 연도

그림 3-27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2007~2016)



자료: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1. 10. 인출)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비율

0**9-1**

Public Expenditure on Tertiary Education as % of GDP

지표 정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비율(public expenditure on tertiary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GDP)은 교육 기관에 정부가 직접 투자한 공교육비와 가계에 지원한 정부보조금(장학금, 학비지원금,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출을 GDP 대비 비중으로 환산한 값으로 정의된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를 알 수 있는 국제지표로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

측정 산식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비용 GDP ×100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비율은 2002년 0.3% 이후로 매년 증가하여 2013년 현재 1.0%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3년 OECD 평균인 1.3%보다 0.3%p 낮다. 국가별로는 2013년 기준으로 덴마크가 2.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스웨덴(2.0%), 미국(1.6%), 영국(1.4%) 순이었다. 전년 대비해서는 캐나다가 2012년 1.7%에서 2013년 1.3%로 0.4%p 감소하였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하였다. 캐나다, 덴마크 등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투자비율이 높았던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처럼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3-11 OECD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투자비율 (2000~20)

(단위: GDP%)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0.7	0.5	0.3	0.6	0.6	0.6	0.7	0.6	0.7	0.9	0.8	0.8	0.9	1.0
일본	0.5	0.5	0.5	0.6	0.7	0.6	0.6	0.6	0.6	0.8	0.7	0.8	0.8	0.8
호주	1.2	1.2	1.2	1.1	1.1	1.1	1.1	1.0	1.0	1.1	1.1	1.1	1.1	1.3
캐나다	2.0	1.9	-	1.7	-	1.7	1.8	1.8	1.7	1.8	1.9	2.0	1.7	1.3
덴마크	2.5	2.7	2.7	2.5	2.5	2.4	2.3	2.3	2.2	2.4	2.4	2.4	2.4	2.3
프랑스	1.0	1.0	1.0	1.2	1.2	1.2	1.2	1.2	1.2	1.3	1.3	1.3	1.2	1.2
이탈리아	0.8	0.8	0.9	0.8	0.8	0.8	0.8	0.8	0.8	0.9	0.8	0.8	0.8	0.8
스웨덴	2.0	2.0	2.2	2.2	2.1	1.9	1.9	1.8	1.8	2.0	2.0	2.0	1.9	2.0
영국	1.0	0.8	1.1	1.1	1.0	1.2	1.1	0.9	0.8	0.8	1.0	1.3	1.4	1.4
미국	1.1	1.5	1.4	1.5	1.3	1.3	1.4	1.2	1.3	1.3	1.4	1.3	1.5	1.6
OECD 평균	1.2	1.3	1.3	1.3	1.3	1.3	1.3	1.2	1.3	1.4	1.4	1.4	1.3	1.3

주: 덴마크는 2012년 수치가 발표되지 않아 2011년 수치로 대체함.

자료: 교육부 \cdot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Education at a Glance	1992	2016	1년

10 H H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Proportion of Students who have a loan

지표 정의

재학생 수 대비 학자금 대출 이용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 차이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고등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측정 산식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수 재학생 수

2016년 2학기 현재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약 32만 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13.89%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2학기 대비 0.07%p 감소한 것이며, 직전 학기인 2016년 1학기에 비하면 1.38%p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학자금 대출 이용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1학기보다는 2학기에 학자금 대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유형별로는 일반상환 대출 비율이 2016년 2학기 현재 4.12%로 2015년 2학기 대비 2.55%p, 직전 학기 대비 2.32%p 증가한 반면, 취업 후 상환 대출은 2016년 2학기 현재 9.77%로 2015년 2학기 대비 2.62%p, 직전 학기 대비 0.95%p 감소하였다. 최대 10년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는 일반상환대출에 비해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 환하는 취업 후 상환대출제도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2016년 2학기의 경우 예년에 비해 일반상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유형별로는 2016년 2학기 현재 4년제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용 비율은 13.05%이었으며 전문대학은 17.40%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생의 일반상환 대출 비율은 4.37%, 취업 후 상환 대출 비율은 8.69%였으며, 전문대학생의 일반상환 대출 비율은 3.09%, 취업 후 상환 비율은 14.31%였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2008	2016	6개월

Checkpoint

대학 학자금 대출 비율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1학기보다는 2학기에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대학유형에 따라서는 전문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비율이 4년제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나며, 4년제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후 상환 대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 2005}년 금융기관 등을 통해 시행되었던 학자금 대출제도는 2009년 대폭 정비되어 국가장학금 사업과 학자금 대출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한국장학재단이 설립 되었고, 일반상환제도와 함께 취업 후 상환제도가 도입되었다. 취업 후 상환대출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과 생활비 등을 대출해 주고 상환 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 징수 폐지 등을 통해 학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또한 지속되고 있다.

표 3-12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대학 + 전문대학) : 등록금 + 생활비 (2013~2016)

(단위: 명,%)

	재학생 수	일반	상환	취업 최	후 상환	전	체
학기	(A)	인원 (B)	이용률 (B/A*100)	인원 (C)	이용률 (C/A*100)	인원(D)	이용률 (D/A*100)
2013-1	2,327,561	55,148	2.37	291,618	12.53	346,766	14.90
2013-2	2,144,055	51,535	2.40	294,962	13.76	346,497	16.16
2014-1	2,322,503	53,345	2.30	288,914	12.44	342,259	14.74
2014-2	2,155,239	47,363	2.20	292,403	13.57	339,766	15.76
2015-1	2,290,572	59,690	2.61	257,857	11.26	317,547	13.86
2015-2	2,111,058	33,140	1.57	261,541	12.39	294,681	13.96
2016-1	2,233,832	40,106	1.80	239,431	10.72	279,537	12.51
2016-2	2,330,575	96,029	4.12	227,651	9.77	323,680	13.89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표 3-13 대학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 등록금 + 생활비 (2013~2016)

(단위: 명,%)

	TUSKU 스	일반	 상환	취업 호	후 상환	전	M
학기	재학생 수 (A)	인원 (B)	이용률 (B/A*100)	인원 (C)	이용률 (C/A*100)	인원(D)	이용률 (D/A*100)
2013-1	1,825,422	41,527	2.27	205,274	11.25	246,801	13.52
2013-2	1,681,747	40,018	2.38	206,969	12.31	246,987	14.69
2014-1	1,825,623	39,863	2.18	205,410	11.25	245,273	13.44
2014-2	1,684,826	36,626	2.17	206,110	12.23	242,736	14.41
2015-1	1,800,475	42,477	2.36	185,936	10.33	228,413	12.69
2015-2	1,654,047	25,756	1.56	186,091	11.25	211,847	12.81
2016-1	1,755,259	29,062	1.66	173,010	9.86	202,072	11.51
2016-2	1,883,393	82,214	4.37	163,647	8.69	245,861	13.05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표 3-14 전문대학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 등록금 + 생활비 (2013~2016)

(단위: 명,%)

	재학생 수	일반	상환	취업 호	후 상환	전	(ETI- 8, %) 체
학기	(A)	인원 (B)	이 용률 (B/A*100)	인원 (C)	이 용률 (C/A*100)	인원(D)	이 용률 (D/A*100)
2013-1	502,139	13,621	2.71	86,344	17.20	99,965	19.91
2013-2	462,308	11,517	2.49	87,993	19.03	99,510	21.52
2014-1	496,880	13,482	2.71	83,504	16.81	96,986	19.52
2014-2	470,413	10,737	2.28	86,293	18.34	97,030	20.63
2015-1	490,097	17,213	3.51	71,921	14.67	89,134	18.19
2015-2	457,011	7,384	1.62	75,450	16.51	82,834	18.13
2016-1	478,573	11,044	2.31	66,421	13.88	77,465	16.19
2016-2	447,182	13,815	3.09	64,004	14.31	77,819	17.40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1인당 대출 금액

Amount of Loan per Student who has a loan

10-1

지표 정의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1인당 대출 금액을 의미한다.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은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과 더불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정도를 보여준다.

측정 산식

학자금 대출 금액 총액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수

2016년 2학기 현재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약 8천 799억 원 정도이다. 이 중에서 일반 상환대출금이 3천 442억 원이고, 취업 후 상환대출금이 5천 356억 원이다. 비중으로는 전체 학자금 대출 금액의 39.1%가 일반상환 대출이고 60.9%가 취업 후 상환 대출이다. 학교유형별로는 2016년 2학기 현재 4년제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7천 9억 원, 전문대학생은 1천 789억 원이다. 4년제 대학에서는 일반상환대출 비중이 44.4%, 취업 후 상환 대출 비율이 55.6%인 반면, 전문대학에서는 일반상환대출 비중은 18.7%, 취업 후 상환 대출 비율은 81.3%이다.

학생 1인당 대출 금액은 2016년 2학기 현재 약 272만 원이며, 대학유형별로는 4년제 대학은 285만 원, 전문대학은 230만 원이다. 대출유형별로는 4년제 대학의 일반상환 대출은 학생 1인당 378만 원, 취업 후 상환 대출은 238만 원이며, 전문대학은 각각 241만 원과 227만 원이었다. 4년 제 대학의 학생 1인당 일반상환 대출 금액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2008	2016	6개월

Checknoint

전반적으로 학자금 대출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2016년 2학기의 경우 이례적으로 학자금 대출 규모가 증가하였다. 특히, 4년제 대학의 일반상환 대출 규모가 전년 동일학기 대비 4.0배, 직전 학기 대비 3.2배 증가하였다. 전문대학에서도 전년 동일학기 대비 1.7배 증가하였다.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16년 2학기에는 4년제 대학에서 일반상환대출이 전년 동일학기 대비 78만원, 직전학기 대비 49만원 증가하였다.

표 3-15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 : 등록금 + 생활비 (2013~2016)

(단위: 명, 천 원)

학기	ç	일반상환	취업	겁 후 상환		전체	19	인당 대출 금	깩
역기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2013-1	55,148	193,604,247	291,618	920,495,202	346,766	1,114,099,449	3,511	3,157	3,213
2013-2	51,535	164,337,640	294,962	847,039,323	346,497	1,011,376,963	3,189	2,872	2,919
2014-1	53,345	178,403,771	288,914	868,966,294	342,259	1,047,370,065	3,344	3,008	3,060
2014-2	47,363	141,480,606	292,403	757,249,389	339,766	898,729,995	2,987	2,590	2,645
2015-1	59,690	198,925,175	257,857	735,954,178	317,547	934,879,353	3,333	2,854	2,944
2015-2	33,140	96,726,567	261,541	624,743,989	294,681	721,470,556	2,919	2,389	2,448
2016-1	40,106	130,757,283	239,431	650,438,157	279,537	781,195,440	3,260	2,717	2,795
2016-2	96,029	344,289,024	227,651	535,688,564	323,680	879,977,588	3,585	2,353	2,719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표 3-16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 대학 (2013~2016)

(단위: 명, 천 원)

					•				(인-	H. 명, 신 권)
	학기	ç	일반상환	취임	업 후 상환		전체	19	인당 대출 금	액
	역기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2013-1	41,527	148,255,248	205,274	642,559,946	246,801	790,815,194	3,570	3,130	3,204
:	2013-2	40,018	131,513,385	206,969	602,576,745	246,987	734,090,130	3,286	2,911	2,972
	2014-1	39,863	135,021,229	205,410	614,539,020	245,273	749,560,249	3,387	2,992	3,056
:	2014-2	36,626	112,818,178	206,110	544,826,514	242,736	657,644,692	3,080	2,643	2,709
	2015-1	42,477	142,194,514	185,936	525,757,957	228,413	667,952,471	3,348	2,828	2,924
:	2015-2	25,756	77,425,123	186,091	452,617,154	211,847	530,042,277	3,006	2,432	2,502
;	2016-1	29,062	95,662,780	173,010	466,253,890	202,072	561,916,670	3,292	2,695	2,781
:	2016-2	82,214	310,865,257	163,647	390,124,079	245,861	700,989,336	3,781	2,384	2,851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표 3-17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 전문대학 (2013~2016)

(단위: 명, 천 원)

				· · · · · · · · · · · · · · · · · · ·				(근.	H. 명, 신 권)
학기	Ę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19	인당 대출 금	액
역기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2013-1	13,621	45,348,999	86,344	277,935,256	99,965	323,284,255	3,329	3,219	3,234
2013-2	11,517	32,824,255	87,993	244,462,578	99,510	277,286,833	2,850	2,778	2,787
2014-1	13,482	43,382,542	83,504	254,427,274	96,986	297,809,816	3,218	3,047	3,071
2014-2	10,737	28,662,428	86,293	212,422,875	97,030	241,085,303	2,670	2,462	2,485
2015-1	17,213	56,730,661	71,921	210,196,221	89,134	266,926,882	3,296	2,923	2,995
2015-2	7,384	19,301,444	75,450	172,126,835	82,834	191,428,279	2,614	2,281	2,311
2016-1	11,044	35,094,503	66,421	184,184,267	77,465	219,278,770	3,178	2,773	2,831
2016-2	13,815	33,423,767	64,004	145,564,485	77,819	178,988,252	2,419	2,274	2,300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Amount of National Scholarship per Student

지표 정의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대비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보여준다.

측정 산식

국가장학금 지원액

수혜인원

2016년 2학기 현재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약 141만 명이다. 유형별로는 I 유형이 85만 7천명, II 유형이 51만 4천 명이며,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 수혜인원은 약 3만 9천명이다. 지원된 장학금 총액은 약 1조 8천 879억 원으로 학생 1인당 약 134만 원으로 나타난다. 분위별로는 기초수급대상자가 약 195만 원을 지원 받고 있으며, I, II 유형을 동시에 지원 받을 수있는 최상위 분위인 8분위는 약 54만 원을 지원 받는다.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2016년 2학기 현재 전체 재학생 대비 I 유형이 36.79%이며, Ⅱ유형이 22.08%, 다자녀 장학금이 1.71%였다.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내부자료)	-	2016	6개월

Checkpoint

학생 1인당 장학금은 2013년 1학기 77만 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6년 2학기 현재 134만 원에 이르고 있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과 수혜율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약간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 경제적으로 불리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국가장학사업을 도입하였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차등 지원하는 유형(I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추가 확충 등 등록금 부담 경 감을 위한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유형(I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14년에는 셋째 아이 이상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자녀유형이 신설되었다.

^{*} 국가장학금은 1 유형, II 유형 및 다자녀유형 모두 기초수급자 ~ 8분위 이하 학생을 대상(저소득층 학생 수 데이터가 확보 되지 않는 경우, 재학생 수로 대체 가능)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저소득층 학생들 중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의 비율이고, 국가장학금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국가장학금 수혜학생 1인당 지원받은 국가장학금의 규모를 말한다.

^{*} 갑자기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장학사정관제를 통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소득·성적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하다.

표 3-18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2016년 2학기)

학기 l 유형 다자녀(셋째아이이상)장학금 ||유형 합계(인원건수) 1인당 수혜인원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 기초 2,210 8,907 1.95 43,786 101,632 2.32 5,298 2.40 13,381 0.67 59,377 115,836 10,574 25,524 56,767 1분위 201,393 469,162 2.33 2.41 91,207 0.62 303,174 551,453 1.82 2분위 181,127 421,988 2.33 8,514 20,516 2.41 81,581 52,235 271,222 494,740 0.64 1.82 3분위 102,036 187,877 1.84 4,476 9,585 2 14 65,979 55,419 0.84 172,491 252,882 1.47 4분위 72,788 101,171 1.39 3,091 6,612 2.14 50,182 41,517 0.83 126,061 149,301 1.18 5분위 62,384 51,748 0.83 2,540 5,442 2.14 46,238 40.793 0.88 111,162 0.88 97,984 6분위 61,543 36,619 0.60 2,614 5,605 2.14 46,901 38,256 0.82 111,058 80,479 0.72 0.34 32.311 0.73 105.331 0.55 7분위 58.606 19.739 5.731 2.15 44.060 57.781 2,665 8분위 73,650 24,815 0.34 3,102 6,645 2.14 56,670 40,424 0.71 133,422 71,885 0.54 9분위 0.85 7,821 7,821 6,665 0.85 6,665 10분위 10,481 8,956 0.85 10,481 8,956 0.85 857,313 1,414,751 한계 1 65 39.786 90.958 2.29 514.501 382.250 0.74 1.411.600 1,887,962 1.34

주: 합계(인원 건수)는 유형별(| 유형+다자녀+ || 유형) 중복지원 인원을 제거하지 않은 단순 합.

자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내부자료), 2017

표 3-19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 (2015~2016)

(단위: 명, 백만 원)

(단위 : 명, 백만 원)

학기		2015-1			2015-2			2016-1			2016-2	8, 12 27
소득 구분	수혜인원	지원 금액	1인당 지원 금액									
기초	62,939	114,927	1.83	60,798	109,391	1.80	65,132	127,567	1.96	59,377	115,836	1.95
1분위	289,348	472,048	1.63	331,988	559,356	1.68	286,944	514,030	1.79	303,174	551,453	1.82
2분위	261,358	424,739	1.63	316,209	532,965	1.69	251,817	450,109	1.79	271,222	494,740	1.82
3분위	167,036	208,306	1.25	214,172	298,937	1.40	166,946	228,175	1.37	172,491	252,882	1.47
4분위	128,980	123,535	0.96	167,555	190,616	1.14	127,610	134,321	1.05	126,061	149,301	1.18
5 분 위	112,188	76,335	0.68	77,844	72,150	0.93	111,558	77,788	0.70	111,162	97,984	0.88
6 분 위	104,769	56,869	0.54	79,619	63,494	0.80	106,152	58,674	0.55	111,058	80,479	0.72
7 분 위	112,666	43,576	0.39	74,689	49,377	0.66	114,031	44,665	0.39	105,331	57,781	0.55
8 분 위	129,553	49,468	0.38	96,561	62,954	0.65	131,876	50,869	0.39	133,422	71,885	0.54
9 분 위	4,482	4,019	0.90	17,030	15,384	0.90	4,499	4,682	1.04	7,821	6,665	0.85
10 분 위	5,817	5,380	0.92	22,387	20,590	0.92	6,414	7,303	1.14	10,481	8,956	0.85
전체	1,379,136	1,579,202	1.15	1,458,852	1,975,217	1.35	1,372,979	1,698,183	1.24	1,411,600	1,887,962	1.34

주: 합계(인원 건수)는 유형별(I유형+다자녀+IR형) 중복지원 인원을 제거하지 않은 단순 합.

자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내부자료), 2017

표 3-20 국가장학금 수혜율 (2013~2016)

(단위: %)

학기 유형 구분	2013-1	2013-2	2014-1	2014-2	2015-1	2015-2	2016-1	2016-2
l 유형(전체)	41.99	41.02	41.40	43.52	37.85	40.00	39.03	36.79
∥ 유형(전체)	27.19	27.34	24.86	24.99	20.72	27.66	20.33	22.08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	-	-	1.07	0.92	1.64	1.44	2.11	1.71
합계	69.18	68.36	67.33	69.43	60.21	69.11	61.46	60.57

주: 1) 재학생 수는 대학알리미 정보공시 자료 중 학자금 대출현황 항목의 재학생 수를 활용함.

2) 국가장학금 수혜율=국가장학금 수혜인원/저소득층 학생 수 X 100

3) 국가장학금 수혜율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 수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재학생 수로 대체 가능

자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내부자료), 2017

12 "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The percentage of Students Selected by the equality of opportunity among Tertiary New Entrants

지표 정의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총 입학자 수 대비 기회균형 선발학생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들은 소외계층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원 내 또는 정원 외로 일정한 비율을 할당하고 있다. 이 지표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 및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보여준다.

측정 산식

기회균형 선발학생 수(정원 내외) 총 입학자 수

소외계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입학자 중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2014년 6.18%, 2015년 6.66%, 2016년 7.3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유형별로는 4년제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2014년 6.79%, 2015년 7.83%, 2016년 8.83%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은 2014년 5.09%, 2015년 4.41%, 2016년 4.39%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4년제 대학에 한정하여 설립별 및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학 입학생의 9.91%, 사립대학 입학생의 8.46%가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하였으며, 수도권 대학 입학생의 7.70%, 비수도권 대학 입학생의 9.66%가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하였다.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대학에서, 수도권 대학보다는 비수도권 대학에서 기회균형선발 입학생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2008	2016	1년

Checknoint

전문대학의 경우, 선취학 후진학 지난 3년간 추이를 보면 2014년 6.18%에서 2015년 6.66%로, 2016년 에는 7.32%로 증가하고 있다. 고등교육유형별로는 기관유형별로 보면, 4년제 대학은 2015년 7.83%에서 2016년 8.8 대비 1.00%p 증가한 것에 비해 전문대학은 0.02%p 감소하였다. 2014년 이래 4년제 대학은 소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전문대학은 감소추세를 보인다.

참고문헌

• 교육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 2016

표 3-21 기회균형 선발 현황 (2014~2016)

(단위: 명,%)

		2014			2015		2016		
구분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B)	비율 (B/A*100)
대학	410,655	27,870	6.79	399,066	31,237	7.83	389,319	34,366	8.83
전문대학	216,227	11,014	5.09	207,941	9,163	4.41	201,285	8,845	4.39
대학원 대학	2,556	7	0.27			2015년 4	^{낚제항목}		
합계	629,438	38,891	6.18	607,007	40,400	6.66	590,604	43,211	7.32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6.09.22. 인출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6.09.22. 인출

표 3-22 지역별 · 설립별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 현황 (2016)

(단위: 명,%)

	국공립				사립	계			
구분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B)	비율 (B/A*100)
수도권	32,103	2,163	6.7	132,445	10,501	7.9	164,548	12,664	7.7
비수도권	67,292	7,683	11.4	157,479	14,019	8.9	224,771	21,702	9.7
합계	99,395	9,846	9.9	289,924	24,520	8.5	389,319	34,366	8.8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6.09.22, 인출

13 #

고등교육 이수율

Tertiary Education Attainment

지표 정의

한 나라의 고등교육 이수 정도는 연령대별 총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고등교육 이수율)로 파악할 수 있다 * .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고등교육 기회에의 접근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고등교육의 이수이다.

측정 산식

해당 연령 고등교육 이수자 수 해당 연령 전체 인구 수

한국 성인(25세~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7년 35%에서 매년 1~2%p씩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45%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15년 현재 OECD 국가 평균인 35%에 비해 약 10%p더 높다. 고등교육 유형별로는 단고등교육(전문대학) 과정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7년 10%에서 2015년 13%로 증가하였으며, 대학(학사)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7년 24%에서 2015년 32%로 증가하였다. 고등교육 이수율의 증가가 대학(학사)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25세~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7년 56%에서 2015년 69%로 13%p 증가한 반면 55~64세 장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7년 11%에서 2015년 18%로 7%p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OECD 평균이 25~34세 청년층은 34%에서 42%로 8%p, 55~64세 장년층은 20%에서 26%로 6%p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단기간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20~30년간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성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25세~64세 연령대 고등교육 이수율은 45%로, 캐나다, 일본, 이스라엘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또한 2013년과 2015년 간 고등교육 이수율의 증가폭은 2%p로 OECD 평균 증가폭인 2%p와 동일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17	1년

Checkpoint

지난 $20\sim30$ 년간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성장으로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평균의 변화 정도와 비교 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고등교육 유형별로는 대학(학사)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빠른 고등교육의 양적성장으로 청년층—장년층 간고등교육 이수율은 격차는 51%p로 OECD 평균의 세대 간 격차 16%p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6,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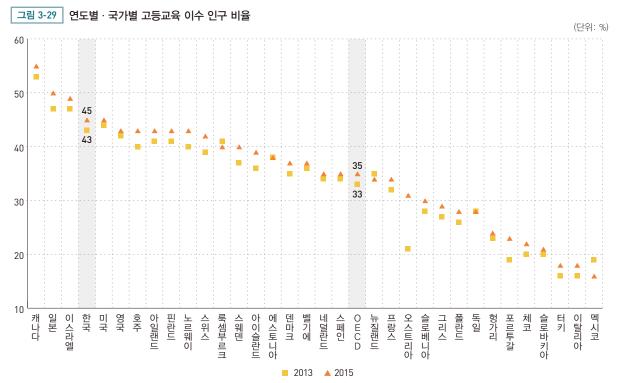
^{*} OECD에서는 25세~64세 인구를 성인층으로, 그 중에서도 25세~34세 인구를 청년층, 55세~64세 인구를 장년층으로 구분한다. 고등교육은 단기고등교육(전문대학 과정)과 대학(학사),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과정으로 구분하며, 단기고등교육은 전문대학, 각종 학교·기술대학·사내대학(전문대학과정), 전공대학, 기능대학이 해당된다. 대학(학사)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학교·기술대학·사내대학(대학과정), 전문대학·기능대학(학사학위 심화과정)이 포함되며, 대학원(석사)은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석사과정)이, 대학원(박사)은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태당된다.

표 3-23 고등교육 이수 인구 비율 (2007~ 2015)

(단위: 명,%)

		다기고등	등교육(전문대	하 가전)	(17년(우)	및 대학원(석	반사) 과정		고등교육 전체	(271. 6, 70)
구분	국가)						
		25~64세	25~34세	55~64세	25~64세	25~34세	55~64세	25~64세	25~34세	55~64세
2015	한국	13	22	4	32	47	15	45	69	18
2013	OECD 평균	8	8	7	16	21	11	35	42	26
2014	한국	13	23	3	31	45	14	45	68	17
2014	OECD 평균	8	7	8	15	21	10	33	41	25
2013	한국	14	25	3	30	42	12	43	67	15
2013	OECD 평균	10	11	9	25	32	18	33	40	25
2012	한국	13	26	2	28	40	11	42	66	14
2012	OECD 평균	10	10	9	24	30	17	32	39	24
2011	한국	13	25	2	28	39	11	40	64	13
2011	OECD 평균	10	10	8	23	30	17	32	39	24
2010	한국	12	26	2	28	39	11	40	65	13
2010	OECD 평균	10	11	8	22	28	16	31	38	23
2009	한국	12	25	1	27	38	12	39	63	13
2007	OECD 평균	10	11	8	21	28	16	30	37	22
2008	한국	11	23	1	26	35	11	37	58	12
2000	OECD 평균	9	10	7	21	27	15	28	35	20
2007	한국	10	22	1	24	34	10	35	56	11
2007	OECD 평균	9	10	7	20	26	14	28	34	20

주: 2014년 이후 대학(학사)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의 OECD 평균은 대학(학사) 과정에 해당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각 연도



주: 1) 칠레는 2013년도, 프랑스는 2014년도 자료임.

2)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은 국가 순으로 내림차순정렬.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6, 2016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및 지원 금액

An Overview of High School Student Educational Benefit in Single Parent Family: Provision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금액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의 고교생자녀 또는 청소년한 부모 중 고교생에게 지급된 교육비(수업료, 입학금)를 산출한 값이다.

측정 산식

•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에게 고교생학비를 지원한 건수 및 지원 금액 (2016년 기준)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	1,438,634원	1,861,090원	2,283,546원	2,706,001원	3,128,458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0%)	1,659,962원	2,147,411원	2,634,860원	3,122,309원	3,609,759원

2016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중 입학금과 수업료 등 고교생학비 지급건수와 지원금액을 추출한 결과 봄학기 시작인 3월이 가장 높고, 그 외에도 분기말인 6, 9, 12월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연간 서울이 가장 높은 비중(8,746건, 1,804백만 원)을 보였으며 경기(8,983건, 582백만 원), 울산(3,941건, 241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 지원 비중은 2016년 3월기준 모자가정(지원건수 70.1%, 지원금액 71.4%), 부자가정(지원건수 29.4%, 지원금액 28.1%), 조손가정(지원건수 0.6%, 지원금액 0.5%)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한부모가족고교생학비지원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6	1년

Checknoint

전년대비 2016년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와 금액 모두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106년 연간 지원 건수는 40,940건으로 전년 대비 68% 감소하였고, 지원금액은 3,662,708천 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하였다. 한편, 입학금, 수업료 등의 지불기간이 일정기간 정해져 있는 고유 특성에 의해 3, 6, 9, 12월에 지원금액 및 건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24 연도별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건수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계	135,710	145,915	126,453	40,940

표 3-25 시도별 · 월별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건수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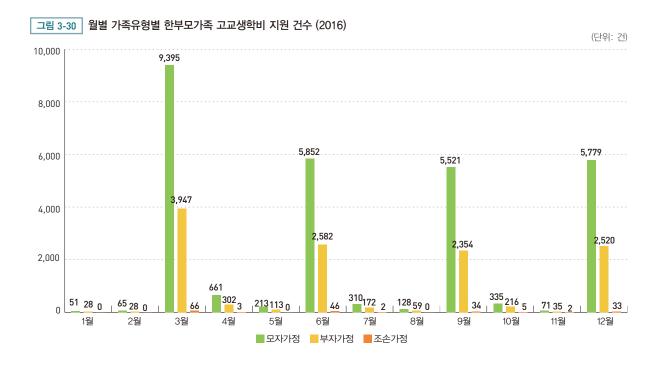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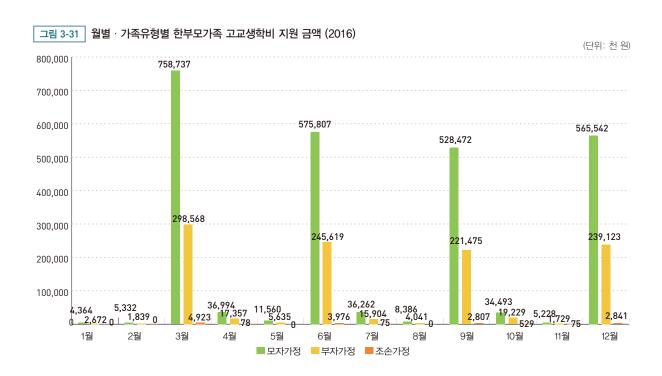
				•		. (==,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서울	21	8	3,156	58	12	1,883	168	3	1,538	124	8	1,767	8,746
부산	1	1	710	15	7	465	4	2	465	6	1	464	2,141
대구	28	61	586	56	38	523	4	5	500	10	5	505	2,321
인천	-	-	-	-	-	-	-	-	-	-	-	-	-
광주	1	3	118	236	175	207	6	136	83	210	43	339	1,557
대전	-	-	368	65	-	318	3	-	327	-	-	316	1,397
울산	7	6	1,160	4	12	918	6	2	932	3	-	891	3,941
경기	11	9	3,152	96	36	1,879	52	35	1,797	123	6	1,787	8,983
강원	-	4	1,101	330	21	549	79	2	570	-	-	540	3,196
충북	-	-	309	-	-	177	19	-	166	1	19	170	861
충남	2	_	356	5	-	176	12	-	210	46	-	206	1,013
전북	-	-	313	48	-	132	42	2	126	12	-	124	799
전남	1	1	418	33	9	283	15	-	261	2	8	262	1,293
경북	1	-	440	3	16	244	60	-	272	4	18	301	1,359
경남	4	_	720	18	-	437	14	-	396	15	-	412	2,016
제주	2	-	506	-	-	292	-	-	268	-	-	249	1,317
계	79	93	13,413	967	326	8,483	484	187	7,911	556	108	8,333	40,940

표 3-26 시도별 · 월별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금액 (2016)

(단위: 천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서울	3,902	1,755	578,616	11,442	1,130	410,007	35,126	605	348,278	26,447	1,250	385,526	1,804,084
부산	69	70	40,559	636	246	35,807	370	256	36,200	576	66	36,033	150,888
대구	1,027	2,724	36,297	4,459	1,659	40,322	287	357	39,180	651	397	39,888	167,248
인천	-	-	-	-	-	-	-	-	-	-	-	-	-
광주	135	408	5,939	14,261	10,198	14,068	361	8,853	5,615	13,879	2,690	25,044	101,452
대전	-	-	21,879	4,747	-	27,051	143	-	27,396	-	-	26,353	107,571
울산	507	443	58,691	142	532	60,254	307	63	61,649	348	-	58,069	241,005
경기	923	686	172,131	4,607	1,757	132,019	4,140	2,093	126,823	8,490	626	127,953	582,250
강원	-	973	33,480	9,948	735	21,534	3,172	73	22,478	-	-	22,045	114,438
충북	-	-	13,737	-	-	10,565	773	-	9,925	54	757	9,948	45,758
충남	87	-	10,973	123	-	7,576	541	-	9,587	2,223	-	9,130	40,240
전북	-	-	13,893	2,490	-	8,010	2,745	127	9,396	614	-	8,482	45,758
전남	65	112	13,129	937	308	12,230	707	-	11,077	193	370	11,479	50,608
경북	30	-	15,350	153	629	10,717	3,028	-	12,086	184	876	14,066	57,118
경남	126	-	28,564	553	-	22,308	541	-	20,790	592	-	21,690	95,164
제주	165	-	19,115	-	-	14,396	-	-	12,997	-	0	12,454	59,127
계	7,037	7,171	1,062,352	54,497	17,195	826,865	52,241	12,427	753,478	54,252	7,032	808,161	3,662,708





수 구로

- 01 경제활동참가율
- N2 고용류
- 03 실업률
- N/ 식언급여 수급자 수
- 05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 06 총 근로시기
- 07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 08 근로형태벽 취업자 수
- 09 사회보험 가입률
- 10 산업재해율
- 11 저임금근로자 비율
- 12 시간급 최저임금
- 13 시간당 임금액
- 14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액
- 15 자활사업 대상자 수
- 16 자홬근로사업 참여자 수
- 17 차산의 자화 수근자 4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 0 1 7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고용	경제활동참기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안정성	실업급여 수급자 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일자리의 질	총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사회보험 가입률	
	산업재해율	
근로빈곤	저임금근로자 비율	
	시간급 최저임금	최저임금 영향률
	시간당 임금액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활	자활사업 대상자 수	자활사업 참여자 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차상위 자활 수급자 수	

01 H H

경제활동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지표 정의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만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활동인구는 조사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을 통해서 '일정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위해 활용 가능한 노동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인구 ×100

유의사항

OECD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해 연령 기준을 15~64세로 적용했음에 유의해야 함.

[그림 4-1]과 같이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 초반으로 매우 안정적이다. 이에 비해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까지 49.4%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이후 2013년 42.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들어 횡보하는 모양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그림 4-2])을 살펴보면, 청년층에서는 미세하게나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반면, 가사·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눈에 띄게 저조해 그 격차가 약 31.8%p에 달한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54.1%에 비해 7.3%p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주기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M자형을 띄고 있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그림 4-3])은 OECD 평균보다 5.2%가 낮은 특징을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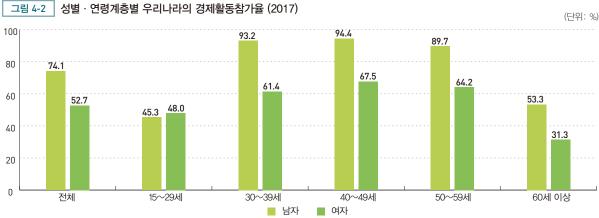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17	1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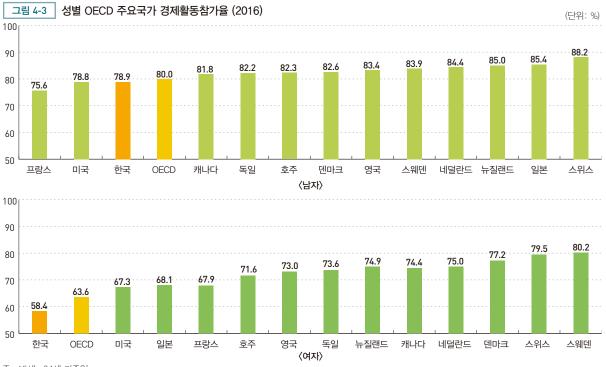
Checknoint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장기간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최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소 높아 졌으나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다.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3.15. 인출)



주: 15세~64세 기준임.

자료: OECD, stat(자료 다운로드 2017. 12. 06. 04:25 UTC (GMT))



지표 정의

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취업자는 "조사대상 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또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및 일시휴직 자"이며, 고용률은 조사대상 기간에 인구 대비 노동을 공급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고용률은 노동력의 활용 정도를 파악 하는데 유용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취업자 수 15세 이상 인구 ×100

유의사항

OECD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해 연령 기준을 15~64세로 적용했음에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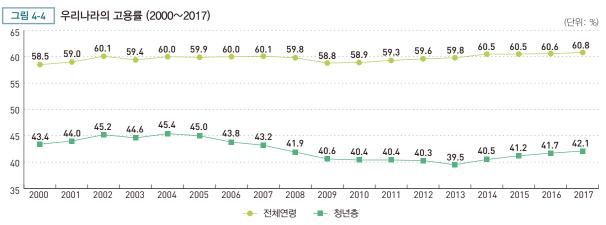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용률은 2000년대 이후 60%를 약간 밑돌다가 2014 년 이후 60%를 약간 상회하는 반면, 청년층(15세~29세) 고용률은 2004년 45,4%에서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해 2013년 39.5%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성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의 고용률은 75.8%로 OECD 평균(74.8%) 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OECD 평균보다 3.2%p 낮고, 주요국의 여성고용률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17	1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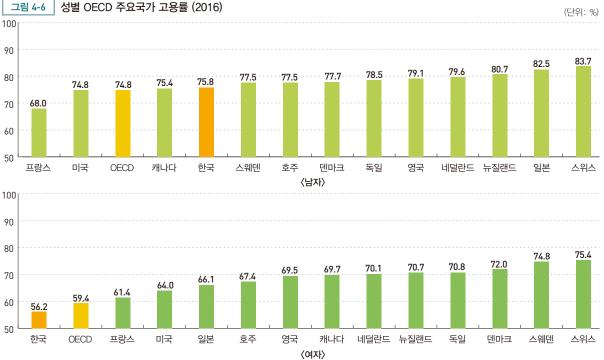
Checkpoint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이다. 전체적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 의 고용률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3.15. 인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3.15. 인출)



자료: OECD, stat(자료 다운로드 2017. 11. 09. 04:27 UTC (GMT))

실업률

Unemployment Rate

지표 정의

실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의미하는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를 별도로 파악하는 "고용보조지표"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고용시장 상황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실업자 수 경제활동인구 ×100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9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벗어난 후에는 3% 중반을 중심으로 미세하게 등락을 거듭하며 안정적이다. 반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17년 현재 9.8%로 전체 실업률의 약 2.6배에 달하며,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2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 ·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남성의 실업률이 여성에 비해 높다는 점, 그 중에서도 특히 남성청년의 실업률이 여성 청년보다 3.1%p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60세 이상 노인층에서도 성별 실업률 격차가 두드러지는 편이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실업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의 실업률이 도 지역 실업률보다 높은 특징을 보인다. 2017년의 경우 특히 서울, 대구, 부산, 인천의 실업률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도 단위에서는 수도권인 경기도의 실업률이 전체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반면, 나머지 지역들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실업률을 보인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3.15. 인출)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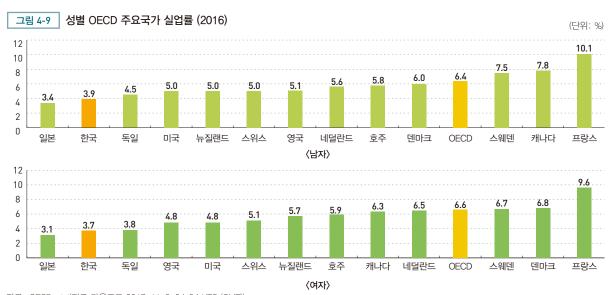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17	1개월

Checknoint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증가한 청년층 실업률은 2012년 7,5%까지 감소한 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5년 9.2%로 정점을 찍은 이후 다소 완화되었지만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OECD 국가(15~24세)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청년층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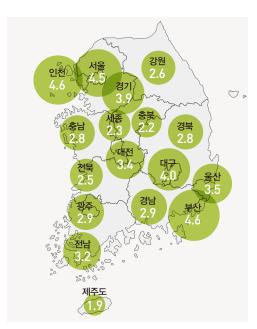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3.15. 인출)



자료: OECD, stat(자료 다운로드 2017, 11, 9, 04:24 UTC (GMT))

표 4-1 시도별 실업률 (2007~2017) (단위: %)											
시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3.2	3.2	3.6	3.7	3.4	3.2	3.1	3.5	3.6	3.7	3.7
서울	4.1	3.9	4.5	4.7	4.5	4.2	3.9	4.4	4.2	4.2	4.5
부산	4.0	3.8	4.3	3.6	3.6	3.9	3.8	3.8	4.1	3.9	4.6
대구	3.6	3.7	4.3	4.0	3.7	3.3	3.3	3.8	3.5	4.1	4.0
인천	4.0	3.9	4.5	5.0	4.7	4.5	4.1	4.7	5.0	4.9	4.6
광주	4.0	3.8	3.8	3.5	3.1	2.7	2.8	2.8	2.9	3.1	2.9
대전	4.1	3.7	3.7	3.7	3.6	3.7	3.0	3.4	3.4	3.2	3.4
울산	2.5	3.4	4.1	3.5	2.7	2.6	2.1	2.7	2.9	3.8	3.5
세종	-	-	-	-	-	-	-	-	-	-	2.3
경기	3.3	3.2	3.8	4.0	3.4	3.3	3.0	3.3	3.9	3.9	3.9
강원	1.9	1.7	2.1	2.6	2.2	2.5	2.3	3.1	3.2	2.8	2.6
충북	2.3	2.2	2.1	2.2	2.4	2.0	2.0	3.0	2.6	2.6	2.2
충남	2.4	2.5	3.1	3.0	2.4	2.3	2.8	3.3	3.5	3.2	2.8
전북	2.4	2.2	2.0	2.2	2.3	2.0	2.0	2.5	1.7	2.1	2.5
전남	1.8	2.0	1.6	2.1	2.0	1.6	2.1	2.9	2.5	3.0	3.2
경북	2.1	2.1	2.7	2.8	2.6	2.5	3.1	2.9	3.0	3.2	2.8
경남	2.4	2.2	3.1	2.8	2.2	1.8	2.1	2.5	2.6	3.3	2.9
제주	2.1	1.8	1.6	1.8	1.7	1.5	1.8	2.0	1.9	2.2	1.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3.15. 인출)



실업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Unemployment Benefit Recipients

지표 정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로, 수급자 수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급여를 수급한 인원을 말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일용인 경우 90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해 야만 수급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측정 산식

- 수급자 수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급여를 수급한 인원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 *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 60,000원/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2017년 1~3월은 46,584원/2016년은 43,416원/2015년은 43,000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수급인원, 수급금액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급증한 후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단, 수급자격인정자 수는 2015년 이후 감소).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와 경기변동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직사유별 수급자 수를 보면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이 남녀 모두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다음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전체 이직 사유의 1/4 가까이를 차지한다. 이는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임시직 형태의 비정규직이 꾸준히 증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보여준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997	2016	1년

Checkpoint

2000년대 안정적인 실업률에 비해 큰 폭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를 반영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수급인원과 금액 증가는 최근의 경기침체의 결과물로 판단된다.

丑 4-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수급인원, 수급금액 (1997~2016)

(단위: 명, 십억 원)

						(LTI - 6, HT E)
구분	수급자격인정자	증가율	수급인원	증가율	수 급금 액	증기율
1997	50,774		49,117		79	
1998	434,199	755.2%	411,686	738.2%	799	915.3%
1999	325,220	-25.1%	484,772	17.8%	936	17.1%
2000	258,727	-20.4%	332,692	-31.4%	471	-49.7%
2001	346,671	34.0%	428,156	28.7%	845	79.5%
2002	297,109	-14.3%	416,041	-2.8%	839	-0.7%
2003	375,561	26.4%	502,211	20.7%	1,030	22.8%
2004	467,730	24.5%	707,432	40.9%	1,448	40.6%
2005	562,524	20.3%	812,768	14.9%	1,752	21.0%
2006	609,691	8.4%	943,542	16.1%	2,074	18.4%
2007	685,024	12.4%	1,009,180	7.0%	2,434	17.4%
2008	835,140	21.9%	1,162,534	15.2%	2,865	17.7%
2009	1,068,389	27.9%	1,301,132	11.9%	4,116	43.7%
2010	973,026	-8.9%	1,238,665	-4.8%	3,687	-10.4%
2011	902,362	-7.3%	1,202,066	-3.0%	3,561	-3.4%
2012	898,054	-0.5%	1,187,247	-1.2%	3,677	3.2%
2013	919,118	2.3%	1,210,263	1.9%	3,884	5.6%
2014	971,068	5.7%	1,252,677	3.5%	4,156	7.0%
2015	950,754	-2.1%	1,272,470	1.6%	4,547	9.4%
2016	953,901	0.3%	1,278,833	0.5%	4,895	7.6%

주: 2009년 이후는 순인원 수치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각 연도

사유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수 (2016) 丑 4-3

(단위: 명)

구분	계	남	여
계	953,003	472,848	480,155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28,744	7,527	21,217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10,913	5,589	5,324
폐업, 도산	42,860	16,566	26,294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463,533	229,295	234,238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권고 사직	45,880	23,087	22,793
정년	23,895	16,762	7,133
계약 만료, 공사 종료	269,501	120,016	149,485
고용보험 비적용, 기타, 분류 불능	67,677	54,006	13,671

주: 분류불능은 표기하지 않아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6 고용보험통계, 2017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Public Expenditure on Labor Market Policies

지표 정의

노동시장정책(Labour Market Policies; LMP)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 \cdot 재진입 \cdot 이탈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을 말한다.

OECD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적극적 정책과 소극적 정책으로 나누고 있다.

측정 산식

-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1) 직접일자리 창출 + 2) 직업능력개발 + 3) 고용서비스 + 4) 창업지원 + 5) 고용장려금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 실업자에 대한 소득 유지 및 지원 사업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정책에 투입한 금액은 2011년 8조 8,059억 원에서 2016년 16조 5,951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투입 증가는 2016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투입이 100조 원을 돌파한 것과 같이 대부분 이 부문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실업자에 대한 현금지원사업인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은 2011년 3조 8,737억 원에서 이듬해조금 감소한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분야별 지원 규모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실은 2011년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던 창업지원금이 2014년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난다. 또 하나의 특징은 2011년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던 고용장려금이 2015년을 정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해서 전체의 4순위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 정도와 구성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2015년 한국의 지출수준은 GDP의 0.68%로 여전히 매우 낮으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이 조금 더높은 편이다. 노동시장 지출수준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등의 순으로, 이들 국가는 노동시장정책에 GDP의 3% 내외를 지출하고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과 같은 사민주의 국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의 조합주의 국가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이 각각 높은 특징이 있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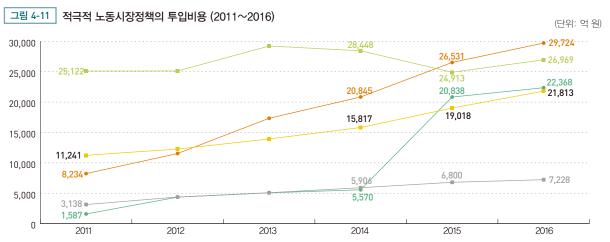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내부자료)	2010	2016	1년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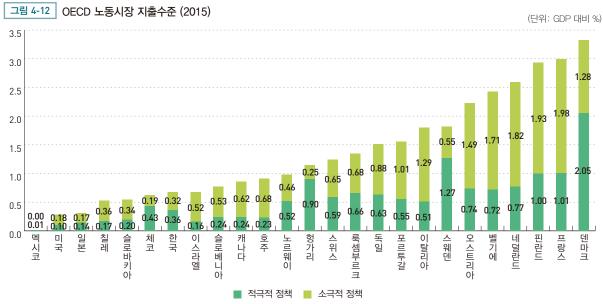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적극적 정책 지원 규모는 약 2조, 소극적 정책 규모는 약 1조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2016년에는 다소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두 해 모두 적극적 정책에 대한 투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지출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성과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료: 고용노동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내부자료), 각 연도



자료: 고용노동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내부자료), 각 연도



자료: OECD, stat(자료 다운로드 2017, 11, 9, 04:40 UTC (GMT))

06 H

총 근로시간

Total Hours Worked

지표 정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관행이 근로자의 삶과 일자리 만들기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 근로시간은 중요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소정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48시간이었지만, 이후 1989년 44시간으로, 그리고 2003년에는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은 산업 및 근로자 규모별로 경과규정을 두어 연차적으로 실시하였지만, 2011년 7월 1일 이후는 모든산업의 5인 이상 근로자에게로 확대되었다. 실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에 주당 12시간까지 가능한 초과근로시간을 더한 시간을 의미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16년 5인 이상 임금근로 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40.6시간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2004년, 2009년, 2015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 사업체규모별·근로시간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인 경우 5~29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42.0시간으로 가장 짧고, 비정규직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의 영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24.8시간으로 가장 짧다. 산업별로는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순으로 근로시간이 길고, 건설업과 교육서비스업의 근로시간이 가장 짧다.

국제비교에 따르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의 2,246시간 다음으로 길다. 이는 OECD 평균의 1.2배,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의 1.54배에 달한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8***	2016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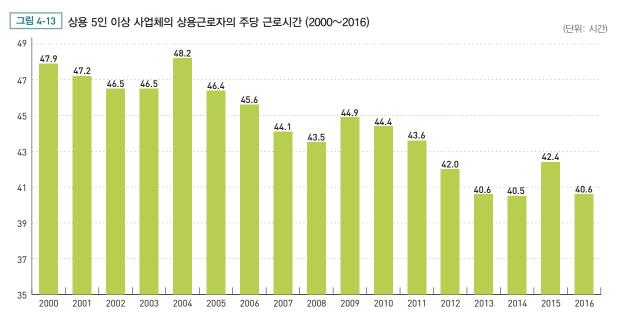
Checkpoint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매우 길지만, 법정근로시간의 감소와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증가로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 감소추세가 바뀌어, 앞으로의 변화를 눈여겨 볼 필요 가 있다. 또한 일일 및 단시간근로자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가 모두 자발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시 간의 추이를 조심스레 해석할 필요가 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기준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의 일반근로자 8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유해위험작업근로자 6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의 연소 근로자 7시간) 이내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주휴일, 취업규칙상의 휴일은 제외)에 정규적인 업무개시와 종료시각 사이의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말한다. 이때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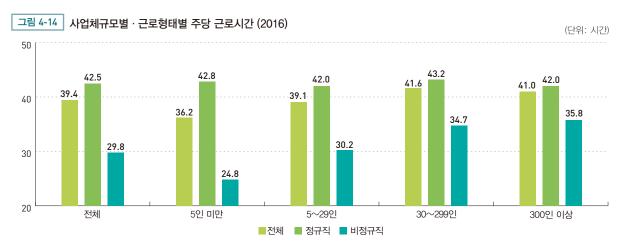
^{**} 초과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한다.

^{*** 2008}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통합하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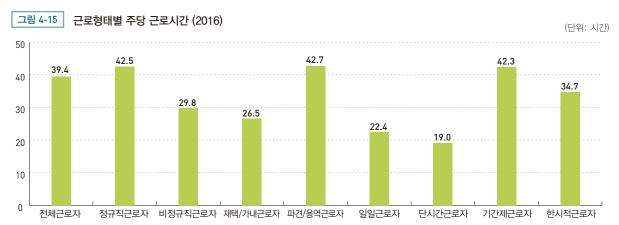
주: 주당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7일/30.4일) 측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주: 주당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7일/30.4일) 측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6



주: 주당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7일/30.4일) 측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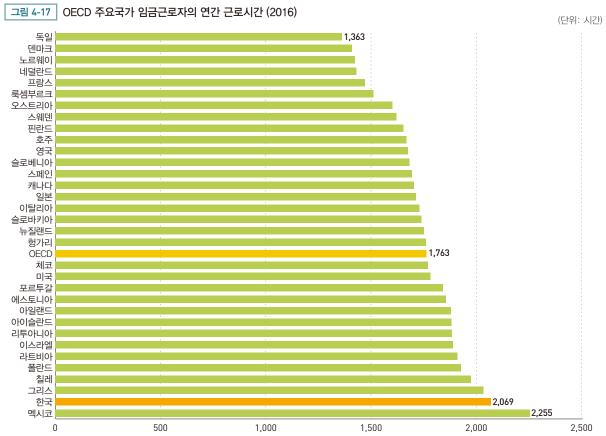
그림 4-16 산업별 주당 근로시간 (2016)

(단위: 시간)



주: 주당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7일/30.4일) 측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6



자료: OECD, stat(자료 다운로드 2017. 11. 9. 05:09 UTC (GMT))

07 H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Employment by Status of Workers

지표 정의

종사상 지위란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 상태를 말하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한다.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와 한 사람 이상의 유급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고용주)로 구분되며, 무급가족종사자는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한다.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또는 고용계약을 미설정한 경우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자이며,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다.

종사상 지위는 고용안정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측정 산식

• 종사상 지위별 정의에 따른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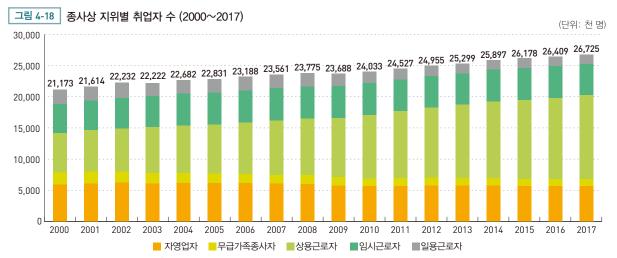
자영업자의 수는 2000년대 6백만 명을 넘어섰다가 2009년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17년 5,682천 명에 이른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27.8%에서 2017년 21.3%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상용근로자의 수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약 1,343만 명, 전체 취업자의 50.2%에 이르렀다. 반면 임시근로자의 비중은 2000년대 중후반까지 증가하다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하고, 일용근로자의 비중도 2000년 이후 감소추세다.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의 성별 비중을 보면 남녀 모두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지만, 여성의 경우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남성의 2배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17	1개월

Checknoin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최근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취업자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근로자의 수와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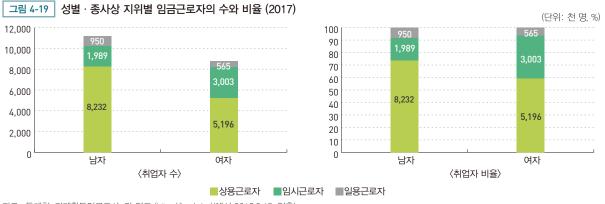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3.15. 인출)

표 4-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와 비율 (2000~2017)

(단위: 천명,%)

																	· - · · ·	_ 0,,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		22,232 (100.0)						1									,
자영 업자	5,876 (27.8)			6,066 (27.3)		6,141 (26.9)		,	6,005 (25.3)	, ,	5,643 (23.5)	, ,		, ,		5,622 (21.5)	5,614 (21.3)	,
무급 가족 종사자	1,941 (9.2)	,		,	1,585 (7.0)	,	1,471 (6.3)	1,419 (6.0)				1,273 (5.2)				1,153 (4.4)		
상용 근로자	6,397 (30.2)	,	6,879 (30.9)	,	7,651 (33.7)	7,923 (34.7)		8,715 (37.0)	9,105 (38.3)	,	10,178 (42.4)	,		,	,	,		
임시 근로자	4,602 (21.7)					5,059 (22.2)			5,122 (21.5)		5,107 (21.2)			,		5,114 (19.5)		
일용 근로자	2,357 (11.1)	. '			2,194 (9.7)			,						1,600 (6.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3.15. 인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3.15. 인출)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Employment by Employment Type

지표 정의

20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포괄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정의된다. 한시적 근로자는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눠진다.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으로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비전형 근로자는 근로제공방식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으로 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 내(재택, 가내), 일일(호출) 근로자로 분류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형태는 일자리의 안정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측정 산식

• 근로형태별 정의에 따른 취업자 수

유의사항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통상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한 「temporary workers」를 파악·수록하고 있음.

- •통계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 단기기대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일일 근로자」 제공
- 비정규직 근로자 중 반복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내 근로자는 제외

정규직과 비정규직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004년 37%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이후 전체 임금근로자의 1/3을 비정규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비정규직 감소추세와 달리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2004년 7.3%에서 2017년 13.3%로 약 15년 동안 약 1.8배로 증가했다. 성별 취업자 규모를 살펴보면 남자 정규근로자는 증가하고 남자 비정규근로자의 수는 거의 일정한 반면, 여자의 경우 정규·비정규근로자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전통적으로 임시직 비율이 높은 건설업 다음으로 서비스 업종의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OECD 국가에서 근로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를 포함하는 임시직(temporary employment)의 평균 비중은 11.2%이며, 2016년 한국은 21.9%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한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03	2017	1년

Checkpoint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논의되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남녀 모두 시간제 근로형태가 증가하는 이유에는 시간선택제 촉진이라는 정 책적 배경과 유연한 근로형태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반영되어 있다. 다만, 시간제 일자리의 질에 대한 정 책적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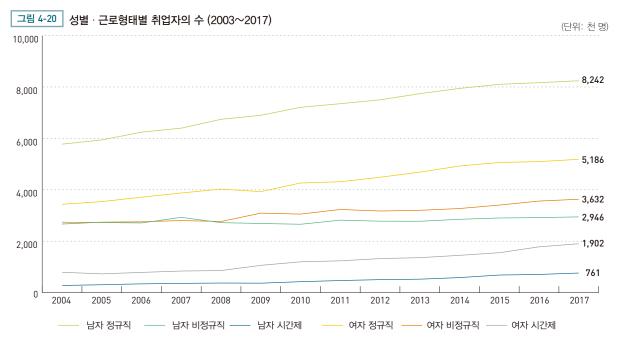
표 4-5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와 임금근로자 대비 비율 (2003~2017)

(단위: 천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임금근로자	14,618	14,948	15,420	16,006	16,258	16,609	17,189	17,715	17,941	18,403	18,992	19,474	19,743	20,006
	정규직	9,211	9,480	9,956	10,274	10,770	10,826	11,475	11,662	11,987	12,426	12,869	13,166	13,262	13,428
	비정규직	5,407	5,469	5,465	5,732	5,488	5,783	5,715	6,053	5,954	5,977	6,123	6,308	6,481	6,578
근로자 수	– 한시적 근로자	3,611	3,612	3,649	3,580	3,322	3,528	3,298	3,474	3,427	3,446	3,529	3,655	3,671	3,725
·	* 기간제	2,503	2,725	2,741	2,556	2,388	2,828	2,500	2,687	2,729	2,770	2,763	2,872	2,939	2,930
	– 시간제 근로	1,069	1,037	1,127	1,199	1,231	1,428	1,623	1,708	1,828	1,883	2,035	2,236	2,488	2,663
	– 비전형 근로	1,947	1,896	1,918	2,204	2,147	2,288	2,300	2,452	2,304	2,234	2,137	2,229	2,245	2,112
	임금근로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63.0	63.4	64.6	64.2	66.2	65.2	66.8	65.8	66.8	67.5	67.8	67.6	67.2	67.1
	비정규직	37.0	36.6	35.4	35.8	33.8	34.8	33.2	34.2	33.2	32.5	32.2	32.4	32.8	32.9
비율	– 한시적 근로자	24.7	24.2	23.7	22.4	20.4	21.2	19.2	19.6	19.1	18.7	18.6	18.8	18.6	18.6
	* 기간제	17.1	18.2	17.8	16.0	14.7	17.0	14.5	15.2	15.2	15.1	14.5	14.7	14.9	14.6
	– 시간제 근로	7.3	6.9	7.3	7.5	7.6	8.6	9.4	9.6	10.2	10.2	10.7	11.5	12.6	13.3
	– 비전형 근로	13.3	12.7	12.4	13.8	13.2	13.8	13.4	13.8	12.8	12.1	11.3	11.4	11.4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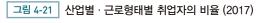
주: 1) 매년 8월 기준임.

2)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이거나 시간제 근로자이거나 비전형 근로자이므로 세 유형의 합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과 일치하지는 않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3.1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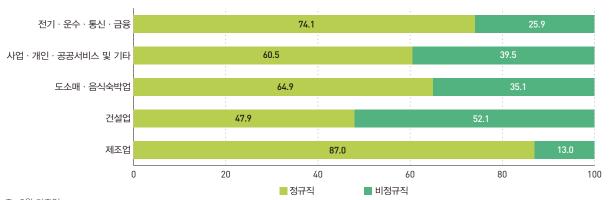


주: 매년 8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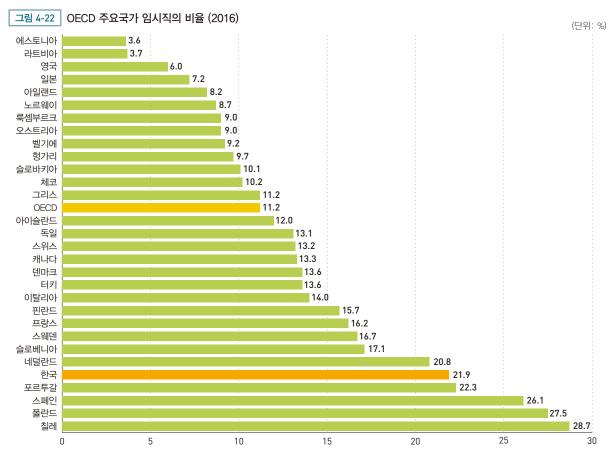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3.15. 인출)



(단위: %)



주: 8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7.8 (http://kosis.kr//에서 2018.3.15. 인출)



자료: OECD, stat(자료 다운로드 2017. 11. 9. 07:10 UTC (GMT))

09 "

사회보험 가입률

Social Insurance Coverage

지표 정의

각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다*.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은퇴, 실업,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므로 사회보험 가입률은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이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받는 지 보여준다.

측정 산식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직장가입자 수 임금근로자 수

- * 단, 고용보험의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해 사업체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거의 대부분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5~299인 사업장 근로자도 90%를 상회하는 높은 가입률을 보여준다. 그러나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률이 전년 대비 크게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약 1/4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 질병, 노후의 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망의 도움을 받지못한다.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에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데, 2017년 기준 정규직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80%를 상회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36.5%, 건강보험 45.3%, 고용보험 44.1%의 낮은 가입률을 보인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에 미치지 못하고, 비전형 근로자의 절대 다수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03	2017	1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8	2016	1년

Checkpoint

전체적인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두루누리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사회보험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고, 1 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노령에 대비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건강보험은 질병발생 시, 고용보험은 실업,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발생 시를 대비해 각각 1977년, 1995년, 1964년 시행되었다.

표 4-6 사업체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 (2016)

(단위: %)

고용형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전체	90.7	89.7	90.1	98.1
5인 미만	73.9	74.4	75.0	92.2
5~29인	93.8	90.5	90.9	99.5
30~299인	97.6	96.5	96.4	99.9
300인 미만	89.8	88.3	88.6	97.8
300인 이상	96.6	99.5	99.0	99.9

표 4-7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증감률 (2017)

(단위: %)

						(ピカ・/0)
	국민연금		건강	보험	고용보험	
구분	국민연금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건강보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고용보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계	69.1	1.4	74.2	1.6	71.2	1.5
정규직	85.0	2.0	88.4	2.2	85.9	1.7
비정규직	36.6	0.2	45.3	0.4	44.1	1.2
한시적	52.4	-0.9	64.8	-0.4	61.5	0.4
기간제	53.2	-2.4	67.3	-1.9	62.5	-1.5
비기간제	49.7	5.3	55.3	6.0	57.9	8.3
시간제	17.3	1.9	21.8	2.4	23.1	2.0
비전형	20.4	0.5	33.3	0.9	30.1	0.9

주: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는 사회보험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이 없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7.08 (http://kosis.kr//에서 2018.3.15. 인출)

산업재해율

Industrial Accident Rate

지표 정의

재해자 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승인 받은 재해자 수(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산재 미보고 적발 재해자 수 포함)를 말한다.

측정 산식

2016년 산업별 산업재해 발생 정도를 살펴보면 광업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다른 산업과 비 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광업의 경우 재해율은 13,75%로 평균 재해율 0,49%의 약 28배에 달 하고, 사망만인율은 약 326‱로 평균 사망만인율 0.96‱의 무려 340배에 달한다.

2016년 사업체규모별 재해율을 살펴보면,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재해율이 낮아지는 전반적인 경향 속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1.08%)이 전체 평균 재해율(0.49%)을 크게 상회하는 특징 이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1977	2016	분기

Checkpoint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평균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은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식 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4-8 산업별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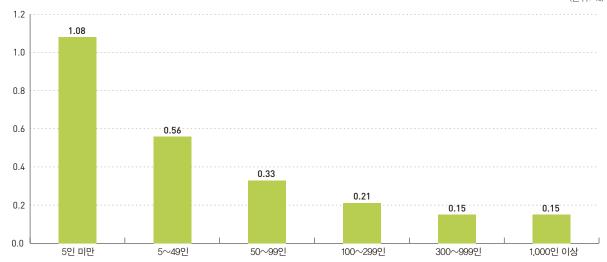
(단위: 명, %, ‱)

					(인귀. 엉, 70, 7000)
구분	근로자 수(명)	재해자 수(명)	사망자 수(명)	재해율(%)	사망만인율(‱)
전체	18,431,716	90,656	1,777	0.49	0.96
광업	11,153	1,534	364	13.75	326.37
제조업	4,236,653	26,142	408	0.62	0.96
건설업	3,152,859	26,570	554	0.84	1.76
전기 · 가스 · 수도업	72,940	103	3	0.14	0.41
운수창고 · 통신업	836,471	4,114	129	0.49	1.54
기타 산업	10,121,640	32,193	319	0.32	0.32

주: 재해율=(재해자수/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수)X100 산재사망만인율=(산재사망자수/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수)X10,000 기타산업은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 기타이 사업임. 자료: 고용노동부, 2016년 산업재해 현황, 2017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2016년 산업재해 현황, 2017

저임금근로자 비율

Low Pay Incidence

지표 정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임금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 아니라 근로빈곤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뜻한다.

측정 산식

임금이 임금 중위값의 2/3보다 적은 임금근로자의 수 ×100 전체 임금근로자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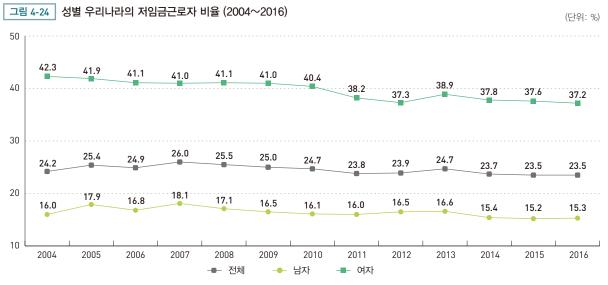
2016년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의 23.5%에 달한다. 2004년 이후 큰 변화 없 이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OECD 평균 15.9%를 크게 상회하 면서 이스라엘, 라트비아, 미국, 콜롬비아,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은 국가로 꼽힌다.

2016년 여성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37.2%로 2004년 42.3%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남성근로자의 15.3%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두 지표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으 로 높은 저임금근로자 비율 내에서 상당한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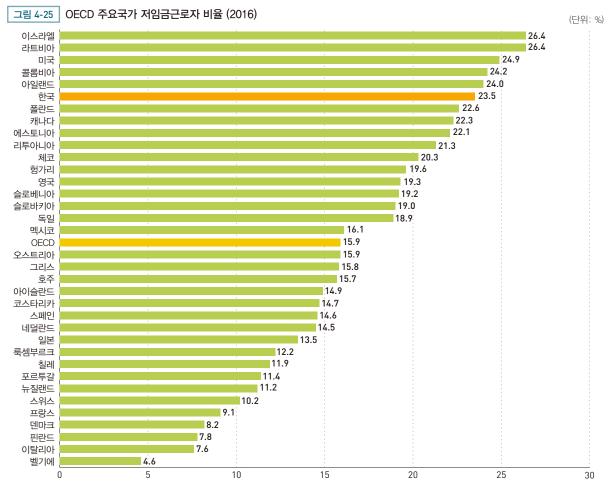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Employment Outlook	-	2016	1년

Checkpoint 높은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경제활동참가율, 고 용률 등의 노동시장의 양적인 정책목표와 더불어 일자리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인 정책목표를 병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청년정책에 있어서 일자리 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보다 절실하다.



자료: OECD, stat(자료 다운로드 2017. 11. 9. 08:01 UTC (GMT))



주: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라트비아는 2014년, 벨기에, 핀란드, 덴마크, 칠레, 일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은 2015년 자료임.

자료: OECD, stat(자료 다운로드 2017. 11. 9. UTC (GMT))

시간급 최저임금

Hourly Minimum Wage

지표 정의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 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를 보면 시행 초년도인 1988년도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1990년 전 산업으로 확대되었고 1999년에는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었으 며, 2001년 이후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실질 최저임금은 (명목)최저임금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여준다.

측정 산식

• 최저임금액: 시간급, 일급(시간급 × 8)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명목임금 기준으로 1989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실질임금 기준 으로도 비슷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해왔다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실질인상률은 2001년 이후 일부 시기(2010~2011년)를 제외하면 대 제로 실질경제성장률을 웃돌아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매력 평가지수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은 2016년 5,8달러로 주요 OECD 국가들 중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2016년 기준 평균소득 대비 최저임금액 비율은 0.4로 OECD의 비교대상 28개 국가들 중에서 13번째로 낮은 편에 속한다. 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0.5로 이 역시 비슷한 위치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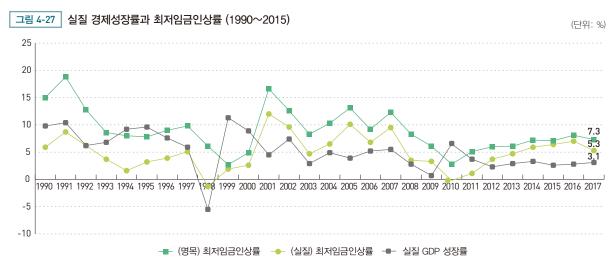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내부자료)	1989	2017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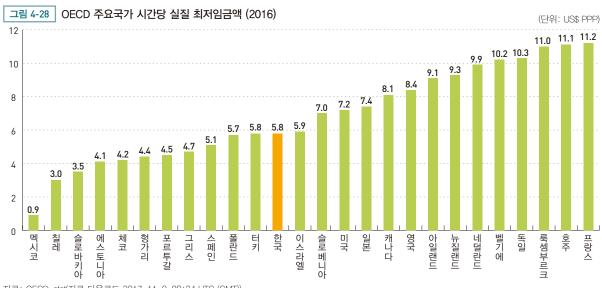
Checkpoint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1990년 690원에서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2016년에는 6,030원으로 2015년보다 450 원 인상되었다. 특히, 2017년에 결정된 2018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가 증가 했다. 실질 최저임금액도 꾸준히 인상되어 많은 임금근로자의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저임 금의 안정적인 증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최저임금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등이 병 행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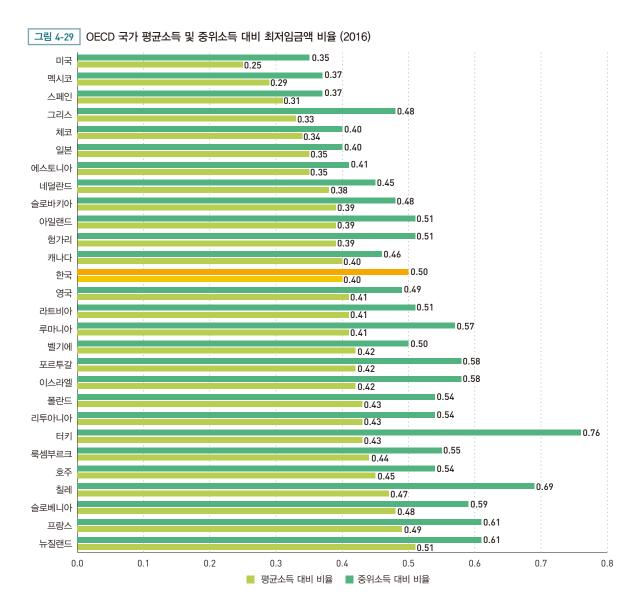
주: 2015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실질화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자료, 각 연도



주: (실질)최저임금 인상률은 2015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실질화, 실질GDP 성장률은 2010년 GDP를 기준으로 실질화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자료, 각 연도한국은행, 국민소득(자료 다운로드 2017, 11, 09,)



자료: OECD, stat(자료 다운로드 2017, 11, 9, 08:24 UTC (GMT))



자료: OECD, stat(자료 다운로드 2017. 11. 9. 08:29 UTC (GMT))

최저임금 영향률

Proportion of Employees expected directly by New Minimum Wage

12-1 ^{연 관}

지표 정의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의 비율(예측치)이다.

측정 산식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수 적용대상 임금근로자 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로 살펴본 최저임금 영향률은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2011년 이후 14% 정도에서 유지되다가, 2016년 18.2%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살펴본 비율은 이보다 낮으며,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14.4%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액만큼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될 경우에는 수혜근로자 비율이 되지만, 인상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게 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의 상승은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실질 최저임금액 증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내부자료)	-	2017	-

Chacknoint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른 최저임금 영향률은 2003년에는 6.4%에서 2010년 15.9%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일정하다가 2016년 18.2%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향후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연령대가 청년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들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최저임금 미달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

시간당 임금액

Hourly Wage

지표 정의

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를 의미한다.

근로자와 그 가족은 임금총액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곧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측정 산식

월 임금총액 월 근로시간 (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특별급여)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급여액은 2006년 11,172원에서부터 꾸준히 인상되어 2016년 16,709원에 이르렀다. 남성과 여성의 시간당 임금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2006년의 경우 여성의 임금액은 남성의 60.6%에서 2016년에는 64.6%로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사업체규모별·근로형태별로 나눠보면, 정규직의 임금은 사업체 규모를 따라서 뚜렷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의 경우는 300인 미만인 경우 사업장 규모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화된 근로형태별로 살펴보면, 2016년 현재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2,076원으로 정규직 18,212원의 66.3%를 받는다. 특히 파견/용역근로자, 한시적 근로자의 임금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임금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는데, 2016년 현재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이 32,049원, 금융 및 보험업의 임금이 30,632원인 반면, 평균 시간당임금이 가장 낮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금은 8,689원으로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종사자의 37%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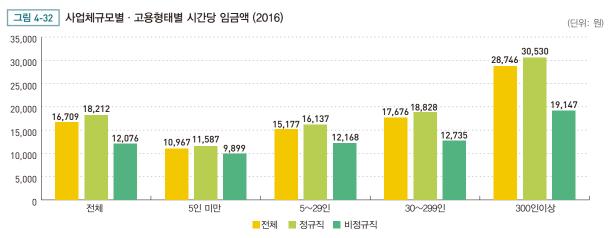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8	2016	1년

Checkn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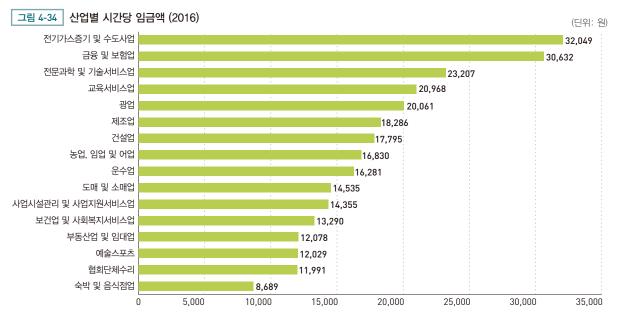
2016년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은 16,709원으로 전년 15,978원에 비해 4.6% 인상되었다. 시간당 임금액의 성별, 고용형태별, 사업체 규모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화 또는 분절화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임금총액은 정액, 초과, 특별 등의 세 가지 급여를 합한 것이며, 정액급여란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연차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하고, 초과급여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서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하며, 특별급여란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대출금 제외) 등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한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액

Payment of Earned Income Tax Credit/Child Tax Credit

지표 정의

근로장려금은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근로 또는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요건 검토 후 지급된다.

츠정 산시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¹⁾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600만 원	총 급여액 × 85 / 600		
 단독가구²⁾ 	600 ~ 900만 원	85만 원		
	900 ~ 1,300만 원	85만 원 - (총 급여액 - 900만 원) × 85 / 400		
	0 ~ 900만 원	총 급여액 × 200 / 900		
 홑벌이 가족가구³⁾ 	900 ~ 1,200만 원	200만 원		
	1,200 ~ 2,100만 원	200만 원 - (총 급여액 - 1,200만 원) × 200 / 900		
	0 ~ 1,000만 원	총 급여액 × 250 / 1,000		
• 맞벌이 가족가구 ⁴⁾	1,000 ~ 1,300만 원	250만 원		
	1,300 ~ 2,500만 원	250만 원 - (총 급여액 - 1,300만 원) × 250 / 1,200		

- 주: 1) 총 급여액=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2)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
 - 3)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4)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させい コスココ	0 ~ 2,100만 원	부양자녀 수 × 50만 원
* ᇀె의 기득기구	2,100 ~ 4,000만 원	부양자녀 수 × [50만 원 — (총 급여액 — 2,100만 원) × 20 / 1,900]
마베이 기조기그	0 ~ 2,500만 원	부양자녀 수 × 50만 원
* 뒷덜이 가득기구		부양자녀 수 × [50만 원 — (총 급여액 — 2,500만 원) × 20 / 1,500]

근로장려금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16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기준으로 2017년 157만 가구에 총 1조 1천억 원 가량이 지급되었다. 2010년 이후 지급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급금액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홑벌이 가족가구 수가 단독가구 수를 약간 상회하는 반면, 금액기준으로는 홑벌이 가족가구에 상당부분이 지급됨으로써 이들 가구에서 높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홑벌이 가족가구와 맞벌이 가족가구의 지급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단독가구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자녀장려금은 2017년 총 102만 가구에 5,428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을 동시에 수령한 가구는 44만 가구로 총 7,432천억이 지급되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세청	국세통계	1967	2016	1년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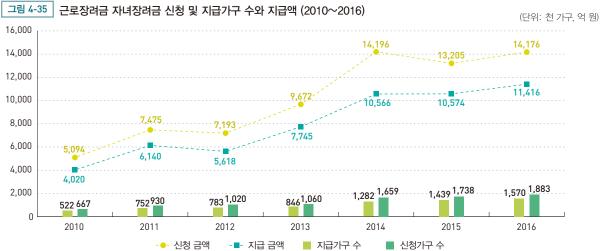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총액은 2017년 1조 6,844억 원으로 2010년 근로장려금 단일 총액 4,020 억 원보다 4배가 많아졌다. 가구유형별로는 홑벌이 가족가구에 혜택이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이 슈가 되고 있는 청년단독가구의 빈곤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자녀 단독가구 대상연령 하향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표 4-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가구 수와 지급액 (2010~2016 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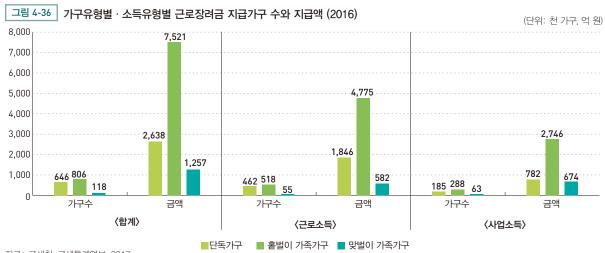
(다의·처 가그 어위)

	(단위: 전기구, 역									
구분					신청					
TE	힙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 · 자녀장려금		
연도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근로)	금액(자녀)	
2010	667	5,094	667	5,094	-	-	-	-	-	
2011	930	7,475	930	7,475	-	-	-	-	-	
2012	1,020	7,193	1,020	7,193	-	-	_	_	-	
2013	1,060	9,672	1,060	9,672	-	-	-	-	-	
2014	3,062	23,954	1,659	14,196	1,403	9,758	751	7,157	5,729	
2015	2,889	20,992	1,738	13,205	1,151	7,787	612	5,764	4,534	
2016	3,104	21,666	1,883	14,176	1,221	7,490	537	5,357	3,886	
지급										
2010	522	4,020	522	4,020	-	-	-	_	-	
2011	752	6,140	752	6,140	-	-	-	_	=	
2012	783	5,618	783	5,618	-	-	-	-	-	
2013	846	7,745	846	7,745	-	-	-	_	-	
2014	2,357	17,145	1,282	10,566	1,075	6,579	572	5,346	4,124	
2015	2,383	16,274	1,439	10,574	944	5,700	506	4,677	3,584	
2016	2,597	16,844	1,570	11,416	1,027	5,428	447	4,354	3,07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

15 # #

자활사업 대상자 수

Number of people targeted by Self-Sufficiency Program

지표 정의

자활사업 대상자 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받는 수급자 수를 집계한 값이다.

측정 산식

- 자활사업 대상자: (1)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2)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여건, 환경적응, 근로참여 등으로 조건부과가 제외된 자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 (3)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를 지원 받는 가구의 가구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서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원, 그리고, (4)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의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활급여특례자, (5)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자(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원할 경우 시, 군, 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가능), (5) 시설 수급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수
- · 자활사업 범위: 2016년을 기준으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생업자금 지원 등을 포함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전체 자활사업 대상자 수는 1,551,70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1,539,622명)의 비중이 높으며, 차상위계층(12,0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활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수는 1,022,001명이며, 반면 근로 능력자는 517,621명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활사업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연중 유사한 추세를 보였으나 4~5월 다소 증가하고, 11~1월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자활사업 대상자 수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55%)의 비율이 남성(45%)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27%)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8세 미만(24%), 50~64세(23%), 40~49세(12%), 18~29세(11%), 30~39세(4%)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지역 인구 수가 많은 서울 (256,257명)과 경기(250,843명)에 대상자 수가 많았으며 광역시에서는 부산, 대구, 인천 순으로 대상자 수가 많았다. 그 외 시도에서는 영남(경북·경남)과 호남(전북·전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6	1년

Checkpoint

자활사업 대상자가 전반적으로 연중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4\sim5$ 월 다소 증가하고, $11\sim12$ 월에 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계절적인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4-10 연도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단위: 명)

구분	2013년 12월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자활사업 대상자 수	1,277,668	1,256,139	1,569,566	1,551,707



표 4-11 월별 · 수급지위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2016)

(단위: 명)

		기초생활수급자													
	나한나어	자활사업 소계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근로능력이 있는 자							
구분	대상자	(시설			자활사업		조건부과	조건제시	조	건부수급	자	자활		차상위 계층	
		수급자 제외)	소계	사업 미참여자	희망 참여자	소계	제외자	유예자	소계	취업 대상자	비취업 대상자	특례	기타		
1월	1,574,519	1,560,043	1,034,797	1,031,254	3,543	525,246	127,771	7,984	43,200	509	42,691	11,689	334,602	14,476	
2월	1,574,819	1,560,531	1,036,843	1,035,240	1,603	523,688	130,348	8,089	19,802	273	19,529	14,263	351,186	14,288	
3월	1,573,372	1,559,372	1,007,986	1,006,200	1,786	551,386	135,732	7,615	24,716	238	24,478	13,304	370,019	14,000	
4월	1,588,765	1,575,032	1,011,665	1,009,973	1,692	563,367	137,194	8,131	23,738	2,421	21,317	13,091	381,213	13,733	
5월	1,589,761	1,576,438	1,012,450	1,010,720	1,730	563,988	135,892	8,484	24,502	2,368	22,134	12,405	382,705	13,323	
6월	1,584,432	1,571,338	1,013,008	1,011,179	1,829	558,330	133,346	8,994	24,299	2,401	21,898	12,204	379,487	13,094	
7월	1,583,478	1,570,495	1,016,757	1,014,898	1,859	553,738	132,550	8,977	24,452	2,420	22,032	11,864	375,895	12,983	
8월	1,584,582	1,571,749	1,021,949	1,020,106	1,843	549,800	132,130	8,965	23,906	2,296	21,610	11,348	373,451	12,833	
9월	1,584,674	1,571,990	1,024,519	1,022,813	1,706	547,471	131,564	8,755	21,979	1,868	20,111	11,056	374,117	12,684	
10월	1,584,639	1,572,003	1,027,656	1,025,846	1,810	544,347	130,319	9,072	22,600	2,172	20,428	11,096	371,260	12,636	
11월	1,577,260	1,564,807	1,028,217	1,026,415	1,802	536,590	128,643	9,059	21,936	2,158	19,778	10,745	366,207	12,453	
12월	1,551,707	1,539,622	1,022,001	1,020,194	1,807	517,621	124,904	8,514	22,476	2,038	20,438	9,779	351,948	12,085	

그림 4-38 성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2014.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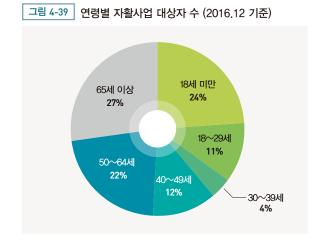


표 4-12 성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2016.12 기준)

(단위: 명)

	남자	여자	계
대상자 수	703,497	848,210	1,551,707

표 4-13 연령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2016.12 기준)

(단위: 명)

	18세 미만	18~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 이상	계
대상자 수	365,074	168,518	61,830	182,488	352,093	421,704	1,551,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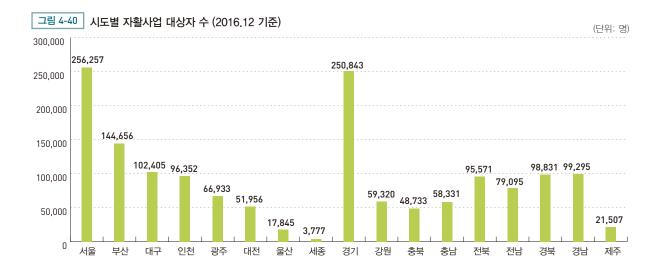


표 4-14 시도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2016.12 기준)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56,257	144,656	102,405	96,352	66,933	51,956	17,845	3,777	250,84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행 복 e 음

15-1

자활사업 참여자 수

Number of people participations in Self-Sufficiency Program

지표 정의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자활사업* 대상자 중 실제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수를 집계한 값이다.

* 자활근로, Gate Way 과정, 취업성공패키지 등

측정 산식

• 자활사업 참여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근로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 보유자 등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2016년 12월 48,208명으로 집계되었고, 이중 자활근로가 25,387명으로 타 사업보다 월등히 높았다. 자활근로의 뒤를 이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11,396명), Gate Way 사업(2,133)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를 보면 기타 및 해당없음의 값을 제외하고 보면 청소(3,456명)와 환경정비(3,356명)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영농, 음식, 간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유형별로 살펴보면 조건부 수급자(30,670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뒤를 이어 일반수급자(11,032명), 특례수급자(5,457명)가 높게 나타났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64세 23,242명으로 전체 연령 중 약 48.2%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40~49세가 약 25.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자활사업 참여비율은 26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참여자 수가 많았으며 광역시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순으로 참여자 수가 많았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참여자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6	1년

Checkpoint

2015년 12월 대비 2016년 12월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50,131명에서 48,208명으로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자활근로 참여자가 감소한 반면, Gateway,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참여자는 전년과 대비하여 다소 증가하였다.

표 4-15 연도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단위: 명)

구분	2013년 12월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자활사업 참여자 수	46,973	46,250	50,131	48,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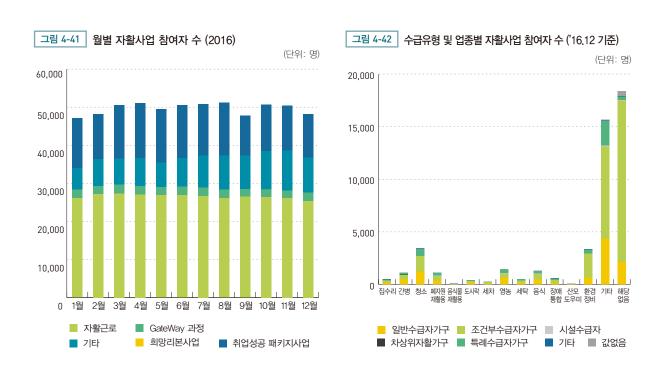


표 4-16 월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2016)

구분	자활근로	Gateway 과정	희망리본사업	기타	취업성공패키지사업	계
1월	26,084	2,269	0	5,625	13,135	47,113
2월	27,192	2,099	0	7,103	11,756	48,150
3월	27,335	2,336	0	6,797	14,103	50,571
4월	27,066	2,138	0	7,439	14,455	51,098
5월	26,857	2,137	0	6,495	13,977	49,466
6월	26,912	2,234	0	7,491	13,962	50,599
7월	26,659	2,189	0	8,439	13,519	50,806
8월	26,109	2,240	0	8,991	13,841	51,181
9월	26,513	1,985	0	8,727	10,626	47,851
10월	26,392	2,023	0	10,084	12,183	50,682
11월	26,148	1,965	0	10,483	11,797	50,393
12월	25,387	2,133	0	9,292	11,396	48,208

표 4-17 수급유형별 업종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2016.12 기준)

(단위: 명)

수급자 구분	집수리	간병	청소		음식물 재활용	도시락	세차	영농	세탁	음식	장애통 합	산모도 우미	환경정 비	기타	해당 없음	전체
일반 수급자가구	150	457	1,231	357	24	164	86	626	186	448	135	16	664	4,358	2,130	11,032
조건부 수급자가구	200	439	1,446	448	12	173	121	424	186	566	278	37	2,247	8,747	15,346	30,670
시설수급자	2	3	2	1	0	0	1	1	0	6	6	0	1	74	19	116
차상위 자활가구	0	1	1	0	0	0	0	3	1	1	0	0	0	3	1	11
특례수급자 가구	134	206	709	290	12	78	65	333	103	247	147	11	424	2,330	368	5,457
기타	9	18	45	12	1	7	3	30	19	11	3	0	2	65	14	239
값없음	6	10	31	7	0	1	0	11	2	3	0	0	18	75	519	683
합계	501	1,134	3,465	1,115	49	423	276	1,428	497	1,282	569	64	3,356	15,652	18,397	48,208

그림 4-43 연령별 자활사업 참여자 비율 (2016.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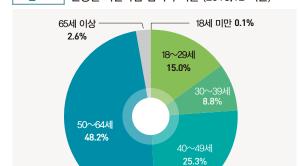


표 4-18 연령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2016.12 기준)

(단위: 명)

18세	18~	30~	40~	50~	65세	합계
미만	29세	39세	49세	64세	이상	
43	7,226	4,222	12,198	23,252	1,267	48,208

그림 4-44 시도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2016.12 기준)

(단위: 명)



표 4-19 시도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2016.12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1,061	5,777	3,097	2,922	3,348	1,378	502	15	5,41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0 =	<u> </u>	00			07	00	7111	H*11

16 H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Number of people participations in Self-Sufficiency work program

지표 정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는 자활사업 대상자 중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집계한 값이다.

측정 산식

- 자활근로사업 범위: 2016년을 기준으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 자활사업 참여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근로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 보유자 등이 해당되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합계는 중복을 제외한 인원 수로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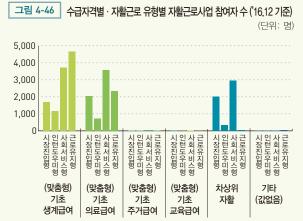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전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는 총 28,955명이며, 연중에는 11월이 29,522명으로 가장 많고 1월이 28,770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64세의 비율이 전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40~49세의 비중이 27%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월별 자활근로 참여자수와 신규 참여자 수를 보면, 1월 13.8%를 제외하고는 6% 미만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 참여자 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5,116명으로 가장 많은 참여자 수를 보이고 있으며, 뒤를 이어 부산 3,250명과 경기 2,99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0 연도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단위: 명)

구분	2013년 12월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33,370	30,713	28,955	25,387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자활근로시업참여자수 및 자활급여자급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12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8,955명에서 25,387명으로 감소(약 -12.3%)하여 지난해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신규 참여자 수는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약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월별 · 수급자격별 및 자활근로 유형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2016)

11.4-2	==	3/172	ᄎᄭᆯᆫ	- ποε	ᆝᄭᆯᆫᅩ	-718 64	771 - (2	010)					(단위: 명)
수급 자격	자활근로유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장진입형	2,613	2,455	2,438	2,365	2,152	2,079	2,014	1,901	1,899	1,920	1,835	1,677
(맞춤형) 기초생계	인턴도우미형	1,564	1,517	1,582	1,558	1,479	1,422	1,361	1,328	1,352	1,301	1,232	1,151
기조성계 급여	사회서비스형	4,695	4,615	4,623	4,514	4,273	4,231	4,218	4,044	4,134	4,064	4,049	3,712
	근로유지형	5,663	5,787	5,803	5,683	5,509	5,417	5,313	5,140	5,141	5,050	4,871	4,672
	시장진입형	1,220	1,565	1,584	1,607	1,745	1,828	1,874	1,929	2,001	2,033	2,023	2,041
(맞춤형) 기초의료	인턴도우미형	440	546	533	565	638	691	663	663	660	663	687	714
급여	사회서비스형	1,971	2,544	2,618	2,708	2,987	3,119	3,155	3,207	3,313	3,349	3,472	3,580
	근로유지형	2,339	2,277	2,296	2,298	2,373	2,403	2,404	2,360	2,373	2,377	2,374	2,352
	시장진입형	46	36	36	33	30	30	28	28	28	27	24	24
(맞춤형) 기초주거	인턴도우미형	12	10	8	7	10	10	7	11	12	9	8	8
급여	사회서비스형	67	52	54	51	46	49	48	43	43	44	44	41
	근로유지형	9	7	6	7	11	8	8	11	12	12	9	10
	시장진입형	1	1	1	1	1	1	1	2	2	2	2	2
(맞춤형) 기초교육	인턴도우미형	0	0	0	0	0	0	0	0	0	0	0	0
급여	사회서비스형	0	0	0	0	1	1	1	1	1	1	2	2
	근로유지형	0	0	0	0	0	0	0	0	0	0	0	0
	시장진입형	2,252	2,355	2,307	2,276	2,192	2,191	2,162	2,092	2,125	2,126	2,091	2,000
차상위	인턴도우미형	486	475	462	427	418	402	368	355	353	345	349	330
자활	사회서비스형	2,650	2,863	2,920	2,899	2,871	2,934	2,960	2,927	3,011	3,020	3,024	2,961
	근로유지형	27	32	31	27	29	31	30	28	24	24	21	32
	시장진입형	3	11	4	7	13	7	4	3	2	1	2	5
기타	인턴도우미형	9	13	6	4	19	11	12	4	9	5	9	13
/ I□i	사회서비스형	8	14	10	9	19	23	8	11	3	0	5	22
	근로유지형	11	17	13	20	41	24	20	21	15	19	15	38
	전체	26,086	27,192	27,335	27,066	26,857	26,912	26,659	26,109	26,513	26,392	26,148	25,387

주: 기타는 수급자격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표 4-22 월별 자활근로 참여자 수 및 신규 참여자 비율 (2016)

(단위: 명,%)

참여자 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참여자 수	26,086	27,192	27,335	27,066	26,857	26,912	26,659	26,109	26,513	26,392	26,148	25,387
신규 참여자 수	5,681	3,648	2,233	1,961	2,327	2,144	2,211	1,710	2,100	1,886	1,885	1,641
신규 참여자 비율	21.8	13.4	8.2	7.2	8.7	8.0	8.3	6.5	7.9	7.1	7.2	6.5

그림 4-48 연령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비율 ('16.12 기준)

4%

61%

18세 미만 1% 65세 이상 `18~29세 40~49세 50~64세

표 4-23 연령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16.12 기준)

(단위: 명)

18세	18~	30~	40~	50~	65세
미만	29세	39세	49세	64세	이상
1	1,026	1,588	6,141	15,528	1,103

그림 4-49 시도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16.12 기준) (단위: 명) 5,000 | 4,783 4,000 2,882 3,000 2,630 2,000 1,830 - 1,793 - - -1,492 1,721 1,661 1,384 1,332 1,034 1,000 287 298 0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전북 경북 제주 서울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표 4-24 시도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16.12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4,783	2,882	1,492	1,721	1,661	874	287	0	2,63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034	595	791	1,830	1,793	1,384	1,332	298	25,387

행 복 e 음

16-1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Expenditure on Self-Sufficiency work program benefits

지표 정의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자활근로 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로 편성·구분된다. 본 지표에서는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 지급현황을 제시한다.

측정 산식

- 자활기관별로 자활급여 지급액(자활인건비) 계산
 - 시군구 직접 사업시행 = 전체 지급금액 {(국민연금 + 건강보험액 + 고용보험액 + 산재보험액)}
 - 타기관 = 자활소득금액
-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는 자활 참여정보(고용지원센터(취업성공패키지사업) 제외)를 기준으로 정의하였으며, 해당 월을 기준으로 성별, 자활지원유형별 중복을 제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급여지급) 성별은 여성이 월평균 약 17,303명으로 남성 약 9,121명보다약 1,9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도별 현황에서도 모든 지역에서 여성의 비중이 남성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12월 기준으로 전체 25,301명 중에서 서울이 4,76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부산(2,876명)과 경기도(2,621명) 순으로 자활 참여도가 높았다. 월별 급여지급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2월이 약 229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뒤를 이어 7월에는 226억 원이 지출되었다. 2016년 총 급여지급액은 2,521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유형별급여지급액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형이 1,01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급액이 지출되었으며 뒤를이어 시장진입형 그리고 근로유지형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6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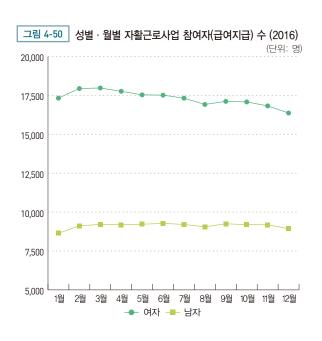
Checknoin

2016년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은 총 2,513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7.1%(2,706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표 4-25 연도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급여지급) 수 및 급여지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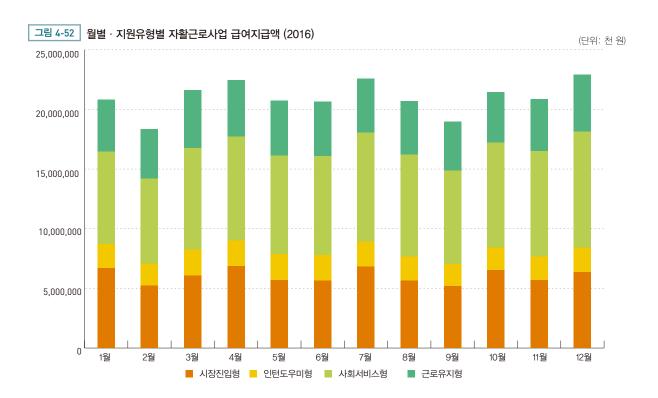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3년 12월	2014년 12월	2015년 12월
참여자 수	30,713	28,849	25,301
급여지급액	24,547,116	23,800,292	22,935,268





丑.	4-26 성별 · 시도별 · 월별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 참여자 수 (2016) (단위: 명)										여자	수 (2	016)											
78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구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1,866	2,658	2,043	2,776	2,084	2,787	2,129	2,777	2,137	2,772	2,138	2,780	2,128	2,763	2,095	2,696	2,150	2,706	2,128	2,704	2,126	2,673	2,099	2,668
부산	982	1,939	1,028	2,003	1,036	1,989	1,043	2,002	1,061	1,987	1,049	1,996	1,022	1,936	1,029	1,873	1,051	1,913	1,058	1,944	1,065	1,889	1,046	1,830
대구	528	1,102	523	1,084	520	1,068	514	1,057	514	1,043	509	1,027	500	1,008	469	912	498	996	505	998	506	995	499	984
인천	548	1,246	567	1,264	559	1,250	558	1,225	567	1,225	577	1,216	582	1,210	579	1,199	575	1,174	575	1,180	589	1,155	568	1,150
광주	458	1,351	468	1,372	469	1,371	476	1,365	451	1,318	462	1,310	452	1,285	444	1,258	442	1,291	429	1,263	419	1,247	414	1,245
대전	208	624	228	621	236	611	233	617	244	629	245	629	236	618	234	633	236	618	247	611	258	611	251	618
울산	93	196	88	199	88	193	87	188	93	193	94	193	97	192	97	194	106	200	106	199	101	192	93	194
세종	33	37	34	35	36	36	35	35	34	37	33	34	36	35	35	35	33	34	36	35	34	33	0	0
경기	948	1,822	970	1,852	967	1,832	934	1,783	963	1,779	976	1,779	976	1,792	935	1,689	987	1,741	957	1,730	977	1,725	946	1,675
강원	397	715	428	755	432	743	428	731	431	740	424	749	431	739	428	739	425	725	420	696	430	705	403	627
충북	196	339	214	391	216	413	215	409	213	410	217	408	213	407	208	406	207	399	205	404	204	402	204	391
충남	226	478	258	519	283	568	252	522	260	529	256	514	265	538	268	535	273	545	273	543	272	531	273	516
전북	546	1,267	582	1,392	586	1,406	596	1,390	592	1,359	592	1,345	569	1,308	569	1,284	577	1,310	581	1,323	544	1,268	558	1,264
전남	558	1,323	605	1,385	606	1,395	598	1,377	587	1,318	605	1,325	607	1,311	576	1,292	580	1,294	581	1,300	570	1,285	550	1,234
경북	468	997	482	1,042	482	1,060	476	1,051	473	1,006	485	1,018	486	1,006	488	994	485	980	467	958	477	960	456	925
경남	478	971	490	988	494	993	504	989	492	956	505	965	502	962	496	964	523	972	528	981	513	947	479	844
제주	107	257	110	259	112	256	106	240	107	230	104	223	104	207	101	211	100	213	96	207	99	204	97	200
합계	8,640	17,322	9,118	17,937	9,206	17,971	9,184	17,758	9,219	17,531	9,271	17,511	9,206	17,317	9,051	16,914	9,248	17,111	9,192	17,076	9,184	16,822	8,936	16,365



丑 4-27 월별 · 지원유형별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2016) (단위: 천 원) 9월 구분 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0월 12월 2월 11월 시장 6,675,927 5,207,710 6,052,483 6,837,994 5,696,704 5,637,802 6,829,877 5,637,947 5,178,820 6,523,035 5,681,964 6,340,121 72,300,384 진입형 인턴 도우미형 사회 7,776,239 7,121,883 8,483,540 8,709,200 8,258,038 8,301,686 9,139,226 8,520,676 7,819,966 8,777,600 8,835,831 9,757,131 101,501,016 서비스형 근로 4,124,357 4,878,820 4,702,661 4,609,822 4,560,177 4,564,729 4,484,397 4,138,202 4,255,465 4,342,909 4,770,500 53,785,090 4,353,051 유지형 계 $20,827,572 \quad 18,326,232 \quad 21,629,646 \quad 22,428,894 \quad 20,721,237 \quad 20,648,438 \quad 22,604,032 \quad 20,681,727 \quad 18,997,515 \quad 21,461,417 \quad 20,867,934 \quad 22,936,484 \quad 252,131,128 \quad 20,821,128 \quad 20$

17 H #

차상위 자활 수급자 수

Number of near-poor people participation in self-sufficiency program

지표 정의

차상위 자활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미취업자에게 자활공동체 사업 참여 기회와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따라서 지원대상자는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다.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원할 경우 시, 군, 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가능하다.

측정 산식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수급 인정을 받은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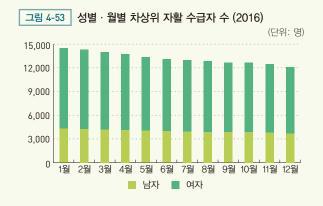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기 준중 위소득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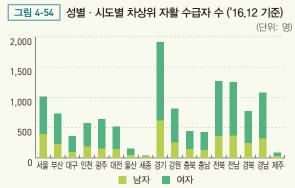
차상위자활 수급자 수는 2015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2016년 12월에는 총 12,08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3,697명(31%), 여성이 8,388명(69%)으로 나타났다. 월별 수급자 수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성별 분포는 연중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시도별 차상위자활 수급자 수는 경기가 1,917명으로 월등히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전북 1,272명, 전남 1,25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8 연도별 차상위 자활 수급자 수

(단위: 명)

구분	2013년 12월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차상위 자활 수급자 수	19,240	18,912	15,611	12,085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 자활 수급자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6	1년

Checkpoin

자활사업 참여자 수와 마찬가지로 차상위자활 수급자 수 역시 전년대비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2016년 12월 전년 동월대비 23.6% 감소를 기록하였다(2015년 12월: 15,611명 → 2016년 12월: 12,085명).

丑 4-29	월별 · 시도별 · 성별 차상위 자활 수급자 수 (2016)
--------	-----------------------------------

丑 4-	27	물달 : 시	도달 , 영달	시영비	시킬 구답시	- (2016	,						(단위: 명)
구분	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남	480	489	493	469	476	460	456	418	402	404	393	390
서울	여	858	848	820	776	768	752	749	671	650	640	640	620
* 12	- i 계	1,338	1,337	1,313	1,245	1,244	1,212	1,205	1,089	1,052	1,044	1,033	1,010
	남	298	276	275	269	266	264	253	254	255	249	229	223
ни			}					<u> </u>			<u> </u>		<u> </u>
부산	여	644	590	570	573	559	560	549	552	556	555	537	509
	계	942	866	845	842	825	824	802	806	811	804	766	732
	남	119	119	113	110	107	96	96	98	95	97	95	94
대구	여	372	364	348	332	321	297	286	280	274	274	271	265
	계	491	483	461	442	428	393	382	378	369	371	366	359
	남	225	229	222	220	213	210	211	201	203	204	191	184
인천	여	471	463	451	447	436	428	427	423	419	416	399	392
	계	696	692	673	667	649	638	638	624	622	620	590	576
	남	171	167	171	171	160	157	158	155	155	151	150	149
광주	_ 여	581	568	574	557	538	521	527	527	520	506	494	493
01	계	752	735	745	728	698	678	685	682	675	657	644	642
	남	149	156	156	158	155	149	147	149	145	148	150	144
CII 74			įį						į				·····
대전	여	401	402	399	403	392	383	373	380	384	382	382	376
	계	550	558	555	561	547	532	520	529	529	530	532	520
	남	53	53	52	47	37	37	35	37	37	42	43	42
울산	여	164	156	153	144	120	120	119	117	114	115	112	111
	계	217	209	205	191	157	157	154	154	151	157	155	153
	남	15	15	17	19	20	18	17	11	14	16	18	19
세종	여	21	20	21	20	18	18	17	14	14	15	15	19
	계	36	35	38	39	38	36	34	25	28	31	33	38
	남	780	761	732	730	687	673	677	653	647	641	644	614
경기	여	1,613	1,590	1,512	1,501	1,436	1,413	1,399	1,370	1,361	1,343	1,342	1,303
	계	2,393	2,351	2,244	2,231	2,123	2,086	2,076	2,023	2,008	1,984	1,986	1,917
	남	269	277	268	263	261	261	265	267	261	263	258	249
강원	여	679	678	678	666	647	635	631	616	609	586	576	562
	계	948	955	946	929	908	896	896	883	870	849	834	811
	남	148	147	145	144	150	152	149	153	150	150	147	147
충북	여	342	339	325	309	303	304	311	313	310	312	307	293
07	계	490	486	470	453	453	456	460	466	460	462	454	440
	남	159	148	149	142	143	140	}		140	140	145	132
중L F	여		}					138	137		<u> </u>		÷
충남		361	359	360	352	344	339	331	323	319	312	310	290
	계	520	507	509	494	487	479	469	460	459	452	455	422
	남	402	408	410	403	382	377	371	371	371	375	369	357
전북	여	1,064	1,067	1,056	1,024	960	954	963	970	958	958	938	915
	계	1,466	1,475	1,466	1,427	1,342	1,331	1,334	1,341	1,329	1,333	1,307	1,272
	남	401	389	386	380	382	370	358	365	369	376	368	365
전남	여	1,013	994	997	980	962	944	925	935	946	933	915	887
	계	1,414	1,383	1,383	1,360	1,344	1,314	1,283	1,300	1,315	1,309	1,283	1,252
	남	263	257	246	246	244	251	256	256	255	258	258	247
경북	여	628	618	579	568	561	549	542	544	538	543	545	528
	계	891	875	825	814	805	800	798	800	793	801	803	775
	남	336	344	344	343	341	336	328	332	321	329	323	315
경남	여	880	882	865	857	829	821	818	836	791	802	801	762
	· 계	1,216	1,226	1,209	1,200	1,170	1,157	1,146	1,168	1,112	1,131	1,124	1,077
	남	27	26	25	25	25	26	25	27	25	26	26	26
제주	여	89	89	88	85	80	79	76	78	76	75	62	63
MIT	계	116	115	113	110	105	105	101	105	101	101	88	89
	게 남												1
하네		4,295	4,261	4,204	4,139	4,049	3,977	3,940	3,884	3,845	3,869	3,807	3,697
합계	여	10,181	10,027	9,796	9,594	9,274	9,117	9,043	8,949	8,839	8,767	8,646	8,388
	계	14,476	14,288	14,000	13,733	13,323	13,094	12,983	12,833	12,684	12,636	12,453	12,085

소득보장과 빈곤

- 0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및 수급률
- 02 차상위 확인서발급 (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 N3 산대전 비고유
- 04 상대적 노인빈곤율
- 05 소득5분위배율
- 06 지니계수
- 07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 08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 09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 10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 0 1 7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최저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및 수급률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주거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의료급여 수급자 수
		교육급여 수급자 수
	차상위 확인서발급 (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노인빈곤율	
불평등	소득5분위배율	
	지니계수	
노후소득보장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65세 이상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및 수급률

Total Recipients and Take-up Rate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

지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한 대상에게 각 가구의 처한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수급률은 제도의 적용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빈곤율과의 비교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 추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참고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 총 인구 수

유의사항

수급자 수는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를 합친 숫자이며, 수급률 역시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가 합친 전체 수급자수를 인구로 나누어 구하였다. 여기서 일반수급자는 시설(에이즈쉼터, 노숙인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말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됨과 동시에 공공부조제도가 본격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통합급여 방식에서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가구특성과 여건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규모는 제도 도입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맞춤형 급여의 도입으로 수급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수급자는 1,631천 명으로 수급률은 약 3.2%이다. 제도 개편 이전인 2014년과 비교해 보면 수급자 수는 약 302천 명 증가하였으며, 수급률도 0.6%p 증가하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일반수급자의 연별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약 34%로 나타났으며, 20세 미만 28.5%, 50대 15.8%, 40대 11.7%, 20대 6.1%, 30대 4.0%의 순으로 나타나, 60대 이상과 20세 미만의 연령층이 일반수급자의 상당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977	2016	1년

Checkpoint

2016년의 경우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 2015년에 비해 수급자 수가 약 1.5만 명 정도 감소하였으나, 맞춤형 급여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4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약 30.2만 명이 증가 하였으며, 수급률도 약 0.6%p 증가하였다. 일반수급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고령자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20세 미만의 연령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교육급여의 영향이 20대 미만 수급자의 높은 비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e-나라지표(부문별지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현황)
- 보건복지부.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맞춤형 급여 운영방안/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표 5-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급가구) 현황 (2001~2016)

(단위: 천명, %, 천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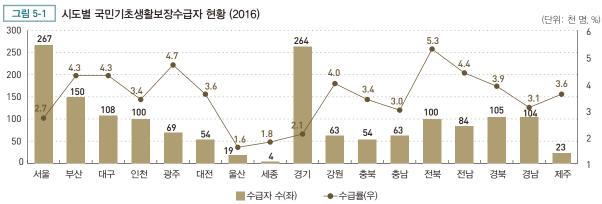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급자 수	1,420	1,351	1,374	1,424	1,513	1,535	1,550	1,530	1,569	1,550	1,469	1,394	1,351	1,329	1,646	1,631
수급률	3.0	2.8	2.8	2.9	3.1	3.1	3.1	3.1	3.2	3.1	2.9	2.7	2.6	2.6	3.2	3.2
일반수급가구 수	698	691	718	754	810	832	852	854	883	879	851	822	811	814	1,014	1,035

자료: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7

표 5-2 성별 ·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황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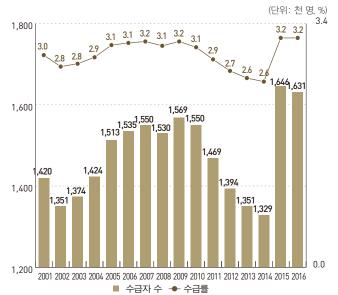
(단위: 천명,%)

구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계	439	94	61	180	243	201	322	1,540
남자(%)	50.8	46.9	41.0	44.0	56.5	48.6	29.1	45.5
여자(%)	49.2	53.1	59.0	56.0	43.5	51.4	70.9	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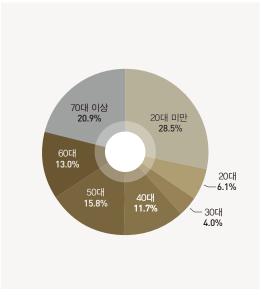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7

그림 5-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1~2016)



자료: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17

그림 5-3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분포 (2016)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17

01-1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Overview of Customized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Individuals and Households

지표 정의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동안 통합급여로 지원하였던 것을 지원대 상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로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대상 자를 선정한다

* 맞춤형 급여는 법률용어가 아니며, 이전의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급여종류 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하는 현 제도 운영 방식을 말한다.

측정 산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급여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비교하여 선정된 급여 종류별 수급자 및 수급가구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imes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 분	급여별 선정기준(2016년 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9%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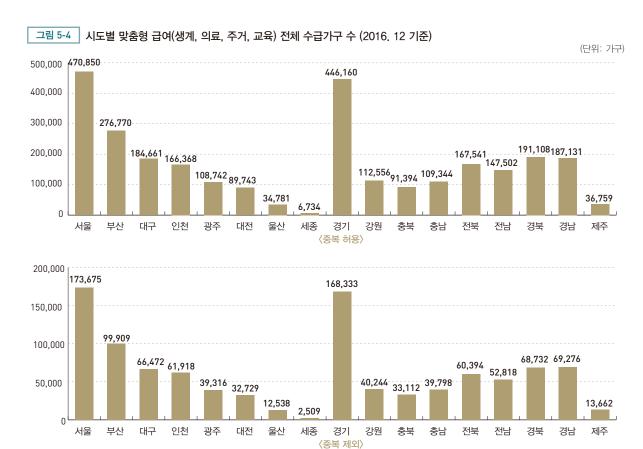
시도별 전체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수급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 기준 서울과 경기가 각각 16.8%(173,675 가구)-중복제거, 16.3%(168,333 가구)-중복제거 또는 16.6%(470,850 가구)-중복허용, 15.8%(446,160 가구)-중복제거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 급여별로도 서울과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개별 급여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구단위로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각각 2016년 기준 808,575 가구, 880,3567 가구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2016년 기준 각각 1,319,780명, 370,062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6	2016	1년

Checkpoint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서울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수급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급 여의 경우 경기도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맞춤형급여 자격 있는 가구 기준 (가구중복제외, 시설수급자 제외)

표 5-3 시도별 맞춤형 급여별 수급가구 및 수급자 수 (2016. 12 기준)

(단위: 가구, 명)

78	수급기		수급	자수
구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서울	135,225	146,976	218,480	58,240
부산	80,345	87,570	127,671	29,182
대구	52,659	57,354	90,082	23,843
인천	46,184	51,442	80,729	24,913
광주	29,659	33,535	57,986	17,195
대전	25,114	27,695	44,537	13,325
울산	10,064	11,129	15,596	3,438
세종	1,911	2,056	3,168	948
경기	125,069	138,266	199,829	67,335
강원	32,917	35,264	52,156	12,539
충북	26,445	28,568	41,538	11,553
충남	31,749	33,779	50,074	14,184
전북	47,916	51,770	82,129	23,656
전남	42,849	46,157	68,669	18,080
경북	56,138	59,927	86,742	20,818
경남	54,267	57,671	82,286	24,597
제주	10,064	11,197	18,108	6,216
합계	808,575	880,356	1,319,780	370,062

주: 각각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교육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가구 및 수급자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01=2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Number of Livelihood Benefit Recipients: Households

지표 정의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 받는 가구로써 대 상자 선정 기준인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급받는다.

측정 산식

- ㆍ생계급여 수급 신청가구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써 생계급여 수급가구로 인 정받은 가구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단위: 원)

생계급여 선정기준(2016년 기준)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9% 이하	471,201	802,315	1,037,916	1,273,916	1,509,116	1,741,717	1,980,317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814,338 가구가 수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월대비 추세를 살펴보면, 3월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 고 7월부터 반등하여서 증가세로 돌아섰다가 11월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서 12월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5월과 12월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수급가구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각각 전월대비 -0.5%와 -0.7%를 기록하였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6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12월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2015년 12월 대비 5,190가구 (0.6%) 증가하였으며 지역별 수급가구는 서울과 경기 순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연도별 차상위 자활 수급자 수

(단위: 가구)

구분	2015년 12월	2016년 12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수	803,385	808,575		

표 5-5 월별 · 시도별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2016)

(단위: 가구)

		(Eq.										(단위: 기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33,056	133,908	134,480	134,646	134,467	134,654	134,745	135,115	135,492	135,629	135,566	135,225
부산	80,903	80,746	80,883	80,743	80,447	80,301	80,370	80,485	80,588	80,841	80,797	80,345
대구	53,040	53,277	53,548	53,451	53,084	52,947	52,947	53,015	53,074	53,076	52,931	52,659
인천	45,273	45,532	45,830	45,903	45,786	45,829	45,864	46,019	46,123	46,201	46,205	46,184
광주	30,390	30,412	30,391	30,251	30,135	30,109	30,072	30,114	30,121	30,035	29,761	29,659
대전	24,932	25,011	25,153	25,226	25,093	25,086	25,144	25,153	25,239	25,327	25,339	25,114
울산	10,185	10,177	10,170	10,164	10,154	10,125	10,119	10,172	10,156	10,040	10,084	10,064
세종	1,895	1,915	1,925	1,926	1,899	1,917	1,925	1,922	1,921	1,911	1,901	1,911
경기	123,079	123,614	124,127	124,208	123,916	124,094	124,521	124,947	125,390	125,678	125,833	125,069
강원	33,751	33,737	33,677	33,569	33,374	33,328	33,311	33,403	33,439	33,357	33,232	32,917
충북	27,010	27,107	27,135	27,097	26,962	26,948	26,970	26,968	26,955	26,969	26,700	26,445
충남	32,377	32,465	32,513	32,546	32,189	32,110	32,087	32,122	32,154	32,222	32,270	31,749
전북	48,929	49,103	49,142	49,084	48,661	48,516	48,538	48,641	48,635	48,654	48,455	47,916
전남	45,170	45,123	45,070	44,821	44,295	44,101	44,038	44,021	43,957	44,022	43,643	42,849
경북	58,001	58,037	58,165	58,020	57,291	57,101	57,080	57,160	57,125	57,178	57,017	56,138
경남	55,272	55,323	55,358	55,148	54,773	54,765	54,790	54,859	54,900	54,922	54,675	54,267
제주	10,533	10,458	10,448	10,372	10,297	10,233	10,224	10,243	10,261	10,291	10,166	10,064
합계	813,796	815,945	818,015	817,175	812,823	812,164	812,745	814,359	815,530	816,353	814,575	808,575

주: 맞춤형급여 기초생계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가구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01-3 연관

주거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Number of Housing Benefit Recipients: Individuals and Households

지표 정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임차료, 수선유지금 등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 받는 가구로써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지원받고.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금을 차등 지원받는다.

측정 산식

- 주거급여 수급 신청가구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써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인 정받은 가구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단위: 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2016년 기준)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883,939 가구가 수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대비 추세를 살펴보면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3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부터 소폭감소하였고, 6월부터 다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12월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6년 12월 기준 자가 거주 수급가구는 76,928 가구인 반면 임차 수급가구는 728,144 가구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 포함된 수급가구는 551,018 가구이며 이 중에 임차급여 수급가구는 484,531 가구,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는 66,487 가구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6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12월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2015년 12월 대비 759가구 (0.6%) 증가하였다. 2016년 12월 기준 임 차료를 지원받는 가구가 전체 수급가구의 약 77%를 차지하였고 자가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8%를 차지 하였다.

표 5-6 연도별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

(단위: 가구)

구분	2015년 12월	2016년 12월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	879,597	880,356		

표 5-7 월별 · 시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2016)

(단위: 가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43,408	144,101	144,914	145,308	145,380	145,965	146,151	146,580	147,084	147,331	147,367	146,976
부산	87,063	87,049	87,267	87,277	87,174	87,197	87,318	87,449	87,519	87,760	87,928	87,570
대구	57,631	57,742	57,942	57,934	57,652	57,593	57,555	57,680	57,755	57,795	57,689	57,354
인천	49,957	50,119	50,517	50,649	50,680	50,879	50,971	51,234	51,399	51,557	51,538	51,442
광주	34,009	34,005	34,037	33,929	33,843	33,910	33,869	33,901	33,944	33,918	33,679	33,535
대전	27,321	27,411	27,545	27,629	27,550	27,564	27,645	27,715	27,788	27,887	27,899	27,695
울산	11,210	11,171	11,160	11,169	11,183	11,150	11,172	11,224	11,211	11,154	11,140	11,129
세종	2,031	2,051	2,059	2,056	2,044	2,049	2,059	2,053	2,056	2,063	2,043	2,056
경기	134,993	135,510	136,188	136,469	136,463	136,870	137,356	138,020	138,558	138,878	138,929	138,266
강원	36,111	36,033	35,964	35,859	35,718	35,702	35,696	35,777	35,762	35,702	35,573	35,264
충북	29,079	29,145	29,159	29,098	29,009	29,010	29,013	29,043	29,069	29,053	28,813	28,568
충남	34,407	34,435	34,462	34,476	34,191	34,153	34,143	34,191	34,210	34,245	34,248	33,779
전북	52,985	53,076	53,102	53,059	52,819	52,576	52,634	52,725	52,760	52,748	52,540	51,770
전남	48,507	48,421	48,304	48,068	47,653	47,454	47,379	47,381	47,318	47,305	46,944	46,157
경북	61,757	61,732	61,758	61,639	61,132	60,873	60,913	60,964	60,931	60,953	60,784	59,927
경남	58,483	58,466	58,498	58,331	58,077	58,127	58,103	58,226	58,291	58,344	58,049	57,671
제주	11,708	11,643	11,623	11,541	11,473	11,429	11,413	11,410	11,426	11,417	11,289	11,197
합계	880,660	882,110	884,499	884,491	882,041	882,501	883,390	885,573	887,081	888,110	886,452	880,356

주: 맞춤형급여 기초주거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가구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표 5-8 시도별 · 주거유형별 맞춤형 급여(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2016, 12 기준)

(단위: 가구)

					임	차				(211.7117
구분	합계	자가				사용	대차		개인	기타
丁正	답게	^[/ [공공임대	민간임대	전체사	전체사용대차		용대차	운영시설	기타
					기타대가 유	기타대가 무	기타대가 유	기타대가 무		
서울	155,139	2,064	60,596	55,522	6,182	63	15,981	171	683	13,877
부산	92,040	6,152	27,205	33,761	4,377	264	8,675	465	215	10,926
대구	61,838	2,152	21,980	21,188	3,313	72	5,206	125	45	7,757
인천	54,368	4,197	18,487	16,072	3,754	51	6,320	71	383	5,033
광주	35,981	1,700	15,946	8,463	2,414	32	3,274	41	251	3,860
대전	29,860	1,407	13,145	7,659	1,876	31	2,356	58	276	3,052
울산	11,851	405	3,360	4,066	545	49	1,406	67	32	1,921
세종	2,559	257	374	517	361	4	221	9	36	780
경기	147,868	5,718	50,615	41,072	9,916	238	18,787	309	2,726	18,487
강원	37,799	5,379	7,036	10,605	3,590	275	4,442	236	274	5,962
충북	32,819	4,214	7,962	6,825	3,939	10	3,387	9	605	5,868
충남	37,239	5,540	6,853	7,888	5,026	81	4,653	65	360	6,773
전북	55,703	8,890	14,788	10,767	5,483	280	5,203	172	1,045	9,075
전남	50,450	11,085	5,926	8,060	8,631	288	6,218	106	654	9,482
경북	65,342	10,160	9,759	16,241	6,868	337	6,620	219	353	14,785
경남	62,072	6,915	12,100	17,498	5,804	364	6,556	273	251	12,311
제주	12,420	693	2,326	4,347	1,178	56	1,636	46	46	2,092
합계	945,348	76,928	278,458	270,551	73,257	2,495	100,941	2,442	8,235	132,041

주: 1) 시설수급자 포함

표 5-9 시도별 · 급여종류별 주거약자가 포함된 맞춤형 급여(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2016. 12 기준)

(단위: 가구)

	합계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구분	합계 (A+C)	65세 이상 장애인 (A=a∪b, 중복제거)	65세 이상 (a)	장애인 (b)	65세 이상 장애인 (C=c∪d, 중복제거)	65세 이상 (c)	장애인 (d)
서울	96,723	95,049	62,994	51,234	1,674	1,379	791
부산	53,741	48,691	31,369	26,233	5,050	4,128	2,303
대구	33,553	31,837	19,657	17,932	1,716	1,368	809
인천	32,058	28,699	17,620	16,463	3,359	2,600	1,737
광주	18,034	16,825	9,230	10,420	1,209	847	686
대전	17,010	15,910	9,126	9,805	1,100	827	593
울산	6,686	6,336	3,780	3,742	350	260	206
세종	1,259	1,026	625	587	233	190	119
경기	89,934	84,921	53,453	47,575	5,013	3,982	2,474
강원	22,155	17,433	10,522	10,120	4,722	3,796	2,384
충북	18,953	15,239	8,561	9,392	3,714	2,868	1,949
충남	22,012	17,061	9,743	10,381	4,951	3,898	2,478
전북	31,698	23,905	13,371	15,196	7,793	6,144	4,020
전남	30,230	20,263	10,923	12,893	9,967	7,854	5,127
경북	35,664	26,743	15,860	15,701	8,921	6,979	4,498
경남	34,466	28,339	16,717	16,733	6,127	4,762	3,271
제주	6,842	6,254	3,975	3,610	588	443	329
합계	551,018	484,531	297,526	278,017	66,487	52,325	33,774

주: 시설수급자 제외

지 교육 급여 도입 후 주거유형이 5개에서 15개로 확대됨에 따라 1:1 매칭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그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 따라서 '기타'에는 입력 값 오류와 주거유형 비매칭 수급자로 구성됨.

의료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Medical Aid Benefit Recipients: Individuals

지표 정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분류되며, 진찰 및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및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시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다.

측정 산식

- 의료급여 수급 신청자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써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정받 은 자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단위: 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2016년도 기준)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1,319,780명이 수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월대비 추세를 살펴보면. 3월까지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4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5월 에 전월대비 -0.6% 감소하였다. 이후 11월까지 수급자수는 12월 급격히 감소하여서 전월대비 -1.1%를 기록하였다. 의료급여 종별 수급자는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 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시설수급자로 구성된 1종 수급자는 2016년 12월 기준 883,966 명. 1종 수급자가 아닌 2종 수급자는 432.758명으로 나타났다.

표 5-10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수

(단위: 명)

구분	2015년 12월	2016년 12월
의료급여 수급가구 수	1,343,775	1,319,78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6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12월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5년 12월 대비 약 24,000명 (1.8%) 감소하였다. 2016년 12월 기준 1 종 수급자수는 2종 수급자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월별 · 시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2016)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217,166	218,453	219,241	219,640	219,349	219,814	219,851	219,792	220,083	220,215	220,133	218,480
부산	130,089	130,179	130,213	129,988	129,287	129,014	128,934	128,855	128,682	128,815	128,776	127,671
대구	93,358	93,444	93,543	93,221	92,305	91,955	91,726	91,616	91,475	91,341	90,981	90,082
인천	79,947	80,313	80,981	81,089	80,909	80,934	80,922	81,180	81,342	81,384	81,140	80,729
광주	60,731	60,679	60,595	60,256	59,907	59,722	59,621	59,430	59,363	59,161	58,497	57,986
대전	45,159	45,261	45,341	45,446	45,242	45,171	45,139	45,165	45,133	45,180	45,119	44,537
울산	15,959	15,975	15,917	15,932	15,920	15,813	15,804	15,839	15,820	15,729	15,665	15,596
세종	3,181	3,242	3,263	3,258	3,233	3,236	3,220	3,206	3,190	3,199	3,169	3,168
경기	197,516	198,611	199,504	199,665	199,293	199,570	199,990	200,640	201,132	201,446	201,595	199,829
강원	54,323	54,321	54,161	53,958	53,541	53,412	53,308	53,309	53,239	53,090	52,889	52,156
충북	43,154	43,290	43,283	43,216	42,739	42,684	42,627	42,563	42,552	42,528	42,275	41,538
충남	52,007	52,007	52,030	51,974	51,400	51,248	51,178	51,143	51,105	51,105	51,094	50,074
전북	85,519	85,633	85,533	85,304	84,681	84,173	84,023	84,021	83,968	83,816	83,508	82,129
전남	73,426	73,252	72,970	72,513	71,596	71,164	70,959	70,842	70,701	70,624	70,095	68,669
경북	90,954	90,894	90,812	90,417	89,657	88,874	88,780	88,771	88,704	88,613	88,341	86,742
경남	85,093	85,056	85,032	84,627	84,035	83,844	83,775	83,787	83,777	83,724	83,288	82,286
제주	19,533	19,464	19,324	19,139	18,872	18,789	18,759	18,679	18,669	18,610	18,323	18,108
합계	1,347,115	1,350,074	1,351,743	1,349,643	1,341,966	1,339,417	1,338,616	1,338,838	1,338,935	1,338,580	1,334,888	1,319,780

주: 맞춤형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자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표 5-12 시도별 · 종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2016. 12 기준)

구분	1종	2종
서울	142,737	75,069
부산	86,531	40,881
대구	55,070	34,884
인천	51,559	28,967
광주	30,277	27,601
대전	26,996	17,450
울산	11,094	4,468
세종	2,112	1,029
경기	141,394	57,836
강원	36,143	15,926
충북	29,877	11,541
충남	36,144	13,823
전북	52,438	29,560
전남	48,662	19,859
경북	62,310	24,263
경남	59,818	22,326
제주	10,804	7,275
합계	883,966	432,758

주: 실수급자 기준임.

행 복 e 음

01-5

교육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Education Benefit Recipients: Individuals

지표 정의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받는다.

측정 산식

- 교육급여 수급 신청자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써 교육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자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자동차 재산기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단위: 원)

교육급여 선정기준 (2016년 기준)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교육급여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382,005명이 수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추세를 살펴보면, 봄학기가 시작된 후 4월과 5월에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이후에는 소폭의 감소와 증가를 보이다가 11~12월에 급격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6	2017	1년

Checkpoint 2016년 12월 교육급여 수급자는 2015년 12월 대비 7,576명 (2.0%) 감소하였다.

표 5-13 연도별 교육급여 수급 가구 수

(단위: 명)

구분	2015년 12월	2016년 12월
교육급여 수급 가구 수	377,638	370,062

표 5-14 월별 · 시도별 교육급여 수급자 수 (2016)

												(LTI. O)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57,327	56,154	54,667	57,915	59,478	59,877	60,020	60,164	60,195	60,167	59,799	58,240
부산	31,724	29,095	28,916	30,446	31,082	30,909	30,848	30,797	30,705	30,658	30,352	29,182
대구	27,835	27,755	25,444	25,976	25,770	25,436	25,368	25,339	25,285	25,232	24,890	23,843
인천	24,078	24,466	23,824	25,409	26,207	26,160	26,153	26,182	26,178	26,203	25,918	24,913
광주	18,317	17,251	16,933	17,837	18,058	18,040	18,025	18,042	18,041	18,047	17,817	17,195
대전	13,370	13,254	13,099	13,879	14,006	13,943	13,966	13,969	13,962	13,994	13,951	13,325
울산	5,880	4,406	3,841	3,847	3,912	3,872	3,854	3,847	3,824	3,793	3,704	3,438
세종	865	840	829	886	967	958	952	956	959	971	970	948
경기	66,920	67,711	63,382	67,687	70,388	70,233	70,143	70,522	70,674	70,711	70,205	67,335
강원	12,107	12,207	11,259	12,544	13,170	13,113	13,123	13,148	13,193	13,163	12,970	12,539
충북	12,141	11,668	11,492	12,106	12,303	12,247	12,235	12,241	12,225	12,215	11,982	11,553
충남	14,712	14,122	13,756	14,676	15,072	14,878	14,856	14,913	14,953	14,943	14,872	14,184
전북	25,205	23,670	23,290	24,421	24,855	24,459	24,442	24,512	24,538	24,560	24,284	23,656
전남	19,207	19,225	17,644	18,568	19,182	19,024	19,009	19,028	18,991	18,955	18,774	18,080
경북	22,400	22,447	20,741	21,734	22,217	21,623	21,603	21,608	21,612	21,580	21,343	20,818
경남	26,152	26,346	24,156	25,695	26,266	26,048	25,994	25,963	25,996	25,972	25,316	24,597
제주	6,333	6,499	6,393	6,700	6,785	6,785	6,749	6,740	6,761	6,743	6,542	6,216
합계	384,573	377,116	359,666	380,326	389,718	387,605	387,340	387,971	388,092	387,907	383,689	370,062

주: 맞춤형급여 기초교육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자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차상위 확인서발급 (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Number of near-poor people in receipt of Prority Care

지표 정의

차상위 확인서발급 (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는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중앙부처 10개 기관 20여개 사업과 지자체 특수시책, 민간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연계되는 대상자들을 말한다.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달리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출(실제소득 –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측정 산식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에서 중앙부처 도는 지자체 사업, 민간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연계된 수급자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중위소득 50%(원/월) (2016년도 기준)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008,13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으로 정의되는 차상위 확인서발급 (구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는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한 128,997명으로 집계되었다(2016년 12월 기준). 동월 기준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41,530명(32%), 여성이 87,467명(68%)으로 여성 수급자수가 2배 이상 많이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의 수급자가 26,7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19,161명, 경상북도 11,1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여성 수급자가 60% 이하를 차지하고 있어 성별 분포가 대체로 고른 편인 한편, 전라도에서는 여성 수급자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추세로는 5월과 12월을 제외하면 대체로 전월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11월 수급자가 가장 많은 수치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6	1년

Checkpoint

2016년의 월별 차상위 확인서발급 (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는 5월과 12월을 제외하면 대체로 전월대 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12월 기준 128,997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780명 (1,4%) 증가하였다.

^{*} 빈곤층임에도 불구,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표 5-15 연도별 차상위 확인서발급 (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단위: 명)

구분	2013년 12월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계	129,896	149,964	127,217	128,997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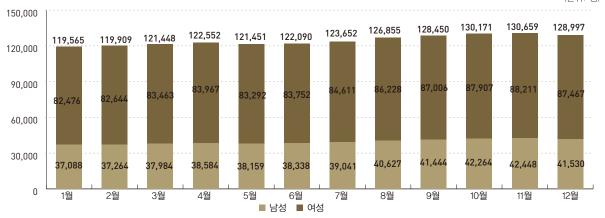


그림 5-6 성별 · 시도별 차상위 확인서발급 (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2016.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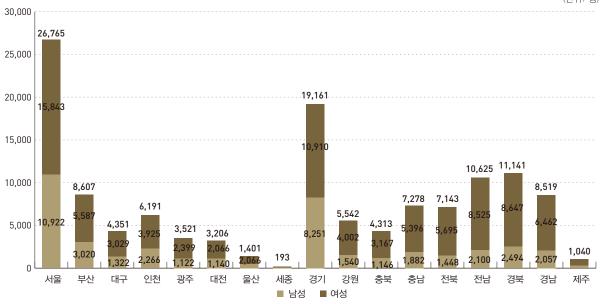


표 5-16 월별, 시도별, 성별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2016)

丑 5-16	(EII)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남	10,038	10,043	10,273	10,522	10,588	10,641	10,724	10,886	10,991	11,172	11,274	10,922
서울	여	14,256	14,251	14,511	14,798	14,899	15,083	15,226	15,505	15,641	15,875	16,079	15,843
	계	24,294	24,294	24,784	25,320	25,487	25,724	25,950	26,391	26,632	27,047	27,353	26,765
	남	2,907	2,905	2,947	2,976	2,944	2,962	2,990	3,032	3,045	3,095	3,090	3,020
부산	여	5,085	5,083	5,174	5,178	5,234	5,304	5,364	5,433	5,471	5,544	5,584	5,587
	계	7,992	7,988	8,121	8,154	8,178	8,266	8,354	8,465	8,516	8,639	8,674	8,607
	남	1,103	1,190	1,203	1,237	1,241	1,251	1,268	1,285	1,303	1,325	1,332	1,322
대구	여	2,718	2,818	2,836	2,866	2,861	2,881	2,888	2,920	2,946	2,978	2,989	3,029
	기 계	3,821	4,008	4,039	4,103	4,102	4,132	4,156	4,205	4,249	4,303	4,321	4,351
	남	2,198	2,171	2,224	2,248	2,234	2,211	2,225	2,248	2,283	2,290	2,309	2,266
인천	여	3,773	3,734	3,790	3,817	3,788	3,775	3,780	3,816	3,882	3,912	3,955	3,925
	계	5,773	5,705	6,014	6,065	6,022	5,773	6,005	6,064	6,165	6,202	6,264	6,191
과조	남	1,118	1,111	1,134	1,146	1,136	1,141	1,153	1,155	1,153	1,166	1,143	1,122
광주	여	2,347	2,343	2,388	2,396	2,358	2,363	2,384	2,399	2,406	2,426	2,420	2,399
	계	3,465	3,454	3,522	3,542	3,494	3,504	3,537	3,554	3,559	3,592	3,563	3,521
-11-1	남	1,030	1,030	1,077	1,134	1,122	1,128	1,138	1,158	1,160	1,164	1,165	1,140
대전	여 -"	1,799	1,809	1,858	1,916	1,933	1,964	1,988	2,006	2,019	2,028	2,055	2,066
	계	2,829	2,839	2,935	3,050	3,055	3,092	3,126	3,164	3,179	3,192	3,220	3,206
	남	455	457	468	477	476	481	477	494	489	478	483	475
울 산	여	876	879	896	912	910	916	922	932	938	926	934	926
	계	1,331	1,336	1,364	1,389	1,386	1,397	1,399	1,426	1,427	1,404	1,417	1,401
	남	65	66	71	70	64	58	58	54	54	55	61	61
세종	여	153	155	158	158	147	139	138	134	130	139	141	132
	계	218	221	229	228	211	197	196	188	184	194	202	193
	남	5,186	5,223	5,368	5,520	5,407	5,469	5,982	7,177	7,738	8,180	8,324	8,251
경기	여	8,185	8,224	8,398	8,571	8,511	8,618	9,057	10,012	10,433	10,813	10,979	10,910
	계	13,371	13,447	13,766	14,091	13,918	14,087	15,039	17,189	18,171	18,993	19,303	19,161
	남	1,493	1,500	1,522	1,526	1,513	1,514	1,528	1,543	1,564	1,578	1,575	1,540
강원	여	3,921	3,945	3,981	3,976	3,947	3,956	3,977	3,996	4,012	4,021	4,042	4,002
	계	5,414	5,445	5,503	5,502	5,460	5,470	5,505	5,539	5,576	5,599	5,617	5,542
	남	1,163	1,173	1,177	1,172	1,143	1,155	1,158	1,160	1,169	1,181	1,152	1,146
충북	여	3,144	3,149	3,165	3,160	3,115	3,150	3,159	3,167	3,175	3,177	3,154	3,167
	계	4,307	4,322	4,342	4,332	4,258	4,305	4,317	4,327	4,344	4,358	4,306	4,313
	남	1,885	1,911	1,948	2,001	1,936	1,938	1,951	1,939	1,957	1,959	1,958	1,882
충남	여	5,467	5,489	5,541	5,571	5,468	5,467	5,494	5,511	5,510	5,508	5,490	5,396
	계	7,353	7,401	7,490	7,573	7,404	7,405	7,445	7,450	7,467	7,467	7,448	7,278
	남	1,450	1,464	1,461	1,445	1,415	1,432	1,431	1,443	1,456	1,469	1,461	1,448
전북	여	5,676	5,685	5,709	5,681	5,573	5,615	5,642	5,674	5,702	5,755	5,732	5,695
	계	7,126	7,149	7,170	7,126	6,988	7,047	7,073	7,117	7,158	7,224	7,193	7,143
	남	2,137	2,143	2,142	2,115	2,066	2,073	2,073	2,104	2,101	2,132	2,127	2,100
전남	_ 여	8,948	8,956	8,900	8,814	8,666	8,622	8,628	8,670	8,662	8,674	8,619	8,525
	· 계	11,085	11,099	11,042	10,929	10,732	10,695	10,701	10,774	10,763	10,806	10,746	10,625
	남	2,492	2,494	2,537	2,567	2,497	2,512	2,519	2,551	2,574	2,575	2,587	2,494
경북	여	8,799	8,795	8,853	8,869	8,702	8,690	8,724	8,754	8,762	8,774	8,743	8,647
57	계	11,291	11,289	11,390	11,436	11,199	11,202	11,243	11,305	11,336	11,349	11,330	11,141
	/" 남	2,056	2,066	2,111	2,125	2,078	2,083	2,082	2,109	2,117	2,146	2,119	2,057
경남	여	6,554	6,551	6,530	6,522	6,440	6,458	6,488	6,544	6,566	6,602	6,542	6,462
00	계	8,610	8,617	8,641	8,647	8,518	8,541	8,570	8,653	8,683	8,748	8,661	8,519
	게 남	312	317	321	303	299	289	284	289	290	299	288	284
제주	÷	775		321 775					·	·····	·		÷
시구	여 계		778	}	762	740	751	752	755 1.077	751	755 1.057	753	756
	· /-II	1,087	1,095	1,096	1,065	1,039	1,040	1,036	1,044	1,041	1,054	1,041	1,040
	1	27.000	27211	27.007	20 507	20 150	20 200						
중나네	남	37,088	37,264	37,984	38,584	38,159	38,338	39,041	40,627	41,444	42,264	42,448	41,530
합계	1	37,088 82,476 119,565	37,264 82,644 119,909	37,984 83,463 121,448	38,584 83,967 122,552	38,159 83,292 121,451	38,338 83,752 122,090	39,041 84,611 123,652	40,627 86,228 126,855	41,444 87,006 128,450	42,264 87,907 130,171	42,448 88,211 130,659	41,530 87,467 128,997

^{*} 충청남도 1월~4월 값 없음(1명) 제외

03

상대적 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

지표 정의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된 소득의 중위 값 일정 비율(보통 40%, 50%, 60%)을 빈곤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선으로 설정한 후 이 기준선 미만(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과 전체 인구와의 비율로 정의한다.

과거 선진국들의 경우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사용해왔으나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급여 제도에서는 상대적 빈곤선이 적용되고 있다.

측정 산식

소득이 빈곤선 미만(이하)인 인구 수 전체 인구 수

유의사항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OECD 국제기준(Wave6)대로 작성했던 공식 소득분 배지표를 2016년 소득결과부터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고,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기준소득을 OECD 최근 권고사항(Wave7 *)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Wave7 변경사항: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

상대적 빈곤율의 기준선(기준중위소득의 40%, 50%, 60%)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의 50%의 상대적 빈곤율을 제시하였다. 기준중위소득의 50%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전체가구 빈곤율과,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계산된 2인 이상 비농가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을 살펴보면, 가처분소득 적용 시 전체가구는 2016년 14.7%로 전년대비 0.9%p 증가하였으며 2인 이상 비농가는 11.1%로 전년대비 0.7%p 증가하였다. 시장소득을 적용한 빈곤율의 경우 전체가구 19.5%, 2인 이상 비농가 15.6%로 각각 0.9%p, 1.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 빈곤율은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가처분 소득의 빈곤율은 전년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 빈곤율의 상승은 정부의 개입의 확대시키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 빈곤율 역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계산된 2016년 기준 전체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시장소득 적용 빈곤율은 19.7%, 가처분소득 적용 빈곤율 17.9%로 나타나, 전년도(2015년)에 비해 빈곤율이 다소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16	분기, 1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953	2016	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	2016	1년

Checkpoint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 자료로 산출한, 가처분소득 기준 전체가구의 빈곤율은 2009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6년 전년보다 0.9%p 상승한 14.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의 경우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간의 차이가 2015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소득재 분배정책 효과의 확대추이는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계산된 빈곤율 역시'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 자료로 산출한 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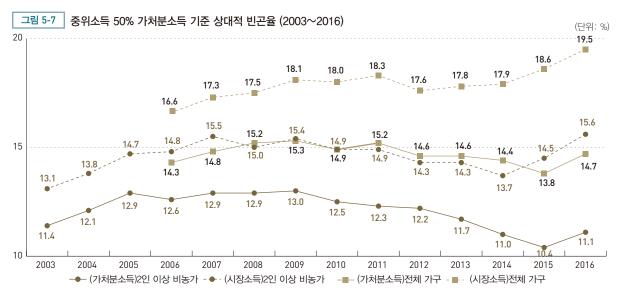
OECD 국가의 소득분배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도 가처분소득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상대적 빈곤율은 약 11.3%로 한국의 빈곤율 14.4%보다 약 3.1%p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분석 대상 33개 국가 중 9번째로 높으며, 가장 높은 이스라엘보다는 약 4.2%p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중위소득 50% 상대적 빈곤율 (200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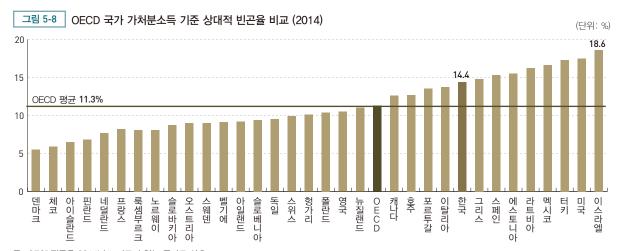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장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16.6	17.3	17.5	18.1	18.0	18.3	17.6	17.8	17.9	18.6	19.5
	가계금 융복 지조사	-	-	-	-	-	-	-	-	-	19.5	19.7
가처분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14.3	14.8	15.2	15.3	14.9	15.2	14.6	14.6	14.4	13.8	14.7
	가계 금융복 지조사	-	-	-	-	-	-	-	-	-	17.8	17.9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주: OECD평균은 2014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로 산출 자료: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상대적 노인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지표 정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균등화된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균등화된 기준중위소득 $40 \cdot 50 \cdot 60\%$) 미만인 노인(65세 이상)의 비율로 정의한다.

노인은 통상 근로소득 활동이 중단되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인빈곤율은 빈곤정책, 노후소득보장정책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정립하는데 참고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소득이 빈곤선 미만(이하) 노인 수 전체 노인 수

유의사항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OECD 국제기준(Wave6)대로 작성했던 공식 소득분 배지표를 2016년 소득결과부터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고,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기준소득을 OECD 최근 권고사항(Wave 7^*)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Wave7 변경사항: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

노인에 대한 상대적 빈곤율은 노인집단 자체에서 산출한 기준선이 아닌 노인이 포함된 전체집단의 상대적 기준선을 구한 후 이것을 노인집단에게만 적용하여 산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통계연보』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자료로 사용하여 빈곤율 등 소득분배 관련 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1인가구 포함 상대적 노인빈곤율 (가처분소득 기준)은 2016년 46.7%로 전년도 보다 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 (48.8%)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다 다시 상승한 것이다. 시장소득 적용 빈곤율을 살펴보면, 1인가구를 포함한 비농가의 경우 65.7%로 전년도에 비해 2.4%p 증가하였다. 시장소득 적용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2008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전년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출 적용 노인빈곤율을 산출하여 소득 적용 빈곤율과 비교해 보면, 2015년 가계지출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43.2%로 전년도에 비해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15년 감소했던 빈곤율이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빈곤율에 비해 그 증가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 statistics"에 수록되어 있는 2014년도 가처분소득 기준 OECD 국가(33개국)의 상대적 노인빈곤율 평균은 12.4%이며, 우리나라는 48.8%로 분석대상인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16	분기, 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 곤통 계연보	2005	2016	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	2016	1년

Checkpoint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의 경우(1인가구 포함)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6의 경우 전년도보다 2.4%p 증가한 65.7%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가처 분소득 기준(1인가구 포함) 노인빈곤율은 2011년(48.8%)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지만, 2016년의 경우 전년도 보다 2%p 증가한 46.7%로 나타났다. 2016년 빈곤율의 증가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서도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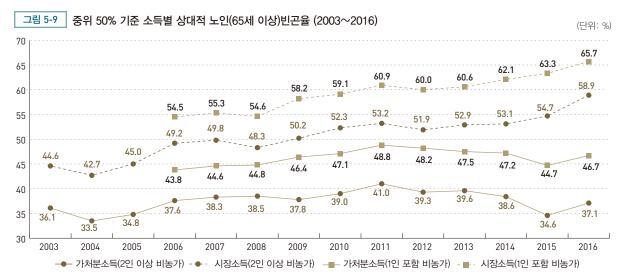
•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표 5-18 중위 50% 기준 상대적 노인(65세 이상)빈곤율 (2003~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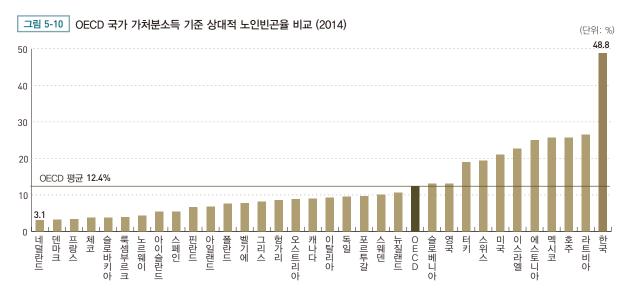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장소득	가계동향조사	-	-	-	54.5	55.3	54.6	58.2	59.1	60.9	60.0	60.6	62.1	63.3	65.7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	-	-	-	-	-	-	56.5	57.5
71-1111 4 =	가계동향조사	-	-	-	43.8	44.6	44.8	46.4	47.1	48.8	48.2	47.5	47.2	44.7	46.7
가처분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	-	-	-	-	-	-	43.4	43.7
가계지출	2인 이상 비농가	24.2	24.6	27.1	29.3	30.3	29.9	33.4	33.4	35.3	31.9	33.0	36.5	34.9	37.3
	1인 포함 비농가	-	-	-	35.7	36.4	37.3	40.7	39.8	40.7	38.5	40.0	43.3	42.7	43.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빈곤통계연보, 2017.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주: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빈곤통계연보, 2017.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주: OECD평균은 2013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로 산출 자료: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소득5분위배율

Income quintile share ratio (s8o/s2o)

지표 정의

소득5분위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소득10분위배율과 지니계수와 함께 소득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데 자주 활용되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상위 20% 평균 소득

하위 20% 평균 소득

유의사항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OECD 국제기준(Wave6)대로 작성했던 공식 소득분 배지표를 2016년 소득결과부터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고,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기준소득을 OECD 최근 권고사항(Wave7 *)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Wave7 변경사항: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소득5분위배율은 가처 분소득 기준으로 2016년 5.45배로 나타났다(전체가구 기준). 2011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이를 보이던 가처분소득 적용 소득5분위배율이 전년도에 비해 약 5.5% 상승한 것이다. 아래 그림을 볼 때 가 처분소득 기준으로 2인 이상 비농가는 2009년부터, 1인가구 포함 전체가구는 2011년부터 소득5분위 배율로 측정된 불평등도가 전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6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소득5분위배율로 측정한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으며, 시장소득 기준의 경우 2013년부터 소득5분위배율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전년도에 비해 소득5분위배율이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소득5분위배율은 분석대상인 OECD 3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은 5.4배로 OECD 평균(분석대상 30개국)인 5.3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덴마크(3.6)와 아이슬란드(3.6)가 가장 낮은 수준이며, 미국(8.7)과 멕시코(10.4)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16	분기, 1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953	2016	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	2016	1년

Checkpoint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전체가구의 경우 2016년 5.45배로 전년도 5.11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은 2012년부터 4년 연속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다 2016년 악화된 것이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경우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소득5분위배율은 9.32배로 2006년 지표 산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전년도 보다 다소 악화된 소득5분위배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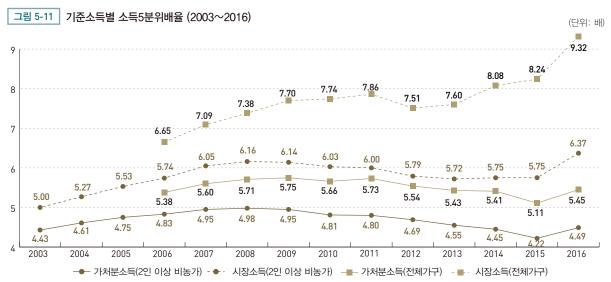
•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표 5-19 기준소득별 소득5분위배율 (200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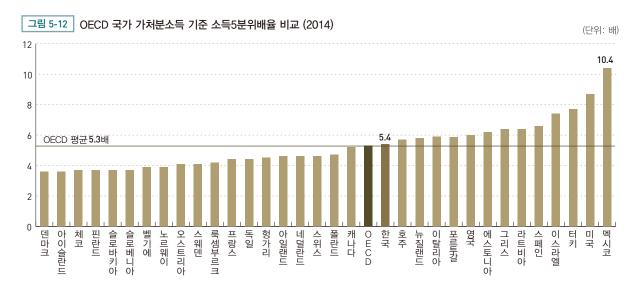
(단위: 배)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장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6.65	7.09	7.38	7.70	7.74	7.86	7.51	7.60	8.08	8.24	9.32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	-	-	-	10.44	10.92
가처분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5.38	5.6	5.71	5.75	5.66	5.73	5.54	5.43	5.41	5.11	5.45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	-	-	-	7.01	7.0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주: OECD 평균은 2013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로 산출 자료: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지표 정의

지니계수는 인구와 소득간의 분포와 그 관계(로렌츠 곡선)를 통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 관련 지표이다.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분배상태를,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내며, 소득불평등의 국제적 비교에도 많이 활용된다.

측정 산식

$$\frac{1}{n} (n + 1 - 2(\frac{\sum_{i=1}^{n} (n + 1 - i)y_i}{\sum_{i=1}^{n} y_i}))^*$$

* n: 전체 인구 수, y_i : i번째 인구의 소득, i: 1, …, n

유의사항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OECD 국제기준(Wave6)대로 작성했던 공식 소득분 배지표를 2016년 소득결과부터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고,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기준소득을 OECD 최근 권고사항(Wave 7^*)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Wave7 변경사항: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전체가구의 경우 2016년 0.304로 전년도인 2015년의 0.295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0.314)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면서 2015년 0.295까지 하락하다가 2016년에는 해당지표로 파악한 소득분배수준이 전년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경우 2016년 0.353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인 이상 비농가는 2016년 0.318인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불평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가처분소득 적용 지니계수가 2014년에 비해 감소하고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것과는 달리 2016년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과 가처분소득 기준 모두에서 소득불평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산출한 지니계수의 경우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적용한 지니계수가 전년도 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분석대상인 OECD 33개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편에 속한다. 20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2로 OECD 30개국 평균인 0.311 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0.246), 슬로바키아(0.247) 등이며, 지니계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0.459), 터키(0.398), 미국(0.394)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16	분기, 1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953	2016	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	2016	1년

Checkpoint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전체가구의 경우 2016년 0.304, 2인 이상 비농가의 경우 0.279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 불평등도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6년 전년도에 비해 0.009 증가하였다. 한편 시장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경우 지니계수는 0.353으로 전년도에 비해 0.0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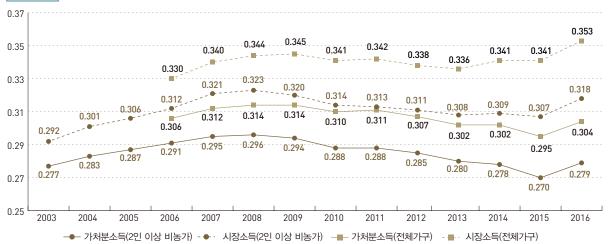
•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표 5-20 기준소득별 지니계수 (2006~2016)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장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0.330	0.340	0.344	0.345	0.341	0.342	0.338	0.336	0.341	0.341	0.353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	-	-	-	0.396	0.402
가처분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0.306	0.312	0.314	0.314	0.310	0.311	0.307	0.302	0.302	0.295	0.304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	-	-	-	0.354	0.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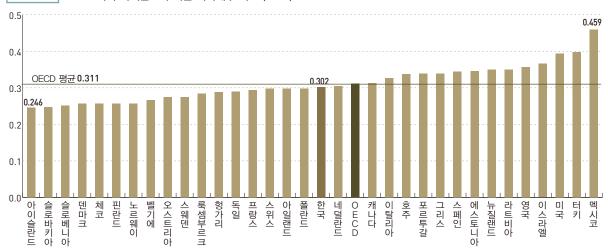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그림 5-13 기준소득별 지니계수 (2003~201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그림 5-14 OECD 국가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비교 (2014)



주: OECD평균은 2014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로 산출 자료: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Total Recipients and Take-up Rates of Basic (Old-Age) Pension Allowance

지표 정의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에 대해 매월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이다.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노인들의 소득 일정부문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65세 이상 노인 수

유의사항

2016년의 경우 노인인구 수와 수급률 등의 지표에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하였다.

2008년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7.2%에 해당하는 약 290만 명 정도였으나 2009년에는 제도 확대에 따라 수급자가 약 73만 명이 증가하여 수급률은 68.9%로 급증하였다. 이후에도 수급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수급률은 다소 감소하였는데 2014년 7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면서 수급률이 전년도보다 1.8% 증가한 66.8%로 나타났다. 6월의 경우 전체 노인인구(65세 이상) 중 65.1%에 해당하는 약 416만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였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14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노인인구(약 652만 명) 중 66.8%에 해당하는 약 435만 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2013년보다 약 29만 명이 증가하였다. 2015년의 경우에는 수급자수는 증가하였지만 수급률은 0.4%p 감소하였다. 2016년의 경우에도 수급자수는 약 22만 명 정도 증가하였으나 수급률은 0.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성별 수급률을 살펴보면 여성은 71.7%, 남성은 56.9%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각각 1%p,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여성 수급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은 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남성비율은 그 증가폭이 크지는 않지만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3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2008	2014	1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	2016	1년

Checkpoint

기초연금의 수급률은 2016년 12월 기준 65.5%로 전년도에 비해 0.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면서 수급자수와 수급률이 대폭 확대되고 수급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수급률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노인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표 5-21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8~2016)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초연금)	2015 (기초연금)	2016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5,069,273	5,267,708	5,506,352	5,700,972	5,980,060	6,250,986	6,520,607	6,771,214	6,995,652
수급자 수	2,897,649	3,630,147	3,727,940	3,818,186	3,933,095	4,065,672	4,353,482	4,495,183	4,581,406
수급률	57.2	68.9	67.7	67.0	65.8	65.0	66.8	66.4	65.5

주: 2015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통계로 본 2015년 기초연금'의 자료이며, 2016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임.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노령연금,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5년 기초연금, 2016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2017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표 5-22 성별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8~2016)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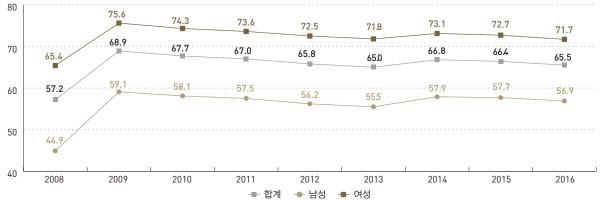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초연금)	2015 (기초연금)	2016 (기초연금)
나서	915,590	1,258,681	1,302,090	1,340,600	1,386,412	1,441,676	1,579,746	1,643,697	1,683,729
남성	44.9	59.1	58.1	57.5	56.2	55.5	57.9	57.7	56.9
어서	1,982,059	2,371,466	2,425,850	2,477,586	2,546,683	2,623,996	2,773,736	2,851,486	2,897,677
여성	65.4	75.6	74.3	73.6	72.5	71.8	73.1	72.7	71.7

주: 각 연도 12월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노령연금,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5년 기초연금, 2016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2017

그림 5-15 성별 기초노령 및 기초연금 수급률 (2008~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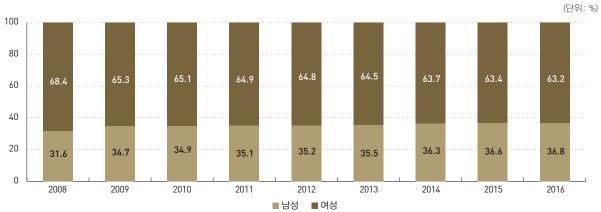
(단위: %)



주: 각 연도 12월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노령연금,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5년 기초연금, 2016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2017

그림 5-16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성별 구성 (2008~2016)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노령연금,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5년 기초연금, 2016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2017

그림 5-17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2008~2016)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5년 기초연금, 2016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2017

08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National Pension Participants by Insurance Type

지표 정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노화 및 장애발생 그리고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지표를 통해 최근 100세 시대를 바라보며 노후준비가 점점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측정 산식

각 가입종별 가입자 수 전체 가입자 수

1986년 국민연금법이 공표되었고 1988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실시되었다. 이후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1995년 농어민, 1999년 도시지역 거주자, 2006년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12월 말 현재 전체 가입자는 약 2.183만 명이다.

가입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사업장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약 60.4%를, 지역가입자는 약 3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비율은 각각 1.4%, 1.3% 수준이다. 사업장가입자 수와 총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2년부터 가입자 수와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성별 가입자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가입자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및 여성의 가입유인 확대(출산 크레딧, 임의 가입제도 활성화 등)를 통해 발생한 효과라 볼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월급여가 133.5만 원 미만인 가입자가 33.9% 차지하고 있는 반면 368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비중은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1988	2016	1년

Checkpoint

국민연금 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는 1988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 기준으로 60% 수준을 돌파 하였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2012년부터 그 규모와 전체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의 경우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최근 그 규모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생생통계 Facts Book

표 5-23 연도별 · 종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명 %)

ж 5-25	TE 05 400	그리 기비자 인정					(단위: 명, %)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近五	5/16시	NEGTEN	소계	농어촌	도시	급의기급시	급의계득기급시
1988	4,432,695	4,431,039	-	-	-	1,370	286
1700		99.96	-	-	-	0.03	0.01
1992	5,021,159	4,977,441	-	-	-	32,238	11,480
1772		99.13	-	-	-	0.64	0.23
1995	7,496,623	5,541,966	1,890,187	1,890,187	-	48,710	15,760
1770		73.93	25.21	25.21	-	0.65	0.21
1999	16,261,889	5,238,149	10,822,302	2,083,150	8,739,152	32,868	168,570
1777		32.21	66.55	12.81	53.74	0.20	1.04
2003	17,181,778	6,958,794	9,964,234	2,062,011	7,902,223	23,983	234,767
2003		40.50	57.99	12.00	45.99	0.14	1.37
2007	17,739,939	8,604,823	9,086,368	1,972,784	7,113,584	26,991	21,757
2006		48.51	51.22	11.12	40.10	0.15	0.12
2010	19,228,875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2010		54.16	45.11	10.15	34.96	0.47	0.26
2011	19,885,911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2011		55.2	43.63	9.99	33.64	0.86	0.32
0010	20,329,060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2012		56.39	42.15	9.62	32.53	1.02	0.44
0010	20,744,780	11,935,759	8,514,434	1,962,071	6,552,363	177,569	117,018
2013		57.54	41.04	9.46	31.59	0.86	0.56
2017	21,125,135	12,309,856	8,444,710	1,972,393	6,472,317	202,536	168,033
2014		58.27	39.97	9.34	30.64	0.96	0.80
2015	21,568,354	12,805,852	8,302,809	1,949,757	6,353,052	240,582	219,111
2015		59.37	38.5	9.04	29.46	1.12	1.02
2017	21,832,524	13,192,436	8,060,199	1,881,248	6,178,951	296,757	283,132
2016		60.43	36.92	8.62	28.30	1.36	1.30

주1:납부예외자 포함

표 5-24 시도별 · 종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016)

(단위: 천명)

	4																1. L. 6/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가입자	5,954	1,288	883	1,068	514	5835	463	80	5,069	540	606	827	634	686	1,049	1,328	252
사업장	4,200	693	456	575	275	334	289	49	3,016	280	349	489	322	357	594	777	130
지역	1,623	556	396	464	222	229	164	28	1,910	243	240	316	288	306	425	520	114
임의(계속)	60	16	12	13	7	7	3	0.9	59	9	9	13	15	14	16	17	4

주: 납부예외자 포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6 국민연금통계연보,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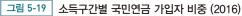
주2:1)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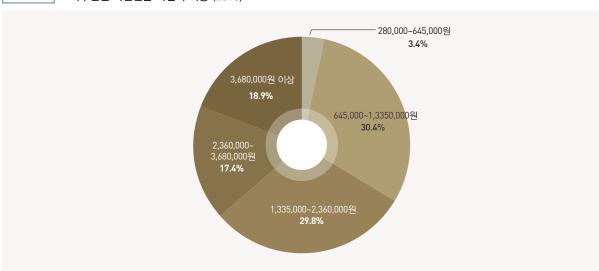
²⁾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3)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대상 중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를 의미 4)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65세에 달할 때까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를 의미

자료: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통계, 각 연도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생생통계, 각 연도



주: 납부예외자 포함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생생통계, 각연도





주: 납부예외자 제외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6 국민연금통계연보, 2017

09 H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Number of All Beneficiaries in National Pension by Type of Benefit

지표 정의

국민연금수급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급여유형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된다.

본 지표를 통해 근로능력이 감퇴된 이후의 소득보장 적용 인구규모를 알 수 있다.

측정 산식

각 급여종별 수급자 수 전체 수급자 수

국민연금은 지급형태는 크게 연금과 일시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연금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연령이 60~65세에 달한 경우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 중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급여이다. 2016년 현재 약 341만 명이 노령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26만 명 증가한 규모이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3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이다(장애 4급인 경우 일시금 지급). 장애연금의 수급 규모는 노령연금 등의 급여수급자가 매우 적었던 국민연금 시행 초기에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1993년 10.7%),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현재 약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그 수급자 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다 2016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일시금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일시금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약 84%를 (1998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지만 연금제도의 성숙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여, 2016년 현재는 전체 수급자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약 3만 6천 명이 증가하였고 2016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약 3만 1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반납일시급 수급자 증가에 기인한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1988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12월 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438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자 중에서 일시금 수급자의 비율은 연금제도의 성숙으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증가로 인해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전체 수급자의 약 5.4%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 약 3만 1 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4년부터 급증한 반환 일시금의 증가에 기인한다. 한편, 성별 노령연금 수급자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그 비중이 높으며, 여성의 비중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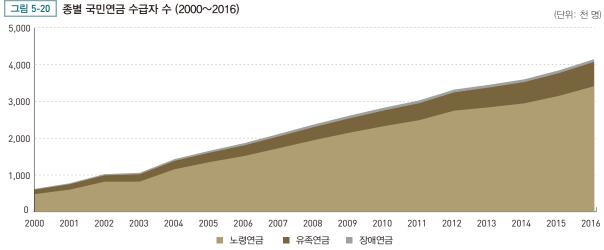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생생통계 Silver Book

표 5-25 연도별 · 종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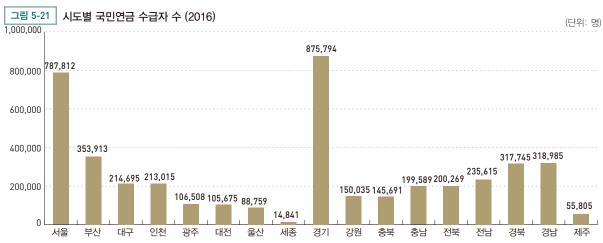
(단위: 명,%)

Lin. o. A												
	구분		1988	1993	1998	2004	2008	2012	2013	2014	2015	2016
	노령	수급자 수	-	10,971	112,946	1,156,098	1,949,867	2,748,455	2,840,660	2,947,422	3,151,349	3,412,350
	연금	비율		(30.3)	(56.3)	(80.8)	(82.1)	(82.8)	(82.3)	(81.9)	(82.0)	(82.3)
	장애	수급자 수	-	3,896	13,245	47,260	72,166	75,934	75,041	75,387	75,688	75,497
연금	연금	비율		(10.7)	(6.6)	(3.3)	(3.0)	(2.3)	(2.2)	(2.1)	(2.0)	(1.8)
	유족	수급자 수	-	21,387	74,334	226,806	353,594	496,073	536,161	575,706	617,084	659,124
	연금	비율		(59.0)	(37.1)	(15.9)	(14.9)	(14.9)	(15.5)	(16.0)	(16.1)	(15.9)
	소계		-	36,254	200,525	1,430,164	2,375,627	3,320,462	3,451,862	3,598,515	3,844,121	4,146,971
	반환	수급자 수	3,136	545,611	1,061,643	100,296	138,456	176,531	180,233	147,035	180,705	208,620
	일시금	비율	(100.0)	(99.6)	(99.4)	(90.0)	(87.4)	(89.3)	(89.6)	(86.0)	(87.2)	(87.7)
	장애일시	수급자 수	-	2,341	1,625	3,609	4,902	2,862	2,993	2,651	2,597	2,577
일시금	보상금	비율		(0.4)	(0.2)	(3.2)	(3.1)	(1.4)	(1.5)	(1.6)	(1.3)	(1.1)
	사망	수급자 수	-	-	4,529	7,561	15,129	18,235	18,025	21,219	23,949	26,578
	일시금	비율			(0.4)	(6.8)	(9.5)	(9.2)	(9.0)	(12.4)	(11.6)	(11.2)
	소	△ 계	3,136	547,952	1,067,797	111,466	158,487	197,628	201,251	170,905	207,251	237,775
	총계			584,206	1,268,984	1,541,630	2,534,114	3,518,090	3,653,113	3,769,420	4,051,372	4,384,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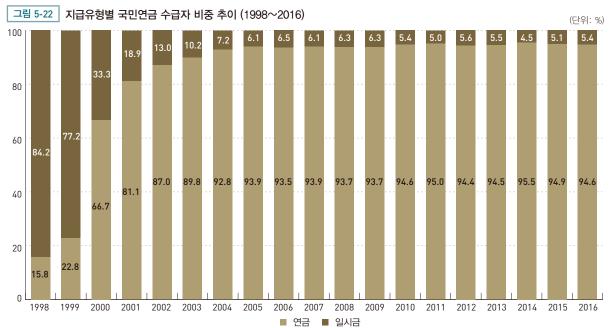
주: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외 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말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각 연도



주: 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제외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각 연도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6 국민연금통계, 2017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6 국민연금통계, 2017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6 국민연금통계, 2017

65세 이상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Public Pension take-up rates for people aged 65 and over

09-1

지표 정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자의 합계를 65세 이상 추계인구로 나눈 비율임.

측정 산식

각 연금 65세 이상 수급자의 합 65세 이상 추계 인구

본 지표는 5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직우체국) 중 수급자의 수가 많은 국민 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자 수의 합계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공적연금 수급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42.4%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2013년 이후 다소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6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두 연금 모두에서 수급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1988	2016	1년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자료	-	2016	1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내부자료	-	2016	1년

Checkpoint

공적연금 수급률(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률의 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40%를 넘고, 2016년에는 4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공적연금 수급률은 19%에 불과했는데, 10년 동안 수급률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급 규모의 증가에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자만 꾸준한 수급자 수와 수급률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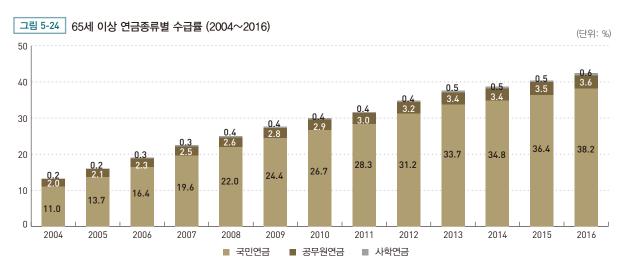
• e나라지표(부문별 지표-공적연금 수급률)

표 5-26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4~2016)

(단위: 명,%)

구	분 20	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 · · · · · · · · · · · · · · · · ·	550),180	704,194	870,495	1,079,922	1,252,152	1,432,387	1,606,024	1,800,167	2,050,717	2,305,340	2,524,786	2,742,708	2,967,912
/1	1	13.2	16.1	19.0	22.4	25.0	27.6	30.0	31.8	34.8	37.6	38.7	40.4	42.4
국	민 458	3,419	600,421	751,897	944,651	1,103,007	1,268,935	1,428,414	1,605,959	1,835,624	2,067,085	2,267,567	2,467,059	2,670,979
연	금	11.0	13.7	16.4	19.6	22.0	24.4	26.7	28.3	31.2	33.7	34.8	36.4	38.2
공두	-원 82	2,884	93,468	104,942	119,471	131,482	143,882	155,777	169,979	188,006	206,163	222,325	240,041	255,197
연	금	2.0	2.1	2.3	2.5	2.6	2.8	2.9	3.0	3.2	3.4	3.4	3.5	3.6
사	학 8	3,877	10,305	13,656	15,800	17,663	19,570	21,833	24,229	27,087	32,092	34,894	35,608	41,736
연: 	₽	0.2	0.2	0.3	0.3	0.4	0.4	0.4	0.4	0.4	0.5	0.5	0.5	0.6

자료: e-나라지표 -부문별 지표-공적연금 수급률(2016.10.24. 추출)



자료: e-나라지표 -부문별 지표-공적연금 수급률(2016.10.24. 추출)

10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Average Benefit Amount in National Pension by Type of Benefit

지표 정의

국민연금은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 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 평균지급액 지표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금수급액 수준을 알 수 있다.

측정 산식

총 연금지급액

전체 수급자 수

국민연금의 주요 급여(연금)로는 노령·장애·유족연금이 있으며, 연금 급여액은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또한,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노령연금의 연평균 급여액은 2016년 약 412만 원으로 전년도인 2014년에 비해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연금의 연평균 급여액은 44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연금 급여액 수준은 장애연금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노령연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의 경우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이 노령연금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후 가입 기간의 증가 등 연금제도의 성숙으로 인해 노령연금의 평균 급여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시금의 경우 2016년 평균 급여액은 약 404만 원으로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지만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총 급여액은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환일시금 총 급여액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반환일시금 증가에 대응하여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및 임의계속가입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1988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연금의 평균급여액은 노령연금은 412만 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각각 약 447만 원, 약 261만 원인데 이는 전년도보다 각각 약 18만 원, 약 2만 원, 약 3만 원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일시금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던 총 급여액이 2015년부터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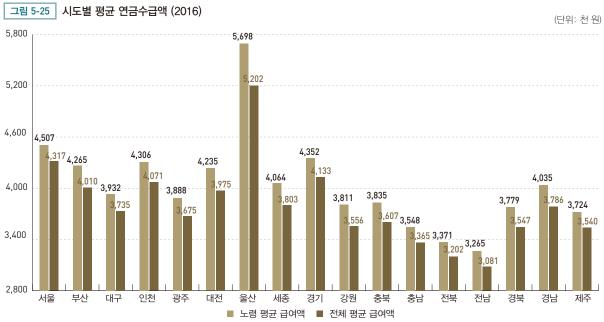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6 국민연금 생생통계 Silver Book

표 5-27 연도별 · 종별 국민연금 연평균 급여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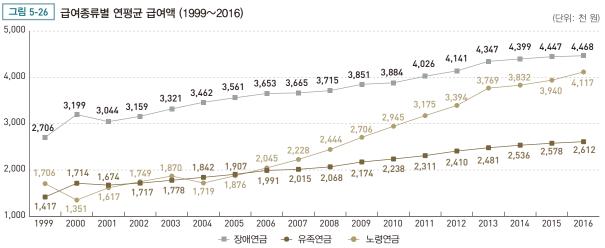
(단위: 천 원)

	구	분	2004	2008	2012	2013	2014	2015	2016
	소계	총 급여액	2,568,966,021	5,764,985,965	10,837,243,194	12,361,972,797	13,087,467,966	14,342,682,741	16,107,102,923
	조계	평균 급여액	1,796	2,427	3,264	3,581	3,637	3,731	3,884
	노령	총 급여액	1,987,450,647	4,765,527,612	9,327,086,191	10,705,594,320	11,295,917,329	12,415,110,788	14,047,956,805
연	포닝	평균 급여액	1,719	2,444	3,394	3,769	3,832	3,940	4,117
금	⊼ ŀ∩U	총 급여액	163,629,119	268,100,552	314,462,857	326,167,915	331,603,350	336,567,621	337,332,457
	장애	평균 급여액	3,462	3,715	4,141	4,347	4,399	4,447	4,468
	0.5	총 급여액	417,886,255	731,357,801	1,195,694,146	1,330,210,562	1,459,947,287	1,591,004,332	1,721,813,661
	유족	평균 급여액	1,842	2,068	2,410	2,481	2,536	2,578	2,612
	소계	총 급여액	345,048,750	415,817,731	713,511,379	750,778,622	692,474,556	841,327,088	961,056,130
	꼬세	평균 급여액	3,096	2,624	3,610	3,731	4,052	4,059	4,042
	장애	총 급여액	29,297,315	47,920,508	34,653,608	38,736,640	34,471,226	35,522,321	36,048,008
일 시	ଓ୴	평균 급여액	8,118	9,776	12,108	12,942	13,003	13,678	13,988
김	반화	총 급여액	303,193,832	348,026,409	648,045,442	679,144,836	618,468,248	759,703,922	874,649,129
	민완	평균 급여액	3,023	2,514	3,671	3,768	4,206	4,204	4,193
	사망	총 급여액	12,557,603	19,870,814	30,812,329	32,897,146	39,535,082	46,100,845	50,358,993
	사임	평균 급여액	1,661	1,313	1,690	1,825	1,863	1,925	1,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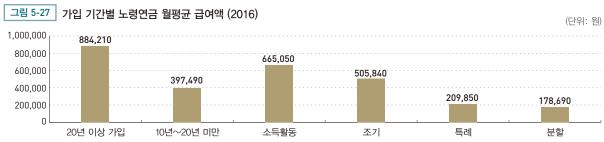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6 국민연금통계연보,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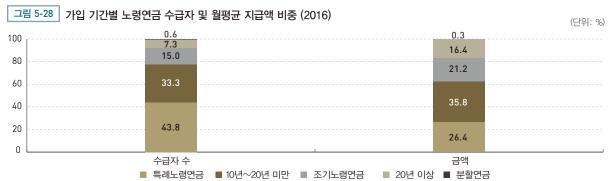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 주: 1) 소득활동 :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세후 월평균 국민연금 A값에 준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 2) 조기노령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거나 세 후 월평균 국민연금 A값에 준하는 소득에 미달할 경우, 정상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 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
 - 3) 분할연금 :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경우, 상대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1세가 되면, 상대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

자료이는 제고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2016 국민연금 생생통계. 2017 원자료: 국민연금 월별사업통계(안)(2016.12)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6 국민연금 생생통계, 2017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6 국민연금 생생통계, 2017

선 건강

- 01 기대수명
- 02 조사망률
- 03 저체중아 발생률
- 04 자살률
- 05 10대 다빈도 상병
- 06 현재 흡연율
- 07 고위험 음주율
- 08 비만율
- 09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 10 평균 재원일수
- 11 1일 외래환자 수
- 12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 13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14 의료보장 적용 인구
- 15 의사 수
- 16 병상 수
- 17 GDP 대비 경상의료비

2 1 7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건강수준	기대수명	건강수명			
		주관적 건강인지율			
	조사망률	연령표준화사망률			
		영아시망률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저체중아 발생률	조산율			
	자살률	정신장애 유병률			
		우울장애 유병률			
	10대 다빈도 상병	암 발생률			
		뇌졸중 의사진단경험률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건강관리	현재 흡연율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청소년 현재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연간 음주율			
		청소년 현재 음주율			
		1인당 알코올소비량			
	비만율	청소년 비만율			
		걷기실천율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			
의료이용	평균 재원일수				
	1일 외래환자 수	1인당 의사진찰 건수			
		1인당 외래방문 횟수			
		산전수진율			
	인플루엔자예방접 종 률	DPT(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률: 1세 대상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만1~18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의료자원	의료보장 적용 인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의사 수	면허의료인 수			
	병상 수	의료기관 수			
	GDP 대비 경상의료비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비의 비중			
		건강보험 급여비			
		건강보험보장률			

Life expectancy at birth

지표 정의

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자가 향후 몇 년을 더 생존할 것인가를 통계적으로 추정한 기대치로, 0세에 대한 기대 여명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기대여명(Life expectancy at age x)은 어느 연령 (x)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로 몇 년을 더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연수이다.

기대수명은 보건, 의료정책수립,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장래인구추계 작성, 국가 간 경제, 사회, 보건 수준의 비교에 널리 이용된다.

측정 산식

0세 이후의 총 생존연수 (정지인구)

0세 생존자 수

유의사항

통계청 생명표와 OECD 통계의 기대수명이 다른 이유는 통계청 생명표는 우리나라 남녀 생존자수 비율을 고려하여 전체 기대수명을 산출하는 반면에 OECD는 남녀 각각의 기대수명을 산술 평균하기 때문이다.

2016년 전체 인구의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남자가 79.3년, 여자가 85.4년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3.0년(2014년* 기준)로 가장 높고, 울산이 80.7년으로 가장 낮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서울이 80.1년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77.1년으로 가장 낮다. 한편, 여자의 기대수명은 제주가 85.9년으로 가장 높고, 울산이 83.2년으로 가장 낮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의 증가속도는 빠른 편이다. 1970년 대비 2015년에 기대수명은 19.8년 증 가했으며, OECD 국가의 평균은 10.7년 증가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생명표 [*]	1971	2016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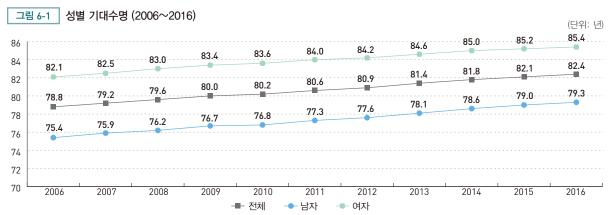
^{*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이 개선되어 과거 공표된 1970-2015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Checkpoint 기대수명은 보건, 의료정책수립,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장래인구추계 작 성, 국가 간 경제, 사회, 보건 수준의 비교에 널리 이용된다.

참고문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7, 2017

^{*} 시도별 기대수명 지표는 2014년이 최근 년도 자료임.



주: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이 개선되어 과거 공표된 '70-'15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2, 0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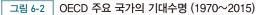
丑 6-1	연도별 ·	시도볔	기대수명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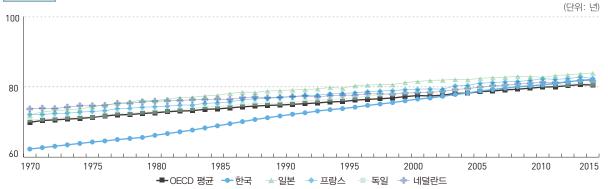
(단위: 년, %)

	전체					남자			여자			
구분	2008	2011	2014	2008년 대비 2014년(%)	2008	2011	2014	2008년 대비 2014년(%)	2008	2011	2014	2008년 대비 2014년(%)
전국	79.6	80.6	81.8	(2.8)	76.2	77.3	78.6	(3.1)	83.0	84.0	85.0	(2.5)
서울	81.1	82.0	83.0	(2.2)	78.2	78.9	80.1	(2.5)	84.1	85.1	85.8	(2.0)
부산	78.3	79.7	81.0	(3.4)	74.9	76.4	77.9	(3.9)	81.8	82.9	84.1	(2.8)
대구	79.0	80.0	81.4	(3.0)	75.7	76.8	78.4	(3.5)	82.4	83.2	84.3	(2.4)
인천	79.5	80.1	81.4	(2.3)	76.3	77.1	78.3	(2.5)	82.7	83.2	84.5	(2.1)
광주	79.4	80.2	81.4	(2.5)	76.4	76.8	78.3	(2.5)	82.4	83.6	84.4	(2.4)
대전	79.8	80.7	82.0	(2.7)	76.8	77.6	79.2	(3.1)	82.8	83.8	84.8	(2.4)
울산	78.7	79.6	80.7	(2.5)	75.8	76.3	78.2	(3.1)	81.6	82.9	83.2	(2.0)
세종	-	-	81.3	[-]	-	-	77.7	(-)	-	-	84.8	(-)
경기	80.1	81.1	82.2	(2.6)	77.1	78.0	79.2	(2.8)	83.2	84.2	85.2	(2.4)
강원	78.6	80.2	80.9	(2.9)	74.9	76.4	77.2	(3.1)	82.3	84.0	84.6	(2.8)
충북	78.8	79.6	81.2	(3.0)	75.1	76.0	77.6	(3.2)	82.4	83.3	84.8	(2.9)
충남	79.3	80.6	81.3	(2.5)	75.7	76.9	77.8	(2.8)	83.0	84.2	84.9	(2.2)
전북	78.8	80.1	81.4	(3.3)	75.1	76.3	77.8	(3.7)	82.5	84.0	85.0	(3.0)
전남	78.7	79.7	81.2	(3.2)	74.6	75.6	77.1	(3.3)	82.8	83.9	85.3	(3.0)
경북	78.6	79.6	81.1	(3.2)	74.7	75.9	77.6	(3.8)	82.5	83.3	84.7	(2.7)
경남	78.5	79.7	80.9	(3.1)	74.7	76.1	77.3	(3.6)	82.3	83.4	84.5	(2.7)
제주	80.7	81.4	82.1	(1.8)	76.4	77.1	78.3	(2.4)	84.9	85.6	85.9	(1.1)

주: 1)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이 개선되어 과거 공표된 '7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7(stats,oecd,org에서 2017. 12. 07. 인출)

²⁾ 세종은 2008년과 2011년의 자료가 없음.

01-1 연관

건강수명

Healthy life expectancy

지표 정의

건강수명(HALE; Healthy Life Expectancy)은 장애나 부상으로 인해 줄어든 생명연수를 고려한 '온전히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평균수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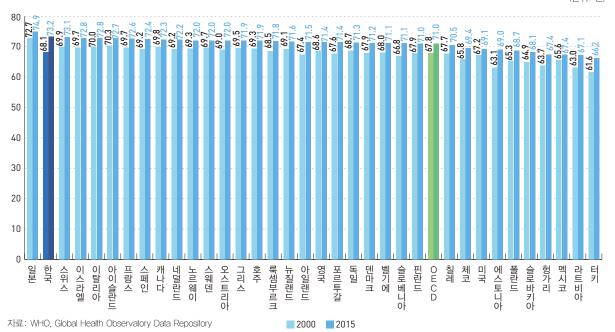
측정 산식

• 출생 시점부터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평균 생존연수

2015년 건강수명은 73.2년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71.0년에 비교해서 2.2년 높다. 2000년 대비 2015년에 건강수명은 5.1년 증가했으며, OECD 국가의 평균은 3.2년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변화(에스토니아: 63.1년→69.0년, 5.9년 증가)이다.

그림 6-3 연도별 OECD 국가의 건강수명

(단위: 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	2015	부정기

01-2 연관

주관적 건강인지율

Perceived health status

지표 정의

만 19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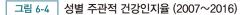
평소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 수
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2016년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32.3%으로, 남자가 35.0%, 여자가 29.8%이다. 연령별로는 19~29세가 43.6%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이 20.6%로 가장 낮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동지역 거주자가 33.3%로 읍면지역 거주자의 26.4%에 비교해서 높다. 소득수준 별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이 37.4%로 다른 집단에 비교해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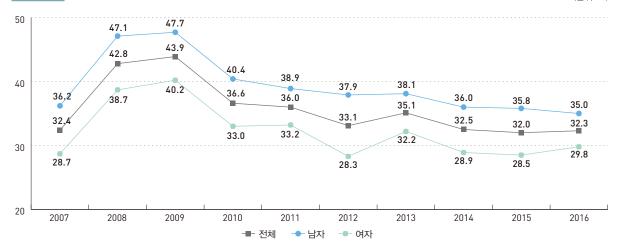
한편,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6년에 들어서 약간 반등하였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6	1년



(단위: %)



주: 1)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을 의미함.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표 6-2 특성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2007~2016)

(단위: %)

													(E11. 70)
구분	전체 ²⁾	연령별						거주지역별 ²⁾		소 득수준 별 ²⁾³⁾			
구군	신세"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32.4	36.6	35.2	31.6	30.9	26.9	22.8	32.1	33.5	28.3	30.0	35.9	34.6
2008	42.8	52.8	41.6	43.6	37.6	35.2	33.6	42.5	44.6	34.4	42.4	45.6	49.2
2009	43.9	52.5	42.8	45.3	40.7	37.7	31.3	44.8	39.7	39.0	41.7	45.2	50.1
2010	36.6	43.4	39.8	34.4	31.5	32.1	27.9	36.5	37.4	33.0	35.1	37.6	41.8
2011	36.0	44.9	34.6	37.1	32.9	27.3	27.1	36.5	34.1	29.4	33.9	38.3	43.5
2012	33.1	46.1	31.4	34.7	26.8	23.2	18.8	33.3	32.8	27.1	31.9	36.4	38.5
2013	35.1	47.6	38.8	34.9	26.4	22.3	18.9	35.1	36.0	32.5	31.5	35.8	41.4
2014	32.5	42.9	33.3	32.1	27.1	23.2	21.4	33.1	28.4	27.4	29.7	33.8	39.5
2015	32.0	40.3	31.6	31.8	29.8	26.7	19.8	32.3	31.8	27.5	29.5	32.7	38.3
2016	32.3	43.6	31.1	31.3	28.1	26.2	20.6	33.3	26.4	29.3	29.6	32.8	37.4

주: 1)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을 의미함.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3)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기구원 주)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02 " #

조사망률

Crude death rate

지표 정의

성별과 연령에 무관하게 1년간 발생한 총사망자 수를 그해 연앙인구*로 나눈 값이다.

사망수준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인구구조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사망률은 한 나라의 보건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동시에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1년 간 발생한 총 사망자 수 해당 연도 연앙인구

2016년 전체 인구의 조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49.4명으로, 남자가 597.5명, 여자가 501.5명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74.8명으로 가장 높고**, 울산이 424.2명으로 가장 낮다. 남자의 조사망률은 전남이 925.3명으로 가장 높고, 울산이 435.5명으로 가장 낮다. 한편, 여자의 조사망률은 전남이 824.3명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387.2명으로 가장 낮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서울과 경기 지역)과 '광역시'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사망률이 낮고,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높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16	1년

Checkpoint

사망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사망의 원인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며, 역으로 원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망률을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린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조사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일이다.

^{*} 그해의 중간일인 7월 1일 기준 인구 수

^{**} 전남은 신생물,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소화계통의 질환, 비뇨생식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음.

그림 6-5 성별 조사망률 (2006~2016)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http://kosis.kr 에서 2017. 12. 05. 인출)

표 6-3 연도별 · 시도별 조사망률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전	체		남자				여자			
구분	2006	2011	2016	2006년 대비 2016년 (%)	2006	2011	2016	2006년 대비 2016년 (%)	2006	2011	2016	2006년 대비 2016년 (%)
전국	495.6	513.6	549.4	(10.9)	545.7	571.1	597.5	(9.5)	445.2	456.0	501.5	(12.6)
서울	374.6	398.6	443.8	(18.5)	417.0	455.0	502.5	(20.5)	332.7	343.3	387.2	(16.4)
부산	520.3	558.7	607.8	(16.8)	587.3	633.3	684.2	(16.5)	453.8	485.2	533.3	(17.5)
대구	449.5	496.9	547.4	(21.8)	499.8	548.9	596.5	(19.3)	399.0	445.2	499.0	(25.1)
인천	420.7	454.7	485.9	(15.5)	463.2	502.2	529.6	(14.3)	377.5	406.6	442.0	(17.1)
광주	406.5	454.9	495.8	(22.0)	435.6	498.8	525.3	(20.6)	377.9	411.7	466.9	(23.6)
대전	404.6	423.1	462.2	(14.2)	443.8	464.0	500.9	(12.9)	365.1	382.1	423.6	(16.0)
울산	373.3	397.2	424.2	(13.6)	393.0	428.4	435.5	(10.8)	352.4	364.4	412.2	(17.0)
세종	-	-	471.3	(-)	-	_	504.7	(-)	-	-	437.7	(-)
경기	396.9	411.7	441.4	(11.2)	437.9	457.5	478.3	(9.2)	355.1	365.2	404.1	(13.8)
강원	690.5	692.7	744.5	(7.8)	775.7	775.0	823.3	(6.1)	604.3	609.3	664.3	(9.9)
충북	637.4	658.4	684.0	(7.3)	698.1	729.5	749.7	(7.4)	575.8	586.3	617.0	(7.2)
충남	686.3	676.4	704.4	(2.6)	750.6	750.6	758.0	(1.0)	621.1	600.4	649.1	(4.5)
전북	706.3	706.3	758.2	(7.3)	764.1	778.7	807.7	(5.7)	649.1	634.4	709.1	(9.2)
전남	825.6	846.0	874.8	(6.0)	907.9	935.7	925.3	(1.9)	743.7	756.4	824.3	(10.8)
경북	736.2	756.4	781.7	(6.2)	805.7	829.3	824.3	(2.3)	666.1	682.8	738.8	(10.9)
경남	596.2	598.0	633.0	(6.2)	649.2	650.0	668.8	(3.0)	542.7	545.4	596.6	(9.9)
제주	532.9	531.6	564.0	(5.8)	548.9	567.8	586.7	(6.9)	517.1	495.3	541.0	(4.6)

주: 세종은 2006년과 2011년의 자료가 없음.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http://kosis.kr 에서 2017. 12. 05. 인출)

연령표준화사망률

02-1

Age-adjusted mortality rate

지표 정의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거한 사망률이다. 이를 위해 표준인구는 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연 앙인구(남녀전체)를 사용한다.

측정 산식

∑ (연령별 사망률 × 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 표준인구 ×100,000

우리나라는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높아져서 노령인구에서의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표준인구의 연령구조를 보정한 연령표준화사망률을 이용하여 연도별로 비교 가능한 사망률을 산출할 수 있으며 산식은 위와 같다.

연령표준화사망률은 조사망률의 흐름과 달리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전체 인구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37.2명으로, 남자가 464.4명, 여자가 237.6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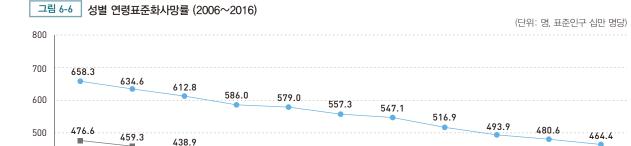
OECD 국가에서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일본이 가장 낮고, 스페인, 호주, 스위스가 그다음으로 낮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11위에 위치하여 다른 국가에 비교하여 사망률이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자와 여자는 다소 격차를 보인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16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7, 2017



414.3

290.6

2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전체 나자 여자

398.4

278.5

392.2

274.7

372.0

261.1

355.7

248.9

347.6

244.4

337.2

237.6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http://kosis.kr 에서 2017. 12. 05. 인출)

310.6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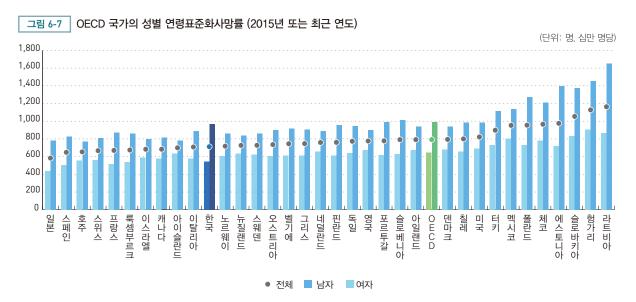
300

341.3

329.9

420.5

296.8



주: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인구로 표준화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7(stats,oecd,org에서 2017, 12, 07, 인출)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0**2-2** ^{연 관}

지표 정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아 수를 그해 출생아 수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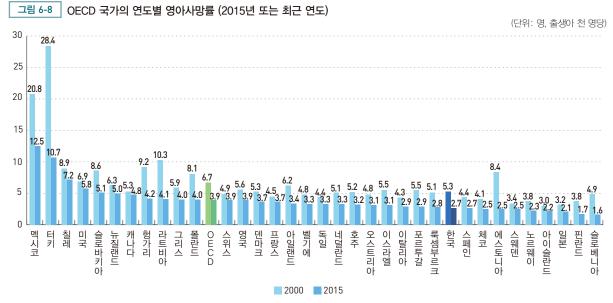
영아사망률은 보건의료제도의 특성과 효과뿐만 아니라, 아이와 산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와 사회적인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측정 산식

출생 후 1세 이내 사망아 수 해당 연도 총 출생아 수 × 1,000

OECD 국가에서의 영아사망률은 전반적으로 낮고, 국가 간에 차이도 크지 않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수준이 낮은 편인 멕시코, 터키, 칠레 등에서 영아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0년 대비 2015년에 영아사망률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미루어본다면 이들 국가의 상황도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2015년 영아사망률은 슬로베니아가 가장 낮고, 핀란드, 일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그다음으로 낮다. 즉,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북유럽국가가 낮은 순위의 위치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출생아 1,000명당 2.7명으로 일본의 2.1명보다는 높지만, OECD 평균인 3.9명보다는 낮다.



주: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인구로 표준화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7(stats,oecd,org에서 2017, 12, 0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Health Statistics	-	2015	1년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02-3

Cause-specific mortality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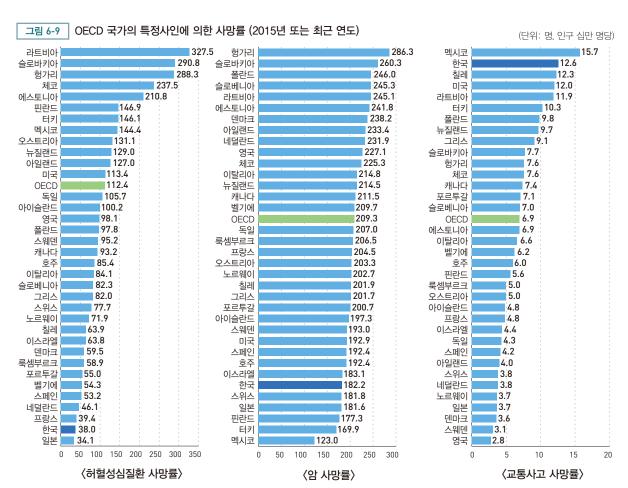
지표 정의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인구로 나누어 추정한다. 사망원인 분류는 ICD-10을 기반으로 한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에 따른다. 여기에서 허혈성심질환은 I20-I25, 암은 C00-C97이다. 교통사고(육상 운수사고)는 외인사(인체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사망) 중에 하나로 V01-V89이다. OECD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2010년 OECD 인구로 연령표준화를 해준다.

측정 산식

특정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 수 인구 수

우리나라의 허혈성심질환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으며, 암 사망률도 여섯 번째로 낮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률은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다.



주: 1)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인구로 표준화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한국은 2015년 기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2014년 수치가 비교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7(stats.oecd.org에서 2017. 12. 0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Health Statistics	-	2015	1년

03

저체중아 발생률

Low birth weight rate

지표 정의

전체 출생아 중 출생체중 2.5kg 미만 출생아의 비율이다.

저체중이 발생률은 영아의 질병 및 사망과 관련 있는 중요 지표로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모자보건의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이다.

측정 산식

체중 2.5㎏ 미만의 출생아 수 한 해 동안 출생한 출생아 수

유의사항

출생통계자료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년도 4월까지(16개월) 전국 행정기관에 출생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이다.

2016년 저체중 출생아의 비율은 5.9%로, 단태아가 3.8%, 다태아가 57.6%이다. 우리나라의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지난 10년간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2006년 대비 2016년에 전체 저체중 출생아의 비율은 1.5%p 증가했으며, 단태아는 0.5%p, 다태아는 9.4%p 증가했다. 저체중 출생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산모의 임신 중의 영양이나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태아의 성장이 제한되거나 조산으로 인한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는 영아의 이환(罹患) 및 사망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혼으로 인한 만산 현상은 저체중 출생아 비중 증가의 주된 원인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저체중아 발생률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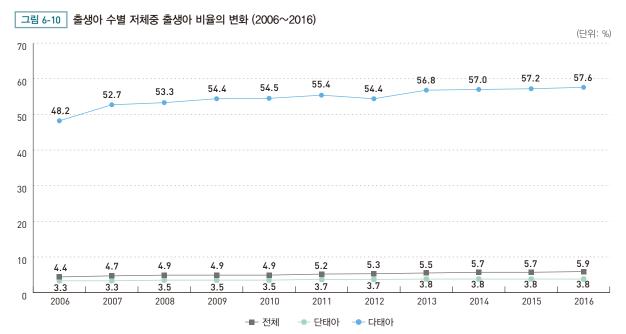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16	1개월

Checkpoint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맞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출생아의 건강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저체중 출생아의 비율이 늘고 있어서 걱정이다. 저체중 출생아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 박문일, 우리나라의 저출산 환경에서 임신 전 관리의 중요성, 대한의사협회지, 54(8), 796-798, 201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 복지 실태조사, 2015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16년 출생 통계(확정), (2017. 8. 30.)

표 6-4 체중별 출생아의 구성비 (2016)

(단위: %)

구분	전체	단태아	다태아
저체중아(2.5kg 미만)	5.9	3.8	57.6
정상체중아(2.5~4.0kg 미만)	90.9	92.8	42.4
과체중아(4.0kg 이상)	3.3	3.4	0.0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16년 출생 통계(확정), (2017. 8. 30.)

03-1 연관

Premature birth rate

지표 정의

전체 출생아 중 임신(재태)주수 37주 미만에 출생한 출생아의 비중이다.

조산이는 저체중이와 함께 영아이환 및 사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 출생아이므로 조산율은 저출산에 대응한 모자보건의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이다.

측정 산식

37주 미만 출생아 수 한 해 출생한 출생아 수

조산아(재태주수 37주 미만에 출생한 출생아)는 만삭아(재태주수 37주 이상에 출생한 출생아)에 비해 신체기능이 떨어지고 이환 및 사망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조산율은 고령 임신, 난임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 등 고위험 임신의 증가와 함께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6년 대비 2016년에 조산율은 2.3%p 증가했으며, 조산모의 평균 연령은 2.0세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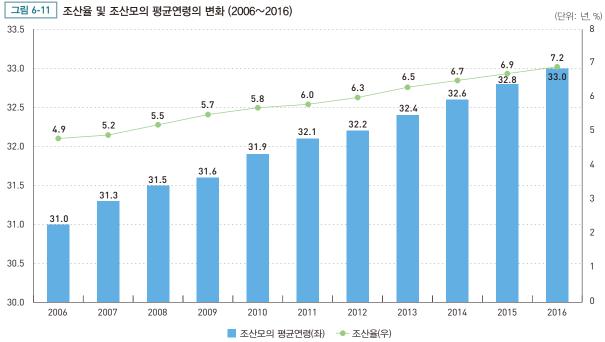
2016년 조산율은 7.2%로, 단태아가 5.0%, 다태아가 62.1%이다. 이는 다태아의 증가가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산모 연령의 증가, 난임 및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의 증가가 앞으로도 지속할 전망이어서 조산율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monitoring)이 필요하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16	1개월

참고문헌

- 박문일, 우리나라의 저출산 환경에서 임신 전 관리의 중요성, 대한의사협회지, 54(8), 796-798, 201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cdot 복지 실태조사, 2015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16년 출생 통계(확정), (2017. 8. 30.)

표 6-5 임신기간별 출생아의 구성비 (2016)

(단위: %)

구분	전체	단태아	다태아
37주 미만 출산	7.2	5.0	62.1
37주 ~ 41주 출산	92.6	94.8	37.9
42주 이상 출산	0.1	0.1	0.0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16년 출생 통계(확정), (2017. 8. 30.)

04

자살률

Suicide rate

지표 정의

자살률은 연간 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수를 그해 연앙인구*로 나눈 값이다.

자살률은 국가의 정신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을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행위로 정신질환이나 신체질병이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측정 산식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수 해당 연도 연앙인구

2016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6명으로, 남자가 36.2명, 여자가 15.0명이다. 지역별로 는 충북이 32.8명으로 가장 높고, 서울과 경기가 23.0명으로 가장 낮다. 남자의 자살률은 충북이 47.9명으로 가장 높고, 세종이 31.8명으로 가장 낮다. 한편, 여자의 자살률은 충남이 18.8명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12.5명으로 가장 낮다. 연령별로 살펴볼 경우, 65세 이상의 인구 집단이 인구 10만 명당 53.3명으로 가장 높다.

OECD 국가에서의 자살률은 터키가 가장 낮고, 그리스, 이스라엘, 멕시코가 그다음으로 낮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이는 1990년 이후 OECD 국가에서의 자살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9.9%p 증가한 결과이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6명으로 2015년 26.5명보다 0.9명 감소하였다(남자 37.5명 → 36.2명, 여자 15.5명 → 15.0명). 비록 자살률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지만, 1990~2000년대에 비교해서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바, 자살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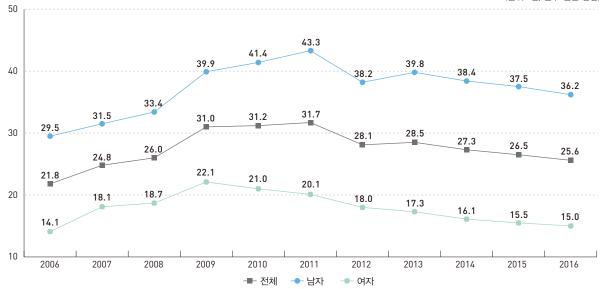
참고문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7, 2017

^{*} 그해의 중간일인 7.1일 기준 인구 수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주: 연령표준화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http://kosis.kr 에서 2017. 12. 06.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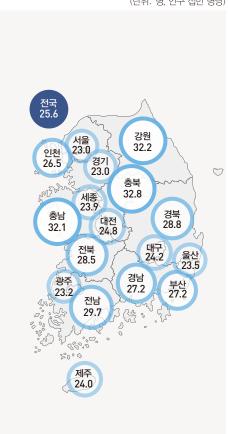
丑 6-6 시도별 · 연령별 자살률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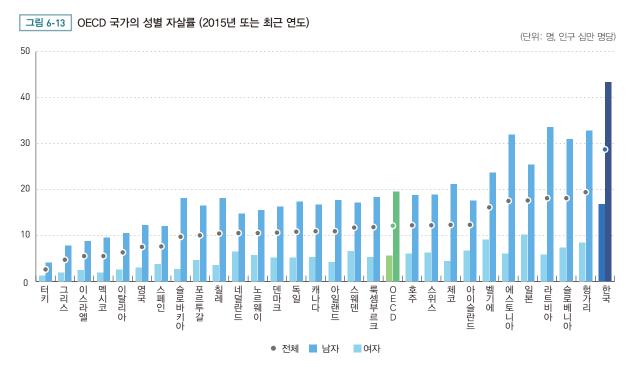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전	ᆀ			님	자			여	자	
구분	계	15세 미만	15~64 세	65세 이상	계	15세 미만	15~64 세	65세 이상	계	15세 미만	15~64 세	65세 이상
전국	25.6	0.3	25.3	53.3	36.2	0.3	35.3	87.5	15.0	0.3	14.9	28.4
서울	23.0	0.5	22.9	45.2	32.5	0.8	31.9	71.9	13.9	0.2	14.1	24.1
부산	27.2	0.2	27.7	46.1	40.0	0.5	40.3	75.2	14.7	-	14.8	24.2
대구	24.2	0.6	23.3	53.0	33.8	0.6	32.2	87.3	14.7	0.6	14.2	28.5
인천	26.5	-	26.6	60.1	35.7	-	35.3	95.0	17.2	-	17.5	34.3
광주	23.2	-	24.1	48.2	32.2	-	32.5	82.4	14.4	-	15.6	23.6
대전	24.8	0.5	25.1	55.7	34.4	-	35.9	78.3	15.3	0.9	14.0	38.7
울산	23.5	-	24.4	54.3	33.3	-	33.1	100.2	13.1	-	14.9	18.6
세종	23.9	-	28.0	43.3	31.8	-	37.4	62.9	15.9	-	18.2	29.6
경기	23.0	0.4	23.0	55.5	32.0	0.2	31.9	87.4	13.9	0.5	13.7	31.7
강원	32.2	-	30.7	62.6	45.8	-	43.1	102.2	18.4	-	17.0	34.2
충북	32.8	0.5	31.0	70.8	47.9	-	44.2	124.8	17.4	1.0	16.7	32.6
충남	32.1	0.3	30.0	68.3	45.0	0.7	40.6	115.3	18.8	-	18.1	34.6
전북	28.5	0.4	26.4	57.1	41.8	-	38.0	99.9	15.2	0.8	14.0	27.7
전남	29.7	0.4	29.4	48.7	43.9	0.8	41.7	88.1	15.4	-	15.5	22.8
경북	28.8	-	28.4	50.4	40.9	-	39.8	82.6	16.6	-	15.9	28.3
경남	27.2	0.2	27.8	51.9	38.2	0.4	38.1	89.0	16.1	-	16.7	27.1
제주	24.0	-	22.8	57.8	35.5	-	32.7	105.5	12.5	-	12.1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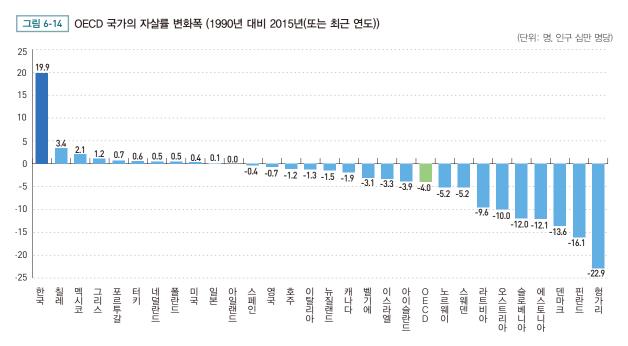
주: 연령표준화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http://kosis.kr 에서 2017. 12. 06. 인출)





주: OECD Health Statistics는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OECD 기준 인구에 따른 바, 국가 간 연령구조의 차이가 제거되어 통계청의 자살률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OECD Health Data, 2017(stats,oecd,org에서 2017. 12, 07. 인출)



주: OECD Health Statistics는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OECD 기준 인구에 따른 바, 국가 간 연령구조의 차이가 제거되어 통계청의 자살률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OECD Health Data, 2017(stats,oecd,org에서 2017, 12, 07, 인출)

정신장애 유병률

04-1 연관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s

지표 정의

지난 1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한 번 이상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단, 조사의 시점에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혹은 입소 중인 환자는 제외하며, 조사 결과는 성과 연령을 보정한다.

측정 산식

일년동안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앍은 적이 있는 사람의 수 조사대상 인구 수

2016년에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모든 정신장애 유병률)은 11.9%로, 남자가 12.2%, 여자가 11.5%이다. 유형에 따른 발생 분포를 살펴보면, 알코올 장애와 니코틴 장애는 남자의 유병률이 높고, 기분장애와 불안장애는 여자의 유병률이 높다.

표 6-7 연도별 · 성별 정신장애 유병률

(단위: %)

구분		2006		2011			2016		
TE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알코올사용장애	5.6	8.7	2.5	4.4	6.6	2.1	3.5	5.0	2.1
니코틴사용장애	6.0	10.8	1.1	4.0	7.0	0.9	2.5	4.5	0.6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0.3	0.4	0.2	0.4	0.2	0.5	0.2	0.2	0.2
기분장애	3.0	2.1	3.9	3.6	2.3	4.9	1.9	1.3	2.5
불안장애	5.0	3.2	6.9	6.8	3.7	9.8	5.7	3.8	7.5
모든 정신장애	17.1	20.7	13.5	16.0	16.2	15.8	11.9	12.2	11.5

주: 1)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는 조현병 및 관련 장애, 단기정신병적장애를 포함함.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조사	2001	2016	5년

²⁾ 모든 정신장애는 지난 일 년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대상자를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조사, 각 연도(http://kosis.kr 에서 2017. 12. 06. 인출)

우울장애 유병률

Prevalence of depressive disorders

0**4-2**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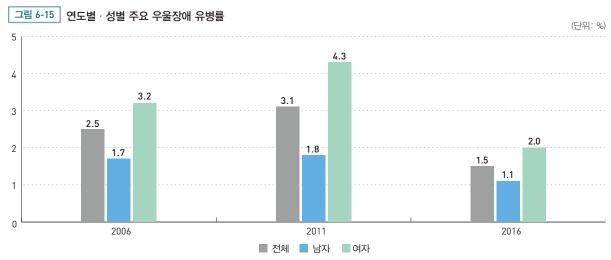
우울장애 유병률은 지난 1년 동안 '주요 우울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우울 장애는 기분장애의 하위 항목이다. 여기에서 기분장애는 기분이 지나치게 침울하거나 들떠 있어 기분의 조절이 어렵고,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기분이 장시가 지속되어 일상생활과 대인관계가 어렵고, 직업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뜻한다.

측정 산식

일 년 동안 주요 우울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수 조사대상 인구 수

2016년 주요 우울장애 유병률은 인구 1.5%로, 남자가 1.1%, 여자가 2.0%이다. 이는 2006년 2.5%(남자 1.7%, 여자 3.2%), 2011년 3.1%(남자 1.8%, 여자 4.3%)에 비교해서 감소한 것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조사, 각 연도(http://kosis.kr 에서 2017. 12. 0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조사	2001	2016	5년

05 H

10대 다빈도 상병

Ten Most frequent diseases

지표 정의

우리나라 국민에게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발생된 상병을 의미한다. 입원서비스와 외래서비스 각각에 있어서 진료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측정 산식

• 특정 상병으로 발생된 의료서비스

2016년 입원서비스의 다빈도 상병을 살펴보면, '출산장소에 따른 생존출생', '감염성 및 상세불 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노년성 백내장'으로 인한 입원이 많다. 진료비 규모에서는 '무릎관절증'으로 인한 지출이 많다. 다빈도 입원서비스는 성별에 따라서 순위에 차이가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순위가 큰 폭으로 바뀌었다.

외래서비스의 경우에는 '급성 기관지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급성 편도염'으로 인한 방문이 많다. 성별에 따라서는 입원서비스와 달리 남자와 여자의 순위가 비슷하다. 두 집단에 있어서 1위부터 5위까지의 다빈도 상병이 일치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급성 기관지염'은 2006년 1위, 2011년 1위에 이어, 2016년에도 1위로 줄곧 상위에 있는 한편,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은 2006년 10위에서 2011년 5위, 2016년 3위로 순위가 급속하게 올라왔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994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입원과 외래의 10대 다빈도 상병은 항목과 순위에서 과거(2006년 및 2011년)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질병 구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丑 6-8 입원서비스 다빈도 상병 (단위: 명, 일, 천 원, 위)

	78		20	116		성별 L	내 순위	순위	변화
	구분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진료비	급여비	남자	여자	2006	2011
1.	출산장소에 따른 생존출생 (Z38)	352,412	1,544,922	71,687,355	70,140,957	1	2	3	1
2.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A09)	341,429	1,333,273	202,595,192	157,968,845	3	1	7	7
3.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302,412	3,025,180	540,998,128	434,737,015	2	5	4	2
4.	노년성 백내장 (H25)	272,476	417,427	346,432,629	277,871,711	5	4	5	3
5.	기타 추간판 장애 (M51)	266,582	2,240,159	263,359,705	200,745,702	4	6	9	6
6.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K64)	179,811	531,262	171,094,236	139,142,928	6	8	1	5
7.	단일 자연분만 (O80)	163,003	533,166	182,826,046	179,545,905	-	3	2	4
8.	무 릎 관절증 (M17)	117,917	2,607,183	597,678,205	467,217,994	53	7	32	11
9.	기타 척추병증 (M48)	117,243	1,524,326	231,139,812	176,710,727	14	9	27	15
10.	급성 기관지염 (J20)	115,257	628,852	70,068,914	56,869,208	9	12	33	20

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7차 개정으로 치핵(I84)이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K64)으로 변경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외래서비스 다빈도 상병 丑 6-9

(단위: 명, 일, 천 원, 위)

78		2	016		성별 L	내 순위	순위	변화
구분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진료비	급여비	남자	여자	2006	2011
1. 급성 기관지염 (J20	16,429,000	112,508,556	1,556,537,802	1,148,644,102	1	1	1	1
2. 치은염 및 치주질횐	! (K05) 14,192,958	36,319,209	1,182,311,930	522,075,564	2	2	4	2
3. 혈 관운동 성 및 알러 비염 (J30)	르기성 6,715,938	31,452,527	451,970,591	324,761,901	3	3	10	5
4. 급성 편도염 (J03)	6,468,944	25,963,574	384,937,285	280,978,914	4	4	2	3
5. 다발성 및 상세불명 급성 상기도 감염 (3 24,366,995	327,936,943	237,143,280	5	5	3	4
6. 치아우식 (K02)	5,656,45	10,121,823	337,514,075	238,636,117	7	7	5	7
7. 본태성(일차성) 고혈	열 압 (I10) 5,648,694	79,916,091	2,825,355,377	2,008,226,742	6	9	12	9
8. 위염 및 십이지장염	(K29) 5,379,23	7 18,835,094	384,812,689	265,659,018	12	6	8	6
9. 등통증 (M54)	4,980,950	31,936,916	748,504,952	539,159,535	13	8	16	13
10. 급성 인두염 (J02)	4,954,709	19,900,539	264,276,023	193,163,152	9	10	9	8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암 발생률

05-1

Incidence of cancer

지표 정의

암 발생률은 조사시점(2015년도)에 새롭게 발생한 암환자 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인구 10만 명당암이 발생하는 비율이다.

측정 산식

새롭게 발생한 암 환자 수 주민등록 연앙인구

2015년 모든 암의 조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421.4명(남자 445.2명, 여자 397.6명)이고, 이를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로 표준화하면 인구 십만 명당 275.8명(남자 301.2명, 여자 266.1명)이다. 조발생률 순서에 따르면 위암(인구 10만 명당 57.3명)이 가장 많고, 대장암(52.6명), 갑상선암(49.1명), 폐암(47.6명), 유방암(37.7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모든 암의 5년 상대생존율(2011년~2015년)은 70.7%(남자 62.8%, 여자 78.4%)이다. 생존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갑상선암(100.3%)이고, 전립선암(94.1%)과 유방암(92.3%)도 생존율이 높은 편이다. 한편 췌장암은 10.8%의 낮은 생존율을 보여 발병 시 매우 치명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10 주요 암종별 발생률과 5년 상대생존율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

(E11-6, E1 B2 66, A										
구분	조발생률 (2015년, 인구 십만 명당)				령표준화 발생 년, 인구 십만		5년 상대생존율 (2011년~2015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모든 암(C00-C96)	421.4	445.2	397.6	275.8	301.2	266.1	70.7	62.8	78.4	
위(C16)	57.3	76.8	37.9	35.2	50.6	22.1	75.4	76.3	73.7	
대장(C18-C20)	52.6	62.5	42.7	31.6	41.4	23.3	76.3	78.0	73.6	
갑상선(C73)	49.1	21.2	77.1	42.0	18.3	66.3	100.3	100.6	100.2	
폐(C33-C34)	47.6	66.8	28.4	26.8	42.9	14.7	26.7	22.7	35.8	
유방(C50)	37.7	0.3	75.1	28.1	0.2	55.9	92.3	87.1	92.3	
간(C22)	30.9	46.1	15.8	18.8	30.3	8.4	33.6	34.1	32.2	
전립선(C61)	20.0	40.1	-	11.2	25.5	-	94.1	94.1	-	
췌장(C25)	12.4	13.2	11.7	7.1	8.6	5.8	10.8	10.3	11.5	
담낭 및 기타 담도(C23-C24)	12.3	12.6	11.9	6.7	8.1	5.6	29.1	30.2	28.0	
신장(C64)	8.9	12.3	5.6	6.0	8.6	3.6	82.2	81.6	83.6	

주: 1) 2015년을 기준으로 조발생률이 높은 10개 암종의 정보만 제시함.

자료: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2017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1999	2015	1년

²⁾ 상대생존율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동일한 연도, 성별. 연령인 일반인의 5년 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함. 예를 들어, 상대생존율이 100%라면 일반인과 생존율이 같음을 의미함. 갑상선암의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이 100%를 넘는 것은 갑상선암에 걸린 환자가 5년 동안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나이와 성별의 일반인구와 비교하였을 때 갑상선암 환자의 생존율이 더 높다는 의미임.

뇌졸중 의사진단경험률

Prevalence of cerebrovascular diseases

05-2

지표 정의

만 30세 이상 조사 대상자 중 '의사로부터 뇌졸중을 진단받은 적이 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의사로부터 뇌졸중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사람 수 만 30세 이상 대상자 수

* 2015년까지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표가 공표되었으나, 2016년부터 만 30세 이상으로 변경됨.

2016년 뇌졸중 의사진단경험률(만 30세 이상)은 1.7%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의사진단경험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70세 이상이 6.7%로 가장 높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동지역 거주자가 1.7%로 읍면지역 거주자의 1.6%에 비교해서 높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가장낮은 집단이 2.6%로 다른 집단에 비교해서 높다.

표 6-11 특성별 뇌졸중 의사진단경험률 (2007~2016)

(단위: %)

구분	전체 ¹⁾			연령별			거주지	역별 ¹⁾		소득수	준별 ¹⁾²⁾	
구군	신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2.2	0.0	0.9	2.6	5.5	7.8	2.2	2.4	2.6	2.5	1.3	2.2
2008	1.8	0.1	0.2	1.8	5.3	8.0	1.8	2.0	2.0	2.0	1.7	1.3
2009	1.6	0.0	0.7	1.5	4.2	5.6	1.5	2.0	2.4	1.7	1.4	0.8
2010	1.3	0.2	0.1	2.0	2.6	5.0	1.4	1.1	1.6	1.1	1.6	0.7
2011	1.7	0.1	0.2	1.0	5.9	6.5	1.8	1.4	2.0	1.7	1.9	1.0
2012	1.3	0.1	0.7	0.9	3.5	4.6	1.5	0.7	1.7	1.0	1.2	1.0
2013	2.2	0.3	0.7	3.0	4.8	7.9	2.1	2.6	3.0	1.8	1.4	2.5
2014	1.7	0.1	0.6	1.2	4.6	7.1	1.7	1.5	3.2	1.2	1.0	1.4
2015	1.7	0.0	0.3	1.5	4.4	8.4	1.8	1.2	2.5	1.6	1.1	1.8
2016	1.7	0.1	0.6	2.1	3.7	6.7	1.7	1.6	2.6	1.6	1.2	1.1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기구균등화소득(월기구소득/√기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 복 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6	1년

05-3

고혈압 유병률

Prevalence of hypertension

지표 정의

만 30세 이상 조사 대상자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사람 수 만 30세 이상 대상자 수

2016년 고혈압 유병률(만 30세 이상)은 29.1%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70세 이상이 69.2%로 가장 높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지역 거주자가 29.2%로 동지역 거주자의 29.1%에 비교해서 높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이 31.6%로 다른 집단에 비교해서 높다.

표 6-12 특성별 고혈압 유병률 (2007~2016)

(단위: %)

			`	,								(LTI: 70)
구분	전체 ¹⁾			연령별			거주지	역별 ¹⁾		소득수	준별 ¹⁾²⁾	
T판	건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24.5	7.5	15.7	33.6	45.9	60.2	24.9	24.6	29.0	24.1	21.2	25.2
2008	26.2	9.9	19.3	34.2	46.8	56.6	26.1	26.4	27.7	26.2	26.4	24.5
2009	26.3	7.3	18.2	35.3	50.5	63.1	26.9	24.2	25.4	28.3	25.7	25.6
2010	26.8	7.2	17.0	37.3	55.6	61.2	27.4	25.3	28.3	26.4	26.7	26.1
2011	28.4	9.1	21.1	33.8	55.4	66.6	28.5	29.2	27.7	29.8	28.2	27.3
2012	28.9	9.5	22.6	34.5	54.0	66.4	29.0	29.0	29.3	29.8	29.6	26.4
2013	27.2	9.7	19.5	35.9	48.7	62.3	27.3	27.4	26.7	29.8	26.5	26.0
2014	25.4	7.3	17.7	32.0	48.5	63.5	25.6	24.4	26.1	25.6	27.4	22.5
2015	27.8	8.7	20.7	33.9	51.8	67.5	27.4	30.9	32.8	27.4	26.1	25.3
2016	29.1	10.3	21.7	36.5	50.9	69.2	29.1	29.2	31.6	26.5	29.7	28.7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6	1년

05-4

당뇨병 유병률

Prevalence of diabetes

지표 정의

만 30세 이상 조사 대상자 중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당뇨병은 심혈관계 합병증과 실명, 조기사망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인병으로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노령화에 따라 당뇨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측정 산식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고 있는 사람 수 만 30세 이상 대상자 수

2016년 당뇨병 유병률(만 30세 이상)은 11.3%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70세 이상이 29.1%로 가장 높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지역 거주자가 14.8%로 동지역 거주자의 10.7%에 비교해서 높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이 13.7%로 다른 집단에 비교해서 높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은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6	1년

참고문헌

• OECD, Health at a Glance 2017,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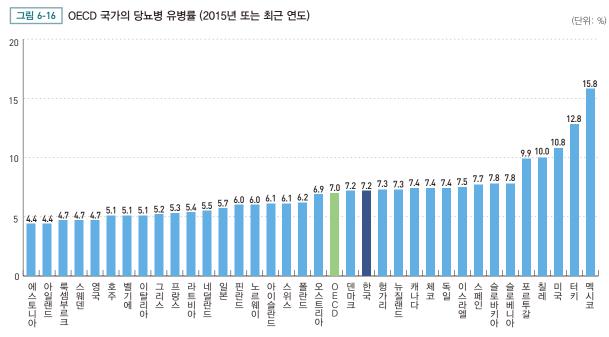
표 6-13 특성별 당뇨병 유병률 (2007~2016)

(단위: %)

714	TJ=U1)			연령별			거주지	역별 ¹⁾		소득수	준별 ¹⁾²⁾	(211. %)
구분	전체 ¹⁾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9.5	4.2	5.7	13.4	19.7	17.5	10.1	7.5	10.7	9.7	8.7	9.2
2008	9.7	2.1	7.6	12.6	21.1	19.2	10.2	8.2	12.5	9.6	7.8	8.4
2009	9.6	2.5	5.8	12.3	22.0	21.8	10.0	8.6	10.3	10.4	8.6	8.7
2010	9.6	2.8	6.6	13.1	17.6	23.4	10.1	9.1	10.7	10.9	7.8	8.8
2011	9.7	2.5	6.6	13.8	19.6	21.5	9.4	11.1	10.6	9.2	9.4	9.9
2012	9.0	1.9	5.0	12.6	20.3	22.0	9.0	9.6	11.0	9.2	7.8	7.6
2013	11.0	2.5	7.3	12.6	25.2	27.6	11.3	10.0	12.7	10.9	10.6	9.8
2014	10.1	2.2	7.4	11.9	22.6	24.0	10.5	9.2	13.3	9.2	8.4	9.7
2015	9.5	2.9	7.0	9.7	19.7	24.4	9.5	9.5	12.8	9.6	7.0	8.8
2016	11.3	2.7	8.0	14.2	21.8	29.1	10.7	14.8	13.7	10.9	10.5	9.7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주: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인구로 표준화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17, 2017(원자료: IDF Atlas, 7th Edition, 2015,)

²⁾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06

현재 흡연율

Current Smoking Rate

지표 정의

만 19세 이상 조사 대상자 중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이다.

흡연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도 매년 5백만 명의 규모에 이르고 있다. 흡연은 심혈관계 질환과 암 발생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위험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흡연은 말초혈관질환,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주요한 위험요인이 되며, 임신부의 경우 저체중아 출산과 신생아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측정 산식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으로 응답한 사람 수
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2016년 현재 흡연율(만 19세 이상)은 23.9%로, 남자가 40.7%, 여자가 6.4%이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30.4%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이 9.1%로 가장 낮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지역 거주자가 28.8%로 동지역 거주자의 23.1%에 비교해서 높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이 25.6%로 다른 집단에 비교해서 높다. 한편,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OECD 국가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6	1년

Checkpoint

현재 흡연율은 2010년 이후 미미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들어서 상승하였다. 2016년 현재 흡연율은 23.9%로 2015년 22.6%보다 1.3%p 증가하였다(남자 39.4% → 40.7%, 여자 5.5% → 6.4%).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7, 2017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표 6-14 특성별 현재 흡연율 (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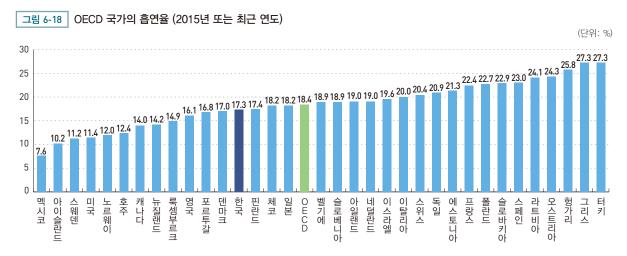
(단위: %)

			•		•								(11.70)
구분	전체 ¹⁾			연	령별			거주지	역별 ¹⁾		소득수	준별 ¹⁾²⁾	
l Œ	L'^ '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25.3	27.8	32.0	27.0	19.3	17.0	12.8	25.3	25.1	30.7	25.0	23.6	22.2
2008	27.8	33.9	32.4	27.7	22.5	18.8	16.0	27.7	27.7	32.1	29.3	26.2	23.4
2009	27.3	32.4	32.8	27.5	22.9	18.4	13.2	26.8	28.9	31.1	28.7	27.0	21.6
2010	27.5	27.8	35.0	30.5	25.1	16.1	12.6	27.0	28.5	31.9	26.6	25.3	25.3
2011	27.1	28.3	36.6	25.7	24.5	17.5	14.3	26.2	31.6	31.5	26.8	25.1	24.8
2012	25.8	28.0	32.5	27.7	24.6	13.4	10.9	25.4	28.2	29.3	27.1	22.0	23.6
2013	24.1	24.1	30.7	26.9	22.0	17.4	8.0	23.3	27.5	28.7	25.3	22.3	20.4
2014	24.2	22.5	30.0	29.2	20.6	18.2	10.1	23.4	29.7	27.5	25.0	24.6	19.8
2015	22.6	23.7	27.7	25.4	20.8	14.1	9.0	22.4	23.6	24.5	23.3	22.7	19.6
2016	23.9	25.4	30.4	25.0	22.7	14.6	9.1	23.1	28.8	25.6	24.4	23.3	22.2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주: OECD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매일 흡연하는 인구의 비율을 비교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7(stats.oecd.org에서 2017, 12, 07, 인출)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Cigarettes Smoked Per Day Among Current Smokers

06-1

지표 정의

만 19세 이상의 '현재 흡연자'가 하루 평균 피우는 담배 개비 수이다.

측정 산식

하루 평균 흡연한 개비의 합 만 19세 이상 현재 흡연자 수

2016년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13.1개비이다. 연령별로는 40~49세와 50~59세가 15.1개비로 가장 많고, 19~29세가 10.8개비로 가장 적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이 13.6개비로 다른 집단에 비교해서 많다. 전체적으로 이는 2015년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표 6-15 특성별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2007~2016)

(단위: 개비)

구분	전체 ²)	연령별						거주지역별 ²⁾		소득수준별 ²⁾³⁾			
十元	선세")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16.1	13.1	16.8	19.2	18.0	14.9	11.7	15.8	-	16.1	-	-	-
2008	15.9	13.6	15.6	17.8	19.5	15.2	11.5	15.4	18.0	16.2	15.8	16.0	15.1
2009	15.5	12.1	15.4	18.3	18.5	16.4	11.1	15.2	16.7	15.7	15.8	15.5	14.7
2010	15.2	12.3	14.6	17.2	18.5	15.1	13.8	15.1	-	14.8	15.6	14.6	16.0
2011	15.3	13.2	14.8	17.7	16.6	16.7	11.0	14.9	-	14.0	15.3	16.3	-
2012	14.7	12.0	14.3	17.5	16.2	16.5	10.7	14.2	-	14.8	14.1	14.9	-
2013	14.6	12.9	14.4	16.1	16.8	15.3	11.0	14.5	-	-	-	14.4	-
2014	14.7	12.9	14.3	15.9	16.8	15.1	13.6	14.4	-	14.6	-	15.0	-
2015	13.4	10.3	13.2	15.4	16.0	14.8	10.5	13.3	-	13.8	-	13.2	12.0
2016	13.1	10.8	12.7	15.1	15.1	13.0	11.8	12.9	14.4	13.6	13.1	12.8	-

- 주: 1) 연령대별 자료수가 20명 미만으로 연령표준화 결과를 제시하지 않음('-'로 표시).
 -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 3)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6	1년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06-2

Nonsmoker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in workplace

지표 정의

만 19세 이상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 중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은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최근 7일동안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 만 19세 이상,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현재 비흡연자 수

* 2013년부터 '최근 7일 동안'이라는 기준이 포함됨.

최근에 간접흡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거리, 금연 정거장 등을 조성하여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 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루의 1/3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도 간접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2016년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17.4%로 2014년에 비해 22.7%p 줄어든 것으로 지자체의 각종 노력의 결실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50~59세가 21.0%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이 8.3%로 가장 낮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지역 거주자가 23.2%로 동지역 거주자의 16.6%에 비교해서 높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이 18.9%로 다른 집단에 비교해서 높다.

표 6-16 특성별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2007~2016)

(단위: %)

78	T4=112\	연령별						거주지역별 ²⁾		소득수준별 ²⁾³⁾			
구분	전체 ²)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46.0	53.4	51.2	45.0	45.5	35.3	24.3		48.4	46.7	-	-	-
2008	45.4	56.5	49.9	44.2	45.0	30.6	21.7	46.6	44.8	45.7	45.8	46.3	45.4
2009	45.8	50.7	53.5	50.0	43.3	33.1	14.0	46.7	45.5	47.4	47.8	45.7	43.1
2010	49.2	58.3	57.3	49.7	46.8	36.3	15.5	48.8	52.6	50.8	47.8	47.5	51.6
2011	45.2	56.5	50.9	45.8	39.6	29.5	22.4	45.1	51.0	41.7	45.2	46.4	47.2
2012	46.1	59.1	52.4	45.8	40.3	32.8	15.0	46.4	44.1	43.0	46.3	46.6	48.4
2013	47.4	47.6	47.9	51.7	51.8	42.0	30.1	47.5	45.8	47.2	49.4	45.4	47.0
2014	40.1	43.0	42.1	42.5	44.5	29.7	22.5	41.3	37.0	43.0	36.0	42.5	40.6
2015	26.9	26.4	27.1	29.1	31.8	24.9	13.5	25.1	36.7	29.3	26.4	26.5	25.4
2016	17.4	20.3	15.9	18.8	21.0	13.1	8.3	16.6	23.2	18.9	16.7	18.3	15.9

주: 1) 연령대별 자료수가 20명 미만으로 연령표준화 결과를 제시하지 않음('-'로 표시).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6	1년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³⁾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기구원 주)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청소년 현재 흡연율

Current Smoking Rate of Adolescents

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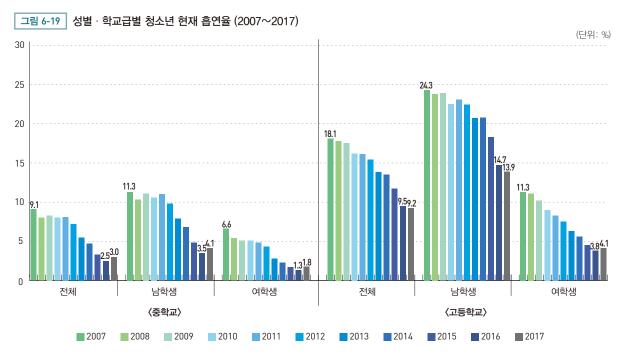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청소년(중1~고3)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수 조사 대상자 전수

2017년 청소년 현재 흡연율은 중학생이 3.0%, 고등학생이 9.2%이다.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율은 13.9%로 여전히 높아 이들에 대한 시급한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2017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5	2017	1년

07 H H

고위험 음주율

High Risk Alcohol Consumption

지표 정의

만 19세 이상 조사 대상자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최근 1년간 음주빈도 문항 주2회 이상 응답자이면서 1회 음주량 문항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 응답자 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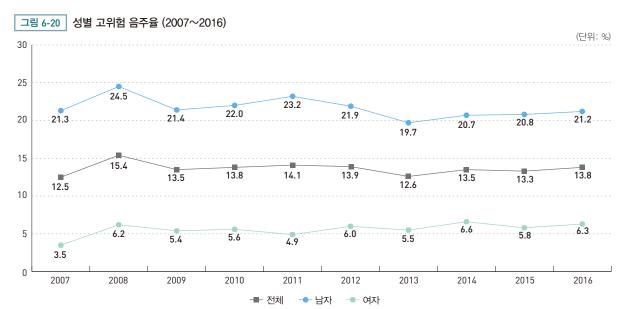
2016년 고위험 음주율(만 19세 이상)은 13.8%로, 남자가 21.2%, 여자가 6.3%이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16.4%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이 2.7%로 가장 낮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지역 거주자가 17.1%로 동지역 거주자의 13.3%에 비교해서 높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이 15.0%로 다른 집단에 비교해서 높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고위험 음주율은 2015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다. 과음하는 습관은 소화기계, 심혈관기계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치매, 뇌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여 정신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음주는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앞으로도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표 6-17 특성별 고위험 음주율 (2007~2016)

(단위: %)

													(11. 70)
구분	전체 ¹⁾			연형	명별			거주지	역별 ¹⁾		소득수	준별 ¹⁾²⁾	
TE	건세 '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12.5	11.2	15.7	17.4	10.4	7.3	1.8	12.5	12.5	12.5	11.4	12.0	14.6
2008	15.4	15.9	17.1	19.3	16.9	7.8	3.8	15.4	14.6	17.5	15.7	14.8	14.4
2009	13.5	14.4	15.2	16.8	13.0	7.9	2.8	13.5	13.2	14.5	14.1	13.4	12.2
2010	13.8	12.9	18.0	16.8	13.8	6.7	3.6	13.5	14.7	15.2	13.7	13.7	12.6
2011	14.1	14.2	18.8	16.2	14.1	6.5	2.0	13.6	16.5	15.2	14.0	12.5	14.8
2012	13.9	14.4	17.2	17.2	13.3	6.5	2.8	13.9	14.2	13.4	12.6	15.7	14.7
2013	12.6	14.1	15.6	15.1	12.1	4.6	1.7	12.4	13.0	11.1	13.1	13.3	12.8
2014	13.5	11.9	17.6	16.4	14.5	7.4	3.3	13.2	16.1	14.4	13.4	13.2	12.9
2015	13.3	12.7	15.8	16.2	13.8	9.1	2.5	13.1	13.9	14.2	12.8	13.2	13.1
2016	13.8	13.8	16.4	15.8	15.4	9.0	2.7	13.3	17.1	13.8	13.1	13.2	15.0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기구원 주)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07-1

연간 음주율

Current Alcohol Consumption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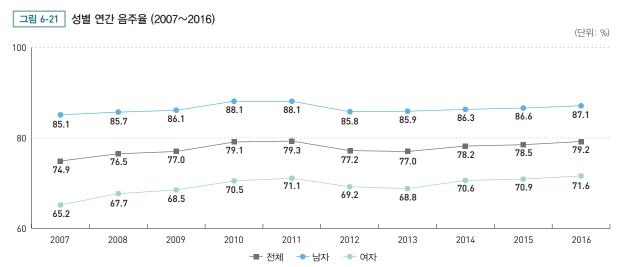
지표 정의

만 19세 이상 조사 대상자 중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 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음주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고위험 음주율'만큼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술을 접하는 사람이 최근 들어서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2016년 연간 음주율(만 19세 이상)은 79.2%로 전년도에 비교해서 0.7%p 증가하였다. 2016년한 해 동안 남자는 87.1%, 여자는 71.6%가 1회 이상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6	1년

청소년 현재 음주율

Current Alcohol Consumption rate of Adolescents

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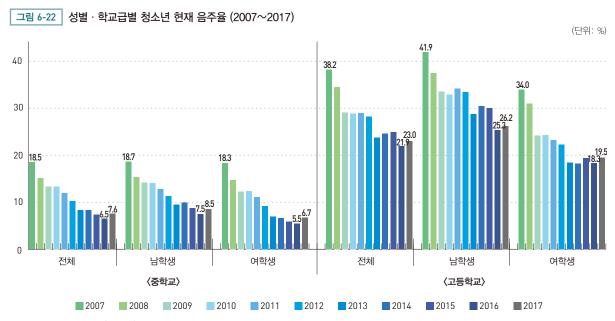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청소년(중1~고3)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수 조사 대상자 전수

청소년의 현재 음주율은 앞서 살펴본 흡연율과 같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7년 청소년 현재 음주율은 중학생이 7.6%, 고등학생이 23.0%이다. 청소년의 현재 음주율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주율이 높다는 점은 무척 우려스러운 일이다. 청소년이 해로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2017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5	2017	1년

1인당 알코올소비량

07-3

Alcohol Consumption Per Cap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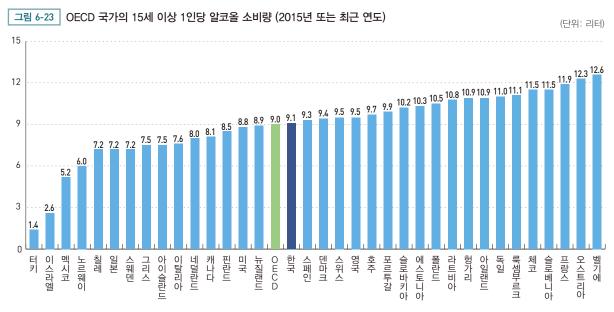
지표 정의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순수 알코올소비량을 1인당으로 환산한 값이다.

측정 산식

주류 총 소비량 15세 이상 인구 수

알코올의 과다 섭취는 심혈관계 질환과 간 경화 및 암 발생 등 건강상 위해 요인이 된다. 즉, 과도한 알코올 소비는 질병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사고, 범죄 및 자살 등 사회적 문제도 초래한다. 2010년 세계보건기구는 알코올에 대한 접근성과 유통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 등을 통해 알코올 섭취를 억제하는 정책을 권장하였다. 2015년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알코올소비량은 1인당 9.1 ℓ로 OECD 국가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7(stats.oecd.org에서 2017, 12, 07, 인출)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Health Statistics	-	2015	1년

08 H H

비만율

Obesity Rate

지표 정의

만 19세 이상 조사 대상자 중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다. 기준은 대한비만학회가 제시한 것에 따른다.

WHO는 비만을 '건강을 해칠 정도로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하게 지방조직에 지방이 축적된 상태'라고 정의하고,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가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본다. 한편, 대한비만학회는 25 이상을 비만으로 본다. BMI는 비교적 측정이 쉬워 건강조사나 임상검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만 지표로, 미래의 질병 부담을 나타낸다.

측정 산식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인 사람 수 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 체질량지수(BMI) = $\frac{$ 체중(kg)}{[신장(m)]^2}

2016년 비만율(만 19세 이상)은 34.8%로, 남자가 42.3%, 여자는 26.4%이다. 연령별로는 60~69세가 40.2%로 가장 높고, 19~29세가 27.2%로 가장 낮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지역 거주자가 42.9%로 동지역 거주자의 33.5%에 비교해서 높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이 37.4%로 다른 집단에 비교해서 높다.

OECD는 비만율을 두 가지 측정법(자기인식, 객관적 수치)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 결과를 모두 제출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자기인식에 따른 비만율은 OECD 국가의 평균이 50.6%이고, 우리나라는 26.1%이다. 측정값에 따른 비만율(만 15세 이상)은 OECD 국가의 평균이 56.6%이고, 우리나라는 33.4%이다. 두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비만율이 낮은 그룹에 속함을 알 수 있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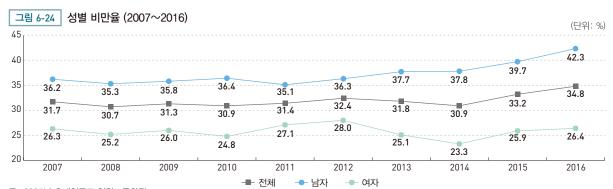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비만율은 34.8%로 2015년의 33.2%에 비해 1.6%p 증가하였다. 2012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던 비만율이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비만 현상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비만은 만성 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바,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7, 2017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표 6-18 특성별 비만율 (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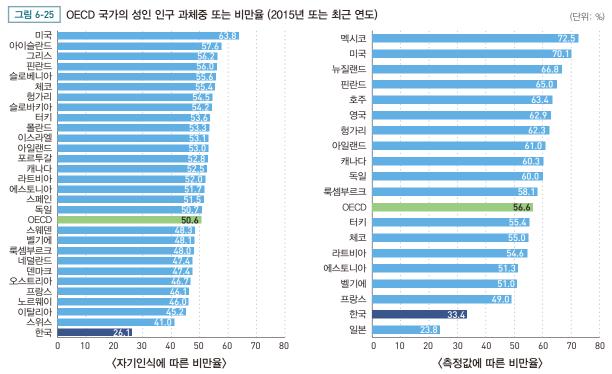
(단위: %)

				۸-				-1	ICTLH1)			T 141/2/	(LTI: 70)
구분	전체 ¹⁾			연당	령별			거주지역별 ¹⁾		소득 수준 별 ¹⁾²⁾			
112	나세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31.7	22.0	27.8	32.5	42.4	46.2	31.7	32.8	28.3	31.2	31.1	34.1	31.3
2008	30.7	23.0	28.0	34.4	37.4	37.2	29.3	30.7	31.6	32.5	31.4	30.1	29.4
2009	31.3	22.1	29.5	34.7	40.0	37.0	31.1	31.2	33.3	33.2	34.5	28.7	29.4
2010	30.9	20.5	31.0	34.1	35.3	40.7	30.6	30.7	31.8	30.1	31.8	30.1	31.7
2011	31.4	21.7	31.5	35.4	35.7	38.8	29.7	31.1	34.3	31.6	32.0	32.6	29.1
2012	32.4	22.4	32.5	39.2	34.1	38.5	31.1	31.5	37.6	34.3	35.0	31.1	29.5
2013	31.8	22.4	33.2	33.7	37.3	36.3	33.8	31.3	33.5	32.1	33.0	30.6	31.1
2014	30.9	23.9	31.8	31.1	35.4	36.8	32.1	30.5	33.3	32.5	34.7	30.1	26.3
2015	33.2	23.5	32.9	35.6	38.3	40.1	37.4	32.4	37.4	36.7	32.9	33.7	30.1
2016	34.8	27.2	34.2	39.0	36.1	40.2	37.5	33.5	42.9	37.4	33.1	35.8	33.0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u>가구원 수</u>)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7(stats.oecd.org에서 2017. 12. 07. 인출)

청소년 비만율

Adolescent Obesity Rate

08-1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기준 95백분위 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kg/m²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기준 95백분위 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kg/m² 이상인 사람의 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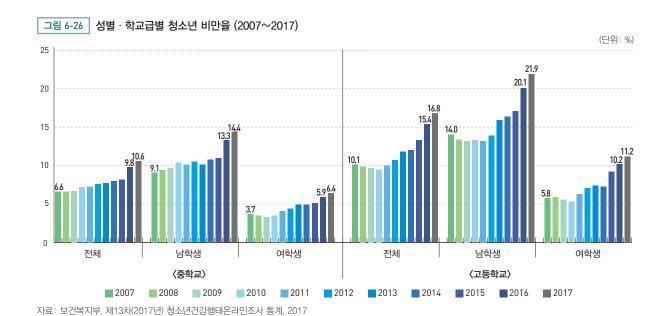
조사 대상자 전수

* 체질량지수(BMI) = <u>체중(kg)</u> [신장(m)]²

* 신장과 체중은 자기기입 방식으로 조사됨.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에 있던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성인이 되어서 체중을 줄이더라도, 비만은 성장 후 심혈관 질환의 유발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식이장애, 스트레스 유발과 함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인기 이전부터 관리가 필요하다.

2017년 청소년 비만율은 중학생이 10.6%, 고등학생이 16.8%이다. 조사가 시작된 이래 초기에는 비만율은 감소하다가, 2009~2010년을 전후로 하여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특히 최근 고등학교에서 비만율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에 비교해서 남학생의 비만율이 높다.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5	2017	1년

걷기실천율

Practice rate of physical activity (Walking)

지표 정의

만 19세 이상 조사 대상자 중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건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 수 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가장 간단하면서도 일상적인 활동인 '걷기'는 건강증진을 위해 적절한 신체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 걷기실천율이 감소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에 45%를 웃돌던 걷기실천율은 최근 30%대로 감소하였다. 2016년 걷기실천율은 39.6%이다. 연령별로는 19~29세가 48.1%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이 33.6%로 가장 낮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동지역 거주자가 41.4%로 읍 면지역 거주자의 29.0%에 비교해서 높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이 44.6%로 다른 집단에 비교해서 높다.

표 6-19 특성별 걷기실천율 (2007~2016)

(단위: %)

78	전체 ¹⁾	연령별							거주지역별 ¹⁾		소득수준별 ¹⁾²⁾			
구분	신세''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45.7	50.9	39.6	43.1	48.6	50.9	45.5	47.2	41.0	45.5	45.3	45.2	47.5	
2008	46.9	55.1	41.6	39.1	50.3	52.4	48.2	46.7	46.7	45.4	48.6	46.4	47.7	
2009	46.1	53.0	42.2	41.8	44.8	51.3	45.5	46.7	42.4	47.8	46.7	44.6	44.9	
2010	41.1	50.9	38.3	34.5	40.1	44.5	37.8	41.1	41.4	43.4	40.8	40.6	39.6	
2011	38.0	49.8	34.9	31.9	36.7	36.6	34.3	39.4	29.7	38.4	36.2	39.2	37.8	
2012	39.4	50.6	39.0	34.5	34.7	37.7	32.1	40.7	33.0	39.9	37.6	39.6	40.6	
2013	38.0	49.0	35.7	36.0	31.5	34.7	35.1	39.0	33.9	37.4	36.4	39.2	39.2	
2014	41.7	51.9	37.1	38.8	39.3	41.2	38.7	43.6	30.9	41.3	38.9	41.9	44.7	
2015	41.2	50.8	39.0	38.4	37.7	42.7	32.6	42.9	33.4	41.8	39.6	39.7	43.8	
2016	39.6	48.1	37.4	36.3	36.6	41.8	33.6	41.4	29.0	35.9	37.0	41.1	44.6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6	1년

09 H #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Rates of undernutrition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의 분율이다.

측정 산식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 미만인 대상자 수 만 1세 이상 대상자 수

2016년 영양섭취부족자 분율(만 1세 이상)은 11.1%로, 남자가 6.3%, 여자가 16.3%이다. 연령 별로는 12~18세가 19.8%로 가장 높고, 50~64세가 4.3%로 가장 낮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읍 면지역 거주자가 13.8%로 동지역 거주자의 10.6%에 비교해서 높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이 13.1%로 다른 집단에 비교해서 높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6	1년

Checkpoint

영양섭취부족자 분율은 과거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성별에 따른 차이,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지속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상황의 개선과 함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형평성의 개선도 요구된다.

그림 6-27 성별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2007~2016)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표 6-20 특성별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2007~2016)

(다의 · %)

1102		2 00		~	(2001	2010)									(단위: %)
구분	전체 ¹⁾				연령	병별				거주지역별 ¹⁾			소득수	준별 ¹⁾²⁾	
下正	선세"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17.0	18.1	15.5	11.3	19.9	21.8	14.1	13.7	27.5	17.4	15.7	20.3	15.9	19.0	13.0
2008	13.7	7.6	6.7	6.8	20.0	20.7	11.2	9.3	20.5	13.6	13.8	18.1	13.8	12.1	10.7
2009	14.2	8.2	7.4	7.9	21.9	19.2	11.9	9.1	22.6	14.0	15.2	19.2	14.8	12.3	10.2
2010	10.0	4.9	7.0	7.5	15.6	14.8	8.1	5.7	14.7	10.2	9.1	13.4	11.3	7.4	7.2
2011	10.6	11.4	6.0	4.3	14.9	15.4	9.3	5.9	17.0	11.1	8.0	12.7	10.5	9.4	9.1
2012	11.9	9.3	7.6	7.3	17.0	17.1	10.3	8.0	15.6	11.2	15.3	16.9	10.4	11.1	8.5
2013	8.4	5.9	5.9	4.1	15.9	13.3	7.5	3.1	8.5	8.6	6.8	11.2	8.2	7.0	7.1
2014	8.4	12.7	4.8	3.5	15.4	12.4	7.9	3.3	8.3	8.3	9.3	11.4	7.6	7.7	6.8
2015	9.0	7.4	5.7	4.8	16.7	13.1	8.5	3.9	8.3	8.9	9.5	14.1	8.5	7.4	5.6
2016	11.1	5.4	7.1	4.9	19.8	17.3	11.6	4.3	6.9	10.6	13.8	13.1	12.6	9.4	9.2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기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

Practice rate of healthy dietary lifesyle

09-1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지방, 나트륨, 과일 및 채소, 영양표시 현황을 반영하는 4개 지표 중에서 2개 이상을 만족하는 사람의 분율이다. 조사는 만 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지방은 지방섭취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정의하는 지방에너지적정비율 내 해당하고, 나트륨은 1일 섭취량이 2,000㎜ 미만인 경우, 과일 및 채소는 과일류와 채소류 섭취량 합계가 500g 이상인 경우이다. 그리고 영양표시는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를 읽는지 여부에 '예'로 응답한 경우이다.

지방에너지적정비율은 2016년부터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에 따르고, 2015년까지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05) 및 한국 영양섭취기준 개정판(한국영양학회, 2010)에 따랐음.

측정 산식

지방, 나트륨, 과일 및 채소, 영양표시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대상자 수 만 6세 이상 대상자 수

식생활은 건강상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식생활이란 다양한 식품을 적당하게 섭취하여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2016년 건강식생활 실천율(만 6세 이상)은 43.2%이다. 연령별로는 30~49세가 47.1%로 가장 높고, 65세 이상이 30.8%로 가장 낮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동지역 거주자가 43.4%로 읍면지역 거주자의 42.7%에 비교해서 높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가장 높은 집단이 48.2%로 다른 집단에 비교해서 높다.

한편, 주스를 포함(와인은 제외)하여 모든 채소와 과일의 섭취량을 비교한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일 섭취량은 65.5%, 채소 섭취량은 99.1%로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높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6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7,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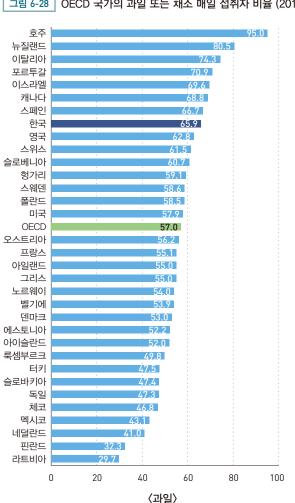
표 6-21 특성별 건강식생활 실천율 (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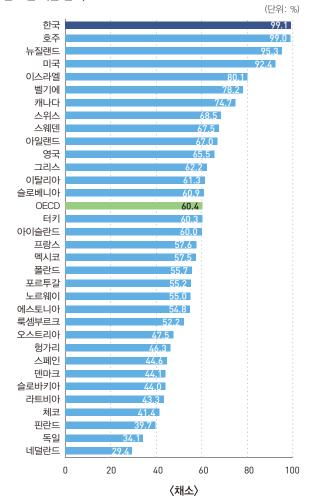
/LJ	-0	١.	0/
\T	\top		7/0

구분	전체 ¹⁾	연령별							거주지역별 ¹⁾		소득수준별 ¹⁾²⁾			
十世	신세''	6~11세	12~18세	19~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33.8	33.4	38.3	36.4	40.3	25.6	12.8	34.0	33.7	30.0	34.1	36.9	35.5	
2008	30.7	29.4	33.5	32.8	35.9	25.7	11.9	31.1	29.0	26.0	30.9	29.9	35.1	
2009	32.2	35.7	35.9	34.5	37.3	24.8	13.9	32.7	31.0	31.1	30.2	30.8	36.8	
2010	33.9	31.4	37.7	37.1	40.7	25.6	12.5	35.0	29.6	31.3	34.3	34.4	36.1	
2011	33.2	33.9	38.7	36.7	36.6	28.0	14.1	34.2	27.8	29.4	31.2	33.4	39.6	
2012	33.7	32.1	35.6	35.7	38.7	30.2	15.7	34.2	32.4	28.4	31.6	34.9	41.1	
2013	36.9	40.6	41.5	36.8	39.7	34.2	21.3	37.9	32.3	32.7	36.5	36.1	42.0	
2014	37.5	37.4	41.7	31.7	42.0	38.5	24.0	38.3	32.5	34.2	35.7	38.1	41.8	
2015	38.5	44.8	38.4	34.5	42.4	38.8	25.8	39.4	34.4	36.7	37.8	39.7	40.1	
2016	43.2	43.7	36.8	42.0	47.1	46.5	30.8	43.4	42.7	40.8	41.9	41.7	48.2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그림 6-28 OECD 국가의 과일 또는 채소 매일 섭취자 비율 (2015년 또는 최근 연도)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7(stats,oecd,org에서 2017. 12. 07. 인출)

²⁾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10 H H

평균 재원일수

Average of inpatient days

지표 정의

입원 환자의 총 재원일수를 입원환자 수로 나눈 값이다. 분석은 모든 유형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OECD 국가와의 비교 분석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측정 산식

입원환자의 총 재원일수 입원환자 수

2016년 재원일수(모든 의료기관)는 14.5일로 2015년에 비교해서 1.3일 증가하였다. 재원일수 분석 대상을 병원급으로 한정시킬 경우 이보다 평균 2일 정도 증가한다. 우리나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재원일수는 2015년 기준 16.1일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길다(OECD, 2017a). OECD 국가 대부분이 모든 입원(급성기, 장기요양, 재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는 급성기 병상만의 재원일수를 제출하였다. 일본의 재원일수는 16.5일이지만, 여기에 장기요양 병상을 포함할 경우 29.1일로 증가하여 고령화의 심화 정도를 잘 보여준다(OECD, 2017b).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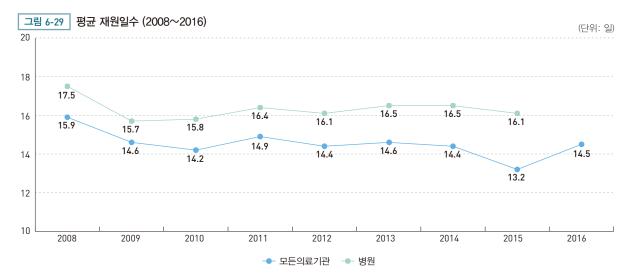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환자조사	1988	2016	1년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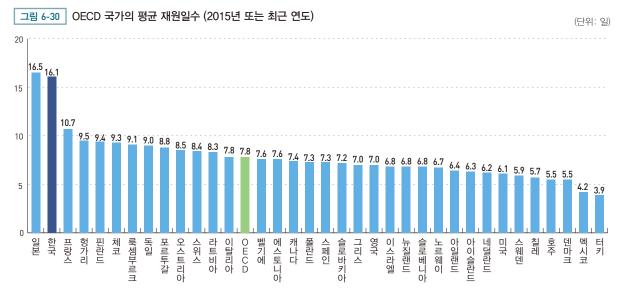
병상의 기능과 역할 정립이 시급하다. 급성기 병상에 일반 환자가 오래 입원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다. 치료가 끝나면 바로 퇴원을 하거나, 재활이나 장기입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는 병상으로 이송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통계가 뒷받침되어야한다. 하지만 아직 병상의 유형(급성기 병상, 장기요양 병상, 재활 병상 등)과 이 분류에 따른 재원일수 정보가 생산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7, 2017a
- OECD, Health at a glance 2017, 2017b



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16년 재원일수는 현재 OECD에 보고되지 않음. 2018년 6월에 공표될 예정임. 자료: 1) 병원은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7(stats,oecd,org에서 2017, 12, 07, 인출) 2) 모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환자조사, 각 연도(http://kosis.kr 에서 2017, 12, 06, 인출)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17, 2017(원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7.)

1 1 대 표

1일 외래환자 수

Daily Number of outpati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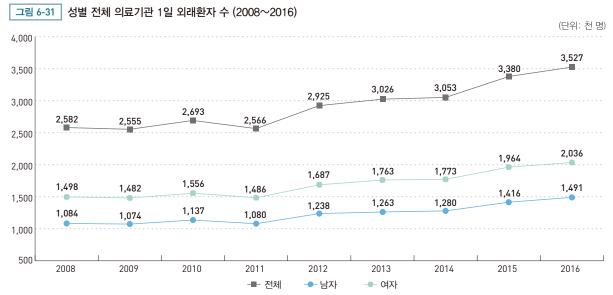
지표 정의

조사일로 지정된 하루 동안의 초진환자와 재진환자의 수이다. 산부인과에서의 산전·산후진찰, 예방접종자, 개인별 신체검사자, 시력검사자. 응급실환자를 모두 포함한다.

측정 산식

• 조사 지정일 하루 동안의 초진 및 재진환자 수

2016년 1일 외래환자 수는 352.7만 명으로, 남자가 149.1만 명, 여자가 203.6만 명이다. 2011 년 이후 남자와 여자는 비슷한 구성비(남자 42%, 여자 58%)를 보이며, 모두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이용현황, 각 연도(http://kosis.kr 에서 2017. 12. 0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환자조사	1988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1일 외래환자 수는 2015년에 비해 14.7만 명 증가하였다. 의료에 대한 수요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바, 국가는 국민의 요구(Needs)를 잘 확인하고, 불필요한 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인당 의사진찰 건수

11-1 9 과 Number of consultations with doctor per capita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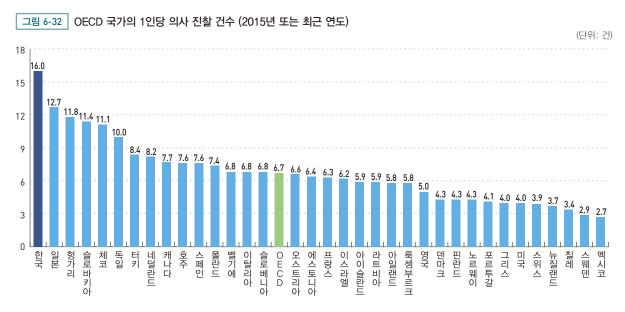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받은 의사의 진찰 건수이다.

진찰은 의사와 환자의 만남을 의미한다. 국가마다 보건의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진찰이 포함하는 내용과 진찰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다를 수 있다. 진찰은 의사의 진료실, 클리닉, 병원의 외래부서, 또는 환자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측정 산식

연간 의사진찰 건수

2015년 1인당 의사 진찰 건수는 16.0건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일본, 헝가리, 슬로 바키아, 체코, 독일에서도 국민 1인당 10회 의상의 의사 진찰이 발생하고 있다.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7(stats,oecd,org에서 2017. 12. 07. 인출)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Health Statistics	-	2015	1년

^{*} OECD, Health at a Glance 2017, 2017

1인당 외래방문 횟수

Averag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지표 정의

외래의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횟수를 외래방문 횟수(또는 내원 일수)라고 하며, 1인당 외래방 문 횟수는 1년 동안의 총 외래방문 횟수를 조사대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측정 산식

• 1인당 외래방문 횟수 = 외래의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횟수 (조사 대상) 인구 수

• 입원 건당 입원 일수 = 입원의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병원에 머무는 날 입원 건 수

1인당 의료 이용 현황을 의료보장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대상자에 비교해서 의료이용량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외래 방문 횟수는 제주 31.6회, 대전 31.1회 순으로 많고, 건당 입원일수는 부산 10.7일, 경남 10.6일 순으로 길다.

표 6-22 시도별 1인당 의료이용 현황 (2011)

(단위: 회, 일)

						(- 11 1, /		
78		1인당 외래 방문 횟수	<u>-</u>	입원 건당 입원일수				
구분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전국	26.6	21.9	34.9	9.7	8.6	13.4		
서울	27.1	21.6	34.8	9.3	8.3	12.4		
부산	28.0	23.0	35.0	10.7	9.3	14.4		
대구	28.5	22.0	36.6	10.4	9.2	13.0		
인천	25.9	21.1	33.4	9.5	8.2	13.5		
광주	28.6	22.1	34.9	9.8	8.7	11.9		
대전	31.1	24.3	39.2	9.9	8.8	12.6		
울산	27.6	22.5	37.8	10.5	9.3	15.8		
경기	25.1	21.4	33.5	9.0	8.2	13.2		
강원	23.3	19.7	31.3	9.2	8.1	14.0		
충북	24.8	21.8	32.3	9.3	8.3	14.1		
충남	27.2	23.0	35.7	9.3	8.3	13.3		
전북	26.9	23.1	34.7	10.0	8.8	13.6		
전남	27.4	22.6	36.2	9.9	8.9	12.9		
경북	25.1	20.3	34.3	10.1	8.9	13.8		
경남	27.6	22.5	37.6	10.6	9.3	15.0		
제주	31.6	27.9	36.0	9.8	8.8	12.3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11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01	2011	5년

11-3

사저수지율

Rate of Prenatal care

지표 정의

산전수진율이란 임신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5~49세 기혼여성 임산 부 중 의료기관을 방문한 임산부의 비중으로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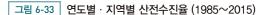
이는 의료의 접근도를 나타내는 동시에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출산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하는 지 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측정 산식

임신 중 의료기관을 방문한 출산 경험이 있는 15~49세 기혼여성 조사 대상자 수 출산경험이 있는 15~49세 기혼여성 조사 대상자 수

만혼 및 만산이 증가하며 난임, 고령임신·출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임신이 증가되면서 모성사망률도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산전관리의 중요성은 높아졌다. 산전관리는 모성과 태아의 건강과 바람직한 출산결과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모자보건영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임신기간 동안 산전관리를 포함한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국민행복카드; 고운맘카드)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산전수진율은 2009년이 되면서 현재까지 100%로 모든 임산부는 임신기간 중에 한 번 이상 관련 진찰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동부와 읍면부의 산전수진율은 100%일 때를 제외하고 지역별 격차를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분만취약지 등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또한 산전수진율에 대한 검토에서 더 나아가 임신기간 중 처음으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은 시기(초진시기)가 임신 몇 째 주인지와 임신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방문한 횟수는 총 몇 번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초진시기와 임신 중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고려한 산전관리적합도 지수를 산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1964	2015	3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 복지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표 6-23 연도별·지역별 및 모의 연령구간별 산전진찰 초진시기 및 방문 횟수

(단위: 주, 번)

	2003년		200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	
구분	초진시기 (주)	방문 횟수 (번)									
전체	5.88	12.68	5.32	13.49	5.53	13.49	5.38	13.39	5.31	13.30	
지역	'			'							
동부	5.84	12.90	5.32	13.32	5.50	13.58	5.33	13.39	5.29	13.33	
읍 · 면부	6.08	11.71	5.49	12.78	5.71	12.94	5.65	13.39	5.40	13.18	
모 연령											
15~24세	6.68	12.11	5.92	12.56	6.78	13.28	7.36	13.52	5.97	13.11	
25~29세	5.64	12.80	5.13	13.47	5.45	13.62	5.01	13.41	5.23	13.67	
30~34세	6.02	12.70	5.34	13.32	5.40	13.16	5.01	13.22	5.23	13.17	
35세 이상	5.86	12.57	5.51	12.87	5.42	14.25	6.24	13.68	5.42	13.2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 복지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rates

지표 정의

만 19세 이상 조사 대상자 중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인플루엔자는 급성기 호흡기 감염병으로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며, 매년 예외 없이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는 전 연령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인이나 어린이와 같이 면역력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증이나 사망의 위험을 겪게 된다.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의 투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가운데, 부작용이 많은 항바이러스제보다는 예방접종이 권장되는 편이다.

측정 산식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수 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2016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만 19세 이상)은 33.7%로, 남자가 30.0%, 여자는 37.4%이다. 연령별로는 고위험군인 70세 이상이 87.0%로 가장 높고, 19~29세가 14.8%로 가장 낮다. 거주 지역이나 소득수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예방접종이 국민들 사이에서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예방접종은 연령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OECD는 65세 이상 인구에 있어서 예방접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국가 간 비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예방 접종률이 높다. 한편, OECD 국가 간에는 편차(멕시코 82,3%; 에스토니아 1,6%)가 크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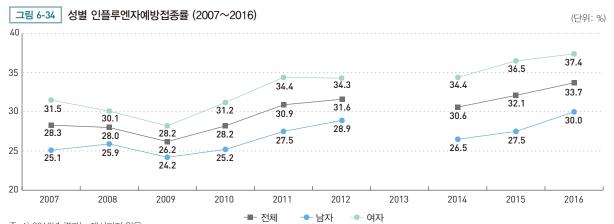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6	1년

Checkpoint

WHO는 예방접종이 사람들을 인플루엔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감염병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의 예방 활동이 강화되면서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이 높아졌다. 2000년대 후반 28%대이던 것이 2014년 30.6%, 2016년 33.7%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7, 2017



주: 1) 2013년 결과는 제시되지 않음.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표 6-24 특성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2007~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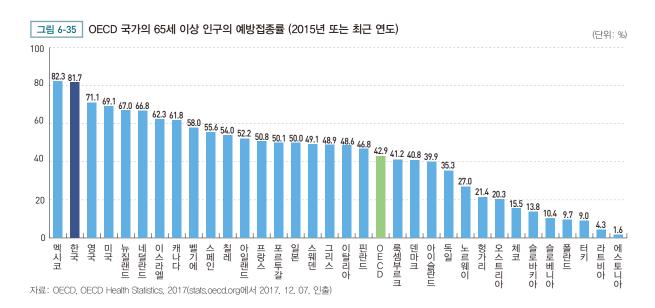
구분 전체 ²⁾		연령별					거주지역별 ²⁾		소득수준별 ²⁾³⁾				
구군	신세"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상	상
2007	28.3	16.8	22.9	15.0	34.1	55.6	74.0	26.8	34.3	25.9	28.6	28.6	30.7
2008	28.0	14.0	20.3	17.7	32.3	60.5	76.1	26.9	32.1	25.3	29.1	28.2	29.4
2009	26.2	12.9	18.5	16.2	28.8	55.5	78.4	25.4	28.7	24.3	26.4	25.9	28.1
2010	28.2	16.6	25.4	16.9	23.5	55.5	80.6	28.1	27.5	26.0	29.7	27.0	30.4
2011	30.9	18.0	26.9	21.2	27.0	61.0	81.1	30.8	30.7	31.0	30.0	31.2	31.7
2012	31.6	18.0	29.5	21.7	28.6	58.7	80.9	31.3	33.1	31.7	30.3	32.0	33.0
2013	-	-	-	-	-	-	-	-	-	-	-	-	-
2014	30.6	16.2	29.0	20.1	26.7	57.4	83.6	30.8	29.6	30.7	27.5	32.7	31.5
2015	32.1	16.4	33.8	20.7	27.7	58.4	83.4	32.2	32.1	30.7	32.2	30.9	34.6
2016	33.7	14.8	34.3	22.0	33.1	63.7	87.0	33.3	36.3	34.5	31.6	34.2	34.4

주: 1) 2013년 결과는 제시되지 않음.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3)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기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DPT(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률: 1세 대상

12-1

DPT(Diphtheria, Tetanus, Pertussis) Vaccination Coverage rates for children aged 1

지표 정의

1세의 소아 중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이 이루어진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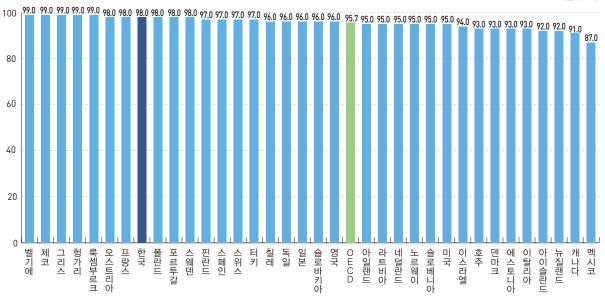
1세 이하 중 DPT 접종을 받은 사람의 수 1세 이하 인구 수

소아 예방접종은 아동기에 권고된 기간 내에 얼마나 예방접종을 잘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특히, 이는 비용-효과적인 개입으로 인정되며, 의료의 질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국가마다 소아에 대한 예방접종 정책은 다양하다.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는 시점이 국가마다 다르고, 투여하는 방법이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백신 역시 통합적(DPT)으로 투여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투여되기도 한다.

노인 예방접종에 비해 소아 예방접종은 비교적 모든 국가에서 잘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90.0% 이상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OECD 국가의 평균은 95.5%, 우리나라는 98.0%이다.

그림 6-36 OECD 국가의 DPT 예방접종률 (2015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7(stats,oecd.org에서 2017, 12, 0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Health Statistics	-	2017	1년

참고문헌

• OECD, Health at a Glance 2017, 2017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만1~18세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rates for pediatric(1-18 year old)

12-2

지표 정의

만 1~18세 중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 만 1~18세 대상자 수

인플루엔자는 사람과 사람의 접근으로 전파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건조된 점액이나 호흡 기분비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밀집된 공간에서는 공기를 매개로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적은 건강한 성인계층은 우선적인 접종 대상이 아니나, 만성질환 보유자, 취약계층, 집단시설(학교, 집단요양시설, 수용소 등) 이용자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체생활에 노출된 소아·청소년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세에서 18세 사이의 소아 ·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은 2016년 45.7%이다. 이는 처음 조사가 시행된 2007년에 비해 무려 9.1%p나 증가한 것인데,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1\sim5$ 세가 73.3%로 가장 높고, $15\sim18$ 세가 가장 낮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48.2%로 남자의 43.5%에 비교해서 높다.

표 6-25 연령별 · 성별 소아 · 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2007~2016)

(단위: %)

78	전체		연형	성별			
구분	신세	1~5세	6~11세	12~14세	15~18세	남자	여자
2007	36.6	63.8	46.2	19.8	12.8	35.9	37.4
2008	36.6	66.8	43.7	21.0	13.1	34.7	38.7
2009	39.5	65.8	46.7	30.0	17.0	38.3	40.8
2010	45.2	73.9	57.4	31.7	16.3	44.4	46.2
2011	47.3	74.0	56.6	36.0	24.2	46.5	48.2
2012	49.7	78.6	59.7	38.3	23.5	51.9	47.0
2013	-	-	-	-	-	-	-
2014	47.8	79.2	55.2	31.4	20.1	47.0	48.6
2015	49.3	76.7	56.2	42.1	19.8	47.0	51.9
2016	45.7	73.3	55.6	33.6	17.1	43.5	48.2

주: 2013년 결과는 제시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6	1년

일반건강검진 수

Rate of recipients of general health check-ups

지표 정의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 습관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 하여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반 건강검진으로 이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거나, 만 70세와 만 74세 중에서 인지기능 장애 위험이 높다고 판정된 사람은 2차 검진을 받게 된다. 지역 가입자, 사무직 직장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피부 양자는 2년에 한 번씩, 비사무직 직장 가입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측정 산식

일반건강검진 수검 인원 -×100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유의사항

여기에서는 건강보험대상자의 검진 실적만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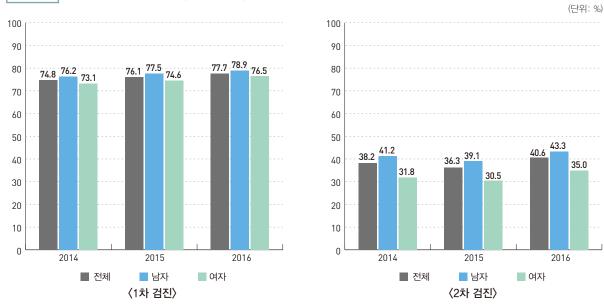
2016년 일반건강검진(1차 검진) 수검률은 77.7%로 남자는 78.9%, 여자는 76.5%이다. 지역별 로는 울산이 82.5%로 가장 높고, 제주가 73.2%로 가장 낮다. 2차 검진 대상자는 1차 대상자의 7.6%이며, 이중에서 40.6%가 2차 검진을 수행하였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62.1%로 가장 높고, 강 원이 35.1%로 가장 낮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2008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7.7%로 2015년 76.1%보다 1.6%p 증가하였다(남자는 1.4%p, 여자는 1.9%p 증가). 이는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한 결과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기본 검진 이외에 다양한 검사가 추가된 종합검진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요구된다.

그림 6-37 성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2014~2016)



주: 2차 대상 인원은 1차 검진의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검사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수검자에 해당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건강검진통계연보, 2017(http://kosis.kr 에서 2017, 12, 06, 인출)

표 6-26 시도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2016)

(단위: 명,%)

		` ,				(セカ・3, %)
구분		1차 검진			2차 검진	
TE	대상 인원	수검 인원	수검률 (%)	대상 인원	수검 인원	수검률 (%)
전국	17,633,406	13,709,413	(77.7)	1,337,588	542,949	(40.6)
서울	3,271,651	2,457,515	(75.1)	245,001	89,099	(36.4)
부산	1,214,010	951,412	(78.4)	85,139	39,324	(46.2)
대구	839,490	650,320	(77.5)	61,386	26,845	(43.7)
인천	1,000,309	795,820	(79.6)	78,323	33,437	(42.7)
광주	475,244	387,887	(81.6)	30,967	13,074	(42.2)
대전	508,908	407,271	(80.0)	38,564	15,946	(41.3)
울산	435,780	359,663	(82.5)	31,498	19,570	(62.1)
세종	69,629	55,358	(79.5)	5,755	2,124	(36.9)
경기	4,268,228	3,308,348	(77.5)	334,865	133,322	(39.8)
강원	547,652	426,561	(77.9)	47,509	16,660	(35.1)
충북	581,965	468,076	(80.4)	48,529	19,632	(40.5)
충남	751,431	580,567	(77.3)	60,384	23,583	(39.1)
전북	636,505	505,270	(79.4)	46,505	17,209	(37.0)
전남	658,833	518,052	(78.6)	50,492	18,556	(36.8)
경북	970,304	750,267	(77.3)	69,566	28,994	(41.7)
경남	1,202,725	940,140	(78.2)	88,284	40,266	(45.6)
제주	200,742	146,886	(73.2)	14,821	5,308	(35.8)

주: 2차 대상 인원은 1차 검진의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검사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수검자에 해당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건강검진통계연보, 2017(http://kosis.kr 에서 2017. 12, 06, 인출)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13-1

Rate of recipients of general health check-ups, by core items

지표 정의

암검진(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생애전환기검진, 구강검진 대상자 중 이 항목의 검진을 실시한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특정 검진항목 수검자 수 특정 검진항목 대상자 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검진사업 이외에도 암검진(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생애전환기건강진단(만40세, 만 66세), 영유아검진(일반검진 7회, 구강검진 3회)을 하고 있다. 이중에서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진찰과 상담을 하면서, 만 40세는 B형간염 항원, 항체검사를, 만 66세는 골밀도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등을 함께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고혈압, 당뇨 확진 검사, 건강진단 결과 및 건강위험평가상담,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생활습관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한다.

2016년 암검진의 수검률은 49.2%,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78.7%, 구강검진은 31.7%이다. 암검진의 수검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53.7%),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구강검진의 수검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각각 81.7%, 50.5%)이다.

표 6-27 시도별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2016)

(단위: 명,%)

		OFTITI		LHOL	[파슬]크[크]포[/ 4	10.111/		7717171	(E11-8, 10)
구분		암검진		생아	전환기검진 (4	UAII)		구강검진	,
1 -	대상 인원	수검 인원	수검률 (%)	대상 인원	수검 인원	수검률 (%)	대상 인원	수검 인원	수검률 (%)
전국	21,948,238	10,805,618	(49.2)	655,265	515,556	(78.7)	17,633,406	5,582,637	(31.7)
서울	4,205,489	1,976,050	(47.0)	127,719	98,174	(76.9)	3,271,651	1,075,007	(32.9)
부산	1,564,834	761,037	(48.6)	39,814	31,637	(79.5)	1,214,010	379,196	(31.2)
대구	1,048,810	487,290	(46.5)	31,150	24,703	(79.3)	839,490	193,998	(23.1)
인천	1,209,777	623,258	(51.5)	37,801	30,401	(80.4)	1,000,309	399,807	(40.0)
광주	586,846	314,225	(53.5)	20,142	16,363	(81.2)	475,244	146,360	(30.8)
대전	620,749	325,516	(52.4)	20,283	16,466	(81.2)	508,908	208,794	(41.0)
울산	487,326	238,505	(48.9)	15,336	12,529	(81.7)	435,780	220,122	(50.5)
세종	79,476	40,666	(51.2)	3,740	3,042	(81.3)	69,629	28,351	(40.7)
경기	5,117,151	2,522,095	(49.3)	175,884	139,095	(79.1)	4,268,228	1,356,263	(31.8)
강원	707,433	351,297	(49.7)	17,132	13,301	(77.6)	547,652	145,894	(26.6)
충북	700,319	364,888	(52.1)	19,549	15,519	(79.4)	581,965	230,067	(39.5)
충남	915,124	446,867	(48.8)	25,749	19,717	(76.6)	751,431	239,295	(31.8)
전북	841,074	450,093	(53.5)	21,083	16,844	(79.9)	636,505	221,205	(34.8)
전남	899,153	483,084	(53.7)	20,013	15,452	(77.2)	658,833	159,047	(24.1)
경북	1,240,527	585,686	(47.2)	30,073	23,053	(76.7)	970,304	227,663	(23.5)
경남	1,463,016	717,285	(49.0)	42,168	33,572	(79.6)	1,202,725	290,606	(24.2)
제주	261,134	117,776	(45.1)	7,629	5,688	(74.6)	200,742	60,962	(30.4)

주: 1)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 경우 40세와 66세를 대상으로 각각 1차와 2차에 걸쳐 두 차례씩 실시되며, 1차 수검자 전체가 2차 검진의 대상이 되고 있음. 따라서 여기에서는 1차 대상 인원과 1차 수검인원을 기준으로 값을 제시함.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2008	2016	1년

²⁾ 구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진단 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나, 여기에서는 일반검진과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만을 고려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건강검진통계연보, 2017(http://kosis.kr 에서 2017. 12. 06. 인출)

14

의료보장 적용 인구

Beneficiaries of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Aid

지표 정의

정부나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으로부터 기본 의료서비스(예방, 증진, 치료, 재활, 완화치료)를 받는 인구를 의미한다. 크게 건강보험 적용 인구(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와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로 구분된다.

의료보장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과 의료비지출에 사회적으로 공동 대처하여 재정적 보장을 제공해주는 제도로써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가구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은 의료급여제도에 의해서, 이외의 나머지 국민은 건강보험제도에 의해서 보호된다. WHO는 2010년 World Health Report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방안으로 '보장인구의 확대', '급여서비스 영역의 확대', '환자 직접부담 금액의 감소'를 제안하였다.

측정 산식

• 건강보험 적용 인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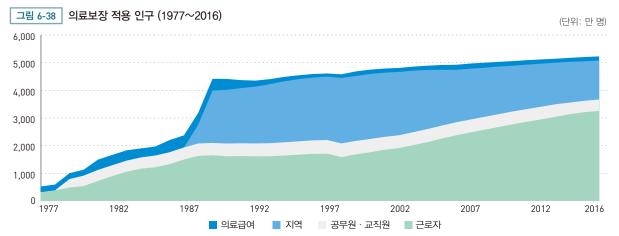
2016년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07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7.1%,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이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다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가 72.2%(3,667만 명), 지역가입자가 27.8%(1,409만 명)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등의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구분된다.이 중에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70.6%(107만 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9.4%(44만 명)이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994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전체 의료보장 적용 인구(건강보험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15년에 비교해서 다소 증가하였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5년 5,049만 명에서 2016년 5,076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4만 명에서 151만 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표 6-28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2006~2016)

(단위: 만명)

											'	L 11. L 0/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의료	보장	4,924	4,967	5,000	5,029	5,058	5,091	5,117	5,145	5,176	5,203	5,227
건강	!보험	4,741	4,782	4,816	4,861	4,891	4,930	4,966	4,999	5,032	5,049	5,076
	직장	2,845	2,942	3,042	3,141	3,238	3,326	3,411	3,501	3,560	3,622	3,667
	근로자	2,372	2,475	2,577	2,676	2,775	2,865	2,953	3,045	3,143	3,210	3,257
	공무원 · 교직원	472	468	464	465	464	461	458	455	417	413	410
	지역	1,896	1,840	1,774	1,720	1,652	1,604	1,556	1,498	1,471	1,427	1,409
의료	급여	183	185	184	168	167	161	151	146	144	154	151
1	종	103	106	102	104	107	109	106	104	104	108	107
2	종	80	79	82	64	60	52	45	42	40	47	44

~ 주: 1) 의료보장인구는 연도 말 기준으로, 통계청의 추계연앙인구와는 다를 수 있음.

2) 수치는 사사오입으로 인하여 항목별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주: 수급률=총인구 대비 의료급여 수급자 수, 총인구는 안정행정부의 연말기준 자료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행 복 e 음

14-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Number of Proirty Caring Programs Recipients in Near Poor

지표 정의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기존 세대에서 별도 세대로 분리 후 보험료를 산정

측정 산식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 아동 중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수급 받은 자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	입원외래	요양급여 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중증 질환자	70세 이상 노인 틀니,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50%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만성질환자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					
18세 미만인 자	75세 이상 노인 틀니,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심 · 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2016년 12월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 감소한 289,737명으로 집계되었다(전년동월 300,520명). 동월 기준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127,631명(44.1%), 여성이 162,106명(55.9%)으로 여성 수급자 수가 11%p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시도 지역에서 여성 수급자 수가 남성 수급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1,4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3,431명, 전북 26,9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지역별 분포는 전년과 유사한 모습이다. 한편, 월별 추세로는 4월 수급자 수가 가장 많으며 그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5월과 12월에 각각 2.6% 와 2.1%의 급격한 감소를 보여서 12월 수급자가 가장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6	1년

Checkpoint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수의 4년 연속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2016년 12월 기준 289,737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6% 감소하였다. 12월 기준 성별 또는 지역별 분포는 전년 동월과 유사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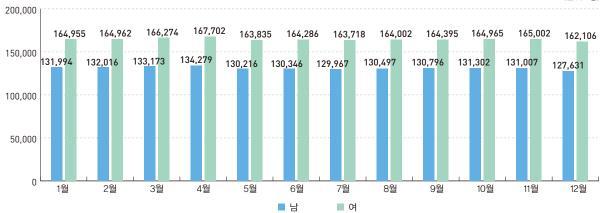
표 6-29 연도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단위: 명)

구분	2013년 12월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349,522	345,349	300,520	289,737

그림 6-40 월별 · 성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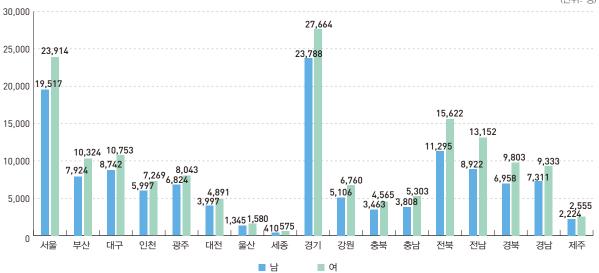
(단위: 명)



* 대전 값없음(1명) 제외



(단위: 명)



* 대전 값없음(1명) 제외

표 6-30 시도별 · 월별 · 성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2016)

(단위: 명)

丑 6-3	30	시도별 ·	월별 · 성별	를 자상위 된	보인부담경	감 수납자	수 (2016)						(단위: 명)
구분	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남	19,860	19,825	20,113	20,366	19,749	19,774	19,677	19,783	19,837	19,974	19,966	19,517
서울	여	23,805	23,756	24,003	24,332	23,777	23,859	23,840	23,925	23,997	24,137	24,208	23,914
	계	43,665	43,581	44,116	44,698	43,526	43,633	43,517	43,708	43,834	44,111	44,174	43,431
	남	8,075	8,072	8,095	8,153	7,994	8,006	7,957	8,004	8,038	8,080	8,070	7,924
부산	여	10,266	10,247	10,317	10,379	10,244	10,270	10,286	10,301	10,366	10,418	10,416	10,324
	계	18,341	18,319	18,412	18,532	18,238	18,276	18,243	18,305	18,404	18,498	18,486	18,248
	남	9,148	9,106	9,154	9,229	8,898	8,881	8,945	8,976	9,021	9,060	9,062	8,742
대구	여	11,125	11,099	11,083	11,156	10,849	10,861	10,884	10,923	10,958	11,031	11,064	10,753
	계	20,273	20,205	20,237	20,385	19,747	19,742	19,829	19,899	19,979	20,091	20,126	19,495
	남	6,423	6,412	6,420	6,451	6,193	6,219	6,218	6,238	6,240	6,240	6,153	5,997
인천	여	7,627	7,633	7,657	7,688	7,426	7,447	7,410	7,425	7,440	7,463	7,411	7,269
	계	14,050	14,045	14,077	14,139	13,619	13,666	13,628	13,663	13,680	13,703	13,564	13,266
	남	7,209	7,209	7,273	7,349	7,043	7,064	7,001	7,037	7,064	7,060	7,013	6,824
광주	여	8,253	8,264	8,404	8,508	8,209	8,213	8,154	8,167	8,211	8,243	8,181	8,043
01	계	15,462	15,473	15,677	15,857	15,252	15,277	15,155	15,204	15,275	15,303	15,194	14,867
	남	4,255	4,221	4,241	4,284	4,138	4,142	4,073	4,089	4,096	4,094	4,123	3,997
대전	여	5,037	4,999	5,053	5,112	5,025	5,034	4,943	4,939	4,964	4,966	4,991	4,891
-1112	계	9.292	9,220	9,294	9,396	9,163	9,176	9,016	9,028	9,060	9,060	9,114	8,888
	남	1,309	1,308	1,305	1,315	1,306	1,331	1,323	1,313	1,324	1,336	1,334	1,345
울산	여	1,558	÷	÷	+		÷	÷	· !	÷	÷	}	÷
돌인			1,544	1,561	1,575	1,564	1,573	1,554	1,547	1,557	1,572	1,576	1,580
	계	2,867	2,852	2,866	2,890	2,870	2,904	2,877	2,860	2,881	2,908	2,910	2,925
ᄱᄌ	남	353	358	372	390	380	388	391	397	406	411	421	410
세종	여	528	526	536	548	532	542	544	566	570	574	580	575
	계	881	884	908	938	912	930	935	963	976	985	1,001	985
74-1	남	24,814	24,862	25,083	25,349	24,439	24,408	24,224	24,300	24,359	24,486	24,522	23,788
경기	여 -"	28,433	28,536	28,853	29,160	28,408	28,402	28,147	28,140	28,165	28,295	28,442	27,664
	계 	53,247	53,398	53,936	54,509	52,847	52,810	52,371	52,440	52,524	52,781	52,964	51,452
	남	5,492	5,495	5,497	5,462	5,249	5,250	5,276	5,289	5,279	5,275	5,219	5,106
강원	여	7,014	7,052	7,079	7,105	6,916	6,933	6,913	6,921	6,931	6,912	6,850	6,760
	계	12,506	12,547	12,576	12,567	12,165	12,183	12,189	12,210	12,210	12,187	12,069	11,866
	남	3,547	3,560	3,611	3,609	3,484	3,502	3,483	3,530	3,531	3,548	3,526	3,463
충북	여	4,660	4,654	4,709	4,690	4,581	4,638	4,634	4,638	4,652	4,658	4,638	4,565
	계	8,207	8,214	8,320	8,299	8,065	8,140	8,117	8,168	8,183	8,206	8,164	8,028
	남	3,940	3,976	4,053	4,041	3,941	3,949	3,915	3,910	3,919	3,942	3,927	3,808
충남	여	5,386	5,404	5,445	5,450	5,334	5,379	5,328	5,340	5,353	5,382	5,405	5,303
	계	9,326	9,380	9,498	9,491	9,275	9,328	9,243	9,250	9,272	9,324	9,332	9,111
	남	11,651	11,680	11,801	11,895	11,474	11,461	11,462	11,498	11,526	11,603	11,580	11,295
전북	여	15,857	15,882	16,002	16,162	15,743	15,786	15,750	15,777	15,792	15,862	15,829	15,622
	계	27,508	27,562	27,803	28,057	27,217	27,247	27,212	27,275	27,318	27,465	27,409	26,917
	남	9,230	9,255	9,365	9,474	9,312	9,278	9,319	9,342	9,334	9,349	9,329	8,922
전남	여	13,439	13,433	13,533	13,619	13,453	13,451	13,475	13,515	13,504	13,502	13,493	13,152
	계	22,669	22,688	22,898	23,093	22,765	22,729	22,794	22,857	22,838	22,851	22,822	22,074
	남	7,044	7,044	7,070	7,104	6,999	7,053	7,070	7,070	7,072	7,097	7,089	6,958
경북	여	9,924	9,916	9,920	10,007	9,841	9,888	9,886	9,866	9,879	9,899	9,911	9,803
	계	16,968	16,960	16,990	17,111	16,840	16,941	16,956	16,936	16,951	16,996	17,000	16,761
	남	7,352	7,345	7,414	7,469	7,349	7,362	7,382	7,450	7,472	7,470	7,426	7,311
경남	여	9,436	9,411	9,483	9,564	9,351	9,419	9,385	9,419	9,455	9,443	9,418	9,333
	계	16,788	16,756	16,897	17,033	16,700	16,781	16,767	16,869	16,927	16,913	16,844	16,644
	남	2,292	2,288	2,306	2,339	2,268	2,278	2,251	2,271	2,278	2,277	2,247	2,224
제주	여	2,607	2,606	2,636	2,647	2,582	2,591	2,585	2,593	2,601	2,608	2,589	2,555
- 11 1	계	4,899	4,894	4,942	4,986	4,850	4,869	4,836	4,864	4,879	4,885	4,836	4,779
	남	131,994	132,016	133,173	134,279	130,216	130,346	129,967	130,497	130,796	131,302	131,007	127,631
합계	여	164,955	164,962	166,274	167,702	163,835	164,286	163,718	164,002	164,395	164,965	165,002	162,106
급기	계		296,978	299,447	301,981	294,051	294,632	293,685	294,499	295,191	296,267	296,009	289,737
	-	270,747	270,770	277,447	301,701	274,001	274,032	273,000	274,477	270,171	270,207	270,009	207,/3/

^{*} 대전 값없음(1명) 제외

의사 수

Number of Physicians

지표 정의

의료법 제2조에 의거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사의 수이다. 여기에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주요 업무로 하는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까지를 포함하며, 치과의사와 한방의사는 제외한다.

측정 산식

• 요양기관이 신고한 상근 의사 수

2016년 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의사 수는 97,713명이다. 우리나라의 의사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전체 의사를 놓고 보면, 52.7%가 서울과 경기 지역(인천 포함)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체 의사의 80.1%를 차지하는 전문의도 이와 비슷한 분포(수도권: 51.7%, 대도시: 22.6%, 읍면지역: 25.8%)를 보인다. 이 여파로 수련의 과정에 있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 63.3%가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통 자신이 수련받은 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속할 경우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인구 천 명당 2.8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이 0.7명으로 가장 적다. 세종이 신설된 도시임을 고려한다면, 경북이 인구 천 명당 1.3명으로 가장 적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활동 의사가 가장 적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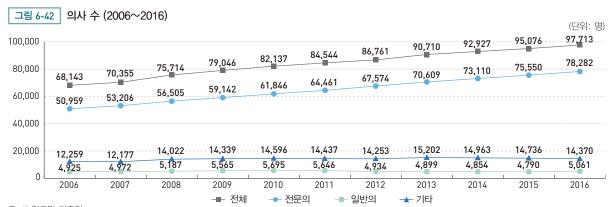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994	2016	1년

Checkpoint

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의사는 2006년 이후 연평균 3.7%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97,713명에 이르렀다. $2006\sim2016$ 년 사이에 전문의는 4.4%, 일반의는 0.3%, 기타 의사(인턴 및 레지던트)는 1.6%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7, 2017



주: 1) 연도말 기준임.

2) 인턴과 레지던트는 기타로 분류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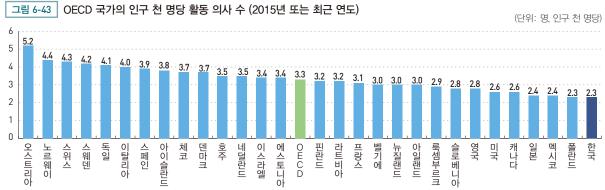
표 6-31 시도별 의사 수 (2016)

(단위: 명)

								(LTI- 6)
구분		의시	ㅏ수			인구 천 명	당 의사 수 ¹⁾	
TE	전체	전문의	일반의	기 E ト ²⁾	전체	전문의	일반의	기타 ²⁾
전국	97,713	78,282	5,061	14,370	1.9	1.5	0.1	0.3
서울	28,189	21,040	938	6,211	2.8	2.1	0.1	0.6
부산	7,637	6,196	372	1,069	2.2	1.8	0.1	0.3
대구	5,495	4,350	159	986	2.2	1.8	0.1	0.4
인천	4,469	3,686	207	576	1.5	1.3	0.1	0.2
광주	3,434	2,785	152	497	2.3	1.9	0.1	0.3
대전	3,455	2,731	161	563	2.3	1.8	0.1	0.4
울산	1,702	1,442	113	147	1.5	1.2	0.1	0.1
세종	180	164	16	0	0.7	0.7	0.1	-
경기	18,846	15,713	818	2,315	1.5	1.2	0.1	0.2
강원	2,575	1,978	216	381	1.7	1.3	0.1	0.2
충북	2,389	1,998	177	214	1.5	1.3	0.1	0.1
충남	2,995	2,436	265	294	1.4	1.2	0.1	0.1
전북	3,522	2,825	271	426	1.9	1.5	0.1	0.2
전남	3,042	2,546	372	124	1.6	1.3	0.2	0.1
경북	3,515	3,125	328	62	1.3	1.2	0.1	0.0
경남	5,221	4,362	433	426	1.5	1.3	0.1	0.1
제주	1,047	905	63	79	1.6	1.4	0.1	0.1

주: 1)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행정안전부의 연말기준 '총인구' 대비 '요양기관 종사 의사 수'를 의미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www.mois.go.kr에서 2017,12.06, 인출)



자료: OECD Health Data, 2017(stats,oecd,org에서 2017. 12. 08. 인출)

²⁾ 인턴과 레지던트는 기타로 분류함.

면허의료인 현황

15-1

Number of licensed health care workers

지표 정의

주요 의료 인력의 해당 분야 면허인 수이다. 주요 의료 인력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가 해당된다.

측정 산식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 수

주요 의료 인력은 모두 2006년과 비교해서 많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인구 대비 의료인의 규모는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예로, 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는 6.8명(2015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9.5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표 6-32 연도별 면허의료인 현황

(단위: 명,%)

												(- 11. 0, 70)	
		전체				남자				여자			
구분	2006	2011	2016	2006년 대비 2016년(%)	2006	2011	2016	2006년 대비 2016년(%)	2006	2011	2016	2006년 대비 2016년(%)	
의사	88,139	104,332	118,696	[34.7]	70,074	80,348	88,898	[26.9]	18,065	23,984	29,798	[64.9]	
치과의사	22,255	26,087	29,632	[33.1]	16,988	19,407	21,679	[27.6]	5,267	6,680	7,953	[51.0]	
한의사	15,849	19,846	23,845	[50.5]	13,569	16,375	18,973	[39.8]	2,280	3,471	4,872	[113.7]	
약사	55,845	62,245	66,992	[20.0]	19,958	22,418	24,118	[20.8]	35,887	39,827	42,874	[19.5]	
간호사	223,781	282,656	355,772	[59.0]	-	-	-	[-]	-	_	-	[-]	

주: 1)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를 제외하였으며, 해외거주자는 포함함.

그림 6-44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활동 간호사 수 (2015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명, 인구 천 명당)



자료: OECD Health Data, 2017(stats,oecd,org에서 2017, 12, 0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88	2016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7, 2017

²⁾ 사망자(말소자 포함)는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7(원자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면허관리정보시스템)

16 H H

병상 수

Number of inpatient care beds

지표 정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의 전체 병상 수이다.

병상 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자원을 보여준다. 연도별 추이, 지역별 병상 현황을 관찰함으로써 병상 수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측정 산식

• 등록 병상 수

유의사항

우리나라 병상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신고 병상 자료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등록 병상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OECD Health Statistics의 작성은 등록 병상 자료에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등록 병상에 대해서 기술한다.

2016년 병상 수는 692,345개로, 종합병원 149,018개(21.5%), 요양병원 246,373개(35.6%), 일반병원 190,125개(27.5%), 의원 75,170개(10.9%), 기타* 31,569개(4.6%)이다. 지역별로는 전체 병상의 35.8%가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에 분포하고 있으며, 27.0%는 대도시, 37.2%는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 분포한다. 급성기 입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은 수도권 지역(44.0%)에,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의 병상은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각각 40.1%, 41.2%)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의료기관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13.4개로, 광주(26.7개), 전남(21.5개), 전북(20.9개) 이 많고, 서울(8.7개), 제주(7.9개), 세종(5.1개)이 적다. 한편, 종합병원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2.9개로, 광주(4.9개), 전남(4.1개), 부산(3.9개)이 많고, 울산(2.4개), 충남(2.4개), 경기(1.9개)가 적다.

우리나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11.5개**(2015년 기준)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많다. OECD 국가의 평균은 4.7개이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88	2016	1년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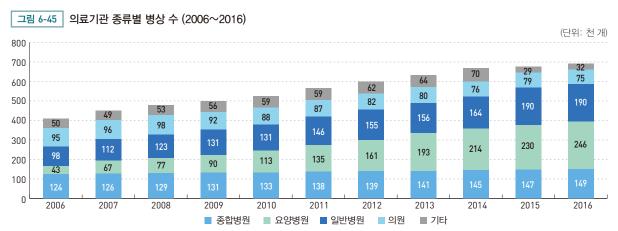
2016년 전체 병상 수는 69.2만 개로 2015년에 비교해서 1.8만 개 증가하였다. 병상 수는 2006년 이후 연 평균 5.4%씩 증가해왔다. 특히, 요양병원의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의 병상 수 증가가 눈에 띈다. 요양병원의 병상 수 증가율(2006-2016)은 연평균 19.0%이다.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7, 2017

^{*} 기타에는 특수병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부속의원, 조산원이 포함됨.

^{**} OECD의 산출 기준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의 병상은 제외함.



주: 기타에는 특수병원, 치과병 · 의원, 한방 병 · 의원, 부속의원, 조산원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7(원자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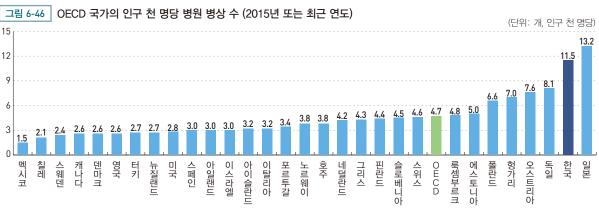
표 6-33 시도별 · 의료기관 종류별 병상 수 (2016)

(단위: 개)

		–	0	•	-,							(ピカ・ハ)
구분			병신	당수					인구 천 명	당 병상 수 ¹⁾		
T판	전체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기타 ²⁾	전체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기타 ²⁾
전국	692,345	149,018	246,373	190,125	75,170	31,659	13.4	2.9	4.8	3.7	1.5	0.6
서울	86,630	33,048	17,783	19,385	12,792	3,622	8.7	3.3	1.8	2.0	1.3	0.4
부산	71,129	13,064	33,309	15,998	4,942	3,816	20.3	3.7	9.5	4.6	1.4	1.1
대구	36,653	6,844	10,526	15,753	3,379	151	14.8	2.8	4.2	6.3	1.4	0.1
인천	32,093	7,822	9,664	7,097	5,460	2,050	10.9	2.7	3.3	2.4	1.9	0.7
광주	39,228	7,268	14,060	8,450	3,022	6,428	26.7	4.9	9.6	5.8	2.1	4.4
대전	23,427	5,565	9,123	4,658	3,504	577	15.5	3.7	6.0	3.1	2.3	0.4
울산	15,378	2,824	6,840	4,200	1,300	214	13.1	2.4	5.8	3.6	1.1	0.2
세종	1,249	_	832	78	204	135	5.1	-	3.4	0.3	0.8	0.6
경기	129,320	24,718	45,401	36,088	17,031	6,082	10.2	1.9	3.6	2.8	1.3	0.5
강원	18,475	5,576	3,565	6,735	2,306	293	11.9	3.6	2.3	4.3	1.5	0.2
충북	21,252	4,675	6,307	6,324	3,060	886	13.4	2.9	4.0	4.0	1.9	0.6
충남	27,710	5,031	11,851	5,525	3,758	1,545	13.2	2.4	5.7	2.6	1.8	0.7
전북	39,067	5,738	17,318	9,733	4,174	2,104	20.9	3.1	9.3	5.2	2.2	1.1
전남	40,908	7,862	15,278	12,242	2,764	2,762	21.5	4.1	8.0	6.4	1.5	1.5
경북	43,913	7,458	19,815	13,450	2,929	261	16.3	2.8	7.3	5.0	1.1	0.1
경남	60,858	9,302	23,473	23,440	3,926	717	18.0	2.8	7.0	6.9	1.2	0.2
제주	5,055	2,223	1,228	969	619	16	7.9	3.5	1.9	1.5	1.0	0.0

[~] 주: 1)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행정안전부의 연말기준 '총인구' 대비 요양기관별 '병상 수'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7(원자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 OECD 통계에는 병원급만 포함됨. 따라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은 제외됨.

자료: OECD Health Data, 2017(stats.oecd.org에서 2017. 12. 08. 인출)

²⁾ 기타에는 특수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부속의원, 조산원이 포함됨.

의료기관 수

Number of healthcare providers

16-1

지표 정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 산원)의 등록된 수이다.

측정 산식

• 등록 기관 수

2016년 등록 의료기관 수는 64,999개로, 종합병원 341개, 요양병원 1,386개, 일반병원 1,510 개, 의원 30,157개, 치과병의원 17,219개, 한방병의원 14,142개, 조산원 28개 등이다. 지역별로 는 서울이 16,835개로 가장 많고, 경기(13,854개), 부산(4,965개), 대구(3,590개), 경남(3,508개) 이 그 다음으로 많다.

표 6-34 시도별 의료기관 현황 (2016)

(단위: 개)

		,	,						(271.711)
구분	전체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조산원	기타
전국	64,999	341	1,386	1,510	30,157	17,219	14,142	28	216
서울	16,835	56	109	221	7,980	4,805	3,616	4	44
부산	4,965	29	186	139	2,221	1,254	1,116	3	17
대구	3,590	12	62	113	1,669	867	859	1	7
인천	3,125	18	64	58	1,471	860	642	2	10
광주	2,058	22	55	75	897	597	404	0	8
대전	2,185	10	52	40	1038	519	516	1	9
울산	1,349	7	46	40	587	373	289	0	7
세종	237	0	6	1	112	59	53	0	6
경기	13,854	61	271	288	6,377	3,889	2,916	9	43
강원	1,556	15	30	48	735	375	348	1	4
충북	1,724	12	39	41	838	392	393	1	8
충남	2,206	13	71	49	1023	524	507	0	19
전북	2,381	13	84	79	1,124	551	529	0	1
전남	1,938	24	72	79	919	456	377	3	8
경북	2,714	18	112	83	1,229	639	619	1	13
경남	3,508	25	117	148	1,558	861	786	1	12
제주	774	6	10	8	379	198	172	1	0

주: 1) 연도말 기준임.

2) 병원에는 특수병원(결핵, 한센, 정신) 포함, 의원에는 산업체 부속의원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7(원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88	2016	1년

17 H

GDP 대비 경상의료비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 as % GDP

지표 정의

GDP에서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경상의료비는 국민 전체가 1년간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지출한 최종 소비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료서비스와 집합보건의료서비스(예방 및 공중보건사업, 보건행정관리)에 대한 정부·의무가입제도재원과 민간재원을 모두 포함한다**.

측정 산식

2015년 경상의료비는 115.2조 원으로 2014년과 비교해서 9.3조 원 증가하였다. 경제의 흐름과 의료비의 증감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보여주는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7.4%로, OECD 국가 중에서 26위에 위치한다. OECD 국가의 평균은 8.9%이며, 10%를 넘어선 국가는 미국, 스위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12개이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1970	2015	1년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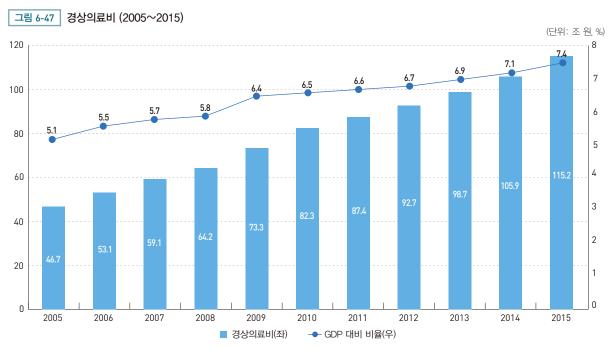
최근 10년간(2005-2015) 경상의료비는 연평균 9.4%씩 증가해왔다. 2008년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기도 했지만, 연이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인하여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OECD 국가의 1인당 의료비의 실질 증가율은 1.9%, 우리나라는 6.9%이다(보건복지부, 2017).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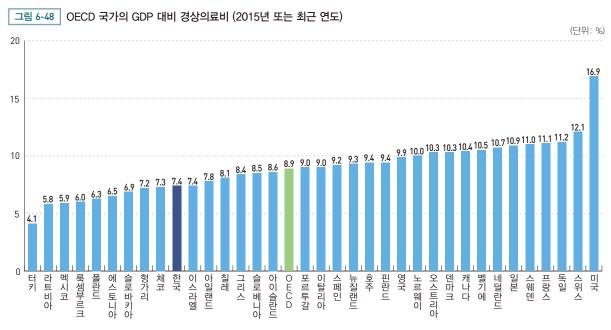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7, 2017

^{*} 보건계정의 신 매뉴얼인 'SHA2011'에서는 의료비 총량치의 대표 지표로 국민의료비 대신 경상의료비를 사용하기로 정하고 있음. OECD는 Health Statistics 2015(2015.7. 발표)부터 이러한 방침을 국제비교 시에 적용함. 국민의료비는 경상의료비와 고정자본형성을 더한 것으로, 2000년대 초반 보건계정이 시작된 이후 OECD Health Statistics 2015의 발표시점까지 보건의료비용의 대표 지표로 사용됐음.

^{**} OECD Health Statistics 2016의 산출 기준이 되는 SHA2011에서는 재원 구분을 크게 정부 · 의무가입제도와 민간재원으로 구분함. 정부 · 의무가입제도는 기존 매뉴얼(SHA1.0)에서의 공공재원과 민영사회보험인 '자동차보험'을 더한 개념임.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각 연도(http://kosis.kr 에서 2017. 12. 06. 인출)



자료: OECD Health Data, 2017(stats.oecd.org에서 2017. 12. 08. 인출)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17-1

Out-of-pocket expenditure, as % of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

지표 정의

경상의료비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여기에서 가계직접부담은 의료이용 시 이용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본인부담의 합으로 구성된다.

측정 산식

가계직접부담 경상의료비 ×100

경상의료비의 재원은 크게 정부·의무가입제도와 민간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의무가입제도는 정부와 의무가입(건강)보험으로 구성되며, 민간재원은 임의가입건강보험, 비영리단체, 기업, 가계직접부담으로 구성된다.

건강보험통합이 이루어진 2000년만 해도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43.6%로 높았으나, 2005년에 시작된 보장성 강화정책 등에 힘입어 가계직접부담은 2010년 37.3%, 2015년 36.8%로 점차 감소했다.

표 6-35 연도별 경상의료비 재원구성

(단위: 십억 원, %)

		정부 · 의두	 		민간	재원					
구분	경상의료비	정부	의무가입 (건강)보험	임의가입 건강보험	비영리단체	기업	가계직접부담				
1980	1,365 (100.0)	96 (7.0)	179 (13.1)	-	8 (0.6)	6 (0.4)	1,076 (78.8)				
1985	2,893 (100.0)	188 (6.5)	754 (26.1)	-	28 (1.0)	9 (0.3)	1,913 (66.1)				
1990	7,275 (100.0)	540 (7.4)	2,377 (32.7)	-	48 (0.7)	19 (0.3)	4,292 (59.0)				
1995	14,758 (100.0)	1,075 (7.3)	5,140 (34.8)	-	106 (0.7)	34 (0.2)	8,402 (56.9)				
2000	25,398 (100.0)	2,624 (10.3)	11,064 (43.6)	400 (1.6)	190 (0.7)	38 (0.1)	11,083 (43.6)				
2005	46,748 (100.0)	5,261 (11.3)	20,990 (44.9)	860 (1.8)	349 (0.7)	64 (0.1)	19,224 (41.1)				
2010	82,306 (100.0)	9,033 (11.0)	38,640 (46.9)	3,343 (4.1)	494 (0.6)	94 (0.1)	30,702 (37.3)				
2015	115,188 (100.0)	11,810 (10.3)	53,152 (46.1)	7,014 (6.1)	666 (0.6)	165 (0.1)	42,381 (36.8)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각 연도(http://kosis.kr 에서 2017. 12. 06. 인출)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1970	2015	1년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비의 비중

Pharmaceuticals and other medical non-durables expenditure, as % of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

17-2 연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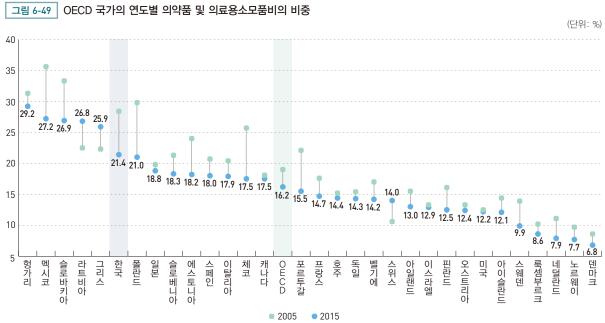
지표 정의

경상의료비 중에서 의약품과 의료용 소모품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여기에서 의약품은 처방의약품과 비처방의약품으로, 의료용 소모품은 반창고, 요실금용품, 피임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측정 산식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비 경상의료비

2015년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비의 비중은 21.4%로 2005년의 28.4%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2005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비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라트비아, 그리스, 스위스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은 16.2%였으며, 우리나라는 상위 6번째에 위치한다.



자료: OECD Health Data, 2017(stats.oecd.org에서 2017. 12. 08. 인출)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1970	2015	1년

건강보험 급여비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 amount

지표 정의

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든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다. 이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합 으로 구성되며, 현물급여는 요양급여(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지급분 포함), 건강진단비로, 현금급여는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비,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분, 임신출산진료비로 구성된다.

측정 산식

• 현물급여 + 현금급여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급여비로 지출한 금액은 50.9조 원이며, 이 중에서 현물 급여는 49.7조 원(97.7%), 현금급여는 1.2조 원(2.3%)이다. 한편,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급여비 는 연평균 9.0%씩 증가해왔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의 구성비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표 6-36 건강보험급여비 (2006~2016)

(단위: 십억 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21,439	24,575	26,380	29,970	33,796	36,056	37,334	39,862	42,566	45,730	50,891
현물급여	21,289	24,383	26,166	29,642	33,300	35,448	36,674	39,123	41,899	44,582	49,705
(비중)	(99.3)	(99.2)	(99.2)	(98.9)	(98.5)	(98.3)	(98.2)	(98.1)	(98.4)	(97.5)	(97.7)
현금급여	150	193	214	328	497	608	660	739	687	1,148	1,185
(비중)	(0.7)	(0.8)	(0.8)	(1.1)	(1.5)	(1.7)	(1.8)	(1.9)	(1.6)	(2.5)	(2.3)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994	2016	1년

건강보험보장률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17-4 ^{연 관}

지표 정의

건강보험보장률은 건강보험 대상자가 치료 목적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하였을 때 발생되는 전체 의료비(보험자부담금,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단, 건강보험보장률에 있어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미용성형수술, 집단검진, 개별검진, 시력 교정술, 예방접종, 기타 예방진료, 임플란트*, 미용목적의 보철·교정, 건강증진 목적의 한약첩약,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을제외한 건강보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급여 항목만을 포함한 것이다.

* 2006~2013년 보장률은 임플란트 전체를 미포함, 2014년 보장률은 75세 이상 임플란트를 포함, 2015년 보장률은 70세 이상 임플란트를 포함함. 추후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따라 포함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측정 산식

보험자부담금

-×100

보험자부담금 + 법정 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4년부터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를 조사하여 건강보험보장률을 파악하고 있다. 경상의료비와 경상의료비 내 정부·의무가입제도 재원의비중이 국가 보건의료정책 구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듯이, 건강보험보장률은 건강보험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2015년도 건강보험보장률은 63.4%로 2014년의 63.2%보다 0.2%p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본 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임신출산지원금 등의 현금급여가 포함되었다. 현금급여를 제외한 지표는 2011년 이후에는 [표 6-37]과 같이 발표하지 않는다.

표 6-37 건강보험보장률 (2006~2015)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현금지급 포함	64.5	65.0	62.6	65.0	63.6	63.0	62.5	62.0	63.2	63.4
현금지급 미포함	64.3	64.6	62.2	64.0	62.7	62.0	-	-	-	-

주: 현금급여를 제외한 경우는 2011년 이후 발표되지 않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각 연도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환자진료비 실태조사	2005	2015	1년

주거

- 0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02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 03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 04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 05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 06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 07 노수인 수
- 08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 N9 월 소든 대비 월 인대료 비율
- 10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 11 주거급여 지워가구 비율
- 12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 0 1 7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주거의 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주거의 안정성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노숙인 수	
주거비 부담 가능성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01 H H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Percentage of Households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지표 정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저주거기준 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주거수준으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이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및 규모는 주거의 질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측정 산식

면적기준, 방수기준 및 설비기준 미달가구 수 일반가구 수

유의사항

법으로 규정된 최저주거기준 중에서 정량적 정보 파악이 어려운 구조 · 성능 · 환경 기준은 비적용 하였고, 주거실태조사가 표본조사인 점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는 추정치이다.

최저주거기준은 2000년 도입 후 2011년 개정되었으며,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달가구 규모를 추정한다. 2016년 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5.4%로 2014년 비율과 동일하게 나타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는 102.7만 가구로 2014년 99.2만 가구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주거실태조사 실시된 후 10년 간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주거의 질적 수준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4년에서 2016년 변화를 지역별로 보면 도지역의 미달가구 비율은 6.7%에서 5.1%로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4.7%에서 5.8%, 광역시는 4.9%에서 5.0%로 비율이 증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며, 시설기준 미달비율은 도지역, 면적기준 및 침실기준 미달비율은 수도권이 높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면적기준과 시설기준 미달비율이 높으며, 점유형태별로는 보증금 있는 월세 가구의 면적기준과 침실기준 미달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질적 지표 중 하나인 3인 이상 단칸방 거주 가구 비율은 최소 주거면적(면적기준 및 침실기준)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2006년 0.7%에서 2016년 0.2%로 감소하였으나, 보증금 없는 월세(1,3%)와 보증금 있는 월세(0.7%)에서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16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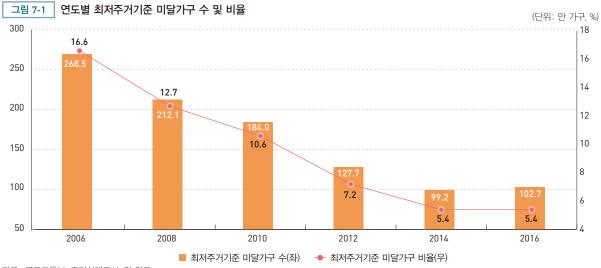
Checkpoint

2014년에 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5.4%로 동일함에도 가구 수는 증가하였다. 다만, 10년간 감소 추세였으며, 정부에서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2022년까지 4.5%(86만 가구)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참고문헌

- 김준형, 주거복지정책수단으로서 최저주거기준의 활용실태와 대안탐색, 2015.06, 국토계획 제50권 제4호, pp185-207
- 이성재, 최저주거기준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2010, 전북발전연구원
- 한국일보, 서화숙의 집이야기 (19) 방이 필요한데 집을 짓는다, 2014.12.14
- 국토교통부, '3인가구 최소 주거면적 29→36㎡로 상향조정, 2011.11.26
- 국토교통부,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6.12
- 한국일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03만 가구에서 86만 가구로, 2017.8.29

^{*} 주거기본법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최저주거기준의 내용)에 따라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 업·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최저주거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해양 부공고 제2011~490호 최저주거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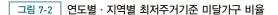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丑 7-1 지역별 · 소득계층별 · 점유형태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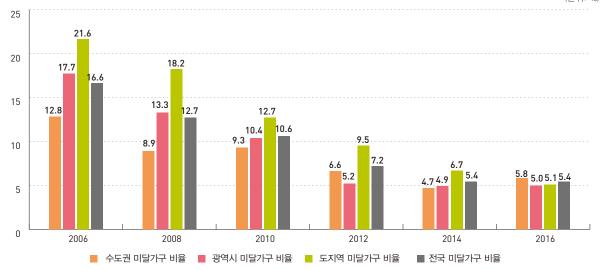
(단위: %)

	구분	최저주거기준 미달	면적기준 미달	시설기준 미달	침실기준 미달
	수도권	51.7	66.8	37.9	60.8
TICH	광역시	18.5	15.5	22.9	11.2
지역	도지역	29.8	17.7	39.2	28.0
	계	100.0	100.0	100.0	100.0
	저소 득층	65.4	52	89.1	33.4
소득 계층	중소 득층	28.2	38.9	9.4	45.6
꼬득 게공	고소 득층	6.4	9.1	1.5	21.0
	계	100.0	100.0	100.0	100.0
	자가	22.8	14.2	27.2	23.3
	전세	12.0	15.3	6.3	12.5
저ㅇ 청대	보증금 있는 월세	37.5	47.7	21.8	49.7
점유 형태	보증금 없는 월세	22.4	19.5	37.3	9.2
	무상	5.3	3.3	7.4	5.3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소득계층은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1분위~4분위), 중소득층(5분위~8분위), 고소득층(9분위~10분위)으로 구분함. 자료: 국토교통부,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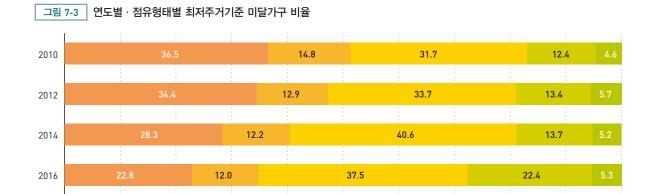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단위: %)



50

■ 자가 ■ 전세 ■ 보증금 있는 월세 ■ 보증금 없는 월세 ■ 무상

60

70

80

9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0

10

표 7-2 연도별 · 점유형태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20

30

40

(단위: %)

100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전체	0.7	0.3	0.3	0.6	0.3	0.2
자가	0.3	0.1	0.1	0.1	0.1	0.1
전세	0.6	0.2	0.2	0.6	0.3	0.1
보증금 있는 월세	2.3	0.8	0.9	1.6	0.9	0.7
보증금 없는 월세	1.4	1.6	0.8	1.8	0.7	1.3
무상	0.5	0.5	0.4	1.5	0.2	0.2

주: 1) 거실 및 식당 수가 방의 개수에 포함됨.

2) 2012년도의 경우 부엌, 거실, 화장실, 창고를 제외한 방 수를 조사하였으므로 방의 개수가 0인 경우와 1인 경우를 단칸방으로 간주함.

3)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02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Number of Low-Income Households in receipt of Housing Improvement Support Households

지표 정의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이란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열악한 주택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물리적 보완이나 개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5개 사업 지원가구 수의 합
 - 주거급여사업, 집수리사업,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유의사항

5개 사업에 대해 주관부처가 다양하여,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의 중복이 있을 수 있다.

주거급여제도가 개편되면서, 주거급여사업 지원가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주택상태가 열악한 자가수급자(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사업이 지원이 가능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주거급여사업 외 주택개보수사업들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데, 자가수급자 외에도 주택개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는 201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개편된 주거급여제도로 2015년 사업별 지원가구 수비율에 변화가 나타났다. 주거급여사업은 제도개편으로 2014년 현물주거급여 13,877가구에서 연간 1.0~2.2만 가구를 수선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의 수는 전년의 98.2%(통합된 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포함 시 96.7%)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원가구의 57.2%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와환경부 별도 사업에서 환경부 사업으로 통합된 후 증가하였고, 2016년 규모는 지원가구의 19.9%이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2016년 지원가구 수는 2015년 대비 72.4%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지원가구의 21.9%로 주거급여사업 다음으로 큰 비율을 점하고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내부자료)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내부자료)	2015	2016	부정기
국토교통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내부자료)	-	2016	부정기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내부자료)	-	2016	부정기
환경부	슬레이트지붕 철거 · 지원사업 (내부자료)	-	2016	부정기
행정안전부	집수리 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내부자료)	-	2016	부정기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 사업은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음.

Checknoint

주거급여사업, 슬레이트지붕 철거ㆍ지원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2015년에 비해 지원가구수가 감소했으나, 집수리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의 지원가구수는 증가한 결과, 2016년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수는 134,597가구로 전년 대비 111.2%로 총 지원가구수는 증가하였다. 지원가구수가 가장 많은 주거급여사업은 앞으로도 높은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선유지급여가 자가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수급자 아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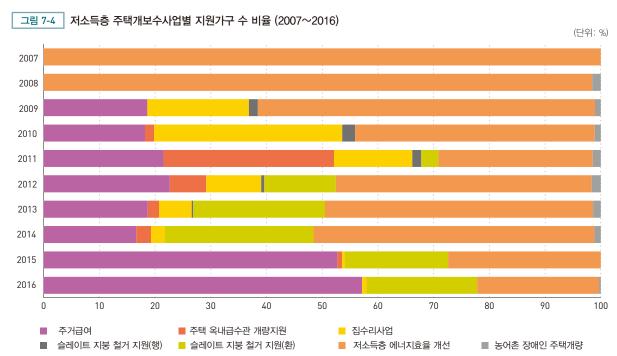
- 박신영 외, 저소득층 주택상태 조사 및 개보수사업 추진방안 연구, 2011, 국토교통
- 이태진 외, 주택개량사업의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층연구,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신재생에너지 공급)은 주거급여 지원항목과 무관하여 별도 시행 가능하고,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은 해당사업 유지 및 사업 연계를 위해 환경부가 지붕 철거 사업은 계속하되, 철거 후 그 외 주택개보수 지원은 수선유지급여로 실시한다. 한편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표 7-3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2007~2016)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주거급여사업 ¹⁾	_4)	_4)	19,677	18,311	16,624	14,605	14,165	13,877	78,294 (9,792)	76,928 (21,207)
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²⁾	_ 5)	_5)	_4)	1,660	23,654	4,217	1,527	2,219	1,291	
집수리사업	_5)	_5)	19,270	34,000	10,860	6,360	4,457	2,049	765	1,067
슬레이트지붕 철거 · 지원사업 ³⁾	_5)	_5)	1,700 (행)	2,320	1,240	360	212	-	-	-
들데이트시중 실기 ' 시전사납'	/	/			2,372 (환, 시범)	8,290	17,942	22,320	27,488	26,72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16,501	69,535	63,996	43,336	21,428	29,628	36,508	42,158	40,707	29,468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_4)	1,075	1,093	1,091	1,115	1,054	1,048	934	-	413
계	16,501	70,610	105,736	100,718	77,293	64,514	75,859	83,557	148,545	134,597

- 주: 1) 2014년까지는 주거현물급여(보건복지부), 2015년은 수선유지급여, ()안은 연간수선완료 가구 실적임.
 - 2) 환경부 사업이었으나 2016년 이후 주거급여사업(국토교통부)으로 통합
 - 3) 2009년, 2010년은 희망근로사업이며, 2011년 이후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4) 지원가구 수 자료 없음.
 - 5) 사업 시행 전
 - 6) 환 : 환경부 사업 / 행 : 행정안전부 사업
- 자료: 관련 부처(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 주: 1) 주거급여사업은 2014년까지는 주거현물급여(보건복지부), 2015년은 수선유지급여이며, 2008년 이전 자료는 없음.
 - 2) 주택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은 환경부 사업이었으나 2016년 이후 주거급여사업(국토교통부)으로 통합
 - 3) 슬레이트지붕 철거ㆍ지원사업은 2009년, 2010년은 희망근로사업이며, 2011년 이후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4)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 사업은 2008년 지원가구 수 자료 없음.
- 5) 주택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집수리사업,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 2009년부터 시행자료: 관련 부체(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03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Percentages of households residing in nonhousing accommodation

지표 정의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처가 있으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오피스텔,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숙박업소의 객실, 비닐하우스 및 판잣집 등에 거주하는 가구를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로 분류하고 있으며, 본 지표에서는 오피스텔과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은 제외하였다.

측정 산식

숙박업소의 객실 거주 가구 수 + 판잣집, 비닐하우스 거주 가구 수 + 기타 가구 수 일반가구 수

유의사항

거주 안정성이나 편의성이 낮은 거처 가구와 상대적으로 양호한 유형(오피스텔 등)과 구분하여 이해해야하며, 인구주 택총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 이외의 거처도 존재(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등)한다.

주택 이외의 거처란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공간을 의미하는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비주택이 있다. 비주택이란 주택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거처 중 거주에 적합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거주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비주택은 실태파악이 더욱 어렵다. 즉,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숙박업소 객실,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 기타를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하는 반면, 비주택에는 PC 방, 사우나, 만화방, 다방과 같은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등 다양한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일반가구 수 1,937만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오피스텔 거주 가구 제외)는 369,501가구로 1.9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기타 거주 가구가 332,214가구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의 89.9%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2000년 및 2010년 인구 주택총조사에서도 주택 이외의 거처 중 기타 거주 가구의 비율이 각각 87.8%, 73.8%로 높았으나, 2015년 이후 그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점에서 기타 가구에 대한 명확한 거주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연령대별 분포를 주택에 거주하는 일반가구주 연령대별 분포와 비교할 때, 20대가구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	2015	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2015	2016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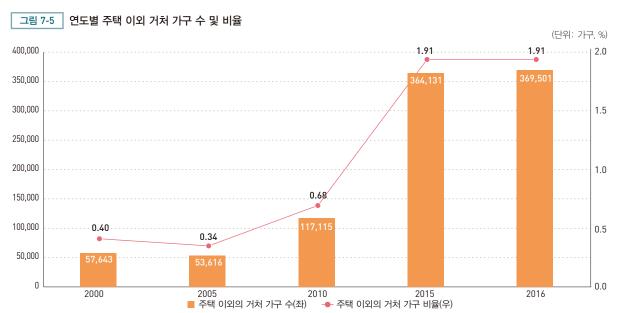
Checkpoint

2015년과 같이 2016년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은 1.91%로 동일한 비율이며, 가구 수는 더 증가하였다.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처 가구가 감소했음에도 가구 수가 증가한 데에는 무엇보다 89.9%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 거처 가구의 증가 때문이다. 최근까지 대표적인 주택 이외의 거처로 인식되어 온 숙박업소의 객실이나 판잣집 등 외에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거처 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비주택 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9
- 남원석,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21권 제2호, 2013
- 서종균 외, 비주택 거주 가구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3, 서울특별시

또한 비율은 미미하나, 가구주 연령 20세 미만 가구도 존재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편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은 2015년 11,409가구에서 2016년 6,601가구로 57.9%로 감소하였다. 지역별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을 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1.5%, 5개 광역시 12.5%로 대도시 지역이 64.0%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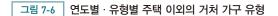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1. 27. 인출)

표 7-4 연도별 ·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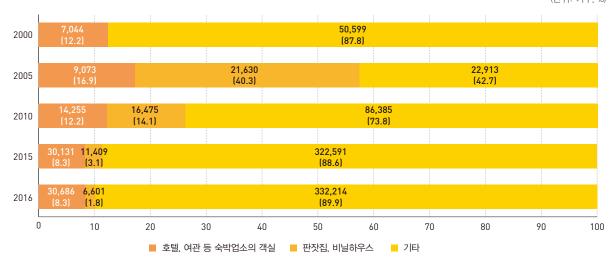
(단위: %)

구분		주택 이외 거처 가구											
T E	2000	2005	2010	2015	2016	2016							
20세 미만	0.9	0.9	2.7	0.5	0.5	0.3							
20~29 세	10.4	10.4	27.9	14.0	14.1	6.3							
30~39세	19.6	13.7	16.4	16.0	15.6	16.3							
40~49세	27.1	24.0	16.4	19.1	18.7	23.2							
50~64 세	29.4	33.9	24.0	35.6	36.7	33.4							
65세 이상	12.7	17.1	12.6	14.9	14.3	2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1. 27. 인출)



(단위: 가구, %)



주: 2000년도의 경우,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과 기타 2개 항목으로 구성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1. 27. 인출)

표 7-5 시도별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현황 (2016)

(단위: 가구)

=	2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69,501	76,335	15,311	11,495	15,250	7,523	6,367	5,535	1,419	98,601	14,399	12,142	19,526	14,038	17,684	24,238	22,534	7,104
211	(%)	100.0	20.7	4.1	3.1	4.1	2.0	1.7	1.5	0.4	26.7	3.9	3.3	5.3	3.8	4.8	6.6	6.1	1.9
여. 숙박	^{호텔} 관 등 ¦업소 백실	30,686	2,219	3,045	1,214	1,900	1,482	1,356	704	71	6,030	1,791	953	1,544	1,099	1,302	1,977	2,511	1,488
	잣집, 하우스	6,601	1,976	291	49	104	26	45	56	6	3,142	105	86	130	46	69	129	305	36
フ	타	332,214	72,140	11,975	10,232	13,246	6,015	4,966	4,775	1,342	89,429	12,503	11,103	17,852	12,893	16,313	22,132	19,718	5,580

자료: 통계청, 2016 인구주택총조사, 2017 (http://kosis.kr 에서 2017. 11. 27. 인출)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Number of housing units per 1,000 population

지표 정의

인구 천 인당 주택 수는 전체 주택 수를 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주택 주택의 양적 상태를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로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적 지표이다. 가구 수보다는 인구 수 측정이 용이하여 주택의 양적 수급여건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측정 산식

주택 수 인구 수 × 1,000

유의사항

단독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1채로 보는 경우와 구분거처 수로 산정하는 경우에 따라 수치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지표이기는 하나, 상기한 바와 같이 국가별로 주택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을수 있다.

인구 천 인당 주택 수를 산정할 경우, 주택 수를 파악하는 방식, 즉, 다가구주택을 주택 1호로 산정하는 경우와 구분거처 수로 산정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그 값이 달라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구분거처를 반영하여 천 인당 주택 수를 발표하고 있다. 2016년 387.7호이며, 2010년 363.8호* 에서 23.9호로 증가하였다. 최근 추이를 보면, 1995년 214.5호, 2005년 330.4호, 2016년 387.7 호로 20여년간 173.2호, 10여년간 57.3호로 증가하였다. 다만, 1995년 수치는 다가구주택을 1호 로 산정한 까닭에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천 인당 주택 수는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대도시 및 도별로 천 인당 주택 수 격차가 나타나는데,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에 비해 도지역은 400호를 넘어서고 있다(379.3호 제주 제외). EU 28개국의 인구천 인당 주택 수가 대부분 400호 이상으로, 2015년 한국의 인구천 인당 주택 수 387.7호에 비해 높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	2015	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2015	2016	1년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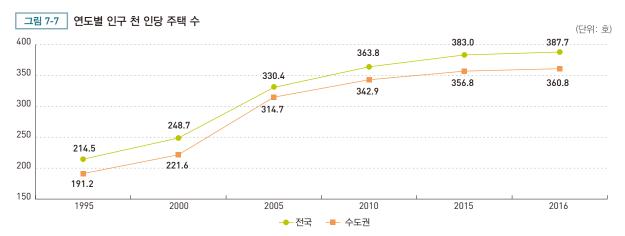
인구 천 인당 주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나 도지역에 비해 수도권의 증가폭은 낮은데, 수도권 중 서울 및 경기도는 2016년 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으로 여전히 주택의 양적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지역은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하면, 인구 천 인당주택 수 400호 이상이다. 앞으로 매년 인구 천 인당 주택 수가 발표될 것이므로 매년 주택 수급 변화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2015년 주택보급률 및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발표 보도자료, 2015.12.29
- CECODHAS Housing Europe, 2012 Housing Europe Review, 2011
- Habitat for Humanity, Housing review 2013 on 23 countries in the Europe and Central Asia
- Housing Europe, The State of Housing in the EU 2015, 2015

^{* 363.8}호는 현장조사방식에 따른 천 인당 주택 수이며, 등록센서스에 따른 천 인당 주택 수는 356.8호이다.

^{**} 수도권 중 서울과 경기지역은 2016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각각 96.3%, 99.1%, 100% 미만이다.



- 주: 1) 주택 수 산정 관련, 1995년, 2000년은 다가구주택 1호로 산정, 2005년 이후는 구분거처 수로 산정
 - 2) 주택 수에는 빈집이 포함.
 - 3)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의미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8. 3. 2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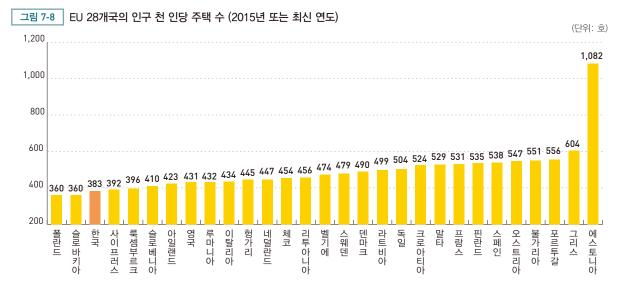
표 7-6 연도별 · 시도별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변화

(단위: 호)

7	분	전국	수도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	16(A)	387.7	360.8	371.6	399.8	392.6	368.3	396.3	391.2	391.9	404.0	350.7	430.9	426.7	416.8	424.3	448.3	453.6	406.8	379.3
200)5(B)	330.4	314.7	315.9	329.5	316.4	322.1	308.8	321.9	321.7	-	311.8	369.8	356.1	362.7	357.9	380.4	370.2	347.5	323.4
199	75(C)	214.5	191.2	168.9	177.5	178.2	227.4	198.1	220.7	-	-	210.0	268.9	256.6	270.3	260.8	293.4	270.2	233.5	226.0
천 인당 주택		57.3	46.1	55.7	70.3	76.2	46.2	87.5	69.3	70.2	-	38.9	61.1	70.6	54.1	66.4	67.9	83.4	59.3	55.9
		173.2	169.6	202.7	222.3	214.4	140.9	198.2	170.5	-	-	140.7	162.0	170.1	146.5	163.5	154.9	183.4	173.3	153.3

주: 울산은 1997년 광역시로 승격하였고, 세종시는 2012년 출범하여 2005, 1995년 수치가 없음.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8. 3. 20. 인출)



자료: Housing Europe, The State of Housing in the EU 2015, 2015; Housing Europe, The State of Housing in the EU 2017, 2017

05 "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Percenatage of Households Living in Long Term Public Rental Housing

지표 정의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의 재원(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건설, 매입하여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장기간 임대의무기간을 규정하는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본 지표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였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공공재원이 투입되고 장기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책정되므로, 특히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측정 산식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 수 × 100 총 가구 수

유의사항

제도 변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는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외국의 사회주택과 유사한 유형 외에 중간소득층이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도 포함되어 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이 각각 50년 및 30년인 영구임대주택('89 도입)과 국민임대주택('98 도입)에 역할이 컸다. 이 외에 도 50년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1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이다.

2016년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이 6.8%인데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이 6.3%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자치하는 비율이 높다.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 대주택이 14.7%, 국민임대주택이 37.5%로 두 개 유형이 52.2%인 것에서 그 비중을 알 수 있다. 2007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이 3.2%에서 2016년 그 비율은 6.3%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 재고를 보면, 526천 호에서 1,256천 호로 역시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재고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어온 결과 2016년 임대주택은 2,273천 호로 100가구 중 11가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이다. 반면, 임대주택 대비 장기공 공임대주택 비율은 2013년 이후 다소 하락하였다. 이는 10년 미만 임대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비율은 6.3%로 전년도 5.9%에 비해 0.4%p 상승하였으며, 지난 10년간 비율 증가 뿐 아니라 재고도 확대되었다. 공급계획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경우거주 가구 비율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13~'22) 주택종합계획, 2013
- 국토교통부, 2014년 주택종합계획, 2014
- Housing Europe, The State of Housing in the EU 2017, 2017
- Housing Europe, The State of Housing in the EU 2015, 2015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의 해외 사례를 보면, EU 국가 중 서유럽 지역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유럽 지역의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은데 국가별 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으나,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임대료 규제나 주거보조 등 주거지원 이루어지고 있고, 스페인은 자가보유의식이 높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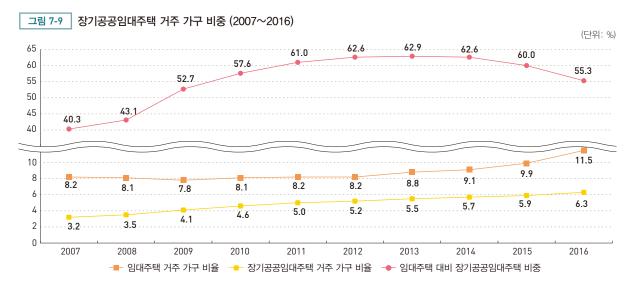
한편,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재고를 2022년까지 200만 호로 확보하여 재고주택 대비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9%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7-7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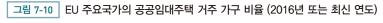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천 호)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가구 수		16,364	16,619	16,862	17,339	17,719	18,057	18,408	18,773	19,561	19,838
임대주택	수	1,304	1,342	1,311	1,399	1,460	1,487	1,616	1,709	1,938	2,273
십네구텍	(%)	(8.2)	(8.1)	(7.8)	(8.1)	(8.2)	(8.2)	(8.8)	(9.1)	(9.9)	(11.5)
고고이네즈테	수	825	876	865	924	1,019	1,038	1,125	1,177	1,257	1,358
공공임대주택	(%)	(5.0)	(5.3)	(5.1)	(5.3)	(5.8)	(5.8)	(6.1)	(6.3)	(6.4)	(6.8)
장기공공임대주택	수	526	578	691	806	890	931	1,016	1,069	1,163	1,256
	(%)	(3.2)	(3.5)	(4.1)	(4.7)	(5.0)	(5.2)	(5.5)	(5.7)	(5.9)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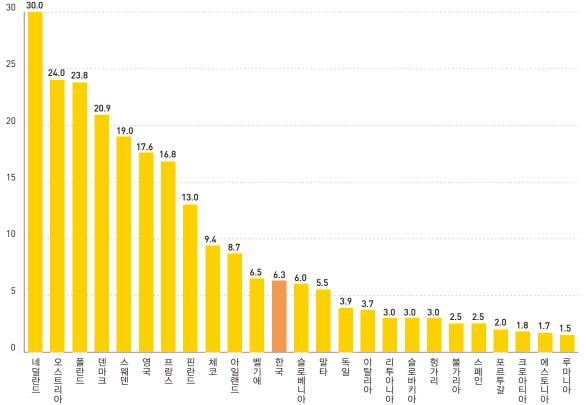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1. 27. 인출),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각 연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1. 27. 인출),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각 연도



(단위: %)



주: 1) 유럽국가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에는 사회주택, 자선단체, 시정부 공공임대주택에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을 의미함. 2) 덴마크는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임. 자료: Housing Europe, The State oh Housing in the EU 2017, 2017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Public Rental Housing units as percentage of an new housing units

05-1

지표 정의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이란 매년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시장개입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하며,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수준도 전망할 수 있게 한다.

측정 산식

당해 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호수 당해 연도 주택공급 호수

최근 10년간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때가 2008년 31.5%인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가장 적었다. 반대로 2015년 주택건설실적이 가장 높은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가장 낮다. 이는 주택건설시장이 경기에 영향을 받아 등락을 반복하는 데 반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주택경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공급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10년간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5,279천호이며, 공공임대주택은 927천호로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7.6%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는 10.6%로 하락하였다.

공급주체별 공공임대주택 비율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중이 가장 높다. 최근 10년간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약 60.3만 호로 2012년 공급비율 51.9%로 최저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6년에는 83.7%에 이르고 있다.

표 7-8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인허가 수 (2007~2016)

(단위: 천 호)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주택 건설 인허가 수	555.8	371.3	381.8	386.5	549.6	586.9	440.1	515.2	765.3	726.0
공공임대 ^{인허가 수}	146.6	116.9	89.6	93.3	84.1	73.6	75.8	80.6	90.1	76.7
주택 건설 _[%]	(26.4)	(31.5)	(23.5)	(24.1)	(15.3)	(12.5)	(17.2)	(15.7)	(11.8)	(10.6)

자료: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http://kosis.kr 에서 2017. 11. 28. 인출)

표 7-9 | 공급주체별 신규 공공임대주택 수 (2007~2016)

(단위: 호)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46,565	116,908	89,603	93,278	84,065	73,619	75,778	80,629	90,144	76,690
지방자치단체	15,769	12,802	10,501	27,066	20,657	14,047	10,327	8,802	11,650	9,377
한국토지주택공사(LH)	117,351	94,788	66,527	64,278	57,868	38,216	46,626	52,446	65,577	64,178
민간	13,445	9,318	12,575	1,934	5,540	21,356	18,825	19,381	12,917	3,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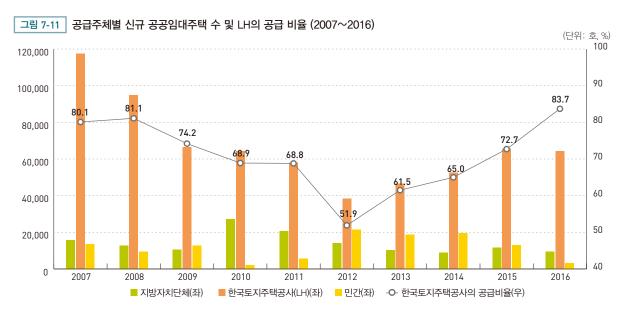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http://kosis.kr 에서 2017. 11. 28. 인출)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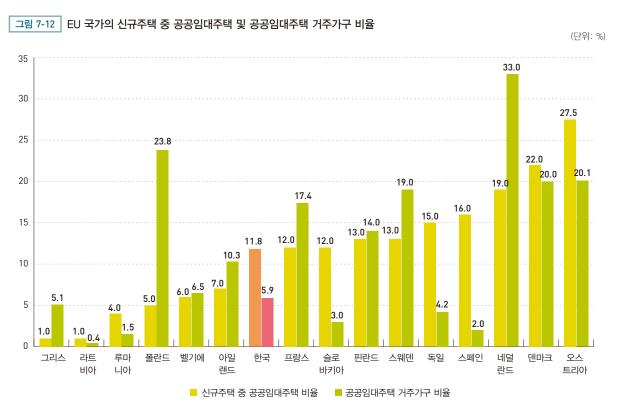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	2016	1년

참고문헌

- 이종권 · 김경미 · 권치흥 · 박상학, 「공공임대주택 50년의 성과와 과제」 토지주택연구원, 2013
- CECODHS Housing Europe, "Housing Europe Review", CECODHS Housing Europe's Observatory, 2012



자료: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http://kosis.kr 에서 2017. 11. 28. 인출)



주: 1) 프랑스는 착공(satrting) 기준, 그 외 국가는 준공(completion) 기준 2) 신규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수치가 없는 EU 국가는 제외

- 3) 벨기에의 경우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CECODHS Housing Europe, 2012 기준
- 4)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의 경우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및 공공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CECODHS Housing Europe, 2012 기준

자료: Housing Europe, The State of Housing in The EU 2017, 2017; CECODHS Housing Europe, 2012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Duration of residence in current housing

지표 정의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주거의 안정성과 관련이 깊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거주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능동적인 입장에 있는 자가가구가 임차가구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길다. 그러므로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더욱 의미가 있다.

측정 산식

현재 주택에 거주한 연도에서 조사 연도까지의 기간

유의사항

특성별 거주기간 비교를 통해 주택유형, 소득수준별 주거안정성의 차이를 이해해야 함.

점유형태에 따른 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보면 2016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지역별 거주기간은 지역에 따라 2년 내외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자가가구가 10.6년이고 임차가구는 4년 내외로 나타난다. 점유형태에 따라 주거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거주기간 차이가 크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평균거주기간이 길어진다. 지난 10년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고소득층은 평균 거주기간이 5~6년 사이인데, 저소득층은 10년 내외이다. 구간별 거주기간을 보면, 1~5년이 소득계층별로 비율은 차이가 있으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저소득층이 9.9%로 중소득층 3.5%, 고소득층 2.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지역별 거주기간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를 볼 수 있는데, 25년 이상 거주 가구 비율이 도지역은 10.8%인데 반해 수도권과 광역시는 각각 3.2%, 5.0%로 상대적으로 낮다.

거주기간에 있어 점유형태에 따른 차이를 가장 크게 볼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은 임차가구의 경우 외부적 요인에 따른 이동 가능성이 클 것이다. 전국 평균 거주기간이 7.7년인 것과 비교할 때,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 9.3년, 중소득층 6.6년, 고소득층 6.7년이고,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 10.6년, 전세가구 3.4년, 보증금있는 월세 3.5년, 보증금 없는 월세 4.8년, 무상 7.0년으로 점유형태별 거주기간의 편차가 더 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16	2년

Checkpoint

2016년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2014년 7.7년과 동일하며, 점유형태에 따른 거주기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양한 주거이동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다 월세가 주거안정성이 낮다고 보았으나, 2016년 조사에서도 전세 거주기간이 3.4년으로 월세 거주기간 3.5년보다 더 짧다.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도 전세 거주기간이 4.2년, 월세 거주기간이 4.3년으로 나타나는데,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 공급 감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 2014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5.1
- 국토교통부,「2015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발표, 2016.6.1일자 보도자료
-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 제 97호 서울시민은 현 주택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나?, 2014.8
- 연합뉴스, 이젠 월세가 대세... 평균 거주기간 전세보다 길어져, 2017.2.27일자 기사

표 7-10 연도별 · 지역별 현재 주택에서의 평균 거주기간

(단위: 년)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전 국	7.7	7.7	7.9	8.6	7.7	7.7
수도권	5.3	6.0	6.2	6.7	6.4	6.4
광역시	7.2	7.2	7.5	8.0	7.6	7.4
도지역	11.3	10.6	10.6	11.9	10.0	9.9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표 7-11 연도별 · 점유 형태별 현재 주택에서의 평균 거주기간

(단위: 년)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자가	11.0	11.7	11.4	12.5	11.2	10.6
전세	2.9	3.1	3.3	3.2	3.5	3.4
보 증 금 있는 월세	3.2	3.4	3.3	4.1	3.4	3.5
보증금 없는 월세	3.6	4.7	4.6	5.2	4.3	4.8
무상	8.6	8.7	8.5	10.5	7.4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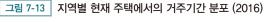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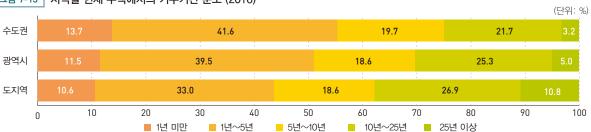
표 7-12 연도별 · 소득계층별 현 주택의 평균 거주기간 및 거주기간별 분포 변동

(단위: 년, %)

구	분	1년 미만	1년~5년	5년~10년	10년~25년	25년 이상	계	평균 거주기간
	2006	13.5	32.8	15.6	25.6	12.5	100.0	10.3
	2008	12.1	29.7	18.4	27.0	12.8	100.0	10.6
저소득층	2010	10.9	33.5	17.3	25.8	12.5	100.0	10.3
	2012	8.6	31.5	17.1	29.0	13.8	100.0	11.5
	2014	13.6	31.9	15.7	27.2	11.6	100.0	10.1
	2016	13.6	33.2	17.4	25.9	9.9	100.0	9.3
	2006	14.7	44.7	19.4	18.4	2.8	100.0	5.8
	2008	13.5	43.4	21.7	18.5	2.9	100.0	6.0
중소득층	2010	10.8	43.3	20.5	22.1	3.4	100.0	6.6
오파크으	2012	8.3	46.4	20.3	21.4	3.5	100.0	6.8
	2014	13.8	42.1	18.4	22.3	3.3	100.0	6.4
	2016	12.2	42.8	19.3	22.2	3.5	100.0	6.6
	2006	12.5	47.1	20.9	17.4	2.1	100.0	5.5
	2008	10.5	44.6	26.0	17.4	1.5	100.0	5.6
고소득층	2010	8.8	43.5	24.8	20.9	2.1	100.0	6.2
· · · · · · · · · · · · · · · · · · ·	2012	7.3	44.7	21.6	24.0	2.4	100.0	6.6
	2014	10.5	40.8	23.6	23.4	1.8	100.0	6.4
	2016	9.6	41.4	22.4	24.0	2.6	100.0	6.7

주: 소득계층은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1분위~4분위), 중소득층(5분위~8분위), 고소득층(9분위~10분위)으로 구분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자료: 국토교통부,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2016



노숙인 수

Number of homeless persons

지표 정의

노숙인은 정규적인 주거지가 없어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장소에서 기거하거나 일시적인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사람을 말한다.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주거취약계층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노숙인이라 할 수 있으며, 노숙인 수는 노숙인 문제의 양상과 그 심각성을 보는 데 가장 기초적인 지표이다.

측정 산식

거리노숙인 수 + 노숙인시설 생활자 수(자활시설, 재활 · 요양시설)

유의사항

노숙인에 준하는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와 연계하여 이해 해야한다.

최근 10년간 노숙인 수는 감소 경향을 보인다. 2007년 14,266명에서 2016년 10,645명으로 3,621명이 감소했다. 2007년 노숙인에 비해 66% 수준으로 줄어든 규모다. 유형별로 보아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거리노숙인보다 비중이 높은 재활요양시설 생활자나 자활시설 생활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자활시설 생활자는 2016년이 2007년의 6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거리노숙인은 2016년이 2007년의 78,1% 수준이다.

노숙인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3,682명(34.6%)으로 가장 많으며, 대구 1,106명 (10.4%), 경기 1,002명(9.4%), 충북 774명(7.3%) 순이다. 이들 비중이 높은 지역은 노숙인 수는 감소했으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0.6%p, 0.3%p, 0.6%p, 0.5%p 상승했다. 서울, 인천 및 경기 등 수도권에 집계된 노숙인 수의 절반인 49.0%를 차지한다. 수도권지역은 재활요양시설 생활자 비율보다 자활시설 생활자나 거리노숙인의 비중이 더 높다. 자활시설 생활자 비율은 75.2% 이고, 거리노숙인도 6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비율은 전년도 비율을 넘어선 수치이다.

한편, 노숙인 및 쪽방주민 대상 표본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욕구는 소득보조(36.9%), 주 거지원(23.5%), 의료지원(13.0%), 고용지원(11.1%), 심리지원(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주 거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노숙인은 거리노숙인과 이용시설노숙인이었다. 노숙 전 거주 유형과 관련하여, 주택 (89.7%)외에 비정형주거(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4.6%, 병원·사회 복지시설 3.8%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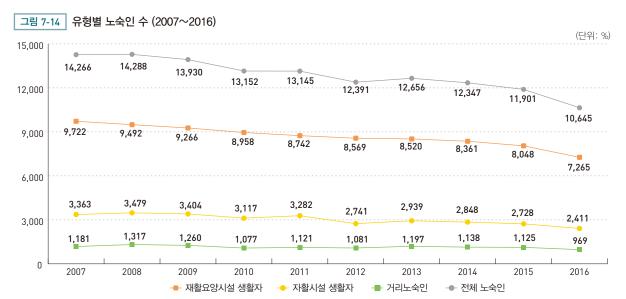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 현황(내부자료)	2005	2016	1년

Checkpoint

매년 감소 경향은 2016년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지역별 가감이 있으나, 가장 비율이 높은 서울에서 364명이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인천의 감소폭이 크다. 대도시의 감소에 비해 세종, 강원, 전북 등도지역은 오히려 늘어나거나 감소폭이 낮다. 또한 행정자료에서는 거리노숙인이 감소하였으나, 2016년 실태조사에는 1,522명으로 나타나는 등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 남기철, 노숙인과 사회복지실천, 한국학술정보, 2007.
- 보건복지부,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 2011.
- 박은철, 노숙진입에서 탈출까지 경로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2015
- 보건복지부,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안), 2017.9.27. 보도자료



자료: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 현황(내부자료), 2016

(단위: 명)

										(_	!TI. 3)										
	구분	ŧ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	-	총	수	12,656	4,481	898	1,314	764	377	344	33	114	1,117	297	804	46	217	759	405	520	166
2013	노	숙인	(%)	(100.0)	(35.4)	(7.1)	(10.4)	(6.0)	(3.0)	(2.7)	(0.3	(0.9)	(8.8)	(2.3)	(6.4)	(0.4)	(1.7)	(6.0)	(3.2)	(4.1)	(1.3)
2014		총	수	12,347	4,248	884	1,251	809	167	359	53	112	1,181	341	802	78	229	764	391	510	168
2014	노	숙인	(%)	(100.0)	(34.4)	(7.2)	(10.1)	(6.6)	(1.4)	(2.9)	(0.4	(0.9)	(9.6)	(2.8)	(6.5)	(0.6)	(1.9)	(6.2)	(3.2)	(4.1)	(1.4)
2015	2	총	수	11,901	4,046	850	1,197	763	211	336	79	128	1,045	295	810	80	222	764	364	516	195
2010	노=	숙인	(%)	(100.0)	(34.0)	(7.1)	(10.1)	(6.4)	(1.8)	(2.8)	(0.7	(1.1)	(8.8)	(2.5)	(6.8)	(0.7)	(1.9)	(6.4)	(3.1)	(4.3)	(1.6)
	Ę	총	수)	10,645	3,682	767	1,106	527	154	311	22	132	1,002	323	774	48	232	720	349	343	153
	노숙인		(%)	(100.0)	(34.6)	(7.2)	(10.4)	(5.0)	(1.4)	(2.9)	(0.2	(1.2)	(9.4)	(3.0)	(7.3)	(0.5)	(2.2)	(6.8)	(3.3)	(3.2)	(1.4)
	시 설 생 활	재 활 · 요	수	7,265	1,918	554	867	331	129	160	0	106	557	214	714	0	184	718	340	324	149
2016		· 양 시 설	(%)	(100.0)	(26.4)	(7.6)	(11.9)	(4.6)	(1.8)	(2.2)	(-)	(1.5)	(7.7)	(2.9)	(9.8)	(-)	(2.5)	(9.9)	(4.7)	(4.5)	(2.1)
		자	수	2,411	1,498	89	132	42	20	114	17	15	273	77	42	24	41	1	5	17	4
		활 시 설	(%)	(100.0)	(62.1)	(3.7)	(5.5)	(1.7)	(8.0)	(4.7)	(0.7)	(0.6)	(11.3)	(3.2)	(1.7)	(1.0)	(1.7)	0.0	(0.2)	(0.7)	(0.2)
	フ-	리	수	969	266	124	107	154	5	37	5	11	172	32	18	24	7	1	4	2	0
	1	숙인	(%)	(100.0)	(27.5)	(12.8)	(11.0)	(15.9)	(0.5)	(3.8)	(0.5)	(1.1)	(17.8)	(3.3)	(1.9)	(2.5)	(0.7)	(0.1)	(0.4)	(0.2)	(-)

자료: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 현황(내부자료), 2016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Housing Price to Income Ratio

지표 정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PIR(Price to Income Ratio)이라고도 하며, 주택가격을 연 소득 대비 배수로 나타난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지표이다. 지역별, 국가별 주택구입능력을 비교해 봄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성이나 주택가격 수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연 소득이나 주택가격 산정값에 따라 배율에 차이가 있다.

측정 산식

주택가격

가구의 연 소득

유의사항

국제 비교 시 주택가격 대푯값(혹은 개별 가구의 주택가격)과 소득기준에 대한 기준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소득과 주택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 값이 달라 진다. 개별 가구의 PIR 중윗값을 계산하는 경우와 주택가격과 소득의 대푯값을 산출하여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OECD 기준은 중위 연 소득 대비 중위 주택가격을 활용하고 있다.

주거실태조사 결과 지난 10년 간 PIR 변화를 보면, 2012년에 평균 PIR 수치가 크게 상승한데 비해 중위 PIR 수치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다. 산정방식이 2012년이 다른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16년 PIR은 2014년과 비교했을때, 전국은 중위수 및 평균 모두 상승하였으나, 수도권과 도지역의 중위수는 감소하였다. 소득계층별 PIR은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5~6배 수준인데 비해 저소득층은 중위 PIR이 9.8배, 평균 PIR이 11.6배로 두 배 수준이다. 지역별 PIR 편차보다 소득 수준별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보다 소득계층별 소득 대비 주택가격 차이가 더 크다.

한편 지난 30여 년 간 국가별 평균 PIR을 보면,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급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PIR이 2배 이하인 미국을 제외하고 평균 PIR이 $4\sim5$ 배 수준이고, 뉴질랜드의 경우 6배로 가장 높다. 2016년 4/4분기 PIR 값이 2010년 PIR 이상이 되는 국가들 중에서도 뉴질랜드가 가장 높다. 한국은 사례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PIR 상승률을 보인다.

통계정보

직정기판 등계명 의소 작성연도 기 최근 작성연도 가 주기		조기시네포니	2006	221	014
TUUTI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Checkpoint

주택가격은 소득상승 및 주택시장 영향에 따라 등락이 존재하는데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 중위 PIR 2014년 6.9배에 비해 2016년은 6.7배로 하락하였다. 국가별 PIR 비교에서도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다.

참고문헌

• Ryan Fox and Richard Finlay, Dwelling Prices and Household Income, Bulletin-December Quarter 2012, Reserve Bank of Australia(www.rba.gov.au)

표 7-14 연도별 · 지역별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단위: 배)

구	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전국	중위수	4.2	4.3	4.3	5.1	4.7	5.6
선독	평균	6.0	6.0	5.6	7.6	5.7	6.3
수도권	중위수	5.7	6.9	6.9	6.7	6.9	6.7
十五ゼ	평균	8.1	8.5	7.9	10.1	7.1	7.6
광역시	중위수	4.1	3.3	3.5	5.0	4.7	5.3
성식시	평균	4.2	4.0	4.1	7.1	5.1	5.7
도지역	중위수	3.3	3.0	2.9	3.6	4.2	4.0
포시덕	평균	3.4	3.3	3.1	5.4	4.1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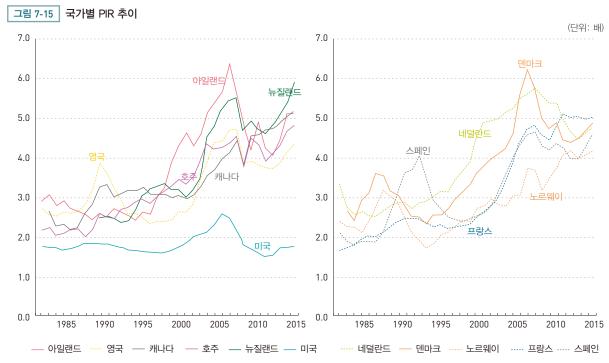
주: 2012년은 개별가구 PIR의 중위수 및 평균을 도출한 값이며, 그 외는 대상 집단의 중위수 및 평균으로 계산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표 7-15 연도별 · 소득계층별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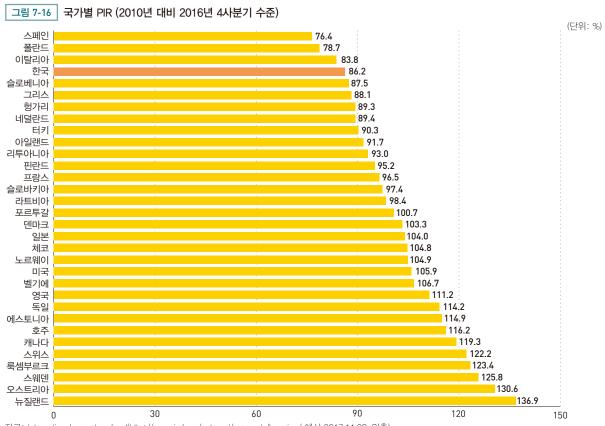
구분	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전국	중위수	4.2	4.3	4.3	5.1	4.7	5.6
신국	평균	6.0	6.0	5.6	7.6	5.7	6.3
저소득층	중위수	6.3	6.4	6.1	7.5	8.3	9.8
시소극공	평균	10.9	9.9	9.2	11.3	11.2	11.6
중소득층	중위수	3.4	4.3	4.2	4.3	5.0	5.6
오소극용	평균	5.4	5.6	5.7	5.5	5.8	6.2
고소득층	중위수	3.6	4.2	4.0	4.4	4.7	5.0
<u> </u>	평균	5.3	5.2	4.7	5.4	4.5	5.0

주: 1) 2012년은 개별가구 PIR의 중위수 및 평균을 도출한 값이며, 그 외는 대상 집단의 중위수 및 평균으로 계산 2) 소득계층은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1분위~4분위), 중소득층(5분위~8분위), 고소득층(9분위~10분위)으로 구분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주: 가구의 가처분 소득 평균대비 평균 주택가격으로 계산

자료: Australian Prperty Forum(http://australianpropertyforum.com/topic/30071226/8/) 재인용: BIS; Bloomberg; 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 CoreLogic; Halifax; national source; OECD; Quotable Value; Realkreditraadet; Thomson Reuters; United Nations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http://www.imf.org/external/research/housing/ 에서 2017.11.28. 인출)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Monthly Rent to Income Ratio

지표 정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월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공공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이 25% 혹은 30%를 넘으면 임대료 과부담 가구로 간주되며, 이 경우 임대료 부담이 커서 다른 소비지출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측정 산식

가구의 월 임대료 가구의 월 소득

※ 전세가구는 해당 시점에서 전세금의 월세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월 임대료 산정

유의사항

전세보증금의 월세전환율에 대한 이해 및 적정 월 임대료 비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아파트가 많은 국내의 경우, 임대료 외에 관리비 수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월 임대료 산정을 위한 전월세전환율(월세이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주거실태조사의 월세 전환율 역시 2006년 11.88%, 2008년 11.76%, 2010년 11.52%, 2012년 10.44%, 2014년 9.36%, 2016년 6.7%로 하락 추세에 있다.

지난 10년 간 RIR은 등락을 보였으나, 2016년 RIR은 2006년 RIR과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이다. 중위수는 18.7%에서 18.1%로 0.6%p, 평균은 22.9%에서 21.4%로 1.5%p 하락하였다. 2014년과 비교할 때는 하락폭이 더 커서, 각각 2.2%p, 2.8%p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주거비가 높은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광역시 및 도지역은 중위수 및 평균 RIR 모두 20% 이하이나, 수도권은 평균 RIR이 24.6%이다. 2014년 수도권 평균 RIR 27.4%에서 하락한 수치이나 다른 지역 RIR보다 여전히 높다.

소득계층별로도 2014년에 비해 2016년 RIR이 하락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2014년 중위수 29.0%, 평균 34.1%에서 각각 23.1%, 26.7%로 나타났으나 지난 10년간 추이를 보면, 저소득층은 평균 RIR은 2014년까지 30%를 넘었고, 중위 RIR도 2014년에는 29.0%로 30%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나는 등 중소득층 및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인다. 이처럼 RIR은 지역별 편차보다는 소득계층별 편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국가의 RIR은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료 외에 광열수도비 등 주거비 일체가 포함된다. 이 기준에 따른 RIR이 40% 이상, 즉 주거비로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지출하는 '주거비 과부담' 역시 저소득층 비율이 높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16	2년

Checkpoint

월세전환율 하락으로 월세부담이 낮아지고 전년대비 RIR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저소득층의 RIR 수치는 상대적으로 높다. 임대료 외 주거비용(광열수도비,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등)을 포함한 RIR 산정 시 더 높아질 것이다. EU에서는 적정 주거비 부담 수준을 가처분 소득 대비 총 주거비 비율을 25% 이하로 보고 있다.

- 국토교통부, 주택바우처 모델 구축 연구, 2010
- CECODHS Housing Europe, "Housing Europe Review", CECODHS Housing Europe's Observatory, 2012

표 7-16 연도별 · 지역별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RIR)

(단위: %)

											(= 11)		
78	2006		20	2008		2010		2012		14	20	16	
구분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전국	18.7	22.9	17.5	22.8	19.2	23.1	19.8	26.4	20.3	24.2	18.1	21.4	
수도권	19.9	25.3	22.3	26.1	20.9	26.4	23.3	30.5	21.6	27.4	17.9	24.6	
광역시	18.5	20.1	19.3	19.5	16.4	19.4	16.8	22.0	16.6	20.5	15.4	16.9	
도지역	17.8	18.5	15.9	16.4	14.4	16.2	14.5	19.3	15.8	17.3	14.2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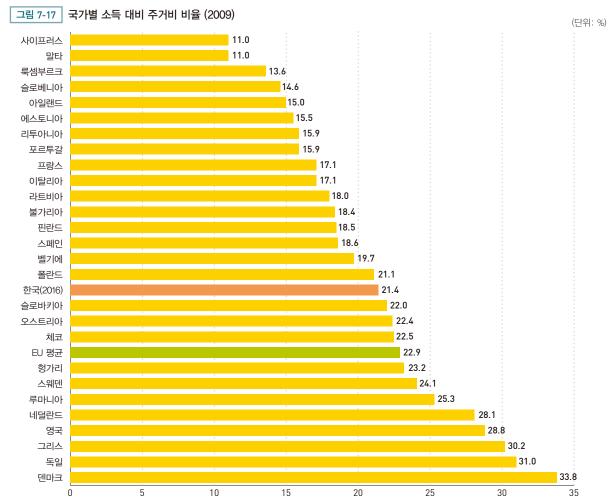
주: 월세전환율(월세이율)은 2006년 11,88%에서 2008년 11,76%, 2010년 11,52%, 2012년 10,44%, 2014년 9,36%, 2016년 6,7%로 지속 하락(연도별 월세이율은 국민은행 주택가격조사(2006,10, 2008,10, 2010,08) 및 한국감정원 월세동향조사(2012,07, 2014,08, 2016,08)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표 7-17 연도별 · 소득계층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R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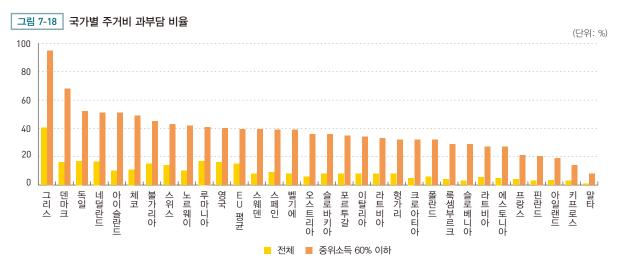
(단위: %)

구분	20	06	20	08	20	10	20	12	20	14	20	16
TE	중위수	평균										
저소 득층	27.6	36.6	25.0	30.9	28.2	31.1	21.8	33.6	29.0	34.1	23.1	26.7
중소득층	18.9	20.7	17.6	21.4	16.6	21.4	17.3	20.3	17.0	23.1	14.9	18.9
고소득층	16.1	18.5	17.4	20.3	21.1	21.0	22.6	24.4	21.6	21.2	19.0	20.6

주: 월세전환율(월세이율)은 2006년 11,88%에서 2008년 11,76%, 2010년 11,52%, 2012년 10,44%, 2014년 9,36%, 2016년 6,7%로 지속 하락(연도별 월세이율은 국민은행 주택가격조사(2006,10, 2008,10, 2010,08) 및 한국감정원 월세동향조사(2012,07, 2014,08, 2016,08)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주: 1) 2012년 기준 EU 27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2) 한국은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이며,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평균값 기준) 자료: CECODHS Housing Europe, 2012;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6



주: 주거비 과부담이란 가구 가처분 소득의 40%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Housing Europe, The state of housing in the EU 2017, 2017재인용; Eurostat SILC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Number of households with loans from National Housing and Urban Fund

지표 정의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는 근로자 · 서민 등 일정한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 에서 융자 지원한 가구 수를 의미한다. 또한 대출 조건이 무주택자라는 점에서 무주택 서민의 자가 취득을 통한 주거 안정 도모가 목적이다.

측정 산식

(내집마련 디딤돌 융자가구 수) + (공유형 모기지 지원가구 수)

유의사항

2014년부터 근로자 · 서민주택구입융자와 생애최초주택구입융자가 내집마련 디딤돌로 통합되어 운영한다.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제도에는 내집마련 디딤돌(2014년,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융자(1994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2001년) 통합) 및 공유형 모기지(2013년), 오피스텔 구입자금이 있다.

2010년까지는 주택구입자금 융자가구 수나 건당 융자금액에 다소의 등락이 있으나 2015년에는 융자가구 수가 감소하여 융자총액에서도 감소양상을 보이다가 2016년에는 다시 융자가구 수와 융자총액이 모두 상승했다. 특히 건당 융자금액이 1억 원이 초과하였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상품인 만큼 주택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공유형 모기지는 2014년 7,747억 원에서 2015년 1,955억 원으로 다시 2016년에는 188억 원으로 급감했으며, 기타(주거안정 오피스텔)은 22억 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주택구입 융자 가구 수에는 주로 내집마련 디딤돌의 융자 추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업무편람	1981	2015	1년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자금대출 건수 및 금액 (내부자료)	-	2016	1년

Checkpoint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최근 10년간 495,426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지원규모는 42조 8,995 억 원에 이른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 확대와 주택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2014년) 및 공유형 모기지(2013년)은 시행 후 3여년이 지난 현재 지원 규모가 크게 줄었고, 내집 마련 디딤돌이 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김현욱, 국민주택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와 운영개선방안: 주택시장분석과 정책과제연구, 한국개발원, 2004
- 감사원, 공적서민주택금융 실태 감사보고서, 2013

^{* 2015.7.1.} 주택도시기금으로 용어 변경

표 7-18 유형별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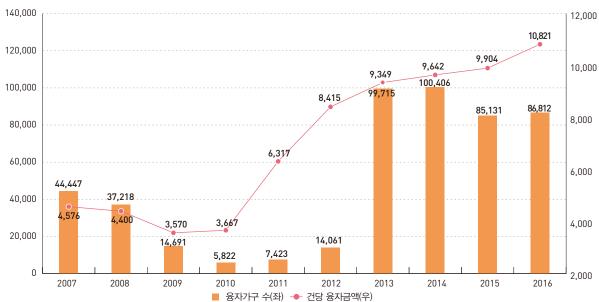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5	당자가구 수 (가 구)	44,447	37,218	14,691	5,822	7,423	14,061	99,715	100,406	85,131	86,812
	내집마련 디딤돌	-	-	-	-	-	-	-	81,127	79,241	93,264
자금	근로자 · 서민구입	19,239	15,554	5,172	1,576	281	130	3,028	395	7	1
시급 융자	생애최초주택구입	1,099	821	72	559	4,408	11,703	86,411	6,649	2,005	481
규모 (억	공유형 모기지	-	-	-	-	-	-	3,782	7,747	1,955	188
원)	기타 (주거안정, 오피스텔)								2,359	2,099	22
	융자 총액	20,338	16,375	5,244	2,135	4,689	11,833	93,221	98,277	85,307	93,936
건	당 융자금액(만 원)	4,576	4,400	3,570	3,667	6,317	8,415	9,349	9,642	9,904	10,821

주: 1) 건당 융자금은 (융자총액/융자가구 수)로 계산된 수치임. 2) 2015년 이전에는 국민주택기금 내 유형별 기금이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자금대출 건수 및 금액(내부자료), 2016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및 건당 융자금액 (2007~2016) 그림 7-19

(단위: 호, 만 원)



주: 1) 건당 융자금은 (융자총액/융자가구 수)로 계산된 수치임.

2) 2015년 이전에는 국민주택기금 내 유형별 기금이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자금대출 건수 및 금액(내부자료), 2016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Number of low-income households with jeonse loans

10-1 ^{연 관}

지표 정의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내 가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의 전월세자금을 이용한 가구 수를 의미한다.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의 저렴한 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용한 정책 수단이다.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되며 상환방식 및 상환기간도 일반 대출과 상이하다.

측정 산식

•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되는 버팀목대출 가구 수

유의사항

2015년부터 근로자 · 서민과 저소득 전세를 통합해 '버팀목' 대출로 통합되었기때문에, 2015년 이후 통계 수치와 비교 시 감안해야한다.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 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과 통합, 버팀목대출로 개편되었는데, 2014년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건수와 근로자 · 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 건수 합이 136,231건이었던데 반해, 2015년이 두 개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총 건수가 110,871건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2015년 버팀목대출의 평균 대출액은 4,027만 원으로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의 평균 대출액 2,751만 원보다 높고, 근로자 · 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의 평균 대출액 4,548만 원보다 낮다. 버팀목대출 이율은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이보다 낮지만 다가녀 가구,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부양,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한편, 소득구간별 전세자금대출 누적 실적을 보면,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계층의 지원 비율이 높아, 저소득 서민의 전세자금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분위별 이자비용을 보면, 버팀목대출의 이자비용이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에 비해서는 커졌으나,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비용보다는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업무편람	1981	2015	1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및 금액 (내부자료)	-	2016	1년

- 감사원, 공적서민주택금융 실태 감사보고서, 2013
- 이태리, 전세자금지원프로그램 현황과 소득계층별 효과, 국토정책 Brief No 528, 2015, 국토연구원
- 내집마련파트너 국민주택기금 포털(http://nhf.molit.go.kr/loan/01_funds02.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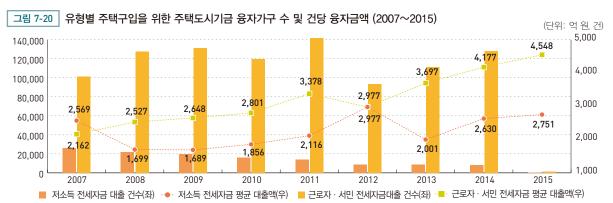
표 7-19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자금 운용실적 (2007~2016)

(단위: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저소득	대출 건수	25,809	21,819	19,869	16,038	14,084	8,613	8,864	8,330	229	
전세	대 출총 액(억 원)	6,631	3,706	3,356	2,976	2,980	1,889	1,774	2,191	63	
쟤금	평균 대출액(만 원)	2,569	1,699	1,689	1,856	2,116	2,977	2,001	2,630	2,751	
근로자	대출 건수	101,289	127,281	131,331	119,467	141,770	93,426	111,258	127,901	1,282	
서민 전세	대 출총 액(억 원)	21,897	32,170	34,780	33,463	47,883	35,306	41,128	53,427	583	
자금	평균 대출액(만 원)	2,162	2,527	2,648	2,801	3,378	2,977	3,697	4,177	4,548	
버팀목	대출 건수	-	-	-	-	-	-	-	-	109,360	106,016
전세	대 출총 액(억 원)	-	-	-	-	-	-	-	-	44,043	46,980
쟤금	평균 대출액(만 원)	-	-	-	-	-	-	-	-	4,027	4,431

주: 평균 대출액은 (대출총액/대출 건수)로 계산된 수치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및 금액 (내부자료), 각 연도



주: 건당 융자금은 (융자총액/융자가구 수)로 계산된 수치임.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및 금액 (내부자료), 각 연도

표 7-20 소득구간별 전세자금대출 취급실적

(단위: 건,%

구분	갼	! 수	금액			
丁世	공급 건수	비중	공급액	비중		
1천만 원 이하	134,376	30.6	36,923	22.1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	65,532	14.9	17,927	10.7		
2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	124,810	28.5	53,652	32.1		
3천만 원 ~ 4천만 원 이하	71,979	16.4	35,956	21.5		
4천만 원 ~ 5천만 원 이하	35,315	8.1	18,892	11.3		
5천만 원 초과	6,440	1.5	3,806	2.3		
계	438,452	100.0	167,157	100.0		

주: 2012년 2월 1일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실적임.

자료: 이태리, 전세자금지원프로그램 현황과 소득계층별 효과, 2015

표 7-21 소득분위별 전세자금대출 평균 대출과 이자비용

(단위: 천 원)

구분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소득6분위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대출	평균 대출금액	36,043	46,091	49,901	52,559	59,770	58,504
(2015.1.1~2015.3.31)	평균 이자비용	1,189	1,521	1,647	1,734	1,972	1,931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평균 대출금액	22,985	39,104	55,618	79,443	-	-
(2015.1.1~2015.3.31)	평균 이자비용	460	782	1,112	1,589	-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평균 대 출금 액	31,237	40,920	47,010	50,101	52,657	53,849
(2015.1.1~2015.6.30)	평균 이자비용	812	1,129	1,316	1,428	1,580	1,615

자료: 이태리, 전세자금지원프로그램 현황과 소득계층별 효과, 2015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Percentage of housing benefit claimants

지표 정의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급여 중 하나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 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급여를 제공하되, 자가수급자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 서비스를 통한 현물급여를 제공한다.

측정 산식

임차급여를 받는 임차가구 수 +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자가가구 수 일반가구 수

주거급여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개별급여로 분리되었으며, 개편 후 지원가구는 2015년 말 기준 799,864가구에서 2016년 803,970가구로 증가하였다. 일반가구 수 대비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은 개편 전 2014년 3.7%에서 2015년 2016년 모두 4.2%가 되었다. 임차급여가구와 수선유지급여 가구 비율은 각각 90.4%와 9.6%로 임차급여가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급하고(임차급여), 자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수선유지급여) 형태로 개편 전인 2014년에는 현물 주거급여가구가 1.4만 가구 수준이었던데 반해, 개편 후에는 연간 1.0~2.2만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물론 제도 개편을 고려할 때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주거환경이 물리적으로 개선되는 점에서 개편전 현물 주거급여와 개편 후 수선유지 급여는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개편 후 2015년 대상 가구 특성 파악을 해 본 결과, 임차급여 가구는 1인가구 및 65세 고령자 가구의 비율이 높았으며,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도 3.9만 가구에 달했다. 또한 자가가구역시 1인가구와 65세 고령자 가구가 많았고, 단독주택 가구 비율이 73%로 높았다. 맞춤형 급여로 개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주거급여 가구의 특성 파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내부자료)	2015	2016	1개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내부자료)	2010	2014	1개월
보건복지부	주택개량사업현황(내부자료)	2010	2016	1개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977	2016	1년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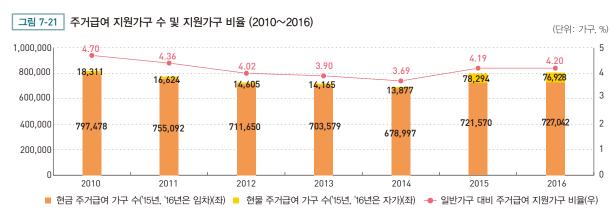
개별급여로 분리된 이후 전체 수급가구 증가 뿐 아니라 주거급여가구도 증가하였으나 개편된 2015년에 비해 2016년은 상승폭이 0.5%로 낮은 수준이다. 다만 현재는 중위소득의 43%이나 향후 중위소득의 45%로 확대되고 부양제도 개선으로 급여 대상가구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지역별, 특성별, 점유형태별 주거급여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 국토해양부, 저소득층 주택상태조사 및 개보수사업 추진방안 연구, 2011,
-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택종합계획, 2014.
- 국토교통부, 2015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2015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거급여 개편 시행,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줄었다", 2016.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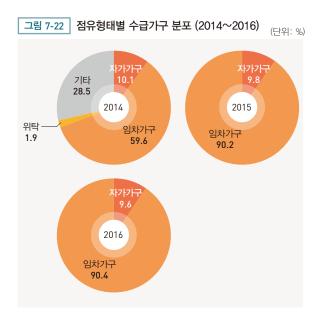
표 7-22 주거급여 지원 실적 (2010~2016)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가구 :	수(A, 천 가구)	17,339	17,719	18,057	18,408	18,773	19,111	19,368
	합계(B=C+D)	815,789	771,716	726,255	717,744	692,874	799,864	803,970
	현금급여(C)	797,478	755,092	711,650	703,579	678,997	-	-
주거급여 지원가구	현 물급 여(D)	18,311	16,624	14,605	14,165	13,877	-	-
(가구)	임차 급여(C)	-	-	-	-	-	721,570	727,042
	수선유지 급여(D)	-	-	-	-	-	78,294 (9,792)	76,928 (21,207)
	대비 주거급여 비율(%) (B/A)	4.70	4.36	4.02	3.90	3.69	4.19	4.20

- 주: 1) 2010~2014년 보건복지부, 2015년 국토교통부 자료, ()안은 연간수선완료 호수 실적
 - 2) 2015년 및 2016년 일반가구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임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1, 28, 인출)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내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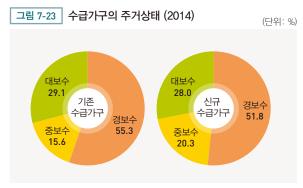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17. 11. 28. 인출)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주: 1) 위탁: 가정위탁, 보장기관 제공 거주자, 그룹홈 거주자 등 2) 기타: 부분무료임차, 전체무료임차, 움막비닐하우스, 무허가주택 3) 2014년은 보건복지부, 2015, 2016년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 주: 1) 기존 수급가구 수 55,974가구
 - 2) 신규 수급가구 수 22,275가구
 - 3) 경보수 : 설비 부분 교체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시설 일부 보수(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마감재 개선)
 - 4) 중보수: 건축마감 불량 및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 5)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공 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Number of Reverse Mortagages Guaranteed

지표 정의

주택연금대출 보증 건수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대출에 대한 보증 건수를 의미한다. 자산은 있으나 소득은 낮은(house-rich, income-poor)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상품이며 우리나라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 산식

• 매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한 주택연금 보증 건수

주택연금대출(reverse mortgage)이 국내 재도입(2004년, 1995년 도입)된 후 10여 년이 지났으며,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보증을 실시하면서(2007년) 지속적으로 보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주택연금 성장 수준을 보면, 신규 보증건수는 2007년 515건에서 2017년 10,386 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신규 보증공급액은 2007년 6,025억 원에서 2017년 10조 6,969억 원으로 17.8배증가하였다. 급격한 고령화나 주택시장 등 인구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택의범위, 대상 주택 가격 등이 달라지는데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으로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상기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에 해당되어야 한다.

2007년(7월~) 이후부터 2017년 말까지 누적 보증 건수는 4만 3,099건, 누적 보증공급액은 50조 4,324억 원에 달한다(연간 연금보증해지건 반영).

국가별 고령가구의 소득수준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도 낮고, 총 인구 소득 대비고령인구의 소득 비율도 낮다. 또한 고령가구의 소득구성에서도 노동으로 확보하는 소득이 70%로 비교 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공적연금은 낮아,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리서치 통계편	2007	2017	1개월

* 2017년까지는 1개월 주기, 2018년부터 분기(2, 5, 8, 11월말)로 변경됨.

Checkpoint

전년 대비 2017년의 주택연금 보증 건수는 0.7% 증가, 보증공급액은 0.7%로 감소로 정체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당해 연도 가입한 보증 건수 및 보증 공급액이며,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누적 건수와 누적 보증공급액은 증가하였다. 2007년 515건에서 2012년 5,013건으로 10배 가량 증가하였고, 10년이 지난 현재 연간 1만 건 이상을 보증해 온 결과 누적 건수는 43,099건으로 연간 가입 보증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더라도 현 추세대로 간다면, 조만간 향후 5만 건을 육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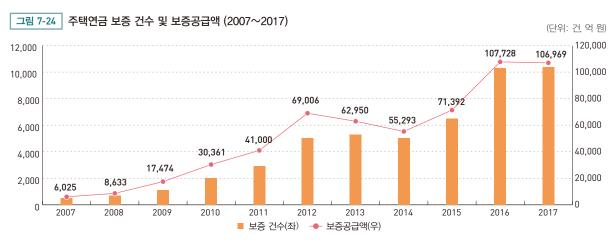
- 원종현, "역모기지 유동화에 대한 이해" special report 2012.11.9, 한국신용평가, 2012
-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외 역모기지 현황과 제도 개선에 대한 비교, 주택금융월보 2014.11월호, 통권 124호
-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외 주요국의 역모기지 제도 최신 현황, 이슈리포트 2017.11.23, 17-9호

표 7-23 주택연금 보증 건수 및 보증공급액 (2007~2017)

(단위: 건,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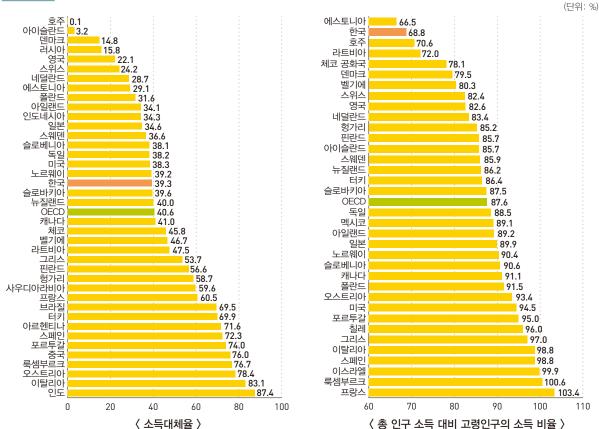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보증 건수	515	695	1,124	2,016	2,936	5,013	5,296	5,039	6,486	10,309	10,386
보증공급액	6,025	8,633	17,474	30,361	41,000	69,006	62,950	55,293	71,392	107,728	106,969

주: 보증공급액은 가입자에게 100세까지 공급될 예상보증공급액(월지급금 + 개별인출금 + 대출이자 + 보증료)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리서치,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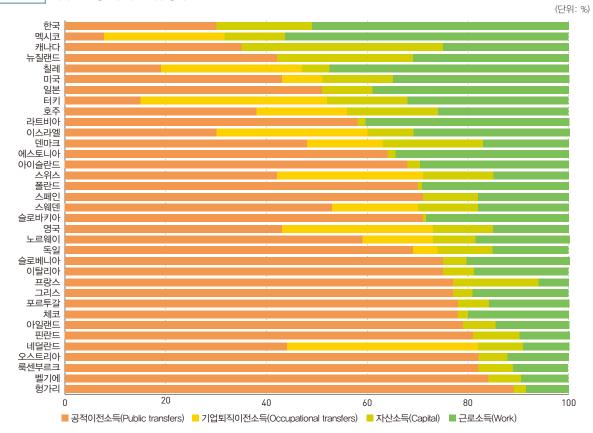
주: 보증공급액은 가입자에게 100세까지 공급될 예상보증공급액(월지급금 + 개별인출금 + 대출이자 + 보증료)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리서치, 각 연도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7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이너지

- 01 가전기기 보급률
- 02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 03 도시가스 보급률
- 04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 05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 06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 07 에너지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
- 08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 09 연료비 지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 0 1 7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에너지 사용 유형	가전기기 보급률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도시가스 보급률	
에너지 소비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에너지복지	에너지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연료비 지원	

가전기기 보급률

Penetration Rate of Home Appliances

지표 정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기기의 가구당 평균 보유 대수를 의미한다.

가구의 가전기기 사용 정도와 전력소비의 필요성을 결부시켜 국민에게 적정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보장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측정산식

• 보급대수/가구. 가구 에너지 소비 실태조사의 소득수준별 가구당 가전기기 보급률 조사에 기초한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가구당 1대 이상 보급된 가전기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TV와 냉장고, 선풍기 등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가구당 1대 이상 보급되어 있었고 뒤이어 세탁기도 가구당 1대 이상 보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전기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가구당 1대 이상 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어 가장 필수적인 가전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

보급률이 가구당 1대 미만인 가전기기는 대부분 소득수준에 따른 보급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에어컨과 컴퓨터는 가구당 0.7대 정도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월평균 소득이 4백만 원 이상 인 가구에서는 가구당 1대 보급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가구당 0.5대 미만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보급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전기기 보급률은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에어컨은 서울 및 광역시가 가구당 0.8대인 반면 기타시도는 가구당 0.65대로 낮았고, 컴퓨터는 서울이 가구당 0.89대, 광역시는 0.69대, 기타시도는 0.59대로 에어컨보다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청소기와 전기다리미 같은 생활가전기기와 전기밥솥과 김치냉장고나 전자레인지와 같은 주방가전기기는 소득수준의 차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보급률에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에너지경제연구원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	2011	2015	1년

Checkpoint

많은 가전기기의 보급률이 포화상태에 근접하여 보급률의 변화가 크지 않고 일부 가전기기가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전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이 향상됨에 따라 가정부문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완만해지고 있다. 가전기기 중 전력 소비량이 많은 기기는 TV, 냉장고, 전기밥솥과 같이 사용시간이 많거나 단위당소비전력이 큰 기기인데 이러한 가전기기는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급률이 1대 이상이거나 거의 1대에 근접해 있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지라도 가전기기 사용을 통한 전력 소비는 적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표 8-1 주요 가전기기 보급률 (2012~2015)

(단위: 대/가구)

구분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컴퓨터	전기밥솥	청소기
2012	1.26	1.77	0.73	1.01	1.84	0.78	0.77	0.88	0.85
2013	1.23	1.74	0.71	1.01	1.77	0.77	0.8	0.89	0.85
2014	1.19	1.72	0.69	1.01	1.74	0.76	0.75	0.88	0.85
2015	1.19	1.68	0.66	1.00	1.65	0.71	0.67	0.89	0.77

주: 2015년 가전기기 보급률은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에 대한 가중치 조정으로 다소 낮게 추정됨. 냉장고 보급률은 김치냉장고를 포함한 수치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가구 에너지 소비 상설표본조사, 각 연도

丑 8-2 소득구간별 주요 가전기기 보급률 (2014)

(단위: 대/가구)

구분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컴퓨터	전기밥솥	청소기
200만 원 미만	1.16	1.01	0.61	0.99	1.47	0.42	0.33	0.88	0.64
200~400만 원	1.19	1.02	0.69	1.01	1.79	0.78	0.77	0.90	0.87
400~600만 원	1.21	1.03	0.74	1.01	1.86	0.96	1.03	0.85	0.95
600만 원 이상	1.28	1.03	0.85	0.98	2.00	1.09	1.12	0.80	0.99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년 가구 에너지 소비 상설표본조사, 2015

丑 8-3 소득구간별 주요 가전기기 보급률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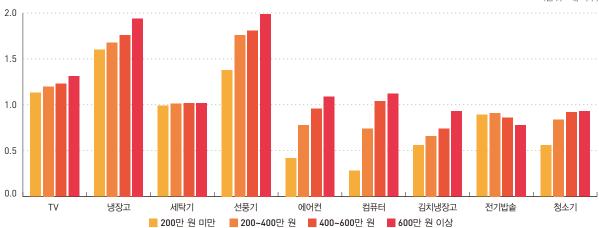
(단위: 대/가구)

구분	TV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컴퓨터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청소기
200만 원 미만	1.13	1.60	0.99	1.38	0.42	0.28	0.56	0.89	0.56
200~400만 원	1.20	1.68	1.01	1.76	0.78	0.74	0.66	0.91	0.84
400~600만 원	1.23	1.76	1.02	1.81	0.96	1.04	0.74	0.86	0.92
600만 원 이상	1.31	1.94	1.02	1.99	1.09	1.12	0.93	0.78	0.93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년 가구 에너지 소비 상설표본조사, 2016

그림 8-1 소득구간별 주요 가전기기 보급률 (2015)

(단위: 대/가구)



주: 그 외 노트북, 비디오 등의 가전기기는 제외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년 가구 에너지 소비 상설표본조사, 2016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Distribution of Households by Type of Heating Facility

지표 정의

난방설비는 크게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으로 구분된다.

가구의 에너지원 소비실태를 파악하고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 수립에 활용가능한 지표이다.

측정산식

• 난방시설(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별 가구 수, 인구총조사의 난방시설 조사에 기초한다.

2015년 인구총조사의 난방시설 분포를 보면 개별난방이 84.6%로 가장 많고 다음이 지역난방으로 12.7%, 중앙난방은 2.7%로 조사되었다*. 개별난방 중에서는 도시가스보일러가 64.4%로 가장 높았고 기름보일러의 비중은 12.1%로 지역난방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거처의 종류에 따라 난방시설 분포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단독주택은 도시가스보일러의 비중이 54.8%로 다른 거처에 비하여 낮은 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인 기름(석유)보일러의 비중이 29.9%로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아파트는 지역난방의 비중이 25.4%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단독주택과는 달리 기름보일러의 비중은 0.5%에 불과하였다. 도시가스보일러는 모든 거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는 특징을 보인다.

행정구역별 난방시설 가구분포를 보면 읍부와 면부는 개별난방의 비중이 90% 중후반으로 거의 개별난방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면부는 기름보일러의 비중이 50%를 넘어 최대 난 방에너지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기보일러의 비중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역난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총조사	1960	2015	5년

Checkpoint

연도별 난방시설 분포를 보면 중앙난방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난방과 개별난방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며, 개별난방에서 도시가스보일러는 확대되고 기름보일러는 축소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2005년에서 2010년 기간에 발생한 변화의 크기에 비해 2010년에서 2015년 기간에는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난방시설 분포가 점차 안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 난방설비에서 중앙난방은 대형보일러를 통해 공동주택의 개별 가정으로 공급하는 난방방식이고, 지역난방은 특정한 지역에 열에너지를 난방용으로 공급한다. 개별 난방은 각 가구에서 보일러를 설치하여 난방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도시가스, 석유, 연탄 등으로 구분된다.

丑 8-4 거처의 종류별 ·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2015)

(단위: 천 가구, %)

								개별난방			(211)	E / ,
구분	난방 시설계	중앙난방	지역난방	소계	도시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가스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연탄 아궁이	재래식 아궁이	기타
계	19,112	524	2,425	16,162	12,308	2,312	504	670	160	135	14	19
	(100.0)	(2.7)	(12.7)	(84.6)	(64.4)	(12.1)	(2.6)	(3.5)	(0.8)	(0.7)	(0.1)	(0.1)
주택	18,400	496	2,352	15,551	11,910	2,222	481	595	152	128	13	18
	(100.0)	(2.7)	(12.8)	(84.5)	(64.7)	(12.1)	(2.6)	(3.2)	(0.8)	(0.7)	(0.1)	(0.1)
단독주택	6,739	0	0	6,739	3,694	2,015	156	542	148	126	13	18
	(100.0)	(0.0)	(0.0)	(100.0)	(54.8)	(29.9)	(2.3)	(8.0)	(2.2)	(1.9)	(0.2)	(0.3)
아파트	9,196	493	2,333	6,370	6,087	44	234	4	1	0	0	0
	(100.0)	(5.4)	(25.4)	(69.3)	(66.2)	(0.5)	(2.5)	(0.0)	(0.0)	(0.0)	(0.0)	(0.0)
연립주택	427	0	19	408	339	36	30	2	1	0	0	0
	(100.0)	(0.1)	(4.4)	(95.5)	(79.4)	(8.4)	(7.1)	(0.4)	(0.1)	(0.0)	(0.0)	(0.0)
다세대주택	1,710	0	0	1,710	1,598	57	47	8	0	0	0	0
	(100.0)	(0.0)	(0.0)	(100.0)	(93.4)	(3.3)	(2.7)	(0.5)	(0.0)	(0.0)	(0.0)	(0.0)
비거주용	327	3	0	324	192	70	14	39	3	2	0	0
건물내 주택	(100.0)	(0.9)	(0.1)	(99.0)	(58.8)	(21.4)	(4.4)	(12.0)	(0.9)	(0.6)	(0.1)	(0.1)
주택 이외의 거처	712	28	73	611	398	90	23	75	8	7	1	1
	(100.0)	(3.9)	(10.2)	(85.9)	(55.9)	(12.7)	(3.2)	(10.6)	(1.2)	(1.1)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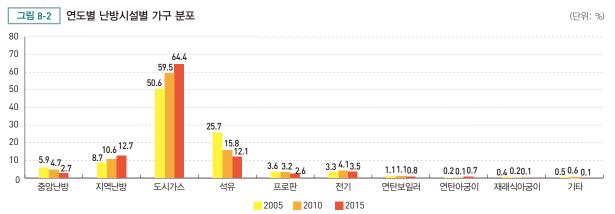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거처 종류의 난방시설 구성비를 의미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http://kosis.kr에서 2017.12.18. 인출)

연도별 · 지역별 ·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丑 8-5

(단위: %)

									개별난방				
구	분	난방 시설계	중앙난방	지역난방	소계	도시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가스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연탄 아궁이	재래식 아궁이	기타
	2005	100.0	5.9	8.7	85.5	50.6	25.7	3.6	3.3	1.1	0.2	0.4	0.5
전국	2010	100.0	4.7	10.6	84.7	59.5	15.8	3.2	4.1	1.1	0.1	0.2	0.6
	2015	100.0	2.7	12.7	84.6	64.4	12.1	2.6	3.5	0.8	0.7	0.1	0.1
	2005	100.0	7.1	10.4	82.5	59.4	17.9	2.4	1.8	0.5	0.1	0.0	0.3
동부	2010	100.0	5.7	12.4	81.9	67.8	9.3	1.9	2.1	0.5	0.0	0.0	0.2
	2015	100.0	3.3	15.1	81.6	71.9	5.9	1.7	1.5	0.3	0.1	0.0	0.0
	2005	100.0	2.0	1.8	96.3	27.9	44.8	13.0	5.9	2.8	0.4	0.7	0.7
읍부	2010	100.0	0.9	4.1	95.0	41.3	30.4	11.4	7.8	2.6	0.2	0.3	1.1
	2015	100.0	0.7	4.4	94.9	51.6	24.6	7.8	7.0	2.0	1.2	0.1	0.2
	2005	100.0	0.5	1.3	98.2	5.6	66.4	5.3	11.8	4.2	0.7	2.7	1.7
면부	2010	100.0	0.3	2.0	97.7	10.2	54.8	6.0	16.3	4.8	0.4	1.7	3.5
	2015	100.0	0.1	0.3	99.6	15.2	51.2	5.8	16.3	3.8	5.4	0.4	0.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7.12.18. 인출)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7.12.18. 인출)

표 8-6 연도별 · 난방연료별 표본가구 분포

(단위: %)

구분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연 탄	80.5	81.9	72.5	29.0	3.1	1.5	0.8	1.4	1.5	2.1	2.6
석유	4.7	4.2	19.7	53.2	62.6	53.9	41.4	31.2	22.9	22.3	22.1
가 스	-	0.1	2.6	14.8	31.6	38.1	50.1	55.3	62.3	63.0	63.2
열	-	-	-	-	2.1	5.9	5.3	8.9	8.6	9.5	9.8
기타	14.8	13.8	5.2	3.0	0.6	0.6	2.4	3.2	4.7	4.7	2.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도시가스 보급률

Penetration Rate of City Gas

지표 정의

총 가구에서 도시가스를 난방용 또는 취사용으로 공급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해당 지표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파악함으로써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측정산식

도시가스 수용 가구 수 총 가구 수

도시가스는 난방 및 취사용으로 소비되는데 사용이 편리하고 환경오염이 적어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40%이었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0년에 55.6%로 상승하였고 2010년에는 72.2%로 높아졌다. 빠르게 증가하던 도시가스 보급률은 일부 지역의 보급률이 포화상태에 도달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세종시나 등으로 보급이 확대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도시가스 보급률은 82.0%로 2015년에 비하여 1.2% 포인트 상승하였다.

도시가스는 네트워크 에너지의 하나로 가스배관망을 통해서만 공급되는 제약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도시가스는 주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보급률 차이가 크다. 2016년 지역별 보급률을 보면 서울이 98.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광주로 97.6%로 나타났다. 부산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는 보급률이 90%를 넘었다. 도별로는 경기도의 보급률이 87.0%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50% 미만이었고 나머지 도는 60%대의 보급률을 보였다. 제주도의 2016년 보급률은 12.6%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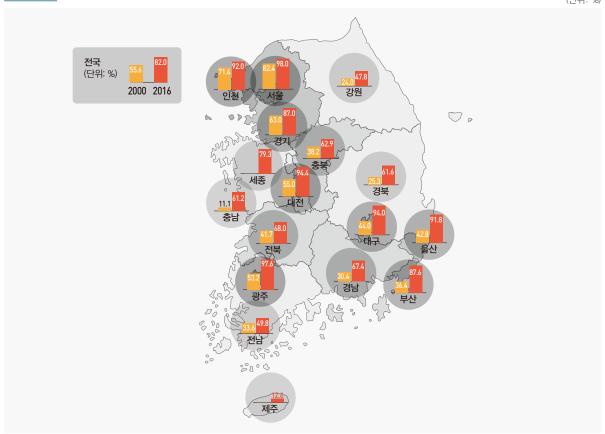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편람	1987	2016	1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1982	2016	1년

Checkpoint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0년대 들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보급률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세종시와 같은 지역에서도 보급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도시 지역의 보급률이 대부분 90%를 초과하고 있고 특히 수용가가 가장 많은 서울의 보급률이 98%로 거의 포화상태에 놓여 이전과 같은 보급률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 8-3 시도별 도시가스 보급률 변화 (2000년 대비 2016년)

(단위: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연도

표 8-7 시도별 도시가스 보급률 추이 (2001~2016)

(단위: %)

		. –		_				,									(. 근 TI · 70)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1	59.2	85.3	39.2	47.7	76.4	56.2	60.0	47.2	_	68.1	25.9	44.2	14.1	44.8	35.2	27.6	13.2	-
2002	62.6	87.2	41.8	53.4	81.6	59.1	64.0	51.8	-	71.5	29.4	48.4	16.6	48.8	37.8	31.0	17.8	-
2003	64.1	88.9	45.7	53.6	83.3	61.3	66.4	55.8	-	72.6	31.0	39.5	20.2	51.8	39.9	37.1	42.7	-
2004	65.5	89.4	49.6	57.6	85.4	63.4	67.8	61.2	-	73.9	33.1	41.0	21.9	46.5	41.0	41.2	44.1	-
2005	65.6	88.7	53.1	59.9	85.9	66.4	68.8	66.7	_	75.1	35.0	42.2	24.9	49.6	37.3	42.7	44.8	0.7
2006	67.1	87.4	56.6	66.5	85.3	69.4	76.4	69.1	-	75.2	37.2	46.6	29.0	52.8	39.3	45.9	46.8	2.3
2007	68.3	86.9	61.2	65.9	85.8	73.4	79.8	70.3	_	75.0	39.2	50.4	32.0	56.2	40.5	50.7	48.2	2.5
2008	69.8	86.8	65.6	70.1	86.8	80.6	83.4	75.7	-	76.4	39.2	45.5	35.8	59.7	42.9	51.4	51.8	2.6
2009	71.2	87.5	68.6	73.1	88.0	84.8	85.9	79.0	_	77.5	42.6	48.8	39.1	53.9	45.8	51.7	54.5	3.0
2010	72.2	89.6	69.4	74.9	88.9	87.6	87.3	80.9	-	79.1	39.5	51.1	41.7	54.1	48.7	46.8	56.3	4.3
2011	75.0	92.3	72.6	77.8	91.5	91.2	90.7	83.8	_	81.2	48.0	53.4	45.3	58.1	50.2	48.9	58.4	5.6
2012	75.8	92.0	74.8	80.1	91.0	92.4	91.0	85.7	-	82.1	49.4	55.0	48.4	58.4	46.6	49.6	57.1	6.2
2013	78.6	95.4	79.8	84.6	89.6	96.6	92.8	87.8	52.5	85.7	49.7	59.1	52.2	62.1	45.1	53.8	61.8	9.3
2014	79.4	95.6	82.9	87.5	90.4	99.7	93.4	89.2	72.2	85.5	46.2	61.8	54.8	64.3	47.0	56.1	63.7	10.1
2015	80.8	96.6	85.4	90.7	91.2	95.8	94.1	90.7	79.1	86.3	47.1	63.5	57.7	66.1	48.4	59.1	66.4	11.6
2016	82.0	98.0	87.6	94.0	92.0	97.6	94.4	91.8	79.3	87.0	47.8	62.9	61.2	68.0	49.8	61.6	67.4	12.6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연도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Fuel costs by income decile

지표 정의

연료비는 일반가구에서 조명, 냉난방 및 취사 등 일상가사를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연료관련 비용을 의미한다.

소득분위별 연료비는 각 소득분위에 속하는 기구의 월평균 연료비 지출액을 의미하며, 국민에게 적정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보장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측정산식

• 가구당 월평균 연료비 지출액,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및 지출 현황에 기초한다.

가구의 연료비는 에너지 소비량과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가구당 연료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가구당 월평균 120,240원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하락세로 전환하여 2016년에는 96,976원까지 낮아졌다. 이 기간 중 에너지 소비량은 크게 변하지 않아 연료비는 에너지 가격의 영향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2013년 이후 가구당 연료비 하락한 것도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이 크다. 가구의 연료비 지출은 1분기에 가장 많고 3분기가 가장 적은 계절성을 보이는데 이는 에너지 소비에서 난방용 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연료비 지출의 계절성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가구의 연료비 지출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연료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소득 10분위(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연료비 지출은 119,993원으로 소득이 1분위(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연료비 지출 73,639원에 비해 1.6배 많았다. 그러나 2016년 가구의 경상소득은 10분위 가구가 1분위 가구에 비하여 10.4배나 많아 연료비보다 차이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연료비 지출 차이가 소득 차이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은 에너지가 필수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16	분기, 1년

Checkpoint

2013년 이후 가구당 연료비 지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분기별로도 2016년 3분기를 제외하고는 월평균 연료비가 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2016년 3분기에 월평균 연료비가 전년 동기보다 4.9%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6년 여름 이상고온 현상으로 전력소비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결과다. 2016년 3분기 주택용 전력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10.0%나 증가하였다. 3분기는 냉방용 전력수요가 발생하여 가구당 연료비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력소비 변화가 연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징을 보인다.

참고문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표 8-8 분기별 월평균 연료비 (2014~2016)

(단위: 원)

78		20	14			20	15		2016					
구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료비	176,593	102,546	71,220	100,496	173,225	97,248	67,976	86,920	152,144	87,429	71,304	77,9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7.12.18. 인출)

표 8-9 소득분위별 월평균 연료비 (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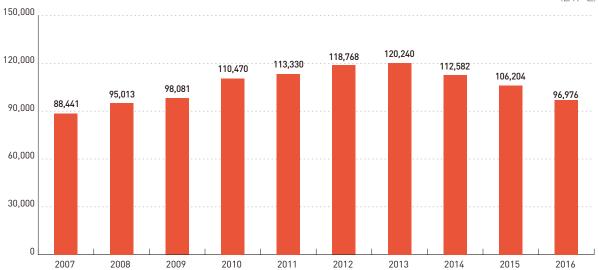
(단위: 원)

소득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분위	62,390	69,277	70,644	81,033	83,963	89,008	90,015	85,518	79,118	73,639
2분위	73,434	81,080	81,348	92,323	96,323	103,664	102,945	94,108	90,027	84,433
3분위	77,567	87,490	89,698	98,616	99,875	109,744	110,551	104,843	97,760	87,930
4 분 위	82,435	89,300	92,772	103,318	109,622	111,547	116,932	109,868	102,889	93,153
5분위	86,559	94,024	97,095	107,205	115,387	119,792	117,598	111,726	103,142	97,063
6분위	93,821	96,737	103,375	113,422	116,385	120,975	121,663	116,585	110,431	97,132
7분위	93,355	98,657	104,920	118,577	119,137	122,078	126,031	115,188	109,686	103,343
8분위	97,833	104,274	105,705	121,818	123,008	129,232	132,170	120,989	116,011	105,231
9분위	103,028	109,497	109,607	129,468	126,805	135,425	135,093	128,646	121,889	107,689
10분위	113,933	119,744	125,596	138,863	142,750	146,162	149,350	138,323	131,005	119,993
전체 평균	88,441	95,013	98,081	110,470	113,330	118,768	120,240	112,582	106,204	96,976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7.12.18. 인출)

그림 8-4 월평균 연료비 지출액 (2007~2016)

(단위: 원)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7.12.18. 인출)

05 H =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Fuel cost as percetage of income, by income decile

지표 정의

연료비/소득 비율은 소득에서 연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소득분위별 연료비/소득 비율은 각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 연료비/소득 비율을 의미하며, 가구의 에너지 비용부담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국민에게 적정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보장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측정산식

월평균 연료비 월평균 경상소득

× 100,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및 지출 현황에 기초한다.

2013년까지 전체 가구의 연료비/소득 비율은 3.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에 2.7%로 하락한데 이어 2015년에는 2.5% 그리고 2016년에는 2.3%까지 낮아졌다.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연료비 지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연료비/소득 비율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10분위 가구는 2013년까지 1.7%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다 이후 하락하여 2016년에는 1.3%까지 하락하였다. 이와는 달리 1분위 가구의 경우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까지 10%대 후반을 기록하였고 2016년에는 8.0%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난방용 에너지 소비가 많은 1분기에는 13.4%로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구주 연령별 연료비/소득 비율은 가구주 연령이 60세 미만인 가구는 모두 2.1%로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60세 이상인 가구는 3.2%로 1%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60세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가구원수별 연료비/소득 비율은 1인 가구에서 3.2%로 가장 높고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0 분기별 연료비/소득 비율 (2014~2016)

(단위: %)

78		2014			2015				2016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 분 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 분 기
1 분 위	17.0	9.5	6.2	9.3	14.8	7.5	5.2	7.2	13.4	7.7	6.1	7.0
10분위	2.2	1.4	0.9	1.3	2.1	1.3	0.9	1.1	1.8	1.1	0.9	1.0
전체 평균	4.2	2.5	1.7	2.4	4.0	2.4	1.6	2.1	3.5	2.1	1.6	1.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7.12.1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16	분기, 1년

Checkpoint

2016년 소득분위별 연료비/소득 비율을 보면 1분위 가구를 제외하고 모든 분위에서 2015년보다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연료비/소득 비율은 2016년 8.0%로 2015년보다 0.1%p 상승하였다. 2016년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연료비가 전년보다 6.9%나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료비/소득 비율이 조금이나마 상승한 것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대비 7.8%나 감소한데 따른 결과이다. 2분위 가구와 3분위 가구의 소득도 전년보다 각각 3.5%와 1.2% 감소하였지만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들 가구의 연료비/소득 비율은 하락하였다.

참고문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표 8-11 소득분위별 연료비/소득 비율 (2007~2016)

(단위: %)

소득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분위	9.6	10.3	10.5	10.9	11.0	10.8	10.7	9.4	7.9	8.0
2 분 위	5.6	5.9	5.8	6.2	6.0	6.0	5.8	5.1	4.7	4.6
3 분 위	4.4	4.7	4.7	4.8	4.5	4.6	4.5	4.2	3.8	3.5
4 분 위	3.8	3.9	3.9	4.0	4.0	3.9	3.9	3.6	3.3	3.0
5 분 위	3.4	3.5	3.5	3.6	3.6	3.6	3.4	3.1	2.8	2.7
6 분 위	3.2	3.1	3.2	3.3	3.2	3.1	3.1	2.9	2.7	2.3
7 분 위	2.7	2.7	2.8	3.0	2.9	2.8	2.8	2.5	2.3	2.2
8 분 위	2.5	2.5	2.5	2.7	2.6	2.5	2.5	2.3	2.1	1.9
9 분 위	2.1	2.1	2.1	2.4	2.2	2.2	2.2	2.0	1.9	1.6
10분위	1.6	1.6	1.7	1.8	1.7	1.7	1.7	1.5	1.4	1.3
전체 평균	2.9	2.9	3.0	3.2	3.1	3.0	3.0	2.7	2.5	2.3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7.12.18. 인출)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7.12.18. 인출)

가구주 연령별 연료비/소득 비율 (2007~2016) 丑 8-12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39세 이하	2.6	2.6	2.7	2.9	2.9	2.9	2.7	2.5	2.3	2.1
40~49세	2.8	2.8	2.8	3.0	2.9	2.9	2.8	2.5	2.3	2.1
50~59세	2.7	2.8	2.9	3.1	2.9	2.8	2.8	2.5	2.3	2.1
60세 이상	4.1	4.3	4.4	4.4	4.3	4.2	4.4	4.0	3.6	3.2
전체 평균	2.9	2.9	3.0	3.2	3.1	3.0	3.0	2.7	2.5	2.3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7.12.18. 인출)

표 8-13 가구원 수별 연료비/소득 비율 (2007~2016)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인	3.4	3.6	3.8	4.1	4.3	4.3	4.4	4.0	3.5	3.2
2인	3.3	3.5	3.6	3.7	3.6	3.6	3.5	3.2	3.0	2.7
3인	2.8	2.9	2.9	3.1	3.0	2.9	2.9	2.6	2.4	2.2
4인	2.7	2.7	2.8	3.0	2.8	2.8	2.7	2.5	2.3	2.0
5인 이상	3.0	2.9	2.9	3.1	3.1	3.1	3.1	2.8	2.6	2.4
전체 평균	2.9	3.0	3.1	3.3	3.2	3.1	3.1	2.8	2.6	2.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1인 이상),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7.12.18. 인출)

06 H H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Energy Consumption per household

지표 정의

최종에너지 소비부문(산업, 수송, 가정, 상업 및 공공기타) 중 가정부문에서 소비되는 가구당 전력과 취사 및 난방용(온수용 포함) 에너지 소비를 의미한다.

가구당 에너지 소비는 가구의 평균 에너지 소비수준을 통해 적정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산식

• 가구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

가구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2007년 1.189 석유환산톤(Ton of Oil Equivalent, TOE)에서 2010년에는 1.270 TOE로 6.8% 증가하였고 2013년은 1.275 TOE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에 비해 가구당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 것은 난방용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과 2013년 난방도일은 2007년보다 각각 18.9%와 17.1% 높았다**.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 가구당 에너지 소비는 2013년보다 5.7% 감소하였고 2015년은 2014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난방도일(서울기준)이 2013년 2,908에서 2014년에는 2,502, 2015년에는 2,459로 감소하여 난방용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소득구간별로 에너지원별 소비구조를 보면 모든 소득구간에서 도시가스를 포함하는 가스류의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격이 가장 빠르게 상승한 석유류의 소비 비중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비중이 상대 적으로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에너지 비용부담은 500~600만 원 가구에 비해 4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총조사	1981	2013	3년

Checkpoint

2013년 전체 가구의 연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하고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은 모든 소득구간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소비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은 저소득가구의 소비 비중이 높은 등유의 가격이 27.0%나 상승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 TOE(Ton of Oil Equivalent)는 석유환산톤이라고 하며 에너지원간의 열량을 비교하기 위해 원유 기준으로 환산한 양으로 원유 1kg=10,750kml로 환산하며 1TOE는 10⁷kml이다.

^{**} 난방도일은 일평균 기온이 기본온도(예 18℃)보다 낮아질 경우 두 온도간의 차이를 일정기간 동안 합한 값으로 난방이 필요한 정도를 의미한다.

표 8-14 소득계층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2010)

(단위: %)

구분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200~300만 원	300~400만 원	400~500만 원	500~600만 원	600만 원 이상
에너지 비용(천 원)	966	1,166	1,342	1,475	1,540	1,484	1,670
비용지수(100만 원 미만=100)	100	60	42	33	27	21	15
에너지 소비량 (천kcal)	10,046	11,854	13,252	14,215	14,932	14,563	15,8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 탄	5.0	2.8	1.0	0.8	0.2	0.2	-
석유류	20.1	13.8	10.0	6.7	4.9	3.4	0.7
가스류	48.5	55.5	58.5	58.1	57.3	54.2	55.5
전 력	22.8	24.1	24.1	24.9	24.6	24.6	25.5
<u>열</u>	3.5	3.9	6.4	9.4	13.0	17.6	18.4

주: 1. 가스류에는 도시가스와 LPG 포함됨.

소득계층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2013) 표 8-15

(단위: %)

구분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200~300만 원	300~400만 원	400~500만 원	500~600만 원	600만 원 이상
에너지 비용(천 원)	1,045	1,298	1,500	1,743	1,922	1,991	2,130
비용지수(100만 원 미만=100)	100	62	43	36	31	26	18
에너지 소비량 (천kcal)	8,529	10,875	12,605	15,152	16,736	17,053	16,9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 탄	8.4	3.5	1.5	0.4	0.4	0.0	0.0
석유류	20.3	12.3	8.3	3.6	1.5	1.2	1.7
가스류	36.9	52.2	57.3	62.4	61.8	59.1	53.5
전 력	29.4	26.8	25.2	22.9	22.2	22.7	24.6
열	5.0	5.1	7.8	10.6	14.1	17.0	20.2

주: 1. 가스류에는 도시가스와 LPG 포함됨.

표 8-16 가구원 수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2013)

(단위: %)

구분	평 균	2인 이하	3인	4인	5인	6인 이상
에너지 소비량 (천 kcal)	12,745	10,364	13,430	15,255	15,223	14,3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 탄	2.0	4.5	1.1	0.5	1.2	1.1
석유류	7.5	13.4	5.7	3.8	4.9	9.7
가스류	57.1	48.6	59.5	61.7	57.9	48.9
전 력	25.1	26.6	24.7	23.6	24.4	27.0
열	8.3	6.9	8.9	10.5	11.5	13.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4

^{2.} 비용지수는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소득 1만 원당 에너지 소비지출 비용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1

^{2.} 비용지수는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소득 1만 원당 에너지 소비지출 비용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4

표 8-17 사용건평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2013)

(단위: %)

구분	평 균	10평 미만 (33㎡ 미만)	10~19평 (33~66)	20~29평 (66~99)	30~39평 (99~132)	40~49평 (132~165)	50평 이상 (165 이상)
에너지 소비량 (천 kcal)	12,745	8,351	11,411	13,201	14,847	15,217	15,6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 탄	2.0	6.0	3.8	1.2	0.0	0.3	2.6
석유류	7.5	10.6	10.7	7.8	2.7	4.4	5.2
가스류	57.1	53.9	53.2	59.4	62.7	55.8	49.4
전 력	25.1	29.5	25.8	25.0	24.1	26.7	27.2
열	8.3	-	6.5	6.6	10.5	12.8	15.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총조사보고서,2014

표 8-18 주택형태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2013)

(단위: %)

구분	평 균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주택
에너지 소비량 (천 kcal)	12,745	10,348	14,271	13,712	12,836	9,5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 탄	2.0	6.7	0.2	0.2	0.3	9.8
석유류	7.5	24.0	0.7	3.5	2.5	18.7
가스류	57.1	40.1	60.0	72.5	73.0	40.4
전 력	25.1	29.2	23.4	23.8	24.2	31.1
<u>열</u>	8.3	-	15.7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4

그림 8-6 소득수준별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2013)

(단위: 천kcal)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4

07 H

에너지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

지표 정의

정부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 총규모와 가구 수를 의미한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에너지 이용효율을 개선시켜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저소득가구를 포함한다.

측정산식

• 총지원액 및 지원 가구 수

현재 저소득가구를 포함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실행되고 있는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사업은 크게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구분된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시공지원과 물품지원으로 구분되며 2016년에는 가구당 평균 150만 원, 최대로는 250만 원까지 지원하였다. 전력효율향상사업은 조명기구를 LED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여 에너지 소비절감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2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 2만 가구 정도에서 2014년과 2015년에는 4만 여 가구로 지원 가구 수가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3만 가구 정도로 축소되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효율개선 시공 후에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23% 정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력효율향상사업 역시 지원 가구 수가 2014년 76,800 가구까지 증가한 이후 축소되어 2016년에는 3만 가구에 그쳤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태양광 설비 등의 보급을 통해 전력비용을 절감시키는 사업으로 2014년 이후 지원가구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 전력과 가스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무상 수리를 통해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안전 지원도 시행되고 있다.

통계정보

A LOSE A LET OLD	에너지 지워사언 현황(내부자료)	- Az 4.9.CT	2017	1년
잔선기과	토계명	치夫 자서여드	치그 자서여드	주기 -

Checkpoint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단열, 창호, 고효율보일러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구입비용을 절감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등의 효과도 보이고 있다. 효율개선사업 지원한도가 적어 충분한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으로 가구당 지원단가를 평균 25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설비가 설치되어 가동되면 연료비가들지 않아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표 8-19 에너지 지원 사업 현황 (2011~2016)

(단위: 억 원, 가구)

구분	지원사업	주요내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담기관
	전력효율향상 (고효율조명보급)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116 (25,625)	146 (30,468)	246 (46,269)	356 (76,800)	260 (34,780)	240 (29,761)	전력기금 (지자체)
-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노후 주택 창호 · 단열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가구당 150만 원한도)	195 (21,428)	296 (29,628)	411 (36,508)	671 (40,000)	613 (40,707)	489 (29,468)	에특회계 (에너지재단)
효율 개선 및	국민임대아파트 신재생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 (정부 80%)	94 (20,528)	117 (34,867)	53 (19,321)	4 (2,439)	7 (4,855)	10 (5,435)	전력기금 (한국에너지공단)
보급 사업	복지시설 신재생보급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부 80%)	99 (186)	111 (170)	43 (111)	39 (219)	22 (94)	29 (319)	전력기금 (지자체)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24시간 응급조치, 전기 재해 취약설비 무상 수리	22 (65,611)	24 (68,383)	25 (70,313)	25 (74,274)	25 (72,260)	25 (66,352)	전력기금 (전기안전 공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LPG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무상 교체	159 (85,069)	148 (91,343)	132 (79,523)	132 (72,620)	140 (74,315)	178 (95,060)	에특회계 (가스안전 공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내부자료)

08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지표 정의

에너지기업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할인 사업의 지원 가구 수를 의미한다.

에너지 가격 할인을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경감시켜 준다.

측정산식

• 총지원액 및 지원 가구 수

에너지 가격할인 사업은 전력과 도시가스 및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전기요금 할인은 2004년에 시작되어 점차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2016년 12월부터 장애인과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는 월 16천 원(여름철 20천 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10천 원(여름철 12천 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월 8천 원(여름철 10천 원) 한도에서 요금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할인을 확대하였다. 2016년 전기요금 할인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59만2천가구, 차상위 14만8천 가구, 장애인 64만9천 가구 등 총 247만7천 가구를 지원하였고 할인액 총규모는 2,748억 원으로 2015년보다 조금 증가하였다.

가스요금은 소비가 많은 동절기와 기타 월에 차등하여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취사·난방용에 대하여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는 동절기(12~3월)에 월 24,000원, 기타월에는 월 6,600원을 할인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동절기(12~3월)에 월 12,000원, 기타월에는 월 3,300원을 경감하며, 교육급여대상자,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에 대해서는 동절기(12~3월)월 6,000원, 기타월에는 월 1,650원 할인해 주고 있다. 취사용으로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80원,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에는 월 840원, 교육급여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계층은 월 420원을 할인하고 있다. 가스요금 할인 대상가구와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년에는 1,027억 원으로 약 1백만 가구의 요금을 할인해 주었다.

지역난방(열에너지)은 수급자는 월 1만 원, 차상위계층은 월 7천 원의 기본요금을 감면해 준다. 열요금 감면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17만5천 가구까지 증가하였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내부자료)	-	2016	1년

Checkpoint

2016년 전기요금 할인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전년보다 11만7천 가구(4.4%) 증가하였다. 2016년 전기요금 할인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는 59만2천 가구로 전년보다 4만2천 가구 증가하였고, 차상위계층은 1만8천 가구 증가하였다. 2016년 전기요금 할인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중은 23.4%를 차지하였고, 차상위계층은 5.4%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가구의 비중은 26.2%로 높았으나 2015년 27.2%에 비하여 1.0%p 하락한 결과다. 전기요금 할인가구 중에서는 3자녀 이상 가구가 67만1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1%를 점유하여 비중이 가장 높았다.

표 8-20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사업 현황 (2011~2016)

(단위: 억 원, 가구)

구분	지원사업	주요내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담기관
가격	전기요금 할인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상이자/유공자 (16천 원/월, 여름철 2만 원), 주거 · 교육급여수급자 (10천 원/월, 여름철 12천 원) 차상위 (8천 원/월, 여름철 10천 원), 복지시설(주택 30%) 등*	2,720 (2,240,548)	2,456 (2,248,467)	2,533 (2,274,847)	2,617 (2,327,574)	2,623 (2,359,952)	2,748 (2,477,266)	민간자금 (한국전력공사)
할인 사업	가스요금 할인	장애인, 유공자,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월평균 12,400원, 주거급여, 차상위 월평균 6,200원 교육급여, 차상위확인서 월평균 3,100원	484 (606,305)	521 (643,445)	684 (767,640)	936 (865,167)	997 (926,122)	1,027 (1,039,446)	민간자금 (한국가스공사)
	열요금 감면	기본요금 전액 감면 (10천 원/월)	42 (133,353)	48 (137,902)	48 (148,212)	56 (157,626)	59 (159,941)	62 (175,404)	민간자금 (지역난방 공사)

주: '16.12월 이후 변경, 상세내용은 아래의 표 8-21 참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내부자료)

표 8-21 대상별 · 지원대상별 전기요금 할인 현황 (2015~2016)

(단위: 천 가구, 억 원)

				<u></u>				(11, 12)
구분	도입일	대상종별	할인내용 -	(2016년)	호수(친	선 가구)	할인액	(억 원)
1 -	<u> </u>	-11002	2016.11월까지	2016.12월 이후	2015	2016	2015	2016
장애인	'04. 3	주택용	월 8천 원 한도		641	649	591	624
유공상이자	'04. 3	주택용	월 8천 원 한도	월 16천 원한도 (여름철 2만 원 한도)	9	8	8	8
독립유공자	'05.12	주택용	월 8천 원 한도	(102 -2 2 2,	5	5	5	5
기초생활수급자	'05.12	주택용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8천 원 한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4천 원 한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16천 원(여름철 2만 원) 한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10천 원(여름철 12천 원) 한도	539	592	472	556
	'08. 1	심야	갑 31.40%, 을20%	갑 31.40%, 을20%			27	
	'07. 1	주택용	21,60%	30%	102	126	405	
사회복지시설	07.1	일반용	20%	30%	102		400	595
	'08. 1	심야	갑 31.40%, 을 20%	갑 31.40%, 을 20%	19		156	
차상위계층	'08. 7	주택용	월 2천 원 한도	월 8천 원한도 (여름철 1만 원 한도)	127	148	23	42
	'10. 8	심야	갑 29.7%, 을 18%	갑 29.7%, 을 18%	3		5	
3자녀이상가구	'09. 8	주택용	20%(월 1만2천 원 한도)	30%	658	671	604	669
대가족	'07. 1	주택용	한 단계 낮은 요율(월 1만2천 원)	(월 16천 원 한도)	240	268	318	238
생명유지장치	'07. 8	주택용	한 단계 낮은 요율 (301~600kWh)	30%	6	9	9	11
			계		2,360	2,477	2,623	2,748

자료: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http://cyber.kepco.co.kr/에서 2018.1.10.인출)

09 H

연료비 지원

지표 정의

저소득 가구의 동절기 난방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가구 수를 의미한다.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적정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유도한다.

측정산식

• 총지원액 및 지원 가구 수

연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지원 방법의 하나로 현재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등 세 가지 지원 사업이 실행 중에 있다. 연탄구입을 보조하는 연탄쿠폰 사업은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7년에 시작되었다. 연탄 사용가구가 감소하면서 지원가구의 수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2015년 이후에는 8만 가구 미만으로 축소되었다. 연탄 사용가구 중 연탄쿠폰을 지원받는 가구의 비율은 2011년 56.0%에서 2014년에는 85.6%까지 높아져 연탄 사용가구 대부분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까지는 가구당 16만9천을 지원하였으나 2016년에는 가구당 23만5천 원으로 지원액을 증액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지원총액은 184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난방연료 지원 사업(등유바우처)은 석유를 난방에너지로 사용하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한다. 2013년에는 1만8천 가구 정도를 지원하였으나 지원가구 수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특히 2015년부터 지원 가구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에 도입되어 45만2천 가구에 지급되었고 2016년에는 지원가구가 48만7천 가구로 확대되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가구원으로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와 난방연료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내부자료)	-	2016	1년

Checkpoint

연료비 지원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처음 도입되어 45만2천 기구에 지원되었다. 지원대상은 생계 및 의료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이고 가구원수에 따라 8만1천 원(1인 가구)에서 11만4천 원(3인 이상 가구)이 지급되었다. 2016년에는 기존 지원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한 가구가 추가되었고 가구당 지원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천 원 증액되었다.

표 8-22 연료비 지원 사업 현황 (2011~2016)

(단위: 억 원, 가구)

구분	지원사업	주요내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담기관
	난방 연료지원	난방용 등유 200L 상당 (가구당 310천 원)	-	81 (18,000)	81 (18,000)	60 (18,000)	38 (12,500)	37 (11,800)	에특회계 (한국에너지재단)
연료비 지원	연탄보조	연탄쿠폰 (가구당 169천 원)	151 (89,172)	141 (83,288)	141 (83,277)	141 (83,300)	132 (77,413)	184 (78,103)	에특회계 (한국광해관리 공단)
사업	에너지 바우처	전기 · 도시가스 · 연탄 · 등유 등 구입가능한 전자바우처	-	-	-	-	452 (494,627)	487 (523,664)	에특회계 (한국에너지공단)

주: 괄호 안은 지원 가구의 수를 의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내부자료)

표 8-23 에너지 지원 사업 현황 (2011~2016)

(단위: 억 원, 가구)

구분	지원사업	주요내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담기관
	전력효율향상 (고효율조명보급)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116 (25,625)	146 (30,468)	246 (46,269)	356 (76,800)	260 (34,780)	240 (29,761)	전력기금 (지자체)
-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노후주택창호 · 단열공 사, 노후 보일러 교체 (가구당 150만 원한도)	195 (2,1428)	296 (29,628)	411 (36,508)	671 (40,000)	613 (40,707)	489 (29,468	에특회계 (한국에너지재단)
효율 개선 및	국민임대 아파트 신재생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정부 80%)	94 (20,528)	117 (34,867)	53 (19,321)	4 (2,439)	7 (4,855)	10 (5,435)	전력기금 (한국에너지공단)
보급 사업	복지시설 신재생보급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부 80%)	99 (186)	111 (170)	43 (111)	39 (219)	22 (94)	29 (319)	전력기금 (지자체)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24시간 응급조치, 전기 재해 취약설비 무상 수리	22 (65,611)	24 (68,383)	25 (70,313)	25 (74,274)	25 (72,260)	25 (66,352)	전력기금 (한국전기안전 공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LPG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무상 교체	159 (85,069)	148 (91,343)	132 (79,523)	132 (72,620)	140 (74,315)	178 (95,060)	에특회계 (한국가스안전 공사)
	전기요금 할인	생계 · 의료급여수급 자/장애인/상이자/유공 자(16천 원/월, 여름철 2만 원) 등*	2,720 (2,240,548)	2,456 (2,248,467)	2,533 (2,274,847)	2,617 (2,327,574)	2,623 (2,359,952)	2,748 (2,477,266)	민간자금 (한국전력공사)
가격 할인 사업	할인 기스요금 일인	장애인,유공자,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월 평균 12,400원, 주거 급여, 차상위 월평균 6,200원 교육급여, 차상위확인 서 월평균 3,100원	484 (606,305)	521 (643,445)	684 (767,640)	936 (865,167)	997 (926,122)	1,027 (1,039,446)	민간자금 (한국가스공사)
	열요금 감면	장기임대 등 기본요금 전액 감면, 생계및의료(10천 원/ 월) 차상위(7천 원/월) 장애인(5천 원/월)	42 (133,286)	48 (137,835)	52 (148,212)	56 (156,969)	59 (167,869)	62 (175,404)	민간자금 (지역난방 공사)
	저소득층 난방 연료지원	난방용 등유 200L 상 당(가구당 310천 원)	-	81 (18,000)	81 (18,000)	60 (18,000)	38 (12,500)	37 (11,800)	에특회계 (한국에너지재단)
연료비 지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연탄쿠폰 (가구당 169천 원)	151 (89,172)	141 (83,288)	141 (83,277)	141 (83,300)	132 (77,413)	184 (78,103)	에특회계 (한국광해관리 공단)
사업	에너지 바우처	전기 · 도시가스 · 연 탄 · 등유 등 구입가능 한 전자바우처	-	-	-	-	452 (494,627)	487 (523,664)	에특회계 (한국에너지공단)
	계	190 по 21 2 1-7	4,080 (3,259,934)	3,766 (3,393,493)	4,415 (3,544,312)	4,678 (3,642,820)	5,454 (4,195,207)	5,508 (4,492,632)	

주: '16.12월 이후 변경, 상세내용은 표 8-21 참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내부자료)

환경

- 01 상수도 보급률
- 02 하수도 보급률
- 03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 04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 05 주요 대도시 소음도
- 06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 07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
- 08 환경성질환자 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 0 1 7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환경의 질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하수도 설치율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
		도시지역 인구당 녹지조성 면적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주요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주요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주요 대도시 소음도	
환경관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GPD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	환경예산 비율
환경 보건	환경성질환자 수	

상수도 보급률

Water Supply Rate

지표 정의

상수도 보급률은 수돗물의 보급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 인구 중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 이다

생활환경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써,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측정 산식

급수 인구 총 인구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전국적인 상수도 보급현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1974년 72.9%이던 일반상수도 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90%를 넘어섰다. 이 증가 추세는 계속되었고,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96.5%가 일반상수도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2015년 전체인구의 98.8%가 급수를 통해 수자원을 이용하였다.

상수도 보급률은 OECD 선진국과 비교해도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상수도 보급률의 지역 간 격차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15년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99.7%, 시 지역은 99.3% 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는데 반하여, 읍 지역은 94.5%, 면 지역은 71%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격차는 점점 좁혀지고 있는데, 특히 면 지역의 경우 2000년 27.9%였던 상수도 보급률이 2015년 71%로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는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을 확보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 결과 읍·면 지역의 급수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 기준 읍지역 97.2%, 면 지역 92.3%의 보급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시도별 일반상수도 보급률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세종시가 87.7%로 가장 낮은데, 세종시의 보급률은 2013년 90.8%였다가, 2014년 크게 떨어져 82.4%를 기록한 후, 2015년 87.7%로 다소 회복하였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상수도통계	1975	2015	1년

Checkpoint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인구의 비율은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 2015년 말 일반상수도 보급률은 96.5%로, 전년대비 0.4%p 상승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집중한 결과 면 지역상수도 보급률은 전년 대비 1.9%p 높아졌지만 여전히 70%대에 머물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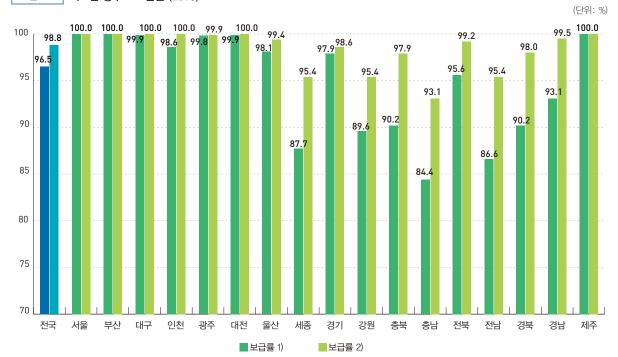
표 9-1 지역별 상수도 보급률 (2000~2015)

	4 1E 81 = 1 = 1 = 1 = 1																
구분	지역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87.1	87.8	88.7	89.4	90.1	90.7	91.3	92.1	92.7	93.5	94.1	94.6	95.1	95.7	96.1	96.5
일반	특·광역시	98.2	98.4	98.5	98.7	98.8	98.9	99.1	99.1	99.3	99.4	99.5	99.6	99.6	99.6	99.7	99.7
상수도 보급률	일반 시지역	96.0	96.5	97.0	97.0	97.3	97.5	97.5	97.6	98.3	98.6	98.7	98.8	98.9	99.1	99.1	99.3
(%) ¹⁾	읍지역	75.9	77.4	80.1	80.8	82.5	82.6	84.3	86.2	87.4	88.8	89.8	90.9	91.8	92.9	93.7	94.5
	면지역	27.9	29.0	31.1	33.0	35.2	37.7	41.1	45.2	47.4	51.0	55.9	58.8	62.6	66.4	69.1	71.0
	전국 ³⁾				94.6	95.1	95.4	95.9	96.4	96.8	97.4	97.7	97.9	98.1	98.5	98.6	98.8
급수	특·광역시							99.1	99.3	99.5	99.5	99.9	99.9	99.9	99.9	99.9	99.9
보급률	일반 시지역							97.6	97.8	98.4	98.7	99.0	99.1	99.1	99.3	99.3	99.4
(%) ²⁾	읍지역							86.0	87.8	89.3	90.7	94.7	94.9	95.5	96.4	96.9	97.2
	면지역							48.4	53.9	58.1	61.6	85.4	86.7	88.2	90.2	91.5	92.3

주: 1) 수도사업자에 의한 급수 인구계를 바탕으로 한 것임.

자료: 환경부, 상수도통계, 각 연도

그림 9-1 시도별 상수도 보급률 (2015)



주: 보급률 1)은 수도사업자에 의한 급수 인구를 이용한 보급률이며, 보급률 2)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공급받는 인구를 포함한 보급률이다. 자료: 환경부, 2015 상수도통계, 2016

^{2) 2010}년 이전에는 마을상수도로 공급받는 인구를 포함하며, 2010년 이후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공급받는 인구를 포함한 수치임. 3) 2003년 이후 전국 수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공급받는 인구를 포함한 수치임.



하수도 보급률

Total Public Sewerage(% of resident population connected to wastewater collecting system)

지표 정의

하수도 보급률은 총 인구 중 하수처리구역 내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 하수도로 배제할 수 있고, 동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용 개시가 공시된 구역을 말한다. 따라서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또는 관할 행정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없지만 타 지역에 설치된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시설이 갖추어진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이다.

하수도 보급률은 해당 지역의 수질 환경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 총 인구

2015년 기준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은 92.9%로 2014년 대비 0.4%p 증가하였다. 2000년 하수도 보급률은 70.5%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는 추세이다. OECD 주요 국가들의 하수도 보급률을 살펴보면 2014년 한국의 하수도 보급률은 92.5%로, 2015년 일본 77.8%, 2015년 노르웨이 86.2%, 2014년 스웨덴 87%, 2014년 덴마크 91%에 비해 높고, 2014년 오스트리아 95%, 2013년 독일 96.8%, 2014년 스페인 97.2%, 2015년 네덜란드 99.4%에 비해 낮다.

하수도 보급률의 지역별 격차는 두드러진다.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97%를 상회한다. 그러나 전북 85.9%, 강원도 86%, 충북 86.2% 경남 88.6%을 비롯하여, 전남 76.1%, 충남 74.3% 등은 90% 이하 또는 80% 이하의 하수도 보급률을 보인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의 격차는 매우 큰 편인데, 2015년 특·광역시 내의 시 지역은 99.5%, 군 지역은 83.7%의 하수도 보급률을, 도 지역의 시 지역은 91.2%, 군 지역은 66.1%(읍 지역 85%, 면 지역 49%)의 보급률을 보였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하수도통계	1975	2015	1년

Checkpoint

2015년 하수도 보급률은 92.9%로 전년도에 비해 0.4% 증가하였지만, 보급률의 지역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다, 다만 특 \cdot 광역시 내의 군 지역(전년 대비 2% 증가), 도 지역의 시(전년 대비 0.3% 증가), 군 지역 (전년 대비 2.8% 증가)에서 보급률이 점점 개선되어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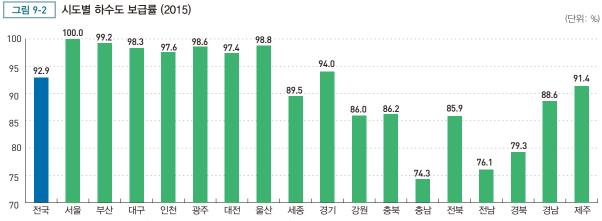
• OECD, Water: Wastewater treatment, OECD Environment Statistics (database), 2015.

표 9-2 하수도 보급률 (2000~2015)

(단위: 천 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인구	47,977	48,289	48,518	48,824	49,053	49,268	49,624	50,034	50,394	50,644	51,435	51,717	51,881	52,127	52,419	52,672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	33,843	35,369	36,760	38,449	39,924	41,157	42,450	43,569	44,631	45,264	46,358	47,034	47,538	48,016	48,507	48,925
공공하수처리 인구					39,680	40,910	42,175	43,286	44,343	44,972	46,060	46,710	47,202	47,672	48,151	48,571
폐수종말처리 인구					245	247	275	283	288	292	297	324	336	344	356	355
하수도 보급률	70.5	73.2	75.8	78.8	81.4	83.5	85.5	87.1	88.6	89.4	90.1	90.9	91.6	92.1	92.5	92.9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7.12.1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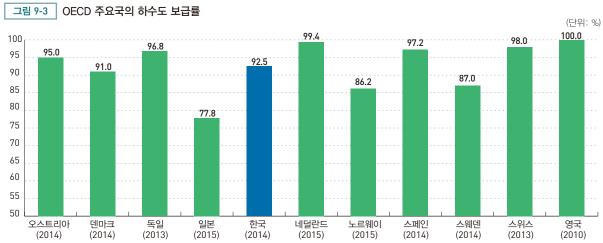
자료: 환경부, 2015 하수도통계, 2016 (http://kosis.kr//에서 2017.12.18. 인출)

표 9-3 지역별 하수도 보급률 (2012~2015)

(단위: %)

			2012					2013					2014					2015		
구분	시군	시		군지역		시군	시		군지역		시군	시지		군지역		시군	시		군지역	
	전체	지역	전체	읍	면	전체	지역	전체	읍	면	전체	역	전체	읍	면	전체	지역	전체	읍	면
총계	91.6	94.6	62.1	83.5	41.9	92.1	94.9	63.7	84.6	44.0	92.5	95.0	65.9	84.7	47.3	92.9	95.1	67.1	85.0	49.0
특·광역시	98.8	99.4	78.0	-	-	98.9	99.4	80.2	-	-	98.9	99.4	81.7	-	-	99.1	99.5	83.7	-	-
도지역	85.6	90.0	59.7	83.5	41.9	86.5	90.6	61.2	84.6	44.0	87.2	90.9	63.3	84.7	47.3	87.9	91.2	66.1	85.0	49.0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자료: OECD, Environment Statistics Database, 2015 (http://stat.oecd.org//에서 2017.12.18. 인출)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Population Connected to Tertiary Sewerage treatment Facility

지표 정의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이란 행정구역의 총 인구 대비 고도처리가 이루어 지는 지역 내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다. 여기서 고도처리란 질소, 인까지 하수처리하는 방법으로 3차 처리라고도 한다.

하수의 고도처리는 수질관리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3차 처리 인구 행정구역의 총 인구 ×100

고도처리는 하천 및 호수의 부영양화를 악화시키는 질소와 인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표준 2차처리에서 얻을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한 처리이다. 따라서 하수의 고도처리가 잘 되고 있는 지역의 수질은 매우 깨끗하며, 하수의 고도처리는 자원재생과 더불어 해당권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시행규칙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은 2008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그 보급률이 84%였다. 보급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은 37.1%로 가장 낮은 편이고, 전남이 66.3%, 경북이 71.6%로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로 낮은 편이다.

표 9-4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2008~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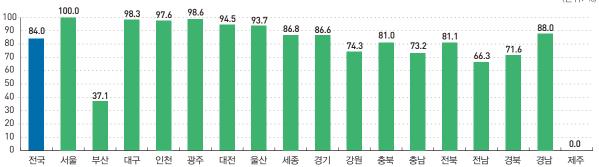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39.5	50.2	54.1	58.2	59.9	81.6	82.8	84.0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주: 제주의 고도처리 인구보급률은 집계되지 않음. 자료: 환경부, 2015 하수도통계, 2016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하수도통계	1975	2015	1년

02-2

하수도 설치율

Total Public Sewage & Sewerage Installation rate

지표 정의

하수도 설치율은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갖추어 진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하수관로를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하수도 설치율은 공공하수처리 인구 보급률(하수도 보급률)과 계획연장 대비 시설연장을 의미하는 하수관로 보급률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측정 산식

공공하수처리 인구 보급률(%) × 하수관로 보급률(%)

100

하수도 설치율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하수도 설치율은 74.2%로 전년 대비 2.2%p 증가하였는데, 이는 하위 요소인 하수도 및 하수관로 보급률이 모두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5년 지역 규모별 하수관로 보급률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시 지역 81.6%, 읍 지역 77.7%, 면 지역 70%의 보급률을 보였으며, 모두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다. 하수도 설치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00%, 대전이 93.5%, 대구가 88.5%로 그 뒤를 이었고, 전남이 53.8%로 가장 낮았고, 충남이 54.4%로 두 번째로 낮았다.

표 9-5 하수도 설치율 (2004~2015)

(단위: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하수도 보급률	81.4	83.5	85.5	87.1	88.6	89.4	90.1	90.9	91.6	92.1	92.5	92.9
하수관로 보급률	62.2	62.4	64.5	66.1	67.8	68.9	71.4	73.4	75.8	76.5	77.8	79.9
하수도 설치율	50.6	52.1	55.2	57.6	60.0	61.6	64.3	66.8	69.5	70.5	72.0	74.2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표 9-6 지역별 관로 보급현황 (2012~2015)

(단위: %)

			2012					2013					2014					2015		
구분	시군	시		군지역		시군	시		군지역		시군	시지		군지역		시군	시		군지역	
	전체	지역	전체	읍	면	전체	지역	전체	읍	면	전체	역	전체	읍	면	전체	지역	전체	읍	면
총계	75.8	77.9	68.3	73.1	62.9	76.5	78.5	69.3	73.5	64.0	77.8	79.4	71.9	76.7	68.7	79.9	81.6	73.3	77.7	70.0
특·광역시	77.8	77.9	77.1	-	-	79.0	79.0	79.1	-	-	79.1	79.8	70.5	-	-	82.9	83.8	72.9	-	-
도지역	74.9	77.9	67.4	73.1	62.9	75.4	78.2	68.2	73.5	64.0	77.3	79.3	72.1	76.7	68.7	78.5	80.5	73.3	77.7	70.0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그림 9-5 시도별 하수도 설치율 (2015) (단위: %) 100.0 100 93.5 90 88.5 86.5 83.9 80 76.6 74.2 72.0 70.0 70 64.1 64.5 63.0 60.3 60 54.4 53.8 전남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서울 세종 충남 경남 자료: 환경부. 2015 하수도통계. 2016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하수도통계	1975	2015	1년

03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Per Capita Park space

지표 정의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도시지역 인구 대비 도시공원 조성 면적을 의미한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환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의 규모는 도시 환경의 쾌적한 정도를 나타내며, 시민의 휴양과 건강을 위한 생활공간으로서 의미도 있다.

측정 산식

도시 공원 조성 면적 도시 지역 인구

2016년 기준 전국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942km²이며, 이 중 조성 면적은 결정 면적의 약 46.4% 정도인 437km²이다. 2009년부터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 결정 지역을 해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2008년 1,284km²에서 2016년 942km²로 약 27% 감소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 조성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2012년을 제외하고 점 차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437km²에 이르렀다. 도시공원 결정 면적 대비 조성 면적 비율은 2015년 46.4%에 불과하지만, 2009년 33.1%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1인당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2012년을 제외하고 200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지만, 1인당 조성 면적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5년 8.8㎡/인에서 2016년 9.2㎡/인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2016년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의 지역별 격차는 꽤 크다. 예를 들어, 세종시는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이 102㎡로 가장 넓었고, 전남, 전북, 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 세종시의 경우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21㎢으로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약 4.9%이지만, 전체 도시지역 인구 대비 세종시인구 비중은 0.44%이기 때문에 1인당 조성 면적이 넓게 나타났다. 하지만 세종시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1인당 조성 면적은 2015년 121㎡에서 2015년 102.0㎡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2006	2016	1년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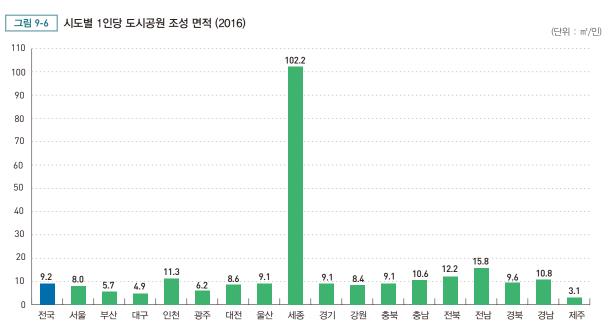
도시공원의 개수와 조성 면적, 그리고 녹지의 비율은 도시인의 휴식에 필요한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보여준다.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2000년대 초반 증가추세에 있다가, 2008년 이후 정체하였다.

표 9-7 도시공원 결정 및 조성 현황 (2000~2016)

(단위: km², m²/인)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도시공원 결정 면적	1,040	1,026	1,043	1,055	1,126	1,136	1,141	1,190	1,284	1,112	1,089	1,008	1,020	1,005	989	934	942
1인당 도시공원 결정 면적(㎡/인)	19.8	18.6	24.1	24.1	25.7	25.8	25.8	26.7	28.6	24.6	23.7	21.8	22.0	21.5	21.0	19.8	19.8
도시공원 조성 면적	214	230	219	304	361	304	292	329	461	368	384	386	412	404	406	418	437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인)	5.0	5.3	5.1	6.9	8.2	6.9	6.6	7.4	10.3	8.1	8.4	8.3	8.9	8.6	8.6	8.8	9.2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각 연도



주: 도시공원 조성 면적을 도시지역 인구로 나누어 계산함. 연도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2016 도시계획현황. 2017

도시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

03-1

Number of City Park per 10,000 city residents

지표 정의

도시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권 개소를 의미한다.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도시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도시공원 개소 도시지역 인구

도시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의 지역별 격차는 큰 편이다. 예를 들어, 2016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가 가장 많은 세종시는 11.7개로, 두 번째로 많은 전남 10.5, 충남 8.4와 차이가 난다.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일수록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는 적은 편인데, 따라서 서울은 2.1개, 부산은 2.9개, 대구는 3.1개 등으로 나타났다.

<u>그림 9-7</u> 시도별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 (2016)

(단위: 개소/1만 명)



주: 1) 도시공원 수를 도시지역 인구로 나누어 계산함. 연도말 기준

2) 결정현황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조성현황 기준과 차이가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2016 도시계획현황, 2017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2006	2016	1년

도시지역 인구당 녹지조성 면적

Natural and Artificial Grasslands Area per Urban Area Population

03-2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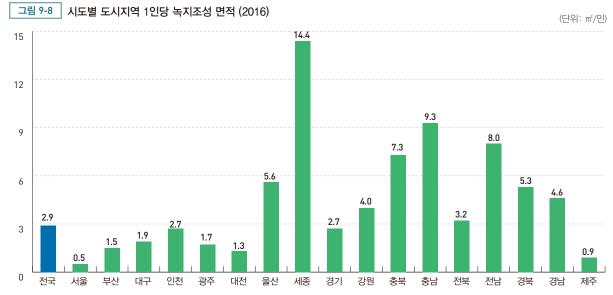
도시지역 인구 1명당 녹지조성 면적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녹지조성 면적 도시지역 인구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보하기 위하여 결정된 지역을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녹지를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한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연결녹지는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를 말한다.

2016년 지역별 1인당 녹지조성 면적을 보면 인구밀도가 낮은 신도시인 세종시가 14.4㎡로 가장 많은 녹지가 조성되어 있다. 뒤를 이어 충남, 전남, 충북이 높았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은 0.5㎡로 1인당 가장 적은 녹지가 조성되어 있다.



주: 연도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2016 도시계획현황, 2017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2006	2016	1년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Concentration Level of Particulate Matter(PM10) in Major Cities

지표 정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1㎡에 들어있는 미세먼지의 질량이다. 미세먼지는 직경 10㎞ 이하의 먼지 입자를 말하며 PM-10이라 표기하고, 입자의 직경이 2.5㎞ 이하인 경우는 초미세먼지라 정의하고 PM-2.5라 표기한다.

측정 산식

• 1㎡에 들어있는 직경 10㎞ 이하의 먼지 입자(PM-10)의 질량

대기오염 정도는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등의 농도로 측정한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직경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따라서 흡입 시 폐포에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율을 높인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2012)을 연평균 50μg/m³, 24시간 평균 100μg/m³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기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줄이기 위한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는데, 그 기준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다.

2016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47μg/m³이다. 2000년대 초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50μg/m³ 중후반 이었으나 후반에 들어 다소 감소하였고, 2012년 10년 최저점 인 45μg/m³를 기록한 이후 다소 증가하여 47~49μg/m³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 들어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는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이에 부합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6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주요 도시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미세먼지 오염도를 살펴보면, 이는 각각 48, 44, 43, 49, 40, 44, 43µg/m³이고, 주요 도시들 중 인천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다. 한편, 2016년 서울을 제외한 주요도시들의 미세먼지농도는 2015년 대비 감소하였다.

2016년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초과한 측정망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은 28.4%였으며, 지역별로 는 경기 62.5%, 전북 42.9%, 인천 40.0% 순으로 높았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1980	2016	1개월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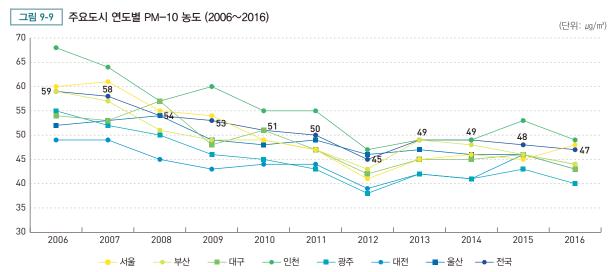
주요도시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2년 10년 간 최저 수준인 $45\mu g/m^3$ 를 기록한 이후 다소 증가하여 $47\sim49\mu g/m^3$ 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의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전년도 대비 $1\mu g/m^3$ 감소한 $47\mu g/m^3$ 이었다.

표 9-8 항목별 대기오염도 (200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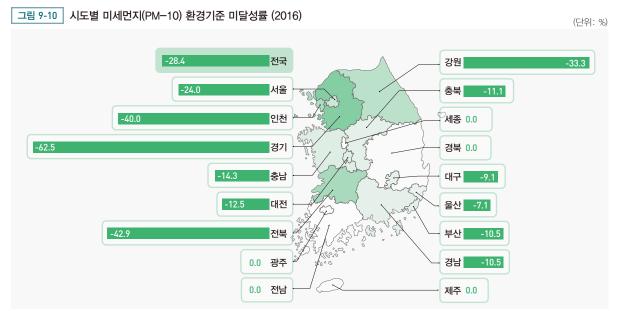
(단위: ppm)

항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SO ₂	. 0.000	0.007	0.000								0.005 (0.020)						
NO ₂		0.025 (0.050)									0.025 (0.030)						0.023 (0.030)
O ₃	0.02	0.021	0.021	0.021	0.022	0.022	0.022	0.022	0.023	0.024	0.023	0.024	0.025	0.026	0.027	0.027	0.027
CO	0.9	0.8	0.7	0.7	0.7	0.6	0.6	0.6	0.6	0.5	0.5	0.5	0.5	0.5	0.5	0.5	0.5
PM-10 (μg/m³)	53 (80)	58 (70)	61 (70)	56 (70)	58 (70)	57 (70)	59 (70)	58 (50)	54 (50)	53 (50)	51 (50)	50 (50)	45 (50)	49 (50)	49 (50)	48 (50)	47 (50)

주: ()는 연평균 환경기준치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주: 전국 수치는 전체 측정망의 연평균 수치를 활용함.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주: 각 시도별 측정소 중 초과측정소/유효측정소의 값임. 자료: 환경부, 2016 대기환경연보, 2017 Concentration Level of Sulfur Dioxide(SO₂) in Major Cities

지표 정의

이산화황 오염도(ppm)는 대기 백만 리터(L)당 이산화황의 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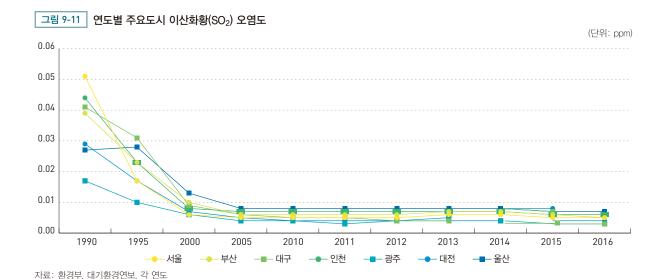
측정 산식

• 대기 백만 리터에 들어있는 이산화황의 양(ppm, parts per million)

이산화황(SO₂)은 황 함유 연료(주로 석탄과 석유)의 연소, 금속 제련공정, 기타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며, 난방 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에는 이산화황의 오염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산화황은 시정장애(視程障碍)를 일으키는 미세먼지(PM-10)의 주요 원인물질이기도 하다. 이산화황은 인체의 점막을 자극하며, 이를 흡입하면 기관지염, 폐수종, 폐렴 등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산화황에 대한 환경기준(2012)을 연평균 0.02ppm, 24시간 기준 0.05ppm, 1시간 기준으로는 0.15ppm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황의 농도는 낮아지는 추세이다. 전국의 이산화황의 농도는 1999년 0.009ppm이었다가 감소하여 2000년대 초반 0.006ppm을 유지하였고, 최근에 들어 0.005ppm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산화황의 농도는 인구 밀도가 높고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높은 경향이 있는데, 2016년 기준 서울과 부산 지역은 이산화황 농도가 전국 평균 수준인 0.005ppm이었으며, 공장이 밀집한 인천과 울산은 각각 0.006ppm, 0.007ppm으로 평균보다 높았고, 광주와 대구 지역의 이산화황 농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0.003ppm이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1980	2016	1개월

주요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Concentration Level of Nitrogen Dioxide(NO2) in Major Cities

04-2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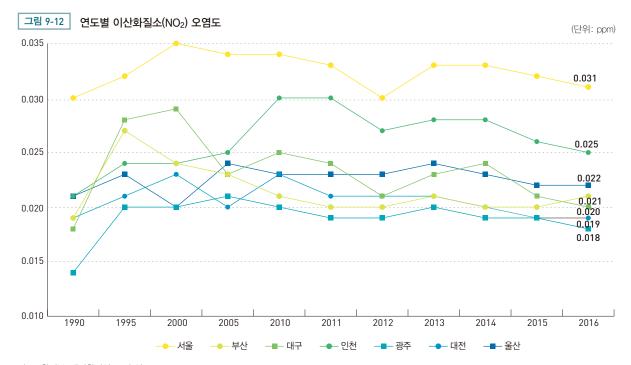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대기 백만 리터에 들어있는 이산화질소의 양이다.

측정 산식

• 대기 백만 리터에 들어있는 이산화질소의 양(ppm, parts per million)

이산화질소(NO₂)는 자동차와 파워플랜트 등의 고온 연소공정과 화학물질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며, 토양 중의 세균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한다. 고농도의 이산화질소에 노출되면 만성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의 발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산화황과 함께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주요원인 물질이며, 토양, 호수, 하천을 산성화하고, 빌딩이나 각종 구조물의 부식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2012)을 연평균 0.03ppm, 24시간 기준 0.06ppm, 1시간 기준으로는 0.1ppm으로 적용하고 있다.

전국의 연간 이산화질소 오염도 추이를 살펴보면 90년대 초반에는 그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한편, 주요 도시별 이산화질소 오염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등락을 반복하였지만, 전 시간에 걸쳐 서울의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오염도가 높은 도시는 인천이었다.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1980	2016	1년

05 "

주요 대도시 소음도

Noise Level in Major Cities

지표 정의

소음도는 소음의 크기를 뜻하며, 「소음·진동 관리법」상 소음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측정 산식

- 소음도는 데시벨(dB)로 측정한다.
- 낮 시간대(06:00~22:00)에는 각 측정점에서 2시간 간격으로 4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 밤 시간대에는 낮 시간대에 측정한 지점에서 2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환경소음은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을 구분하고, 밤, 낮의 환경소음 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전용주거지역 낮 시간대 소음의 기준은 50dB(A)이고, 밤 시간대 소음의 기준은 40dB(A)이다. 일반주거지역의 소음 기준은 전용주거지역 기준보다 조금 높은데, 낮 시간대의 경우 55dB(A), 밤 시간대의 경우 45dB(A)이다. 한편, 도로변에 위치한 상업지역의 낮 시간대소음의 기준은 65dB(A)이고, 밤 시간대 기준은 55dB(A)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주요도시들은 전용주거지역에서 낮과 밤 시간대 모두 소음 기준을 초과 하였고,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낮 시간대에는 인천만 소음 기준을 초과하였고, 밤 시간대에 광주, 울산을 제외하고 소음 기준을 초과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전 지역에 걸쳐 소음 도가 높은 편이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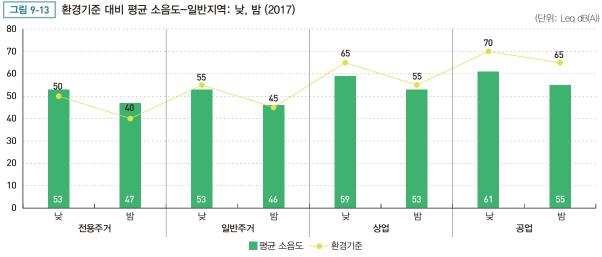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주요도시 환경소음도현황	2000	2017	분기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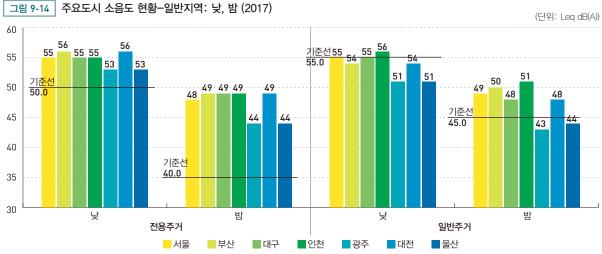
일반전용주거지역의 경우는 모든 주요도시에서 소음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소음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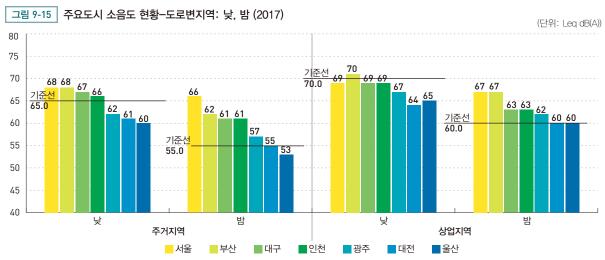
• 환경부,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결과, 2017



자료: 환경부, 2017년도 환경소음측정망운영결과, 2018



자료: 환경부, 2017년도 환경소음측정망운영결과, 2018



자료: 환경부, 2017년도 환경소음측정망운영결과, 2018

06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Recycling rate of municipal waste

지표 정의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총 생활폐기물 중에서 별도로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시설로 반입 처리된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폐기물은 발생량 뿐 아니라 처리과정도 중요하다. 환경정책 차원에서는 재활용률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측정 산식

재활용량 생활폐기물 발생량 ×100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매립, 소각 또는 재활용되어 처리된다. 하지만, 매립지 확보의 문제로 인해 매립에는 한계가 있으며, 소각은 대기오염을 일으킨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차원에서는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2008년 59.8%에서 점차 높아져서 2009년에는 61.1%에 이르렀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량이 감소하고, 소각량은 증가하는 경향 속에서 재활용 비율은 2010년에는 60.5%로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 약 59.1%를 유지하다가 2014년 59.0%로 0.1%p 감소하였다. 2016년에는 쓰레기 매립량 및 소각량이 감소하면서 재활용 비율이 소폭 증가한 60.0%를 보였다. 2016년 시도별 재활용 비율을 살펴보면, 부산이 79.9%로 가장 높고, 세종이 69.7%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경북이 44.1%로 가장 낮았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60%)은 OECD 평균(36%)보다 24%p 높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993	2016	1년

Checkpoint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09년 61.1%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점차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소폭 상승하였다. 전체 처리 방법 중에서 매립 비율은 감소하고, 소각 비율은 증가 후 정체하였다. 2016년 발생한 일평균 생활폐기물 중 60.0%가 재활용되었으며, 14.7%는 매립, 25.3%는 소각 처리되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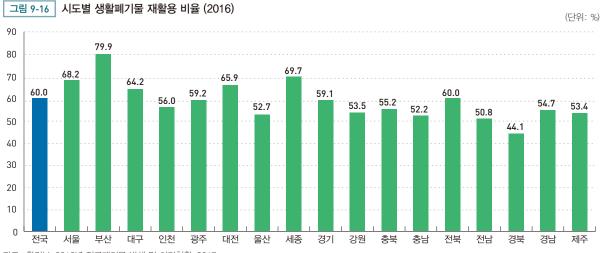
• OECD, "Municipal Waste", OECD Environment Statistics(database), 2016

표 9-9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2008~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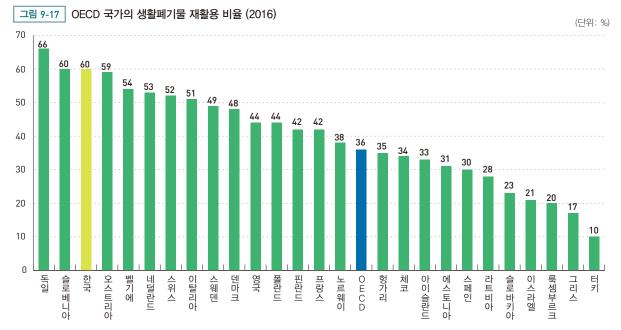
(단위: 톤/일,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52,072	50,906	49,159	48,934	48,990	48,728	49,915	51,247	53,772
매립	10,585 (20.3)	9,471 (18.6)	8,797 (17.9)	8,391 (17.2)	7,778 (15.9)	7,614 (15.6)	7,813 (15.7)	7,719 (15.1)	7,909 (14.7)
소각	10,349 (19.9)	10,309 (20.3)	10,609 (21.6)	11,604 (23.7)	12,261 (25.0)	12,331 (25.3)	12,648 (25.3)	13,176 (25.7)	13,610 (25.3)
재활용	31,138 (59.8)	31,126 (61.1)	29,753 (60.5)	28,939 (59.1)	28,951 (59.1)	28,784 (59.1)	29,454 (59.0)	30,352 (59.2)	32,253 (60.0)

자료: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자료: 환경부, 2016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7



주: 한국은 2016년 자료를 별도로 입력하여 작성함.

자료: OECD, Environment Statistics Database, 2016 (http://stats.oecd.or.kr/에서 2018.3,28.인출)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06-1

Municipal Waste Generation per Capita

지표 정의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의 합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인구로 나눈 값이다.

측정 산식

생활계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인구

페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생활페기물은 사람의 가정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며, 가정생활페기물과 사업장생활페기물로 구분된다. 2016년 총 페기물 발생량은 1일 41만 5천여 톤으로, 전년 대비 약 3%p 늘어났다. 한편, 2016년 생활페기물 1일 발생량은 53,772톤으로 2015년 51,247톤에 비해 약 4.9%p 증가하였다.

2016년 우리나라의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01kg(1인당, 1일)으로 전년도 대비 0.04kg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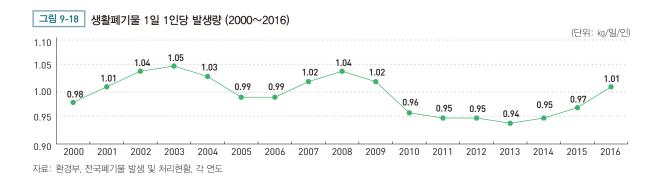
2016년 주요 OECD 국가의 연간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인 523kg(1인당, 연간)에 비해 현저히 적은 370kg(1인당, 연간)이며, 이는 덴마크 배출량인 779kg의 약 47% 수준이다. 경제력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것이 일반적인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력 대비 폐기물 발생량이 낮은 편이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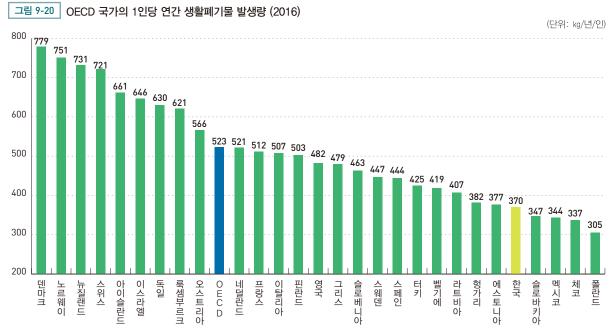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993	2016	1년

참고문헌

• OECD, Municipal Waste(indicator), 2016







주: 한국은 2015년 자료를 입력하여 작성함.

자료: OECD, Environment Statistics Database, 2016 (http://stats.oecd.or.kr/에서 2018.3.28.인출)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s % of GDP

지표 정의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은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환경보호 지출은 환경 보호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지출한 비용이며, 대기오염방지,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토양과 수질오염 방지 및 처리, 소음과 진동 방지, 생태계 보호, 방사선 처리, 연구개발 및 기타 항목을 포함한다.

국민경제 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행위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측정 산식

<u>환경보호 지출액</u> 명목 GDP

환경보호 지출액은 2004년 약 16조 원에서 2014년 약 26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은 2004년 1.84%에서 2009년 2.07%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출수준의 정체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지난 10년 최저치인 1.77%를 환경보호에 지출하였다. 2014년 기준 환경보호 영역별 지출은 폐수(39.9%), 폐기물(22.6%), 대기(17.2%), 생물다양성 (10.4%)이며, 총 지출 대비 4개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이다. 경제주체별 지출 비중은 생산자 69.2%, 소비자 30.8%이며, 소비자 중 정부는 23.8%, 그리고 가계는 7%의 지출비중을 차지한다.



- 주: 1) 환경보호 지출 및 수입(EPER) 통계 기준을 활용함.
 - 2) 환경보호 지출액은 (투자지출 경상지출 부산물 수입)으로 계산함.
 - 3) 2014년 수치는 잠정치

자료: 환경부, 환경보호 지출계정,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주: 1) 환경보호 지출 및 수입(EPER) 통계 기준을 활용하여 작성함.

2) 2014년 수치는 잠정치

자료: 환경부, 환경보호 지출계정, 201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작성년도	최근작성년도	주기
환경부	환경보호 지출계정	1997	2014	1년

Checkpoint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후반 지출액이 정체되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환경예산 비율

Budget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 % of Government Budget

07-1

지표 정의

환경예산 비율은 정부예산 중 환경분야 예산의 비중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u>환경분야 예산</u> 정부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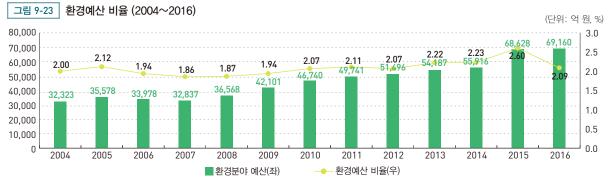
환경예산은 넓은 의미에서는 환경부 소관 예산 이외에 국토해양부의 해양환경개선 관련 예산을 포함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정부조직법 상 환경부 소관 예산을 의미한다. 그 외 소규모로 해양경찰청(이전, 현재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오염관리 비용도 넓은 의미의 환경예산에 포함된다. 정부예산 대비 환경예산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1.94%를 기록한 이후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2015년에는 2.6%로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2.09%로 전년도 대비 약 0.5%p 감소하였다.

표 9-10 환경예산 비율 (2004~2015)

(단위: 억 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정부예산	1,612,627	1,679,332	1,753,882	1,767,561	1,951,002	2,174,723	2,259,682	2,356,000	2,486,125	2,436,433	2,507,885	2,639,243	2,746,699
환경분야 예산	32,323	35,578	33,978	32,837	36,568	42,101	46,740	49,741	51,496	54,187	55,916	68,628	69,160
환경부예산	14,519	28,557	29,992	32,203	35,514	40,282	44,832	47,778	49,897	54,121	57,191	56,976	57,287
환경예산 비율	2.00	2.12	1.94	1.86	1.87	1.94	2.07	2.11	2.07	2.22	2.23	2.60	2.09

자료: 환경부, 환경예산 비율(내부자료), 각 연도



자료: 환경부, 환경예산 비율(내부자료),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환경예산 비율(내부자료)	-	2016	부정기



환경성질환자 수

Number of Patients with Environmental Disease

지표 정의

환경성질환자 수는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수이며, 환경성질환은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 의 3개 질환을 포함한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적 요소에 민감한 아동 및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그 원인으로는 실내·외의 환경요인을 지적할 수있다.

측정 산식

• 합계 = 알레르기비염(J30) + 아토피피부염(L20) + 천식(J45~46) 질환자 수

우리나라는 급성질환이 점차 줄어들면서 만성질환이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고, 특히 만성질환과 환경의 관련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환경유해인 자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을 환경성질환이라고 할 때, 주요 질환 중 어떤 질환을 환경성질환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기준이 없다(박일수 외, 2010).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경성질환자를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 중 1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복질환자를 제외한 환경성질환자 수의 총합은 약 884만 명으로 이중 알레르기성비염이 699만 명으로 가장 많고, 천식이 약 172만 명, 아토피피부염이 약 98만 명 정도이다. 인구 1만 명당 주요 환경질환자 추이를 살펴보면, 알레르기성비염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6년 다시 증가하였다. 한편, 아토피피부염은 2010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천식 환자는 2010년부터 꾸준히 감소하였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 수(내부자료)	1994	2016	1년

Checkpoint

환경성질환자 중 중복질환자를 제외한 순계는 2012년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6년 다시 크게 증가하여 최대치인 약 884만 명을 기록하였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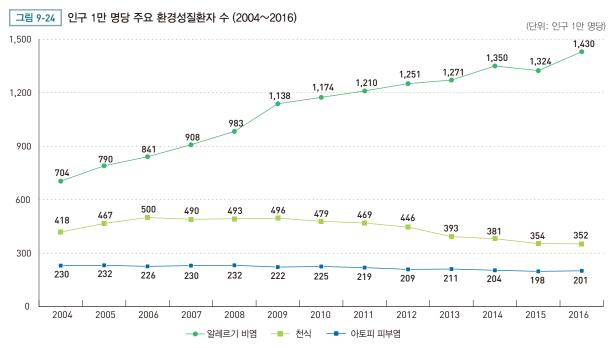
• 건강보험공단, 2007년 환경성질환 진료환자 분석, 2008

표 9-11 항목별 환경성질환자 수 (2005~2016)

(단위: 천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혈 관운동 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3,862,861	4,112,416	4,440,166	4,806,366	5,563,174	5,742,410	5,917,954	6,115,266	6,214,528	6,601,679	6,472,208	6,993,674
아토피피부염 (L20)	1,135,396	1,107,360	1,126,677	1,133,584	1,083,666	1,098,770	1,070,867	1,024,080	1,032,614	999,442	967,609	982,681
천식(J45) 및 천식지속	2,284,543	2,443,554	2,393,792	2,413,273	2,425,731	2,343,103	2,291,011	2,180,509	1,920,808	1,863,705	1,729,298	1,721,931
합계	7,282,800	7,663,330	7,960,635	8,353,223	9,072,571	9,184,283	9,279,832	9,319,855	9,167,950	9,464,826	9,169,115	9,698,286
순계	6,591,148	6,931,068	7,150,993	7,476,163	8,121,165	8,206,215	8,299,039	8,367,053	8,282,046	8,586,250	8,350,022	8,841,743

주: 순계 = 중복질환자를 제외한 환경성질환자 수 총합 자료: 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 수(내부자료), 각 연도



주: 1) 1만 명당 환자 = 환자 수/건강보험 연말 적용인구 \times 10,000

2) 순계 = 중복질환자를 제외한 환경성질환자 수 총합 자료: 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 수(내부자료), 각 연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문화

- 01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02 연간 독서량
- 03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 04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 05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 06 연간 문화예술(창작·발표)활동 참여율
- 07 생활체육 참여율
- 08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 09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 10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 11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 1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 13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 14 GDP 대비 문화예산
- 15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 0 1 7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문화 향유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연간 독서량	연간 독서율
문화 접근성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	
(인프라)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문화 참여	연간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 참여율	
	생활체육 참여율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문화 교육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사회문화예술교육 경험률	
문화 복지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GDP 대비 문화예산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01 H H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Visiting rate of Annual Culture Arts Events

지표 정의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직접 문화예술행사(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를 관람한 응답자의 비율로 정의한다.

최소한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국민의 비율을 통하여 성별, 도시규모별, 소득수준별, 연령별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직접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만 15세 이상 국민의 수 15세 이상 국민의 수

유의사항

통계청 사회조사와 유사한 지표처럼 보이나 질문 방식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다른 지표이다.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지난 1년간 국민들이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한 비율을 파악한 것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문화를 향유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03년 62.4%에서 2016년 79.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에도 1년 동안단 한 번도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지 못한 이들의 비율이 21.7%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의 분야별로 살펴보면, 73.3%가 영화를 관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문화예술분야에 비해 크게 높았다. 다음으로 대중음악/연예는 14.6%, 연극은 13.0%, 미술전시회는 12.8%, 역사·철학강의 및 역사탐방은 11.4%, 뮤지컬은 10.2% 관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제외한 문화예술행사는 10% 이하의 관람률을 보였으며 무용은 1.3%만 관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향유 분야별 편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79.9%로 남자 (78.7%)보다 다소 높았으며,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9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 (96.1%), 30대(90.5%), 40대(86.6%), 50대(76.0%), 60대(57.9%), 70대(41.2%)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이하는 43.9%가 직접 관람을 경험했으며, 중졸(69.5%), 고졸(80.5%), 대졸이상(90.4%)의 순으로 관람률이 높았으며, 가구 월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600만원 이상이 90.9%로 가장 높았으며, 100만원 미만이 31.7%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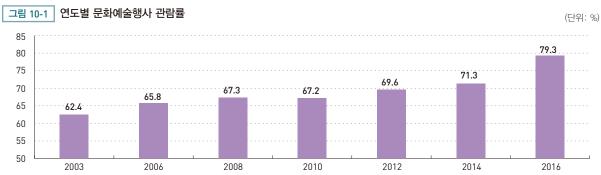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6	2년

Checkpoint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향수실태조사」를 통하여 2년마다 산출되는 지표이다. 최근 10여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문화향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화관람률이 73.3%로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높아 분야별로 문화향유의 편중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관람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 학력, 소득에 있어 문화향유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16}년 조사에는 역사 · 철학강의 및 역사탐방이라는 문항이 추가된 영향으로 관람률이 일부 영향을 받음.



주: 2012년 조사부터 연극과 뮤지컬을 별도로 조사하였으며, 2016년 조사에는 역사·철학강의 및 역사탐방이라는 문항이 추가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표 10-1 연도별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단위: %)

구분	2003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문학행사	4.0	4.4	4.0	3.8	6.1	6.2	5.8
미술전시회	10.4	6.8	8.4	9.5	10.2	10.6	12.8
서양음악	6.3	3.6	4.9	4.4	4.8	4.9	4.5
전통예술	5.2	4.4	4.4	5.7	6.5	5.7	7.6
연극	11.1	11.1 8.1	11.0	11.2	11.8	12.6	13.0
뮤지컬					11.5	11.5	10.2
무용	1.1	1.4	0.7	1.4	2.0	2.4	1.3
영화	53.3	60.3	58.9	60.3	64.4	65.8	73.3
대 중음 악/연예	10.3	7.6	10.0	7.6	13.5	14.4	14.6
역사 · 철학강의 및 역사탐방	-	-	-	-	-	-	11.4

주: 2012년 조사부터 연극과 뮤지컬을 별도로 조사하였으며, 2016년 조사에는 역사ㆍ철학강의 및 역사탐방이라는 문항이 추가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주: 2016년 조사에는 역사·철학강의 및 역사탐방이라는 문항이 추가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2016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01-1

Annual Average the Visiting Number of Culture Arts Events

지표 정의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는 지난 1년 동안 직접 관람한 문화예술행사(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의 평균 횟수로 정의된다.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횟수를 파악하여, 실제 문화향유를 하는 정도를 지역별,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문화예술 향유 빈도 격차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

측정 산식

지난 1년 동안 직접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것으로 추정된 전체 횟수 15세 이상 국민의 수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는 2003년 4.5회에서 2006년 4.7회, 2008년 4.9회, 2010년 4.2회, 2012년 4.9회, 2014년 5.0회, 2016년 5.5회*로 나타난다. 2010년에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빈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행사의 분야별 관람 횟수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영화 관람 횟수가 3.70회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분야별 편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화를 제외한 다른 문화예술분야 행사의 관람 횟수는 대중음악/연예 0.53회, 미술전시 0.29회, 역사·철학강의 및 역사탐방 0.25회, 연극 0.23회, 뮤지컬 0.17회, 전통예술 0.14회, 문학행사 0.12회, 서양음악 0.08회, 무용 0.04회 등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를 성별, 연령, 도시규모,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5.5회와 5.6회로 거의 같으며, 연령은 20대가 9.2회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10대가 7.6회이며, 30대(6.7회), 40대(5.6회), 50대(4.5회), 60대(2.8회) 70대 이상(1.6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는 중소도시(6.0회), 대도시(5.6회)에 비해 읍면지역 거주자는 4.4회로 낮게 나타났다. 학력은 초졸인 경우 2.5회로 가장 낮았고, 중졸은 4.0회, 고졸은 5.4회이며, 대졸 이상은 6.9회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계층의 경우 연평균 관람 횟수가 1.6회에 불과한 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대체적으로 관람 횟수는 높아져 600만 원 이상인 고소득계층의 관람 횟수는 7.0회 이상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6	2년

^{* 2016}년 조사에는 역사·철학강의 및 역사탐방이라는 문항이 추가된 영향으로 관람횟수가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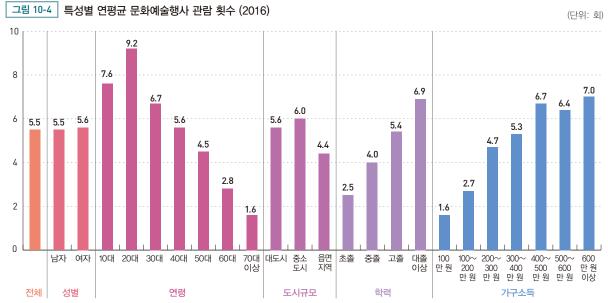
주: 2012년 조사부터 연극과 뮤지컬을 별도로 조사하였으며, 2016년 조사에는 역사ㆍ철학강의 및 역사탐방이라는 문항이 추가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표 10-2 연도별 분야별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단위: %)

구분	2003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문학행사	0.10	0.10	0.10	0.10	0.10	0.10	0.12
미술전시회	0.20	0.20	0.20	0.20	0.20	0.20	0.29
서양음악	0.10	0.10	0.10	0.10	0.10	0.10	0.08
전통예술	0.10	0.10	0.10	0.10	0.10	0.10	0.14
연극	0.20	0.20	0.20	0.20	0.20	0.20	0.23
뮤지컬	0.20	0.20	0.20	0.20	0.20	0.20	0.17
무용	0.01	0.01	0.03	0.04	0.04	0.05	0.04
영화	3.54	3.86	4.00	3.30	3.60	3.60	3.70
대중음악/연예	0.20	0.20	0.10	0.10	0.30	0.50	0.53
역사 · 철학강의 및 역사탐방	-	-	-	-	-	-	0.25

주: 2012년 조사부터 연극과 뮤지컬을 별도로 조사하였으며, 2016년 조사에는 역사·철학강의 및 역사탐방이라는 문항이 추가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02 "

연간 독서량

Annual Quantity of Reading

지표 정의

연간 독서량*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읽은 종이책(일반도서 기준)의 평균 독서 권수로 정의한다.

연간 독서량을 통해 성인과 학생(초 · 중 · 고등학생)의 독서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종이책과 전자책의 독서의 패턴의 변화추이를 알 수 있다.

측정 산식

• 성인독서량 = 지난 1년 동안 성인 전체가 읽은 종이책 독서 권수의 합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전체의 수

• 학생독서량 = 지난 1년 동안 학생 전체가 읽은 종이책 독서 권수의 합 국내 거주하는 학생 전체의 수

유의사항

성인과 학생(초 · 중 ·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집계하고, 초등학생은 4학년 이상만을 대상으로 한다.

연간 독서량은 국민들이 얼마나 독서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독서량의 추리를 살펴보면 성인의 연간 종이책 독서량은 1995년부터 2007년 12.1권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9.1권까지 줄었다. 학생의 연간 종이책 독서량은 2004년이 11.6권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이후 2011년까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24.3권 2015년 29.8권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5년에 성인 독서량은 일반도서(종이책)와 전자책을 합하여 9.9권으로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13.5권, 12.5권으로 높았고, 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12.9권으로 가장 높고, 중졸 이하는 4.4권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초·중·고등학생의 평균 독서량은 일반도서와 전자책을 합하여 37.2권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78.4권)이 독서량이 가장 많고 중학생(25.2권), 고등학생(12.8권)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이 101.1권으로 가장 많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낮아져 고등학교 3학년은 12.0권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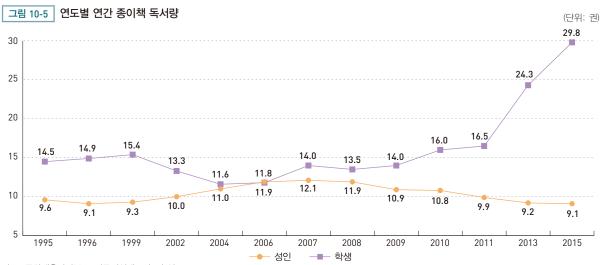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1994	2015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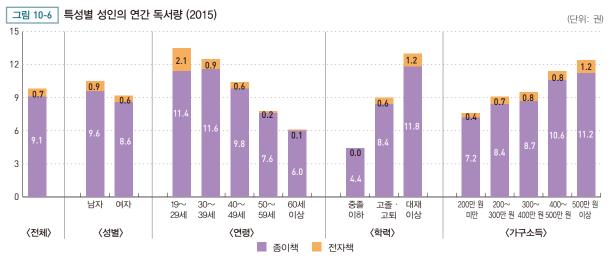
Checkpoint

2015년도 성인(종이책)독서량은 9.1권으로 2013년도보다 0.1권 적게 읽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생은 29.8권으로 2013년도보다 5.5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독서량이 많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독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조사부터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조사부터 잡지와 만화책을 제외하여 집계함. 학생의 경우 교과서와 참고서를 제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각 연도



주: 소수점 2자리의 값에 의해 종이책과 전자책 독서량의 합이 전체의 값과 차이가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15



주: 학교급별 연간 독서랑은 초등학생 78.4권, 중학생 25.2권, 고등학생 12.8권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15

연간 독서율

02-1

Annual rate of reading

지표 정의

연간 독서율 * 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종이책(일반도서 기준)을 한 권 이상 읽은 성인 및 학생 ($\dot{x} \cdot \dot{g} \cdot \dot{z} \cdot \dot{z} \cdot \dot{z}$ (화학생)의 비율로 정의한다.

연간 독서율은 국민들이 독서를 접하는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지난 1년 동안 일반도서 기준 한 권 이상 읽은 학생 전체의 수 학생독서율 = 국내 거주하는 학생 전체의 수

연간독서율은 국민들이 독서를 접하는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2010년부터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중에서 종이책 독서율을 살펴보면, 성인의 경우 1995년 79.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65.3%로 2013년에 비해 6.1%p 감소하였다.

연간 초·중·고등학생의 종이책 독서율 역시 1995년 97.1%에서 2011년에 83.8%로 감소하였다. 이후 2013년 초등학생의 독서량 증가로 96.0%로 증가하였고 2015년은 94.9%로 전년도에 비해 1.1%p 감소하였다.

2015년 기준 성인독서율 역시 독서량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독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독서율은 학년이 낮을수록 독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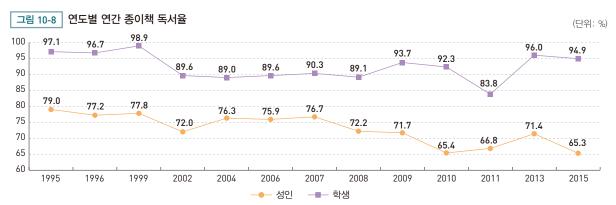
OECD 가입국들과의 연간 독서율을 비교하여보면 2013년도 한국인의 연간 독서율(만 15세이상 기준으로 환산)은 74.4%이고 OECD 평균 독서율(만 15세이상 기준)은 76.5%로 한국이 2.1%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된 21개국 중 14위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독서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의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32%로 EU의 31%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조사된 EU의 20개국 중 13개국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낮은 공공도서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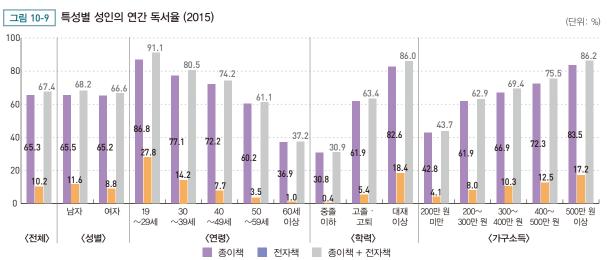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1994	2015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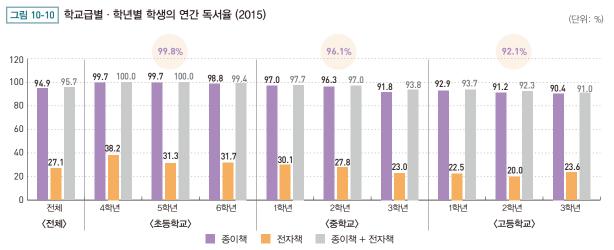
^{* 2010}년 조사부터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조사부터 잡지와 만화책을 제외하여 집계함. 학생의 경우 교과서와 참고서를 제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각 연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15



주: 학교급별 연간 독서율(종이책+전자책)은 초등학생 99.8%, 중학생 96.1%, 고등학생 92.1%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15

표 10-3 OECD 국가의 연평균 독서율 (2013)

(단위: %)

국가	독서율	국가	독서율	국가	독서율	국가	독서율
스웨덴	85.7	미국	81.1	OECD평균	76.5	슬로바키아	69.6
에스토니아	84.9	독일	81.1	프랑스	74.7	일본	67
덴마크	84.9	체코	79.2	한국	74.4	벨기에	65.5
핀란드	83.4	오스트리아	78.7	네덜란드	73.6	스페인	65.2
노르웨이	83.2	아일랜드	78.1	폴란드	73.6	이탈리아	63.6
영국	81.1	캐나다	77.0				

주:OECD 국가의 연평균 독서율은: 해당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1년에 1권 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의 비율(OECD 조사에서는 전자책 및 만화를 포함.

표 10-4 EU 국가의 공공도서관 이용률 (2013)

(단위: %)

국가	공공도서관 이용률	국가	공공도서관 이 용률	국가	공공도서관 이 용 률	국가	공공 도서관 이용률
스웨덴	74	네덜란드	45	스페인	33	체코	28
핀란드	66	아일랜드	45	한국	32	슬로바키아	26
덴마크	63	라트비아	39	EU 평균	31	폴란드	26
슬로베니아	48	벨기에	37	크로아티아	31	이탈리아	24
영국	47	리투아니아	35	말타	29	독일	23
에스토니아	47	프랑스	33				

[~] 주: 1)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해당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1년에 1회 이상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국민독서실태조사,2015 재인용 (원자료: OECD, PIAAC(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국제성인역량조사), 2013)

²⁾ 한국 자료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만 15~17세(고등학생)가 차지하는 인구구성비 6.4%를 감안하여, 〈2013년 국민 독서실태조사〉의 성인(만 18세 이상) 조사 결과에 고등학생 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국민독서실태조사, 2015, 재인용 (원자료: EU. CULTURAL ACCESS AND PARTICIPATION., European Commission, 2013)

03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per Million People

지표 정의

주요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인구 100만 명 대비 문화시설 수로 정의한다.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이 해당되며, 인구 대비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수를 살펴 봄으로써 농어촌 산간지역 등 소외지역 문화 인프라 제고와 같은 사회보장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측정 산식

해당 연도의 전체 문화시설 개수의 합계 해당 연도의 주민등록인구 수

으이시히

같은 기준으로 지표를 산정하기 위해, 주민등록인구를 이용하여 재산출하여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과 100만 명 당문화시설의 수는 다소 차이가 있음 * .

2016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의 수는 2008년 35.1개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49.4개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3개 증가한 수치이다. 사립 및 대학의 박물관·미술관을 제외한 공공 문화기반시설은 2008년 27.1개에서 2016년 37.1개로 역시 증가하였다.

2016년 지역별 문화시설 수를 살펴보면 제주가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가 194.8개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27.7개로 가장 낮았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의 대도시권역은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도시권역은 도지역과 비교하여 문화시설의 수는 적고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0만 명당 유형별 문화시설의 수는 공공도서관이 2008년 13.0개에서 2016년 19.6개, 국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2008년 6.3개에서 2016년 8.6개, 문예회관의 경우 2008년은 3.4개에서 2016년 4.6개이며, 지방문화원은 2008년 4.5개에서 2015년 4.4개로, 지방문화원을 제외하고 그 수가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도서시설 〉 전시시설 〉 생활문화시설(지역문화복지시설) 〉 공연시설의 순으로 조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수에다가 대학 및 사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수를 더하면 2008년 14.3개에서 2016년 20.9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별 문화시설 중 그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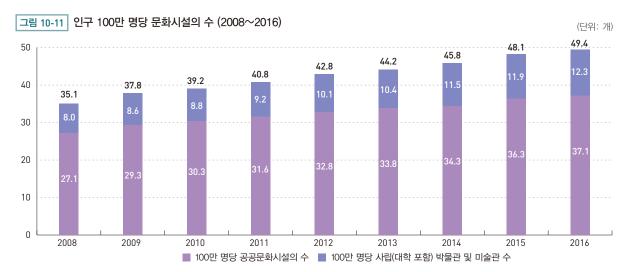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03	2016	1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2008	2016	1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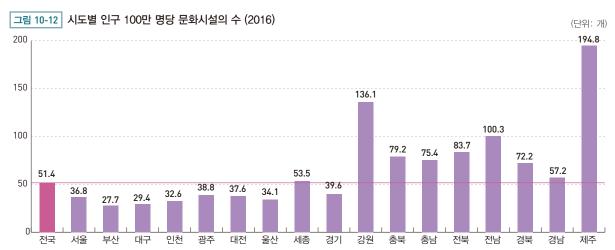
Checkpoint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의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다.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는 49.4개로 전년대비 1.3개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제주가 194.8개로 가장 높으며, 부산은 27.7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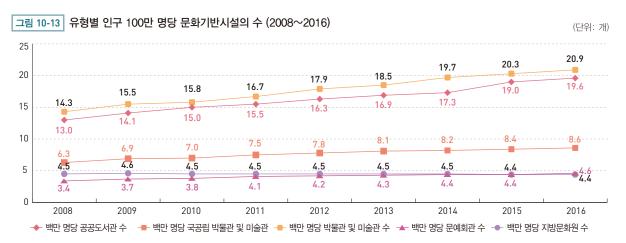
^{*}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만을 대상으로 함. 2013년부터 문화의 집이 추가되었으나 시계열을 위하여 통계산출에서는 제외함.



주: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만을 대상으로 함. 2013년부터 문화의 집이 추가되었으나 시계열을 위하여 통계산출에서는 제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각 연도



주: 시도별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는 2016년 해당 연도의 값이기 때문에 문화의집을 포함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17



주: 박물관 및 미술관은 전체와 국공립만의 통계를 별도로 산출하여 제시하였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각 연도

04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Number of Public Sports Facilities per Million People

지표 정의

주요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인구 100만 명 대비 공공체육시설의 수로 정의한다.

인구대비 공공체육시설의 수를 살펴봄으로써 국민들의 체육 및 여가 시설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측정 산식

해당 연도의 공공 체육시설 수 해당 연도의 주민등록인구 수

공공체육시설은 건전한 신체·정신 함양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운동경기·야외운동 등의 신체활동에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도 계속 증가하여 2008년 249.1개에서 2016년 470.1개가 되었다. 이를 공공체육시설을 1인당 면적으로 계산하면 2008년 2.50㎡에서 2016년 4.0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지역별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를 살펴보면 강원도가 약 1,392개로 가장 많았고, 울산시가 237개로 가장 적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광주 를 제외한 대도시권역이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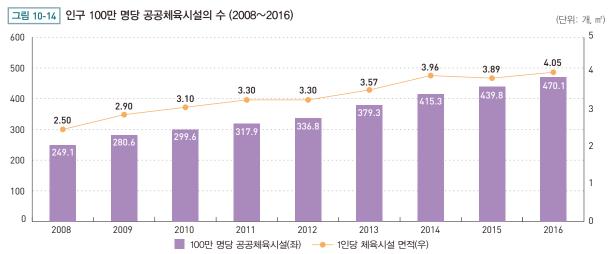
2016년 유형별 인구 100만 명당 체육시설의 수는 간이운동장이 355.8개로 가장 많았고, 기타 (63.6개), 체육관(18.5개), 축구장(18.0개), 테니스장(14.3개)의 순으로 나타난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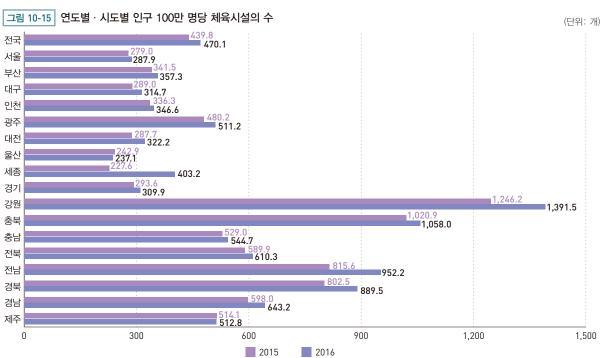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2004	2016	1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2008	2016	1개월

Checkpoint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는 1년 주기로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자료에서 제시하는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2016년도에 470.1개로 2015년 439.8개 보다 30.3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각 연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각 연도

표 10-5 유형별 인구 100만 명당 체육시설의 수 (2016)

(단위: 개)

구분	축구장	체육관	간이운동장	테니스장	기타
인구 100만 명당 공공 체육시설 수	18.0	18.5	355.8	14.3	63.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2017

05 #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Annual Utilization Rate on Art Space

지표 정의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은 문화예술공간(도서관, 박물관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박물관, 도서관,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국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지난 1년간 학교 교육 이외에 문화예술공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만 15세 이상 국민 수 15세 이상의 국민의 수

유의사항

15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박물관, 도서관,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파악이 가능한 예술공간 위주로 조사하여 산출되었다.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은 「문화향수실태조사」를 통해 도서관, 박물관,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을 조사한 지표이다. 2006년 41.9%의 이용률을 보였으며 2010년 52.2%까지 증가하였다가 2012년 감소하였다가 2014년 52.0%, 2016년 64.8%로 증가하였다. 문화예술공간 이용 횟수는 2006년 3.5회, 2008년 4.3회, 2010년 6.1회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 4.3회, 2014년 4.0회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 6.2회로 증가하였다.

2016년 기준 인구특성별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여자가 67.2%로 남자(62.3%)보다 이용률이 높았으며,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 이상이 67.4%이고 중졸이 66.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40대 이상에서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가 68.3%로 대도시(63.1%)와 읍면지역(61.6%)보다 이용률이 높았다. 월평균소득별로 살펴보면 400만 원 미만 가구는 문화예술공간 평균이용률을 하회했고, 400만 원 이상 가구는 평균이용률을 상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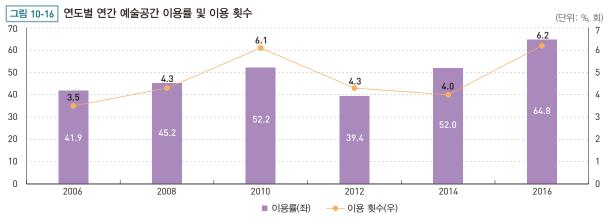
연도별 문화예술공간 이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가 2014년(17.0%)에 비해 2016년 (31.8%)에 14.8%p 증가하였고, 문학관과 생활문화센터가 2016년 처음 조사되어 추가되었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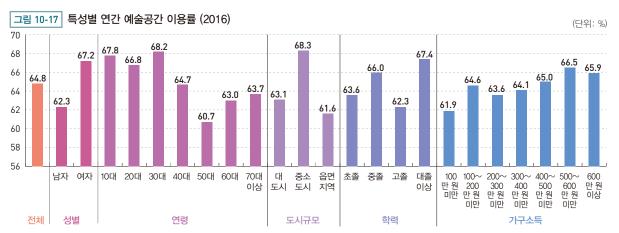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6	2년

Checkpoint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은 2년 주기로 생산되는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생산되는 지표이다. 2014년 대비 12.8%p 증가하여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며, 이용횟수도 4.0회에서 6.2회로 2.2회 증가하였다. 주민자치센터가 2014년 17.0%에서 2016년 31.8%로 14.8%p로 증가하였다.



주: 문화의 집은 2010년 조사부터, 주민자치단체와 민간공연장은 2012년 조사부터 추가되었으며, 문학관광 생활문화센터는 2016년도에 추가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2016

표 10-6 연도별 문화예술공간별 이용률 (단위: %									
문화시설	2003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전체	38.9	41.9	45.2	52.2	39.4	52.0	64.8		
시군구민회관	9.6	11.2	12.0	11.5	8.0	8.8	9.8		
문화예술회관	11.6	11.3	11.5	11.5	6.6	6.6	5.5		
복지회관	5.5	7.5	7.7	11.4	4.6	4.5	7.0		
청소년회관	4.4	3.6	4.4	4.2	5.1	2.2	3.5		
문화원	2.4	2.1	2.1	2.1	2.7	1.2	2.4		
도서관	16.0	12.8	16.2	20.5	12.8	10.4	16.1		
박물관	11.5	12.3	12.1	14.8	9.3	16.6	10.8		
문화의집	-	-	-	1.2	1.0	0.4	0.5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1.8	1.4	1.7	1.7	1.4	1.4	1.5		
사설문화센터	4.6	4.6	5.5	6.0	5.3	7.7	6.1		
주민자치센터	-	-	-	-	9.2	17.0	31.8		
민간공연장	-	-	-	-	8.8	16.3	19.3		
문학관	-	-	-	-	-	-	0.5		
생활문화센터	-	-	-	-	-	-	2.0		

주: 문화의 집은 2010년 조사부터, 주민자치센터와 민간공연장은 2012년 조사부터 추가되었으며, 문학관과 생활문화센터는 2016년도에 추가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06

연간 문화예술(창작·발표)활동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of Annual Cultural Arts Activities

지표 정의

연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은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관련 창작·발표활동 등에 직접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의 비율로 정의한다.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능동적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의 성격을 가지며 문화예술에 대한 직접 창작 참여기회의 제 공 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지난 1년 동안 한번이라도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국민의 수 15세 이상의 국민의 수

유의사항

15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2016년 예술활동 참여를 1회 이상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를 제외한 단순 방송출연행위는 제외하였다.

연간 문화예술(창작·발표)활동 참여율은 2008년 2.4%에서 2016년 7.6%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6년은 2014년 4.7%에서 2.9%p 증가하였다.

장르별로도 대체적으로 2016년도에 대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연극과 뮤지컬은 2014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무용은 2014년 대비 증가했으나, 2012년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서양음악과 전통예술이 상대적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참여율이 높은 장르는 미술로 2.6%이며, 문학과 대중음악이 1.4%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은 거의 모든 장르에서 10대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은 강원/제주권에서 높은 참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력, 소득 등에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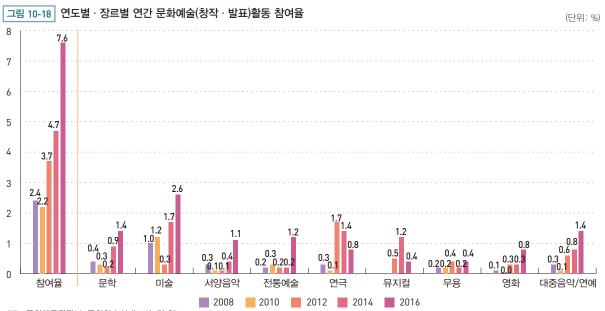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6	2년

Checkpoint

연간 문화예술(창작·발표)활동 참여율은 2008년 2.4%에서 2016년 7.6%로 나타났으며, 2014년 대비 2016년에 2.9%p 증가하였다.

장르별로는 미술이 2.6%로 가장 참여율이 높았으며, 서양음악과 전통예술이 상대적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술할동 참여율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 10-7	특성별 연간 문화예술(창작	· 박표)활동 찬여육 (2016)
- 10 /	ㅋㅇㄹ ㄷㄷ ㄸ쥐에ㄹ(ㅇㄱ	24/20 012 (2010)

(단위: %)

전체] -10 =	E(O E	_,_0	12 (2010)						(271.70)
성별 임성 1.5 2.4 1.1 1.0 0.8 0.5 0.1 1.0 1.5 이성 1.3 2.8 1.0 1.5 0.8 0.4 0.7 0.7 1.3 1.3 15~19세 6.3 5.2 4.1 0.8 0.7 1.4 0.7 0.2 2.0 2.9 2.9 30대 1.0 2.4 1.6 1.0 1.5 0.8 0.4 0.7 0.4 1.2 1.2 1.2 1.2 1.2 1.4 1.1 2.8 0.6 1.5 0.3 0.2 0.4 0.3 0.7 1.1 2.8 0.6 1.5 0.3 0.2 0.4 0.3 0.7 1.1 2.8 0.6 1.5 0.3 0.2 0.4 0.3 0.7 1.1 2.8 0.6 1.5 0.3 0.2 0.4 0.3 0.7 1.1 2.8 0.6 1.5 0.3 0.2 0.4 0.3 0.7 0.4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구분	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응혈 여성 1.3 2.8 1.0 1.5 0.8 0.4 0.7 0.7 1.3 1.3 15~19세 6.3 5.2 4.1 0.8 1.8 0.8 0.7 1.3 4.5 20대 1.0 3.0 0.8 0.7 1.4 0.7 0.2 2.0 2.9 30대 1.0 2.4 1.6 1.0 0.9 0.5 0.4 0.3 0.9 1.1 2 1.2 1.2 1.2 1.5 50대 1.1 2.8 0.6 1.5 0.3 0.2 0.4 0.3 0.9 1.1 0.5 70세 이상 0.5 1.0 0.1 1.9 0.1 - 0.1 0.1 0.1 0.2 5 3.1 1.8 2.6 0.9 0.0 0.5 0.4 0.3 0.7 1.1 0.2 초출 이하 0.8 0.8 0.5 0.8 0.1 - 0.2 - 1.1 0.2 초출 이하 0.8 0.8 0.5 0.8 0.1 - 0.2 - 1.1 0.2 5 3.1 1.8 2.6 0.9 0.0 0.5 0.4 0.7 1.5 0.7 1.5 0.7 0.4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전체	1.4	2.6	1.1	1.2	0.8	0.4	0.4	0.8	1.4
연형 1.3 2.8 1.0 1.5 0.8 0.4 0.7 0.7 1.3 4.5 15~19세 6.3 5.2 4.1 0.8 1.8 0.8 0.7 1.3 4.5 20대 1.0 3.0 0.8 0.7 1.4 0.7 0.2 2.0 2.9 30대 1.0 2.4 1.6 1.0 1.5 0.7 0.4 1.2 1.2 1.2 40대 1.1 2.8 0.6 1.5 0.3 0.2 0.4 0.3 0.9 1.1 50대 1.1 2.8 0.6 1.5 0.3 0.2 0.4 0.3 0.7 1.1 0.5 70대 1.1 2.8 0.6 1.5 0.3 0.2 0.4 0.3 0.7 60대 1.3 1.7 0.5 2.3 0.4 0.2 0.8 0.1 0.5 70세 0년 0.5 1.0 0.1 1.9 0.1 - 0.1 0.1 0.1 0.2 조출 이하 0.8 0.8 0.5 0.8 0.1 - 0.2 - 1.1 5조출 1.6 2.6 0.9 1.2 0.9 0.5 0.4 0.7 1.5 0.8 1.5 고출 1.6 2.6 0.9 1.2 0.9 0.5 0.4 0.7 1.5 대출 이상 1.0 2.9 1.2 1.0 0.9 0.6 0.4 1.2 1.4 100만 월 미만 0.1 1.3 0.2 1.1 0.1 - 0.1 0.2 0.2 0.6 100~20만 원 0.5 1.5 0.2 2.1 0.2 0.1 0.2 0.2 0.6 10.0 1.4 100~20만 원 0.9 2.3 0.9 1.1 0.1 0.9 0.8 0.6 1.0 1.4 1.4 100만 원 이상 1.5 2.8 1.7 1.2 1.0 0.4 0.4 0.4 0.6 1.0 1.8 500~60만 원 1.5 2.8 1.7 1.2 1.0 0.4 0.4 0.4 0.6 1.0 1.8 500~60만 원 1.5 2.8 1.7 1.2 1.0 0.9 0.4 0.3 0.7 1.6 60만 원 이상 1.5 2.8 1.7 1.2 1.0 0.9 0.4 0.3 0.7 0.9 1.1 500~60만 원 1.5 2.8 1.7 1.2 1.0 0.9 0.4 0.3 0.7 0.9 1.1 600만 원 이상 1.5 2.8 1.7 1.2 1.0 0.9 0.4 0.3 0.7 0.9 1.1 600만 원 이상 1.5 2.8 1.7 1.2 1.0 0.9 0.4 0.3 0.7 0.9 1.1 600만 원 이상 1.5 2.8 1.7 1.2 1.0 0.7 0.6 1.2 1.4 600만 원 이상 1.5 2.8 1.7 1.2 1.0 0.7 0.6 1.2 1.4 600만 원 이상 1.5 2.8 1.7 1.2 1.0 0.7 0.6 1.2 1.4 600만 원 이상 1.5 2.8 1.7 1.2 1.0 0.9 0.4 0.3 0.7 0.9 1.1 600만 원 이상 1.5 2.8 1.7 1.2 1.0 0.7 0.6 1.2 1.4 600만 원 이상 1.5 2.8 1.7 1.2 1.0 0.7 0.6 1.2 1.4 600만 원 이상 1.5 2.8 1.7 1.2 1.0 0.7 0.6 1.2 1.4 600만 원 이상 1.5 2.6 1.8 1.9 0.2 0.2 0.3 1.6 1.3 3.8 58/MS권 1.5 2.6 1.8 1.9 0.2 0.2 0.3 1.6 1.3 3.8 58/MS권 1.5 2.6 1.8 1.9 0.2 0.2 0.3 1.6 1.3 3.8 58/MS권 1.1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ИН	남성	1.5	2.4	1.1	1.0	0.8	0.5	0.1	1.0	1.5
면령 1.0 3.0 0.8 0.7 1.4 0.7 0.2 2.0 2.9 30대 1.0 2.4 1.6 1.0 1.5 0.7 0.4 1.2 1.2 1.2 1.2 1.0 1.1 2.8 1.1 2.8 1.0 0.9 0.5 0.4 0.3 0.9 1.1 50대 1.1 2.8 0.6 1.5 0.3 0.2 0.4 0.3 0.7 0.5 0.4 0.3 0.7 60대 1.3 1.7 0.5 2.3 0.4 0.2 0.8 0.1 0.5 70세 이상 0.5 1.0 0.1 1.9 0.1 - 0.1 0.1 0.2 초출 이하 0.8 0.8 0.5 0.8 0.1 - 0.2 - 1.1 0.2 초출 이하 0.8 0.8 0.5 0.8 0.1 - 0.2 - 1.1 0.2 1.5 0.9 0.5 0.4 0.7 1.5 0.8 1.5 0.9 0.5 0.4 0.7 1.5 0.8 1.5 0.9 0.5 0.4 0.7 1.5 0.8 1.5 0.9 0.0 0.5 0.8 1.5 0.8 1.5 0.9 0.5 0.4 0.7 1.5 0.8 1.5 0.9 0.5 0.4 0.7 1.5 0.8 1.5 0.9 0.5 0.4 0.7 1.5 0.2 0.1 0.2 0.2 0.6 0.4 0.7 1.5 0.2 0.1 0.2 0.2 0.6 0.4 0.7 1.5 0.2 0.1 0.2 0.2 0.6 0.4 0.7 1.5 0.2 0.1 0.2 0.2 0.6 0.4 0.7 1.5 0.2 0.1 0.2 0.2 0.6 0.4 0.7 1.5 0.2 0.1 0.2 0.2 0.6 0.4 0.7 1.5 0.2 0.1 0.2 0.2 0.6 0.4 0.7 1.5 0.2 0.2 0.1 0.2 0.2 0.6 0.4 0.7 1.6 0.2 0.2 0.6 0.4 0.7 1.5 0.2 0.2 0.1 0.2 0.2 0.6 0.4 0.7 1.6 0.2 0.2 0.5 0.6 0.4 0.4 0.2 0.2 0.6 0.4 0.7 0.5 0.5 0.8 0.5 0.8 0.5 0.8 0.5 0.5 0.8 0.5 0.8 0.5 0.5 0.8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성필	여성	1.3	2.8	1.0	1.5	0.8	0.4	0.7	0.7	1.3
연령 40대 1.0 2.4 1.6 1.0 1.5 0.7 0.4 1.2 1.2 40대 1.2 2.8 1.0 0.9 0.5 0.4 0.3 0.9 1.1 50대 1.1 2.8 0.6 1.5 0.3 0.2 0.4 0.3 0.7 60대 1.3 1.7 0.5 2.3 0.4 0.2 0.8 0.1 0.5 70세이상 0.5 1.0 0.1 1.9 0.1 - 0.1 0.1 0.2 초종 이하 0.8 0.8 0.5 0.8 0.1 - 0.2 - 1.1 중종 2.5 3.1 1.8 2.6 0.9 0.0 0.5 0.4 0.7 1.5 대출 이상 1.0 2.9 1.2 1.0 0.9 0.5 0.4 0.7 1.5 100만원미만 0.1 1.3 0.2 1.1 0.1 - 0.1 0.2 1.4 100만원미만 0.1 1.3 0.2 1.1 0.1 - 0.1 0.2 0.2 0.6 200~300만원 0.5 1.5 0.2 2.1 0.2 0.1 0.2 0.2 0.2 0.6 200~300만원 0.9 2.3 0.9 1.1 0.9 0.4 0.3 0.7 1.6 400∼500만원 1.5 2.8 1.7 1.2 1.0 0.9 0.4 0.3 0.7 1.6 500∼60만원 1.5 2.8 1.7 1.2 1.0 0.9 0.4 0.3 0.7 1.6 60만원미상 1.5 2.8 1.7 1.2 1.0 0.9 0.4 0.3 0.7 0.9 3원/제주권 5.4 8.9 3.0 5.3 2.6 2.5 2.3 2.3 3.8 충청/세종권 1.5 2.6 1.8 1.9 0.2 0.2 0.1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15~19세	6.3	5.2	4.1	0.8	1.8	0.8	0.7	1.3	4.5
연령 40대 1.2 2.8 1.0 0.9 0.5 0.4 0.3 0.9 1.1 50대 1.1 2.8 0.6 1.5 0.3 0.2 0.4 0.3 0.7 60대 1.1 2.8 0.6 1.5 0.3 0.2 0.4 0.3 0.7 60대 1.3 1.7 0.5 2.3 0.4 0.2 0.8 0.1 0.5 70세 이상 0.5 1.0 0.1 1.9 0.1 - 0.1 0.1 0.1 0.2 초출 이하 0.8 0.8 0.5 0.8 0.1 - 0.2 - 1.1 조출 이하 0.8 0.8 0.5 0.8 0.1 - 0.2 - 1.1 조출 이하 0.8 1.5 0.8 0.1 - 0.2 - 1.1 1.5 전출 0.5 0.8 0.5 0.8 0.1 - 0.2 - 1.1 1.5 0.5 0.5 0.8 0.5 0.8 0.1 - 0.2 - 1.1 1.5 0.5 0.5 0.8 0.5 0.8 0.5 0.8 0.5 0.8 0.5 0.8 0.5 0.8 0.5 0.8 0.5 0.8 0.5 0.8 0.5 0.8 0.5 0.8 0.5 0.8 0.5 0.8 0.5 0.8 0.5 0.8 0.5 0.8 0.5 0.8 0.5 0.8 0.5 0.8 0.5 0.8 0.5 0.8 0.5 0.8 0.5 0.5 0.8 0.5 0.8 0.5 0.5 0.8 0.5 0.5 0.8 0.5 0.5 0.8 0.5 0.5 0.5 0.5 0.8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20대	1.0	3.0	0.8	0.7	1.4	0.7	0.2	2.0	2.9
50대 1.1 2.8 0.6 1.5 0.3 0.2 0.4 0.3 0.7 60대 1.3 1.7 0.5 2.3 0.4 0.2 0.8 0.1 0.5 70세 이상 0.5 1.0 0.1 1.9 0.1 - 0.1 0.1 0.2 초출 이하 0.8 0.8 0.5 0.8 0.1 - 0.2 - 1.1 중출 2.5 3.1 1.8 2.6 0.9 0.0 0.5 0.8 1.5 고출 1.6 2.6 0.9 1.2 0.9 0.5 0.4 0.7 1.5 대출 이상 1.0 2.9 1.2 1.0 0.9 0.6 0.4 1.2 1.4 100만 원 미만 0.1 1.3 0.2 1.1 0.1 - - 0.1 0.2 100~200만 원 0.5 1.5 0.2 2.1 0.2 0.1 0.2 0.2 0.6 200~300만 원 2.0 2.4 1.2 1.9 0.9 0.8 0.6 1.0 1.4 300~400만 원 0.9 2.3 0.9 1.1 0.9 0.4 0.3 0.7 1.6 400~500만 원 2.0 3.1 1.4 1.0 0.4 0.4 0.6 1.0 1.8 500~600만 원 1.5 2.8 1.7 1.2 1.0 0.7 0.6 1.2 1.4 600만 원 이상 1.5 3.4 0.9 1.1 1.5 0.2 - 0.9 1.1 수도권 1.3 2.3 1.0 1.0 0.9 0.4 0.3 0.7 0.9 강원/제주권 5.4 8.9 3.0 5.3 2.6 2.5 2.3 2.3 3.8 충청/세종권 1.5 2.6 1.8 1.9 0.2 0.2 0.3 1.6 1.3 호남권 0.6 1.5 0.8 0.8 0.3 0.2 0.1 0.4 0.4 대경권 0.1 0.4 0.2 0.3 0.4 0.1 - 0.2 0.4 동남권 2.0 3.9 1.1 1.6 0.9 0.3 0.6 0.9 3.6 대도시 1.1 1.7 0.6 0.8 0.7 0.4 0.1 0.4 0.1 지역자 중소도시 1.7 3.4 1.5 1.5 0.8 0.4 0.8 1.3 1.6 1.5 1.5 0.8 0.8 0.7 0.4 0.1 0.4 0.4 1.0 5.0 5.0 5.0 5.0 5.0 5.0 5.0 5.0 1.0 5.0 5.0 5.0 5.0 5.0 5.0 5.0 5.0 1.0 5.0 5.0 5.0 5.0 5.0 5.0 5.0 5.0 1.1 5.0 5.0 5.0 5.0 5.0 5.0 5.0 5.0 1.1 5.0 5.0 5.0 5.0 5.0 5.0 5.0 5.0 1.1 5.0 5.0 5.0 5.0 5.0 5.0 5.0 5.0 5.0 1.1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		30대	1.0	2.4	1.6	1.0	1.5	0.7	0.4	1.2	1.2
응어내 1.3 1.7 0.5 2.3 0.4 0.2 0.8 0.1 0.5 70세 이상 0.5 1.0 0.1 1.9 0.1 - 0.1 0.1 0.1 0.2 초졸 이하 0.8 0.8 0.8 0.5 0.8 0.1 - 0.2 - 1.1 0.2 구축을 이하 0.8 0.8 0.5 0.8 0.1 - 0.2 - 1.1 1.5 구축을 1.6 2.6 0.9 1.2 0.9 0.5 0.4 0.7 1.5 대출 이상 1.0 2.9 1.2 1.0 0.9 0.6 0.4 1.2 1.4 1.4 1.0 0.2 1.0 0.9 0.6 0.4 1.2 1.4 1.4 1.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연령	40대	1.2	2.8	1.0	0.9	0.5	0.4	0.3	0.9	1.1
70세 이상 0.5 1.0 0.1 1.9 0.1 - 0.1 0.1 0.2 조돌이하 0.8 0.8 0.5 0.8 0.1 - 0.2 - 1.1 중돌 2.5 3.1 1.8 2.6 0.9 0.0 0.5 0.8 1.5 고졸 1.6 2.6 0.9 1.2 0.9 0.5 0.4 0.7 1.5 대졸이상 1.0 2.9 1.2 1.0 0.9 0.6 0.4 1.2 1.4 100만 원 미만 0.1 1.3 0.2 1.1 0.1 - - 0.1 0.2 100~200만 원 0.5 1.5 0.2 2.1 0.2 0.1 0.2 0.2 0.6 200~300만 원 2.0 2.4 1.2 1.9 0.9 0.8 0.6 1.0 1.4 300~400만 원 0.9 2.3 0.9 1.1 0.9 0.4 0.3 0.7 1.6 400~500만 원 2.0 3.1 1.4 1.0 0.4 0.4 0.6 1.0 1.8 500~600만 원 1.5 2.8 1.7 1.2 1.0 0.7 0.6 1.2 1.4 600만 원 이상 1.5 3.4 0.9 1.1 1.5 0.2 - 0.9 1.1 수도권 1.3 2.3 1.0 1.0 0.9 0.4 0.3 0.7 0.9 강원/제주권 5.4 8.9 3.0 5.3 2.6 2.5 2.3 2.3 3.8 충청/세종권 1.5 2.6 1.8 1.9 0.2 0.2 0.3 1.6 1.3 호남권 0.6 1.5 0.8 0.8 0.3 0.2 0.1 0.4 0.4 대경권 0.1 0.4 0.2 0.3 0.4 0.1 - 0.2 0.4 동남권 2.0 3.9 1.1 1.6 0.9 0.3 0.6 0.9 3.6 대도시 1.1 1.7 0.6 0.8 0.7 0.4 0.1 0.4 1.3 지역규모 중소도시 1.7 3.4 1.5 1.5 0.8 0.4 0.8 1.3 1.6		50대	1.1	2.8	0.6	1.5	0.3	0.2	0.4	0.3	0.7
함력		60대	1.3	1.7	0.5	2.3	0.4	0.2	0.8	0.1	0.5
공출 2.5 3.1 1.8 2.6 0.9 0.0 0.5 0.8 1.5 고출 1.6 2.6 0.9 1.2 0.9 0.5 0.4 0.7 1.5 대출 이상 1.0 2.9 1.2 1.0 0.9 0.6 0.4 1.2 1.4 지수도된 100만원 미만 0.1 1.3 0.2 1.1 0.1 - - 0.1 0.2 100~200만원 0.5 1.5 0.2 2.1 0.2 0.1 0.2 0.2 0.6 200~300만원 2.0 2.4 1.2 1.9 0.9 0.8 0.6 1.0 1.4 300~400만원 0.9 2.3 0.9 1.1 0.9 0.4 0.3 0.7 1.6 400~500만원 2.0 3.1 1.4 1.0 0.4 0.4 0.6 1.0 1.8 500~600만원 1.5 2.8 1.7 1.2 1.0 0.7 0.6 1.2 1.4 600만원 이상 1.5 3.4 0.9 1.1 1.5 0.2 - 0.9 1.1 수도권 1.3 2.3 1.0 1.0 0.9 0.4 0.3 0.7 0.9 강원/제주권 5.4 8.9 3.0 5.3 2.6 2.5 2.3 2.3 3.8 충청/세종권 1.5 2.6 1.8 1.9 0.2 0.2 0.3 1.6 1.3 호남권 0.6 1.5 0.8 0.8 0.3 0.2 0.1 0.4 0.4 대경권 0.1 0.4 0.2 0.3 0.4 0.1 - 0.2 0.4 당남권 2.0 3.9 1.1 1.6 0.9 0.3 0.6 0.9 3.6 대도시 1.1 1.7 0.6 0.8 0.7 0.4 0.1 0.4 1.3 지역규모 중소도시 1.7 3.4 1.5 1.5 0.8 0.4 0.8 1.3 1.6 1.5 2.6 1.8 0.7 0.4 0.1 0.4 0.4 1.3 1.6 0.9 0.3 0.4 0.1 0.4 1.3 지역규모 중소도시 1.7 3.4 1.5 1.5 0.8 0.4 0.8 1.3 1.6 1.5 2.6 2.5 2.5 2.5 2.5 2.5 2.7 2.8 2.5 2.5 2.5 2.8 2.8 2.5 2.5 2.5 2.8 2.5 2.5 2.5 2.5 3.8 2.6 2.5 2.5 2.5 3.8 2.6 2.5 2.5 2.5 3.8 2.6 2.5 2.5 2.5 4.0 2.0 2.0 2.0 5.0 2.0 2.0 2.0 2.0 5.0 2.0 2.0 2.0 2.0 5.0 2.0 2.0 2.0 2.0 5.0 2.0 2.0 2.0 5.0 2.0 2.0 2.0 5.0 2.0 2.0 2.0 5.0 2.0 2.0 2.0 5.0 2.0 2.0 2.0 5.0 2.0 2.0 2.0 5.0 2.0 2.0 2.0 5.0 2.0 2.0 2.0 5.0 2.0 2.0 2.0 5.0 2.0 2.0 2.0 5.0 2.0 2.0 5.0 2.0 2.0 2.0 5.0 2.0 2.0 2.0 5.0 2.0		70세 이상	0.5	1.0	0.1	1.9	0.1	-	0.1	0.1	0.2
과출 1.6 2.6 0.9 1.2 0.9 0.5 0.4 0.7 1.5 대출이상 1.0 2.9 1.2 1.0 0.9 0.6 0.4 1.2 1.4 1.4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초졸 이하	0.8	0.8	0.5	0.8	0.1	-	0.2	-	1.1
대출이상 1.0 2.9 1.2 1.0 0.9 0.6 0.4 1.2 1.4 H 100만 원미만 0.1 1.3 0.2 1.1 0.1 0.1 0.2 100~200만 원 0.5 1.5 0.2 2.1 0.2 0.1 0.2 0.2 0.6 200~300만 원 0.9 2.3 0.9 1.1 0.9 0.4 0.3 0.7 1.6 400~500만 원 1.5 2.8 1.7 1.2 1.0 0.7 0.6 1.2 1.4 600만 원이상 1.5 3.4 0.9 1.1 1.5 0.2 - 0.9 1.1 수도권 1.3 2.3 1.0 1.0 0.9 0.4 0.3 0.7 0.9 강원/제주권 5.4 8.9 3.0 5.3 2.6 2.5 2.3 2.3 3.8 충청/세종권 1.5 2.6 1.8 1.9 0.2 0.2 0.3 1.6 1.3 호남권 0.6 1.5 0.8 0.8 0.3 0.2 0.1 0.4 0.4 대경권 0.1 0.4 0.2 0.3 0.4 0.1 - 0.2 0.4 동남권 2.0 3.9 1.1 1.6 0.9 0.3 0.6 0.9 3.6 대도시 1.1 1.7 0.6 0.8 0.8 0.7 0.4 0.1 0.4 1.3 지역규모 중소도시 1.7 3.4 1.5 1.5 0.8 0.8 0.4 0.8 1.3 1.6	하면	중졸	2.5	3.1	1.8	2.6	0.9	0.0	0.5	0.8	1.5
지역규모 등심으로 되었다. 기가	익듹	고졸	1.6	2.6	0.9	1.2	0.9	0.5	0.4	0.7	1.5
지역규모 전 1.00~200만원 0.5 1.5 0.2 2.1 0.2 0.1 0.2 0.2 0.6 200~300만원 2.0 2.4 1.2 1.9 0.9 0.8 0.6 1.0 1.4 1.4 1.0 1.4 1.0 0.4 0.4 0.6 1.0 1.8 1.5 1.5 2.8 1.7 1.2 1.0 0.7 0.6 1.2 1.4 600만원이상 1.5 3.4 0.9 1.1 1.5 0.2 - 0.9 1.1 1.5 0.2 - 0.9 1.1 1.5 2.8 1.0 1.0 0.9 0.4 0.3 0.7 0.9 1.1 1.4 1.5 0.2 - 0.9 1.1 1.5 2.8 1.0 1.0 0.9 0.4 0.3 0.7 0.9 1.1 1.5 2.8 1.0 1.0 0.9 0.4 0.3 0.7 0.9 1.1 1.5 2.6 1.8 1.9 0.2 2.3 2.3 3.8 중청/세종권 1.5 2.6 1.8 1.9 0.2 0.2 0.3 1.6 1.3 2.4 1.5 1.5 0.8 0.8 0.3 0.2 0.1 0.4 0.4 0.4 1.3 2.4 1.5 1.5 0.8 0.8 0.3 0.2 0.1 0.4 0.4 0.4 1.3 1.5 1.5 1.5 0.8 0.8 0.3 0.2 0.1 0.4 0.4 0.4 1.3 1.5 1.5 1.5 1.5 0.8 0.8 0.7 0.4 0.1 0.4 0.4 1.3 1.5 1.5 1.5 1.5 0.8 0.8 0.7 0.4 0.1 0.4 0.4 1.3 1.5 1.5 1.5 1.5 0.8 0.8 0.7 0.4 0.1 0.4 0.4 1.3 1.5 1.5 1.5 0.8 0.8 0.7 0.4 0.1 0.4 0.4 1.3 1.5 1.5 1.5 0.8 0.8 0.7 0.4 0.1 0.4 0.4 0.4 1.3 1.5 1.5 1.5 0.8 0.8 0.4 0.8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6 1.3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대졸 이상	1.0	2.9	1.2	1.0	0.9	0.6	0.4	1.2	1.4
기구소독 200~300만원 2.0 2.4 1.2 1.9 0.9 0.8 0.6 1.0 1.4 300~400만원 0.9 2.3 0.9 1.1 0.9 0.4 0.3 0.7 1.6 400~500만원 2.0 3.1 1.4 1.0 0.4 0.4 0.6 1.0 1.8 500~600만원 1.5 2.8 1.7 1.2 1.0 0.7 0.6 1.2 1.4 600만원이상 1.5 3.4 0.9 1.1 1.5 0.2 - 0.9 1.1 1.5 √도권 1.3 2.3 1.0 1.0 0.9 0.4 0.3 0.7 0.9 3.8 중청/세종권 5.4 8.9 3.0 5.3 2.6 2.5 2.3 2.3 3.8 중청/세종권 1.5 2.6 1.8 1.9 0.2 0.2 0.3 1.6 1.3 호남권 0.6 1.5 0.8 0.8 0.3 0.2 0.1 0.4 0.4 0.4 대경권 0.1 0.4 0.2 0.3 0.4 0.1 - 0.2 0.4 등남권 2.0 3.9 1.1 1.6 0.9 0.3 0.6 0.9 3.6 대도시 1.1 1.7 0.6 0.8 0.8 0.7 0.4 0.1 0.4 0.4 1.3 지역규모 중소도시 1.7 3.4 1.5 1.5 0.8 0.8 0.4 0.4 0.8 1.3 1.6		100만 원 미만	0.1	1.3	0.2	1.1	0.1	-	-	0.1	0.2
가구소득 300~400만원 0.9 2.3 0.9 1.1 0.9 0.4 0.3 0.7 1.6 400~500만원 2.0 3.1 1.4 1.0 0.4 0.4 0.6 1.0 1.8 500~600만원 1.5 2.8 1.7 1.2 1.0 0.7 0.6 1.2 1.4 600만원이상 1.5 3.4 0.9 1.1 1.5 0.2 - 0.9 1.1 1.5 수도권 1.3 2.3 1.0 1.0 0.9 0.4 0.3 0.7 0.9 3.8 중청/세종권 1.5 2.6 1.8 1.9 0.2 0.2 0.3 1.6 1.3 호남권 0.6 1.5 0.8 0.8 0.3 0.2 0.1 0.4 0.4 0.4 0.4 0.4 0.4 0.5 0.1 0.4 0.2 0.3 0.4 0.1 - 0.2 0.4 5남권 2.0 3.9 1.1 1.6 0.9 0.3 0.6 0.9 3.6 0.9 0.4 0.1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100~200만 원	0.5	1.5	0.2	2.1	0.2	0.1	0.2	0.2	0.6
## 400~500만원 2.0 3.1 1.4 1.0 0.4 0.4 0.6 1.0 1.8 500~600만원 1.5 2.8 1.7 1.2 1.0 0.7 0.6 1.2 1.4 600만원이상 1.5 3.4 0.9 1.1 1.5 0.2 - 0.9 1.1 수도권 1.3 2.3 1.0 1.0 0.9 0.4 0.3 0.7 0.9 강원/제주권 5.4 8.9 3.0 5.3 2.6 2.5 2.3 2.3 3.8 충청/세종권 1.5 2.6 1.8 1.9 0.2 0.2 0.3 1.6 1.3 호남권 0.6 1.5 0.8 0.8 0.3 0.2 0.1 0.4 0.4 0.4 대경권 0.1 0.4 0.2 0.3 0.4 0.1 - 0.2 0.4 동남권 2.0 3.9 1.1 1.6 0.9 0.3 0.6 0.9 3.6 대도시 1.1 1.7 0.6 0.8 0.8 0.7 0.4 0.1 0.4 1.3 지역규모 중소도시 1.7 3.4 1.5 1.5 0.8 0.8 0.4 0.8 1.3 1.6		200~300만 원	2.0	2.4	1.2	1.9	0.9	0.8	0.6	1.0	1.4
500∼600만원 1.5 2.8 1.7 1.2 1.0 0.7 0.6 1.2 1.4 600만원이상 1.5 3.4 0.9 1.1 1.5 0.2 - 0.9 1.1 수도권 1.3 2.3 1.0 1.0 0.9 0.4 0.3 0.7 0.9 강원/제주권 5.4 8.9 3.0 5.3 2.6 2.5 2.3 2.3 3.8 충청/세종권 1.5 2.6 1.8 1.9 0.2 0.2 0.3 1.6 1.3 호남권 0.6 1.5 0.8 0.8 0.3 0.2 0.1 0.4 0.4 대경권 0.1 0.4 0.2 0.3 0.4 0.1 - 0.2 0.4 동남권 2.0 3.9 1.1 1.6 0.9 0.3 0.6 0.9 3.6 대도시 1.1 1.7 0.6 0.8 0.7 0.4 0.1 0.4 1.3 지역규모 중소도시 1.7 3.4 1.5 1.5 0.8 0.4 0.4 0.8 1.3 1.6	가구소득	300~400만 원	0.9	2.3	0.9	1.1	0.9	0.4	0.3	0.7	1.6
800만원이상 1.5 3.4 0.9 1.1 1.5 0.2 - 0.9 1.1 수도권 1.3 2.3 1.0 1.0 0.9 0.4 0.3 0.7 0.9 강원/제주권 5.4 8.9 3.0 5.3 2.6 2.5 2.3 2.3 3.8 충청/세종권 1.5 2.6 1.8 1.9 0.2 0.2 0.3 1.6 1.3 호남권 0.6 1.5 0.8 0.8 0.3 0.2 0.1 0.4 0.4 0.4 대경권 0.1 0.4 0.2 0.3 0.4 0.1 - 0.2 0.4 동남권 2.0 3.9 1.1 1.6 0.9 0.3 0.6 0.9 3.6 대도시 1.1 1.7 0.6 0.8 0.8 0.7 0.4 0.1 0.4 1.3 지역규모 중소도시 1.7 3.4 1.5 1.5 0.8 0.4 0.8 0.4 0.8 1.3 1.6		400~500만 원	2.0	3.1	1.4	1.0	0.4	0.4	0.6	1.0	1.8
변경 1.3 2.3 1.0 1.0 0.9 0.4 0.3 0.7 0.9 강원/제주권 5.4 8.9 3.0 5.3 2.6 2.5 2.3 2.3 3.8 충청/세종권 1.5 2.6 1.8 1.9 0.2 0.2 0.3 1.6 1.3 호남권 0.6 1.5 0.8 0.8 0.3 0.2 0.1 0.4 0.4 대경권 0.1 0.4 0.2 0.3 0.4 0.1 - 0.2 0.4 동남권 2.0 3.9 1.1 1.6 0.9 0.3 0.6 0.9 3.6 대도시 1.1 1.7 0.6 0.8 0.7 0.4 0.1 0.4 1.3 지역규모 중소도시 1.7 3.4 1.5 1.5 0.8 0.4 0.8 1.3 1.6		500~600만 원	1.5	2.8	1.7	1.2	1.0	0.7	0.6	1.2	1.4
권역 중청/세종권 5.4 8.9 3.0 5.3 2.6 2.5 2.3 2.3 3.8 충청/세종권 1.5 2.6 1.8 1.9 0.2 0.2 0.3 1.6 1.3 호남권 0.6 1.5 0.8 0.8 0.3 0.2 0.1 0.4 0.4 대경권 0.1 0.4 0.2 0.3 0.4 0.1 - 0.2 0.4 동남권 2.0 3.9 1.1 1.6 0.9 0.3 0.6 0.9 3.6 대도시 1.1 1.7 0.6 0.8 0.7 0.4 0.1 0.4 1.3 지역규모 중소도시 1.7 3.4 1.5 1.5 0.8 0.4 0.8 1.3 1.6		600만 원 이상	1.5	3.4	0.9	1.1	1.5	0.2	-	0.9	1.1
권역 충청/세종권 1.5 2.6 1.8 1.9 0.2 0.2 0.3 1.6 1.3 호남권 0.6 1.5 0.8 0.8 0.3 0.2 0.1 0.4 0.4 0.4 대경권 0.1 0.4 0.2 0.3 0.4 0.1 - 0.2 0.4 동남권 2.0 3.9 1.1 1.6 0.9 0.3 0.6 0.9 3.6 대도시 1.1 1.7 0.6 0.8 0.7 0.4 0.1 0.4 1.3 지역규모 중소도시 1.7 3.4 1.5 1.5 0.8 0.4 0.8 1.3 1.6		수도권	1.3	2.3	1.0	1.0	0.9	0.4	0.3	0.7	0.9
권역 호남권 0.6 1.5 0.8 0.8 0.3 0.2 0.1 0.4 0.4 대경권 0.1 0.4 0.2 0.3 0.4 0.1 - 0.2 0.4 동남권 2.0 3.9 1.1 1.6 0.9 0.3 0.6 0.9 3.6 대도시 1.1 1.7 0.6 0.8 0.7 0.4 0.1 0.4 1.3 지역규모 중소도시 1.7 3.4 1.5 1.5 0.8 0.4 0.8 1.3 1.6		강원/제주권	5.4	8.9	3.0	5.3	2.6	2.5	2.3	2.3	3.8
호남권 0.6 1.5 0.8 0.8 0.3 0.2 0.1 0.4 0.4 대경권 0.1 0.4 0.2 0.3 0.4 0.1 - 0.2 0.4 동남권 2.0 3.9 1.1 1.6 0.9 0.3 0.6 0.9 3.6 대도시 1.1 1.7 0.6 0.8 0.7 0.4 0.1 0.4 1.3 지역규모 중소도시 1.7 3.4 1.5 1.5 0.8 0.4 0.8 1.3 1.6	괴여	충청/세종권	1.5	2.6	1.8	1.9	0.2	0.2	0.3	1.6	1.3
동남권 2.0 3.9 1.1 1.6 0.9 0.3 0.6 0.9 3.6 대도시 1.1 1.7 0.6 0.8 0.7 0.4 0.1 0.4 1.3 지역규모 중소도시 1.7 3.4 1.5 1.5 0.8 0.4 0.8 1.3 1.6	면의	호남권	0.6	1.5	0.8	0.8	0.3	0.2	0.1	0.4	0.4
대도시 1.1 1.7 0.6 0.8 0.7 0.4 0.1 0.4 1.3 지역규모 중소도시 1.7 3.4 1.5 1.5 0.8 0.4 0.8 1.3 1.6		대경권	0.1	0.4	0.2	0.3	0.4	0.1	-	0.2	0.4
지역규모 중소도시 1.7 3.4 1.5 1.5 0.8 0.4 0.8 1.3 1.6		동남권	2.0	3.9	1.1	1.6	0.9	0.3	0.6	0.9	3.6
		대도시	1.1	1.7	0.6	0.8	0.7	0.4	0.1	0.4	1.3
읍면지역 1.5 3.0 1.4 1.7 1.0 0.4 0.4 1.0 1.3	지역규모	중소도시	1.7	3.4	1.5	1.5	0.8	0.4	0.8	1.3	1.6
		읍면지역	1.5	3.0	1.4	1.7	1.0	0.4	0.4	1.0	1.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2016

07

생활체육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of Sport for all

지표 정의

생활체육참여율은 전체 응답자 중 1주일에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 이다.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과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측정 산식

1주일에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 만 10세 이상 국민의 수 해당 연도 만 10세 이상의 국민 수

유의사항

10세 이상의 국민들이 1회 운동시 30분 이상 운동을 1주일에 1회 이상한 비율을 측정한다.

국민의 생활체육참여율은 2000년대 이후 50% 전후로 변동하고 있는데, 2012년(43.2%)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에는 59.5%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체육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08년 53.2%까지 증가하였지만, 2014년에는 34.5%, 2016년 29.5%로 감소하였다

2016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체육활동 종목은 걷기가 3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등산 (17.2%), 보디빌딩(14.7%), 축구(8.1%), 수영(7.7%), 자전거(7.0%), 배드민턴(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규모에서는 중소도시(61.0%)가 높았으며, 성별은 남자가 62.3%로 여자(56.7%)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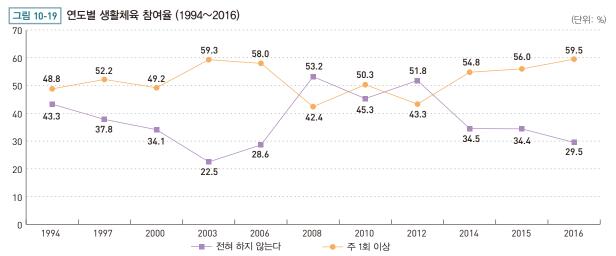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그미새하네오하어시티고 !!	1994	2012	2년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3	2016	1년

Checkpoint

'생활체육참여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를 통하여 생산되는 지표이다. 2016년 도에 생활체육 참여율은 59.5%로 2015년 56.0%에 비해 3.5%p 증가하였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걷기(35.9%)로 나타났으며, 등산(17.2%), 보디빌딩(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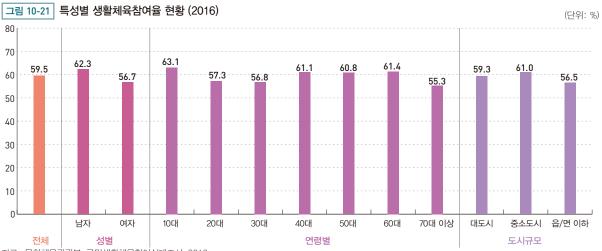
2015년부터 성별, 도시규모, 연령 등에서 격차가 많이 줄었으며, 2016년도는 남자(62.3%)가 여자보다 (56.7%)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63.1%로 가장 많이 규칙적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각 연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6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of Lifetime Spor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07-1

지표 정의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은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에서 산출되는 통계로, 등록장애인들 중 생활체육 완전실행자에 해당하는 비율로 정의한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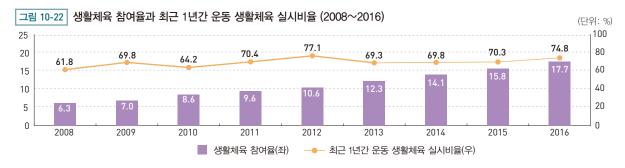
측정 산식

최근 1년간 재활치료 이외 목적으로 1주일에 2~3회 이상 운동하는 장애인으로 추정된 수 해당 연도 등록 장애인 수

*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

장애인생활체육 1년간 운동 실시 한 경험율은 2008년 6.3%에서 2016년 17.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생활체육을 참여한 비율은 2008년(61.8%)부터 2012년(77.1%)까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였으나, 2013년 69.3%로 하락한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6년 74.8%로 나타 났다. 1주일에 2~3회 이상 운동을 참여한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5년 15.8%에서 1.9%p증가하였으며, 생활체육참여비율은 2015년 70.3%에서 4.5%p 증가했다.

특성별로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비율을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이 75.2%로 여자(74.1%)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서는 20대가 80.9%로 가장 높고 40대가 7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 애유형별 생활체육 참여율은 지체장애가 76.7%로 가잔 높게 나타났고, 청각/언어장애(74.9%), 지적/자폐장애(72.4%), 기타(71.6%), 뇌변병장애(71.2%)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각 연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2016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2006	2016	1년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Benefit Rate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지표 정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초·중·고등학교와 학생의 비율로 정의한다.

문화예술 경험 기회 및 향유능력 제고, 공교육 문화예술교육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학교 비율 = 전체 초 · 중 · 고등학교 수

유의사항

각 통계의 출처가 다르게 산출하였으므로 계산하는 기준에 따라 다소 다르게 산출될 수 있음.

학교 문화예술 수혜율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악, 미술 등 기초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는 학교수와 학생수를 파악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유형 및 장르의 문화예술교육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이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강사를 지원받은 수혜학교의 비율은 2000년 5.4%에서 2004년 41.5%로 증가하였다가 2006년 22.5%로 감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75.9%가 되었으며, 지원예산은 2000년 5억 원에서 2016년 54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학생의 비율도 또한 2011년 25.2%(176만 명)에서 2016년 48.4%(287만 명)로 증가하였다.

2016년까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장르별 지원 시수를 살펴보면 국악이 약 64만 5천시수로 가장 높았고, 무용이 약 31만 1천시수로 나타났다. 장르별 강사 수를 살펴보면 국악이 2,111명, 무용이 1,061명, 연극이 907명, 만화/애니메이션이 466명이었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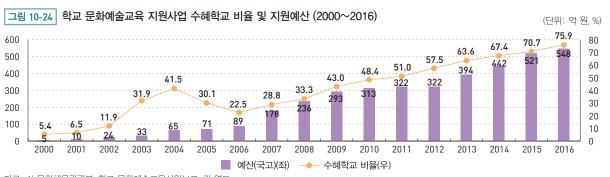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보고	2005	2016	1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16	1년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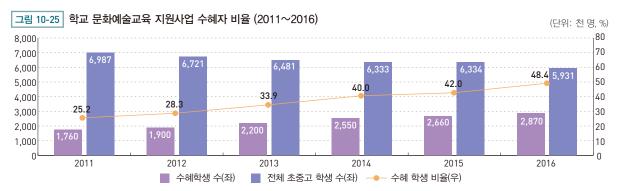
학교 문화예술 수혜율'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하여 예술교육을 받은 학교수와 학생수를 통하여 산출되는 지표이다. 2016년도 예산이 548억, 수혜학교 비율이 75.9%, 수혜학생 비율이 48.40%로 2015년도 예산 521억, 수혜학교 비율 75.9%, 수혜학생 비율 48.4%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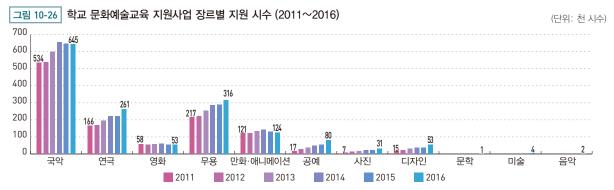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각 연도



자료: 1)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보고, 각 연도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보고, 각 연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보고, 각 연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보고, 각 연도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Experience Rate of Social Arts and Culture Education

지표 정의

본 지표는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정규 학교교육 이외에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강좌나 강습(온라인 교육, 방송교육 포함)의 형태로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dot{x} \cdot \dot{g} \cdot \dot{z}$ 고등학교 정규 학교교육 외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안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수준, 문화예술 향유능력 개발의 기회 정도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지난 1년간 학교 교육 이외에 문화예술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만 15세 이상 국민 수 15세 이상의 국민의 수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학교교육 이외에 문화예술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지난 1년간 사회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은 2006년 7.7%였으며, 2014년에 6.9%로 감소했다가 2016년 10.6%로 3.7%p 증가하였다.

2016년 장르별로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비율을 살펴보면, 문학(2.7%), 미술(3.1%), 서양음악(1.6%), 전통예술(1.6%), 무용(0.7%), 연극(0.5%), 뮤지컬(0.6%), 영화(1.9%), 대중음악(0.8%)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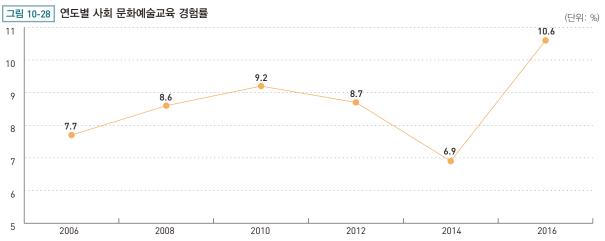
성별, 연령, 도시규모, 학력, 소득수준에 따라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성이 12.6%로 남성(10.4%)보다 높았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10대가 24.8%로 가장 높았고, 20대(14.3%), 40대(11.6%), 30대(10.3%), 60대(10.1%), 50대(9.2%), 70대(6.1%)로 나타났다. 도시규모에서는 중소도시가 13.9%로 읍면(10.8%), 대도시(9.8%)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중졸이 15.3%, 대졸이상(13.0), 고졸(10.2%), 초졸이하(6.6%)보다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10% 이상이고,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10% 아래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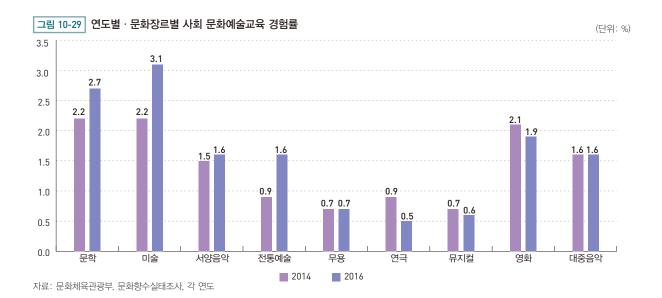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6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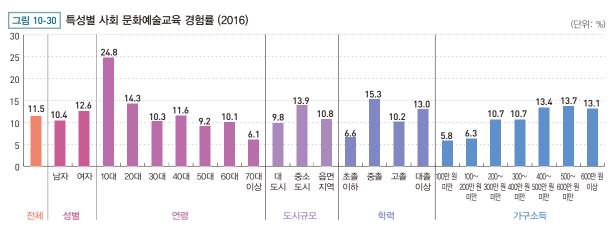
Checkpoint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2016년도에 10.6%의 경험률로 2014년에 6.9%에 비해 3.7%p 증가하였다. 장르별로는 미술이 3.1%로 가장 높고, 0.9%p로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주: 1) 2010년 이전의 자료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경험률이며, 2012년 이후는 지난 1년 동안의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임. 2) 2016년 사회 문화 예술교육 경험률은 역사, 철학 강의 및 역사탐방을 포함하지 않은 값이며, 포함했을때는 11.5%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주: 2016년 사회 문화 예술교육 경험률(전체)은 역사, 철학 강의 및 역사탐방을 포함한 경험률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2016

10 H H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Benefit Rate of Integrated Cultural Voucher

지표 정의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인구 대비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여 문화여가를 향유한 경험이 있는 수급자의 비율로 정의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은 다양한 이유로 문화를 누리기 힘든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의 제공 정도를 파악 알 수 있다.

측정 산식

해당 연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수혜자 수 기초생활수급자 수

유의사항

각 사업은 차상위계층을 수혜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본 통계는 기초수급자를 모수로 하여 추정하였으므로 실제보다 수혜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수혜율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을 통하여 문화예술을 누리기 힘든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수혜자 수**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수혜자 비율은 대략 2010년 48.7만 명(31.3%)에서 2013년 173만 명(128.0%)로 증가하였다가 문화누리카드로 통합된 후 2014년 147.5만 명(111.0%), 2015년 137.8만 명(58.1%), 2016년 145.1만 명(58.0%)로 줄어들었다.

2016년 기준 분야별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문화분야 이용이 83.8%로 가장 많았고, 여행이 16.0%, 스포츠가 0.2%의 순으로 높았다. 승인 금액 비율을 살펴보면, 문화분야가 87.6%, 여행이 12.1%, 스포츠가 0.3%의 비율로 나타났다. 세부분야별 이용 건수는 도서가 가장 많았고, 영화, 항공/여객, 철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용 금액도 거의 비슷한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보고	2010	2016	1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1977	2016	1년

Checkpoint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수혜율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등의 이유로 문화에서 소외된 대상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정도를 나타낸 지표이며, 2016년은 수혜자 수는 137만 8천 명에서 145만 1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수혜비율은 58.1%에서 58.0%로 다소 감소하였다.

^{*} 각 이용권 사업의 수혜자 수는 카드수혜자 수와 기획사업 수혜자 수를 모두 포함되며, 2014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으로 통합됨.

^{** 2013}년까지의 통계는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이용권 수혜자를 합친 통계이고, 2014년 통계는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의 통계임.

丑 10-8 문화 · 여행 · 스포츠관람이용권 사업 수혜자 수와 수혜자 비율 (2010~2016)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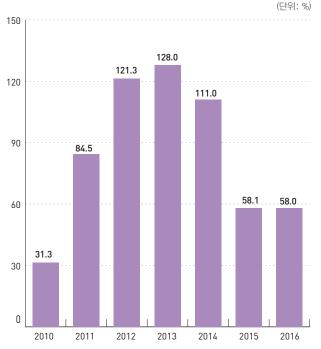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구분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문화이용권	470	30.3	1,174	79.9	1,605	115.1	1,639	121.3	1 475 111 0					
여행이용권	6	0.4	51	3.5	63	4.5	68	5.1		111.0	1.378	58.1	1,451	58.0
스포츠관람 이용권	11	0.7	16	1.1	24	1.7	23	1.7	.,	1,475 111.0	.,	30.1		

주: 수혜자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수혜자 비율을 의미함.

자료: 1) 수혜자 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이용권, 스포츠관람이용권, 여행이용권 사업보고, 각 연도

2) 기초생활수급자 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각 연도

그림 10-31 문화 · 여행 · 스포츠관람이용권 사업 기초수급자 대비 수혜자비율 (201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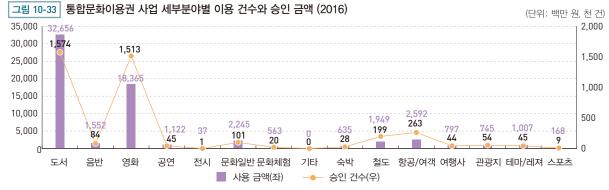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보고, 각 연도

그림 10-32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분야별 이용 비율 (201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성과분석 연구, 201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성과분석 연구, 2016

11 H H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Benefit Rate of Sports Class Voucher

지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만 5~18세 유소년 및 청소년들 중 스포츠바우처 지정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수급자의 비율로 정의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정과 같은 소외계층의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해당 연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수혜자 수 기초생활수급자 만 5 ~ 18세 유·청소년의 수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 정의 만 $5\sim18$ 세 유소년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함.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율은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스포츠바우처 지정시설을 이용하여 강 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받은 소외계층 만 5~18세의 비율을 제시하는 지표이다. 수혜율을 살펴보 면 2009년 2.6%에서 2012년까지 11.3%까지 증가하다 2014년까지 증가율이 변화가 거의 없다가 2015년 14.9%, 2016년 16.3%로 증가하였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예산도 2011년에 86.2억으로 증가한 이후 2012년 105.8억으로 증가 하였다가 2014년까지는 비슷한 규모였다가 2015년과 2016년 117.6억과 125.8억으로 증가하였다. 만족도는 2009년 75.2점 이후 2016년까지 89.2점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정보

TLUATA	트레더	취급 파티어트	21.7 T.L.I.O.C.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보고	2009	2016	1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1977	2016	1년

Checkpoint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율은 소외계층 가정의 만 5 \sim 18세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스포츠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수혜자는 2,464명, 수혜비율은 1.4%p, 예산은 10.9억, 만족도는 3.3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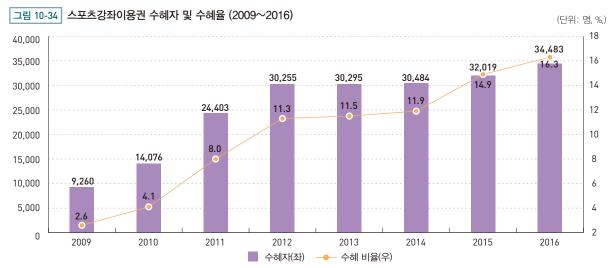
^{*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다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사업임.

표 10-9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수혜자 수와 수혜자 비율 (2009~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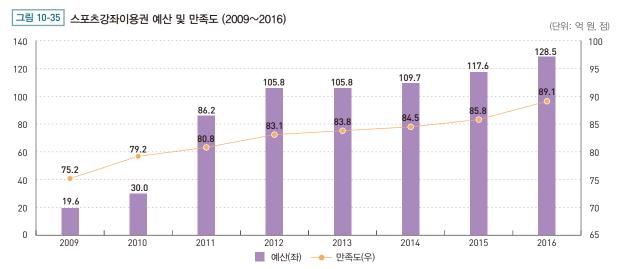
(단위: 명, %, 억, 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혜자	9,260	14,076	24,403	30,255	30,295	30,484	32,019	34,483
수혜비율	2.6	4.1	8.0	11.3	11.5	11.9	14.9	16.3
예산	19.6	30.0	86.2	105.8	105.8	109.7	117.6	128.5
만족도	75.2	79.2	80.8	83.1	83.8	84.5	85.8	89.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보고, 각 연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보고, 각 연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보고, 각 연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Number of Elderly Cultural Programs beneficiary

지표 정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는 지방문화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로 측정한다.

고령화시대 어르신세대의 여가기회 및 참여활동 확대로 문화향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참가자 수

2005년부터 실시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세대의 여가기회 및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며,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이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는 2005년 364명에서 2015년 14,04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12,111명으로 감소하였다. 예산지원액은 2005년 2.4억 원에서 2016년 46.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또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문화원 수와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를 살펴보면 2005년 10개 문화시설에서 10개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2016년에 268개 문화시설에서 39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6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여자가 73.2%로 남자(26.8%)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30.9%), 호남/제주(27.2%), 영남(25.9%), 강원/충청(16.1%)의 순이었다.

수혜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문화기획자 교류지원과 권역별 어르신 성과사업을 제외한 364개의 프로그램에서 12,011명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하나당 평균 33.0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는 어르신 문화학교(148개), 문화나눔 봉사단(102개), 문화동아리 활성화(71개) 등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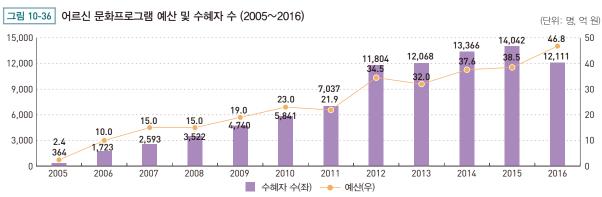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보고	2005	2016	1년

Checkpoint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는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참가자 수로 파악하는 지표이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2016년 현재 전국 268개 문화시설에서 12,111명 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2011년도에 비해 참여문화시설이 262개에서 268개로 증가하였지만, 프로그램 수는 435개에서 391개로 줄었다. 그러나 예산은 46.8억으로 전년(38.5억)보다 8.2억 증가하였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원 어르신 프로그램」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연구, 2016

표 10-10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예산 및 수혜자 수 (2005~2016)

(단위: 억 원, 개,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지원액	2.4	10.0	15.0	15.0	19.0	23.0	21.9	34.5	32.0	37.6	38.5	46.8
참여문화시설 수	10	50	76	100	137	134	149	198	193	295	262	268
프로그램 수	10	50	76	100	137	183	202	334	311	415	435	391
수혜자 수	364	1,723	2,593	3,522	4,740	5,841	7,037	11,804	12,068	13,366	14,042	12,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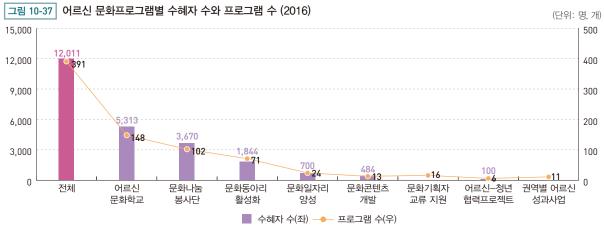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원 어르신 프로그램」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연구, 2016

표 10-11 성별 · 지역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2016)

(단위: 명,%)

구분		수혜자 수	비율
성별	남자	3,248	26.8
	여자	8,863	73.2
ZION	서울/경기	3,738	30.9
	강원/충청	1,944	16.1
	영남	3,131	25.9
	호남/제주	3,298	27.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원 어르신 프로그램」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연구, 201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원 어르신 프로그램」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연구, 2016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Benefit Rate of Disabled Sport Leaders Service

지표 정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의 수혜를 받은 비율로 정의된다.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확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해당 연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자 수 ×100 등록 장애인 수

유의사항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이용한 대상으로 작성한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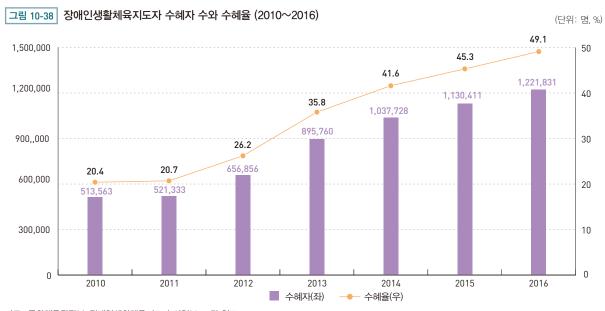
과거 소외계층이었던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생활에 만족해야 했으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사회참여기회의 확대로 인하여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은 장애인체육시설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체육활동을 한 장애인의 비율을 측정한 지표이다.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사업의 수혜자 수와 수혜율은 2010년 51.3만 명, 20.4%에서 2016년 122.2만 명, 49.1% 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적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는 335명이 배치되어 있고,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은 2.614개가 시행되었다. 지역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가 54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되었고, 다음으로 서울(53명), 충남(35명)등의 순이었으며, 세종시는 4명으로 가장 적게 배치되었다. 프로그램 수는 서울이 356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북(292 개), 경기(83개)의 순이었고, 세종시의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은 32개로 가장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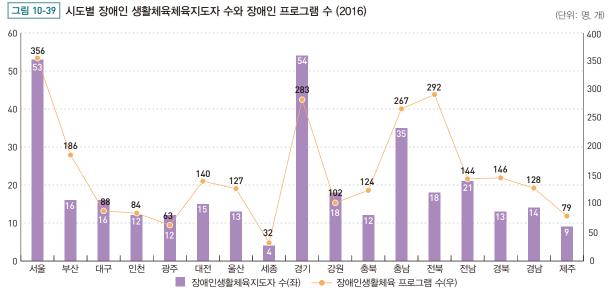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보고	-	2016	1년
보건복지부	시 · 도 장애인등록현황 자료	1989	2016	1년

Checkpoint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국가와 지자체 매칭(50대 50)으로 2007년 21명이 최초 배치된 이후, 2015년 현 재 335명이 전국에 배치되었다. 2006년도는 2005년에 비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비해 9명 증가하였 고, 프로그램은 2,614개로 112개 증가하였다. 수혜받은 수는 91,420명이 증가하여 1,111,831명이고, 수혜 율은 49.1%로 3.8%p 증가하였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보고, 각 연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보고, 2016

14

GDP 대비 문화예산

Cultural Budget for GDP

지표 정의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을 GDP로 나는 값을 GDP 대비 문화예산^{*}으로 정의한다. GDP 대비 문화예산 비율을 통하여 정부예산 중 문화분야에 대한 지출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GDP

GDP 대비 문화예산은 문화 관련 정부지출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은 2010년 3.9조에서 2016년에 6.6조로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GDP 대비 문화예산 비중 또한 2010년 0.31%에서 2016년 0.4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좁은 의미의 정부의 문화예산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액은 2010년 3.2조에서 2016년 5.5조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예산 대비 비중은 2010년(1.08%)에서 2016년(1.42%)까지 증가하였다.

2016년도의 OECD의 GDP 대비 문화여가비 정부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OECD 평균은 1.21%이며 아이슬란드가 3.2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헝가리가 2.13%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정부지출은 0.74%로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 예산	-	2016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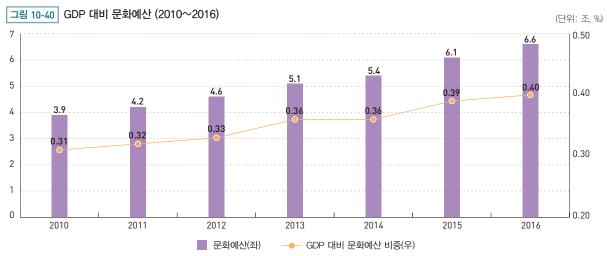
Checkpoint

'GDP 대비 문화예산'은 GDP 대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을 비중으로 작성한다. 문화예산은 2015년 6.1조에서 2016년 6.6조로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보면 2015년 5.0조에서 2016년 5.5조로 증가하였다.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문화여가비 정부지출을 보면 2015년도의 0.69%에서 2016년 도에 0.74로 0.05%p 증가하였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국민계정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http://www.openfiscaldata.go.kr)
- · OECD, Stat Extracts DB

^{*}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미래부와 방통위의 일부 문화 관련 예산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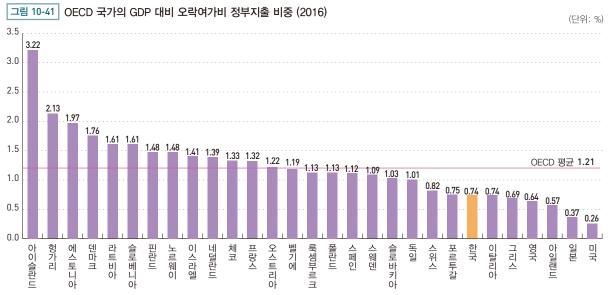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 공개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17.11.30 인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에서 2017.11.30. 인출)

표 10-12 정부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2010~2016)

(단위: 조,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문화체육관광부(A)	3.2	3.5	3.7	4.1	4.4	5.0	5.5
정부(B)	292.8	309.0	325.4	341.9	355.8	375.4	386.3
비율(A/B)	1.08	1.12	1.14	1.20	1.24	1.33	1.42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http://www.openfiscaldata.go.kr)



주: 1) 일반정부 총지출 기준

2) 한국은행 지료와 OECD, Stat Extracts DB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매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산출하고 있는 통계이며, OECD 자료를 인용함에 따라 매년 산출되는 국가가 변경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OECD. Stat Extracts DB

15 "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Leisure Culture Expenditure for Household Consumption

지표 정의

가계의 국내 최종소비지출* 중에서 오락, 문화 등의 명목 오락문화비 사용 비중을 산출하여 오락문화비 가계지출비중으로 정의한다.

가계가 국내에서 소비하는 지출 중 오락문화비 지출 비중의 정도와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전체 가계의 국내오락문화 최종 소비 지출 금액 전체 가계의 국내 최종 소비 지출 금액 ×100

오락문화비의 지출규모는 국민들이 여가분야에 얼마만큼 소비를 하고 여가를 즐기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가계에서 지출하는 오락문화비는 2000년도 25조 규모에서 2016년 63조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가계의 국내최종소비지출 대비 오락문화비 비중은 2000년도 7.4%의 규모에서 2002년 8.4%의 규모로 비슷한 규모에서 증감을 하다가 2016년의 8.4%로 나타났다.

2016년도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오락문화비 지출 비중**의 평균은 4.3%이며 미국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아이슬란드(5.8%), 호주(5.7%)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3.8%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오락문화비 지출 비중이 작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은행	국민계정	1953	2016	1년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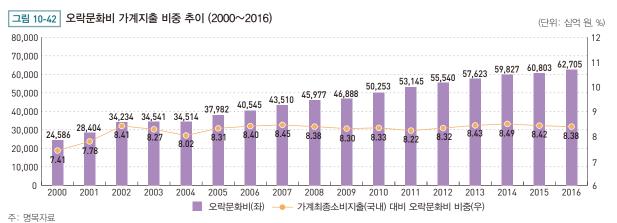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은 가계가 국내에서 지출하는 금액 중 오락문화비로 지출하는 비중으로 산출되는 지표이다. 2015년도 오락문화비는 60.8조에서 2016년 62.7조로 증가하였으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할때 GDP 대비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은 2016년 3.83%로, OECD국가들의 평균(4.34%)보다 낮은 것으로나타났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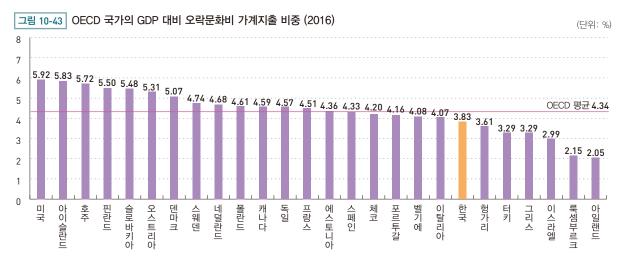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국민계정
- OECD, Stat Extracts DB

^{*} 가계의 국내 최종소비지출 대비 여가문화비 지출 비중을 시계열로 비교하기 위해 명목금액으로 산출하였음.

^{** 2016}년도 OECD 자료는 26개국만 제시되어 있어 26개국만을 대상으로 자료 작성 . 거주자국외소비 및 비거주자국내소비는 지출목적별로 구분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문화비 산출 항목에서 제외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OECD. Stat Extracts DB

사회재정

- N1 구가 사히보지 · 보거 부야 지축 비중
- 0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 0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 04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도
- 05 공적연금수지
- 06 고용 · 산재보험수지
- **07** 구민거강 · 노인장기요양보현수지
- 08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 0 1 7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재원배분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사회보장 지출 구조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공적연금수지	
	고용 · 산재보험수지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국제비교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재원구조별 공공사회지출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Central Government Spending on Health and Social Welfare (% of CG Total Spending)

지표 정의

국가재정통계 작성기준 16대 분야 기능 분류상 사회복지 · 보건 지출이 국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국가의 사회보장재정규모를 파악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 국가총지출

유의사항

국가란 행정주체로서의 국가를 의미하며 국가재정은 중앙부처 소관의 예산회계(일반회계 + 특별회계)와 기금회계를 포괄한다. 한편, 예산과 결산상 재정규모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바, 이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2017년도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400.5조 원으로 사상 처음 400조 원 을 상회하였다. 이중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은 전년 대비 6.1조 원 증가한 129.5조 원으로 국 가 총지출의 32.3%를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 보건에 이어 지방 재정교부금이 포함된 일반 · 지방행정(15.8%)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된 교육(14.3%) 및 국 방(10,1%) 분야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재원배분 추이를 보면,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체육·관광 등 사회개발분야 지출 비중은 각각 4,6%p, 1,3%p, 0,4%p 높아진 반면에 SOC(-3,1%p),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1,2%p), 농림ㆍ수산식품(-1%p) 분야에서의 지 출 비중은 하락하였다. 2010년 이후 사회복지 · 보건분야 지출규모는 2010년 81,2조 원에서 2017 년 129.5조 원으로 1.6배 확대되었고. 이 기간 동안 동 분야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국가 총지출 의 증가율보다 1.5배 빠른 6.9%에 이른다. 사회복지 · 보건분야 정책영역별 지출추이를 보면, 재 정규모에 있어서는 공적연금이 44조 9.930억 원으로 전체 사회복지 · 보건분야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4.7%). 노인ㆍ청소년부문과 보육ㆍ가족ㆍ여성부문의 지출비중은 각각 7.6%와 4.6%로 주택(16.4%)과 노동(14.1%)부문에 비해 지출규모에 있어서는 크지 않지만 2010 년 이래 연평균 각각 15.1%와 14%씩 증가하여 가장 빠른 지출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결산보고서	1947 (2009년 기능 분류체계 개편)	2016	1년
기획재정부	예산안(내부자료)	-	2017	1년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2004	2017	1년

Checkpoint 교육분야 지출은 전년 대비 4.1조 원 증가하여 국가 총지출의 전년 대비 예산 증가분 14.1조 원의 29.8%를 차지한다. 교육분야 지출규모의 이례적인 증가는 누리과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3조9,409억 원)에 크게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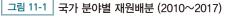
표 11-1 국가 분야 · 부문별 지출 (2010~2017)

(단위: 조 원, 억 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증기율
사회복지 · 보건[A]	81.2	86.4	92.6	99.3	106.4	115.7	123.4	129.5	6.9
국가총지출[B]	292.8	309.1	325.4	349.0	355.8	375.4	386.4	400.5	4.6
비중[A/B]	27.7	28.0	28.5	28.5	29.9	30.8	31.9	32.3	-
[사회복지, 억 원]	739,162	788,926	847,715	904,712	972,051	1,052,815	1,128,656	1,191,272	7.1
기초생활보장	72,937	75,240	79,100	87,761	88,310	94,773	101,311	104,904	5.3
취약계층지원	15,212	13,427	13,946	16,849	17,987	23,688	24,989	26,082	8.0
공적연금	259,856	281,833	312,678	331,382	364,031	396,612	427,062	449,930	8.2
보육 · 가족 · 여성	23,694	28,759	33,847	45,431	57,156	54,278	57,654	59,225	14.0
노인 · 청소년	36,630	38,759	40,510	45,034	65,619	90,362	94,210	98,013	15.1
노동	122,935	126,180	131,242	140,362	144,588	155,162	172,950	182,653	5.8
보훈	36,094	38,737	40,541	43,152	44,576	46,376	48,181	49,754	4.7
주택	167,162	180,536	190,062	187,679	182,343	183,867	194,381*	212,421	3.5
사회복지일반	4,642	5,455	5,789	7,062	7,440	7,697	7,917	8,290	8.6
[보건, 억 원]	73,304	75,000	78,589	88,213	92,203	104,009	105,339	103,558	5.1
보건의료	17,037	15,599	16,039	20,247	19,451	22,808	23,278	23,405	4.6
건강보험지원	53,827	57,102	60,113	65,131	69,665	77,442	77,860	75,811	5.0
식품의약안전	2,440	2,299	2,437	2,835	3,087	3,760	4,201	4,342	8.6

주: 본예산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 연도



(단위: 조 원)



주: 그래프안의 수치는 2017년도 본예산 규모임.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 연도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하여 공개한 2016 나라살림 예산개요(p.130, 표 5-1)의 주택부문 예산규모 194,367억 원을 반영하였다. 한편, 2017 나라살림 예산개요(p.102, 표 1-1)에서는 2016년 주택부문 예산규모를 194,381억 원으로 공개하였다.

02 H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Local Government Sepnding on Health and Social Welfare (% of LG Total Spending)

지표 정의

지방자치단체^{*} 재정통계 작성기준 15대^{**} 지출 분야 중 사회복지 · 보건 지출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지자체 사회보장재정규모를 파악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 지자체 예산 규모

유의사항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일반재정(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과 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지자체 일반재정 중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순계를 기준으로 지표를 작성하였다. 예산순계는 자치단체 내 회계 간(일반회계 - 특별회계) 내부거래,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 중복계상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전국 및 시도별 재정규모를 파악할 때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재정이전을 비롯하여 지자체 및 회계 간 복잡한 재정관계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빈번한 추경편성이 이루어지므로 당초예산과 최종예산, 그리고 예산과 결산상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최종예산의 편성이나 결산정보가 상대적으로 늦게 공개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과의 시계열적 비교를 위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지표를 산출하여 제시한다. 한편, [지표 11-1]과 [지표 11-2]의 행정주체별 지출 규모는 국가와 지자체 간의 재정이전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각 지출 규모를 단순 합산하거나 그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보장지출 규모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17년도 당초예산 순계에 기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보건 분야 세출(일반 + 특별회계)은 전년 대비 3.1조 원(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 증가분 8.6조 원의 35.7%) 증가한 52.6조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 193.2조 원의 27.2%를 차지한다. 부문별로는 2017년 현재 기초연금이 포함된 노인·청소년 부문이 전체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의 2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보육·가족·여성(24.3%), 기초생활보장(21.8%), 취약계층지원(12.7%)순이다. 전년에 비해 취약계층지원 부문의 지출비중은 0.1%p 소폭 상승하였으나, 노인·청소년, 보육·가족·여성 및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지출비중은 각각 0.3%p, 0.2%p, 0.7%p 하락하였다.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1997 (2008년 기능분류체계 개편)	2017	1년

^{*}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며, 2017년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1특별자치시, 8도)와 대도시형 기초 단체 15개, 중소도시형 기초단체 24개, 제한도시형 기초단체 69개, 도농형 기초단체 36개, 농촌형 기초단체 83개가 존재한다. 교육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구 분되며 지방교육비특별회계(교육재정)를 운용하고 있다.

^{** 2014}년부터 기존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구분되어 제시된다('13년 이전 13대분야 → '14년 이후 15대분야).

^{*** [}지표 11-2]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기초한 것으로 지표명이나 설명에 '지출' 대신 '세출'로 기술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나, 지표 11-1.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과 관련한 재정범위가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에 기준한다는 점에서 세출 대신 지출로 표기하였고, 지표 간의 통일성을 고려하 여 지자체의 경우에도 '세출' 대신 '지출'을 사용한다.

표 11-2 지방자치단체 분야 · 부문별 세출 (2010~2017)

(단위: 조 원, 억 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증가율
사회복지 · 보건[A]	28.8	30.5	33.0	37.3	42.5	46.8	49.5	52.6	9.0
지자체예산규모[B]	139.9	141.0	151.1	156.9	163.6	173.3	184.6	193.2	4.7
비중[A/B]	20.6	21.6	21.8	23.8	26.0	27.0	26.8	27.2	-
[사회복지,억 원]	265,342	284,632	309,157	349,921	400,832	440,629	466,075	494,509	9.3
기초생활보장	85,616	90,710	92,998	102,700	103,231	105,279	111,722	114,787	4.3
취약계층지원	35,119	38,873	43,786	47,401	52,644	57,547	62,253	66,796	9.6
보육 · 가족 · 여성	59,287	67,372	77,490	98,688	118,631	116,017	121,192	127,708	11.6
노인 · 청소년	66,494	68,791	70,836	76,976	102,545	134,884	142,234	149,433	12.3
노동	7,369	6,313	6,255	6,481	6,664	6,792	7,212	8,879	2.7
보훈	1,120	1,606	2,096	2,465	2,475	2,782	3,407	3,683	18.5
주택	7,126	7,553	12,214	11,655	10,164	12,640	13,019	17,090	13.3
사회복지일반	3,211	3,415	3,481	3,554	4,478	4,689	5,036	6,135	9.7
[보건,억 원]	22,250	20,082	20,825	23,323	24,139	26,935	29,123	31,505	5.1
보건의료	21,929	19,664	20,329	22,699	23,415	25,935	27,965	30,063	4.6
식품의약안전	321	418	496	624	724	1,001	1,158	1,442	23.9

주: 당초예산(순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구, 예산개요) 각 연도



- 주: 1) 당초예산 순계기준.
 - 2) 그래프안의 수치는 2017년도 예산 규모임.

 - 3) 수송교통분야와 국토및지역개발분야의 합계지출 규모를 표시하였음. 4)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의 지출로 2014년부터는 구분하여 제시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구, 예산개요),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Subsidy Spending Ratio of Local Government on Health and Social Welfare

지표 정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분야 세출에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로 지자체 사회보장관 련 사업의 유형과 지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보조사업비 규모 지자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세출 예산 ×100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보조사업 비중은 2017년 현재 사회복지 분야가 90.2%로 가장 높고 다 음으로 농림해양수산(71.5%), 보건(71.4%), 공공질서및안전(50.8%) 순으로 나타난다. 사회복 지·보건 분야 평균 보조사업 비중은 전년대비 1.3%p 하락한 89%로 전 분야 평균 49.4%의 약 1.8배 수준이다. 사회복지 · 보건 분야 각 부문에서는 기초생활보장(98.2%), 보육 · 가족 및 여 성(93.2%), 노인·청소년(89.8%), 취약계층지원(86.8%), 사회복지일반(72.1%), 식품의약안전 (75.9%), 보건의료(71.2%), 주택(63.9%), 노동(49.0%), 보훈(34.8%) 순으로 보조사업 비중이 높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1997 (2008년 기능분류체계 개편)	2017	1년

Checkpoint 지방자치단체 세출 전 분야 보조사업 비중은 전년 대비 1.5%p 허락하여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보조 사업 비중 하락추세를 이어갔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정책영역별로는 보훈과 주택 및 식품의약안전 부문 의 보조사업 비중이 전년 대비 각각 2.8%p, 1.9%p, 0.7%p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보조사업 비중이 하락하였다.

표 11-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2017)

구분	보조사업(A)	자체사업(B)	보조사업비중[A/(A+B)]	2016년도보조사업비중
지자체예산	780,628	798,671	49.4	50.9
사회복지·보건	463,906	57,175	89.0	90.3
사회복지	441,466	48,178	90.2	91.3
기초생활보장	112,535	2,092	98.2	98.3
취약계층지원	57,797	8,806	86.8	88.8
보육 · 가족 · 여성	118,769	8,600	93.2	93.8
노인 · 청소년	133,848	15,241	89.8	91.2
노동	4,336	4,514	49.0	57.9
보훈	1,280	2,402	34.8	32.0
주택	8,549	4,837	63.9	62.0
사회복지일반	4,353	1,687	72.1	72.8
보건	22,440	8,997	71.4	73.7
	····			

8,651

346

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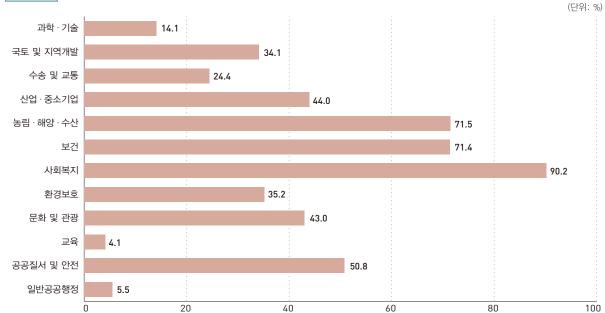
75.9

보건의료

21,352

1,088

그림 11-3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보조사업 비중 (2017)



주: 당초예산 순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구, 예산개요)

(단위: 억원,%)

73.7

75.2

식품의약안전 주: 1) 당초예산 순계 기준

²⁾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 등이 제외됨에 따라 [지표 11-2]의 분야 부문별 예산 규모와 차이가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구, 예산개요)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Government Spending on Major Benefit Programs

지표 정의

사회복지 분야 주요 예산사업 즉,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정책사업의 재정규모로 국가—지자체 간 분담수준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 생계·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국비 + 지방비 합계와 신설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을 합산한 것임.

국고보조사업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 주요 사회복지급여들의 2017년도 사업비 예산 총액은 34조 1,541억 원이다. 이중 국가부담은 26조 6,207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77.9%에 이른다. 사업 별로 구분해서 보면, 기초연금과 의료급여가 전체 사업비 예산의 30.9%와 18.6%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갖는다. 사업별 예산 규모의 변화를 보면, 생계·해산·장제급여 예산이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기초연금(2.5%)의 예산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의료급여 사업비 규모는 전년보다 266억 원 줄어들었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교육부와 국토부로 이관된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예산도 전년 대비 각각 11.6%(209억 원)와 8.1%(1,034억 원) 감소하였다. 그밖에 보건복지부 소관의 0~2세 영유아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사업비 규모 역시 전년 대비 각각 1.5%(691억 원)와 1.1%(203억 원) 감소하였다.

표 11-4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현황 (2017)

(단위: 억 원)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단위: 억 원)			
구분	계(A)	국비(B)	지방비	국가분담률(B/A)
합계	341,541	266,207	75,334	77.9%
기초생활보장급여	121,899	95,579	26,320	78.4%
생계·해산장제급여	45,011	36,918	8,093	82.0%
주거급여	11,663	9,399	2,264	80.6%
교육급여	1,587	1,282	305	80.8%
의료급여	63,638	47,980	15,658	75.4%
장애인연금	8,349	5,596	2,753	67.0%
장애수당	1,984	1,327	657	66.9%
기초연금	105,461	80,762	24,699	76.6%
영유아보육료(0~2세)	46,085	31,292	14,793	67.9%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409	39,409	-	-
가정양육수당	18,354	12,242	6,112	66.7%

주: 1) 세출규모는 예산 기준임.

- 2)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2017년 나라살림예산 세출명세 기준이며, 지방비는 2016년 편성 보조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으로 실제 매칭비가 아님.
- 3)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육부 소관) 세출규모만 반영
- 자료: 기획재정부 2017 나라살림예산(주거급여/교육급여/유이교육비보육료지원); 보건복지부(내부자료)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주요 사회복지 예산(내부자료)	-	2016	1년

05 " #

공적연금수지

Fiscal Balance of Public Pension Funds

지표 정의

4대 공적연금 기금운용계획상 정부내부수입과 여유자금회수 및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수지차의 합계로 정의한다. 고령화의 진전과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건전성과 국가지원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4대 공적연금 경상수입(자체수입 + 경상이전수입) - 경상지출(사업비지출 + 기금운영비)

유의사항

동 지표는 실적이 아닌 기금운용계획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공적연금재정수지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4대 공적연금) 각각의 기금 운용계획상 국가부담금, 보전금, 전입금, 공공자금예탁원리금 및 이자 등 정부내부수입과 여유자금운용이나 회수를 제외한 경상수입과 경상지출의 차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상 국민연금기금 38조 7,128억 원과 사학연금기금 9,321억 원 흑자에 힘입어 4대 공적연금 합계 27조 5,360억 원 수지흑자가 계획되어 있다. 4대 공적연금 전체 수지흑자 규모는 2016년에 비해 2,276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국민연금기금 1조3,041억 원 흑자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 수지흑자 감소와 더불어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의 수지적자 폭 확대에 기인한다.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2017년에 9조 6,274억 원 수지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 1조 2,644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2017년 현재 4대 공적연금 제도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정부지원 총액은 전년 대비 1조 3,294억 원 증가한 14조 2,799억 원에 이른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안(내부자료)	-	2017	1년

Checknoint

공무원연금기금 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내부수입 총액은 10조 9,411억 원으로 2016년 9조 7,478억 원 대비 12,2% 증가한 규모이다. 이중 국가보전금은 전년 보다 크게 감소한 9,760억 원(68.8% 감소)으로 계획된한편 국가부담금은 전년 대비 3조 3,607억 원 증가한 9조 9,640억 원이 계획되었다.

표 11-5 4대 공적연금기금 운용계획 (2017)

(단위: 억 원)

	1101201620	(==)				(27) 7 2
	구분	합계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수지치	[A+B-D-E]	275,360	387,128	-96,274	-24,815	9,321
[조달		1,450,222	1,084,228	225,389	31,451	109,154
자체-	누입(A)	728,189	589,105	80,989	5,839	52,256
	기여금(보험료) 수입	506,375	424,187	47,390	5,742	29,056
	이자 및 재산수입 등	221,814	164,918	33,599	97	23,200
경상C	기전수입(B)	591	-	-	66	525
정부니	ዘ부수입(C)	142,799	101	109,411	25,046	8,241
	국가부담금	110,029	-	99,640	10,389	-
	보전금	24,417	-	9,760	14,657	-
	전입금	8,353	101	11	=	8,241
	공공자금예탁원리금 및 이자	_	-	-	-	-
여유지	금회수	578,643	495,022	34,989	500	48,132
[운용		1,450,222	1,084,228	225,389	31,451	109,154
사업타	I(D)	446,986	197,032	176,468	30,716	42,770
	급여지출	410,650	194,997	155,012	30,716	29,925
	경상지출	5,340	1,693	3,431	-	216
	융자지출	24,642	342	11,671	-	12,629
	자본지출	6,354	-	6,354	-	-
기금은	은영비(E)	6,434	4,945	795	4	690
정부니	ᅢ부지출 [*]	522	-	-	-	522
여유지	금운용	996,280	882,251	48,126	731	65,172

주: *사학연금기금의 정부내부지출은 국고학자금대여 반환을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7 경제 · 재정수첩 p194. 수정 인용

고용 · 산재보험수지

Fiscal Balance of the Employment-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unds

지표 정의

근로안전망으로 8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구성하는 고용 · 산재보험의 재정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고용 · 산재보험기금 경상수입(보험료 + 기타) – 경상지출(사업비 + 기금관리비 등)

2016년도 결산 기준 정부내부수입과 여유자금회수 및 운용을 제외한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 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합산 2조 8,420억 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양 기금의 수입총액은 27조 7,665억 원으로 이 중 보험료 수입이 55,8%(15조 4,831억 원)를 차지한다. 정부내부수입 전입금 규모는 당초 계획안 규모 862억 원보다 6.749억 원 증가한 7.611억 원으로 초과분 전액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전입금 증가에 기인한다. 실업급여와 산재보험급여 등 사업비지출 총액은 당초 계획(14조 228억 원)보다 4,227억 원 적은 13조 6,001억 원으로 이중 고용보험이 64.5%를 차지한다.

표 11-6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결산 현황 (2016)

(단위: 억원)

구분	합계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지차[A+B-C-D]	28,420	13,062	15,358
[조달]	277,665	150,162	127,503
보험료(A)	154,831	91,950	62,881
기타(B)	17,735	9,785	7,950
정부내부수입(전입금)	7,611	707	6,904
여유자금회수	97,488	47,720	49,768
[운용]	277,665	150,162	127,503
사업비(C)	136,001	87,676	48,325
기금관리비 등(D)	8,145	997	7,148
여유자금운용	133,519	61,489	72,030

__ 주: 2016년도 결산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결산 현황(내부자료)	2017	2017	1년

07 H H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Fiscal Balance of the National Health and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지표 정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정의되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현황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 경상수입(보험료 + 기타) - 경상지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재정 외로 운용되는 사회보장성 보험이다. 2016년 결산 기준 양대 보험의 수입총액은 69조 8,421억 원, 지출총액은 57조 8,723억 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운영을 위한 정부지원은 각각 7조 974억 원과 1조 5,285억 원으로 각보험재정 수입의 11.2%와 24,4%를 차지한다. 정부지원을 제외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당기수지는 각각 3조 3,369 억 원과 70억 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 결산현황 (내부자료)	2017	2017	1년

Checkn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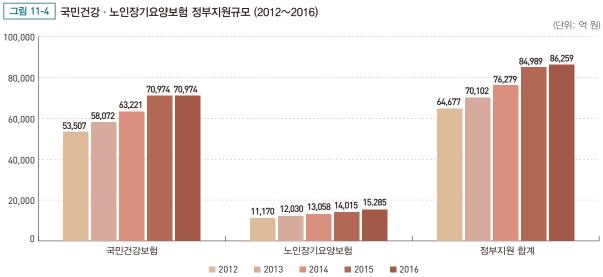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 규모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6조 4,677억 원에서 2016년 8조 6,259억 원으로 약 1.3배 확대되었다. 2012~2016년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운영 정부지원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3%와 8.2%이다.

표 11-7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 결산현황 (2016)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지차[A-B]	33,439	33,369	70
[수입]	698,421	635,839	62,582
보험료 및 기타(A)	612,162	564,865	47,297
정부지원	86,259	70,974	15,285
[지출] (B)	578,723	531,496	47,227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주: 2012~2016 결산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08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Composition of Public social expenditure(SOCX)

지표 정의

명목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비중으로 경제규모를 고려하여 국가 간 공공사회지 출수준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국제비교지표이다.

측정 산식

public SOCX 명목 GDP ×100

한국의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2013년 확정치를 기준으로 GDP 대비 9.3%를 기록하여 멕시코를 제외한 OECD 34개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다**. OECD 34개국 평균 (GDP 대비 21.1%)의 44%수준에 불과하지만,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근래에 올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2013년 OECD 평균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연간 1.2%씩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한국은 5.7%로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공공사회지출 9대 정책영역별 비교가 가능한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보건지출은 GDP 대비 3.8%로 가장 높은 영역으로 확인되며, 이어서 노령(2.2%), 가족(1.1%), 근로무능력(0.6%), 기타(0.6%), ALMP(0.5%), 실업(0.3), 유족(0.2%) 순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지출 수준은 OECD 평균에 훨씬 미달하고 있으나, 기타 영역만 유일하게 OECD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타 영역에 기초생활급여, 긴급복지,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지원 등을 포함시켜 자료를 제출하는데 반해 다른 나라의 경우 주요 급여의 경우 그성격에 따라 특정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기타 영역에 해당하는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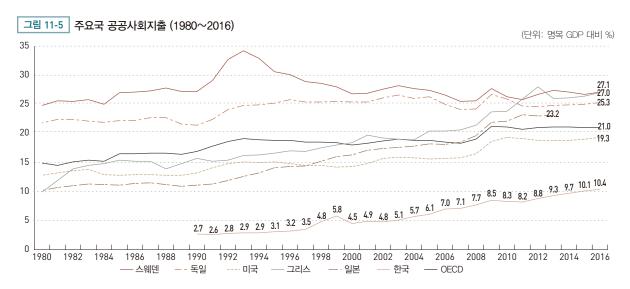
한편, 정책영역별 구성비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보건부문 지출은 전체 공공사회지출의 40.5%를 구성하고 있어 OECD 평균 28.3% 보다 12.2%p 더 높다. 다음으로 높은 구성비를 보이는 영역은 연금지출을 중심으로 한 노령지출로 전체 공공사회지출의 23.9%를 차지한다. 가족 영역의 구성비는 12.1%로 OECD 평균 10.1%를 넘어섰다. 동 영역은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출산 · 보육지원을 중심으로 한 제도 확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가장 빠른 지출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2003~2013년까지 10년 기간 평균증가율 18.6%).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한국의사회복지지출	1990	2016 (확정치 '80~'13, 예측치 '14~'16)	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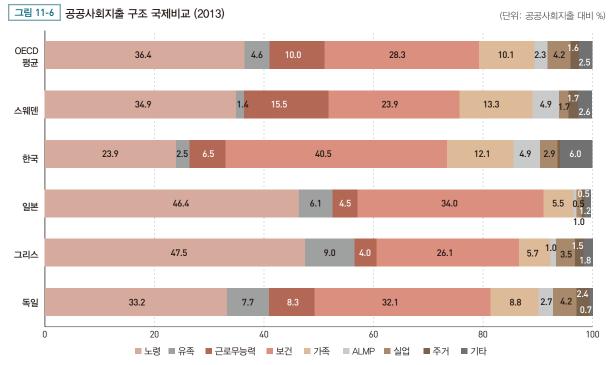
^{*} 공표는 2년 주기

^{*} 일부 연구에서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OECD 용어에 충실하게 공공사회지출로 사용한다. 앞의 지표 11-1과 11-2의 국가 및 지자체 예산분류체계 상 사회복지와 보건을 구분하고 있으며, SOCX는 보건을 포함한 사회복지 급여지출 수준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공공사회지출'이 SOCX가 포괄하는 지출범위에 보다 부합하는 표현이다.

^{**} OECD 35개 가입국 중 멕시코가 항상 최하위 수준을 보였으나 2012년 이후 멕시코 공공사회지출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주: OECD SOCX의 각국자료는 1980~2016년까지의 자료임(단, 일본은 2013년까지, 한국은 1990년 이후 자료임).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http://stats.oecd.org//에서 2018.2. 인출)



주: 그리스는 2012년 기준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http://stats.oecd.org//에서 2018.2. 인출)

# 1	1-0 341 8	크를 으으시되	시골 (18	130 2	014)						(=	선위: 맥만 원)
							공공 사회지	출				
		1.노령	정년 퇴직자 의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1990	5,302,067	1,165,749	-	-	298,218	562,529	2,837,595	59,886	50,690	-	-	335,323
1991	6,175,864	1,470,571	-	-	409,278	777,906	3,059,333	88,738	43,613	-	-	335,837
1992	7,678,171	2,028,385	-	-	451,618	987,875	3,678,863	110,865	103,162	-	-	328,241
1993	8,932,228	2,660,554	-	-	493,606	976,957	4,155,504	153,824	144,042	-	-	358,840
1994	10,540,073	3,316,754	-	-	568,506	1,274,968	4,730,252	184,860	114,439	-	-	362,789
1995	13,170,632	4,372,921	-	-	637,005	1,498,900	5,790,356	261,762	168,119	-	-	454,926
1996	15,523,317	4,650,867	-	-	719,571	1,745,579	7,312,117	337,352	183,633	10,459	-	580,084
1997	18,443,825	5,458,158	-	-	818,913	2,079,141	8,504,308	428,714	359,558	78,737	-	734,072
1998	25,351,088	8,930,747	-	-	873,993	2,071,407	9,637,494	548,994	1,627,392	799,415	-	876,042
1999	33,272,402	13,004,910	-	-	900,020	1,929,012	11,255,688	530,003	3,265,765	936,163	-	1,457,988
2000	28,741,992	7,570,329	-	-	1,039,537	2,271,519	12,818,368	664,909	2,313,351	470,792	-	1,607,210
2001	33,891,387	6,714,835	-	-	1,171,844	2,662,730	17,604,681	941,250	1,428,835	845,109	-	2,540,463
2002	36,516,867	7,324,442	-	-	1,363,887	3,160,246	18,537,343	1,017,929	1,342,499	834,948	-	2,970,665
2003	41,053,341	8,785,190	-	-	1,596,564	3,799,205	20,497,534	1,268,122	931,917	1,030,304	-	3,191,877
2004	50,124,447	11,240,929	-	-	1,824,735	5,069,956	22,514,070	1,654,245	938,848	1,448,306	-	5,495,546
2005	56,247,071	12,653,010	-	-	2,013,164	5,492,187	25,434,929	1,822,796	1,022,514	1,751,974	-	6,016,951
2006	67,682,771	14,182,446	-	-	2,234,610	6,214,105	29,621,902	4,753,167	1,074,230	2,074,004	-	7,500,791
2007	74,334,582	16,059,786	-	-	2,471,034	6,680,133	33,265,042	4,540,474	1,255,823	2,434,033	-	7,605,888
2008	84,490,744	19,813,115	-	-	2,667,186	7,254,795	36,119,019	6,241,375	2,706,090	2,865,256	-	6,725,180
2009	98,203,902	21,545,017	-	-	2,927,170	7,588,390	41,691,448	7,823,590	5,138,382	4,116,404	-	7,055,703
2010	104,800,057	24,139,031	-	-	3,034,681	7,187,509	46,665,117	8,553,279	4,030,093	3,686,529	-	6,801,430
2011	109,809,073	25,769,679	-	-	3,325,532	7,769,873	49,137,862	8,962,093	4,057,979	3,561,353	-	6,567,734
2012	121,512,538	29,584,453	-	-	3,576,482	8,460,569	50,700,486	11,680,125	5,396,891	3,676,665	-	7,228,571
2013	133,392,946	31,909,052	-	-	3,289,889	8,699,643	54,038,963	16,085,869	6,555,643	3,883,507	-	8,032,820
2014	144,313,537	37,207,957	-	-	3,605,368	9,005,713	57,962,756	16,557,800	6,817,869	4,156,162	-	8,731,680

주: 1990~2013년은 확정치이며, 2014년은 예측치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2018.2월 기준)

재원구조별 공공사회지출

08-1 연관 Public social expenditure by fund structure

지표 정의

공공사회지출(SOCX)의 9대 기능별 지출구성을 보여주는 보조지표로 공공사회지출의 재원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의사항

 $\langle \pm 11-9 \rangle$ 의 지출규모는 OECD SOCX 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출한 것으로 앞서의 재정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이후 지난 10년간 집행주체를 기준으로 공공사회지출의 구조를 살펴보면,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지출이 연평균 13.4%씩 증가하였고 그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매칭비 역시 빠르게 증가해왔다. 사회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 공공사회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나타난다(2015년 전체 공공사회지출의 59.3%). 공공사회지출의 9대 영역별 집행재원의 구성을 보면, 노령 영역에서는 당연히 4대 공적연금이 2015년 7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중앙정부(18.5%)와 지방정부(8.5%)순으로 나타난다. 유족영역에서도 역시 4대 공적연금의 지출 비중이 가장 높다(71.7%). 근로무능력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지출이 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이 각각 29%를 차지한다. 보건 영역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국민건강보험 비중이 75%로 가장 높으며, 중앙정부(14%)와 지방(6%)이 보완하고 있다. 가족 영역에서는 중앙정부(63%)의 지출 비중이 가장 높고 직장어린이집 지원이나 육아휴직급여 등이 포함된 고용보험 지출(20%)과 지방(17%) 순으로 나타난다. 실업의 경우 고용보험지출로만 구성되며,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포함된 기타 영역에서는 중앙정부(82.4%)의 지출이 가장 핵심적이다.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재원구조별 공공사회지출(내부자료)	2016	2016	-

기능	재원	2000	2005	2010	2015
총액	총계	28,774,138	56,555,604	104,800,057	157,163,072
	중앙정부	6,520,544	12,881,158	25,545,129	45,254,460
	지방정부-매칭비	2,201,922	4,362,921	10,122,877	14,607,784
	지방정부-자체사업비 ¹⁾		2,247,476	2,083,191	3,327,991
	지방교육청 ²⁾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7,687,988	12,093,677	20,910,931	33,273,688
	사회보험-고용보험	988,839	2,288,458	5,364,047	6,328,941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1,460,071	3,048,243	3,549,120	4,415,317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9,776,163	19,227,380	34,780,541	46,386,437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1,830,043	2,763,510
	공기업	138,611	406,291	614,178	804,944
노령	총계	7,570,329	12,653,010	24,139,031	42,274,212
·	중앙정부	70,839	584,825	3,173,205	7,967,872
	지방정부-매칭비	334,300	594,934	1,222,579	2,632,987
	지방정부-자체사업비	,	494,376	580,531	940,942
	지방교육청		1,0.0	- 30,001	, , , 42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7,074,315	10,716,826	18,785,905	30,196,899
	사회보험-고용보험	- 10, -10 10		-	-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	_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_	_	_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_	_
	공기업	90,875	262,050	376,811	535,512
유족	총계	1,071,530	2,013,164	3,034,681	3,616,891
π÷	중에 중앙정부 ³⁾	516,494	880,704	1,303,899	1,020,788
	지방정부-매칭비	J10,474 _		1,000,077	1,020,700
	지방정부-자체사업비		-	-	-
	지방교육청		-	-	_
	시회보험-4대공적연금	508,573	1,083,262	1,730,754	2,596,103
	사회보험-고용보험	JUO,U/3	1,003,202	1,730,734	۷,070,103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	-
		-	- /0 107		-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	46,463	49,197	28	-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	-
	공기업	- 0.071.510	- F /00 107	7 107 500	10.170.000
로무능력	총계	2,271,519	5,492,187	7,187,509	10,169,908
	중앙정부	692,378	1,500,633	1,805,876	2,945,170
	지방정부-매칭비	402,673	877,439	1,886,855	2,525,732
	지방정부-자체사업비		427,923	119,964	399,361
	지방교육청	40/0//	000 000	000 000	,,,,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104,946	293,327	393,988	480,327
	사회보험-고용보험	-	-	-	-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1,031,112	2,256,604	2,757,200	3,564,629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	-	-	-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4.5	-	
U-1	공기업	40,411	136,261	223,627	254,689
보건	총계	12,804,343	25,474,475	47,367,506	62,016,003
	중앙정부	1,804,839	3,787,747	6,959,831	8,389,053
	지방정부-매칭비	840,846	1,716,906	3,005,199	3,626,316
	지방정부-자체사업비		-	-	-
	지방교육청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	-	-	-
	사회보험-고용보험				

기능	재원	2000	2005	2010	2015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428,959	791,639	791,920	850,688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9,729,699	19,178,183	34,780,513	46,386,437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1,830,043	2,763,510
	공기업	-	-	-	-
가족	총계	664,909	2,131,329	8,553,279	16,701,343
	중앙정부	437,014	1,085,090	4,274,066	11,315,035
	지방정부-매칭비	227,895	323,771	3,138,485	3,492,262
	지방정부-자체사업비		648,184	770,043	1,183,250
	지방교육청		i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	-	-	-
	사회보험-고용보험	-	74,283	370,685	710,525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	-	-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	-	-	-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	-
	공기업	_	-	-	271
극적노동시장	·	2,313,351	1,022,514	4,030,093	7,090,584
0-10	중앙정부	1,795,304	560,313	2,723,260	4,469,239
	지방정부-매칭비	-		_,,	1,201,614
	지방정부-자체사업비		_	_	
	지방교육청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_	_	_	
	사회보험-고용보험	518,047	462,201	1,306,833	1,419,731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510,047 -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_	_	_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	-	_	-
	공기업	_	_	_	
실업	총계	470,792	- 1,751,974	3,686,529	- 4,198,685
28	중에 중앙정부	4/0,/72	1,701,774	J,000,JZ7 -	4,170,000
	지방정부-매칭비	-	-	-	-
	지방정부-자체사업비	-	-	-	-
	지방교육청		-	-	-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u> </u>	- /70 702	1 751 07/	3,686,529	/ 100 /05
	사회보험-고용보험	470,792	1,751,974	ა,000,327	4,198,685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	-	-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	-	-	-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	-
ᄌᄀᆝ	공기업	-	-	-	-
주거	총계	1 (07 0 (11 005 775
기타	총계	1,607,364	6,016,951	6,801,430	11,095,445
	중앙정부	1,203,675	4,481,845	5,304,994	9,147,302
	지방정부-매칭비	396,209	849,870	869,760	1,128,873
	지방정부-자체사업비		676,993	612,654	804,438
	지방교육청	,	2.7	222	A : -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154	263	283	360
	사회보험-고용보험	-	-	-	-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	-	-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	-	-	-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	-
	공기업	7,325	7,980	13,740	14,472

주: 1)자체사업비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예산개요 및 기금 운용개요(순계)(2004-2009년), e-호조system분석(2010년이후)에 기초함. 2) 지방교육청자료는 재원구분이 용이하지 않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매칭비)로만 구분된 것임. 3) 2013년 이후 국가보훈처의 유족급여는 SOCX의 '유족' 영역과 '기타' 영역(참전명예수당, 간호수당 등)으로 분류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 0 1 7

부록

국제비교 색인

국제비교 색인

4	 ス
	100

1-**09** 조이혼율 그림 1-18 주요 국가별 조이혼율 (2000~2013) 062

7 아동·노인·장애인

2- 04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그림 2-9	OECD 국가별 아동(14세 이하)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2014)	093
2- 07	아동 빈곤율	그림 2-24	OECD 국가의 상대적 아동 빈곤율 (가처분 소득 기준, 2013)	105
2-11	아동 · 가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그림 2-37	OECD 국가의 아동 ·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2013)	128
		丑 2-29	연도별 OECD 국가의 아동 ·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 지출	129
		그림 2-38	보육을 제외한 아동 · 가족복지 지출 (2013)	129
2- 12	65세 기대여명	그림 2-40	OECD 국가의 성별 65세 기대여명(2015년 또는 최근 연도)	132
2- 18 -1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그림 2-50	OECD 국가의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수급률 (2015년도 또는 최근 연도)	148
2- 35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그림 2-88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2013)	209

3 보육 및 교육

3- 05	학교급별 취학률	그림 3-12	연령별 OECD 주요국가 취학률 (2014)	226
3- 06	학급당 학생 수	그림 3-24	주요국의 학급당 학생 수 (2014)	228
3- 08	교원 1인당 학생 수	그림 3-26	교육과정별 주요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2014)	233
3 -09 -1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비율	丑 3-11	OECD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투자비율 (2000~2013)	236
3- 13	고등교육 이수율	丑 3-23	고등교육 이수 인구 비율 (2007~ 2015)	246
		그림 3-29	연도별 · 국가별 고등교육 이수 인구 비율	246

4 근로

4-01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4-3	성별 OECD 주요국가 경제활동참가율 (2016)	253
4-02	고용률	그림 4-6	성별 OECD 주요국가 고용률 (2016)	255
4-03	실업률	그림 4-9	성별 OECD 주요국가 실업률 (2016)	257
4-05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그림 4-12	OECD 노동시장 지출수준 (2015)	261
4-06	총 근로시간	그림 4-17	OECD 주요국가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2016)	264
4-08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그림 4-22	OECD 주요국가 임시직의 비율 (2016)	269
4-11	저임금근로자 비율	그림 4-25	OECD 주요국가 저임금근로자 비율 (2016)	275
4-12	시간급 최저임금	그림 4-28	OECD 주요국가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액 (2016)	277
		그림 4-29	OECD 국가 평균소득 및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액 비율 (2016)	278

5 소득보장과 빈곤

5- 03	상대적 빈곤율	그림 5-8 OECD 국가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비교 (2014)	317
5- 04	상대적 노인빈곤율	그림 5-10 OECD 국가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 비교 (2014)	319
5- 05	소득5분위배율	그림 5-12 OECD 국가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 비교 (2014)	321
5 -06	지니계수	그림 5-14 OECD 국가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비교 (2014)	323

6 건강

6-01	기대수명	그림 6-2	OECD 주요 국가의 기대수명 (1970~2015)	341
6- 01 -1	건강수명	그림 6-3	연도별 OECD 국가의 건강수명	342
6- 02 -1	연령표준화사망률	그림 6-7	OECD 국가의 성별 연령표준화사망률 (2015년 또는 최근 연도)	348
6- 02 -2	영아사망률	그림 6-8	OECD 국가의 연도별 영아사망률 (2015년 또는 최근 연도)	349
6- 02 -3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그림 6-9	OECD 국가의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2015년 또는 최근 연도)	350
6- 04	자살률	그림 6-13	OECD 국가의 성별 자살률 (2015년 또는 최근 연도)	357
		그림 6-14	OECD 국가의 자살률 변화폭 (1990년 대비 2015년(또는 최근 연도))	357
6- 05 -4	당뇨병 유병률	그림 6-16	OECD 국가의 당뇨병 유병률 (2015년 또는 최근 연도)	366

6 건강

6- 06	현재 흡연율	그림 6-18 OECD 국가의 흡연율 (2015년 또는 최근 연도)	368
6- 07 -3	1인당 알코올소비량	그림 6-23 OECD 국가의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 (2015년 또는 최근 연도)	376
6-08	비만율	그림 6-25 OECD 국가의 성인 인구 과체중 또는 비만율 (2015년 또는 최근 연도)	378
6- 09 -1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	그림 6-28 OECD 국가의 과일 또는 채소 매일 섭취자 비율 (2015년 또는 최근 연도)	384
6-10	평균 재원일수	그림 6-30 OECD 국가의 평균 재원일수 (2015년 또는 최근 연도)	386
6- 11 -1	1인당 의사진찰 건수	그림 6-32 OECD 국가의 1인당 의사 진찰 건수 (2015년 또는 최근 연도)	388
6- 12	인플루엔자예방접 종 률	그림 6-35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의 예방접종률 (2015년 또는 최근 연도)	393
6- 12 -1	DPT(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률: 1세 대상	그림 6-36 OECD 국가의 DPT 예방접종률 (2015년 또는 최근 연도)	394
6- 15	의사 수	그림 6-43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 (2015년 또는 최근 연도)	405
6- 15 -1	면허의료인 현황	그림 6-44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활동 간호사 수 (2015년 또는 최근 연도)	406
6- 16	병상 수	그림 6-46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병원 병상 수 (2015년 또는 최근 연도)	408
6- 17	GDP 대비 경상의료비	그림 6-48 OECD 국가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2015년 또는 최근 연도)	411
6- 17 -2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비의 비중	그림 6-49 OECD 국가의 연도별 의약품 및 의료용소모품비의 비중	413

7 주거

7-05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그림 7-10 단 주요국가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2016년 또는 최신 연도 최신 전 제신 연도 최신	7- 04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그림 7-8	EU 28개국의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2015년 또는 최신 연도)	427
7-08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그림 7-15 국가별 PIR 추이 439 고림 7-16 국가별 PIR (2010년 대비 2016년 4사분기 수준) 439 7-09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 그림 7-17 국가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2009) 442 고림 7-18 국가별 주거비 괴부담 비율 442 7-12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그림 7-25 국가별 소득대체율 및 총인구 소득대비 고령인구의 소득비율 (2014년 또는 2015년)	7- 05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그림 7-10	EU 주요국가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2016년 또는 최신 연도	430
구리 7-16 국가별 PIR (2010년 대비 2016년 4사분기 수준) 439 7-09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그림 7-17 국가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2009) 442 그림 7-18 국가별 주거비 과부담 비율 442 7-12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그림 7-25 국가별 소득대체율 및 총인구 소득대비 고령인구의 소득비율 (2014년 또는 2015년)	7- 05 -1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그림 7-12	EU 국가의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432
7-09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그림 7-17 국가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2009) 442 그림 7-18 국가별 주거비 과부담 비율 442 7-12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그림 7-25 국가별 소득대체율 및 총인구 소득대비 고령인구의 소득비율 (2014년 또는 2015년)	7-08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그림 7-15	국가별 PIR 추이	439
고림 7-18 국가별 주거비 과부담 비율 442 7-12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그림 7-25 국가별 소득대체율 및 총인구 소득대비 고령인구의 소득비율 (2014년 또는 2015년)			그림 7-16	국가별 PIR (2010년 대비 2016년 4사분기 수준)	439
7- 12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그림 7-25 국가별 소득대체율 및 총인구 소득대비 고령인구의 소득비율 (2014년 또는 2015년)	7- 09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그림 7-17	국가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2009)	442
(2014년 또는 2015년)			그림 7-18	국가별 주거비 과부담 비율	442
그림 7-26 국가별 고령인구의 소득구성비 451	7- 12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 그림 7-25		450
			그림 7-26	국가별 고령인구의 소득구성비	451

9 환경

9- 02	하수도 보급률	그림 9-3	OECD 주요국의 하수도 보급률	479
9- 06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그림 9-17	OECD 국가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2016)	493
9- 06 -1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그림 9-20	OECD 국가의 1인당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 (2016)	495

10-02-1 연간 독서율 표 10-3 OECD 국가의 연평균 독서율 (2013) 510 표 10-4 EU 국가의 공공도서관 이용률 (2013) 510 10-14 GDP 대비 문화예산 그림 10-41 OECD 국가의 GDP 대비 오락여가비 정부지출 비중 (2016) 535 10-15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그림 10-43 OECD 국가의 GDP 대비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2016) 537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연구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진재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천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분야별	분야별 참여 전문가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최은희	LH토지주택연구원			
박성호	한국교육개발원			
박근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복천	전주대학교			
한은희	사회보장정보원			
추병주	사회보장정보원			
박규범	사회보장정보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아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